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1.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 결산 ····· 3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11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 25

Ⅱ. 2024회계연도 결산 총평

1. 2024년 재정운용 개요 ····· 29
2. 2024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 30
3. 연례적 세수 오차 발생 및 대응 ····· 40
4. 4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분석 ····· 47
5. 재정정상화(지출구조조정) 관련 분석 ····· 67

Ⅲ. 재정총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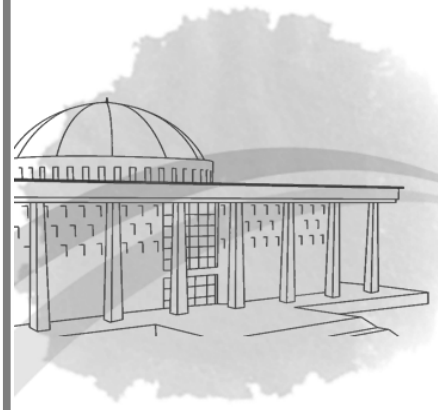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1. 재정수입 ····· 79
2. 재정지출 ····· 115
3. 재정건전성 ····· 137

4. 기금 결산 ····· 157
5. 재무 결산 ····· 205
6. 예비비 결산 ····· 221
7. 공공기관 결산 ····· 238
8.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 342
9.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 362
10.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382
11. 성과관리제도 ····· 416

Ⅳ. 주제별 검토

1. 국민건강보험 재정 ····· 439
2. 국가연구개발사업(R&D) ····· 478
3.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 536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576
5. 재난안전 대응 ····· 619
6.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741
7. 정책금융 사업 ····· 782
8. 빈집정비 사업 ····· 878
9. 정보화 사업 ····· 904
10. 국고보조 사업 ····· 941
11. 출연금 사업 ····· 986

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1.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 결산

가. 총수입 및 총지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594.5조원으로 예산 612.2조원 대비 17.7조원(△2.9%)미달되었으나 전년 대비 20.5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8조원 미달되었으나 기금수입이 예산 대비 11.5조원 더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총지출은 638.0조원으로 예산 656.6조원 대비 18.6조원(△2.8%) 미달되었고, 전년 대비 27.3조원 증가하였음. 정부는 약자복지 등 복지지출 증가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금) 감액조정 등으로 예산 대비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음.[1)]

[2024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단위 : 조원)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Ⅰ. 총수입[1)]	573.9	612.2	594.5	△17.7	20.5
1. 국 세	344.1	367.3	336.5	△30.8	△7.5
2. 세외수입	28.5	28.2	29.6	1.4	1.1
3. 기 금	201.1	216.7	228.2	11.5	27.1
※ 세입예산외[2)]	0.3	-	0.1	0.1	△0.1
Ⅱ. 총지출[1)]	610.7	656.6	638.0	△18.6	27.3
1. 일반회계	343.5	356.5	344.5	△12.0	1.0
2. 특별회계	69.6	81.7	78.6	△3.2	8.9
3. 기 금	196.5	218.4	214.5	△3.9	18.0
※ 세출예산외[3)]	1.0	-	0.4	0.4	△0.6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제외됨
2)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3)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문의 : 양창석 예산결산총괄팀장 ycs82@assembly.go.kr (02-6788-5684)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5.4.8.

2024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예산 367.3조원 대비 30.8조원(△8.4%) 미달되었고, 전년도 실적 344.1조원 대비 7.5조원(△2.2%) 감소하였음.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26.2조원으로 예산 356.1조원 대비 29.9조원(△8.4%),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4조원으로 예산 11.2조원 대비 0.8조원(△7.1%) 각각 미달되었음.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17.4조원으로 예산 125.8조원 대비 8.3조원(△6.6%) 적게 수납(전년 대비 1.6조원, 1.4%)되었고, 법인세는 62.5조원으로 예산 77.7조원 대비 17.9조원(△23.0%) 적게 수납(전년 대비 △17.9조원, △22.3%)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82.2조원으로 예산 81.4조원 대비 0.8조원(1.0%) 더 수납(전년 대비 8.5조원, 11.5%)되었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2)]

[2024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세수입 합계	344.1	367.3	336.5	△30.8	△7.5
○ 일반회계	333.9	356.1	326.2	△29.9	△7.8
- 내국세	306.1	321.6	298.3	△23.4	△7.8
· 소득세	115.8	125.8	117.4	△8.3	1.6
· 법인세	80.4	77.7	62.5	△15.2	△17.9
· 상속증여세	14.6	14.7	15.3	0.6	0.7
· 부가가치세	73.8	81.4	82.2	0.8	8.5
· 개별소비세	8.8	10.2	8.7	△1.5	△0.2
· 증권거래세	6.1	5.4	4.8	△0.6	△1.3
· 인지세	0.8	0.9	0.8	△0.0	0.0
· 과년도수입	5.7	5.7	6.5	0.8	0.8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5.3	11.4	△3.9	0.5
- 관세	7.3	8.9	7.0	△1.9	△0.3
- 교육세	5.2	6.2	5.4	△0.8	0.2
- 종합부동산세	4.6	4.1	4.2	0.1	△0.4
- 방위세	0.0	0.0	0.0	0.0	0.0
○ 특별회계	10.1	11.2	10.4	△0.8	0.2
- 주세	3.6	3.6	3.3	△0.2	△0.2
- 농특세	6.6	7.6	7.0	△0.6	0.5

자료: 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2025.2.10.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실적은 29.6조원으로 예산 28.2조원 대비 1.4조원(5.0%) 초과수납(전년 대비 1.1조원, 3.9%)되었으며, 이는 주로 경상이전수입이 예산 대비 1.0조원, 재산수입이 예산 대비 0.4조원 각각 초과수납된 것에 기인함.

기금수입 실적은 228.2조원으로 당초 계획액 216.7조원 대비 11.5조원(5.3%)이 더 수납(전년 대비 27.1조원, 13.5%)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더 수납된 것에 주로 기인함.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실적(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세외수입	28.5	28.2	29.6	1.4	1.1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8.0	8.1	8.2	0.1	0.1
- 재산수입	3.4	3.7	4.1	0.4	0.7
- 경상이전수입	12.3	11.5	12.5	1.0	0.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	2.8	2.6	△0.3	0.0
- 수입대체경비수입	0.3	0.2	0.3	0.0	0.0
- 관유물매각대	1.1	0.9	1.2	0.3	0.1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0.8	0.9	0.8	△0.1	0.0
■ 기금수입	201.1	216.7	228.2	11.5	27.1
- 사회보장기여금	88.9	92.3	92.8	0.5	3.9
- 재산수입	38.9	37.8	52.8	15.0	13.9
- 경상이전수입	35.7	39.6	40.5	0.8	4.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7	10.3	10.1	△0.3	0.4
- 수입대체경비수입	0.0	0.0	0.0	0.0	0.0
- 관유물매각대	2.6	2.8	2.8	△0.1	0.2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5.3	33.8	29.2	△4.5	3.9
□ 합 계	229.6	244.9	257.8	12.9	28.2

주) 2024년 기금수입의 예산은 당초계획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12대 분야별 결산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은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99.7%로 가장 높고,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99.5%), 보건·복지·고용(98.8%), 국방(98.6%), R&D(98.1%), 일반·지방행정(98.0%) 순이었으며, 환경 분야가 8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12대 분야별 지출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R&D 분야(△15.8%), 환경 분야(△1.3%), 교육 분야(△0.3%)의 전년 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한 반면, 외교·통일 분야(27.1%)와 SOC 분야(7.5%), 공공질서·안전 분야(7.1%) 등은 전년 대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12대 분야별 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예산 (B)	결 산 (C)	집행률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보건·복지·고용	225.3	242.9	239.9	98.8	14.6	6.5
○ 교육	85.6	89.8	85.3	95.0	△0.2	△0.3
○ 문화·체육·관광	8.4	8.7	8.5	97.4	0.1	0.7
○ 환경	11.3	12.5	11.2	89.5	△0.1	△1.3
○ R&D	30.9	26.5	26.0	98.1	△4.9	△15.8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5	28.0	27.9	99.5	1.3	5.1
○ SOC	23.5	26.4	25.3	95.5	1.8	7.5
○ 농림·수산·식품	24.0	25.4	24.5	96.4	0.5	2.2
○ 국방	55.8	59.4	58.6	98.6	2.8	4.9
○ 외교·통일	5.0	7.5	6.4	84.7	1.4	27.1
○ 공공질서·안전	22.7	24.4	24.3	99.7	1.6	7.1
○ 일반·지방행정	103.5	110.5	108.3	98.0	4.8	4.7

주) 세입세출예산외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24회계연도 총지출의 성질별 지출실적을 보면, 예산외지출을 제외하고 상환지출(19.9%), 자산취득(10.1%), 인건비(4.5%), 이전지출(3.0%), 물건비(0.2%) 항목의 전년 대비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전출금등(△100.0%), 예비비 및 기타(△3.0%)는 전년 대비 집행액이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성질별 지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예산 (B)	결산 (C)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총지출	610.7	656.6	638.0	97.1	△18.6	△3.0
○ 인건비	45.9	48.8	47.9	98.2	2.1	4.5
○ 물건비	31.2	31.2	31.2	100.2	0.1	0.2
○ 이전지출	427.6	449.9	440.6	97.9	12.9	3.0
○ 자산취득	80.1	95.0	88.2	92.9	8.1	10.1
○ 상환지출	23.7	27.1	28.4	105.0	4.7	19.9
○ 전출금등	0.0	0.0	0.0	-	0.0	△100.0
○ 예비비 및 기타	1.2	4.7	1.2	25.1	0.0	△3.0
○ 예산외지출	1.0	-	0.4	-	△0.6	△60.0

자료: 기획재정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4년도 의무지출 결산은 342.5조원으로 예산 347.4조원 대비 98.6%가 집행되었고, 이는 전년보다 17.4조원(5.4%) 증가한 것임.

또한 재량지출 결산은 295.5조원으로 예산 309.2조원 대비 95.6%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집행액이 10.9조원(3.8%)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2024			2024			전년 대비	
	예산	결산 (A)	(C/B)	예산 (B)	결산 (C)	(C/B)	증감액 (D=C-A)	비율 (D/A)
□ 총지출	638.7	610.7	95.6	656.6	638.0	97.2	27.3	4.5
○ 의무지출	340.3	325.1	95.5	347.4	342.5	98.6	17.4	5.4
(비 중)	(53.3)	(53.2)	99.8	(52.9)	(53.7)	101.5	△0.5	0.9
○ 재량지출	298.4	284.6	95.4	309.2	295.5	95.6	10.9	3.8
(비 중)	(46.7)	(46.6)	99.8	(47.1)	(46.3)	98.3	0.3	△0.6

주) 결산치 세출 외 항목으로 의무·재량 총합과 총지출 간 차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GDP 대비 △1.7%)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0.9조원 개선되었고, 전년 대비 6.8조원 악화되었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61.2조원 흑자(GDP 대비 2.4%)를 기록하였으며, 흑자 규모는 예산 대비 14.0조원, 전년 대비 11.0조원 각각 증가하였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13.1조원, 전년 대비 17.7조원 각각 증가하였음.

전년 대비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세수입의 감소에서 주로 기인하며, 매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하였음.

[2024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통합재정수지	△36.8	△44.4	△43.5	0.9	△6.8
(GDP 대비)	(△1.5)	(△1.8)	(△1.7)	(0.1)	(△0.2)
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3	47.2	61.2	14.0	11.0
(GDP 대비)	(2.1)	(1.9)	(2.4)	(0.5)	(0.3)
Ⅲ. 관리재정수지	△87.0	△91.6	△104.8	△13.1	△17.7
(GDP 대비)	(△3.6)	(△3.6)	(△4.1)	(△0.5)	(△0.5)

자료: 기획재정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1.5조원 흑자로 전년도 1.4조원 흑자에 비해 0.2조원 개선되었고, 국민연금기금은 59.0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10.6조원 개선되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0.6조원 적자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3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0.2조원 개선되었음.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합 계	50.3	47.2	61.2	14.0	11.0
○ 고용보험기금	1.4	2.0	1.5	△0.5	0.2
○ 국민연금기금	48.4	43.6	59.0	15.4	10.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6	0.7	△0.6	△1.2	0.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	0.9	1.3	0.3	0.2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GDP 대비 46.0%를 기록하였음. 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20.5조원 감소하고 전년 대비로는 48.5조원 증가한 것임.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1,141.2조원으로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21.9조원 감소하고 전년 대비 48.6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 중에서 국고채권이 전년 대비 49.9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 순채무는 잠정적으로 34.1조원으로 전망되어 예산 대비 1.3조원 증가하고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할 전망임.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 (A+B, 잠정)	1,126.8	1,195.8	1,175.2	△20.5	48.5
(GDP 대비, %)	(46.8)	(47.4)	(46.0)	(△1.5)	(△0.8)
○ 중앙정부 채무(A)	1,092.5	1,163.0	1,141.2	△21.9	48.6
■ 국 채	1,091.1	1,161.7	1,139.8	△21.9	48.7
- 국고채권	998.0	1,046.0	1,047.9	1.9	49.9
- 국민주택채권	81.6	83.7	79.1	△4.6	△2.5
- 외평채권(외화)	11.5	32.0	12.8	△19.2	1.3
■ 차입금	1.2	1.2	1.2	0.0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2	△0.0	△0.0
○ 지방정부 순채무(B)	34.3	32.8	34.1	1.3	△0.2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가 815.4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69.4%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성 채무는 359.8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30.6%를 차지하고 있음.[3] 적자성 채무는 예산 대비 23.1조원, 전년 대비 88.9조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적자성 채무 중에서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가 756.7조원으로 전년 대비 96.6조원 증가하였음.

금융성 채무는 예산 대비 43.7조원 적었고, 전년 대비로도 40.5조원 적었는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예산 대비 43.7조원, 전년 대비 40.7조원 각각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함.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126.8	1,195.8	1,175.2	△20.5	48.5
○ 적자성 채무(A)	726.4	792.3	815.4	23.1	88.9
(구성비)	(64.5)	(66.3)	(69.4)	(3.1)	(4.9)
- 일반회계적자보전	660.1	733.3	756.7	23.4	96.6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66.4	58.9	58.7	△0.3	△7.7
○ 금융성 채무(B)	400.3	403.5	359.8	△43.7	△40.5
(구성비)	(35.5)	(33.7)	(30.6)	(△3.1)	(△4.9)
- 외환시장 안정	251.0	253.4	210.3	△43.1	△40.7
- 서민주거 안정 등	149.4	150.1	149.5	△0.6	0.2

자료: 기획재정부

3) 국가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됨.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결산산잉여금은 6.5조원(총세입 535.9조원 - 총세출 529.5조원)이고,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 발생하였음.[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결산 (A)	총세출 결산 (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535.9	529.5	6.5	4.5	2.0
일반회계	437.3	435.4	1.9	1.4	0.4
특별회계	98.6	94.0	4.6	3.0	1.6

자료: 기획재정부

총세입 535.9조원은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4.1조원 적은 규모임. 이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437.3조원으로 전년 대비 29.4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2.2조원 미달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세입은 98.6조원으로 전년 대비 9.6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9조원 미달되었음.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	497.0	550.0	535.9	△14.1	39.0
일반회계	407.9	449.5	437.3	△12.2	29.4
특별회계	89.0	100.5	98.6	△1.9	9.6

자료: 기획재정부

4) 총세입·총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계로 산출되어 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총수입·총지출과는 차이가 있음.

세입예산의 성질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전년 대비 7.5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30.8조원 미달되었음. 세외수입은 199.4조원으로 전년 대비 46.5조원 증가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및 전년도 이월금과 세계잉여금 이입 등에 따라 예산 대비 16.7조원 초과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2023 결산 (A)	2024				2023 결산	2024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합 계	344.1	367.3	336.5	△30.8	△7.5	152.9	182.7	199.4	16.7	46.5
일반회계	333.9	356.1	326.2	△29.9	△7.8	74.0	93.4	111.1	17.7	37.1
특별회계	10.1	11.2	10.4	△0.8	0.2	78.9	89.3	88.3	△1	9.4

자료: 기획재정부

총세출은 529.5조원으로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한 반면,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24.5조원 적었음. 이 중 일반회계 총세출은 43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9.5조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6.1조원 적었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은 94.0조원으로 전년 대비 9.5조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보다 8.4조원 적었음.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결산 (C)	예산현액 대비 (C-B)	
합 계	490.4	550.0	554.0	529.5	△24.5	39.0
일반회계	405.9	449.5	451.6	435.4	△16.1	29.5
특별회계	84.5	100.5	102.4	94.0	△8.4	9.5

주) 예산현액(B)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및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37조 3,17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520조 7,677억원의 84.0%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29조 3,895억원이 증가하고 예산 대비 12조 2,089억원 적게 수납된 것임.

이 중 국세수입 수납액은 326조 1,79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400조 5,269억원의 81.4%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7조 7,603억이 감소하고 예산 대비 29조 9,389억원이 적게 수납된 것임.

세외수입 수납액은 111조 1,38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20조 2,408억원의 92.4%가 수납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37조 1,498억원이 증가하고, 예산 대비 17조 7,300억원이 더 많이 수납된 것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D-A)
		예산 (B)	징수 결정액 (C)	수납액 (D)	수납률 (D/C)	예산 대비 (D-B)	
합 계	4,079,283	4,495,267	5,207,677	4,373,178	84.0	△122,089	293,895
국세수입	3,339,396	3,561,182	4,005,269	3,261,793	81.4	△299,389	△77,603
세외수입	739,887	934,085	1,202,408	1,111,385	92.4	177,300	371,498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400조 5,269억원 대비 81.4%인 326조 1,79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1조 9,169억원은 불납결손 처리되고 72조 4,307억원은 미수납되었음.

세목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117조 4,180억원, 부가가치세 82조 2,358억원, 법인세 62조 5,113억원, 상속증여세 15조 2,981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1조 3,891억원, 개별소비세 8조 6,566억원, 관세 6조 9,723억원, 과년도 수입 6조 5,334억원, 교육세 5조 3,738억원, 증권거래세 4조 7,602억원, 종합부동산세 4조 1,847억원, 인지세 8,460억원, 방위세 1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339,396	3,561,182	4,005,269	3,261,793	19,169	724,307
■ 내국세	3,060,595	3,216,136	3,690,359	2,982,594	18,949	688,816
1.소득세	1,158,330	1,257,605	1,240,264	1,174,180	15	66,069
2.법인세	804,195	776,649	643,703	625,113	2	18,588
3.상속증여세	146,341	146,566	159,137	152,981	-	6,155
4.부가가치세	737,749	814,068	914,521	822,358	6	92,156
5.개별소비세	88,209	101,945	91,077	86,566	0	4,511
6.주세	-	-	503	0	8	495
7.증권거래세	60,803	53,829	47,660	47,602	0	58
8.인지세	7,969	8,505	8,461	8,460	-	1
9.과년도수입	56,999	56,969	585,034	65,334	18,917	500,783
■ 관세	72,883	89,065	85,556	69,723	52	15,781
■ 방위세	1	-	5	1	0	4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6	153,258	114,087	113,891	58	138
■ 교육세	51,516	61,625	54,499	53,738	24	738
■ 농어촌특별세	-	-	3,224	-	42	3,182
■ 종합부동산세	45,965	41,098	57,539	41,847	44	15,649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1조 1,385억원이 수납되어 예산 대비 17조 7,300억원이 더 수납되었고, 전년 대비 37조 1,498억원이 증가하였음.

수납액 규모는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97조 8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기타경상이전수입 4조 372억원,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3조 4,152억원, 전년도이월금 2조 56억원, 정부출자수입 1조 6,033억원,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조 3,012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조 5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3 실적 (A)	2024			전년대비 (C-A)
		예산 (B)	실적 (C)	예산 대비 (C-B)	
합 계	739,887	934,085	1,111,385	177,300	371,498
■ 재산수입	30,831	28,827	29,948	1,121	△883
- 관유물대여료	1,074	847	902	56	△172
- 정부출자수입	9,412	9,823	16,033	6,210	6,622
- 전대차관이자수입	-	-	-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345	18,157	13,012	△5,145	△7,332
■ 경상이전수입	82,570	69,133	77,551	8,418	△5,019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7,391	33,179	34,152	974	△3,239
- 변상금및위약금	5	2,104	264	△1,840	259
- 가산금	3,087	2,822	2,762	△60	△325
- 기타경상이전수입	42,086	31,028	40,372	9,344	△1,71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775	10,418	10,056	△362	281
■ 수입대체경비수입	2,583	2,270	2,536	265	△48
■ 관유물매각대	1,776	1,295	1,156	△139	△620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	4	-	△3	△1
■ 전년도이월금	27,933	-	20,056	20,056	△7,877
■ 세계잉여금	27,511	-	-	-	△27,51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56,908	822,138	970,082	147,945	413,174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	-	-	-

자료: 기획재정부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액은 435조 4,30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6.4%이며, 전년 대비 29조 5,442억원 증가하였음. 16대 기능별 결산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집행액이 99조 1,401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 분야 86조 6,038억원, 사회복지 분야 82조 2,247억원, 국방 분야 58조 9,88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행률이 9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예비비(20%)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2023년 대비 보건 분야(△1조 391억원), 통신 분야(△638억원), 과학기술 분야(△2,568억원)의 집행액이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합 계	4,058,863	4,495,267	4,515,605	4,354,305	96.4	295,442
일반·지방행정	870,300	1,017,194	1,017,535	991,401	97.4	121,101
공공질서및안전	209,897	224,268	225,776	223,556	99.0	13,658
통일·외교	34,942	44,934	45,240	43,446	96.0	8,504
국방	561,476	598,363	610,572	589,885	96.6	28,408
교육	862,880	910,161	910,419	866,038	95.1	3,158
문화및관광	44,482	46,083	47,155	44,983	95.4	500
환경	52,608	58,226	58,372	54,756	93.8	2,148
사회복지	754,149	834,294	835,943	822,247	98.4	68,098
보건	168,015	150,162	158,485	157,624	99.5	△10,391
농림수산	91,950	93,330	95,178	92,515	97.2	56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4,400	117,776	117,985	116,668	98.9	2,268
교통및물류	126,920	181,100	181,877	170,558	93.8	43,638
통신	9,637	9,024	9,035	8,999	99.6	△638
국토및지역개발	70,887	90,876	91,711	87,569	95.5	16,682
과학기술	80,248	77,475	78,485	77,680	99.0	△2,568
예비비	6,072	42,000	31,838	6,383	20.0	311

자료: 기획재정부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특별회계 세입 결산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98조 6,065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 5,752억원 증가하였고, 예산 대비 1조 8,810억원이 과소 수납되었음.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예산 대비 △8,232억원)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예산 대비 △9,936억원)의 수납 실적이 저조한 것에 기인함.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총괄]

(단위: 억원)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A+B)	890,313	1,004,875	986,065	△18,810	95,752
■ 기타특별회계 소계(A)	741,464	842,830	821,113	△21,717	79,64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5,951	157,923	156,695	△1,228	60,743
교도작업특별회계	1,242	1,205	1,313	107	71
교통시설특별회계	149,097	165,665	163,470	△2,195	14,37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7,711	138,689	140,189	1,499	12,47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828	5,767	9,489	3,722	2,6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4,161	155,116	146,883	△8,232	△7,278
등기특별회계	3,011	3,831	2,650	△1,181	△36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4,171	21,681	21,969	288	△2,20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661	1,180	1,348	168	△3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138	64,712	54,775	△9,936	1,63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653	10,616	8,908	△1,707	△74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880	32,322	32,566	244	△2,31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9,090	6,426	5,121	△1,306	△3,97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749	1,363	2,209	846	△53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32	5,859	4,153	△1,706	3,822
환경개선특별회계	67,787	70,476	69,375	△1,101	1,588
■ 기업특별회계 소계(B)	148,849	162,045	164,952	2,907	16,103
양곡관리특별회계	24,290	27,460	28,704	1,244	4,41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6,173	59,408	66,751	7,343	10,578
우편사업특별회계	48,584	54,396	48,286	△6,110	△298
조달특별회계	6,366	8,027	9,125	1,098	2,75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436	12,753	12,085	△668	△1,351

자료: 기획재정부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10조 3,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7억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 8,427억원 미달되었음. 세외수입은 88조 2,5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535억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 1조 383억원 미달되었음.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성질별 세입 수납액]

(단위: 억원)

구 분	2023 실적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실적(C)	예산 대비 (C-B)	
합 계	890,313	1,004,875	986,065	△18,810	95,752
■ 국세수입	101,314	111,958	103,531	△8,427	2,217
- 주세	35,686	35,759	33,282	△2,477	△2,404
- 농특세	65,628	76,199	70,249	△5,950	4,621
■ 세외수입	788,998	892,917	882,534	△10,383	93,535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80,245	80,736	81,720	984	1,475
- 재산수입	3,388	8,506	11,272	2,766	7,884
· 관유물대여료	856	969	874	△95	18
· 정부출자수입	507	630	3,609	2,979	3,10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25	6,906	6,789	△118	4,764
- 경상이전수입	40,114	46,039	47,716	1,678	7,603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67	692	676	△16	109
· 변상금및위약금	103	116	88	△27	△15
· 가산금	48	64	54	△10	6
· 기타경상이전수입	39,395	45,167	46,897	1,730	7,50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801	18,055	15,554	△2,501	△246
- 수입대체경비수입	76	112	176	64	99
- 관유물매각대	9,646	7,974	10,780	2,806	1,13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078	8,590	7,756	△834	△321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	-	-	-
- 전년도이월금	19,732	0	8,134	8,134	△11,598
- 세계잉여금	32,530	20,890	35,823	14,933	3,29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79,389	702,016	663,603	△38,412	84,214

자료: 기획재정부

(2) 특별회계 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집행액은 94조 325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 102조 4,371억원의 91.8%를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9조 5,043억원 증가하였음.

주요 회계별로 살펴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15조 5,422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5조 9,481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13조 5,533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1조 6,874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14조 278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8,465억원 감소하였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4,765억원 집행되어 전년 대비 4,097억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합 계	845,282	1,004,875	1,024,371	940,325	91.8	95,043
■ 기타특별회계 소계(A)	711,488	842,830	861,476	790,118	91.7	78,62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5,941	157,923	157,950	155,422	98.4	59,481
교도작업특별회계	1,130	1,205	1,212	1,183	97.6	53
교통시설특별회계	142,169	165,665	172,402	154,859	89.8	12,69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8,659	138,689	140,485	135,533	96.5	16,874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039	5,767	6,607	5,708	86.4	△3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8,743	155,116	161,781	140,278	86.7	△8,465
등기특별회계	2,642	3,831	3,856	2,500	64.8	△14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3,457	21,681	21,681	21,638	99.8	△1,8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388	1,180	1,297	1,052	81.1	△33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0,760	64,712	64,724	52,847	81.7	2,08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579	10,616	10,620	8,887	83.7	30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	32,322	32,322	32,322	100.0	△2,37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862	6,426	6,654	4,765	71.6	△4,0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801	1,363	2,241	1,356	60.5	△44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12	5,859	5,864	4,104	70.0	3,792
환경개선특별회계	66,305	70,476	71,780	67,664	94.3	1,359
■ 기업특별회계 소계(B)	133,793	162,045	162,895	150,207	92.2	16,414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8	27,460	27,461	27,451	100.0	4,20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45,397	59,408	59,487	56,134	94.4	10,737
우편사업특별회계	47,600	54,396	54,851	47,130	85.9	△471
조달특별회계	4,941	8,027	8,179	8,009	97.9	3,0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608	12,753	12,918	11,484	88.9	△1,124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집행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16개 기타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91.7%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10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99.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98.4%), 교도작업특별회계(97.6%) 등이 높은 집행실적을 보인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60.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70.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71.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음.

한편 5개 기업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은 92.2%이며, 양곡관리특별회계(100.0%), 조달특별회계(97.9%), 우체국예금특별회계(94.4%) 등이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88.9%), 우편사업특별회계(85.9%)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음.

라. 이월 및 불용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 규모는 4.5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15.3%)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이 1.4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28.1%)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은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62.3%)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3년 이월액 (A)	2024년			전년 대비	
		예산현액 (B)	이월액 (C)	이월액 비율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합 계	3.9	554.0	4.5	0.8	0.6	15.3
일반회계	2.0	451.6	1.4	0.3	△0.6	△28.1
특별회계	1.9	102.4	3.0	2.9	1.2	62.3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규모는 20.1조원으로 전년 대비 25.6조원 감소하였음. 정부는 결산상 불용액을 ① 국세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조정(세입여건 변화, 6.5조원), ② 회계간,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내부거래, 2.1조원), ③ 예비비 미집행, 지출소요 조정 및 기타 집행계획변경 등(사실상 불용, 9.3조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불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불용액	45.7	41.2	4.5	20.1	14.7	5.4
세입여건변화	18.6	18.6	-	6.5	6.5	-
내부거래	16.4	14.8	1.5	4.3	2.1	2.2
사실상 불용	10.8	7.8	3.0	9.3	6.1	3.2

자료: 기획재정부

마. 세계잉여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6조 4,614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4조 4,54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74억원으로 전년 대비 6,761억원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54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총 1조 5,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54억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세계잉여금 (A)	2024					전년대비 증감액 (G=F-A)
		총세입(B)	총세출(C)	결산상잉여금 (D=B-C)	이월액 (E)	세계잉여금 (F=D-E)	
합 계	26,835	5,359,243	5,294,630	64,614	44,540	20,074	△6,761
□ 일반회계	364	4,373,178	4,354,305	18,874	14,416	4,458	4,094
□ 특별회계	26,470	986,065	940,325	45,740	30,125	15,616	△10,8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	156,695	155,422	1,273	35	1,237	1,2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60	146,883	140,278	6,605	17,324	△10,719	△10,059
교통시설특별회계	467	163,470	154,859	8,611	6,983	1,628	1,161
등기특별회계	344	2,650	2,500	150	24	126	△218
교도작업특별회계	105	1,313	1,183	130	0	129	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66	54,775	52,847	1,928	11	1,917	△449
환경개선특별회계	178	69,375	67,664	1,711	668	1,043	865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70	8,908	8,887	22	5	16	△1,05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5,121	4,765	356	356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0	2,209	1,356	853	853	△0	△7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1	9,489	5,708	3,781	723	3,058	3,10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	4,153	4,104	49	9	40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56	1,348	1,052	296	152	144	△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56	140,189	135,533	4,656	2,201	2,454	△4,80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80	32,566	32,322	244	-	244	64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714	21,969	21,638	331	-	331	△383
양곡관리특별회계	1,041	28,704	27,451	1,253	10	1,243	202
조달특별회계	1,273	9,125	8,009	1,116	34	1,083	△190
우편사업특별회계	529	48,286	47,130	1,156	528	629	10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0,697	66,751	56,134	10,617	68	10,550	△14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5	12,085	1,1484	601	139	462	△253

주) 세계잉여금이 음수(△)라는 것은 해당 규모만큼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2,332억 2,600만원이 발생한 이후 2022년부터 매해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 계	93,549	233,226	91,498	26,835	20,074
일반회계	57,192	179,949	60,248	364	4,458
특별회계	36,357	53,275	31,250	26,470	15,616

자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국가재정법」재90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채무상환, 추경안 편성,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등의 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근거 법률에 따른 조치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조치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지방교부세법」제5조제2항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
2.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1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3. 다음 각 호의 채무상환에 사용(1+2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 국채·차입금 원리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차입 원리금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4.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5. 최종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조치

자료:「국가재정법」제90조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458억원 중 1,337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936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며, 2,184억원을 2025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사용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A)	처리내역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B)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C)	비율 (C/(A-B))	채무상환(D)	비율 (D/(A-B-C))	추경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20 (2021)	57,192	22,653	10,362	30.0	7,253	30.0	16,924	-
2021 (2022)	179,949	113,382	19,970	30.0	13,979	30.0	32,618	-
2022 (2023)	60,248	4,103	16,843	30.0	11,790	30.0	27,511	
2023 (2024)	364	364	-	-	-	-	-	
2024 (2025)	4,458	-	1,337	30.0	936	30.0	2,184	-

자료: 기획재정부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68개 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액은 1,00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8조원이 증가하였음.

기금 수입의 구성내역을 보면, 여유자금회수(293.5조원), 정부내부수입(290.5조원), 자체수입(242.5조원), 차입금(182.1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고, 차입금(△1.5조원)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기금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내부지출(337.4조원), 여유자금운용(299.6조원), 사업비(193.5조원), 차입금원금상환(143.6조원), 차입금이자상환(31.5조원), 기금운영비(2.9조원) 순으로 규모가 큼.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정부내부지출(68.5조원), 여유자금운용(26.2조원), 사업비(14.9조원), 차입금원금상환(4.6조원), 차입금이자상환(4.6조원) 순으로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컸고, 기금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했음.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입	자체수입	214.3	231.8	231.9	242.5	10.5	28.1
	정부내부수입	248.1	309.8	312.5	290.5	△22.0	42.4
	차입금	183.5	198.7	198.9	182.1	△16.9	△1.5
	여유자금회수	243.8	283.1	287.0	293.5	6.5	49.7
합 계		889.8	1023.3	1030.4	1008.5	△21.8	118.8
지출	사업비	178.7	198.9	202.6	193.5	△9.0	14.9
	기금운영비	2.9	3.0	3.0	2.9	△0.1	-
	정부내부지출	268.9	332.6	342.7	337.4	△5.3	68.5
	차입금원금상환	139.0	143.3	144.7	143.6	△1.2	4.6
	차입금이자상환	26.9	31.9	32.2	31.5	△0.7	4.6
	여유자금운용	273.4	313.5	305.2	299.6	△5.6	26.2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 유형별로 수입·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298조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조 2,468억원 증가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 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519조 8,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 2,719억원 증가하였음.

또한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31조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1억원 증가하였고,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규모는 159조 4,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6,885억원 증가하였음.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가 38조 7,394억원 초과된 반면, 계정성기금은 34조 7,977억원, 금융성기금은 2조 3,562억원, 사업성기금은 23조 4,152억원 각각 미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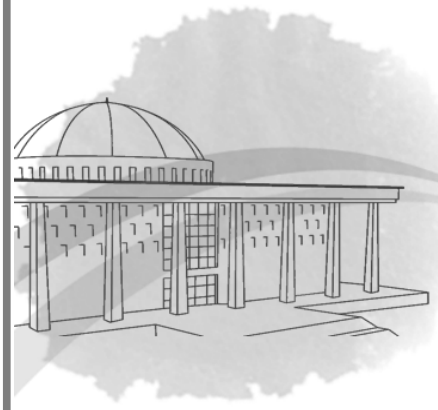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실적 (A)	2024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수정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8,897,582	10,232,932	10,303,614	10,085,316	△218,299	1,187,734
■ 사회보험성기금(6개)	2,688,556	2,592,394	2,593,631	2,981,025	387,394	292,468
■ 계정성기금(5개)	4,405,447	5,485,652	5,546,144	5,198,166	△347,977	792,719
■ 금융성기금(8개)	306,274	326,108	335,498	311,935	△23,562	5,661
■ 사업성기금(49개)	1,497,304	1,828,779	1,828,342	1,594,189	△234,152	96,885

자료: 기획재정부

Ⅱ. 2024회계연도 결산 총평



1. 2024년 재정운용 개요

2024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공급망 안정성 위험, 국제 분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2024년은 민생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였음.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① 약자복지 강화, ② 미래준비 투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을 4대 중점투자 분야로 설정하였음.

동시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병행하면서, 중점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였다고 밝힘.

그 결과 2024년도 예산안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국가채무 증가 폭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61.8조원 수준으로 축소하였음. 아울러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 말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목표도 함께 제시하였음.

따라서 2024년도 결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 보호 및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2024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가. 경제성장 관점

2024년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실질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내수 침체가 정부의 인식보다 더욱 심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세계 교역의 확대 등으로 코로나19의 여파를 회복함에 따라 당초 IMF 전망치(2.9%)를 상회하는 3.3%를 기록하였음.

우리 정부도 2024년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과 반도체·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7월에는 수출 회복세를 반영하여 2.6%로 상향 조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실질경제성장률은 2.0%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민간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내수 관련 주요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였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 전망이었으나 실제로는 1.1% 증가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 전망이었으나 실제로는 3.3%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전망치(23만명)보다 7만명 적은 16만명에 그쳤음.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를 0.3%p 하회하며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2024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 대비 실적]

구분	2024년도 전망치(목표치)		2024년도 실적치(B)	차이(B-A)
	당초('24.1)	수정('24.7)(A)		
○ 실질GDP 성장률(%)	2.2	2.6	2.0	△0.6
- 민간소비(%)	1.8	1.8	1.1	△0.7
- 설비투자(%)	3.0	2.0	1.7	△0.3
- 건설투자(%)	△1.2	△1.2	△3.3	△2.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2.5	1.2	△1.3
○ 소비자물가(%)	2.6	2.6	2.3	△0.3
○ 경상수지(억달러)	500	630	990	360
- 수출(통관, 전년비 %)	8.5	9.0	8.2	△0.8
- 수입(통관, 전년비 %)	4.0	2.0	△1.6	3.6
○ 취업자 증감(만명)	23	23	16	△7
○ 고용률(15~64세, %)	62.8	62.8	62.7	△0.1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1.4.),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7.3.)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2020년과 2024년을 제외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순수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순수출에 의존하였음.

[2015~2024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2.9	3.2	3.4	3.2	2.3	△0.7	4.6	2.7	1.6	2
내수	3.8	4.0	5.0	2.3	1.7	△1.2	4.1	2.7	1.4	0.2
순수출	△0.8	△0.9	△1.6	0.9	0.6	0.5	0.6	0.0	0.2	1.8

주 1)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을, 내수와 순수출은 각각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의미
2) 단수조정에 따라 내수와 순수출의 합계가 경제성장률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2022년 △0.3%, 2023년 △1.3%, 2024년 △2.1%로 3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2022년 1분기 2.6% 이후 11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음. 건설투자 역시 2022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2024년 1분기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나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6.2%, △6.4% 감소하며 연간 △3.3%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건설기성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2022년~2024년 연도별 분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추이]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0.3	△1.3	△2.1	2.6	△0.2	△0.9	△2.3	△1.4	△0.4	△2.6	△1.2	△1.6	△3.1	△1.5	△2.2

주) 연도는 전기비, 분기는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2년~2024년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불변지수) 추이]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1	2	3	4	연간
건설투자	△3.5	△0.5	1.6	△1.2	△6.2	△6.4	△3.3
건설기성(불변)	2.6	7.8	4.0	△3.1	△9.1	△9.7	△4.7

주) 연도는 전기비, 분기는 전년동기비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25.07.)

과거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2023년과 2024년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아 과거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는 매년 0.5%p 이상의 기여도를 유지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낮을 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

특히 2019년에는 정부 기여도가 1.5%p로 민간(0.8%p)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2020년에도 정부 기여도 1.0%p로 민간의 △1.8%p 역성장을 보완하였음. 그러나 2022년 이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5%p 수준으로 정체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성장기여도 하락이 실질 경제성장률 둔화로 직결되는 양상이 이어졌음.

[2015~2024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2.9	3.2	3.4	3.2	2.3	△0.7	4.6	2.7	1.6	2
민간	2.2	2.3	2.8	2.4	0.8	△1.8	4	2.3	1	1.5
정부	0.8	0.9	0.7	0.8	1.5	1.0	0.7	0.5	0.5	0.5

주 1)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을, 민간과 정부는 각각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의미
2) 단수조정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합계가 경제성장률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최근 10년간의 총지출을 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던 2019년(1.5%p)과 2020년(1.0%p)에는 총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7%, 13.4% 증가했으나, 2021년(9.3%), 2022년(13.5%)은 총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여도는 0.7%p, 0.5%p에 그쳤음. 이는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 성장기여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정부는 최근 성장기여도 하락의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2015~2024년 총지출변동 현황(결산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조원)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38.0
전년대비 증감률(%)	6.9	3.5	5.6	6.8	11.7	13.4	9.3	13.5	△10.6	4.4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한편 정부는 2024년 상반기 민생경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과 같이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서는 경기변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향후 경기변동 전망에 따라 재정의 신속집행 제도의 시행 여부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1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중앙부처 예산의 65.0%(163.3조 원)를 포함한 총 350.4조원을 신속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이 중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약 110조원의 예산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음.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연간 계획(A)	상반기 계획	
		금액(B)	집행률(B/A)
합 계	560.9	350.4	-
중앙재정	251.2	163.3	65.0
지방재정	283.6	170.2	60.0
지방교육재정	26.1	17.0	65.0

주)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잠정 추계규모로, 2023년 이월 등 반영한 최종규모는 추후 확정되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2024.1.16.)

[2024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중 중점관리대상 및 규모]

(단위: 조원)

중점 관리대상 분야	세부내역	관리대상 금액	신속집행 목표
약자복지	노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원 등	70	상반기 중 65%
일자리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등	14.9	상반기 중 67%
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24.2	상반기 중 65%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2024.1.16.)을 재작성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신속집행[1]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추진해 왔으며, 연초에 상반기 중 신속집행 목표 및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해 신속집행 제도가 실제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재정의 집행률과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2]가 있으므로, 재정의 신속집행이 실제 경기변동 대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2020년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21년부터 신속집행으로 제도명을 변경함.

2)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2025.2.) 연구용역에 따르면, 집행률 1%p 상승할 때 당기 GDP 성장률이 0.272%p 상승하는 유의미한 단기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시차 효과를 통해 신속집행에 따른 상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 승수효과는 불확실함.

다만 이에 따르면 당해년도의 경기흐름이 상저하고로 예상될 때에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이 경기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3] 반대로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서는 정부의 신속집행이 경기변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4]

2023년 11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은 상반기 2.2%, 하반기 2.0%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었고,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8%, 하반기 1.3%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더욱 크게 상고하저의 경기변동을 보였음.

[2024년 상·하반기 예상 및 실제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구 분	예상			실제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성장률	2.2	2.0	2.1	2.8	1.3	2.0

주) 예상 GDP성장률은 2023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11.) 및 「경제전망보고서」(2025.2.)를 재작성

2024년 정부는 상고하저의 경기변동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민생경제 어려움의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신속집행이 하반기에 더욱 급격하게 경기를 변동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에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세수결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신속 집행과 더해져 정부가 하반기 경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는 바[5], 정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하에서 재정의 신속집행을 실시하는 것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를 관행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전망에 따라 2024년과 같이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도의 실시 여부 및 목표 설정 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2023년의 경우 정부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을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을 밝힘.

4) 상기 연구용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재정의 신속집행은 “상저하고” 형태의 경기변동에서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이라고 하고 있음.

5) 상기 연구용역에서도 연간 집행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속집행 추진 시 하반기 집행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나. 고용지표 관점

코로나19 이후 주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고용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구직수요에 비해 충분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명 증가한 2,857만 6,000명으로, 당초 전망치인 23만명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점은 긍정적임.

고용률도 전망치보다는 0.1%p 낮으나 전년 대비 0.1%p 증가한 62.7%를 기록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69.5%을 기록하였음.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2.8%이며, 실업자의 경우 60세 이상 실업자가 전년대비 3만 3,000명 증가한 영향 등으로 2023년 대비 3만 6,000명 증가한 82만 3,000명임.

다만, 2022년에 전년 대비 취업자 수 8만 6,000명 증가 및 고용률 1.6%p가 증가한 이후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명,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5세 이상 인구	44,785	45,080	45,260	45,407	45,570
경제활동인구	28,012	28,310	28,922	29,203	29,399
취업자수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전년 대비 증감	△218	369	816	327	160
실업자수	1,108	1,037	833	787	823
비경제활동인구	16,773	16,770	16,339	16,204	16,172
경제활동참가율	62.5	62.8	63.9	64.3	64.5
고용률	60.1	60.5	62.1	62.6	62.7
전년 대비 증감	△0.8	0.4	1.6	0.5	0.1
15~64세 고용률	65.9	66.5	68.5	69.2	69.5
실업률	4.0	3.7	2.9	2.7	2.8
전년 대비 증감	0.2	△0.3	△0.8	△0.2	0.1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구인배수[6]는 2022년 0.67배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4년에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인 0.50배까지 하락하였는데, 구직건수와 구인건수가 동반하락하면서 구직건수 하락폭보다 구인건수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함. 따라서 정부는 고용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고용센터 구인/구직 및 구인배수 현황]

(단위: 명,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구인(A)	1,301,666	1,969,018	2,406,790	2,080,561	1,650,021
구직(B)	3,297,437	3,913,395	3,576,476	3,609,577	3,318,305
구인배수(A/B)	0.39	0.50	0.67	0.58	0.50

자료: 지표누리,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자료를 재작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취업자 중 60세 이상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령계층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15세~29세, 30세~39세, 40~49세가 모두 202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만 2020년 18.9%에서 2024년 22.7%로 상승하였음.

[2020~2024년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취업자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15세~29세	3,763	3,877	3,996	3,899	3,755
비중	14.0	14.2	14.2	13.7	13.1
30~39세	5,364	5,257	5,303	5,357	5,447
비중	19.9	19.3	18.9	18.9	19.1
40~49세	6,346	6,311	6,314	6,260	6,179
비중	23.6	23.1	22.5	22.0	21.6
50~59세	6,356	6,422	6,618	6,678	6,705
비중	23.6	23.5	23.6	23.5	23.5
60세 이상	5,076	5,406	5,858	6,223	6,489
비중	18.9	19.8	20.9	21.9	22.7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구인배수 :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또한 시간제 근로자[7]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30.8%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도 2024년 67.6%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37.7시간으로 감소하였음.

[2020~2024년 전일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시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취업자수(A)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전일제 근로자(주 36시간 이상)	20,112	20,078	19,578	21,195	19,319
비중	74.8	73.6	69.7	74.6	67.6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5,956	6,706	8,028	6,795	8,810
비중	22.1	24.6	28.6	23.9	30.8
일시휴직	837	490	483	426	446
비중	3.1	1.8	1.7	1.5	1.6
주당 평균 취업시간(B)	39.0	38.9	38.3	38.9	37.7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전체 취업자수 및 고용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취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는 반면 질적으로는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실시한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와 달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며,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가사・육아・학업・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비경제활동인구 중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원인이 해소되면 향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쉬었음 인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할 동기부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7)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구직의사가 없어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자보다도 더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실업률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아[8]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음.

2024년의 경우 전체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11만 7,000명(5.0%)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 해당하는 15~29세 및 30~39세 ‘쉬었음’ 인구가 전체보다 더욱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특히 30~39세 ‘쉬었음’ 인구는 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0.8%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

[2022~2024년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단위: 천명, %, 전년대비)

	2022			2023			2024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15~29세	390	17.1	△29	401	17.0	11	421	17.1	21	5.2
15~19세	28	1.2	3	29	1.3	2	33	1.3	3	10.9
20~29세	362	15.9	△31	371	15.8	9	389	15.8	18	4.7
30~39세	260	11.4	△22	273	11.6	13	302	12.2	29	10.8
40~49세	263	11.6	△11	265	11.3	1	277	11.2	12	4.5
50~59세	386	16.9	△29	376	16.0	△10	390	15.8	14	3.6
60세 이상	978	43.0	△30	1,037	44.1	59	1,077	43.7	41	3.9
70세 이상	-	-	-	176	7.5	-	174	7.0	△2	△1.1
전체	2,277	100.0	△121	2,351	100.0	74	2,467	100.0	117	5.0

자료: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청년층에서 아예 구직의사를 상실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9]

정부는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통해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재학→재직→구직)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2024년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실업률 통계는 구직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시장에 아예 진입할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9) 2025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의 쉰 주된 이유는 ① 구직 의욕 부족(38.1%), ② 교육 및 자기계발(35.0%), ③ 재충전 필요성(27.7%), ④ 심리적인 문제(25.0%) 순으로 나타났음.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주요 내용]

구분	대응
재학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 : ①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②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③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
재직	노동시장 이탈 방지: ① 신입사원 직장적응 지원, ②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지원
구직	특화 프로그램 집중관리: ① 구직단념 예방, ② 구직의욕 고취, ③ 특화 일경험・경력재설계 지원
취약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장애・질병청년, 학교밖청소년 특성별 지원 및 고용서비스 연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2023.11.)

3. 연례적 세수 오차 발생 및 대응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결산 오차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의 국세수입 오차(201.1조원)가 최근 10년간의 전체 오차규모 280.4조원의 71.7%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세수오차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61.4조원의 초과세수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023년 △56.4조원, 2022년 52.6조원, 2024년 △30.8조원 순임.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021년 21.7%, 다음으로는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순임.

2025년도에도 세수오차에 따라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정부는 제2회 추경에서 10.3조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실시하였음.

[2015~2024년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B)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337.7
결산(C)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이	본예산 대비 (C-A)	△3.3	19.6	23.1	25.4	△1.3	△6.5	61.3	52.6	△56.4	△30.8
	추경 대비 (C-B)	2.2	9.8	14.3	25.4	△1.3	5.8	29.8	△0.7	2.7	△1.2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추경 대비 [(C-B)/B]	1.0	4.2	5.7	9.5	△0.5	2.1	9.5	△0.2	0.8	△0.4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결산 결과 세수결손 규모는 30.8조원(일반회계 29.9조원, 특별회계 0.8조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일반회계 29.9조원에 대해 30.4조원[10] 규모의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하였고, 특별회계 0.8조원[11]은 자연불용으로 대응하였음.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초과 수납된 세외수입 0.7조원, 기금·특별회계 등 가용재원 17.0조원, 지방교부세(금) 배정유보 6.5조원 및 통상적 불용 6.1조원이 활용되었음.

10) 세계잉여금 4,458억원 포함

11) 특별회계 국세 부족(주세·농특세, △0.8조원)은 「세입 범위 내 세출」 원칙 하에 운영되는 특별회계 특성 등 고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불용으로 대응

[2024년도 세수결손 대응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既 발표안[주]	실적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등	-	0.7
2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0~16.0	17.0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4.0 내외	4.0
ㅇ 외국환평형기금	4.0~6.0	4.0
ㅇ 주택도시기금	2.0~3.0	3.2
ㅇ 국유재산관리기금	0.3 내외	0.3
ㅇ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	1.0
ㅇ 산업재해예방기금	-	1.6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	1.1
ㅇ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	1.8
3 지방교부세·금 배정 유보	6.5	6.5
4 재정사업 불용(일반회계)	7.0~9.0	6.1

주) 세수 재추계는 2024년 9월,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대응방안은 2024년 10월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총수입 기준 2024회계연도 국세외수입 수납실적은 257.8조원으로 전년 대비 28.2조원(12.3%) 증가하였고, 예산 대비로는 12.9조원(5.3%) 증가하였음. 이 중 예산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3.6%), 예산 대비 1.4조원(5.0%) 각각 증가하였고, 기금수입은 228.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27.1조원(13.5%), 예산 대비 11.5조원(5.3%) 각각 초과 수납되었음.

[2024년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23			2024			
	예산 (A)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전년대비 (D-B)
국세외수입	225.2	229.6	4.4	244.9	257.8	12.9	28.2
- 예산수입	25.0	28.5	3.5	28.2	29.6	1.4	1.1
- 기금수입	200.3	201.1	0.8	216.7	228.2	11.5	27.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가.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국세수입: 세수추계모형 고도화 등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2년 연속 상당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정부의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정부는 기존의 추계모형을 현실에 맞게 고도화하고, 예기치 못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 시 세입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해연도 세수재추계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재검토 등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실질성장률을 2.4%, 민간소비증가율을 2.2%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2024년 실질성장률은 2.0%(△0.4%p), 민간소비증가율은 1.1%(△1.1%p)를 기록하는 등 정부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영업실적·부동산거래량 및 수입 규모 등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세·양도소득세 및 관세 등의 세수결손을 유발할 수 있음.

[2024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및 실제 통계 비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4년 전망 (A)	2024년 실제 통계 (B)	차이(B-A)
경상성장률(%)	4.9	6.2	+1.3%p
실질성장률(%)	2.4	2.0	△0.4%p
GDP 디플레이터(%)	2.5	4.1	+1.6%p
민간소비증가율(%)	2.2	1.1	△1.1%p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3	-
취업자증감(만명)	18	16	△2.0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1년도 세수추계 오차 발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계모형 개선·전문가 참여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포함한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수입 오차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세수추계모형을 현실에 맞게 고도화하고, 예기치 못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 시 세입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당해연도 세수재추계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재검토를 제도화하는 등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외수입: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2024년도 국세외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오차를 절대값으로 계산할 경우 오차규모는 38.8조원, 오차율은 22.8%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시 전년과 같은 금액 또는 최근 3년 평균값 등 기계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국세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기여금(7관),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31관) 및 정부내부수입(40관)을 제외한 국세외수입 예산규모는 2021년 140.9조원에서 2024년 169.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크게 나타나 양(+)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

수납액에서 예산액을 차감한 오차는 각 수입목별 과다수납(+)과 과소수납((-)이 상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절대값 기준으로 오차를 계산할 경우 2021년에는 43.4조원(30.8%)으로 증가하며, 2024년의 경우 오차규모는 38.8조원으로 증가하고 오차율도 22.8%로 크게 증가하게 됨.

[2021~2024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오차를 절댓값으로 계산 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A)	140,881,945	152,183,177	151,781,684	169,880,366
수납액(B)	168,637,314	164,589,344	166,364,497	185,671,678
오차(B-A)	43,446,886	35,714,749	39,710,563	38,798,330
오차율(C/A)	30.8	23.5	26.2	2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납액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거나 최근 3년간 수납액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추계가 아닌 기계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조세지출 정비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및 2025년 세수부족 전망에 따른 세입경정 실시 등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12]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13]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2023~2025년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14]

[2018~2025년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8실적	2019실적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잠정	2025전망
국세감면액	439,533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액	2,935,704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43,847	4,122,410
국세감면율	13.0	13.9	14.8	13.5	13.0	15.8	16.3	15.9
법정상한	14.0	13.3	13.6	14.3	14.6	14.3	14.6	15.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 대비 2024년 조세지출 증가율은 62.5%에 이르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24.1%에 그쳐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0%에서 2024년 16.3%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5]

12)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14)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2021~202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도출되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2024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확정치도 8월에 도출될 예정임.

15) 예컨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새로운 조세지출의 신설 및 기존 조세지출의 연장을 제한하거나, 부처별 일정비율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음.

다. 세수결손 대응방안 검토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처리에 대해 유의 필요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도에 지방교부세(2.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4.3조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해당 부족액을 ㉠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활용(14~16조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6.5조원), ㉢ 통상적 불용(7~9조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지방교부세 2.2조원(예산 대비 3.3%)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조원(예산 대비 6.2%)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음.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도에도 세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8.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즉 현행법은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 교부세 또는 교부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내국세·교육세 등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다음연도 또는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거나, ㉡ 당해연도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교부세 및 교부금을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미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정부가 미교부할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어 보이므로, 향후 정부는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외국환평형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활용 자제 필요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세수결손 대응을 목적으로 동 기금을 활용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 대응방안 중 하나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4~6조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4조원 축소하였음. 그러나 국세수입 결손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원활한 외국환거래 지원이라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교부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세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고, 외환당국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4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분석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안정·경제활력·국민안전·미래대비라는 목표 하에 4대 중점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2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였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위해 생계급여 인상, 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 백만 노인일자리 구축, 소상공인·다문화 가족·청년 지원 등을 강화하고,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준비'를 위해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 고도화,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노동시장 상생협력 등을 추진하며,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서비스 분야 투자 제고, K-콘텐츠 제작·수출지원 확대, 농어촌 직불금 3조원 시대 등을 지원하며,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ODA 확대,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수해복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려 하였음.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및 20대 핵심과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지원 ■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도 예산안」, 2023.8.

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정부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기조로 최중증 장애인·저신용 소상공인·채무 취약계층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제도 간 중복, 수요자 관점에서의 제도 설계 미흡, 현장 수용성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으로 인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였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역시 정책자금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낮아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또한 새출발기금의 계획 대비 저조한 채권매입 실적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은 시험장 선점 문제와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함.

(1) 유사중복으로 인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집행 부진(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과 기능 및 대상에서 일부 중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사업의 예산액은 총 722억 3,900만원이나, 지자체 단계의 실집행액은 191억 4,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6.5%에 불과하며, 지원인원도 계획된 지원인원 2,340명 중 1,390명에 대해서만 지원(지원률 59.4%)이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024~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예산집행					지원인원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획 (a)	실적 (b)	지원율 (b/a)
2024	24시간 개별 1:1	17,563	17,563	8,305	-	47.3	340	214	62.9
	주간 개별 1:1	14,192	14,192	6,277	-	44.2	500	360	72
	주간 그룹 1:1	40,484	35,552	4,566	-	11.3	1,500	816	54.4
	합 계	72,239	67,307	19,148	-	26.5	2,340	1,390	59.4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예산집행					지원인원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획 (a)	실적 (b)	지원율 (b/a)
2025 (5.31 기준)	24시간 개별 1:1	25,051	14,613	5,643	-	22.2	340	256	75.3
	주간 개별 1:1	17,482	10,198	4,855	-	27.3	500	396	79.2
	주간 그룹 1:1	41,671	24,302	6,377	-	14.5	1,500	1,061	70.7
	합 계	84,204	49,113	16,875	-	20.0	2,340	1,713	73.2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환경 적응 곤란 및 높은 돌봄 난이도에 따른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기능 및 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인 집중지원 대상이 되거나 우선 선정 대상으로 이미 고려되고 있고, 전체 지원 인원의 20%를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사업이 기존 사업과 기능적 중복성을 보이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됨에 따라 서비스 신청 유인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목표 대비 지원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시 신속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나이스 신용평가점수(NCB) 91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리 7% 이상의 대출 또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이 안되는 대출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5%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지원하는 사업임.[16)]

16) 관계부처 합동,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2024.1.17.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요]

○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 (대상)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한도) 동일기업(개인·법인) 당 5,000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000만원 이내 한도 적용) ○ (금리) 연 4.5% 고정금리 ○ (기간) 운전자금 10년(거치기간 없음) ○ (방식) 은행권 대리대출(15개 은행) ○ (계획 및 실적) 2024년 목표: 5,000억원 / 실적: 2,491억원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나 당초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15개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대환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년 동안 2,491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음.

(3) 새출발기금의 계획 대비 채권 매입실적 저조(금융위원회)

2024년 새출발기금의 계획 대비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의 원리금 감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상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실적은 4조 2,303억원으로, 당초 계획액(2022.10. 기준) 9조원의 47.0%이고 변경된 계획액(2024.9. 기준)의 56.0%에 불과함. 2024년 채권매입가액은 1조 9,204억원, 채권매입가율은 45.4%로, 예상매입가율 40.7%를 상회하였음.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2개월 동안 채권매입액 누적 실적은 9조 8,021억원으로 변경된 계획액 33조 4,000억원의 29.3%에 그침.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33조 4,000억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진도비가 29.3%에 머물고 있음.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4년 실적의 3배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말까지 19개월 간 총 23조 5,979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채권매입 필요액은 1조 2,420억원 이상으로, 2024년 월평균 채권매입실적 3,525억원의 3배를 넘는 규모임.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5.	2025	2026 (예상)	합 계
채무 조정 계획	당초 (30조원)	60,000	90,000	90,000	60,000	60,000	-	300,000
	변경 (40조원)	217	20,696	94,200	144,300	144,300	141,300	400,713
	매입규모	2,952	26,145	75,603	115,850	115,850	113,450	334,000
채권매입액 실적		2,952	26,145	42,303	26,621	-	-	98,021
채권매입가액 실적		863	11,309	19,204	11,953	-	-	43,329

주) 채무조정계획은 2025년 말 예상치이고,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 실적은 2025년 5월말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4) 제도 설계 미흡으로 인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집행 부진 (고용노동부)

응시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험장 선점을 위해 응시료 지원을 선택하지 않고 접수를 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원절차를 설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예측과는 달리 지자체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고용노동부는 청년(만 34세 이하)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회까지는 응시료의 50%를 감면해주는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242억 1,000만원 중 약 153억원(목표 대비 63.2%)만 지원이 이루어짐.

이러한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및 시험장을 선택한 후 결제 단계에서 응시료 지원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을 구현하였으나, 시험장 선점 등을 위해 최단시간 내에 원서접수를 종료하고자 하는 수험자의 특성상 응시료 지원에 대한 확인과 지원여부 선택을 건너뛰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들 간 수수료 지원 경험이 전파·확산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음.[17]

17) 2025년의 경우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응시료 지원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응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설계한 결과 집행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음.

처음부터 빠른시간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는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응시료 지원 절차를 설계했을 경우 적기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유사사업 추진 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원절차를 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서 응시료 지원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복지원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2023년 99개・2024년 129개・2025년 135개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사업 이후 지자체가 응시료 지원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준비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준비’를 위해 창의·혁신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화하며,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 노동시장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일부 핵심 사업들은 제도적 미비나 사업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반복된 일정 지연으로 인해 2025년 하반기에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적정성 검토조차 마치기 전에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초래하였음.

또한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에서는 융자금 사용용도의 정책 목적 부합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아이돌봄 사업 역시 인력 확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집행되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보육 공백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사업절차 지연으로 인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추진 지연 (우주항공청)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2024년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사업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4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연기되었음.

동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6,161억원 규모로 기획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3년 8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2024년도 중점투자 분야로서 관련 예산 100억원이 편성됨.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시행 주체 선정 등의 사전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4년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2024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액 중 연구기관의 최종 집행액은 9억 500만원에 불과함.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아 중점투자하려 한 사업이 적기에 착수되지 못하고 2025년까지 지연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우주분야 시설 구축을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시설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총사업비 조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예산이 반영된 이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집행이 발생하였음.

동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으로 49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1조 9,314억원에서 7,686억원 감소한 1조 1,628억원(사업기간 9년)으로 변경되었음.

이로 인해 2024년도에 편성된 495억원의 예산 중 57.6%만이 집행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데, 이는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함에 따라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에 해당함.

이와 같이 적정성 검토 전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해당연도 사업 수행 중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규모가 변경되어 매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과제수 및 예산액 조정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당초 계획(2024~2033)		적정성 검토 결과(2024~2032)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임무 1~4	48	8,640	40	7,200
임무 5	16	8,000	10	1,800
기반 1(신속지원)	10	500	-	-
기반 2(국제협력)	-	363	-	13.5
운영비(기획평가비)	-	1,331	-	904.7

자료: 보건복지부

(3) 융자금 집행의 목적 부합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대상 기업의 융자금 사용 용도가 원전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원전 기자재 기업 육성을 위하여 원전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일감 수주실적 개선 및 향후 성장 가능성 확대를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대출금 대환을 목적으로 지원받거나,[18] ② 동일기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가 나타났음.[19]

이는 지원대상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받은 기업들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융자금을 사용하였는지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미흡한 사업준비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여성가족부)

2024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미흡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봄수당 집행실적은 2023년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교부현액 3,841억 1,700만원 중 2,752억 1,200만원이 실집행 되어 실집행률이 71.7%에 그쳤음.

동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공급 부족에 따른 것임. 정부는 동 서비스의 대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4년 동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6.3%(1,023억 4,800만원) 증액시켰으나, 동 서

18) A기업은 안정적인 회사운영 및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8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B기업은 경영안정 및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9억원을 지원받았음. 또한 C기업은 기업경영활동을 위해 2억 4,3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D기업과 E기업은 기업에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원을 받았음.

19)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은 총 13개 기업임.

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충원 실적이 계획 대비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024년 아이돌보미 목표인원은 35,000명으로 이는 전년 목표보다 6,000명, 전년 실제 인원보다 6,929명 증원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인원은 29,635명으로 증원된 인력은 1,564명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음.

이와 같이 미흡한 증원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서비스 대기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아이돌봄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가구, 일, 명)

연도	집행 현황				서비스 대기 현황		아이돌보미 현황		
	예산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대기 가구 수	대기일수	목표인원	실제인원	충원률
2020	173,342	177,685	173,852	97.8	2,606	8.3	34,000	24,469	72.0
2021	180,158	184,338	182,451	99.0	6,809	19.0	30,000	25,917	86.4
2022	202,031	204,912	195,935	95.6	14,745	27.8	33,000	26,675	80.8
2023	281,874	281,874	231,883	82.3	13,031	33.0	29,000	28,071	96.8
2024	384,222	384,117	275,212	71.7	9,519	32.8	35,000	29,635	84.7

자료: 여성가족부

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수출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민간 중심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재정 사업에서 추진 지연, 예산 유보,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본래의 정책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콘텐츠 전략펀드는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2024년도 출자 자금이 민간에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또한 투자기간 내 자펀드 결성이 지체되면서 대규모 재정이 사실상 유휴 자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임.

또한 수출바우처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 지연과 사업기간 혼선으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고 일부 서비스 수행기관은 실적이 전무하여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고령농 지원 사업 역시 수요 예측 미흡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실제 수요자(고령농)의 영농 지속의사에 대한 정밀한 사전 조사가 병행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발생하였음.

(1)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는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펀드 결성 이후 실제 민간 투자처가 충분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여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5년간 정부 출자 1,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9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음.

이를 위해 1차년도인 2024년에는 정부 출자 8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원)과 민간 출자 1,200억원으로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자펀드 조성 단계에서 4,000억원 규모의 민간 출자를 모집하여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민간 참여기관들과의 출자 여부 및 규모, 참여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모펀드 조성이 지연되었고, 민간 출자 규모 또한 목표의 절반 수준인 600억원만 모집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감소한 1,4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다음과 같이 조성되었으며 자펀드 조성 목표를 당초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하였음.

[2024년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모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펀드 결성일	결성총액(A)	출자자 구성		
			기관명	약정금액(B)	약정비율(B/A)
재정 펀드	2024.11.28.	800	문화체육관광부	450	56.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	43.75
비재정 펀드	2025.3.31.	600	㈜씨제이이엔엠	200	33.33
			메가박스중앙㈜	30	5.00
			에스엘엘중앙㈜	70	11.67
			중소기업은행	100	16.67
			한국방송공사	100	16.67
			한국산업은행	100	16.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실상 2025년 3월말 모펀드 조성이 완료되면서 2025년 6월 현재 자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자펀드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데,[20] 정부는 펀드 결성 이후 실제 민간 투자처가 충분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저조한 서비스 공급실적 등으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과정의 지연 및 사용기간·사업기간의 혼선 등으로 인해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이 지연되었고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서비스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대비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공고일이 늦고 참여기업 신청 접수 후 선정기간이 길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 역시 늦은 것으로 나타남.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을 선정일 이전 1~2달까지

20) 2025년 2월부터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였는데, 블라인드 펀드는 4~6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후 자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 프로젝트 펀드는 수시모집을 진행하는 중이며 8월 기준 자펀드 운용사 1개가 선정되었음.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 및 국고보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수출 관련서비스에 대해 전액 자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선정공고 전 바우처 사용을 꺼리게 될 수 있음.

나아가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수출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기간을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인지하여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후 실제 사업비 정산까지 3~4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21)]

한편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2,770개사 중 1,540개사(55.6%)는 2024년 1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그 중 775개사(28.0%)는 2022~2024년 3년간 서비스 제공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수행기관 등록 후 서비스 수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조속한 자펀드 결성이 필요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모펀드 투자기간(2년) 내에 조속히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펀드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매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1,000억원 출자되는 구조인데,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자펀드가 결성된 것은 ‘묘도 LNG터미널’ 프로젝트 1개이고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협의 지연 및 위탁운용사 재선정 등의 사유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음.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에 의한 출자(예정) 지역개발 프로젝트 현황]

(단위: 억원)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사업비			위탁운용사 최종선정일	자펀드 결성 시한	현황
	총사업비	모펀드	지방소멸 대응기금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680	68	23	24.11.27.	25.9.29. **(2회 연장)**	협의 중

21) 2022~2023년도 사업의 경우 각각 이듬해 9월 중순, 8월 하순에야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2024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 7월 말 현재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단위: 억원)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사업비			위탁운용사 최종선정일	자펀드 결성 시한	현황
	총사업비	모펀드	지방소멸 대응기금			
(경북 구미)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876	39	13	25.1.24.	25.11.24. **(2회 연장)**	협의 중
(전남 여수) 묘도 LNG터미널	14,362	1,436	479	24.9.2.	25.4.2. **(1회 연장)**	자펀드결성 (25.2.28.)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7,716	772	257	24.11.27.	25.9.29. **(2회 연장)**	협의 중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1,300	130	43	-	-	위탁운용사 재선정 중
합계	23,634	2,315	772			

주) 2025.6.30.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결성시한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나, 결성시한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 결과적으로 위탁운용사가 선정된 4개 프로젝트 모두에서 최초 결성시한(4개월)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에도 최대 10개월까지 자펀드 결성이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자펀드 결성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운용사가 선정 취소되는 경우에도 자펀드 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및 농지연금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은퇴직불 및 은퇴직불형농지연금 사업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진하였으므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농 등의 영농유지 여부 의사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65-84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매도 또는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24년 예산액 126억원 중 20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6.6%) 되었음.

그리고 은퇴직불형농지연금 사업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농지 자산 유동화 및 고령·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24년 예산액 226억 7,900만원 중 9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4.1%) 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사업 모두 2024년 신규로 시행되었고, 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목표를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공급량을 기준으로 3,000ha[22]로 설정하고, 이를 조기(2024년 4월)에 달성하려 하였다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2024년도 농지이양은퇴직불 및 은퇴직불형농지연금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

2024년 목표(3,000ha) 산출근거 : 16,900ha(2023~2027년 동안 신규 유입 청년농 16.9천명에게 1인당 1ha 농지 공급 가정 시 필요면적) ÷ 5년 = 3,380ha ≒ 3,000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농 등의 영농유지 여부 의사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편성이 필요함.

22) 최근 10년(2014년~2020년)간 체결한 평균 약정면적(1,203ha)과 비교하여 보면 2.5배로 과다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라.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정부는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 및 ODA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재난안전사업의 사전협의 없는 예산 편성 및 이연 집행, ODA 예산 증액으로 인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피해복구 재원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전용 또는 차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이연집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피해복구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ODA 예산이 2030년 목표치에 근접하는 등 당초 법정 계획을 초과하여 급격하게 증액한 것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일부 재난안전사업의 예산 편성 전 사전협의 미이행 등

119개 재난안전사업은 2023년에는 재난안전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부실,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향후 정부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부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데,[23] 2024년 확정예산 기준 436개 재난안전사업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119개(27.3% 비중)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재난안전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예산 1조 4,502억원(5.8% 비중)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이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비중	2024년 본예산	비중
전체		436	100.0	25,088,399	100.0
2024년 예산안 사전협의 대상		317	72.7	23,638,168	94.2
2024년 예산안 사전협의 대상 外		**119**	**27.3**	**1,450,231**	**5.8**
계속사업	합계	112	25.6	1,144,397	4.6
	전년(2023년) 대비 증액편성	49	11.2	601,145	2.4
	전년(2023년) 대비 유지 또는 감액편성	63	14.4	543,252	2.2
신규사업	-	7	1.6	305,834	1.2

주) 2024년 확정예산 기준(24.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사전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국토교통부의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사업은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안전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항목이 2020년 6개에서 2024년 11개로 오히려 증가하였고,[24] 산림청의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과다한 예산변경으로 편성과정에서 적절한 세목별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며,[25] 해양수산부의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은 사업계획 미흡으로 연간 50여억원의 국고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26]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차년도에 실시될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24)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사업 예산액: 2021년 6억 100만원, 2022년 12억 400만원, 2023년 13억 2,800만원, 2024년 15억 7,500만원

25)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서 이·전용 등 내역변경이 발생한 금액은 2021년 3억 6,000만원, 2022년 5억 2,900만원, 2023년 7억 8,100만원(증) 및 14억 5,100만원(감), 2024년 2억 4,100만원(증) 및 11억 4,100만원(감)임.

26)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당초 사업설계 시에는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활동을 수행하고 평상시에는 준설 작업 등 수익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건조 완료 후 2025년 4월까지 준설 시범사업 1건(2억 9,200만원)만 수행하였고 매년 100일 이상을 출동대기 상태로 운영 중이며, 연간 50여억원 이상인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을 차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연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연집행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등의 사용을 통해 재난피해를 적기에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피해복구 재원이 편성된 재난안전사업들 중 일부 사업은 2023년 발생한 피해복구 관련 비용을 예비비로 대응하지 않고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연 집행한 것임.

재난대책비(보조)·산림재해대책비 및 하천재해대책비 등 3개 사업은 2023년 피해복구비가 2024년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0.0%, 81.3%, 94.4% 수준으로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24년에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 시 본예산으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2023년 피해복구비 등이 2024년 이연집행된 사례]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4년 본예산 (A)	2023년 피해복구비 (B)	비중 (B/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2024년 예산현액	2024년 집행액
행안부	재난대책비 (보조)	600,040	540,283	90.0	-	53,723	653,763	653,763
농식품부	재해대책비	280,000	48,887	17.5	-	-	280,000	266,322
산림청	산림 재해대책비	100,000	81,326	81.3	1,297	39,799 △9,568	131,528	126,262
환경부	하천 재해대책비	250,000	235,896	94.4	-	-	250,000	229,744

자료: 관계 부처

이와 같이 전년도에 발생한 지출소요에 당해년도의 예산이 이연 집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고, 그 비중이 과도하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지출소요 대해서는 또다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 등의 예산변경 절차를 거쳐 부족액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전년도에 발생한 재난 피해를 이연 집행으로 복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당해연도 본예산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재난에 즉시 대응하고, 이를 넘어서는 대규모 피해 발생 시에는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당초 계획을 초과한 ODA 예산 증액의 적정성 여부

정부의 2024년도 ODA 예산은 당초 수립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030년 목표치로 제시한 수준에 도달하였는 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가정책의 기본계획과 달리 ODA 예산을 급격하게 증액한 것이 합리적인 재원배분인지 검토가 필요함.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밝혔으나, 2024년 ODA 예산액은 6조 2,629억원으로 2030년 목표치의 97.9%에 해당함.

최근 5년간 ODA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DA 예산은 전년 대비 4.9~9.6%까지 한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21.3%, 2024년 31.1%로 최근 2년간 ODA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2019~2024년 총 ODA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ODA 규모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전년도 대비 증감액(증감률)	1,521 (5.0)	2,267 (7.1)	3,273 (9.6)	1,840 (4.9)	8,388 (21.3)	14,858 (31.1)

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27)]

이를 대신해 정부가 2022년 9월 제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28)]에 명시된 ODA를 포함한 외교·통상부문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부터 5년간 연평균 6.3%를 증가시켜 2024년 5조 2,133억원을 거쳐, 2026년 5조 6,404억원 규모까지 외교·통상부문을 확대할 계획이었음.

27)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28) 2022년 6월 정부는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의결하였는바, 이후 제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계획은 새정부의 ODA 기조가 반영된 계획으로 볼 수 있음.

[2022~2026년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59,543	63,880	67,299	69,632	71,604	4.7
ㅇ 외교·통상부문	44,180	49,020	**52,133**	54,446	56,404	**6.3**
○ 통일부문	15,363	14,860	15,166	15,186	15,200	△0.3

자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에 따르면 2024년 ODA 예산 규모(6조 2,629억원)가 2022년 당시 계획된 2024년 외교·통상부문 전체 투자 규모보다 1조 496억원이나 증액된 것인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와 같은 ODA 예산의 급격한 증액이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재정정상화(지출구조조정) 관련 분석

정부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정건정성 악화와 사업의 성과 저하, 집행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정부는 ① R&D와 ② 보조금을 중점 정비 분야로 지정하면서, R&D는 관행적 R&D 지원에서 탈피해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이 필요하고, 보조금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힘.

구체적으로는 그간 R&D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의 난립 및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로 인해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효율적인 R&D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미래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하고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그리고 보조사업이 관행적 지원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 관리상 문제 등 누수요인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전체 보조사업의 점검을 통해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을 반영하고,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은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며, 부정수급·회계 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및 내역 공개 필요

정부는 2024년 예산 편성 시 실시한 지출구조조정의 대상 사업 및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아 구조조정이 지출효율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각 부처별로 실시한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사업 및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여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만 밝히고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지출효율화 노력은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사업 및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구조조정이 지출효율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지출구조조정의 세부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시내역을 보면, SOC 등 시설 구축사업과 ODA사업 등의 경우에는 총사업비나 전체 사업규모의 감축 없이 예산의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인해 추후 사업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실시한 지출구조조정의 효과를 판단하고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실시한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사업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나. 2024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 감액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15년 18.9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다가 2023년 31.1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 26.5조원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2025년에는 29.6조원으로 증액되었음. 2024년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R&D 예산은 21조 9,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감액되었고, 일반 R&D 예산은 4조 6,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감액되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18.9	19.1	19.5	19.7	20.5	24.2	27.4	29.8	31.1	26.5	29.6
전년대비 증감액	1.1	0.2	0.4	0.2	0.9	3.7	3.2	2.4	1.3	△4.5	3.1
전년대비 증가율	6.4	0.9	1.9	1.1	4.4	18.0	13.1	8.7	4.4	△14.6	
총지출 대비 비중	5.0	4.9	4.9	4.6	4.4	4.7	4.9	4.9	4.6	4.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2024년 주요 R&D 및 일반 R&D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증감률
예산 (비중)	주요 R&D	224,894 (82.1)	242,363 (81.4)	249,392 (80.2)	219,079 (82.6)	△30,313	△12.2
	일반 R&D	49,112 (17.9)	55,407 (18.6)	61,386 (19.8)	46,289 (17.4)	△15,097	△24.6
	계	274,005	297,770	310,778	265,369	△45,409	△14.6

주 1)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당초 2024년도 R&D 분야 정부예산안 규모는 25.9조원 규모였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6,217억원이 증액되어 26.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음.

이와 같은 R&D 예산 축소에 대해 정부는 2023년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 결과에 담은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에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해 3.4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대신,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힘.

(1)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 감액편성

정부는 2023년 3월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고 R&D 전체 예산 및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동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2030년에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

고, 이에 따른 정부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어려운 재정여건과 그간의 투자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면서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목표를 제시하였음.



동 전략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의 R&D 분야 예산 투자액은 32.0조원(예상 총지출 669.7조원 기준)을 예상하였으나, 정부는 불과 5개월 후인 2023년 8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결과에서 R&D 예산을 총지출의 3.9% 수준인 25.9조원으로 발표하고, 이를 정부안으로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았음.

그리고 정부는 R&D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의 이유를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그 성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년(4.7조원) 대비 6.3%를 증액한 5조원을 투자한 것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매년 10%씩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 바, 이는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밝힌 분야조차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R&D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법정계획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수개월 후에 변경하는 것은 관련 분야 참여자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연구 및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성과나 추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비효율 발생

일부 R&D 사업은 법령상 규정된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일방적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R&D 사업 예산 조정 시에는 관련 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R&D 사업은 그 특성상 다년간 단계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과 및 추진 경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및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단계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단계평가(제12조) 및 특별평가(제15조)등을 연구 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 및 국비 지원 규모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체평가(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특정평가(제8조)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정부가 R&D 예산을 감액 편성할 때는 이와 같은 평가절차나 연구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체결하는 연구개발협약서[29]를 근거로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R&D 사업을 달성가능성이나 중간성과에 대한 검토 없이 국비 조정 시 연구가 지연되거나 최종 성과가 축소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해질 수 있음.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에는 20억원, 2023년에는 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24년 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가 감액되었다가 2025년에 다시 17억 300만원으로 국비지원이 증액되었음.

우주항공청의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은 당초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26억원만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당 국비지원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결국 연구목표 중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일부는 추진 시기를 연기하였음.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표준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협약서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됨.

다. 2024년 보조사업 재정비 검토

정부가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집행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정비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은 교부대상에 따라 자치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됨.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145.8조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된 이후, 2023년 99.1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24년 105.3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최근 5년간 보조사업 결산의 연평균 증가율(△2.0%)은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1%)보다 낮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6.3%)은 정부 총지출(4.5%)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최근 5년간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정부 총지출	609.7	601.0	682.4	610.7	638.0	1.1	4.5
전체 보조사업	116.5	128.0	145.8	99.1	105.3	△2.0	6.3
자치단체보조사업	86.7	85.7	83.0	80.7	86.2	△0.1	6.8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	74.4	67.0	56.9	81.4	81.9	-	-
민간보조사업	29.8	42.3	62.9	18.4	19.1	△8.6	3.8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	25.6	33.0	43.1	18.6	18.1	-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관행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중복·집행부진·성과미흡·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전체 보조사업 점검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합리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음.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집행부진으로 인해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외부에서 지적된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거나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고, 부정수급·회계 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등의 보조사업 재정비를 실시하였음.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전수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가 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근거법령 미흡 또는 사업 수요 오예측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다수의 국고보조사업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미흡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출구조조정 규모, 대상 사업 및 예산 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의 점검 및 지출구조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1)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인 보조사업

보건복지부의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따른 종합적 심리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사업이나, 기존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고 2024년도 예산액 2억 100만원이 전액 이·전용 감액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은 국립예술단체가 보유한 공연을 권역별 대표 공연장과 매칭하여 전막 공연 형태로 유통할 수 있도록 공연 제작·유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대상 중 국립예술단체(8개)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2) 근거 법령 미흡 및 사업 수요 오예측에 따른 집행부진

국가유산청의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 제고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건립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국비 70%)으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2024년 예산액 1억원이 전액 불용되고 국고에 반납하게 되었음.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은 지역의 유적 정비 및 유적 간 연계, 향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 50%)사업이나, 「역사문화권정비법」 지원근거 미비로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9월 12일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17억 9,100만원 중 4억 5,5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25.4%로 나타남.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에 물품·배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배달료 지원을 위해 계상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억원 중 9억 6,000만원이 실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32.0%로 나타남. 이는 예산 편성당시 배달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외식업소(5,000개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 업소는 2,000개소에 불과하여 사업 수요를 과다 추계한 것에 기인함.

(3)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0]

그런데 2024년의 경우 총 46개 부처의 12,997개[31] 보조사업 중 1,958개 사업이 법령상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미준수하였고(기한 내 제출률 84.9%), 이 중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음.

---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내역사업 단위 기준으로 자치단체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수를 더한 수임(다만, 한 내역사업에 자치단체보조 예산과 민간보조 예산이 모두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

[2024년 부처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 %)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환경부	2,665	1,873	70.3	9	738	542	73.4	1
농림축산식품부	1,480	1,477	99.8	-	641	623	97.2	
보건복지부	1,223	1,156	94.5	-	505	464	91.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1,035	1,035	100	-
산업통상자원부	101	34	33.7	-	682	259	38	-
문화체육관광부	166	109	65.7	-	565	450	79.6	3
해양수산부	552	490	88.8	5	124	117	94.4	-
기획재정부	107	102	95.3	-	306	290	94.8	-
행정안전부	241	217	90	-	168	168	100	-
국토교통부	268	252	94	-	48	48	100	
질병관리청	47	47	100	-	75	75	100	-
산림청	83	81	97.6	-	38	38	100	-
중소벤처기업부	12	10	83.3	-	98	96	98	-
국가유산청	53	40	75.5	-	52	51	98.1	-
국가보훈부	18	18	100	-	85	84	98.8	-
방송통신위원회	-	-	-	-	96	96	1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28	100	-	64	64	100	-
교육부	12	12	100	-	72	72	100	-
통일부	5	5	100	-	72	71	98.6	-
여성가족부	51	50	98	-	14	14	100	-
금융위원회	-	-	-	-	61	61	100	-
고용노동부	26	24	92.3	-	32	27	84.4	-
국방부	1	1	100	-	46	46	100	-
농촌진흥청	44	44	100	-	2	2	100	-
법무부	3	3	100	-	27	27	100	-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2	85.7	-	12	12	100	-
재외동포청	-	-	-	-	19	12	63.2	-
공정거래위원회	16	16	100	-	1	1	100	-
특허청	-	-	-	-	16	16	100	-
국회	-	-	-	-	15	9	60	-
국가인권위원회	-	-	-	-	13	13	100	-
외교부	4	4	100	-	5	5	100	-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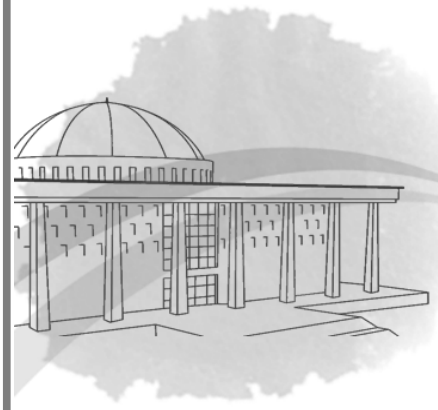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국세청	-	-	-	-	9	9	10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8	6	75	-	-	-	-	-
대법원	1	1	100	-	4	3	100	-
방위사업청	1	1	100	-	4	4	100	-
소방청	4	4	100	-	1	1	100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	-	5	5	100	-
국민권익위원회	-	-	-	-	4	4	100	-
경찰청	1	1	100	-	1	1	100	-
해양경찰청	-	-	-	-	2	2	1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1	50	-	-	-	-	-
새만금개발청	1	1	100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1	1	100	-
우주항공청	-	-	-	-	1	1	100	-
합 계	**7,238**	**6,120**	**2,890**	**14**	**5,759**	**4,919**	**3,970**	**5**

주) 부처 순서는 2024년 정산대상 보조사업 수 합계 순임
자료: 각 부처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이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부는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실적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관련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재정총괄 검토



1. 재정수입

가. 개 요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수입은 594.5조원으로, 예산(612.2조원) 대비 17.7조원(△2.9%) 감소하였고, 전년 결산(573.9조원) 대비 20.5조원(3.6%) 증가하였음.

국세수입은 336.5조원이 수납되어 예산(367.3조원) 대비 30.8조원(△8.4%)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전년 결산(344.1조원) 대비 7.5조원(△2.2%) 감소하였음.

국세외수입은 257.8조원으로 예산 대비 12.9조원(5.3%), 전년 결산 대비 28.2조원(12.3%) 각각 증가하였고, 국세외수입 중 예산수입은 29.6조원으로 예산 대비 1.4조원(5.0%), 전년 결산 대비 1.1조원(3.9%)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은 228.2조원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11.5조원(5.3%), 전년 결산 대비 27.1조원(13.5%) 각각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A)	결산 (B)	본예산 대비 (B-A)	예산(C)	결산 (D)	예산 대비 (D-C)	전년 대비 (D-B)
총수입	625.7	573.9	△51.8	612.2	594.5	△17.7	20.5
1. 국세수입	400.5	344.1	△56.4	367.3	336.5	△30.8	△7.5
2. 국세외수입	225.2	229.6	4.4	244.9	257.8	12.9	28.2
- 예산수입	25.0	28.5	3.5	28.2	29.6	1.4	1.1
- 기금수입	200.3	201.1	0.8	216.7	228.2	11.5	27.1
3. 세입세출외	-	0.3	0.3	-	0.1	0.1	△0.1

주) 세입세출외는 국고금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자료: 기획재정부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나. 국세수입

(1) 현황

2024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26.2조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4조원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9조원, 전년 결산 대비 7.8조원 각각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로는 0.8조원 감소한 반면, 전년 결산 대비로는 0.2조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A)	결산 (B)	본예산 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 대비 (D-C)	전년 대비 (D-B)
총국세	400.5	344.1	△56.4	367.3	336.5	△30.8	△7.5
일반회계	390.3	333.9	△56.3	356.1	326.2	△29.9	△7.8
특별회계	10.2	10.1	△0.1	11.2	10.4	△0.8	0.2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세목별로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117.4조원이 수납되어 2024년도 예산 대비 8.3조원(△6.6%) 감소하였으나, 전년 실적에 비해서는 1.6조원(1.4%) 증가하였음. 전년 실적 대비 수납액의 증가는 신고분 소득세가 2.8조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분 소득세가 4.4조원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법인세의 경우 기업실적 악화로 예산 대비 15.2조원(△19.5%) 감소한 62.5조원이 수납되어 예산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전년 실적 대비로도 17.9조원(△22.3%)이 적게 수납되어 감소폭이 가장 컸음.

그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4조원 수납되어 예산 대비 3.9조원(△25.7%) 감소하였고, 개별소비세는 예산 대비 1.5조원(△15.1%)이 감소한 8.7조원이 수납되었으며, 관세의 경우 예산 대비 1.9조원(△21.7%)이 감소한 7.0조원이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실적 (A)	2024년		2023년 실적대비		2024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증감액 (E=C-B)	증감률 (E/B)
총국세	**3,440,711**	**3,673,140**	**3,365,324**	**△75,387**	**△2.2**	**△307,816**	**△8.4**
○ 내국세	3,060,595	3,216,136	2,982,594	△78,001	△2.5	△233,542	△7.3
1.소득세	1,158,330	1,257,605	1,174,180	15,850	1.4	△83,425	△6.6
신 고 분	389,928	454,717	362,116	△27,812	△7.1	△92,601	△20.4
-종합소득세	214,368	230,552	195,265	△19,103	△8.9	△35,287	△15.3
-양도소득세	175,560	224,165	166,852	△8,708	△5.0	△57,313	△25.6
원 천 분	768,402	802,888	812,063	43,661	5.7	9,175	1.1
-이자소득세	52,068	49,128	71,958	19,890	38.2	22,830	46.5
-배당소득세	40,623	39,038	42,680	2,057	5.1	3,642	9.3
-사업소득세	43,665	47,478	46,828	3,163	7.2	△650	△1.4
-근로소득세	591,442	620,327	610,491	19,049	3.2	△9,836	△1.6
-연금소득세	4,562	6,004	5,591	1,029	22.6	△413	△6.9
-기타소득세	24,028	27,064	23,533	△495	△2.1	△3,531	△13.0
-퇴직소득세	12,014	13,849	10,982	△1,032	△8.6	△2,867	△20.7
2.법인세	804,195	776,649	625,113	△179,082	△22.3	△151,536	△19.5
3.상속증여세	146,341	146,566	152,981	6,640	4.5	6,415	4.4
4.부가가치세	737,749	814,068	822,358	84,609	11.5	8,290	1.0
5.개별소비세	88,209	101,945	86,566	△1,643	△1.9	△15,379	△15.1
6.증권거래세	60,803	53,829	47,602	△13,201	△21.7	△6,227	△11.6
7.인지세	7,969	8,505	8,460	491	6.2	△45	△0.5
8.과년도수입	56,999	56,969	65,334	8,335	14.6	8,365	14.7
○교통세	108,436	153,258	113,891	5,455	5.0	△39,367	△25.7
○관세	72,883	89,065	69,723	△3,160	△4.3	△19,342	△21.7
○교육세	51,516	61,625	53,738	2,222	4.3	△7,887	△12.8
○종합부동산세	45,965	41,098	41,847	△4,118	△9.0	749	1.8
○방위세	1	-	1	1	72.7	-	-
○주세	35,686	35,759	33,282	△2,404	△6.7	△2,477	△6.9
○농특세	65,628	76,199	70,249	4,621	7.0	△5,950	△7.8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예산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재추계를 실시하여 2024년 9월 발표하였고,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은 재추계 결과 대비 1조 1,715억원(△0.3%) 감소하였음.

[2024년도 국세수입 예·결산내역 및 재추계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 (A)	2024년도 재추계(B)	2024년도 결산(C)	예산대비		재추계 대비	
				증감	%	증감	%
총 국 세	3,673,140	3,377,039	3,365,324	△307,816	△8.4	△11,715	△0.3
[일반회계]	3,561,182	3,272,308	3,261,793	△299,389	△8.4	△10,515	△0.3
◇ 내 국 세	3,216,136	2,995,142	2,982,594	△233,542	△7.3	△12,548	△0.4
ㅇ 소 득 세	1,257,605	1,174,033	1,174,180	△83,425	△6.6	147	0.0
■ 종 합 소 득 세	230,552	190,173	195,265	△35,287	△15.3	5,092	2.7
■ 양 도 소 득 세	224,165	165,848	166,852	△57,313	△25.6	1,004	0.6
■ 근 로 소 득 세	620,327	617,172	610,491	△9,836	△1.6	△6,681	△1.1
ㅇ 법 인 세	776,649	631,987	625,113	△151,536	△19.5	△6,874	△1.1
ㅇ 상 속 증 여 세	146,566	141,202	152,981	6,415	4.4	11,779	8.3
ㅇ 부 가 가 치 세	814,068	836,955	822,358	8,290	1.0	△14,597	△1.7
ㅇ 개 별 소 비 세	101,945	90,088	86,566	△15,379	△15.1	△3,522	△3.9
ㅇ 증 권 거 래 세	53,829	49,711	47,602	△6,227	△11.6	△2,109	△4.2
ㅇ 인 지 세	8,505	8,527	8,460	△45	△0.5	△67	△0.8
ㅇ 과 년 도 수 입	56,969	62,639	65,334	8,365	14.7	2,695	4.3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258	111,900	113,891	△39,367	△25.7	1,991	1.8
◇ 관 세	89,065	69,659	69,723	△19,342	△21.7	64	0.1
◇ 교 육 세	61,625	54,160	53,738	△7,887	△12.8	△422	△0.8
◇ 종합부동산세	41,098	41,450	41,847	749	1.8	397	1.0
[특별회계]	111,958	104,731	103,531	△8,427	△7.5	△1,200	△1.1
◇ 주 세	35,759	32,605	33,282	△2,477	△6.9	677	2.1
◇ 농어촌특별세	76,199	72,126	70,249	△5,950	△7.8	△1,877	△2.6

자료: 기획재정부

(2) 검토의견

(가) 국세수입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2년 연속 상당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정부의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정부는 기존의 추계모형을 현실에 맞게 고도화하고, 예기치 못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 시 세입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해연도 세수재추계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재검토 등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결산 오차를 살펴보면, 2021년 61.4조원의 초과세수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결손, 2022년 52.6조원의 초과세수, 2024년 △30.8조원의 세수결손 순임. 2021년 이후 오차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최근 4년간의 국세수입 오차는 총 201.1조원으로 최근 10년간의 전체 오차규모 280.4조원의 71.7% 수준임.

본예산 대비 오차율를 살펴보면, 가장 큰 오차율은 2021년 21.7%, 다음으로는 2022년 15.3%, 2023년 △14.1% 순이며, 2024년 오차율은 △8.4%로 2021년 이후 오차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5~2024회계연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B)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337.7
결산(C)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이	본예산 대비 (C-A)	△3.3	19.6	23.1	25.4	△1.3	△6.5	61.3	52.6	△56.4	△30.8
	추경 대비 (C-B)	2.2	9.8	14.3	25.4	△1.3	5.8	29.8	△0.7	2.7	△1.2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추경 대비 [(C-B)/B]	1.0	4.2	5.7	9.5	△0.5	2.1	9.5	△0.2	0.8	△0.4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은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15.2조원)와 양도소득세(△5.7조원) 등 소득세에서 발생한 8.3조원의 결손에서 주로 기인하며, 그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예산 대비 3.9조원 감소하였고, 개별소비세는 1.5조원, 관세는 1.9조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실적 (A)	2024년		2023년 실적대비		2024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증감액 (E=C-B)	증감률 (E/B)
총국세	**3,440,711**	**3,673,140**	**3,365,324**	**△75,387**	**△2.2**	**△307,816**	**△8.4**
1.소득세	1,158,330	1,257,605	1,174,180	15,850	1.4	△83,425	△6.6
-종합소득세	214,368	230,552	195,265	△19,103	△8.9	△35,287	△15.3
-양도소득세	175,560	224,165	166,852	△8,708	△5.0	△57,313	△25.6
-이자소득세	52,068	49,128	71,958	19,890	38.2	22,830	46.5
-근로소득세	591,442	620,327	610,491	19,049	3.2	△9,836	△1.6
2.법인세	804,195	776,649	625,113	△179,082	△22.3	△151,536	△19.5
3.상속증여세	146,341	146,566	152,981	6,640	4.5	6,415	4.4
4.부가가치세	737,749	814,068	822,358	84,609	11.5	8,290	1.0
5.개별소비세	88,209	101,945	86,566	△1,643	△1.9	△15,379	△15.1
6.증권거래세	60,803	53,829	47,602	△13,201	△21.7	△6,227	△11.6
7.인지세	7,969	8,505	8,460	491	6.2	△45	△0.5
8.과년도수입	56,999	56,969	65,334	8,335	14.6	8,365	14.7
○교통세	108,436	153,258	113,891	5,455	5.0	△39,367	△25.7
○관세	72,883	89,065	69,723	△3,160	△4.3	△19,342	△21.7
○교육세	51,516	61,625	53,738	2,222	4.3	△7,887	△12.8
○종합부동산세	45,965	41,098	41,847	△4,118	△9.0	749	1.8
○방위세	1	-	1	1	72.7	-	-
○주세	35,686	35,759	33,282	△2,404	△6.7	△2,477	△6.9
○농특세	65,628	76,199	70,249	4,621	7.0	△5,950	△7.8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당초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정부가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하였던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실제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한 것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정부는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실질성장률을 2.4%, 민간소비 증가율을 2.2%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2024년 실질성장률은 2.0%(△0.4%p), 민간소비 증가율은 1.1%(△1.1%p)를 기록하는 등 정부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는 기업의 영업실적·부동산거래량 및 수입규모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법인세·양도소득세 및 관세 등의 세수 결손을 유발할 수 있음.

[2023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및 실제 통계 비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4년 전망 (A)	2024년 실제 통계 (B)	차이(B-A)
경상성장률(%)	4.9	6.2	+1.3%p
실질성장률(%)	2.4	2.0	△0.4%p
GDP 디플레이터(%)	2.5	4.1	+1.6%p
민간소비증가율(%)	2.2	1.1	△1.1%p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3	-
취업자증감(만명)	18	16	△2.0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1회계연도에 국세수입 오차가 크게 발생하자 2022년 2월 추계모형 정합성 강화,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업무 개선방안」[1]을 발표하였고, 이후에도 2023~2025년 각 연도 예산안 첨부서류 및 2023·2024회계연도 세수재추계 보도자료에서 세수추계 모형 개선,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국제기구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시하였음.

그러나 매년 제시하고 있는 세수추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계모형의 고도화, 국내외 전문가 참여, 국회예산정책처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며, 2021년 대규모 오차 발생 후에도 국세수입 오차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2025년에도 세수부족 전망으로 제2회 추경에서 10.3조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실시하였음.

1)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2022.2.11.

[정부의 세수추계 개선방안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정부의 세수추계 개선방안 관련 주요 내용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2.9.)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 일부 자산세수의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 - 회귀모형을 단순화하고 세무조정 등 국세통계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산출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3.9.)	- 올해 세수 전망치를 토대로(최신 정보 반영)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지표-세수 간 관계 체계적 반영)하여 내년 세수추계 - 변동성이 큰 상장기업의 실적 추정시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한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 활용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23.9.)	-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통해 세목별 추계모형 발전,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 강화 -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 강구 -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4.9.)	- 세수추계위원회 외부 전문가(국토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참여 확대, 정부 외 연구기관 자체 세수전망치 공표 등 추계절차 개선 -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국제협력, AI기반 추계모델 활용) - 법인세 추계모형 고도화(상장사 · 비상장사 과세표준 각각 도출 → 단계적 국세통계 적용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 전망)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24.9.)	-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 개편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 검토 -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여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 조직개편 방안 검토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반복되는 세수오차로 정부의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정부는 기존의 추계모형을 현실에 맞게 고도화하고,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경우 세수재추계를 실시하고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 시 세입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당해연도 세수재추계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재검토를 제도화하는 등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

2)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 신고*가 완료되는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재추계하여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회심의 과정(11월)에서 재추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 납부, (부가가치세) 7월 신고, (법인세) 8월 중간예납

(나) 조세지출 정비 및 조세지출의 형평성 측면의 검토 필요

첫째,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과 2025년 세수부족 전망에 따라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3]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4]

기획재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으로 전망되고,[5] 2025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0조원으로 20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할 전망임.

[2023~2025년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잠정	2025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69.8	71.4[1)]	78.0
○ 국세수입총액[2)] (B)	370.4	364.4	412.2
○ 국세감면율 [A/(A+B)]	15.8	16.3[1)]	15.9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3)]	14.3	14.6	15.2

주 1) 2024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작성한 2024년 전망치이며, 2025년 8월에 확정됨
2)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5.3.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2024년 확정적인 국세감면액은 2025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6]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7]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2023~2025년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8]

[2018~2025년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8실적	2019실적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잠정	2025전망
국세감면액	439,533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액	2,935,704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43,847	4,122,410
국세감면율	13.0	13.9	14.8	13.5	13.0	15.8	16.3	15.9
법정상한	14.0	13.3	13.6	14.3	14.6	14.3	14.6	15.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 대비 2024년 조세지출 증가율은 62.5%에 이르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24.1%에 그쳐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0%에서 2024년 16.3%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9]

---

6)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8)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2021~202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도출되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2024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확정치도 8월에 도출될 예정임.

9) 예컨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새로운 조세지출의 신설 및 기존 조세지출의 연장을 제한하거나, 부처별 일정비율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음.

참고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로 2025년 국세감면율은 2025년 3월 전망치 15.9%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임.

둘째, 2021~2025년 고소득자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1~2025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10조 4,94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6조 6,72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2025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0)]

[2021~2025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주1)]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257,853	71.1	269,883	68.3	291,472	67.7	312,419	66.8	332,469	66.6
	고소득자	104,940	28.9	125,080	31.7	139,076	32.3	155,059	33.2	166,724	33.4
	계 (총계 대비)	362,793	100.0 (63.6)	394,963	100.0 (62.2)	430,547	100.0 (61.7)	467,478	100.0 (65.4)	499,192	100.0 (64.0)
기업	중소기업	143,594	70.9	160,895	68.1	180,546	68.8	182,886	75.6	188,983	68.5
	중견기업	6,587	3.3	9,378	4.0	10,194	3.9	9,615	4.0	9,989	3.6
	상호출자 제한기업	22,133	10.9	38,878	16.5	43,804	16.7	23,475	9.7	49,364	17.9
	기타기업	30,285	14.9	27,159	11.5	27,872	10.6	26,054	10.8	27,574	10.0
	계 (총계 대비)	202,598	100.0 (35.5)	236,311	100.0 (37.2)	262,417	100.0 (37.6)	242,031	100.0 (33.9)	275,910	100.0 (35.4)
구분곤란[주2)]		4,857		4,210		4,700		4,796		5,075	
총 계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주 1) 2021~2023년은 실적치, 2024년 및 2025년은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전망치임
2)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개인 - 근로소득자,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① 중·저소득자 : 근로소득이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고소득자 : 중 · 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귀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11]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2조 2,133억원에서 2023년 4조 3,804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반도체 등 영업실적 악화로 2조 3,47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다시 4조 9,36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임.[12]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9%, 2022년 16.5%, 2023년 16.7%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7.9%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조세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대기업의 경우 실적 회복에 따라 세금감면액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소득 8,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는 2023년 기준 상위 7~8%[13]에 해당함에도 2025년 개인 대상 조세지출의 33.4%가 귀착되고 있고,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46개, 소속회사 수는 2,093개로, 전국 사업체 수 약 694만개[14] 대비 0.03%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17.9%가 귀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조세감면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을 분석하는 것은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최근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역진적으로 귀착되고 있는 모습이므로, 향후 조세지출 정책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11) 공시대상기업집단(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1.6조원(2025년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12)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①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④ 기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13)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2024.12.31.

14) 통계청,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보도자료, 2024.2.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제1호는 추상적·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15]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건수보다 면제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으며, 모든 면제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에 근거하여 면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2	3	1	1	1	2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9	3	2	3	7	6	6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제1호						

자료: 기획재정부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 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다) 세수결손 대응방안 검토

① 현황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전망이 당초 예산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2024년 9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16] 이후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2024년 10월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제시하였음.

이에 따르면, 정부는 ① 금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여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②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며, ③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음.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총 29.6조원 규모의 예상 결손액에 대하여 기금·특별회계의 가용재원 14~16조원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금)의 배정 유보 △6.5조원, 재정사업 불용 △7.0~△9.0조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대응방향]

(단위: 조원)

세부 내용	활용 규모
합 계	**29.6조원 내외**
1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14.0~16.0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4.0 내외
② 외국환평형기금	4.0~6.0
③ 주택도시기금	2.0~3.0
④ 기타(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0 내외
2 교부세(금) 배정 유보(교부세 50%, 교부금 80%)	△6.5
3 통상적 불용	△7.0~△9.0

자료: 기획재정부,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2024.10.

16) 이에 따르면, 2024년 국세수입은 전년(344.1조원)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음.(기획재정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9.)

2024년 결산 결과, 세수결손 규모는 30.8조원(일반회계 29.9조원, 특별회계 0.8조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일반회계 29.9조원에 대해 30.4조원[17] 규모의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하였고, 특별회계 0.8조원[18]은 자연불용으로 대응하였다고 설명함.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초과 수납된 세외수입 0.7조원, 기금·특별회계 등 가용재원 17.0조원, 지방교부세(금) 배정유보 6.5조원 및 통상적 불용 6.1조원을 활용하였음.

[2024년도 세수결손 대응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旣 발표안주)	실적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등	-	0.7
2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0~16.0	17.0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4.0 내외	4.0
ㅇ 외국환평형기금	4.0~6.0	4.0
ㅇ 주택도시기금	2.0~3.0	3.2
ㅇ 국유재산관리기금	0.3 내외	0.3
ㅇ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	1.0
ㅇ 산업재해예방기금	-	1.6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	1.1
ㅇ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	1.8
3 지방교부세·금 배정 유보	6.5	6.5
4 재정사업 불용(일반회계)	7.0~9.0	6.1

주) 세수 재추계는 2024..9월,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대응방안은 2024.10월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검토의견

2023년 발생한 56.4조원의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주로 ① 추경 예산의 미편성 등 국회와의 소통 부족, ② 지자체·관계부처 등과의 소통 부족, ③ 지방교부세(금) 미교부로 지방재정 악화, ④ 세수결손 대응에 외평기금 활용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대응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 세계잉여금 4,458억원 포함

18) 특별회계 국세 부족(주세·농특세, △0.8조원)은 「세입 범위 내 세출」 원칙 하에 운영되는 특별회계 특성 등 고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불용으로 대응

첫째,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2.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4.3조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해당 부족액을 ㉠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활용(14~16조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6.5조원), ㉢ 통상적 불용(7~9조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지방교부세 2.2조원(예산 대비 3.3%)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조원(예산 대비 6.2%)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음.

[2024년 지방교부세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A)	집행액	불용액 (B)	비율 (B/A)
보통교부세	59,843,917	57,793,200	2,050,717	3.4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40,337	715,000	25,337	3.4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85,084	178,800	6,284	3.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925,421	893,699	31,722	3.4
소방안전교부세	954,765	832,495	122,270	12.8
부동산교부세	4,109,800	4,109,800	-	-
합계	66,759,324	64,522,994	2,236,330	3.3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액 (A)	집행액	불용액 (B)	비율 (B/A)
보통교부금	66,338,469	62,224,931	4,113,538	6.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00,426	567,529	32,897	5.5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00,142	189,177	10,965	5.5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00,852	1,135,058	65,794	5.5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20	504,078	29,242	5.5
계	68,873,209	64,620,773	4,252,436	6.2

자료: 교육부

「지방교부세법」은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서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2항・제3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부세(금)의 재원이 증감되면 교부세(금)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금)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20]

그러나 정부는 2023년에도 세수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8.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즉 현행법은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 교부세 또는 교부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내국세・교육세 등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다음연도 또는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거나, ㉡ 당해연도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교부세 및 교부금을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미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종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임.

---

19)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교부 관련)]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33)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방지 필요	관련 사업명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시정
	지적 사항	○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75.3조원) 중 8.2조원(보통교부세 7.2조원 및 부동산교부세 1.0조원)을 미교부(불용) -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400.5조원 대비 85.9%인 344.1조원 수납 -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14년 행정안전부는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였음	
	시정 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세수결손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502-301),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시정
	지적 사항	○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조 7,606억원 중 10조 3,97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불용 처리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정요 구사항	○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4.11.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당시) 지자체에 약 7조원의 자체 가용재원[21]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감액조정이 필요한 규모를 4.3조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2024년) 미교부분과 차차년도(2026년) 정산분으로 분산하기로 하고, 2024년에는 이 중 2.1조원(50%)을 교부하고 나머지 2.2조원을 미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상당한 규모의 가용재원[22]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세수재추계 결과 교부금을 5.4조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지방교육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당해연도(2024년) 미교부분과 차차년도(2026년) 정산분으로 분산하기로 하고, 2024년에는 이 중 1.1조원(20%)을 교부하되, 약 4.3조원(80%)을 미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정부가 미교부할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어 보이므로, 향후 정부는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세수결손 대응을 목적으로 동 기금을 활용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임.

외국환평형기금은「외국환거래법」제13조제1항[23]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정부는 2024년 세수결손 대응방안 중 하나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4~6조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4조원 축소하였음. 그러나 국세수입 결손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원활한 외국환거래 지원이라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22)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 9조원 수준 등 활용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함.

23)「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교부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세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므로, 외환당국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평형기금을 국고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탁에 사용함에 따라 금융성 채무(외환시장 안정용)가 적자성 채무(일반회계 적자보전용)로 전환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및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조기상환 시 금융성채무가 적자성채무로 전환되었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셋째, 정부는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을 3.2조원 활용하였으나 주택도시기금은 저출생·주거복지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수입 대비 높은 지출규모로 2021년말 49조원이었던 여유자금이 2024년말 10.1조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청약[24]·채권과 같은 차입금(40~60%)으로 구성되며,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보면, 2020년 69.7조원에서 2021년 76.1조원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 62.6조원으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4년에는 65.7조원을 기록하였음.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69.7**	**76.1**	**62.6**	**63.5**	**65.7**
ㅇ차입금	39.9	41.9	32.8	28.3	29.0
ㅇ정부내부수입	12.0	16.6	15.1	19.1	18.0
ㅇ자체수입	17.9	17.5	14.8	16.0	18.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9.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됨.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전체 2,837만 좌에서 2024년 2,648만 좌로 189만 좌가 감소하였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21~2023년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 현황]

(단위: 좌)

연도	합계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2021(A)	28,371,484	26,772,491	406,850	166,757	1,025,386
2022	27,894,013	26,381,077	381,102	158,222	973,612
2023	27,038,534	25,613,059	356,580	149,442	919,453
2024(B)	26,485,223	25,172,173	328,527	138,029	846,494
감소분(B-A)	**△1,886,261**	**△1,600,318**	**△78,323**	**△28,728**	**△178,892**

자료: 한국부동산원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연간 순조성액이 2021년 3.3조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2024년에는 2021년 대비 5.9조원 감소한 2.6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음.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상환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행(A)	18.7	18.8	14.4	13.4	14.1
상환(B)	16.2	15.5	14.4	13.9	16.7
순조성(A-B)	**2.5**	**3.3**	**△0.0**	**△0.5**	**△2.6**

자료: 국토교통부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재원 조성의 대부분은 청약·채권과 같은 차입금으로 구성되는데, 2022년 이후 분양가 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약과 채권 등의 조성액이 감소하고, 청약통장 해지 증가로 기금재원의 순조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주거복지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기금의 지출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21년 49조원까지 증가했던 기금 여유자금 잔액이 2024년에는 10.1조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시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각 연도말 기준 여유자금 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69.7**	**76.1**	**62.6**	**63.5**	**65.7**
ㅇ 차입금	39.9	41.9	32.8	28.3	29.0
ㅇ 정부내부수입	12.0	16.6	15.1	19.1	18.0
ㅇ 자체수입	17.9	17.5	14.8	16.0	18.7
지출(B)	**67.1**	**69.5**	**81.1**	**74.6**	**74.7**
ㅇ 사업비	26.7	31.7	29.3	28.1	30.3
ㅇ 차입금이자	2.2	1.7	2.5	2.4	2.5
ㅇ 차입금원금	26.3	25.8	33.5	29.1	29.3
ㅇ 정부내부지출	12.0	10.3	15.8	15.0	12.6
수지차(A-B)	**2.6**	**6.6**	**△18.4**	**△11.1**	**△9.0**
운용손익	1.8	1.1	△1.9	1.6	△0.1
여유자금	**41.3**	**49.0**	**28.7**	**19.2**	**1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국세외수입

(1) 현황

총수입 기준 2024회계연도 국세외수입 수납실적은 257.8조원으로 전년 대비 28.2조원(12.3%), 예산 대비로는 12.9조원(5.3%) 각각 증가하였음. 이 중 예산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3.6%), 예산 대비 1.4조원(5.0%) 각각 증가하였고, 기금수입은 228.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27.1조원(13.5%), 예산 대비 11.5조원(5.3%) 각각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A)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 (C)	결산 (D)	예산대비 (D-C)	전년대비 (D-B)
국세외수입	225.2	229.6	4.4	244.9	257.8	12.9	28.2
- 예산수입	25.0	28.5	3.5	28.2	29.6	1.4	1.1
- 기금수입	200.3	201.1	0.8	216.7	228.2	11.5	27.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2024년 국세외수입은 257.8조원으로 전년 대비 28.2조원(12.3%) 증가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재산수입이 14.6조원 증가하고, 경상이전수입 5.1조원,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 3.9조원, 사회보장기여금 3.9조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임.

[국세외수입 연도별 결산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수입관(코드)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대비
국세외수입	193.2	226.4	221.5	229.6	257.8	28.2
사회보장기여금(07)	74.6	78.1	83.4	88.9	92.8	3.9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10)	6.4	8.1	6.5	8.0	8.2	0.1
재산수입(11)	33.6	56.6	47.2	42.4	56.9	14.6
경상이전수입(12)	37.6	42.0	44.7	47.9	53.0	5.1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9.8	10.8	11.3	12.2	12.6	0.4
수입대체경비수입(14)	0.1	0.1	0.2	0.3	0.3	0.0
관유물매각대(15)	2.9	2.6	3.0	3.7	4.0	0.3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20)	28.2	28.0	25.2	26.1	30.0	3.9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31)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2) 검토의견

(가) 국세외수입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2024년 국세외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오차를 절댓값으로 계산할 경우 오차규모는 38.8조원, 오차율은 22.8%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시 전년과 같은 금액 또는 최근 3년 평균값 등 기계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국세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기여금(7관),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31관) 및 정부내부수입(40관)을 제외한 국세외수입 예산규모는 2021년 140.9조원에서 2024년 169.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크게 나타나 양(+)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

2021년에는 예산 대비 27.8조원(19.7%)의 오차가 발생하여 가장 큰 오차와 오차율을 나타냈으며, 2022년 12.4조원(8.2%)의 오차발생 이후 오차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5.8조원(9.3%)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

[2021~2024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A)	140,881,945	152,183,177	151,781,684	169,880,366
수납액(B)	168,637,314	164,589,344	166,364,497	185,671,678
오차(C=B-A)	27,755,369	12,406,167	14,582,813	15,791,312
오차율(C/A)	19.7	8.2	9.6	9.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수납액에서 예산액을 차감한 오차는 각 수입목별 과다수납(+)과 과소수납(-)이 상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절댓값 기준으로 오차를 계산할 경우 2021년에는 46.1조원(32.7%)으로 증가하며, 2024년의 경우 오차규모는 38.8조원으로 증가하고 오차율도 22.8%로 크게 증가하게 됨.

[2021~2024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오차를 절댓값으로 계산 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A)	140,881,945	152,183,177	151,781,684	169,880,366
수납액(B)	168,637,314	164,589,344	166,364,497	185,671,678
오차(C=D+E)	46,052,917	37,702,007	42,469,845	38,798,330
(+) 오차(D)	36,904,143	25,054,087	28,526,329	27,294,821
(-) 오차(E)	△9,148,774	△12,647,920	△13,943,516	△11,503,509
오차율(C/A)	32.7	24.8	28.0	2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매년 국세외수입의 예산과 실제 수납 실적 간의 괴리가 큰 상황인데, 이는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추계 결과보다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수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납액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거나 최근 3년간 수납액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추계가 아닌 기계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세입·수입예산 과소 계상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정자산매각익 등 일부 수입항목은 연례적으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 계상되고 있으므로, 과거 몇 년 치 연평균 수납액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수납실적과 관계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① 고정자산매각익(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을 과소계상하여 결과적으로 계획액 대비 실적액이 1.4~9.3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주식 처분익은 당초 계획 상 137억원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607억원이 수납되었고, 이와 같은 기금 수입 과소계상은

2021~2023년에도 연례적으로 반복되었음.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증연계투자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25] 최근 투자기업의 IPO 및 주식 처분실적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 사업의 대상기업의 보유주식 처분에 관한 과소추계 행태를 지양하고 고정자산매각익을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② 공무원인재개발기관운영수입(인사혁신처)

동 세입과목의 2023·2024회계연도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수납액을 비교하면, 2023년에는 세입예산액 17억 6,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수납액 20억 6,500만원으로 3억원이 초과수납되었고, 2024년에는 세입예산액 19억 4,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수납액 22억 9,3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이 초과수납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사업인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출예산규모만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동 세입과목의 수납내역에는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외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교육비·기숙사비 등의 수입이 동 세입과목으로 수납되고 있음.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세입예산 편성 시 현재 세입예산의 산출내역에 적정 반영되고 있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교육비·기숙사비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예산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필요가 있음.

③ 과태료 및 가산금(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및 가산금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연도별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입추세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하고 있음.

---

25) 다만 2011년 동 사업을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중단하였다가, 2012년 6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8월부터 재개한 바 있음.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 변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액 역시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26]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입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납추이, 제도적 변화, 납부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세입예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세입·수입예산 과다 계상

일부 수입과목은 수납실적에 비해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재원부족에 따른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발생시키거나 수납가능성이 없는 과목이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① 기타재산이자외수입(국가보훈부)

88골프장 매각대금은 2010년 이후 보훈기금수입에 연례적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매각이 실현되지 않아 수입결손이 초래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2018년 2월 기획재정부 기능조정과제 심의 이후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2025년 2월에서야 비로소 매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음.

골프장 매각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보훈기금에는 매년 매각대금이 수입에 계상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기금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27]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88골프장 매각 관련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매각 여부를 확정하는 한편, 그에 따라 기금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과징금 및 가산금 세입예산안 편성시 과징금은 최근 3년간 결산 평균액을 근거로, 가산금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세입을 계상함.

27) 2024년 보훈기금 전체 수입결산은 계획액 6,004억원, 수납액 3,256억원으로 양자 간 2,748억원의 차이를 보였는데,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항목(계획액 2,290억원, 수납액 780억원)을 제외하면 보훈기금 내 수입사업 중 계획액과 수납액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② 은퇴설계지원교육수입(인사혁신처)

은퇴설계지원교육 관련 수입은 교육대상인 퇴직예정공무원이 속한 기관이 지급하는 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는 구조임. 그러나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22년 54.4%, 2024년 56.5%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이는 산출내역상 대면교육의 평균단가가 실제 수입 단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산출내역상 온라인 교육 참여인원이 실제 참여인원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임.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대면교육을 축소운영하여 평균단가를 낮추는 등(2023년 41만 3,074원→2024년 38만 6,613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면교육 참가인원이 감소(2023년 11,520명 → 2024년 10,202명)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입 계획액이 실제 수납실적에 부합하도록 산출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정부출자수입(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국가스공사가 2023년 1월 제출한 2023년 말 예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추계하였는데, 2023년 1월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연말 당기순이익은 약 7,331억원 흑자가 전망되었음.

그러나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초부터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을 상향하였고,[28] 더하여 2023년 전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상승[29] 및 원료비 미수금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연말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낮아지게 되었음.

실제로 2024년도 정부배당안을 기획재정부와 수정하면서 조정하는 기간이었던 2023년 7~8월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이미 △1,048억원 적자 상황이었음.

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당기

28)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인 기존 9.6만원에서 59.2만원으로 6배 확대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약 2,044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계됨.

29)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25%, 4월 1.50%, 5월 1.75%, 7월 2.25%, 8월 2.50%, 10월 3.00%, 11월 3.25%, 2023년 1월 3.50%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상향시켰음.

순이익에 대한 최신 실적을 확인하고, 정부정책 및 공사의 차입금 추이를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출자기관이 제출한 최신의 정부배당수입 관련 자료에 기반하여 추계할 필요가 있음.

(라)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과태료 및 가산금 등 일부 수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수납실적 저조사유를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① 징계부가금(대법원)

징계부가금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징수결정액 10억 6,000만원이 전액 미수납되었고, 2024년에는 징수결정액 10억 6,200만원 중 1,100만원만 수납(수납률 1%)되는 등 지속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함.

대법원은 납부의무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징계부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국세 체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② 과태료·가산금(관세청)

관세청의 최근 4년간 과태료 수납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1~2024년 각각 12.7%, 19.0%, 16.7%, 13.9%로 저조한 상황이며, 저조한 수납실적으로 인해 매년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수납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2021~2023년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매년 0.3~0.4% 수준이고, 2024년에는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1억 700만원으로 수납률은 0.17%까지 하락하였으며, 미수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6,315억원까지 증가하였음.

관세청은 2020회계연도 결산 등 국회의 시정요구로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방안」 등 제도개선을 수차례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패널티 부과 등 수납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③ 토지대여료(새만금개발청)

최근 토지대여료 결산액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22년 4억 200만원에서 2024년 25억 900만원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2년 74.0%에서 2024년 35.2%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수납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임.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입주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미수납이 발생하였고, 사용료 미납 기업들 중 일부가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체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연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30] 의무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사용료 장기 체납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증권 활용 및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사무 위임[31]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0)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2조(사용 (임대) 료의 산정) ① 임대용지 연간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영 제4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다. 다만,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지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2. 국내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3. 연구기관: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31)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마) 세입예산 미편성 등 편성오류

일부 세입과목은 매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일부 부처의 경우 과태료 항목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등의 오류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①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조달청)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의 최근 4년간 예·결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미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먼저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의 경우 매년 8억원 이상이 징수결정되어, 최소 600만원, 최대 9,000만원 수납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2,500만원이 수납되었음.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2,400만원이 수납되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의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하여 조달청은 예산 편성 당시 수납액 발생 여부 등을 예상하기 곤란하여 세입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세입과목에서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세입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면허료 및 수수료(질병관리청)

현행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32]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는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첨1]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4년 수납액은 9,753만원임.

현재 질병관리청이 징수하는 동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되고 있는데,[33] 동

3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3)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 제4조(수수료)

수수료가 정부수입인지 납부 방식에 따라 수납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이 아닌 기재부 소관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징수결정 등 질병관리청 자체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34]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35]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한국은행 등에 납입된 경우 이들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수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아울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의 징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수수료 징수를 현행 정부 수입인지 방식에서 납입 고지를 통한 전자결제 등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질병관리청 자체 세입으로 편성·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과태료(특허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34)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1. 공급기관의 장: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35)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국세징수법」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36)]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미수납 과태료에 대하여 2024년 말 기준 7억 9,9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특허청은 해당 가산금을 과태료 징수결정액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과태료 징수결정액 29억 7,200만원에 가산금 7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37)]

그러나 과태료(56-563)와 가산금(58-581)은 별개의 세입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허청은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결정액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바) 정부출자수입(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배당 결정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배당의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익잉여금 기준·재무건전성 조건 등 세부적 배당결정 기준을 공표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자수입' 은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및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별 배당액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1조 6,033억 4,700만원 전액(수납률 100.0%)이 수납되었음.

---

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7) 참고로, 2024년 가산금(58-581) 징수결정액은 78,000원에 불과함.

[2024년 가산금 결산]

(단위: 원)

2024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	-	-	-	78,000	78,000	-	-

자료: 특허청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정부출자 수입	982,344	982,344	1,603,347	1,603,347	-	-	100.0	1,045,44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배당성향 목표를 상향(25% → 40%)하여 왔고, 2021년에는 2022~2026년 배당성향 중기목표를 산술평균 기준 40%로 설정하여 운용 중이며, 2022년 40.38%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이후 40.0% 내외를 유지 중임.[38)]

[최근 5년간 정부출자수입 및 배당성향 현황]

(단위: 개, 억원, %)

연도	배당기관 수	정부출자액	총 당기순이익(A)	정부배당액 (B)	배당성향	
					산술평균	가중평균
2020	22	1,123,574	65,286	14,040	32.58	26.34
2021	22	1,146,787	80,694	14,396	36.92	29.68
2022	19	1,203,011	108,324	24,541	40.38	28.61
2023	19	1,359,889	65,652	12,387	39.93	25.74
2024	19	1,410,438	76,873	21,322	39.87	33.70

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실제 정부배당액을 보면, 2022년 2조 4,541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조 2,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2조 1,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2.1%가 증가하여 큰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평균 배당성향 40%를 매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평균 배당성향이 기관별 배당성향을 단순 산술평균한 것에서 기인함.[39)]

예를 들어, 2024년 8,781억원을 배당한 한국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5.00%지만, 37억원을 배당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배당성향은 90.02%로 높게 나타나며, 실제 배당액과는 무관하게 두 기관의 배당성향이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 배당성향에 기여하게 되므로

38) 2014년 정부는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수준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2015년 25%에서 2020년에는 40%로 매년 3%p씩 상향하는 중기목표를 제시함. 당시 해외 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스웨덴 48.0~82.9%, 뉴질랜드 62.7~76.5%, 프랑스 45.5~47.7%, 영국 48.1~68.9%, 핀란드 53.2~63.3%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

39) 2025년 정부배당금액은 2조 2,987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은 39.72%임.

약 20개의 배당기관별 배당성향을 조합하여 평균 40%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현재의 정부배당은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정부의 재정여건 및 유사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등 대강의 기준[40]만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배당결정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배당의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내부 절차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각 기관별 정부배당의 실시 여부 및 배당성향을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표 배당성향을 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목표 배당성향을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적절한 정부배당을 통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배당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익잉여금 기준·재무건전성 조건 등 세부적 배당결정 기준을 공표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0)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재정수입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정자산매각익	19,358	61,750	연례적인 기술보증기금 수입 과소계상
인사혁신처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4,029	4,378	2023・2024년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과소계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426	1,244	법률개정 등 정책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인 과태료 및 가산금 과소계상
	가산금	6	12	
국가보훈부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24,753	-	88골프장 매각 중단을 반영하지 않고 매년 세입예산 계상
인사혁신처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00,487	120,307	은퇴설계지원교육의 대면교육 단가 및 온라인 교육 인원의 과다추계 반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출자수입	9,208	3,721	배당이 불가능한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세입예산 과다편성
대법원	징계부가금	-	11	연례적 수납실적 저조
관세청	과태료	8,892	12,156	연례적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저조
	가산금	1,319	△2,763주)	
새만금개발청	토지대여료	1,868	-	의무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사용료 장기 체납 등의 적극적 회수조치 필요
조달청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	25	매년 수납액이 발생함에도 세입예산 미편성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	24	
질병관리청	면허료 및 수수료	-	-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임에도 기획재정부 세입으로 편성 부적정
특허청	과태료	30	31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의 분리징수 필요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	982,344	1,603,347	배당결정을 위한 이익잉여금, 재무건전성 기준 등 세부적 배당결정 기준 공표 필요

주) 체납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권고(7.8억원) 및 경정청구(30.8억원)에 따른 환급 가산금 발생

2. 재정지출

가. 개 요

(1) 총지출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지출은 638.0조원으로 전년 결산에 비해서는 27.3조원(4.5%) 증가한 반면, 예산에 비해서는 18.6조원(△2.8%) 감소하였음.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4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6조원, 기금은 214.5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9조원, 18.0조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각각 12.0조원·3.2조원 및 3.9조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총지출[1]	610.7	656.6	638.0	△18.6	27.3
1. 일반회계	343.5	356.5	344.5	△12.0	1.0
2. 특별회계	69.6	81.7	78.6	△3.2	8.9
3. 기 금	196.5	218.4	214.5	△3.9	18.0
※ 세출예산외[2]	1.0	-	0.4	0.4	△0.6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제외됨
2)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총지출의 12대 분야별 결산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 대비 14.6조원(6.5%)이 증가한 239.9조원으로 가장 큰 지출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108.3조원, 교육 분야 85.3조원, 국방 분야 58.6조원 순임.

전년 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한 분야는 교육, 환경 및 R&D 분야이며, R&D 분야는 전년 대비 4.9조원(△15.8%)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교육분야는 0.2조원, 환경 분야는 0.1조원 각각 감소하였음.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2024회계연도 12대 분야별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예산 (B)	결 산 (C)	집행률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 보건·복지·고용	225.3	242.9	239.9	98.8	14.6	6.5
○ 교육	85.6	89.8	85.3	95.0	△0.2	△0.3
○ 문화·체육·관광	8.4	8.7	8.5	97.4	0.1	0.7
○ 환경	11.3	12.5	11.2	89.5	△0.1	△1.3
○ R&D	30.9	26.5	26.0	98.1	△4.9	△15.8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5	28.0	27.9	99.5	1.3	5.1
○ SOC	23.5	26.4	25.3	95.5	1.8	7.5
○ 농림·수산·식품	24.0	25.4	24.5	96.4	0.5	2.2
○ 국방	55.8	59.4	58.6	98.6	2.8	4.9
○ 외교·통일	5.0	7.5	6.4	84.7	1.4	27.1
○ 공공질서·안전	22.7	24.4	24.3	99.7	1.6	7.1
○ 일반·지방행정	103.5	110.5	108.3	98.0	4.8	4.7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17.4조원(5.4%) 증가한 342.5조원으로, 전체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53.7%이며,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10.9조원(3.8%) 증가한 295.5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46.3%를 차지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2024			전년 대비	
	예산	결산 (A)	(C/B)	예산 (B)	결산 (C)	(C/B)	증감 (D=C-A)	비율 (D/A)
□ 총지출	638.7	610.7	95.6	656.6	638.0	97.2	27.3	4.5
○ 의무지출	340.3	325.1	95.5	347.4	342.5	98.6	17.4	5.4
(비 중)	(53.3)	(53.2)	-	(52.9)	(53.7)	-	(0.5)	-
○ 재량지출	298.4	284.6	95.4	309.2	295.5	95.6	10.9	3.8
(비 중)	(46.7)	(46.6)	-	(47.1)	(46.3)	-	(△0.3)	-

주) 결산치 세출외 항목으로 의무·재량 총합과 총지출 간 차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5조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5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합 계	535.9	529.5	6.5	4.5	2.0
일반회계	437.3	435.4	1.9	1.4	0.4
특별회계	98.6	94.0	4.6	3.0	1.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총세입은 535.9조원으로 예산 대비 14.1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12.2조원, 특별회계에서 1.9조원이 각각 감소한 것에 기인함. 총세출은 529.5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가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96.4%, 특별회계에서 91.8%가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총세출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예산액 (A)	수입실적 (B)	예산대비 (B-A)	예산현액 (C)	지출실적 (D)	집행률 (D/C)*100
합 계	497.0	490.4	550.0	535.9	△14.1	554.0	529.5	95.6
일반회계	407.9	405.9	449.5	437.3	△12.2	451.6	435.4	96.4
특별회계	89.0	84.5	100.5	98.6	△1.9	102.4	94.0	9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2024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조원으로 예산현액 554.0조원 대비 0.8% 수준이며, 일반회계에서 1.4조원, 특별회계에서 3.0조원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 대비 0.6조원(△30.0%)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1조원(57.9%) 증가하여 전체 이월액은 전년 대비 0.6조원(15.3%)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3년 이월액 (A)	2024년			전년 대비	
		예산현액 (B)	이월액 (C)	이월액 비율 (C/B)	증감액 (D=C-A)	증감률 (D/A)
합 계	3.9	554.0	4.5	0.8	0.6	15.4
일반회계	2.0	451.6	1.4	0.3	△0.6	△30.0
특별회계	1.9	102.4	3.0	2.9	1.1	57.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6.5조원과 정부 내부거래 4.3조원 및 사실상 불용 9.3조원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1조원으로 전년 대비 25.6조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불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 불용액	45.7	41.2	4.5	20.1	14.7	5.4
세입여건변화	18.6	18.6	-	6.5	6.5	-
내부거래	16.4	14.8	1.5	4.3	2.1	2.2
사실상 불용	10.8	7.8	3.0	9.3	6.1	3.2
- 예비비 미집행	3.3	3.3	0.0	2.5	2.5	0.0
- 사업비 불용	7.5	4.5	3.0	6.8	3.6	3.2

주) (세입여건변화: 6.5조원) 국세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규모
(내 부 거 래 : 4.3조원) 회계간, 회계-기금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
(사실상 불용 : 9.3조원) 사업비 불용 및 예비비 미집행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3)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총 68개 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7개), 기획재정부(7개), 금융위원회(6개), 문화체육관광부(6개) 등 22개 소관부처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음.

68개 기금 전체의 수입·지출액은 1,008.5조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21.8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118.8조원이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입	자체수입	214.3	231.8	231.9	242.5	10.5	28.1
	정부내부수입	248.1	309.8	312.5	290.5	△22.0	42.4
	차입금	183.5	198.7	198.9	182.1	△16.9	△1.5
	여유자금회수	243.8	283.1	287.0	293.5	6.5	49.7
합 계		889.8	1023.3	1030.4	1008.5	△21.8	118.8
지출	사업비	178.7	198.9	202.6	193.5	△9.0	14.9
	기금운영비	2.9	3.0	3.0	2.9	△0.1	△0.0
	정부내부지출	268.9	332.6	342.7	337.4	△5.3	68.5
	차입금원금상환	139.0	143.3	144.7	143.6	△1.2	4.6
	차입금이자상환	26.9	31.9	32.2	31.5	△0.7	4.6
	여유자금운용	273.4	313.5	305.2	299.6	△5.6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액은 전년대비 118.8조원(11.8%) 증가한 1,008.5조원이며, 계정성기금의 경우 전년 대비 79.3조원 증가한 519.8조원으로 4개 기금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은 전년 대비 29.2조원 증가한 298.1조원이며, 사업성기금은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한 182.8조원, 금융성기금은 31.2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실적 (A)	2024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수정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8,897,582	10,232,932	10,303,614	10,085,316	△218,299	1,187,734
■ 사회보험성기금(6개)	2,688,556	2,592,394	2,593,631	2,981,025	387,394	292,468
■ 계정성기금(5개)	4,405,447	5,485,652	5,546,144	5,198,166	△347,977	792,719
■ 금융성기금(8개)	306,274	326,108	335,498	311,935	△23,562	5,661
■ 사업성기금(49개)	1,497,304	1,828,779	1,828,342	1,594,189	△234,152	96,885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함으로 인해 재량지출은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보면, 의무지출은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5.7%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보다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로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2.9%에서 2028년까지 57.3%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재량지출 비중은 2024년 47.1%에서 2028년 42.7%까지 축소될 전망임.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 총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3.6)
○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5.7)
(비중)	52.9	54.0	55.6	56.5	57.3	-
○ 재량지출	309.2	311.8	312.8	317.5	323.1	(1.1)
(비중)	47.1	46.0	44.4	43.5	42.7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9.

의무지출의 비중·규모 확대는 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의 수급자 증가 및 수급액 인상,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그리고 약자복지 강화에 따른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조원, %)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3.6
○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5.7
- 복지분야 법정지출	169.2	181.9	193.7	204.9	214.1	6.1
- 지방이전재원	139.8	142.4	152.9	161.2	170.1	5.0
- 이자지출	27.0	29.9	32.2	34.4	36.7	8.0
- 기타 의무지출	11.5	11.4	12.6	12.3	12.2	1.5

자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024년 169.2조원으로, 의무지출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으로 총지출 증가율 3.6% 및 의무지출 증가율 5.7%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2024년 7.5조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8년에는 11.8조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2024년 77.6조원에서 2028년 106.7조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전망임.

또한 기초연금은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2024년 20.2조원에서 2028년 26.0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고,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로 2024년 2.5조원에서 2028년 4.4조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임.

[복지분야 법정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억원, %)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법정지출	**1,691,807**	**1,818,790**	**1,937,167**	**2,049,259**	**2,141,156**	**6.1**
○ 기초생보	194,242	204,268	218,382	235,163	242,003	5.6
- 생계급여	75,411	84,900	95,769	112,059	118,400	11.9
- 의료급여	89,377	86,882	89,648	89,648	89,648	0.1
- 주거급여	27,424	30,368	30,848	31,336	31,831	3.8
- 교육 · 해산장제	2,030	2,118	2,117	2,119	2,124	1.1
○ 건강보험	131,855	136,287	137,060	137,299	137,659	1.1
- 가입자지원(일반)	102,636	106,211	107,041	107,118	107,160	1.1
- 가입자지원(기금)	19,022	19,882	19,052	18,975	18,933	△0.1
- 공무원·교직원·국가부담금	10,197	10,194	10,967	11,206	11,566	3.2
○ 4대 연금	776,384	854,414	939,166	1,010,852	1,066,922	8.3
- 국민연금	433,729	484,133	552,178	606,225	641,464	10.3
- 공무원연금	248,878	268,616	280,365	292,618	307,763	5.5
- 사학연금	53,369	57,847	61,818	65,457	69,440	6.8
- 군인연금	40,408	43,819	44,806	46,552	48,254	4.5
○ 노인부문	226,991	243,876	257,247	271,408	286,406	6.0
- 기초연금	202,015	218,646	231,765	245,670	260,411	6.6
- 노인장기요양보험	24,976	25,230	25,483	25,738	25,995	1.0
○ 아동・보육부문	44,394	40,941	39,481	39,117	39,618	△2.8
- 아동수당	21,115	19,588	18,656	17,812	17,306	△4.9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3,279	21,353	20,825	21,305	22,312	△1.1
○ 고용・노동부문	223,461	241,186	246,517	254,734	266,588	4.5
- 구직급여	109,144	109,171	108,806	111,209	116,832	1.7
- 모성보호육아지원	24,968	40,225	41,431	42,674	43,954	15.2
- 산재보험급여	78,761	80,043	84,365	88,584	93,013	4.2
- 기타	10,588	11,747	11,914	12,267	12,789	4.8
○ 보훈부문	53,740	54,708	55,448	56,093	56,584	1.3
- 보상금	34,681	35,807	36,565	37,388	38,282	2.5
- 수당 및 일시금	11,467	11,276	11,218	11,040	10,678	△1.8
- 보훈·위탁병원 진료 등	7,592	7,625	7,666	7,666	7,625	0.1
○ 기타	40,740	43,110	43,865	44,593	45,376	2.7

자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이자지출 전망을 보면, 2024년 27.0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 36.7조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의 영향으로 2024년 22.3조원에서 2028년 32.7조원 수준까지 연평균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이자지출 전망]

(단위: 억원, %)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이자지출	**269,603**	**298,821**	**322,303**	**343,660**	**367,087**	**8.0**
- 공공자금관리기금	223,416	254,644	280,038	304,693	326,961	10.0
- 주택도시기금	17,698	16,887	15,969	12,670	13,830	△6.0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0,023	18,673	18,673	18,673	18,673	△1.7
- 기 타	8,466	8,617	7,624	7,624	7,624	△2.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9.

이처럼 복지분야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재량지출은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1.1% 증가에 그치고 있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와 함께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상반기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인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의 이자비용이 발생함에도 정부는 매년 신속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정부는 매년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재정의 신속집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재원의 부족분은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2015~2024년 중앙부처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연간 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초과달성분	
		금액 (B)	집행률 (C=B/A)	금액 (D)	집행률 (E=D/A)	금액 (D-B)	집행률 (E-C)
2015	260.2	152.5	58.6	156.5	60.1	4.0	1.5
2016	229.6	137.1	59.7	140.5	61.2	3.4	1.5
2017	233.8	135.7	58.0	139.2	59.6	3.5	1.6
2018	238.6	138.9	58.2	149.3	62.6	10.4	4.4
2019	252.6	155.9	61.7	166.2	65.8	10.3	4.1
2020	261.4	164.6	63.0	175.6	67.2	11.0	4.2
2021	293.3	187.4	63.9	203.2	69.3	15.8	5.4
2022	199.4	125.6	63.0	128.3	64.4	2.7	1.4
2023	242.9	157.9	65.0	159.7	65.7	1.8	0.7
2024	252.9	164.4	65.0	167.5	66.2	3.1	1.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의 경우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기금(40개)의 재량지출 중 주요사업비 내 관리 실익이 있는 주요 비목을 대상으로 연간계획(252.9조원) 대비 65.0%인 164.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간계획 대비 66.2%(167.5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였음.

그 결과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국고금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이자상환액 4,86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2,107억원을 예산을 통해 상환하였음.

[2020~2024년도 일시차입 및 이자상환 현황]

(단위: 조원)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시차입 한도		3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142.5	36.4	50.5	162.1	214.8
- 한은차입		97.2	7.5	16.3	117.6	165.0
- 재정증권		45.3	28.9	34.2	44.5	49.8
■ 차입실적(평잔)		12.5	5.0	4.5	12.0	14.2
- 한은차입		4.8	0.1	1.8	4.4	5.9
- 재정증권		7.7	4.9	2.8	7.6	8.2
이자상환 (억원)	운용수익	951	212	668	4,244	2,758
	예산	182	81	-	-	2,107
	<소계>	1,133	293	668	4,244	4,865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4년도 월별 일시차입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상반기 차입실적이 46.5조원으로 연간 차입실적 50.5조원 대비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및 2024년에는 상반기 차입실적이 각각 113.7조원, 124.4조원으로 전체 차입실적 대비 비중은 각각 70.1%, 57.9%를 나타내고 있음.

[2022~2024년도 월별 차입실적 현황]

(단위: 조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 차입실적 월별 누계	0.0	4.0	20.4	23.8	30.8	46.5	46.5	50.5	50.5	50.5	50.5	50.5
	(비중)	0.0	7.9	40.4	47.1	61.0	92.1	92.1	100.0	100.0	100.0	100.0	100.0
	- 한은차입	0.0	0.0	11.5	11.5	18.5	30.2	30.2	34.2	34.2	34.2	34.2	34.2
	- 재정증권	0.0	4.0	8.9	12.3	12.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2023	■ 차입실적 월별 누계	3.5	24.0	57.1	78.2	90.3	113.7	133.3	153.6	158.1	158.1	158.1	162.1
	(비중)	2.2	14.8	35.2	48.2	55.7	70.1	82.2	94.8	97.5	97.5	97.5	100.0
	- 한은차입	3.5	20.0	48.1	65.2	71.3	87.2	100.8	113.6	113.6	113.6	113.6	117.6
	- 재정증권	0.0	4.0	9.0	13.0	19.0	26.5	32.5	40.0	44.5	44.5	44.5	44.5
2024	■ 차입실적 월별 누계	0.0	17.4	52.6	75.5	96.2	124.4	141.9	169.7	194.4	209.8	209.8	214.8
	(비중)	0.0	8.1	24.5	35.1	44.8	57.9	66.1	79.0	90.5	97.7	97.7	100.0
	- 한은차입	0.0	9.9	37.1	52.0	62.7	83.6	97.1	119.9	144.6	160.0	160.0	165.0
	- 재정증권	0.0	7.5	15.5	23.5	33.5	40.8	44.8	49.8	49.8	49.8	49.8	49.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과 2024년 차입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자금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상반기 차입 비중은 2022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이와 같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일시차입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일시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출연·출자 및 보조사업 등으로 집행해도 지자체와 출연·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이루어져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실집행실적 또한 정부가 관리·공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는 재정의 신속집행이 성장률 제고와 불용 축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의 가정·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균등집행 보다는 신속집행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신속집행률 1%p 상승 시 연간 불용액 △0.11%, 불용률 △0.07%p가 각각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함.[1)]

그러나 경기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자금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의 목표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연간 재량지출 중 관리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과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4/4분기 이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0년 이후 4년만에 한국은행으로부터 8조원을 일시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4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일자	차입액	상환액	차입잔액	이자율	이자상환액
2024.03.25	2,500,000	-	2,500,000	3.623	495
2024.03.26	-	-	2,500,000		
2024.03.27	2,000,000	-	4,500,000	3.623	445
2024.03.28	300,000	-	4,800,000	3.623	475
2024.03.29	3,200,000	-	8,000,000	3.623	2,376
2024.03.30	-	-	8,000,000		
2024.03.31	-	-	8,000,000		
2024.04.01	-	900,000	7,100,000	3.563	691
2024.04.02	-	7,100,000	-		
합계	8,000,000	8,000,000	-	-	4,482

자료: 기획재정부

1) 한국재정정보원,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2025.2.
*예시: 상반기 50% 집행시 GDP +0.037%p
상반기 60% 집행시 GDP +0.512 ~ +0.57%p

(3)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첫째,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는 대규모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202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비율(면제 요구 대비 선정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24년 68.4%에 이르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의 정비 및 엄격한 적용이 필요해 보임.

「국가재정법」 제38조[2]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라 함)를 받아야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타 면제현황을 보면, 2020년 43.7%였던 면제비율은 2021년 40.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68.4%로 나타나 예타 대상인 신규사업 중 3분의 2 이상이 예타를 받지 않은 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타 면제 기준의 정비와 함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면제 사업 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3]

[최근 5년간(2020~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 건, %)

연도	예타면제 요구 사업 수(A)	예타면제 선정 사업 수(B)	면제 비율(B/A)
2020	70	31	43.7%
2021	77	31	40.3%
2022	60	26	43.3%
2023	55	28	50.9%
2024	57	39	68.4%

주) 과기부 이전 사업 및 도중 철회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비율의 증가는 예타의 실익이 없는 공공청사, 법령에 따른 면제사업 등재량의 여지가 낮은 분야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함.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최근 5년간 예타 면제사업을 면제 사유별로 보면, 2020년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17건(5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제8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14건(35.9%)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합계
2020	건수	5	-	-	1	2	2	-	4	-	17	31
	(비중)	(16.1)	-	-	(3.2)	(6.5)	(6.5)	-	(12.9)	-	(54.8)	(100.0)
2021	건수	7	-	2	-	1	4	-	11	2	4	31
	(비중)	(22.6)	-	(6.5)	-	(3.2)	(12.9)	-	(35.5)	(6.5)	(12.9)	(100.0)
2022	건수	6	-	6	-	-	1	4	7	1	1	26
	(비중)	(23.1)	-	(23.1)	-	-	(3.8)	(15.4)	(26.9)	(3.8)	(3.8)	(100.0)
2023	건수	8	-	2	-	1	-	-	7	4	6	28
	(비중)	(28.6)		(7.1)		(3.6)			(25.0	14.3	21.4	(100.0)
2024	건수	10	-	-	-	-	-	3	14	4	8	39
	(비중)	(25.6)	-	-	-	-	-	(7.7)	(35.9)	(10.3)	(20.5)	(100.0)

주) 과기부 이전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0호 사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0년에는 제10호 사유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 국회의 지적으로 2022년 1건으로 감소한 후 2024년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근거로 면제받은 사업은 2020년 4건(12.9%)에서 2024년 14건(42.4%)로 증가하였음.

둘째, 정부는 본예산 편성 시 실시한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사업 및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아 구조조정이 지출효율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각 부처별로 실시한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사업 및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여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관행적·점증적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효과성을 재점검한 결과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2025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의 주요 유형으로 ① 산업구조·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 낮은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일반·범용목적 융자지원을 맞춤형·전문형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 우선순위 조정”, ② 각 부처 내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 발주하거나, 관례적 시설비 지급을 사전점검을 통해 필수소요에 한정하는 등 “공공경비 절감”, ③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조세·재정지출 간 중복지원을 정비하며, 현장의 실소요를 재점검하여 집행방식과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를 제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출효율화 노력은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사업 및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구조조정이 지출효율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지출구구조정의 세부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시내역을 보면, SOC 등 시설 구축사업과 ODA사업 등의 경우에는 총사업비나 전체 사업규모의 감축 없이 예산의 지출시기만 연기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였음.

이와 같이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예산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4)]

따라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각 부처별로 실시한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사업 및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2회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	규모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국립묘지조성	△9,724	△0.1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중남미차관(융자)(ODA)	△8,000	△0.15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32,000	△0.61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60,000	△1.14
외교부	일반회계	베트남(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탄자니아(ODA)	△8,000	△0.15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16,092	△0.3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5,000	△0.09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2,669	△0.24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00	△0.13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숙련기술장려사업	△9,189	△0.17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5,100	△0.4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남부내륙철도	△50,000	△0.95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월곶-판교 복선전철	△20,000	△0.3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충북선 고속화	△9,957	△0.19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가덕도신공항건설	△522,364	△9.9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시공 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셋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현행 법령상 정원·총수입액 및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관들이 정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6]

[공공기관 유형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분류기준</th></tr>
<tr><td rowspan="2">공기업</td><td>시장형</td><td rowspan="4">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 비중
50% 이상</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중 85% 이상</td></tr>
<tr><td>준시장형</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r>
<tr><td rowspan="2">준정부기관</td><td>기금관리형</td><td rowspan="2">자체수입 비중
50% 미만</td><td>「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td></tr>
<tr><td>위탁집행형</td><td>정부업무의 위탁집행</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td><td colspan="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평가, 임원의 임면, 재무 등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어 기타공공기관은 해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체계 비교]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임원	「공공기관 운영법」상 임면절차* 적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공운위 의결 등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재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① 직원 정원, ② 총수입액, ③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7]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4개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현황]

연도	변경 유형	기관 현황
2023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
2025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기관의 총수입액과 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다수의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8]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42년에 기금적립금 소진이 전망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

7) (정원) 50명 → 300명, (총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 30억원

8)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중 재무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기관]

기관명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	
대한석탄공사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 정부의 손실보전가능 조항 존재 및 금융부채 2.4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장기적으로 2042년에 기금 적립금의 소진 등이 추정됨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비율 급증(2018년 29% → 2023년 614.2%)	
부산항만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보증가능조항	금융부채(억원): 2019년 19,025 → 2023년 36,334
인천항만공사		금융부채(억원): 2019년 9,174 → 2023년 14,4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넷째,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 배분비율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2025년 현재 여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은 전체 계획현액 1조 401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합계	1,040,150	1,040,150	-	1,040,150	1,040,150	-	-	1,105,145
지방자치단체지원	169,863	169,863	-	169,863	169,863	-	-	190,63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79,600	179,600	-	179,600	179,600	-	-	190,825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25,055	125,055	-	125,055	125,055	-	-	137,44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91,954	91,954	-	91,954	91,954	-	-	92,044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63,513	63,513	-	63,513	63,513	-	-	61,699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72,752	72,752	-	72,752	72,752	-	-	82,620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152,611	152,611		152,611	152,611			144,8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70,138	70,138	-	70,138	70,138	-	-	80,1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41,697	41,697	-	41,697	41,697	-	-	47,401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72,967	72,967	-	72,967	72,967	-	-	77,528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법정배분비율은 2004년「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이후 2009년에 문화재보호기금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배분비율을 유지한 채 한차례 조정되었을 뿐 2004년과 사실상 동일함.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 변경 현황]

구 분	2004년	2010년 이후
총 법정배분비율	30%	3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0%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0%	10.371%
근로복지진흥기금	6.195%	5.3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15%	6.356%
문화재보호기금 (現 국가유산보호기금)	-	14.286%
지방자치단체	20.145%	17.26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45%	17.2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4.28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6.820%	5.8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00%	6.428%

주) 각 기금 등의 법정 배분비율은 총 법정배분비율 내에서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의 법정배분비율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이후 21년이 경과하여 각 기금 및 회계의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상당부분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 복권발행기관별 복권판매액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복권수익금 배분의 합리성 및 복권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자금까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수입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복권기금까지 지원하고 있어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 하에서 복권수익금 배분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분비율의 가감제도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최종적으로는「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복권 및 복권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회의 예·결산 과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작성·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져 국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성과정보의 예산으로의 환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과정보의 적절한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1년까지는 성과목표관리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관리하였으나,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이유로 2022년부터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사업의 대상을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 5,349개였던 성과지표의 수는 2022년 1,047개로 1/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부터는 ‘1 프로그램 1 지표’ 설정 원칙에 따라 성과지표의 수가 509개로 대폭 감소하였음.

[2022~2024년도 성과목표관리 현황]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022	58	179	473	1,047
2023	58	179	473	1,068
2024	60	187	476	509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기존 체계의 성과관리 대상 사업수 과다 문제를 해소하여 성과관리 부담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경감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핵심적 성과목표에 역량을 결집하게 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의 미시적 지표(예산지원건수 등)에서 국민체감형 지표(청년 고용률, 수출액 등)로 대체하여 부처의 재정성과 파악이 용이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세부사업 단위의 심사가 기본이 되며, 더 나아가 내역사업 단위까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과관리의 대상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예·결산 심사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연계시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국회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고, 성과에 대한 정보를 배제한 채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게 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됨은 물론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됨.

이로 인해 성과관리의 목표인 성과정보의 예산편성으로의 환류가 어렵고, 환류를 하더라도 프로그램 중 어느 단위사업, 어느 세부사업에 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성과정보의 적절한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재정건전성

가. 개 요

(1)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수입은 594.5조원으로 예산 대비 17.7조원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예산 대비 18.6조원 감소한 638.0조원을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GDP 대비 △1.7%)로 예산 대비 0.9조원 개선되고 전년 대비 6.8조원 악화되었음.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61.2조원 흑자(GDP 대비 2.4%)로 예산 대비 14.0조원, 전년 대비 11.0조원 각각 개선되었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4.8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나타났으며, 적자규모는 예산 대비 13.1조원, 전년 대비 17.7조원 각각 악화되었음.

[2024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총수입	573.9	612.2	594.5	△17.7	20.5
Ⅱ. 총지출	610.7	656.6	638.0	△18.6	27.3
Ⅲ. 통합재정수지	△36.8	△44.4	△43.5	0.9	△6.8
(GDP 대비)	(△1.5)	(△1.8)	(△1.7)	(0.1)	(△0.2)
Ⅳ.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3	47.2	61.2	14.0	11.0
(GDP 대비)	(2.1)	(1.9)	(2.4)	(0.5)	(0.3)
Ⅴ. 관리재정수지	△87.0	△91.6	△104.8	△13.1	△17.7
(GDP 대비)	(△3.6)	(△3.6)	(△4.1)	(△0.5)	(△0.5)

자료: 기획재정부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기금별로 보면,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1.5조원 흑자로 예산 대비 0.5조원 악화되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0.2조원 개선되었음. 국민연금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지는 각각 59.0조원, 1.3조원 흑자를 기록해 예산 대비 각각 15.4조원, 0.3조원 개선되었고, 전년 대비로는 각각 10.6조원, 0.2조원 개선되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지는 0.6조원 적자를 기록해 예산에 비해서는 1.2조원 악화되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2024회계연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 합 계	50.3	47.2	61.2	14.0	11.0
○고용보험기금	1.4	2.0	1.5	△0.5	0.2
○국민연금기금	48.4	43.6	59.0	15.4	1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6	0.7	△0.6	△1.2	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	0.9	1.3	0.3	0.2

자료: 기획재정부

(2) 국가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이며, 여기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관리기금 및 지방정부 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됨.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및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같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의미함.[1)]

1)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만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발행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부채의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고 있음.[2)]

[부채의 유형별 개념 및 활용]

유형	규모('23년)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126.8조원 (46.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217.3조원 (50.7%)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673.3조원 (69.7%)	D2 + 비금융 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4.5.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GDP 대비 46.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20.5조원 적고 전년 대비 48.5조원 증가한 것임.[3)]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4)]로 구성되고, 이 중 중앙정

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회계·기금을 포괄하나, 중앙정부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하고 있음.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국가채무 항목 외에 미지급금·예수금 및 선수금 등 발생주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며,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됨.
공공부문 부채(D3)는 부채항목은 일반정부 부채(D2)와 동일하나,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괄하여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3)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4년 지방정부 순채무 잠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정부 순채무 확정치에 따라 2024년 국가채무 확정 규모도 변동될 수 있음.

4) 지방정부 순채무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됨.

부 채무가 1,141.2조원으로 국가채무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21.9조원 적고 전년 대비로는 48.6조원 증가하였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지방정부 순채무는 잠정적으로 34.1조원으로 예산 기준보다 1.3조원이 많고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할 전망임.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잠정)	1,126.8	1,195.8	1,175.2	△20.5	48.5
(GDP 대비, %)	(46.8)	(47.4)	(46.0)	(△1.5)	(△0.8)
○ 중앙정부 채무(A)	1,092.5	1,163.0	1,141.2	△21.9	48.6
■ 국 채	1,091.1	1,161.7	1,139.8	△21.9	48.7
- 국고채권	998.0	1,046.0	1,047.9	1.9	49.9
- 국민주택채권	81.6	83.7	79.1	△4.6	△2.5
- 외평채권(외화)	11.5	32.0	12.8	△19.2	1.3
■ 차입금	1.2	1.2	1.2	0.0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2	△0.0	△0.0
○ 지방정부 순채무(B)	34.3	32.8	34.1	1.3	△0.2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됨.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보면, 적자성 채무가 전년 대비 88.9조원 증가한 815.4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성 채무는 전년보다 40.5조원 감소한 359.8조원으로 나타났음.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가 756.7조원으로 예산 대비 23.4조원, 전년 대비 96.6조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금융성 채무 중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무는 210.3조원으로 예산 대비 43.1조원, 전년 대비 40.7조원 각각 감소하였고, 서민주거 안정 등 채무는 149.5조원으로 예산 대비 0.6조원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126.8	1,195.8	1,175.2	△20.5	48.5
○ 적자성 채무(A)	726.4	792.3	815.4	23.1	88.9
(구성비)	(64.5)	(66.3)	(69.4)	(3.1)	(4.9)
- 일반회계적자보전	660.1	733.3	756.7	23.4	96.6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66.4	58.9	58.7	△0.3	△7.7
○ 금융성 채무(B)	400.3	403.5	359.8	△43.7	△40.5
(구성비)	(35.5)	(33.7)	(30.6)	(△3.1)	(△4.9)
- 외환시장 안정	251.0	253.4	210.3	△43.1	△40.7
- 서민주거 안정 등	149.4	150.1	149.5	△0.6	0.2

주) 지방정부순채무(2023년 잠정치 34.2조원)는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국채전환 등'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중앙정부 채무 중 국채는 전년 대비 48.7조원 증가한 1,139.8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권은 전년 대비 49.9조원 증가한 1,047.9조원으로 전체 국채의 91.9%를 차지하고 있음.

국고채권 중에서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이 756.7조원으로 전년 대비 96.6조원 증가하였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권이 197.5조원으로 전년 대비 42.0조원 감소하였으며, 그 밖에 공적자금상환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국고채권이 전년보다 4.8조원 감소한 93.6조원임.

[2024년 국채 종류별 세부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3		2024		증감(B-A)
	규모(A)	구성비	규모(B)	구성비	
▣ 국 채	1,091.1	100.0	1,139.8	100.0	48.7
ㅇ 국고채권	998.0	91.5	1,047.9	91.9	49.9
일반회계(적자보전)	660.1	60.5	756.7	66.4	96.6
외국환평형기금(예탁)	239.5	22.0	197.5	17.3	△42.0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98.4	9.0	93.6	8.2	△4.8
ㅇ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5	1.1	12.8	1.1	1.3
외화표시	11.5	1.1	12.8	1.1	1.3
ㅇ 국민주택채권	81.6	7.5	79.1	6.9	△2.5
제1종 국민주택채권	81.6	7.5	79.1	6.9	△2.5
제2종 국민주택채권	0.0	0.0	0.0	0.0	△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5.5.

또한 국채 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화표시) 발행규모는 12.8조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하였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실적이 7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원 감소하였음.

2024년 말 현재 차입금은 1.2조원으로 전액 국내차입금이며, 전년과 항목·규모 및 구성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2024년 차입금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3		2024		증감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차입금	1.2	100.0	1.2	100.0	-
ㅇ 국내차입금	1.2	100.0	1.2	100.0	-
국민체육진흥기금	1.0	79.7	1.0	79.7	-
근로복지진흥기금	0.1	4.1	0.1	4.1	-
기술보증기금	0.2	16.2	0.2	16.2	-

주) 해외차입금은 2016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5.5.

2024회계연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전년 대비 0.04조원 감소한 0.16조원으로, 이는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 공여협정 이행에 따라 0.04조원이 감소한 것임.

[2024년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3		2024		증감(B-A)
	규모(A)	구성비	규모(B)	구성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0.20	100.0	0.16	100.0	△0.04
ㅇ 일반회계	0.14	72.2	0.11	66.0	△0.04
기획재정부	0.14	72.2	0.11	66.0	△0.04
ㅇ 특별회계	0.05	27.8	0.05	34.0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0.05	27.8	0.05	34.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5.5

(3)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92조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5)]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매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6)]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09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2010년 학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신규보증 등으로 2011년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각 보증채무의 상환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감소추세를 지속하여 2023년 10.5조원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이후 202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신규보증이 시작되어 11.0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증채무	32.8	33.0	29.2	26.4	24.2	21.1	17.0	14.8	12.5	10.9	10.6	10.5	11.0
(GDP 대비)	(2.4)	(2.3)	(1.9)	(1.7)	(1.5)	(1.2)	(1.0)	(0.8)	(0.6)	(0.5)	(0.5)	(0.4)	(0.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5.5.

2024년 말 현재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11.0조원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채무 잔액이 10.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0.6조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2조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0.4조원임.

---

5)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국가보증채무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보증채무	12.5	10.9	10.6	10.5	11.0
(GDP대비)	(0.6)	(0.5)	(0.5)	(0.4)	(0.4)
ㅇ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5	-	-	-	-
ㅇ 한국장학재단채권	10.5	10.2	9.9	10.0	10.4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5	0.8	0.7	0.5	0.2
ㅇ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	-	-	0.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5.5.

나. 검토의견

(1)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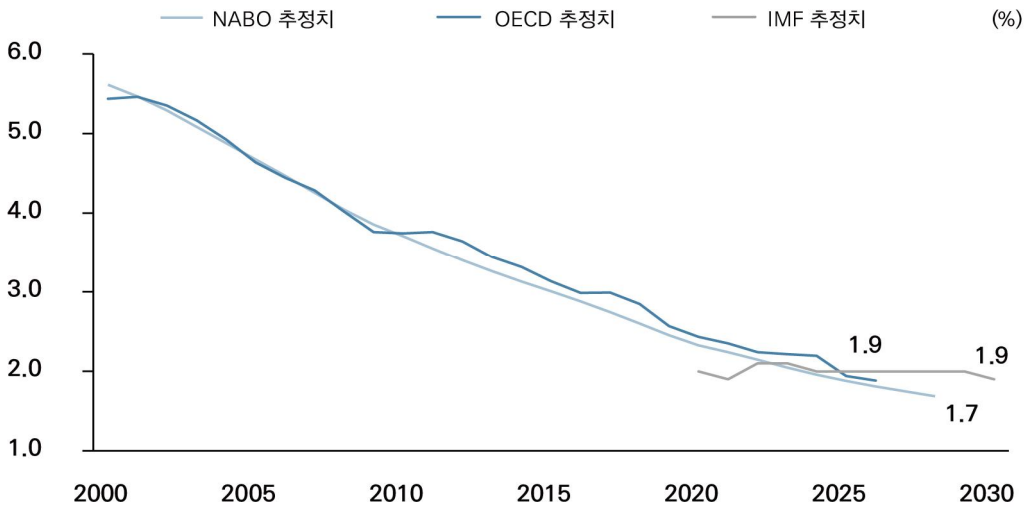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고령화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재정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지출의 정비 및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잠재성장률이란 한 경제의 주어진 기술여건과 생산요소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잠재GDP)의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3년 2.1%에서 2024년 2.0%, 2025년 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1.9%에서 2028년 1.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IMF는 2025년 2.0%, 2030년 1.9%로, OECD는 2025년 1.9%, 2026년 1.9%로 전망하여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7)]

7)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경제」, 2025.7.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



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까지, OECD는 2026년까지, IMF는 2030년까지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경제」, 2025.7.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2023.12.)에 근거한 인구 전망을 보면, 인구추계 중위에 따른 총인구는 2025년 5,168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2년에 3,622만명으로 전망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5년 3,591만명(총인구 대비 69.5%)에서 2072년 1,658만명(45.8%)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51만명(총인구 대비 20.3%)에서 2072년 1,727만명(47.7%)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인구추계 가정별 주요 인구 전망]

(단위: 만명)

구분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총인구	저위	5,150	5,051	4,774	4,333	3,742	3,017
	중위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고위	5,188	5,215	5,244	5,095	4,740	4,282
생산연령인구	저위	3,578	3,376	2,814	2,276	1,813	1,334
	중위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고위	3,604	3,457	2,993	2,623	2,338	2,007
고령인구	저위	1,048	1,280	1,657	1,784	1,723	1,543
	중위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고위	1,055	1,314	1,770	1,992	2,008	1,905

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작 시점은 2022년이나 장기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25~2072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국세수입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로 국세외수입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와 사회복지 지출 등 의무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큼.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

(단위: 조원, %)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총수입	650.6	731.0	849.2	893.0	899.7	930.2	0.8	2.6
(GDP 대비 비율)	(24.5)	(24.9)	(24.7)	(23.7)	(22.3)	(22.0)	-	-
- 국세수입	380.7	443.8	533.9	589.1	629.4	656.4	1.2	3.1
(GDP 대비 비율)	(14.3)	(15.1)	(15.5)	(15.6)	(15.6)	(15.5)	-	-
- 국세외수입	269.9	287.2	315.3	303.9	270.3	273.8	0.0	1.9
(GDP 대비 비율)	(10.2)	(9.8)	(9.2)	(8.1)	(6.7)	(6.5)	-	-
총지출	676.3	784.9	1,010.8	1,163.1	1,283.8	1,418.5	1.6	3.5
(GDP 대비 비율)	(25.5)	(26.7)	(29.4)	(30.9)	(31.9)	(33.6)	-	-
- 의무지출	368.0	453.7	598.5	712.0	801.6	912.8	2.0	3.9
(GDP 대비 비율)	(13.9)	(15.4)	(17.4)	(18.9)	(19.9)	(21.6)	-	-
(총지출 대비 비중)	(54.4)	(57.8)	(59.2)	(61.2)	(62.4)	(64.3)	-	-
- 재량지출	308.3	331.2	412.3	451.1	482.2	505.7	1.1	2.9
(GDP 대비 비율)	(11.6)	(11.3)	(12.0)	(12.0)	(12.0)	(12.0)	-	-
(총지출 대비 비중)	(45.6)	(42.2)	(40.8)	(38.8)	(37.6)	(35.7)	-	-
통합재정수지	△25.7	△53.9	△161.7	△270.2	△384.0	△488.3	-	-
(GDP 대비 비율)	(△1.0)	(△1.8)	(△4.7)	(△7.2)	(△9.5)	(△11.6)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9.8	45.0	△5.6	△76.6	△157.1	△217.6	-	-
(GDP 대비 비율)	(2.3)	(1.5)	(△0.2)	(△2.0)	(△3.9)	(△5.2)	-	-
관리재정수지	△85.5	△98.9	△156.1	△193.6	△226.9	△270.7	-	-
(GDP 대비 비율)	(△3.2)	(△3.4)	(△4.5)	(△5.1)	(△5.6)	(△6.4)	-	-
국가채무	1,270.4	1,623.8	2,763.8	4,057.4	5,476.5	7,303.6	3.8	5.7
(GDP 대비 비율)	(47.8)	(55.3)	(80.3)	(107.7)	(136.0)	(173.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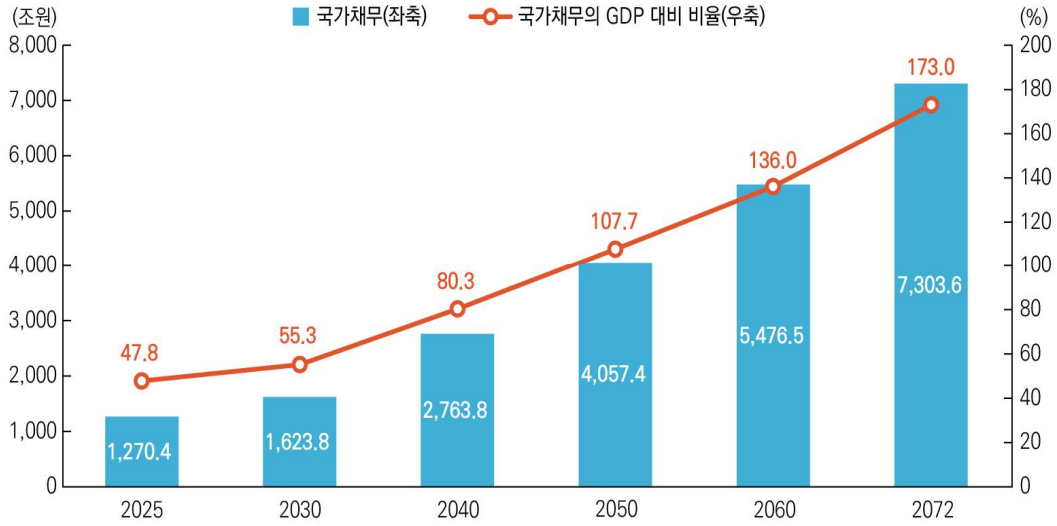
주 1) 전망액은 2025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2025년 650.6조원에서 2072년 930.2조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5년 676.3조원에서 2072년 1,418.5조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3조원 적자(GDP 대비 △11.6%)로 확대되고,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5.5조원 적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7조원 적자(GDP 대비 △6.4%)로 확대될 전망임.[8)]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국가채무는 2025년 1,270.4조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원(GDP 대비 173.0%)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9)]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전망]



주) 전망액은 2025년 불변가격(인구 중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재정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지출의 정비 및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9)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되어 국가채무 증가(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2) 관리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2025년 2차례의 추경으로 △4.2%까지 악화되고 있으므로, 새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운용방향 등을 명확히 공표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예산 대비 17.7조원 감소한 594.5조원이며, 총지출은 예산 대비 18.6조원 감소한 638.0조원임. 예산 대비 총수입 감소분보다 총지출 감소분이 더 큼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대비 0.9조원 개선된 43.5조원 적자(GDP 대비 △1.7%)를 기록하였음.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예산 대비 흑자규모가 14.0조원 증가한 61.2조원을 나타냄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예산 대비 13.1조원이 악화된 104.8조원(GDP 대비 △4.1%)을 기록하였음.

[2024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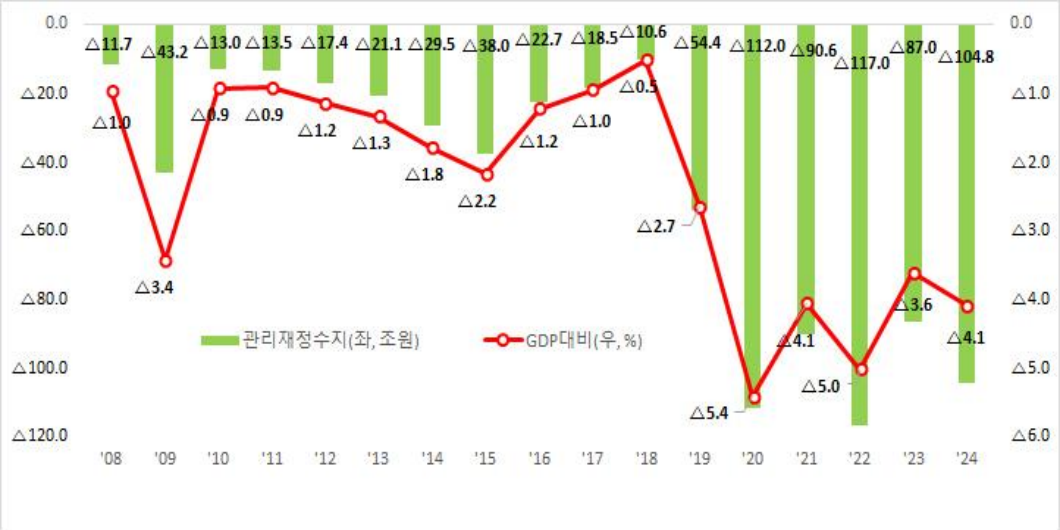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Ⅰ. 총수입	573.9	612.2	594.5	△17.7	20.5
Ⅱ. 총지출	610.7	656.6	638.0	△18.6	27.3
Ⅲ. 통합재정수지	△36.8	△44.4	△43.5	0.9	△6.8
(GDP 대비)	(△1.5)	(△1.8)	(△1.7)	(0.1)	(△0.2)
Ⅳ.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3	47.2	61.2	14.0	11.0
(GDP 대비)	(2.1)	(1.9)	(2.4)	(0.5)	(0.3)
Ⅴ. 관리재정수지	△87.0	△91.6	△104.8	△13.1	△17.7
(GDP 대비)	(△3.6)	(△3.6)	(△4.1)	(△0.5)	(△0.5)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3년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2024년 예산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6%로 전망하였으나, 2024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총수입의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1%로 당초 전망 대비 0.5%p 악화되었고, 전년에 비해서도 0.5%p 악화되었음.

[관리재정수지 추이]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0%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요내용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10] 이에 따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5년 이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0%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을 밝하고 있음.

[중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 관리재정수지	△91.6	△77.7	△75.8	△73.1	△72.2
(GDP 대비)	(△3.6)	(△2.9)	(△2.7)	(△2.5)	(△2.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9.

10) [재정준칙 주요내용]

① 예산안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
② 경기침체·대규모 실업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적용 면제(추경요건과 동일)
③ 지방교부세(금) 정산·공적자금 상환 후 세계잉여금 채무상환비율 상향(30→50%), 적용 면제 시 교부금 정산·공적자금 상환 후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2024.8.14.) 기준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2차례의 추경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2.8%였으나, 1차 추경에서 △3.3%, 2차 추경에서 △4.2%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미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태임.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2025년 본예산	2025년 1회 추경(A)	2025년 2회 추경		증감
			정부안(B)	국회확정(C)	1회대비 (C-A)
◇ 총수입	651.6	652.8	642.4	642.4	△10.4
(증가율)	(6.4)	(6.6)	(4.9)	(4.9)	
◇ 총지출	673.3	687.1	702.0	703.3	+16.2
(증가율)	(2.5)	(4.6)	(6.9)	(7.1)	
■ 통합재정수지	△21.7	△34.3	△59.6	△60.8	△26.6
(GDP대비,%)	(△0.8)	(△1.3)	(△2.2)	(△2.3)	
■ 관리재정수지	△73.9	△86.4	△110.4	△111.6	△25.2
(GDP대비,%)	(△2.8)	(△3.3)	(△4.2)	(△4.2)	
■ 국가채무	1,273.3	1,280.8	1,300.6	1,301.9	21.1
(GDP대비,%)	(48.1)	(48.4)	(49.0)	(49.1)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5.7.

내수소비 둔화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문제와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새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운용방향 등을 명확히 공표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의 증가속도 완화 필요

국가채무 중에서 국민의 조세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채무는 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자산이 확보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됨.

‘외환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등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현금자산 등의 대응자산이 있어 적자성 채무보다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결국 미래세대의 국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할 수 밖에 없음.

[2015~2024년 국가채무 성질별 변동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채무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7	1,126.7	1,175.2
(GDP 대비 %)	(34.0)	(34.2)	(34.1)	(33.9)	(35.4)	(41.1)	(43.7)	(45.9)	(46.9)	(46.1)
적자성 채무	330.8	359.9	374.8	379.2	407.6	512.7	597.5	676.3	726.4	815.4
(비중)	(55.9)	(57.4)	(56.8)	(55.7)	(56.4)	(60.6)	(61.6)	(63.3)	(64.5)	(69.4)
일반회계 적자보전	240.1	271.3	289.6	300.4	334.7	437.5	523.1	605.8	660.1	756.7
(비중)	(40.6)	(43.3)	(43.9)	(44.1)	(46.3)	(51.7)	(53.9)	(56.7)	(58.6)	(64.4)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90.7	88.6	85.1	78.8	72.9	75.2	74.4	70.5	66.3	58.7
(비중)	(15.3)	(14.1)	(12.9)	(11.6)	(10.1)	(8.9)	(7.7)	(6.6)	(5.9)	(5.0)
금융성 채무	260.6	267.0	285.4	301.3	315.6	333.9	373.2	391.3	400.3	359.8
(비중)	(44.1)	(42.6)	(43.2)	(44.3)	(43.6)	(39.4)	(38.4)	(36.6)	(35.5)	(30.6)
외환시장 안정	198.3	209.8	222.3	234.9	247.2	256.4	263.8	265.7	251.0	210.3
(비중)	(33.5)	(33.5)	(33.7)	(34.5)	(34.2)	(30.3)	(27.2)	(24.9)	(22.3)	(17.9)
서민주거 안정 등	62.3	57.2	63.1	66.4	68.5	77.5	109.3	125.6	149.4	149.5
(비중)	(10.5)	(9.1)	(9.6)	(9.8)	(9.5)	(9.2)	(11.3)	(11.8)	(13.3)	(12.7)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의 국가채무의 성질별 변동 현황을 보면,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15년 44.1%에서 2024년 30.6%로 감소한 반면, 적자성 채무 비중은 55.9%에서 69.4%로 13.5%p 증가하였음. 특히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40.1조원에서 756.7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국가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도 40.6%에서 64.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5년 2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인해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71.0%까지 증가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2024년 756.7조원에서 2025년 871.7조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임.

[2023~2025년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 국가채무	1,126.8	1,175.2	1,273.3	1,280.8	1,301.9
○ 적자성 채무	726.4	815.4	879.5	900.9	924.8
(비중, %)	(64.5)	(69.4)	(69.1)	(70.3)	(71.0)
- 일반회계 적자보전	660.1	756.7	824.6	847.8	871.7
○ 금융성 채무	400.3	359.8	393.9	379.9	377.1
(비중, %)	(35.5)	(30.6)	(30.9)	(29.7)	(29.0)

주)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항목만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액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2021년 18.2조원이었던 이자상환액은 2024년 27.7조원으로 52.1%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2차례의 추경으로 30.4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임.

[2021~2025년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국고채 이자상환	182,256	201,202	240,308	277,246	299,779	301,206	303,935

주) 2021~2024년 결산 기준, 2025년 예산 기준
자료: 각 연도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고 향후에도 다른 국가채무 유형보다 증가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국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증가속도 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국가채무는 1,512.0조원으로, 이 중 72.3%가 적자성 채무로 전망되며, 2024년 대비 2028년까지 적자성 채무는 36.2% 증가하고, 같은 기간 전체 국가채무는 26.5%, 금융성 채무는 6.7%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예산	전망				
□ 국가채무	1,126.8	1,195.8	1,195.1	1,277.0	1,353.9	1,432.5	1,512.0
○ 적자성 채무	726.4	792.3	802.0	883.4	955.0	1,024.2	1,092.7
(비중, %)	(64.5)	(66.3)	(67.1)	(69.2)	(70.5)	(71.5)	(72.3)
○ 금융성 채무주)	400.3	403.5	393.0	393.6	398.9	408.3	419.3
(비중, %)	(35.5)	(33.7)	(32.9)	(30.8)	(29.5)	(28.5)	(27.7)

주) 통계의 연속성을 위해 2024년 결산치 대신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국가채무관리계획」. 2024.9.

(4) 일반정부 부채(D2)의 증가속도를 고려한 국가채무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은 아니나, 세입여건의 악화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60.1조원 증가한 1,217.3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50.7%이며, 2019년 이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11]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60.1조원)는 국고채 증가(58.6조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에서 기인함.

[연도별 일반정부 부채(D2)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810.7	39.7	945.1	45.9	1,066.2	48.0	1,157.2	49.8	1,217.3	50.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11)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감(%p): (2019)1.9 (2020)6.2 (2021)2.1 (2022)1.8 (2023)0.9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3년 50.7%로 프랑스(109.9%), 일본(249.7%), 영국(100.0%), 미국(118.7%)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2019년 39.7%에서 2023년 50.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세입여건은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주요 국가의 2019~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단위: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46.7	57.0	55.4	50.3	49.0
캐나다	90.2	118.2	113.5	107.4	107.5
핀란드	65.2	75.3	73.1	73.9	77.0
프랑스	97.6	114.6	112.6	111.1	109.9
독일	58.6	67.9	67.9	64.8	62.7
이탈리아	133.6	154.1	145.5	138.1	134.6
일본	236.4	258.4	253.7	256.3	249.7
한국	**39.7**	**45.9**	**48.0**	**49.8**	**50.7**
포르투갈	116.6	134.9	124.5	112.4	99.1
스페인	97.6	119.2	115.6	109.4	105.0
스웨덴	35.7	40.3	36.8	33.8	36.4
영국	85.7	105.8	105.1	99.6	100.0
미국	108.0	131.8	124.5	118.6	118.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또한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0.7%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 국가의 2023~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전망치]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스웨덴	31.5	32.6	33.7	33.9	33.2	32.6	31.8	30.9
미국	119.0	120.8	122.5	123.7	124.9	125.9	127.0	128.2
독일	62.9	63.9	65.4	67.0	68.5	70.4	72.5	74.9
이탈리아	134.6	135.3	137.3	138.5	138.6	138.2	137.7	137.7
한국	**50.7**	**52.5**	**54.5**	**55.7**	**56.6**	**57.5**	**58.4**	**59.2**
캐나다	107.7	110.8	112.5	110.9	109.4	107.9	106.2	104.1
프랑스	109.7	113.1	116.3	119.1	121.6	123.9	126.1	128.4
일본	240.0	236.7	234.9	233.7	232.1	231.2	231.1	231.7
영국	100.4	101.2	103.9	105.4	106.1	106.5	106.5	106.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4.),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참고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3조원(GDP 대비 69.7%)으로 전년(1,588.7조원) 대비 84.6조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율은 1.3%p 증가하였음.

[공공부문 부채(D3) 연도별 추이 및 세부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1,132.6	55.5	1,280.0	62.2	1,427.3	64.2	1,588.7	68.4	1,673.3	69.7
■ 일반정부 부채(D2)	810.7	39.7	945.1	45.9	1,066.2	48.0	1,157.2	49.8	1,217.3	50.7
■ 비금융공기업	395.8	19.4	408.1	19.8	439.7	19.8	517.4	22.3	545.4	22.7
■ 내부거래	△73.9	△3.6	△73.3	△3.6	△78.6	△3.5	△85.9	△3.7	△89.5	△3.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4.12.

한편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12)]

12)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공공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굵은 글씨는 자본잠식기관)
공기업 (21개)	손실보전규정有 (4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손실보전규정無 (1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14개)	손실보전규정有 (7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규정無 (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4.9.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 ·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4. 기금 결산

가. 개 요

(1) 기금 총괄 현황

기금이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임.[1] 2024년에 편성된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총 68개로, 농림축산식품부(7개), 기획재정부(7개), 금융위원회(6개), 문화체육관광부(6개) 등 22개 소관 부처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2024년 부처별 기금관리현황]

(단위: 개)

소관 부처	농림축산 식품부	기획 재정부	금융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환경부	고용 노동부	산업통상 자원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건 복지부	중소벤처 기업부	국토 교통부
기금 수	7	7	6	6	5	5	4	4	3	3	2
소관 부처	교육부	국방부	여성 가족부	국가 보훈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인사 혁신처	해양 수산부	국가 유산청	대법원
기금 수	2	2	2	2	2	1	1	1	1	1	1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금은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사회보험성기금 및 계정성기금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2024년에는 각 유형별로 사업성기금 49개, 금융성기금 8개, 사회보험성기금 6개, 계정성기금 5개가 운용됨.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98)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024년 기금유형별 현황]

구 분	기 금 명		
사업성 기금 (49개)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기후대응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국가유산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금융성 기금 (8개)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회보험성 기금 (6개)	- 고용보험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계정성 기금 (5개)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복권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회계연도 68개 기금 결산 결과 전체 수입·지출액은 1008.5조원으로 2024년 당초 기금계획 대비 21.8조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18.8조원이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실적 (A)	2024년		계획대비 (C-B)	2023년 대비 (C-A)
			기금계획(B)	결산액(C)		
수입	자체수입	214.3	231.9	242.5	10.5	28.1
	정부내부수입	248.1	312.5	290.5	△22.0	42.4
	차입금	183.5	198.9	182.1	△16.9	△1.5
	여유자금회수	243.8	287.0	293.5	6.5	49.7
합 계		889.8	1,030.4	1,008.5	△21.8	118.8
지출	사업비	178.7	202.6	193.5	△9.0	14.9
	기금운영비	2.9	3.0	2.9	△0.1	0.0
	정부내부지출	268.9	342.7	337.4	△5.3	68.5
	차입금원금상환	139.0	144.7	143.6	△1.2	4.6
	차입금이자상환	26.9	32.2	31.5	△0.7	4.6
	여유자금 운용	273.4	305.2	299.6	△5.6	26.2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 기금 유형별 현황

(가) 사업성기금

사업성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그 목적에 있어 특별회계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함. 2024회계연도 결산 대상 사업성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경강증진기금 등 49개임.

2024회계연도 결산상 사업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4년 당초 계획 182조 8,343억원 대비 23조 4,151억원(△12.8%) 감소한 159조 4,192억원임. 각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주택도시기금 84조 1,200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조 3,096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조 9,70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조 4,03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5조 2,256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20년 141조 2,295억원에서 2024년 159조 4,192억원으로 12.1%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지출규모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출규모 증가(2020년 74조 3,134억원→2024년 84조 1,200억원), ② 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사업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규모 증가(2020년 5조 6,533억원→2024년 8조 9,706억원) 등에 주로 기인함.

[최근 5년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1,412,295	1,658,798	1,976,963	1,497,304	1,828,343	1,594,192
과학기술진흥기금	2,665	2,685	1,220	1,174	1,888	1,843
관광진흥개발기금	13,335	17,844	15,845	15,955	16,222	13,892
국민건강증진기금	41,168	43,007	42,504	45,238	45,581	45,444
국민체육진흥기금	27,182	29,739	32,080	33,764	34,051	32,781
국유재산관리기금	16,082	16,597	22,426	26,829	32,705	30,684
국제교류기금	1,277	1,239	2,108	1,993	1,852	2,402
국제질병퇴치기금	572	100	591	416	1,022	965
군인복지기금	7,292	7,359	7,845	8,224	8,518	8,752
근로복지진흥기금	4,481	4,220	4,814	4,257	5,011	4,604
금강수계관리기금	1,512	1,618	1,769	1,852	1,888	1,817
기후대응기금	-	-	20,465	22,267	22,873	23,05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07	2,441	2,415	2,434	2,794	2,442
남북협력기금	7,941	4,929	3,913	6,629	15,841	7,965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지출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743	22,228	27,668	21,886	24,196	21,99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93	1,776	2,132	4,002	3,704	4,085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26,475	24,186	24,062	27,817	30,194	29,703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1,359	-	-	-	-	-
농지관리기금	31,845	27,962	34,669	31,533	40,063	28,682
대외경제협력기금	11,427	13,126	13,082	15,151	22,087	20,193
문화예술진흥기금	4,480	4,230	4,392	5,756	5,798	4,933
국가유산보호기금	1,550	1,550	1,678	1,833	1,700	1,89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6,533	64,120	70,309	79,583	92,907	89,706
방송통신발전기금	13,109	14,530	14,167	11,687	9,888	9,78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44	1,179	1,138	1,337	1,371	1,424
보훈기금	3,161	3,660	3,505	4,021	6,004	2,99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359	1,236	1,333	1,369	2,314	1,784
사학진흥기금	4,035	2,965	4,245	3,949	3,073	3,79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377	2,508	1,391	1,409	2,024	1,922
석면피해구제기금	600	401	369	413	602	75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9,516	240,256	496,696	68,949	75,085	84,035
수산발전기금	7,606	8,275	7,673	8,599	8,434	8,78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310	1,320	1,462	1,497	1,487	1,474
양성평등기금	4,398	5,013	6,371	6,902	8,209	8,399
언론진흥기금	328	420	485	587	480	75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146	1,318	1,528	1,600	1,613	1,692
영화발전기금	2,272	2,021	1,630	1,671	1,378	689
원자력기금	4,528	4,717	5,108	5,390	5,565	5,470
응급의료기금	12,459	3,926	5,750	6,858	6,617	7,864
임금채권보장기금	10,518	8,443	7,754	9,752	9,728	10,06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66	2,548	2,606	2,637	2,654	2,67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472	6,721	5,326	4,262	5,886	3,65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135	17,178	19,257	20,960	20,048	23,044
전력산업기반기금	44,775	57,235	64,917	55,181	45,010	52,568
정보통신진흥기금	14,735	17,675	19,942	14,722	13,797	11,704
주택도시기금	743,134	831,291	848,237	778,553	1,054,003	841,20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4,929	113,927	100,757	107,108	114,101	113,096
지역신문발전기금	111	115	114	120	98	125
청소년육성기금	1,535	1,559	1,669	1,806	1,707	1,777
축산발전기금	9,675	10,588	11,154	11,168	9,621	9,130
한강수계관리기금	6,843	6,817	6,392	6,204	6,651	5,707

자료: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은 특정한 사업 수행 역할이 아닌 보증·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자산신용보증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무역보험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상 금융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4년 당초 계획 33조 5,498억원 대비 2조 3,563억원(△7.0%) 감소한 31조 1,935억원임. 각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신용보증기금 9조 4,449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조 4,432억원, 무역보험기금 5조 1,667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조 5,797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20년 28조 3,593억원에서 2024년 31조 1,935억원으로 10.0% 증가하였음.

[최근 5년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283,593	288,449	301,725	306,274	335,498	311,935
기술보증기금	29,811	34,802	31,877	36,861	31,543	36,48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025	21,474	17,592	14,865	20,196	20,57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78	682	533	542	631	631
무역보험기금	38,448	41,052	35,188	45,814	55,510	51,66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129	7,443	12,019	6,242	8,133	7,899
신용보증기금	103,620	104,013	124,294	104,651	114,703	94,44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8,896	38,742	43,457	49,046	55,810	54,43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2,986	40,241	36,765	48,253	48,972	45,797

자료: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연금성 기금과 사회 전반적인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 기금으로 구분됨. 2024회계연도 결산 대상 사회보험성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상 사회보험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4년 당초 계획 259조 3,631억원 대비 38조 7,394억원(14.9%) 증가한 298조 1,025억원임. 각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국민연금기금 215조 5,184억원, 공무원연금기금 30조 1,489억원, 고용보험기금 22조 679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조 5,92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20년 237조 2,119억원에서 2024년 298조 1,025억원으로 25.7% 증가하였음.

[최근 5년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2,372,119	2,675,204	2,506,955	2,688,556	2,593,631	2,981,025
고용보험기금	244,966	248,073	208,362	209,133	234,136	220,679
공무원연금기금	227,450	232,034	248,991	273,925	313,790	301,489
국민연금기금	1,640,734	1,912,467	1,752,350	1,906,386	1,667,459	2,155,184
군인연금기금	35,351	36,488	37,460	41,406	43,829	43,63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0,529	86,307	119,981	108,028	131,467	104,1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3,089	159,834	139,810	149,678	202,950	155,923

자료:「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계정성기금

계정성기금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함. 2024회계연도 결산 대상 계정성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복권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등 총 5개 기금임.

2024회계연도 결산 상 계정성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총계는 2024년 당초 계획 554조 6,144억원 대비 34조 7,978억원(△6.3%) 감소한 519조 8,166억원임. 각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총계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327조 4,110억원, 외국환평형기금 173조 92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020년 382조 1,274억원에서 2024년 519조 8,166억원으로 36.0% 증가하였음.

[최근 5년 계정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지출액
총 계	3,821,274	3,741,952	3,507,948	4,405,448	5,546,144	5,198,166
공공자금관리기금	2,687,740	2,682,553	2,507,576	2,854,129	3,286,068	3,274,110
공적자금상환기금	102,230	70,984	71,077	88,833	109,408	93,273
복권기금	65,350	71,941	76,412	78,729	84,156	84,354
양곡증권정리기금	12,673	2,256	5,407	10,563	15,311	15,504
외국환평형기금	953,281	914,218	847,476	1,373,194	2,051,201	1,730,925

자료:「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건 및 절차

「국가재정법」 제70조는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에 대해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과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우선 주요항목(분야·부문·프로그램)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2] 주요항목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범위 내 변경은 기금관리주체 자체변경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3]

한편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지출금액 변경은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또는 (3)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4]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일부 지출

---

2)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4)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항목을 변경하려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기금관리주체 자체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주요항목(프로그램) 지출금액이 법령상 변경범위 이내라도 일정 금액 이상 대규모 자체변경(협의변경) 지양 필요

주요항목(프로그램) 지출금액 변경이 10분의 2(또는 10분의 3)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부항목(세부사업) 변경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변경은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과 전혀 다르게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된 사례는 없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모두 자체변경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변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는 주요항목(프로그램) 변경액이 1조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세부항목(세부사업) 변경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총 35개가 있었음.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은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또는 30%) 내라고 하더라도 가령, 세부항목(세부사업) 변경액이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변경의 경우에는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은 1조 250억원 증액된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등 20개 사업이 있고, 당초 계획액 대비 1,000억원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은 1,321억원 감액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아차관’ 사업 등 15개 사업이 있음.

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24년 1,000억원 이상 증액변경(자체 또는 협의) 내역(세부사업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기금	세부사업	당초계획액	수정계획액	증감액	증감률
사업성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102,787	123,487	20,700	20.1%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원금상환	153,830	166,900	13,070	8.5%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6,120	46,370	10,250	28.4%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848	12,959	6,111	89.2%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융자)	45,469	50,565	5,096	11.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	45,498	48,198	2,700	5.9%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지급금 지급	4,747	7,272	2,525	53.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7,600	38,887	1,287	3.4%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6,089	7,284	1,196	19.6%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상환	10,850	12,025	1,174	10.8%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109,144	117,878	8,734	8.0%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급여지급	433,729	438,339	4,609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연금급여	44,845	48,408	3,563	7.9%
	군인연금기금	퇴직급여	35,240	38,267	3,027	8.6%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10,000	12,000	2,000	20.0%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	2,338	3,475	1,137	48.6%
금융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42,500	51,900	9,400	2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6,694	8,700	2,006	3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	3,303	4,303	1,000	30.3%
계정성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	816,765	966,384	149,618	18.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1,000억원 이상 감액변경(자체 또는 협의) 내역(세부사업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기금	세부사업	당초계획액	수정계획액	증감액	증감률
사업성	주택도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275,114	235,052	△40,062	△14.6%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645	106,714	△16,931	△13.7%
	방송통신발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950	424	△1,526	△78.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9,714	48,362	△1,352	△2.7%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아차관	8,499	7,178	△1,321	△15.5%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1,141	-	△1,141	△100.0%
사회보험성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21,761	17,151	△4,609	△2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주식매입	20,366	16,711	△3,655	△17.9%
	군인연금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2,181	164	△2,017	△92.5%
금융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1,118	19,042	△2,075	△9.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6,074	15,074	△1,000	△6.2%
계정성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기금 예탁	694,457	631,611	△62,846	△9.0%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232,982	211,911	△21,071	△9.0%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282,599	277,699	△4,900	△1.7%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644	7,844	△1,800	△18.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액 11조 9,405억원인 12.9%인 1조 5,346억원을 증액하여 13조 4,751억원으로 변경하였으나, 20% 이내에서 변경하였으므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그 세부사업 중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은 1조 250억원 증액되고, ‘전세임대(융자)’ 사업은 5,096억원 증액 변경되었음.

[2024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 결산]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세부사업	예산				결산
		당초(A)	수정(B)	C=B-A	C/A	
[1300] 임대주택지원(융자)		11,940,547	13,475,147	1,534,600	12.9	11,973,614
	[1333-402] 집주인임대주택	65,000	65,000	-	-	20,324
	[1333-404] 민간임대(융자)	1,477,009	1,477,009	-	-	1,373,062
	[1335-401] 행복주택(융자)	838,319	838,319	-	-	280,835
	[1336-401]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612,000	4,637,000	1,025,000	28.4	4,371,172
	[1337-401] 전세임대(융자)	4,546,931	5,056,531	509,600	11.2	4,878,890
	[1338-406] 통합공공임대(융자)	1,401,288	1,401,288	-	-	1,049,33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은 2조 702억원의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2024년 세부사업 변경이 다수 있었으나, 그 증감액이 상쇄되어 프로그램 계획액은 동일하였음.

세부사업별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아시아차관’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1,321억원 감액되고,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1,196억원 증액되었으며, ‘중동-CIS차관’은 212억원 증액되고, ‘중남미차관’은 87억원 감액 변경되었음.[6)]

6) 동 사업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역별 차관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대개도국 차관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가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별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으나, 2024년 결산결과를 보면 각 세부사업별로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결산]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				결산
			당초(A)	수정(B)	C=B-A	C/A	
[3300] 대외경제협력 지원			2,070,164	2,070,164	-	-	1,886,484
	[3331] 대개도국차관		2,031,979	2,031,979	-	-	1,848,544
		[301] 아시아차관	849,890	717,780	△132,110	△15.5	631,608
		[303] 아프리카차관	416,981	416,981	-	-	405,278
		[305] 중동-CIS차관	112,383	133,575	21,192	18.9	107,143
		[306] 중남미차관	43,864	35,206	△8,658	△19.7	23,849
		[309]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608,861	728,437	119,576	19.6	680,666
	[3337] 경협증진자금지원		1,470	1,470	-	-	1,431
		[301]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525	525	-	-	522
		[641]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945	945	-	-	909
	[3376] 대개도국차관지원		36,715	36,715	-	-	36,509
		[302] 사업진행컨설팅	30,182	29,032	△1,150	△3.8	30,916
		[632] 사업심사평가연구	4,027	5,177	1,150	28.6	3,741
		[633] 개발협력증진	2,506	2,506	-	-	1,8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문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국회의 계획안 심사 시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신규사업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집행실태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창작지원-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에서 당초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분담금 및 행사대행용역 선금 총 8억 7,0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8)]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음.

---

7)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는 「국가재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은 이전용 및 세목조정, 기금 자체변경, 불용예상액 활용, 비목 신설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한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의 변경으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8)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예술창작지원-국제예술교류지원' 계획액을 5억 1,5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조정을 통해 2억 8,000만원을 마련하였음.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관련비용 마련을 위한 기금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기금변경 재원		계획현액		비고
	세부사업-내역사업	금액	세부사업-내역사업	금액	
자체변경 ('24.9.19.)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515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515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비용 마련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제10차 총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어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득이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한국 개최 확정 후 구체적인 개최일정은 협상을 통해 정해졌으며, 그 동안 총회가 대체로 3년 주기로 개최되어 왔고[9] 직전 총회가 2023년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0차 총회는 2026년에 개최하기로 협상하고 관련 예산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4)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문제

일부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초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누적된 추세 정보에 기초하여 적정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 반복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에서 매년 대규모 증액 변경이 반복되고 있음. 2023년에는 당초 13억 5,000만원을 편성한 이후 총 373억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당초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255억원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당초 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2025년 7월 현재까지 총 463억원(제2회 추경 시 증액분 147억원 포함)을 증액 변경하였음.

9)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내역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개최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1	2014	2016	2019	2023	2025
개최국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남아공	호주	칠레	몰타	말레이시아	스웨덴	대한민국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예산	403억원 (본예산 30억* + 기금변경 373억)	282억원 (본예산 27억* + 기금변경 255억)	463억원 (기금변경 316억 + 추경 147억)
당초 수량	4.5만장	6.1만장	-
지원 수량	130만장	95만장	150만장
적용	전국 숙박시설	비수도권 숙박시설(서울・인천・경기 제외)	

주) 숙박할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 2023년 13억 5,000만원, 2024년 1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내내역사업 '여행가는 달 캠페인' 예산을 활용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는 2020년 9.6만명에서 2024년 14.3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던 2021년~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기금변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계획액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최근 5년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지원규모
	당초	수정							
2020년	8,500	16,000	3,430	19,430	9,203	8,770	1,457	47.4	9.6만명
2021년	11,000	-	8,770	19,770	7,328	7,381	5,061	37.1	8.6만명
2022년	11,000	-	7,381	18,381	13,492	1,955	2,934	73.4	10.1만명
2023년	9,900	14,900	1,956	16,855	15,185	891	779	90.1	14.1만명
2024년	9,900	15,900	891	16,791	14,233	807	1,751	84.8	14.3만명

주) 지원규모는 계획 기준이 아닌 실제 지원 실적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③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최근 연금급여 계획액 과소편성 후 증액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증액 규모는 2021년 303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3,562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확한 연금추계의 중요성 측면 또는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정할 필요가 있음.[10)]

[2021년~2024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연금급여 계획액 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당초)	계획액(변경)	증액규모	집행액
2021	3,407,725	3,438,025	30,300	3,437,337
2022	3,703,240	3,860,491	157,251	3,859,684
2023	4,108,274	4,378,413	270,139	4,362,354
2024	4,484,529	4,840,779	356,250	4,817,689

자료: 교육부

10)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매년 연금급여 계획액 변경이 반복되고 있어 연금급여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연금급여 계획액 과소 편성 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의무지출 비중,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지표에서도 오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현황에 대한 검토

(1) 개 요

(가) 현황

사업성기금의 경우, 재정사업의 수행이 기금운용의 목적으로 당해 수입을 당해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기금이 보유하는 여유자금[11]은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음.[12]

지난 5년간(2020~2024년) 49개 사업성기금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연간 평잔[13]규모는 50조원대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 평잔은 37조 727억원으로, 2022년 평잔 58조 4,890억원 대비 21조 4,167억원 감소하였고, 2024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 평잔은 37조 2,987억원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2020년 대비 18조 1,821억원의 여유자금이 감소하여(2020년 37조 9,771억원 → 2024년 18조 8,364억원) 여유자금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농지관리기금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4,183억 9,000만원의 여유자금이 감소하였음.

11)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임.

12) 다만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거나 장래에 지출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 수준까지 증대시키는 것이 이상적일 것임.

13) 1년간의 여유자금 규모의 평균

[2020~2025.5월말 기준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평잔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계	50,962,907	59,536,734	58,489,447	37,072,741	37,298,726	36,711,835
과학기술진흥기금	22,685	21,773	21,591	23,632	28,473	42,452
관광진흥개발기금	218,121	263,314	495,281	219267	139,484	140,900
국가유산보호기금	18,616	25,070	14,619	14,140	16,930	20,261
국민건강증진기금	443,027	503,767	483,972	796,718	492,171	486,459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894,736	945,102	1,234,649	1,695,494	2,575,382	2,921,401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31,985	24,712	21,146	24,838	25,905	27,621
국유재산관리기금	933,706	894,798	923,932	1,332,517	1,746,099	2,009,030
국제교류기금	74,198	52,905	61,532	79,527	80,424	81,858
국제질병퇴치기금	42,413	4,247	7,719	8,791	14,790	-
군인복지기금	785,381	689,039	692,918	752,318	793,974	880,597
근로복지진흥기금	124,814	96,134	123,292	103,111	81,932	108,844
금강수계관리기금	12,170	20,298	31,097	34,279	17,613	21,675
기후대응기금	-	-	151,410	176,694	226,709	274,78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766	6,125	5,673	6,046	5,522	7,299
남북협력기금	90,220	157,474	153,801	175,124	181,072	192,8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3,530	95,212	104,444	88,946	51,060	66,83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23,159	44,770	140,150	350,304	313,394	273,68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87,941	93,942	65,499	186,255	522,398	621,707
농지관리기금	737,000	585,070	1,059,040	280,160	318,610	245,260
대외경제협력기금	117,658	159,692	154,871	206,451	129,915	160,725
문화예술진흥기금	203,738	171,860	126,543	96,918	75,589	144,58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876,680	3,095,970	3,365,618	3,862,596	4,328,992	4,718,189
방송통신발전기금	153,061	109,778	132,535	152,503	155,561	167,2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497	8,522	17,771	43,367	40,340	40,939
보훈기금	119,717	135,132	129,358	112,483	103,029	102,21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2,922	82,609	56,797	86,686	123,219	156,365
사학진흥기금	113,254	52,328	77,429	102,492	106,530	106,85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71,326	63,407	32,843	43,752	39,878	37,773
석면피해구제기금	23,632	16,211	5,803	5,013	10,393	14,63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89,555	1,957,889	1,345,905	1,476,418	1,722,558	2,185,640
수산발전기금	169,212	114,175	135,300	134,273	221,852	182,67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0,355	53,509	79,608	88,154	51,515	52,060
양성평등기금	21,619	16,896	13,401	54,481	65,661	68,145
언론진흥기금	18,150	19,117	21,560	25,043	20,207	54,859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20,950	33,264	46,637	56,308	64,011	69,646
영화발전기금	89,792	62,285	60,093	55,247	24,571	32,833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2,722	15,597	11,402	7,382	28,887	30,497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95,073	113,205	148,871	181,432	203,359	208,814
응급의료기금	193,962	157,808	135,134	169,663	183,745	145,770
임금채권보장기금	721,458	664,085	640,946	555,898	370,210	339,37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7,928	204,203	141,767	101,459	106,031	43,609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173,831	150,469	145,332	93,818	61,317	36,25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156,281	1,376,260	1,381,229	1,420,346	1,592,939	1,646,640
전력산업기반기금	225,803	552,415	589,310	671,483	856,240	900,926
정보통신진흥기금	184,106	146,753	145,417	204,122	267,161	223,020
주택도시기금	37,977,159	45,041,034	43,064,716	20,227,954	18,836,429	16,514,63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56,753	113,182	101,451	103,237	100,456	105,353
지역신문발전기금	5,807	6,227	5,746	6,831	7,479	7,351
청소년육성기금	24,041	33,454	30,965	8,890	9,392	11,249
축산발전기금	128,389	68,963	149,482	163,360	88,746	68,926
한강수계관리기금	146,947	106,905	71,307	54,017	15,643	9,100

주) 2025.5월은 5월말 기준 최근 1년 평잔을 의미함
자료: 해당 부처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나) 여유자금비중 및 기금존치평가

사업성기금은 기금별로 그 운용목적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기금별로 각기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획일화된 기준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의 과잉·부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다만 기금의 1년 사업비 지출 대비 여유자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기금의 1년 지출규모에서 정부내부지출[14] 및 여유자금 운용[15]을 제외한 값[16] 대비 기금 여유자금 규모[17](이하 '여유자금비중'이라 함)의 비율과 변화 추이를 근거로 여유자금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것임.[18]

[기금 여유자금비중 산출식]

$$(\text{기금 여유자금비중}) = \frac{(n\text{회계연도 기금 여유자금})}{(n\text{회계연도 기금 주요지출})}$$

주 1) 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연중 운용평잔 기준
2) (기금 주요 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 기금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한 것은 정부내부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따라 그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기금이 여유자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음. 해당 예탁금을 기금 지출에 포함할 경우,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함에도 여유자금비중이 오히려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

15) 기금 지출에서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것은 여유자금 운용은 여유자금으로 납입되는 금액에 해당하여 여유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16) 즉, 기금의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 기금을 운용하는 제비용에 해당하는 기금운영비 및 차입금 원금 또는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임.

17) (n회계연도 기금 여유자금 평잔)/(n회계연도 기금지출총계 - n회계연도 정부내부거래)

18) 예를 들어, 어느 기금의 여유자금비중이 3이라는 것은, 동 기금은 1년치 지출규모(정부내부지출 제외)의 3배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여유자금비중이 3보다 큰 기금이 대다수라면, 동 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듬해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늘었더라도 사업비 증가로 인해 여유자금비중이 3 미만으로 감소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여유자금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이에 더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참조하였음. 정부는 2013년 기금존치평가시부터 "중기가용자산"[19]개념을 사용하여 기금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① 최근 5개년의 실적과 향후 3개년의 추계를 통해 기금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입액과 사업에 필요한 지출액을 활용하여 적정자산을 산출하고, ② 적정자산과 향후 3개년간 유동화가 가능한 순자산을 비교하여 자산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임.

(다) 기금별 여유자금비중 현황

2019년~2024년간 기금별 여유자금비중은 대체로 0.1~2.0배 사이에 분포하나, 2022년·2023년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과 같이 일시적인 사업지출 감소로 인해 여유자금비중이 급증하는 경우도 있음.

[2019~2024년 사업성기금별 여유자금비중]

(단위: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학기술진흥기금	0.46	0.37	0.22	0.21	0.21	0.31
관광진흥개발기금	0.29	0.17	0.22	0.41	0.20	0.12
국가유산보호기금	0.16	0.14	0.19	0.10	0.09	0.11
국민건강증진기금	0.07	0.12	0.13	0.13	0.21	0.1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0.77	0.60	0.55	0.69	1.04	1.70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65	1.41	1.07	0.96	1.14	1.06
국유재산관리기금	1.10	0.93	0.96	1.10	1.35	1.77
국제교류기금	1.53	1.28	0.82	0.85	1.02	0.84
국제질병퇴치기금	1.25	0.87	0.63	0.14	0.23	0.16
군인복지기금	1.41	1.45	1.33	1.29	1.24	2.23
근로복지진흥기금	0.73	0.47	0.34	0.39	0.41	0.38
금강수계관리기금	0.08	0.10	0.17	0.25	0.25	0.14
기후대응기금	-	-	-	0.08	0.08	0.1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05	0.04	0.03	0.02	0.03	0.02
남북협력기금	1.13	1.94	4.70	1.92	7.09	5.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12	0.06	0.04	0.04	0.04	0.0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0.46	2.43	0.30	106.90	489.94	1.96

19) 중기가용자산이란 3년 내에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임. 중기가용자산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지출수요 부족 시 유동화를 통해 기금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음.

(단위: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	0.03	0.04	0.03	0.07	0.20
농지관리기금	0.74	0.48	0.34	0.59	0.15	0.16
대외경제협력기금	0.13	0.13	0.13	0.12	0.14	0.06
문화예술진흥기금	0.55	0.63	0.50	0.31	0.24	0.1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8.18	16.72	18.29	21.66	20.85	18.96
방송통신발전기금	0.24	0.13	0.09	0.11	0.14	0.1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0.14	0.06	0.08	0.23	0.54	0.47
보훈기금	1.25	0.88	0.96	1.01	0.87	0.8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0.24	0.62	1.23	0.79	1.24	1.73
사학진흥기금	0.46	0.48	0.41	0.39	0.65	0.3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25	1.83	1.44	0.78	1.05	0.35
석면피해구제기금	0.62	1.10	0.62	0.18	0.13	0.2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12	0.05	0.09	0.03	0.37	0.35
수산발전기금	0.40	0.32	0.19	0.24	0.23	0.3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0.99	0.90	0.56	0.81	0.86	0.51
양성평등기금	0.06	0.05	0.04	0.02	0.09	0.09
언론진흥기금	0.73	0.83	0.93	1.04	1.27	1.0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0.12	0.26	0.42	0.53	0.62	0.72
영화발전기금	2.26	0.74	0.44	0.58	0.68	0.44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0.17	0.12	0.07	0.05	0.04	0.17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0.78	0.90	1.03	1.30	1.45	1.62
응급의료기금	0.41	0.17	0.67	0.48	0.68	0.28
임금채권보장기금	1.59	1.13	1.06	1.07	0.70	0.4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92	3.96	3.95	2.37	1.67	1.8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0.44	0.33	0.31	0.39	0.29	0.1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16	1.96	2.01	1.79	1.64	1.70
전력산업기반기금	0.12	0.09	0.20	0.22	0.27	0.40
정보통신진흥기금	0.28	0.14	0.10	0.08	0.16	0.27
주택도시기금	0.72	0.69	0.76	0.66	0.34	0.2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0.01	0.01	0.01	0.01	0.01	0.01
지역신문발전기금	0.77	0.68	0.70	0.68	0.81	0.88
청소년육성기금	0.20	0.18	0.25	0.21	0.06	0.06
축산발전기금	0.23	0.14	0.07	0.16	0.17	0.10
한강수계관리기금	0.30	0.28	0.20	0.14	0.10	0.03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검토의견

(가) 여유자금비중이 크거나 증가하고 있는 기금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여유자금비중이 1.0배를 초과하여 여유자금만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14개 기금임.

[2024년 여유자금비중 1.0 초과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8.18	16.72	18.29	21.66	20.85	18.96
남북협력기금	1.13	1.94	4.7	1.92	7.09	5.14
군인복지기금	1.41	1.45	1.33	1.29	1.24	2.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0.46	2.43	0.3	106.9	489.94	1.9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92	3.96	3.95	2.37	1.67	1.8
국유재산관리기금	1.1	0.93	0.96	1.1	1.35	1.7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0.24	0.62	1.23	0.79	1.24	1.73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0.77	0.60	0.55	0.69	1.04	1.7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16	1.96	2.01	1.79	1.64	1.7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0.78	0.9	1.03	1.3	1.45	1.62
언론진흥기금	0.73	0.83	0.93	1.04	1.27	1.08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65	1.41	1.07	0.96	1.14	1.06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9년에 비해 2024년 여유자금비중이 증가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21개 기금임. 그 중 2019년에 비해 2024년 여유자금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9개 기금임.

[2019년 이후 여유자금비중이 증가한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북협력기금	1.13	1.94	4.7	1.92	7.09	5.1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0.46	2.43	0.3	106.9	489.94	1.9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0.24	0.62	1.23	0.79	1.24	1.73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0.77	0.6	0.55	0.69	1.04	1.7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0.78	0.9	1.03	1.3	1.45	1.62
군인복지기금	1.41	1.45	1.33	1.29	1.24	2.2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8.18	16.72	18.29	21.66	20.85	18.96
국유재산관리기금	1.1	0.93	0.96	1.1	1.35	1.7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0.12	0.26	0.42	0.53	0.62	0.72
언론진흥기금	0.73	0.83	0.93	1.04	1.27	1.0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0.14	0.06	0.08	0.23	0.54	0.47
전력산업기반기금	0.12	0.09	0.2	0.22	0.27	0.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12	0.05	0.09	0.03	0.37	0.35
지역신문발전기금	0.77	0.68	0.7	0.68	0.81	0.88
금강수계관리기금	0.08	0.1	0.17	0.25	0.25	0.14
국민건강증진기금	0.07	0.12	0.13	0.13	0.21	0.12
양성평등기금	0.06	0.05	0.04	0.02	0.09	0.09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여유자금비중이 과다하게 큰 경우 해당 재원이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채 단순히 누적・적립되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비중이 과다한 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① 자체수입 과다로 인한 여유자금비중 과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그 차액이 여유자금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지출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금의 수입지출구조상 자체수입이 사업지출보다 규모가 큰 경우, 여유자금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기금의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적립되어, 전출·예탁을 통해 타 회계·기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9년 117억원에서 2024년 1,232억원으로 1,115억원(952.9%)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0.24배에서 1.73배로 증가하였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19년 (A)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여유자금 규모	117	329	826	568	867	1,232	1,115	952.9
	여유자금비중	0.24	0.62	1.23	0.79	1.24	1.73	1.51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으로 누적되고 있음. 또한 동 기금은 「2019년, 2022년 및 2025년 기금존치평가」 시 각각 중기가용자산규모 과다 평가를 받아, 여유자금이 과다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2019~202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자체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결산						2025년 계획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체수입 (A)	84,824	92,527	84,549	76,249	101,733	143,554	231,796
지출 (B)	48,483	53,116	67,139	71,864	70,173	71,097	104,520
차액 (C=A-B)	36,341	39,411	17,410	4,385	31,560	42,457	127,276

주) 지출은 기금 지출총계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여유자금 운용을 제한 주요지출을 의미함
자료 : 대법원

「공탁법」 제31조는 기금의 용도로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20] 현재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등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21][22]

현재의 수입지출구조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지출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필요: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로 기금 여유재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 지출 사업의 다변화 등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수입만 증가하는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20년 9,337억원에서 2024년 1조 7,460억원으로 8,123억원(86.9%)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0.93배에서 1.77배로 증가하였음.

---

20)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1)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임

22) 2024년 국선변호료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69,884	69,884	-	-	-	69,884	69,872	-	12	53,400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20년 (A)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국유재산 관리기금	여유자금 규모	9337	8947	9239	13,325	17,460	8,123	86.9
	여유자금비중	0.93	0.96	1.1	1.35	1.77	0.84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020년 1조 6,082억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으로 3조 68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예산은 3조 4,820억원으로 2020년 결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서 주로 기인함.

[2020~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2023결산	2024		2025예산
						예산	결산	
수입	○ 자체수입	1,250,412	1,311,756	1,702,426	1,946,354	2,057,212	2,186,269	2,042,888
	- 재산수입	151,520	163,503	166,978	188,714	216,346	195,043	198,222
	- 경상이전수입	59,086	47,210	66,037	47,733	66,960	42,080	66,788
	- 관유물매각대	1,039,806	1,101,043	1,469,408	1,709,907	1,773,906	1,949,146	1,777,878
	○ 정부내부수입	8,603	13,767	324,165	501,153	558,797	558,973	978,278
	- 예탁원리금회수	8,603	13,767	324,165	501,153	558,797	558,973	978,278
	○ 여유자금회수	349,140	334,187	215,962	235,434	654,494	323,162	460,829
	- 정부예금회수	349,140	334,187	215,962	235,434	654,494	323,162	460,829
합계		**1,608,155**	**1,659,710**	**2,242,553**	**2,682,941**	**3,270,503**	**3,068,404**	**3,481,995**
지출	○ 사업비	1,003,239	929,612	833,746	986,160	1,021,581	986,160	1,082,624
	- 공용재산취득	898,782	817,343	717,677	848,898	882,881	848,899	909,072
	- 통합청관사	47,963	42,303	24,063	57,277	68,795	69,207	73,552
	- 비축토지 매입	56,494	69,966	79,961	79,984	80,000	79,996	100,000
	○ 기금운영비	2,648	2,726	2,494	2,617	2,795	2,779	2,686
	- 인건비	1,615	1,715	1,546	1,648	1,814	1,814	2,053
	- 경상운영비	1,033	1,011	948	970	981	965	633
	○ 정부내부지출	451,581	475,000	860,876	960,000	1,250,000	1,500,000	1,350,000
	- 공자기금 예탁	451,581	475,000	860,876	960,000	1,250,000	1,500,000	1,350,000
	○ 여유자금 운용	150,687	252,373	545,434	734,162	991,739	584,413	1,046,685
	- 통화금융기관예치	31,477	15,068	190,363	156,744	5,500	172,155	5,55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19,210	237,305	355,071	557,418	986,239	412,258	1,041,185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3,000억원이었던 예탁규모는 2024년 1조 5,000억원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출 사업의 다변화 등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5~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	-	-	-	3,000	4,516	4,750	8,609	9,600	15,000

자료: 기획재정부

③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4년 결산 기준 2,085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 규모(1,235억 1,300만원)의 1.7배 수준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규모는 2020년 950억원에서 2024년 2,033억원으로 1,082억원(113.9%)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0.9배에서 1.62배로 증가하였음.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20년 (A)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여유자금 규모	950	1,132	1,488	1,814	2,033	1,082	113.9
	여유자금비중	0.9	1.03	1.3	1.45	1.62	0.72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23]에 근거하

23)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 지정 · 승인 · 등록 · 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의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24] LS전선의 민간출연금 1,000억원 납부계획 이행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25]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민간출연금, 법정부담금 수입 및 여유자금운용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계획액
민간출연금	8,000	10,000	10,000	10,000	15,000
법정부담금	111,668	112,256	118,118	118,546	123,165
여유자금운용	131,253	182,440	204,781	208,598	252,000

주) 2022년 과징금 수입이 339억 5,300만원 발생하면서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 납부받은 과징금을 반환하고 재처분하면서 159억 4,800만원의 음의 수입이 발생하여 여유자금 증가폭이 감소하였음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2024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85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 규모(1,235억 1,300만원)의 1.7배 수준인데, 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여유자금 2,085억 9,800만원 중 495억 9,300만원(23.8%)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납부한 보상료를 적립해 놓은 것으로 추후 원자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보유·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26] 나머지 1,590억 500만원(76.2%)은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시설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소요 증가 등 규제 업무량에 따라 법정부담금 수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함.

25) 2013년 JS전선이 품질서류가 위조된 불량제어 케이블을 원전(신고리 1·2·3·4, 신월성 1·2)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JS전선의 모회사인 LS전선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2014년 1,000억원의 출연계획 발표 및 2017년 원안위와의 출연 협약 체결 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출연금 납부 중

26)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기금은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경우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 통제,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와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업 중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는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7] 다만 이관 규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자금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27)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원자력기금 용도에도 부합해보이는 사업 현황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	일반회계 세출사업
1. ~ 3. (생략)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 방재환경기반구축(1402-402)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1403-301)
5. ~ 6. (생략)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1501-407)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1501-408) ·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1501-409) ·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1501-410)
8. ~ 15. (생략)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여유자금비중이 작거나 감소하고 있는 기금

2024년 여유자금비중이 0.1배 이하인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9개 기금임.

[2024년 기준 여유자금비중 0.1배 이하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0.01	0.01	0.01	0.01	0.01	0.0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05	0.04	0.03	0.02	0.03	0.0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12	0.06	0.04	0.04	0.04	0.02
한강수계관리기금	0.3	0.28	0.2	0.14	0.1	0.03
대외경제협력기금	0.13	0.13	0.13	0.12	0.14	0.06
청소년육성기금	0.2	0.18	0.25	0.21	0.06	0.06
양성평등기금	0.06	0.05	0.04	0.02	0.09	0.09
기후대응기금	-	-	-	0.08	0.08	0.1
축산발전기금	0.23	0.14	0.07	0.16	0.17	0.1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9년에 비해 2024년 여유자금비중이 감소한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30개 기금임. 그 중 여유자금비중이 절반 이상 감소한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17개 기금임.

[2019년 이후 여유자금비중이 감소한 기금 현황]

(단위: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12	0.06	0.04	0.04	0.04	0.0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05	0.04	0.03	0.02	0.03	0.02
한강수계관리기금	0.3	0.28	0.2	0.14	0.1	0.03
청소년육성기금	0.2	0.18	0.25	0.21	0.06	0.06
대외경제협력기금	0.13	0.13	0.13	0.12	0.14	0.06
축산발전기금	0.23	0.14	0.07	0.16	0.17	0.1
국가유산보호기금	0.16	0.14	0.19	0.1	0.09	0.11
관광진흥개발기금	0.29	0.17	0.22	0.41	0.2	0.12

(단위: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제질병퇴치기금	1.25	0.87	0.63	0.14	0.23	0.16
농지관리기금	0.74	0.48	0.34	0.59	0.15	0.1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0.44	0.33	0.31	0.39	0.29	0.17
방송통신발전기금	0.24	0.13	0.09	0.11	0.14	0.17
문화예술진흥기금	0.55	0.63	0.5	0.31	0.24	0.18
주택도시기금	0.72	0.69	0.76	0.66	0.34	0.26
정보통신진흥기금	0.28	0.14	0.1	0.08	0.16	0.27
석면피해구제기금	0.62	1.1	0.62	0.18	0.13	0.28
응급의료기금	0.41	0.17	0.67	0.48	0.68	0.28
과학기술진흥기금	0.46	0.37	0.22	0.21	0.21	0.3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25	1.83	1.44	0.78	1.05	0.35
수산발전기금	0.4	0.32	0.19	0.24	0.23	0.35
근로복지진흥기금	0.73	0.47	0.34	0.39	0.41	0.38
사학진흥기금	0.46	0.48	0.41	0.39	0.65	0.39
영화발전기금	2.26	0.74	0.44	0.58	0.68	0.44
임금채권보장기금	1.59	1.13	1.06	1.07	0.7	0.4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0.99	0.9	0.56	0.81	0.86	0.51
보훈기금	1.25	0.88	0.96	1.01	0.87	0.8
국제교류기금	1.53	1.28	0.82	0.85	1.02	0.84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65	1.41	1.07	0.96	1.14	1.0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16	1.96	2.01	1.79	1.64	1.7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92	3.96	3.95	2.37	1.67	1.8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여유자금비중이 작거나 과다하게 감소하는 경우 기금 목적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 규모가 작거나 비중이 감소하는 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구조조정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 부족으로 2022년 및 2024년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공자기금으로부터 당초 계획액에 편성되지 않았던 재원을 전입받고 있으므로,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이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20년 1,335억원에서 2024년 510억원으로 61.7%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0.06배에서 0.02배로 감소하였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20년 (A)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여유자금 규모	1,335	952	1,044	889	510	△825	△61.7
	여유자금비중	0.06	0.04	0.04	0.04	0.02	△0.04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은 자체재원인 법정부담금[28], 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등이 있으며, 정부내부수입으로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 구조]

(단위: 백만원)

구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법정부담금	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타	소계		
2022	87,999	1,337,176	6,428	724,201	2,155,803	-	210,000	379,758	-	589,758	-	21,206
2023	50,113	1,324,923	9,849	762,354	2,147,239	-	-	-	-	-	-	41,340
2024	56,643	1,478,900	6,953	600,339	2,142,835	11,500	-	13,300	-	24,800	-	32,2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농산물 또는 양곡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그런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계획현액 대비 실제 예치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4,921억 8,500만원 대비 212억 600만원(4.3%), 2022년 1,865억 4,400만원 대비 413억 4,000만원(22.2%) 2023년 1,203억 6,800만원 대비 322억 5,700만원(26.8%), 2024년 2,297억 4,200만원 대비 327억 2,500만원(14.2%)에 불과함.

[연도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계획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실집행액 (C)	집행률 (C/A)
	당초	수정(A)				
2021	349,763	492,185	-	492,185	21,206	4.3
2022	150,034	186,544	-	186,544	41,340	22.2
2023	120,368	120,368	-	120,368	32,257	26.8
2024	237,033	229,742	-	229,742	32,725	14.2
2025	392,259	392,259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은 예치금 부족으로 인한 여유재원 부족과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2년 및 2024년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공자기금으로부터 당초 계획액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재원을 전입받았음.[29)]

여유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액으로 편성되지 않은 재원을 전입받는 구조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사업효과가 부진한 사업들 및 사업예산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구조조정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민간차입금 등 추후 상환해야할 금액이 누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9) 2022~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입 현황

일자	회계·기금	금액(억원)
2022.06.15.	공공자금관리기금	998
2022.06.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00
2022.10.04.	공공자금관리기금	2,800
2024.06.26.	일반회계	115
2024.11.29.	공공자금관리기금	13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비중은 2019년 0.28배에서 2024년 0.27배로 0.01배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여유자금비중은 0.24배에서 0.17배로 0.07배 감소하였음.

[정보통신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19년 (A)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정보통신 진흥기금	여유자금 규모	2,567	1,741	1,468	1,454	2,041	2,671	104	4.0
	여유자금비중	0.28	0.14	0.10	0.08	0.16	0.27	△0.01	-
방송통신 발전기금	여유자금 규모	2,048	1,531	1,098	1,325	1,525	1,555	△493	△14.3
	여유자금비중	0.24	0.13	0.09	0.11	0.14	0.17	△0.07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9년부터 부채/자산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음.

먼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2024년 기준 부채/자산 비율이 1,523.81%에 달함. 이는 총자산은 감소하고 총부채는 증가하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9년 156.39%였던 것에서 1,367.42%p 증가한 것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 및 부채/자산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기금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보통신 진흥기금	총자산(A)	5,162	2,420	3,532	3,082	2,068	2,096
	총부채(B)	8,073	10,023	17,299	24,760	28,936	31,939
	순자산(A-B)	△2,911	△7,603	△13,767	△21,678	△26,868	△29,843
	부채/자산 비율 (B/A)	156.39	414.17	489.78	803.37	1,399.23	1,523.8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2024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89.91%임. 이는 총자산은 감소하고 총부채는 증가하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9년 89.69%였던 것에서 300.2%p 증가한 것임.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비 및 부채/자산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기금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방송통신 발전기금	총자산(A)	7,400	4,777	5,723	5,800	4,429	4,886
	총부채(B)	6,637	6,809	11,170	15,074	16,859	19,051
	순자산(A-B)	763	△2,032	△5,447	△9,274	△12,430	△14,165
	부채/자산 비율 (B/A)	89.69	142.54	195.18	259.89	380.65	389.9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는 2020년부터 두 기금 모두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고 있음에 기인하는데, 두 기금 모두 매년 상당규모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누적에 따른 이자 상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주요 재원인 법정부담금은 감소하고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보통신 진흥기금	차입금	4,261	5,385	8,892	3,258	4,500
	누적	4,261	9,646	18,538	21,796	26,296
	법정부담금	5,918	9,988	5,566	5,595	5,143
방송통신 발전기금	차입금	2,074	2,827	5,092	3,101	3,433
	누적	2,074	4,901	9,993	13,094	16,527
	법정부담금	6,629	9,986	6,480	6,443	5,784
합계	차입금	6,335	8,212	13,984	6,359	7,933
	누적	6,335	14,547	28,531	34,890	42,823
	법정부담금	12,547	19,974	12,046	12,038	10,9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기금 모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누적으로 인하여 이자 상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누적 규모가 2024년 결산 기준 2조 6,29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1조 6,527억원에 달하고 있음.

두 기금 모두 202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시작해서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을 위한 여유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30]

3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예탁 등 기간)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 · 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정부담금 수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불필요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ICT분야의 신규 사업 추진 시 일반회계 활용을 우선 검토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국제교류기금: 지출구조조정 검토 필요(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에 따라 기금 수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 이후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조속히 지출 구조 조정 등 기금 고갈 대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9년 1,054억원에서 2024년 804억원으로 23.7%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여유자금비중은 1.53배에서 0.84배로 감소하였음.

[국제교류기금 여유자금비중 및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배, %p, %)

구 분		2019년 (A)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국제교류기금	여유자금 규모	1,054	741	529	615	795	804	△250	△23.7
	여유자금비중	1.53	1.28	0.82	0.85	1.02	0.84	△0.69	-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수입은 대부분 여권 발급에 의한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권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31] 코로나19 유행 시기 여권 발급 감소에 따라 법정기여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기금적립금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4년 기준 적립금은 887억 4,0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041억 8,500만원(△54.0%)이 감소하였음.

31) 2024년 국제교류기금 기금수입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제외)

(단위: 백만원)

기금수입	2024년 결산액	비율 (%)
법정부담금	68,313	67.3
민간출연금	30,218	29.8
기타재산수입	1,886	1.8
기타잡수입	975	0.9

[국제교류기금 기금적립금 및 증감률]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금적립금	192,925	155,329	108,203	79,639	81,913	88,740
증감률 (전년도 대비)	-	△19.5	△30.3	△26.4	2.9	8.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런데 사업비·경상경비는 2020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4년 사업비와 경상경비의 합은 652억원으로 2014년 대비 194억원(42.3%) 증가하였음.

[국제교류기여금 및 사업비·경상경비 변동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여금 예상액 (수입계획, A)	413	394	448	550	578	613	656	360	688	696	696
기여금 수입액 (결산, B)	376	478	514	649	610	594	181	90	289	675	683
예상액 대비 수입액(C=B/A)	91.0	121.3	115.4	118.0	105.5	96.9	27.6	25.0	42.0	97.0	98.1
사업비(D)	342	344	346	366	445	518	424	486	517	539	506
경상경비(E)	116	115	121	130	126	138	145	143	142	148	146
사업비+경상경비 (F=D+E)	458	459	467	496	571	656	569	629	659	687	652
전년도 대비 증감	-	1	8	29	75	85	△87	60	30	28	△35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 2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이 기금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사업 확장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8년[32] 또는 2029년[33]에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32) 2023년 3월 10일에 작성된 2차 검토안(향후 추정 연간 지출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순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4.46%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에서는 2028년에 연말 여유자금이 △49억원으로 감소하여 교류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33) 2023년 2월 14일에 작성된 1차 검토안(향후 추정 연간 지출액은 최근 10개년 순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3.87%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에서는 2029년에 연말 여유자금이 △253억원으로 감소하여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교류 협력강화 사업을 각각 48억원(△24.8%), 41억원(△21.3%), 26억원(△25.8%) 삭감하는 자체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2024년 대비 2025년 지출규모를 117억원 감액하였고, 향후 일반회계가 아닌 국제교류기금을 활용한 사업 시행 필요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대·유지·축소 및 ·폐지 등 중장기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34][35]

[재단 고유사업과 외교부 이관 사업의 구분을 통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

구분	재단 고유사업	외교부 이관 사업
추진 방향	기금으로의 시행 필요성, 재단의 전문성,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어야하나 재단에 위탁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기금 위기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
예시	對美공공외교 사업,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예산분담을 통한 공동추진 사업(한국학 교수직 설치, 해외정책연구소 내 코리아체어 설치 등), 양국 공동추진 합의 사업(양자 포럼) 등	재단 고유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추진(KF아세안문화원, 한-중앙아 협력포럼사무국 등)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이후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지출 구조 조정방안을 외교부와 협의 중이나, 2025년 7월 현재까지 조정 방향이 결정되진 않아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금수입구조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을 고려하면 기금적립금 감소와 이에 따른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조속히 지출 구조 변경 등 기금 고갈 대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4)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역(2024년 687억원→2025년 570억원 / △117억원)
- (글로벌 한국학 진흥) △48억(△24.8%) 삭감
  ▲해외대학 대상 신규 공모사업 중단 ▲객원교수 파견사업 단계적 폐지
  ▲한국 전문가 육성(장학 · 연구지원) 규모 축소
- (국제협력 네트워킹) △41억(△21.3%) 삭감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 규모 축소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폐지
  ▲청년 대상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사업 폐지 ▲정책공공외교사업 규모 축소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교육·문화사업 축소 등
- (문화교류 협력강화) △26억(△25.8%) 삭감
  ▲한국전문 기금큐레이터직 신규 공모 중단 ▲한국소개 잡지 〈KOREANA〉 다국어 언어판 발간 중단
  ▲재외공관 공동주관 문화교류사업 폐지 ▲아세안문화원 사업규모 축소
  ▲한국 소개자료 발간 및 한국지식문화보급 사업 규모 축소 등

35)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월에 진행한 재정성과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지출규모 감액(△107억원)에도 2031년부터 기금적립액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라. 기타 문제

(1) 법정배분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논의 필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당시 배분비율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2025년 현재 여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복권기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3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계획현액 1조 401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한편, 복권기금의 법정배분비율은 2004년「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이후 2009년에 문화재보호기금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배분비율을 유지한 채 한차례 조정되었을 뿐 2004년과 사실상 동일한 상황이나, 21년 동안 각 기금 및 회계의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관별 복권판매액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비합리적·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자금까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수입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복권기금까지 지원하고 있어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음.

---

36)「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국민체육진흥법」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근로복지기본법」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문화재보호기금법」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 변경 현황]

구 분	2004년	2010년 이후
총 법정배분비율	30%	3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0%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0%	10.371%
근로복지진흥기금	6.195%	5.3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15%	6.356%
문화재보호기금 (現 국가유산보호기금)	-	14.286%
지방자치단체	20.145%	17.26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45%	17.2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4.28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6.820%	5.8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00%	6.428%

주) 각 기금 등의 법정 배분비율은 총 법정배분비율 내에서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시정요구하는 등 여러차례 개선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만큼, 그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2) 국유재산관리기금·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 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 이원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와 실제 사업의 집행 주체가 다른 이원적 구조로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기금의 객관성·투명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공공청사 취득을 위한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 등 각 부처가 집행하는 사업들이 혼재하여 2024년 기준 전체 26개 부처에 176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각 부처 집행사업]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수 (2024 예산 기준)	2024	
		예산	결산
국회	1	3,102	46
대법원	9	93,620	94,288
국가인권위원회	1	5,380	3,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15,066	21,442
감사원	1	3,420	5,597
대통령경호처	2	7,442	5,164
외교부	5	23,730	16,762
법무부	24	169,920	196,588
행정안전부	6	49,576	29,633
농림축산식품부	1	9,726	6,979
식품의약품안전처	2	5,508	3,838
고용노동부	1	10,114	13,182
질병관리청	2	4,707	4,885
국토교통부	2	5,271	705
국가보훈부	1	4,021	2,544
국세청	12	60,858	49,754
관세청	3	5,501	5,581
통계청	4	3,834	5,391
병무청	1	10,161	6,405
경찰청	57	291,615	286,155
농촌진흥청	1	495	449
산림청	3	5,858	6,070
기상청	2	17,885	12,315
해양경찰청	9	48,414	38,918
소방청	2	21,950	16,199
기획재정부	20	68,795	69,207
합계	176	945,969	901,216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이나, 기금 사업의 실제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145개의 세부사업을 각각 집행하고 있음.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부처별 집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수 (2024 예산 기준)	2024	
		예산주1)	결산주2)
고용노동부	5	28,489	23,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66,029	66,029
국토교통부	17	165,488	162,837
금융위원회	2	84,000	84,000
기상청	1	876	852
기획재정부	1	2,550	2,550
농림축산식품부	1	4,868	4,565
산림청	6	162,632	142,666
산업통상자원부	46	800,669	793,377
새만금개발청	1	480	119
소방청	1	99	99
중소벤처기업부	9	103,895	107,794
특허청	1	600	544
해양수산부	7	23,808	23,793
행정안전부	1	19,758	16,381
환경부	36	795,948	731,147
합계	145	2,260,189	2,160,063

주 1) 당초 예산 기준
2) 이월예산을 포함한 현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와 실제 각 사업별 집행 주체가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 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정보가 각 부처에 비해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이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소관부서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특성상 이원화 구조는 불가피하나, 기금 관리주체와 사업 수행부처 간 협업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금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게 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부처 사업이 아니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지게 됨.[37)]

37)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 시 기획재정위원회에만 회부가 될 뿐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아 관련위원회 의견제시도 불가능함.

예를 들어 기후대응기금 중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산업부)’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사를 받게 되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금별 주요 지적사항

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필요

(단위: 억원, 배)

부처	기금명	2024년 여유자금 규모	2024년 여유자금 비중	주요 지적사항
대법원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1,232	1.73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사업 이관 검토 등 수입-지출 간 균형 모색 필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17,460	1.77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여유재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출 사업의 다변화 등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2,033	1.62	민간출연금 납부의 증가로 여유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사업 이관 검토 등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나. 지출구조조정 검토 필요

(단위: 억원, 배)

부처	기금명	2024년 여유자금 규모	2024년 여유자금 비중	주요 지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10	0.02	여유자금 부족으로 계획액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재원을 전입받고 있으므로 지출구조조정 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2,671	0.27	공자기금예수금 등 상환해야 할 금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법정부담금 수입 확대 노력 및 지출구조조정 검토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	1,555	0.17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804	0.84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에 따라 기금 수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지출구조조정 검토 필요

다.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내역)사업(기금)	2024년 당초 계획액	2024년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숙박할인권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	25,495	25,495	동 사업에서는 최근 대규모 증액변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2024년 기금계획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255억원을 증액변경하여 집행함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지원(관광진흥기금)	9,900	16,791	14,233	동 사업 지원규모가 2020년 9.6만명에서 2024년 14.3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획액 편성하지 않아 기금 변경을 통한 사업 확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교육부	연급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484,529	4,840,779	4,817,689	연금급여 추계 부적정에 따른 계획액 과소편성 후 증액변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증액규모는 2021년 303억원에서 2024년 3,562억 5,000만원으로 증가함.

5. 재무 결산

가. 개 요

(1) 현 황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 국가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하위 준칙과 지침 등을 제·개정 및 고시하였으며, 2009~2010회계연도 시범 기간을 거쳐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작성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고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도록 함.[1)]

재무회계의 가장 큰 전제인 '발생주의'란 현금주의에 상대되는 기록방식으로 현금의 유출입 시점이 아닌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란 단식부기에 상대되는 기록방식으로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거래를 기록하여 완전성과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함.

[발생주의·현금주의, 복식부기·단식부기 비교]

발생주의	현금주의
ㅇ 거래 또는 사건 발생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없어도 거래발생 시 기록 - 경제적 실질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ㅇ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만 회계기록 - 현금의 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원가로 기록 후 가액불변
복식부기	**단식부기**
ㅇ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 -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자동검증 - 재무제표(명세서) 간 연계정보의 일치	ㅇ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기록 - 연계정보 불일치 가능성 존재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국가재정활동의 주요 원천은 조세수입이며, 예산 지출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수지의 명확성과 통제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또한 재정지출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6조의 예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것이 요구되는데, 예산의 원칙에는 재정건전성 확보・국민부담 최소화・재정지출의 성과제고・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제고 등이 규정되어 있음.[2)]

한편 이러한 국가재정의 특성상 발생주의 재무회계가 세입세출 예・결산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는 기존의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에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고,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내부통제의 기능을 하며, 재무적 관점에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회계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구분]

구 분	재무회계	예산회계
의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보고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회계방식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세입세출결산서, 수입지출결산서 등
보고방식	비교식	단년도
보고형식	회계단위 간 연계와 통합보고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3)]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국가통합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3,218.4조원, 부채는 2,585.7조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32.7조원으로 전년 대비 62.8조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조원)

계정과목	2024회계연도(A)	2023회계연도(B)	증감액(A-B)	비 고
자 산 (a)	3,218.4	3,009.4	209.0	
유동자산	576.3	551.3	25.0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1,448.1	1,276.3	171.8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등
일반유형자산	732.2	720.9	11.3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424.0	422.4	1.6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무형자산	2.8	2.8	0.0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35.1	35.7	△0.6	장기미수채권 등
부 채 (b)	2,585.7	2,439.5	146.2	
유동부채	234.7	219.9	14.8	1년 미만 국고채,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913.8	874.3	39.6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장기충당부채	1,383.5	1,293.4	90.1	연금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53.7	51.9	1.8	장기미지급금(BTL시설임대료) 등
순 자 산 (a-b)	632.7	569.9	62.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 5.

(가) 자 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산은 3,218.4조원으로, ①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자산 576.3조원, ②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 1,448.1조원, ③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732.2조원, ④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기반시설 424조원 등으로 구성됨.

3)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8. (재정상태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2024년 자산은 전년 대비 209조원(6.9%) 증가하였음. 이는 운용 수익 및 투자 증가 등으로 171.8조원 증가하였고,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25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나) 부 채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채는 2,585.7조원으로, ①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유동부채 234.7조원, ②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확정부채인 장기차입부채 913.8조원, ③ 연금충당부채 등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장기충당부채 1,383.5조원 등으로 구성됨.

2024년 부채는 전년 대비 총 146.2조원(6.0%)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82.7조원 증가 및 장기차입부채 39.5조원 등에 기인함.

[2024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부채)]

(단위: 조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A-B)	증감률 [(A-B)/B]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97.5	95.3	2.2	2.3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03.4	94.5	8.9	9.4
	·기타 유동부채	34.2	30.4	3.8	12.5
	기타 유동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0.3	△0.3	0	0
	소계	234.7	219.9	14.8	6.7
장기차입부채	·국채	1,026.2	987.9	38.3	3.9
	국채 할증(할인)발행차금	△12.7	△14.9	2.2	△14.8
	자기국채	△121.3	△120.6	△0.7	0.6
	·공채	19.1	19.1	0	0
	공채 할증(할인)발행차금	0	0	0	0
	자기공채	△0.7	△0.4	△0.3	75.0
	·장기차입금	3.1	3.1	0	0
	소계	913.8	874.3	39.5	4.5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0.7	0.7	0	0
	·연금충당부채	1,312.9	1,230.2	82.7	6.7
	·보험충당부채	0.7	0.7	0	0
	·기타장기충당부채	69.1	61.8	7.3	11.8
	소계	1,383.5	1,293.4	90.1	7.0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17.1	16.4	0.7	4.3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	△2.6	△2.3	△0.3	13.0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9.3	38.0	1.3	3.4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0.1	△0.1	0	0
	소계	53.7	51.9	1.8	3.5
부채 총계		2,585.7	2,439.5	146.2	6.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다) 순자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32.7조원으로, 2023회계연도의 순자산 569.9조원보다 62.8조원(11%)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조원)

회계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자산	505.4	670.7	507.6	569.9	632.7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50.3 (△9.1%)	165.3 (32.7%)	△163.1 (△24.3%)	62.3 (12.3%)	62.8 (11.0%)

자료: 기획재정부

(3)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며, 특히 프로그램별 원가정보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이윤추구에 따른 수익창출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것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중심으로 구성됨.

2024회계연도의 국가재정활동에 소요된 순원가를 의미하는 재정운영순원가는 470.6조원이고,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지급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부담금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409.2조원으로, 이에 따른 재정운영결과는 61.4조원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국가통합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조원, %)

구 분	2024회계연도(A)	2023회계연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재정운영순원가	470.6	485.8	△15.2	△3.1
1. 프로그램순원가	498.3	495.7	2.6	0.5
2. 관리운영비	33.3	32.0	1.3	4.1
3. 비배분비용	18.3	19.8	△1.5	△7.6
4. 비배분수익	△79.4	△61.8	△17.6	△28.4
Ⅱ. 비교환수익 등	409.2	417.2	△8.0	△1.9
1. 국세수익	339.6	351.7	△12.1	△3.4
2. 부담금수익	20.2	19.8	0.4	2.0
3. 사회보험수익	27.6	27.3	0.3	1.1
4. 제재금수익 등	5.1	4.8	0.3	6.3
5.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16.7	13.5	3.2	23.7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61.4	68.6	△7.2	△10.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470.6조원은 국가재정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프로그램순원가 498.3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관의 행정지원 소요비용인 관리운영비 33.3조원, 특정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배분비용 18.3조원과 비배분수익 △79.4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대비 15.2조원이 감소하였음.

2024년 프로그램수익은 139.2조원으로, 자산처분이익 9.5조원(174.1%) 증가, 평가이익 2.1조원(127.9%)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7조원(14.6%)이 증가하였음.

[프로그램순원가 증감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4회계연도(A)	2023회계연도(B)	증감액(C=A-B)	증감률(C/B)
프로그램총원가(a)	637.5	617.2	20.3	3.3
프로그램수익(b)	139.2	121.5	17.7	14.6
프로그램순원가(a-b)	498.3	495.7	2.6	0.5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운영순원가 중 비배분비용은 18.3조원으로 1.5조원(△7.6%)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산처분손실 2.5조원(△39.1%) 및 이자비용이 0.2조원(△6.0%) 감소한 데 기인함.

(나) 비교환수익 등

2024회계연도 비교환수익 등은 409.2조원이고, 이 중 국세수익은 339.6조원으로 비교환수익 등의 대부분(83%)을 차지함. 국세수익은 전년 대비 12.1조원(△3.5%) 감소하였음. 이 외에 비교환 수익 등은 사회보험수익 27.6조원, 부담금수익 20.2조원,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6.7조원 및 제재금수익 등 5.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순자산 변동표

2024회계연도 순자산 변동표상 기초순자산 569.9조원에서 재정운영결과 61.4조원과 조정항목 124.2조원을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632.7조원임.[4)]

[2024회계연도 순자산 변동표 요약]

(단위: 조원)

구 분	2024회계연도(A)	2023회계연도(B)	증감액(A-B)
Ⅰ. 기초순자산	569.9	507.6	62.3
Ⅱ. 재정운영결과	61.4	68.6	△7.2
Ⅲ. 조정항목	124.2	130.8	△6.6
Ⅳ. 기말순자산 (Ⅰ-Ⅱ+Ⅲ)	632.7	569.9	62.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4) 2024년 조정항목 124.2조원은 투자증권평가손익에 따른 순자산조정 122.3조원 증가, 자산재평가이익에 따른 조정 1.9조원 감소, 기타순자산 증감에 따른 3.8조원 증가 등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1) 재무제표 작성 오류 발생 축소 필요

첫째, 감사원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 시 특정 부처에서 오류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오류유형에 대한 회계처리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재무제표 오류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처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오류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결산의 절차를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는 「국가회계법」 제13조[5], 「국가재정법」 제58조[6]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9조[7] 등에 따라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함. 이후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60조에 의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정부(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8]

---

5)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 ·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6)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결산 절차 및 일정]

중앙관서		기획재정부		감사원		정부(기획재정부)		국회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제출 (2월 말)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원 제출 (4.10.)	⇒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송부 (5.20.)	⇒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5.31.)	⇒	결산 심의·의결 (정기회 개회 전)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사의견이 없고, 재무제표의 오류[9]에 대한 수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2024년 15건)이 있음.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무제표 관련 오류 금액은 자산 2.8조원, 부채 0.1조원, 재정운영결과 2.7조원, 국유재산 오류금액 2.4조원으로 나타남.

[최근 6년간 감사원 결산검사(재무제표 오류) 실적]

(단위: 조원)

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소계	재정운영결과	국유재산
2019	16.1	0.3	16.4	5.4	0.5
2020	13.4	4.4	17.8	11.8	1.2
2021	30.9	1.1	32.0	30.8	26.4
2022	6.1	0.3	6.4	17.2	0.7
2023	9.0	0.9	9.9	7.9	1.0
2024	2.8	0.1	2.7	2.7	2.4

주)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의 오류금액은 자산, 부채, 재정운영결과의 계정과목의 합계로 표시하고, 각 계정별 과다계상금액과 과소계상금액의 절대값의 합으로 산정함

자료: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특히 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에서 발생한 감사원 결산검사 재무제표 오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처리 오류로 2조 2,000억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방위사업청은 장기미지급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로 1,635억 6,000만원이 과대 계상되는 등 재무제표 오류가 확인되었음.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 결산 검사 시 국가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오류 유형은 ①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②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③ 건설 중인 자산 대체 및 자본적 지출 등 자산취득

9) 전기오류수정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구분되어지며,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며, 반대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함.

관련 오류, ④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⑤ 자산 부채 및 계정분류 오류, ⑥ 수익 및 비용 인식 오류, ⑦ 재무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 조정 오류 등이 있음.

최근 3개년 동안(2022~2024년)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검사에서 오류 지적사항은 238개로 이 중 지적 빈도가 높은 오류 유형순으로 살펴보면 수익 및 비용 인식 오류 77건,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61건,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30건, 건설 중인 자산 대체 및 자본적 지출 등 자산취득 관련 오류 29건,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및 자산 부채 및 계정분류 오류 사항은 각각 16건 및 재무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 조정 오류 9건 순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국가재무제표 주요 오류 현황(2022~2024년)]

구분	건수	부처명(건수)
수익 및 비용 인식 오류	77	기획재정부(11), 국방부(9), 해양수산부(9), 방위사업청(6), 농림축산식품부(4), 산림청(4) 등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61	국토교통부(9), 기획재정부(6), 문화체육관광부(4), 보건복지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국세청(3) 등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30	기획재정부(4), 고용노동부(2), 교육부(2), 국방부(2)국토교통부(2), 농림축산식품부(2), 문화체육관광부(2), 통일부(2) 등
건설 중인 자산 대체 및 자본적 지출 등 자산취득 관련 오류	29	농림축산식품부(3), 환경부(3), 경찰청(2), 교육부(2), 기상청(2), 기획재정부(2), 국가유산청(2), 문화체육관광부(2), 새만금개발청(2), 소방청(2), 해양수산부(2) 등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6	국방부(2), 기획재정부(2) 등
자산 부채 및 계정분류 오류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기획재정부(2), 새만금개발청(2), 해양수산부(2) 등
재무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 조정 오류	9	기획재정부(2), 국세청(2) 등
합계	238	

자료: 각 연도「국가결산검사보고서」(감사원)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오류유형에 대한 회계처리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재무제표 오류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처에서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처가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정부의 전기오류수정이익 1.4조원, 전기오류수정손실 2.0조원 등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3.4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앙관서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해연도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 처리가 발견되어 이후 회계연도에 수정하는 것임.

전기오류수정은 중대성 여부에 따라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구분되어 처리하는데 중대한 오류는 오류가 발생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성격을 가진 오류로서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여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도록 함.[10)]

2012년 최초 재무제표 작성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2년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 재평가로 인하여 53.6조원의 대규모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이러한 국유재산 전면 재평가 이후에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4.0조원 발생하였고 2024년에도 3.4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 결산검사 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 이후 확정된 과거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 손익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기오류 수정손익	12.6	4.4	13.6	11.9	7.3	15.9	8.8	6.9	9.0	4.6	53.6	4.0	3.4

주) 국가회계결산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정부가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결산을 시작한 2011년의 다음 연도인 2012년부터 발생함

자료: 기획재정부

1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② 오류수정사항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오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2024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규모를 살펴보면,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사항은 없었으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1.4조원,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0조원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3.4조원으로 나타남.

정부 부처별로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로 1조 3,127억원, 그 다음은 국토교통부 8,176억원이였으며, 기획재정부 2,550억원, 방위사업청 2,183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전기오류수정손익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부처는 감사원 등 20개 부처로 나타났음.[11]

2024회계연도에서는 모든 정부 부처에서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전기오류수정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12]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오류의 발생 시점에 따른 재무제표의 소급 작성에 관한 규정만 있음.

국가회계정보에 있어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으로 인한 회계처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 정부 부처의 재정 운영 성격에 따라 중대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회계처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회계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13]

따라서 정부 부처의 국가재무제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지속적인 발생은 국가회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므로, 회계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처 및 감사원 결산담당자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류 발생에 대하여 「국가회계법」 제24조에 따른 기관 내부 회계통제 체계를 수립 및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4]

---

11) 2024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처는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처, 병무청,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헌법재판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임.

12) 「국가회계편람」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 오류의 발생시점에 따라 전체 및 전 재무제표에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함.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제표 전체 수준에서 중요성 기준을 결정할 때 적용 비율은 총액요소(총자산, 매출액, 총비용 등)에 대해서 0.5~2%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음('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pp63)

13) 이러한 연례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재무결산 중간점검 지침」에 따라 가결산 수준의 재무결산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규모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14) 「국가회계법」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024회계연도 정부 부처별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오류수정이익(A)	전기오류수정손실(B)	합계(A+B)
국방부	342,965	969,695	1,312,660
국토교통부	226,945	590,656	817,601
기획재정부	216,601	38,361	254,962
방위사업청	175,110	43,162	218,2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407	138,787	171,194
해양경찰청	71,833	28,208	100,041
환경부	13,798	58,724	72,522
해양수산부	43,100	22,357	65,457
농림축산식품부	35,041	17,371	52,412
법무부	35,530	11,456	46,986
고용노동부	45,823	104	45,927
대법원	34,451	64	34,515
경찰청	9,677	22,542	32,219
문화체육관광부	20,904	11,187	32,091
중소벤처기업부	121	19,962	20,083
산림청	11,500	4,992	16,492
새만금개발청	4,919	10,229	15,148
행정안전부	3,694	6,359	10,053
질병관리청	8,959	218	9,177
교육부	8,659	337	8,996
보건복지부	2,781	4,961	7,742
국가유산청	6,865	183	7,048
기상청	4,649	1,393	6,042
산업통상자원부	4,341	351	4,69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4,253	4,253
국세청	1,804	1,764	3,568
외교부	3,317	57	3,374
인사혁신처	2,862	56	2,918
농촌진흥청	2,056	698	2,754
재외동포청	1,683	0	1,683
특허청	1,607	0	1,607
통일부	611	605	1,216
소방청	335	856	1,1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12	0	812
국가보훈부	393	388	781
금융위원회	253	75	328
식품의약품안전처	138	62	200
관세청	126	42	168
공정거래위원회	0	101	101
조달청	48	48	96
여성가족부	0	4	4
통계청	1	0	1
방송통신위원회	1	0	1
합계	1,376,720	2,010,667	3,387,387

자료: 각 부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정리

(2)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정부는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도입, 주석 체계 변경 등 국가결산보고서 체계를 개편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임. 2011년 국가결산의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기대되었던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면서 원가를 활용한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된 재무제표의 충실한 작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정부는 국가결산서가 발생주의 계정과목의 나열식 위주로 서술되어 국가재무제표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할 계획임.[15)]

국가결산보고서의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① 재정상태표의 분류체계에 있어 유동·비유동의 구분을 없애고, 자산은 금융자산·유무형자산·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차입부채·충당부채·기타부채로 간소화하였고, ②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 총원가·수익, 비배분비용 등 복잡한 분류 방식으로 이해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으로 개편안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수익(국세·이전·운영수익)과 비용(이전·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였고, ③ 국가활동을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나누어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현금흐름표를 도입하였으며, ④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간의 역할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석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였음.

이번 재무제표 개편에서 주요한 변화인 계정과목을 장·단기 구분을 없애고 단일 계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자산 및 부채 계정에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자산의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에서 차입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임.

이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장·단기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는 세입과 세출의 흐름이 일반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지 않으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공시가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임.

다만 국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에 대한 정보 공시는 국가의 단기적인 재정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

15)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2022.12.)에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함.

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석 등에 상세한 정보를 표기하여 정보이용자인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재무제표 개편안]

현행	개편안
1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	
- 장·단기 계정 분류는 민간기업에 적합 정부는 구분 실익이 없고, 계정별 총액 파악에 어려움	→ **계정과목을 장·단기 구분 없이 단일 계정으로 통합**
-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에 한계	→ 분석 유용성 강화를 위해 자산·부채를 금융·유무형·기타자산, 차입·충당·기타부채로 구분 → 충당부채를 규모 순으로 정리하여 미래 지출 예상액 공시 강화
- 재정상태표 간소화 요구 증대	→ **계정과목 간소화 (102개→34개)** → 순액표시(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상계처리) 방식으로 전환
2 재정운영표를 분야별·성질별로 개편	
-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정보 활용도 부족	→ **15대 분야별 재정운영표 도입을 통한 원가정보 활용도 제고**
- 복잡한 분류 방식*으로 이해가능성 낮음 * 프로그램 총원가·수익,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 수익 등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성질별 재정운영표 개편 * 수익(국세·이전·운영수익)과 비용(이전·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
3 현금흐름표 도입	
- 현금흐름표 없음	→ **현금흐름표 도입** 국가활동을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나누어 상세 현금흐름 파악
4 주석체계 개편	
-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간 역할구분 모호	→ **주석으로 통합·단일화**
- 일부 계정만 주석 작성	→ 모든 계정에 대해 주석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국가회계법」 제14조[16]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국가 재무제표에 포함하였는데, 현금흐름표는 국가활동을 운영·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활동별 현금 조달원천과 집행결과를 집계하여 현금흐름 정보의 파악과 분석이 좀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현금흐름표 활동 중 운영활동은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수행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를 조세수입 등의 현금유입과 서비스 제공 등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활동은 국가의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융자실행 및 금융자산 매입, 매각 등에 따른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활동에서는 국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채 발행 및 상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와 같이 국가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게 되면 활동 및 항목별로 지출규모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어 국가 재정활동에 있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금흐름표상 국가활동 구분]

활동		종류
운영활동	현금유입	국세, 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이자 수입 등
	현금유출	인건비, 지방교부금, 출연금, 이자지급 등
투자활동	현금유입	금융상품 투자증권 처분, 일반유형자산 처분, 대여금 회수 등
	현금유출	금융상품 투자증권 취득, 일반유형자산 취득, 대여금 지급 등
재무활동	현금유입	국공채 발행, 차입금 차입 등
	현금유출	국공채 상환, 차입금 상환 등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으로 2011년 국가결산의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기대되었던 체계적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면서 원가를 활용한 성과보고 등에 대한 재무정보가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는 재무제표 작성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16)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6. 예비비 결산

가. 개 요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며, 일반예비비는 주로 새로운 정책 수요와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 목적예비비는 미리 사용 목적을 정하여 대비할 수 있는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음.[1)]

예비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고, 목적예비비는 이와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2)]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음.[3)]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이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① 예비비 사용 신청(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 ②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작성(기획재정부장관), ③ 국무회의 심의, ④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됨.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결산서와 함께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4)]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

1) 다만,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 시 기존의 3가지 편성요건인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외에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1) 일반현황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인 4조 2,000억원(일반예비비 2조원, 목적예비비 2조 2,000억원)으로, 이 중 1조 6,380억원이 지출되었고 2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조 5,595억원이 불용되었음.[6)]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비비 2억원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42,000	17,262	16,380	25	25,595
특별회계	2	-	-	-	2
합 계	42,002	17,262	16,380	25	25,597

주) 특별회계 예산액 및 불용액은 등기특별회계에 계상된 2억원임
자료: 202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4)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 및 과거 예비비 집행사례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6)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도가 설정된 일반예비비는 2024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에 해당하는 2조원이 편성되었음.

(2) 사용명세서별 현황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사용명세별로 살펴보면, ① 목적예비비는 2조 2,000억원 중 5,703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5,584억원이 지출되었고, 2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96억원이 잔액 처리되었음. 용도별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1,77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지원(3,263억원),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551억원)에 지출되었음.

② 일반예비비는 2조원 중 1조 1,559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1조 796억원이 지출되었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761억원이 잔액 처리되었음. 일반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1,977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지원(608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406억원) 등에 사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사용 명세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일반회계	ㅇ **목적예비비**	**5,703**	**5,584**	**24**	**96**
	- 영유아보육료지원	1,770	1,770	-	-
	- 감염병 피해지원	3,268	3,263	-	5
	-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	665	551	24	91
	ㅇ **일반예비비**	**11,559**	**10,796**	**1**	**761**
특별회계		-	-	-	-
(일반회계 전입금)		(863)	(859)	(-)	(4)
합 계		17,262	16,380	25	856

자료: 202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3) 중앙관서별 현황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1조 6,380억원은 기획재정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기관에서 지출되었음.

예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6,086억원)이며, 이어서 질병관리청(3,263억원), 교육부(2,103억원), 보건복지부(1,977억원), 고용노동부(1,014억원), 농림축산식품부(70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앙관서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원)

소 관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주요내역
기획재정부	7,105	6,386	-	719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지원 등
질병관리청	3,268	3,263	-	5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교육부	2,103	2,103	-	0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2,004	1,977	1	26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 인력 지원 등
고용노동부	1,014	1,014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보험료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702	702	-	-	농산물 할인지원 및 납품단가 지원 등
우주항공청	0	384	24	91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른 운영 지원
국토교통부	276	276	-	-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3	184	-	1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지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운영 등
국가보훈부	56	56	-	0	보훈병원 의료인력운영 등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8	16	-	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19	9	-	10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9	8	-	1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법무부	3	3	-	0.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운영경비
행정안전부	1.5	0.7	-	0.8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 지원 조직 활동 지원
합계	17,262	16,380	25	856	

자료: 202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4) 최근 5개년 예비비 편성·지출 추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규모는 2020년 5조 6,100억원에서 2021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조 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2022년에는 재해대책비 축소로 5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에도 재해대책비 축소로 4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000억원(△8.7%)이 감소한 4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재해대책비 등 목적예비비 지출 감소로 감소추세를 보임. 2024년에는 주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으로 전년 대비 3,289억원(30.1%)이 증가한 1조 6,380억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연례적으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최근 5개년 예비비 편성액 및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회계	편성액	56,100	97,000	55,000	46,000	42,000
	지출액	54,467	92,721	47,049	13,091	16,380
특별회계	편성액	5	3	2	3	2
	지출액	-	-	-	-	-
합계	편성액	56,105	97,003	55,002	46,003	42,002
	지출액	54,467	92,721	47,049	13,091	16,380

자료: 202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예비비 사용명세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목적예비비 지출액은 5,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3억원(163.2%) 증가하였음. 이는 감염병 피해지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지원) 및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으로 3,814억원을 지출한 것 등에 기인함.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1조 7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원(△1.5%) 감소하였음.

[최근 5개년 사용명세별 예비비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목적예비비	41,228	78,714	33,473	2,121	5,584
- 재해대책비	40,167	58,330	5,437	738	-
- 감염병 피해지원	-	20,384	25,787	-	3,263
- 법적의무지출 미지급금 등	1,018	-	2,091	-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	-	-	1,383	1,770
-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	-	-	-	-	551
- 인건비 (소방청 구급 상황관리 요원)	-	-	159	-	-
일반예비비	13,239	14,008	13,575	10,970	10,796

자료: 202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 의견

(1) 연례적 또는 예측가능한 사안에 대한 예비비 사용의 문제

2024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 사전에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들과 유사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해외 순방시 국내·외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을 지원하는 프레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매년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상외교 일정의 특수성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정상외교 수요증가 추세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여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는 새로운 정책 수요와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이고, 정상외교는 그 수요에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계속하여 수행해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적정 예산편성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예비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18년~2024년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8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2,000	-	1,041	1,967	5,008	4,904	-	104	97.9
2019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2,000	-	450	3,545	5,995	4,011	-	1,984	66.9
2020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3,000	-	△2,600	-	400	23	-	377	5.8
2021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3,000	-	100	-	3,100	2,927	-	173	94.4
2022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3,000	-	1,058	-	4,058	4,022	-	36	99.1
2023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4,740	-	498	7,627	12,865	11,438	-	1,427	88.9
2024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4,740	-	800	1,940	7,480	6,064	-	1,416	8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②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과정에서 본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및 2024년 2년 연속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동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1,383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387억원이 더 많은 1,77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면밀한 예산 추계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제51조제2항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74억원의 연내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은 추산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7][8]

7) 동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급한 바우처를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사용하면 카드사가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연내 미지급금은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학부모의 사용 금액을 연내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교육부가 카드사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함.

8)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예비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3년~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실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내 미지급금
	본예산	추경(A)										
2023	3,025,145	3,025,145	-	-	138,300	3,163,445	3,163,445 [3,157,571]	104.6	100.0	-	-	170,300
2024	2,673,100	2,673,100	-	-	177,000	2,850,100	2,850,100 [2,841,005]	106.6	100.0	-	-	77,400

자료: 교육부

(2)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 문제

예비비 사용에 있어 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예비비를 배정받아 과다 이월이 발생하거나,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비비를 배정받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비비 배정 및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예비비 배정 후 과다 이월한 문제

우주항공청의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은 우주항공분야 중장기 미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8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동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한국연구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이 산·학·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우주·항공분야 기본계획의 달성률 제고 및 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한 탐색·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이에 따라 동 사업은 과제기획 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말에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과제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고서 상 2024년 10월 하순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었음.

이후 선정평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과제 선정이 지연되었고 28개 과제 중 1개의 과제는 11월에, 27개 과제는 모두 12월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최종집행률이 12%로 집계되는 등 예산의 연내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남.

[2024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과제선정 현황]

과제 현황	공고 일자	공고서 상 협약 시기	실제 협약 시기	2024년 연구수행기간	2025년 연구수행기간
28개	2024.8월	2024.10월	- 1개 과제: 2024.11월	2개월	10개월
			- 27개 과제: 2024.12월	1개월	11개월

자료: 우주항공청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탐색연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여야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음.

그러나 과제 착수시기가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 종료시점도 2025년 10월 또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어 2025년에 정책계획을 수립하거나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탐색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024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우주항공청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기관							
예비비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8,000	8,000	8,000	8,000	8,000	-	-	8,000	964	7,036	-	12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비비 배정 문제

기획재정부의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은 타국 투자 관련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 효과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5억 1,1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한-UAE 정상회담(2023.1월)에서 약정한 UAE 국부펀드의 투자유치를 위해 2023년 2월 금융투자지원단이 설치되었고, 이를 승계하여 중동·캐나다 및 싱가포르 등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연기금 등과의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투자협력단이 설치되었음.

기획재정부는 국제투자협력단의 이전 조직인 금융투자지원단의 운영 종료(2024년 2월) 이후 관련 업무 및 조직의 지속 여부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의 2024년 당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5억 1,100만원의 예비비 배정을 통해 국제투자협력단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음.

그런데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카타르 등 주요 국부펀드의 방한이 순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사의 취소 및 국외출장 취소 등으로 인해 예비비 배정액 5억 1,100만원 중 2억 4,700만원(48.4%)이 불용되었음.

금융투자지원단의 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나 배정된 예비비의 48.4%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배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년에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 예비비 13억 8,7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연구용역 지연에 따라 12억 1,800만원(87.8%)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임시조직 활용을 위한 예비비의 배정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9)]

9) 2023년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결산

(단위: 백반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	-	-	1,387	1,387	119	50	1,218	736

[2024년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	-	-	511	511	263	-	247	86

자료: 기획재정부

(3)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항목간 변경 문제

예비비 항목간의 과도한 변경은 예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므로, 예비비 편성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예비비 항목 간 과도한 예산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총파업 선언 및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하여 2024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1890억 6,600만원의 예비비를, 정책기반 구축 사업에 9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①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4년 3월 7일 및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동 사업에 예비비 1,890억 6,6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부실한 사업계획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예비비 배정 직후 예산 대비 15% 수준인 278억 9,400만원의 변경이 발생되었음.

[2024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세목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7.5.)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6,00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110-04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파견수당(인건비)' 부족으로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에서 전용
전용 (2024.7.5.)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3,50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220-01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파견수당(여비)' 부족으로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에서 전용
세목변경 (2024.7.31.)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18,25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2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당직수당)'의 건강보험공단 사업위탁을 위해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 '전원협력체계 구축'에서 세목변경
세목변경 (2024.7.31.)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144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2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당직수당)'의 건강보험공단 사업위탁을 위해 같은 내역사업에서 세목변경
합계			27,894			

자료: 보건복지부

② 정책기반 구축 사업 내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은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68억 9,000만원,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일반용역비 21억 1,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중 89.1%인 18억 8,100만원을 홍보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통합 및 전략홍보 예비비 편성·집행 세부내역]

편성 세부내역	집행 세부내역
- 의료개혁 홍보 : 68억 9,000만원 -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 21억 1,000만원	- 의료개혁 홍보 : 87억 6,900만원 -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 2억 2,9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기치 못한 의사집단행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 필요성 강화로 인해 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액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다음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이나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10)]

이에 따라 예비비 항목간의 과도한 변경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 그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고,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긴급한 소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 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비비 편성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예비비 항목 간 과도한 예산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및 정책기반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	-	-	198,696	189,066	387,762	381,332	38	6,392	-
정책기반 구축	5,724	5,724	2	-	9,000	14,726	14,526	66	134	6,163

자료: 보건복지부

10) 이·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에 한하여 항목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예비비 집행원칙
○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
- 다만,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도적 개선방안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이 다음연도 국회 결산과정에서 이루어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분기별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국회의 실질적인 예결산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52조[11]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연도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권 측면에서 예비비 지출 심의 과정의 점검이 필요함.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 절차를 살펴보면, 각 부처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불용액 등을 정리한 사용명세서와 예비비 사항별 지출결정액, 배정액, 지출액 등을 정리한 사용조서를 작성함.

예비비 사용명세서 및 예비비 사용조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결산 부속 서류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예비비지출 시 사업, 금액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예비비는 사용 목적 및 집행액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예산 편성과 달리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재원이며, 정부가 예비비 사용 규모 및 시기 등 집행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회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정보를 당해연도에 알기 어려움.

「국가재정법」 제46조제5항[12], 제47조제4항[13], 제70조제6항[14]은 예산의 이·전용 및

---

11)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에 대해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비 배정 및 지출에 대해서도 이를 참고하여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15]

따라서 현재 예비비 사용 내역은 다음연도 국회 결산 과정에서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해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한 다른 규정을 참고하여 국회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예결산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와 관련하여, 2025. 7월 기준 예비비 사용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계류중임(의안번호 2200284,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4. 6. 27.) / 의안번호 2200863,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4. 6. 27.) / 의안번호 220320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4. 8. 27.) / 의안번호 2203329,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24. 8. 30.) / 의안번호 2203439,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4. 9. 2.) / 의안번호 2210739, 박정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25. 6. 12.)).

예비비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가. 연례적 예비비 사용 문제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문화체육 관광부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	7,480	6,064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매년 예비비 사용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850,100	2,850,100	2023년 및 2024년 모두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집행 및 2년 연속 연내 미지급금 발생

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 문제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우주 항공청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8,000	8,000	과제 선정 및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연구개발기관에 교부한 예비비 80억원 중 70억 3,600만원(87.9%)이 이월됨
기획 재정부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511	263	행사 및 국외출장 취소 등으로 예비비 배정액 5억 1,100만원 중 2억 4,700만원(48.4%)이 불용됨

다.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항목간 변경 문제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387,762	381,332	예비비 배정 후 예비비사용명세서와 달리 항목간 과도한 변경
	정책기반 구축	14,726	14,526	

7. 공공기관 결산

가. 개 요

공공기관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출연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31개가 지정되어 있음.[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산규모,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 직원 정원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고,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됨.

331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31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57개,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이 243개임.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 유형별 구분 기준]

<table>
<tr><th colspan="2">분류</th><th colspan="3">구분 기준</th><th>예시</th></tr>
<tr><td rowspan="2">공기업</td><td>시장형 공기업</td><td rowspan="4">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비율 50% 이상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85% 이상</td><td>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td></tr>
<tr><td>준시장형 공기업</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 rowspan="2">준정부기관</td><td>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td><td colspan="2">「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td><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td></tr>
<tr><td>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td><td colspan="2">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td><td>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td></tr>
<tr><td colspan="2">기타 공공기관</td><td colspan="3">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td><td>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수출입은행</td></tr>
</table>

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 전년 대비 20개 기관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수를 유지하였음. 추가로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강화(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등)에 따라 2023년부터 총 43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음.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내역]

(단위: 개)

연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2021	15	21	82	13	218	349
2022	15	21	81	13	220	350
2023	13	19	44	11	260	347
2024	14	18	43	12	240	327
2025	14	17	45	12	243	331

자료: 기획재정부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31개로 2024년 대비 준시장형 공기업 1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음. 준정부기관은 총 57개로 기타공공기관 2개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었음. 기타공공기관은 총 243개로 4개가 신규로 지정되고 1개가 공기업에서 변경되었으며, 2개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4개 증가한 331개임.

[2024년~2025년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변동 현황]

(단위: 개)

구분	2024년	2025년	변동 현황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1	△1	-	-	△1
시장형	14	14	-	-	-	-
준시장형	18	17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7	+2	-	-	+2
기금관리형	12	12	-	-	-	-
위탁집행형	43	45	+2	-	-	+2
③ 기타공공기관	240	243	+3	+4	-	△1
계	327	331	+4	+4	-	-

자료: 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신규지정된 4개 기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신규지정되었음.

유형변경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3개인데,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음.

[2025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유형변경 상세 현황]

구 분 (개수)	주무 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변경사유 등
신규 (4)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기타공공기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타공공기관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기타공공기관	
유형 변경 (±3)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유형 변경 분류 기준에 따라 변경 (정원 감소 또는 증가)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41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33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29개 순임.

[소관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산업통상자원부	41	국방부	3
문화체육관광부	33	기상청	3
국토교통부	29	법무부	3
보건복지부	29	원자력안전위원회	3
국무조정실	25	행정안전부	3
교육부	22	공정거래위원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방송통신위원회	2
해양수산부	17	방위사업청	2
고용노동부	12	외교부	2
농림축산식품부	12	통일부	2
중소벤처기업부	11	경찰청	1
환경부	11	관세청	1
금융위원회	7	국가유산청	1
특허청	6	농촌진흥청	1
산림청	5	소방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5	인사혁신처	1
여성가족부	5	재외동포청	1
기획재정부	4	통계청	1
국가보훈부	3		

자료: 기획재정부

나. 현 황

(1)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전체 수입은 948.1조원으로 전년(915.3조원) 대비 32.8조원(3.6%)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이 전년 대비 25.4조원(22.3%),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7.7조원(9.8%) 각각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정부직접지원 수입은 총 17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원(7.6%) 증가하였음.

한편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전체 지출은 947.4조원으로, 전년(914.7조원) 대비 32.7조원(3.6%) 증가하였음. 지출유형 중에는 차입상환금이 20.1조원(25.8%) 증가하여 증가규모 및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수입·지출 결산]

(단위: 조원, %)

구분			2023 (a)	2024					증감 (b-a)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합계(b)	비중	
수입	정부 직접 지원	출연금	26.7	0.1	20.0	6.9	27.0	2.8	0.3
		출자금	6.6	6.3	0.4	0.6	7.2	0.8	0.7
		보조금	24.1	1.3	20.2	5.2	26.8	2.8	2.7
		부담금	10.5	0.0	10.6	0.5	11.1	1.2	0.6
		이전수입	78.3	0.0	80.9	5.1	86.0	9.1	7.7
		위탁수입	14.3	2.2	9.0	3.4	14.7	1.5	0.4
		기타수입	0.5	0.0	0.4	0.1	0.5	0.1	0.1
		소계	161.0	9.9	141.5	21.8	173.3	18.3	12.3
	자체수입 등		640.3	261.0	229.1	145.4	635.5	67.0	△4.9
	차입금		114.0	72.1	36.5	30.8	139.4	14.7	25.4
	합계		**915.3**	**343.0**	**407.1**	**198.0**	**948.1**	**100.0**	**32.8**
지출	인건비		31.1	12.6	8.8	10.6	32.0	3.4	0.9
	경상운영비		11.4	5.6	1.9	3.6	11.2	1.2	△0.2
	사업비		636.8	211.4	294.6	136.8	642.8	67.9	6.0
	차입상환금		78.0	62.0	27.2	8.9	98.1	10.4	20.1
	기타		157.3	51.4	74.5	37.4	163.3	17.2	6.0
	합계		**914.7**	**343.0**	**407.1**	**197.3**	**947.4**	**100.0**	**32.7**

자료: 기획재정부

(2) 공공기관 자산·부채 현황

2024년 말 공공기관의 자산은 1,151.9조원으로, 전년(1,097.5조원) 대비 54.5조원(5.0%) 증가하였고, 부채는 741.5조원으로 전년(709.6조원) 대비 31.8조원(4.5%)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0년 541.8조원에서 2024년 741.5조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를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2020년 155.5%에서 2021년 154.8%까지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177.9%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183.0%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180.6%로 소폭 감소하였음.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공공기관 자산	890.2	961.9	1,048.0	1,097.5	1,151.9	54.5
공공기관 부채	541.8	584.4	671.0	709.6	741.5	31.8
부채비율	155.5	154.8	177.9	183.0	180.6	△2.3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2024년 전년대비 9.6조원(10.9%) 증가하여 증가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시장형 공기업 8.5조원(2.6%) 순임. 2020년 이후 4년간 부채 연평균 증감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1.8%, 시장형 공기업이 10.8%, 기타공공기관 7.3% 순으로 나타났음.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전년비증감 (B-A)	연평균 증감율
공기업	시장형	219.9	245.4	315.3	323.5	332.0	8.5	10.8
	준시장형	172.1	181.7	190.1	197.6	205.4	7.8	4.5
	소계	392.0	427.1	505.4	521.1	537.5	16.4	8.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62.2	65.9	74.2	87.7	97.3	9.6	11.8
	위탁집행형	61.9	62.0	61.5	68.2	72.7	4.5	4.1
	소계	124.1	127.8	135.6	155.9	170.0	14.1	8.2
기타공공기관		25.7	29.4	29.9	32.7	34.0	1.3	7.3
합 계		**541.8**	**584.4**	**671.0**	**709.6**	**741.5**	**31.8**	**8.2**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시장형 공기업이 전년 대비 △12.0%p로 크게 감소하였고 나머지 유형은 소폭의 증감이 있었음. 2020년 이후 4년간 부채비율의 연평균 증감폭은 시장형 공기업이 15.2%p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7.8%p 하락하였음.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전년비증감(B-A)	연평균증감
공기업	시장형	165.6	189.3	288.2	303.1	291.1	△12.0	15.2
	준시장형	217.5	208.5	202.2	210.3	206.5	△3.7	△1.3
	소계	184.9	197.0	248.5	259.6	251.7	△7.9	8.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09.4	96.9	97.0	104.6	109.0	4.4	△0.1
	위탁집행형	224.0	196.1	157.6	161.5	162.1	0.6	△7.8
	소계	146.9	128.4	117.5	123.7	126.8	3.1	△3.6
기타공공기관		49.5	48.1	51.4	53.5	54.2	0.6	2.3
합 계		**155.5**	**154.8**	**177.9**	**183.0**	**180.6**	**△2.3**	**3.8**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8.1조원으로 2023년 △3.2조원 대비 11.4조원 개선되었음.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20년 5.2조원에서 2021년 10.8조원까지 이익규모가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손실로 전환되었으나, 2024년에 다시 이익으로 전환되었음.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6.1조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3.4조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2.9조원, 기타공공기관은 △1.3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1.3	△5.2	△23.3	△4.3	6.1	10.3
	준시장형	0.6	3.5	1.4	△3.5	△2.9	0.7
	소계	△0.7	△1.8	△22.0	△7.8	3.2	11.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	2.8	2.6	1.9	3.4	1.5
	위탁집행형	1.5	3.9	6.9	3.5	2.8	△0.7
	소계	3.1	6.7	9.5	5.4	6.2	0.8
기타공공기관		2.8	5.9	△1.6	△0.9	△1.3	△0.4
합 계		**5.2**	**10.8**	**△14.0**	**△3.2**	**8.1**	**11.4**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건전성 지표별로 상위 10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우선 전년 대비 부채 증가 규모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8.72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7.26조원, 한국도로공사 3.1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3.03조원, 한국전력공사(및 자회사) 2.99조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부채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순위	기관명	2023 실적 (A)	2024 계획 (B)	2024 실적 (C)	전년 대비 (C-A)	계획 대비 (C-B)
1	한국주택금융공사	295,124	397,337	382,715	87,592	△14,622
2	한국토지주택공사	1,528,473	1,644,432	1,601,055	72,581	△43,377
3	한국도로공사	383,391	414,810	415,025	31,634	215
4	국민건강보험공단	148,599	175,750	178,904	30,305	3,154
5	한국전력공사	2,024,502	2,065,511	2,054,450	29,947	△11,061
6	한국자산관리공사	77,341	106,652	100,261	22,919	△6,391
7	한국석유공사	195,781	208,950	218,132	22,350	9,182
8	한국농어촌공사	134,514	145,630	145,972	11,458	342
9	한국해양진흥공사	47,648	-	56,572	8,925	56,572
10	한국철도공사	204,654	212,998	211,844	7,190	△1,154

주 1) 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인 3개 공공기관 제외
2)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므로 제외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부채를 합산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운용순원가 기준이며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 미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감소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8,69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5,681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 △4,424억원, 대한석탄공사 △1,885억원, 국가철도공단 △1,551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당기순이익 감소 상위 10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순위	기관명	2023 실적 (A)	2024 계획 (B)	2024 실적 (C)	전년 대비 (C-A)	계획 대비 (C-B)
1	한국광해광업공단	△3,120	△10,078	△11,817	△8,697	△1,739
2	국민건강보험공단	29,694	19,754	24,013	△5,681	4,259
3	한국해양진흥공사	42	-	△4,382	△4,424	△4,382
4	대한석탄공사	△2,483	△3,129	△4,369	△1,885	△1,240
5	국가철도공단	3,114	1,414	1,563	△1,551	149

순위	기관명	2023 실적 (A)	2024 계획 (B)	2024 실적 (C)	전년 대비 (C-A)	계획 대비 (C-B)
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562	-	△7,045	△1,484	△7,045
7	서울대학교병원	21	-	△1,090	△1,111	△1,090
8	한국자산관리공사	996	577	240	△756	△337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28	-	189	△639	189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05	-	271	△634	271

주 1) 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인 3개 공공기관 제외
2)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므로 제외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부채를 합산한 공시 기준(Agreed Upon Procedure)[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운용순원가 기준이며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 미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3)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20년 415,353명에서 2024년 423,069명으로,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이는 전체 공공기관 수가 감소한 것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별 정원을 감축한 데 기인함.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74,701	75,530	76,169	75,027	75,438	411
	준시장형	74,007	73,653	74,132	72,882	73,318	436
	소계	148,708	149,183	150,301	147,909	148,756	847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0,107	31,063	31,660	30,890	31,124	234
	위탁집행형	83,956	86,146	87,428	85,588	86,305	717
	소계	114,063	117,209	119,088	116,478	117,429	951
기타 공공기관		152,583	156,728	160,489	156,716	156,883	167
합 계		415,353	423,120	429,878	421,104	423,069	1,965

자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는 2020년 6,716만원에서 2024년 7,17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가 2024년 9,186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318만원, 준시장형 공기업 8,122만원 순임.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공기업	시장형	87,362	86,853	88,887	89,386	91,860	2,474
	준시장형	78,427	77,841	79,047	80,682	81,218	536
	소계	82,597	81,911	83,491	84,613	86,024	1,411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79,213	79,507	80,435	81,645	83,180	1,535
	위탁집행형	67,598	68,065	68,865	70,315	71,868	1,553
	소계	69,921	70,353	71,179	72,581	74,131	1,550
기타 공공기관		64,626	65,292	66,098	67,458	69,362	1,904
합 계		**67,161**	**67,686**	**68,559**	**69,898**	**71,695**	**1,797**

주 1) 알리오 공시상 일반정규직 기준임
2) 2025년 공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4)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2)]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기관의 지출예산 전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다만,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은 출연 또는 보조기관 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받는 기관이고, 출연·보조기관이라도 사업비만 지원받는 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매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수지차 보전기관의 목록 및 예산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해당 기관과 주무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는데,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음.

2) 수지차 보전기관 중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도 현황에 포함하여 작성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

구 분	기 준
지정	①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② 출연·보조기관 ③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정
지정 해제	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은 기관 ②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③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④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①~③ 중 하나와 ④ 충족 시 지정 해제

자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결산 현황

2024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62개 기관으로 출연기관 37개 기관 및 보조기관 25개 기관인데, 이 중 57개 기관은 공공기관이고 5개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임.[3]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57개 기관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39개 기관임.

[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소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기관	37	37	-	-	15	21	1
보조기관	25	25	-	1	2	18	4
합계	62	58	-	1	17	39	5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을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환경부 소관이 각 8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 각 5개 기관 순임.

3)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중앙회임.

[소관 부처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소관부처명	기관명	구분	공공기관 해당 여부	공공기관 유형
문화체육관광부 (8개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	해당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예술의전당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영상자료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환경부 (8개 기관)	국립공원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립생태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출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고용노동부 (5개 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잡월드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5개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5개 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개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무역안보관리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소관부처명	기관명	구분	공공기관 해당 여부	공공기관 유형
국토교통부 (4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법무부 (4개 기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해양수산부 (4개 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개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개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2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해당없음	비공공기관
외교부 (1개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찰청 (1개 기관)	도로교통공단	출연	해당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보훈부 (1개 기관)	독립기념관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가유산청 (1개 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국방부 (1개 기관)	전쟁기념사업회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농촌진흥청 (1개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1개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보조	해당	기타공공기관
여성가족부 (1개 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출연	해당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62개 기관의 2024년도 수지차 보전 결산을 보면, 4조 2,609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4조 1,690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었음. 이 중 출연기관은 37개로 3조 4,377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3조 3,468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었고, 보조기관은 25개로 8,232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8,221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사업별 2024년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기관수	2024년		집행률 (B/A)	2025예산
		예산(A)	결산(B)		
출연	37	3,437,769	3,346,854	97.4	3,463,680
보조	25	823,216	822,167	99.9	861,838
합계	62	4,260,985	4,169,021	97.8	4,325,518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보전기관 중 수지차 지원액이 가장 많이 집행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1조 1,583억 1,200만원의 출연금이 집행되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208억 9,200만원(보조금),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099억 5,800만원(출연금), 국립공원공단 2,295억 1,800만원(출연금) 순임.

[2024년도 결산 기준 수지차 지원액 상위 20개 기관]

(단위: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4 예산	2024 결산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232,412	1,158,3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위탁)	보조	321,275	320,892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317,873	309,958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229,518	229,518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95,395	195,395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84,482	175,582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145,005	145,005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89,374	89,374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88,113	88,113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84,336	84,336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83,506	83,506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4 예산	2024 결산
국립생태원	환경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74,942	74,94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기타공공기관	보조	62,897	62,897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57,792	57,7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56,525	56,525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52,842	52,84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52,718	52,71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준정부기관(기금)	보조	49,983	49,983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준정부기관(위탁)	출연	47,214	47,2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기타공공기관	보조	46,395	46,060

자료: 기획재정부

(나) 수지차 보전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 해제 현황

2019년~2025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2022년 4개 기관 및 2024년 1개 기관으로 총 5개 기관임. 신규 지정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 수입이 있고 수지차 보전 방식의 예산 편성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임.

[2018년~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 신규 지정 현황]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사유	지정연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타공공기관	환경부	자체수입이 있으며 수지차 보전방식 편성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임	2022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타공공기관	고용노동부		
한국물기술인증원	비공공기관	환경부		
항공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보전원	기타공공기관	환경부		2024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2025년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은 2020년 1개 기관, 2023년 4개 기관 및 2024년 2개 기관으로 총 7개 기관임. 국방기술품질원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정 해제되었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한국문학번역

원은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지정 해제되었음. 그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조사업이 폐지되어 지정 해제되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사업방식이 기존 출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정 해제되었고, 재외동포재단은 기관 해산(재외동포청 신설)으로 지정 해제되었음.

[2018년~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해제 현황]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해제 사유	제외연도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	2020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자체수입 부족기관	2023년
한국문학번역원	기타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수입 부족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방식 변경 (출연금 → 민간위탁사업비)	2024년
재외동포재단	기타공공기관	외교부	기관 해산	

자료: 기획재정부

다. 검토의견

(1) 공공기관 지정 체계 개선 필요

첫째, 공공기관 지정은 대상 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정 및 구분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그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비시장),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구분 기준에 대하여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와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정함.[4)]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구분 기준</th></tr>
<tr><td rowspan="2">공기업</td><td>시장형</td><td rowspan="4">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 비중
50% 이상</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중 85% 이상</td></tr>
<tr><td>준시장형</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r>
<tr><td rowspan="2">준정부기관</td><td>기금관리형</td><td rowspan="2">자체수입 비중
50% 미만</td><td>「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td></tr>
<tr><td>위탁집행형</td><td>정부업무의 위탁집행</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td><td colspan="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즉 법령에서는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중 85% 이상” , “자체수입 비중 50%” 라는 몇 가지 구분 기준만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기관 총수입의 50% 이상을 보조 또는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또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임.[5)]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각 부처 제출자료에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201개로 나타났고, 지정 요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도 40개에 이르고 있음.

[법률상 기준이 불명확한 공공기관 지정(미지정) 사례]

부처가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심사 결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4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5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등 총 201개 기관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총 40개 기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제8조), 고객만족도 조사(제13조), 회계원칙(제39조), 경영실적 평가(제48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그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재량이 광범위하므로, 공공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지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둘째,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합리적 지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① 직원 정원, ② 총수입액, ③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23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상향]

	종전	변경(2023.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30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상향 조정된 기준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 결과,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4개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현황]

연도	변경 유형	기관 현황
2023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
2025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다만 기관의 총수입액과 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6] 수립 또는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42년에 기금적립금 소진이 전망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6)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 구분 기준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운영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합리적인 지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부채비율 감축 목표 준수 필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재정건전화계획 목표치 대비 77.8%p까지 초과하는 등 부채관리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7]하여 그 결과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8][9]하고, 향후 5년간 총 34.0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를 통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이 매년 9.4~34%p씩 감소하여 2026년에 265.0%까지 하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통한 재무위험기관 해제를 목표로 함.

[재무위험기관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계획]

(단위 : 억원)

합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340,602	42,756	130,397	53,765	12,686	100,998
100.0%	12.6%	38.3%	15.8%	3.7%	29.6%

자료: 기획재정부

---

7) < 재무상황평가 평가방법(만점 20점 + 가점 2점) >

❶ (재무지표 : 16점) 민간 신용평가법을 바탕으로, 사업수익성 · 재무안정성 지표*의 과거 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을 평가
* EBITDA/매출액,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❷ (재무성과 : 4점, 경영평가 점수 활용) 재무 · 예산 운영성과의 최근 3년 등급을 평가
❸ (재무개선도 : 2점, 가점) 재무지표 평가점수, 부채비율, 순차입금/총자산 비율이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 시, 가점 부여

8) 선정기준 :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 상 '투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인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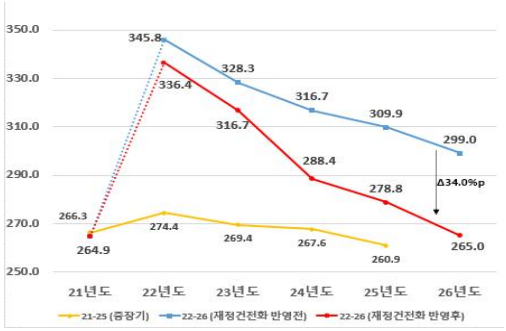
9) <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14개) >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전망]

연도	당초 전망(a)	건전화 반영(b)	개선 (b-a)
2021	264.9%	264.9%	-
2022	345.8%	336.4%	△9.4%p
2023	328.3%	316.7%	△11.6%p
2024	316.7%	288.4%	△28.2%p
2025	309.9%	278.8%	△31.1%p
2026	299.0%	**265.0%**	**△34.0%p**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그러나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을 살펴본 결과, 목표 부채비율 대비 초과된 부채비율이 2022년 21.3%p, 2023년 58.8%p, 2024년 77.8%p로 점차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전전화계획 수립 이전 전망치보다 오히려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재정건전화계획에서 정한 전망치와 목표치가 낙관적으로 설정되었거나,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기관명	재무상황 분석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9)	한국전력공사(연결)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 한전은 고유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 악화 → 대규모 영업적자 발생('21년 △59조원/연결) ▪ 발전자회사는 신규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 지속 증가세
	한국지역난방공사	▪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 실현 중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 증가세 →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 악화시,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재무위험 가능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	자원공기업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 누적 →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한국철도공사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外 나머지 사업에서 지속 손실로 부채비율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전망]

(단위: %, %p)

연도	건전화계획 수립 前 전망	건전화계획 수립시 목표(A)	실적(B)	성과(A-B)
2022	345.8	336.4	357.7	△21.3
2023	328.3	316.7	375.5	△58.8
2024	316.7	288.4	366.2	△77.8
2025	309.9	278.8	-	-
2026	299.0	265.0	-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부채비율의 목표치와 실적치의 격차가 현저한 원인을 파악하고 목표치를 현실화하거나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자본잠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3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핵심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2021년 9월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면서 설립되었고, 광물자원공사는 통합 전 5조 9,985억원 투자실적 대비 8,090억원만이 회수됨에 따라 회수실적이 저조하였는데, 통합 후 2024년까지도 총 투자실적 7조 3,387억원 중 1조 4,514억원만이 회수된 상황임.

[통합 전/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누적 투자 및 회수대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투자실적	회수실적
통합 전(~2021.9.)	59,985	8,090
통합 후(2021.9.~)	73,387	14,514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가 2014~2024년 투자한 국내 및 해외광구 대상 총 투입비용 대비 회수대금을 살펴보면, 국내사업에서는 15개 광구에 13억 9,480만 달러를 투자하여 22억 6,700만 달러를 회수하였으나 당해 회수액은 동해-1, 동해-2 광구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3개 국내광구에서는 회수 실적이 없었고, 해외광구에서는 총 51개 광구 대상 240억 3,99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128억 9,080만 달러를 회수하는데 그쳤음.

[2014~2024년 한국석유공사 투자 및 회수대금 현황]

(단위: 개, 백만$)

구분	총 개수	투입비용	회수 및 매각대금
국내광구	15	1,394.8	2,267
해외광구	51	24,039.9	12,890.8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재구성

대한석탄공사는 몽골 홋고르 샤나가 탄광을 매각하고자 하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은 2020년 △1.2조원에서 2024년 △2.0조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 증가 등 영향으로 유형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2020~2024년 대한석탄공사 자본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 자 산	**911,596**	**970,520**	**965,924**	**859,220**	**421,994**
유동자산	382,518	391,149	379,299	385,810	276,654
비유동자산	529,078	579,371	586,625	473,410	145,340
■ 부 채	**2,105,752**	**2,262,829**	**2,391,708**	**2,501,961**	**2,464,182**
유동부채	1,060,094	1,264,439	1,325,808	1,721,118	1,650,484
비유동부채	1,045,658	998,390	1,065,900	780,843	813,698
■ 자 본	**△1,194,156**	**△1,292,308**	**△1,425,784**	**△1,642,741**	**△2,042,188**
(지배지분)	△1,184,658	△1,276,400	△1,401,075	△1,616,143	△2,013,956
(비지배지분)	△9,498	△15,908	△24,709	△26,598	△28,232

자료: 대한석탄공사

이처럼 세 기관은 기투자액 회수 실적이 미흡하거나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인해 자산 매각 여력이 제한된 상황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각 지연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각 기관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핵심 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10]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52조[11]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인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은 '대행·위탁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공공기관 사업 구분]

구분단위	내용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대행·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그 중 '정책사업'은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조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보전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무구조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① 주거안정과 손익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 · 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52조(구분회계의 원칙) ⑤각 단위 구분회계의 대상 사업은 사업 추진목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격을 구분한다.
1.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
2.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대행·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건설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유형과 권역별로 손익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사업손익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손익목표의 충족 여부에 따라 신규 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구를 대상으로 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NPV지수가 △66.15%로 사업 손익목표(△37.5%)에 미달하는데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산모라" 지구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구(총 사업비 1조 8,688억원)에서 사업 손익목표에 미달하는데도 보상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목표 대비 초과 손실액은 1,128억원으로 추정됨.

[손익목표 미달 통합공공임대 현황]

지구명	사업계획 승인일	가구수 (호)	총사업비 (억원)	NPV지수(%)			초과손실액 (억원)
				목표(A)	실적(B)	차이(B-A)	
부산모라 (복합,행복주택)	2024-05	94	542	△37.5	△66.15	△28.65	△155
경북영천 (마을정비형)	2024-11	110	514	△42.4	△47.17	△4.77	△25
전주동서학	2024-11	88	515	△42.4	△49.51	△7.11	△37
안산신길2	2024-12	442	1,526	△34.6	△35.24	△0.64	△10
시흥하중	2024-12	279	988	△29.7	△43.28	△13.58	△134
포천송우2	2024-12	754	1,675	△34.6	△36.11	△1.51	△25
고양탄현공원	2024-12	715	2,303	△29.7	△31.19	△1.49	△34
밀양부북	2024-12	318	1,205	△42.4	△48.60	△6.20	△75
광주송정역KTX	2024-12	300	715	△37.5	△39.60	△2.10	△15
행복도시	2024-12	340	1,054	△36.9	△40.38	△3.48	△37
행복도시	2024-12	1,327	4,599	△36.9	△40.33	△3.43	△158
행복도시	2024-12	328	780	△34.6	△42.72	△8.12	△63
아산온양	2024-12	318	1,001	△44.6	△53.44	△8.84	△88
서울영등포	2024-12	370	1,271	△29.7	△51.10	△21.40	△272
합 계		5,783	18,688			(평균 -8.0)	△1,128

주: 실적과 초과손실액은 모두 추정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공사는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지구라고 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영투자심사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위 다수 사업을 지속할 경우 공사의 재무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2023년 1월 발표한 공사 혁신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07%로 낮추겠다고 하였으나, 2024~20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2026년 226%, 2027년 233% 2028년 232%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규모 조정·취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손익 목표관리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계획 대비 채권매입실적 부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에 더해 새출발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캠코채 발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 출연금을 통한 현금 출자 이외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새출발기금은 당초 사업 설계 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캠코채 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의 현금출자금은 손실보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었음.

2024년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소요액 1조 8,900억원 중 정부 출자금은 3,300억원이고, 캠코채 발행액은 1조 5,600억원이며, 정부 재원 비중은 17.5%로 당초 예상 부도율 29.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매입채권에서 발생하는 예상손실 대비 정부출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계획대로 캠코채를 발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즉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권 매입액 규모가 확대되고 캠코채 발행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앞으로 캠코채 발행을 통해 자체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213.7%로 이미 200%를 초과하였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조 1,000억원(새출발기금 7,000억원 및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원)의 현금출자를 반영하더라도 2025년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은 213.2%로 예상되는 상황임.

③ 공사부채비율 개선 대책 마련 필요(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규모화 사업 및 청년농 정책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4.9.2.)에 따르면, 35개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비율이 제일 높음.(2024년 648.2%, 2028년 771.9%(전망))

[한국농어촌공사 10년간 부채 내역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산	106,646	112,977	122,846	129,116	141,919	156,903	168,491	176,594	188,382	189,223	202,734
부채	85,839	91,734	101,550	107,412	119,657	134,514	145,972	153,863	165,508	166,074	179,483
공사 부담부채	6,157	6,110	7,092	6,977	7,941	10,703	11,624	11,683	13,018	13,657	13,700
부채비율	**412.5**	**431.8**	**476.8**	**494.9**	**537.5**	**600.8**	**648.2**	**676.9**	**723.6**	**717.4**	**771.9**
공사 부담부채	29.6	28.8	33.3	32.1	35.7	47.8	51.6	51.4	56.9	59.0	5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맞춤형농지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사업(융자) 및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국정과제로서 청년농 3만명 육성 등을 빠른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및 농지연금 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공사 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융자액이 2023년 8,447억 6,200만원에 비해 2024년 1조 1,742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했고, 이로 인해 농지은행사업 전체 융자규모가 2023년 1조 3,985억 900만원에서 2024년 1조 6,703억 4,300만원으로 2,718억 3,400만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4% 증가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육성 확대 및 영농규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산업단지개발사업이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점(총사업비 2조 6,203억원, 사업기간 2008~2030년)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지출구조조정 등 운영 효율화 필요

① 산재병원 운영 효율화와 재정건전성 제고 도모 필요(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에서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는 산재장기요양환자(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진폐환자, 사지마비환자 등)를 치료하고 있으나, 과도한 장기요양환자의 수용은 산재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장기요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병원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산재병원의 수익과 비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의료외 수익)이 있었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4년 적자는 △322억원으로 전년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2020~2024년 산재병원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손 익(A-B)			△53	112	282	△121	△322
수익(A)	합 계		3,395	3,665	3,802	3,596	3,580
	의료수익	소 계	3,048	3,194	3,048	3,356	3,346
		입 원	2,035	1,965	1,744	2,019	1,932
		외 래	796	992	1,062	1,086	1,145
		산업보건	217	237	242	251	269
	의료외 수익		347	471	754	240	234
비용(B)	합 계		3,448	3,553	3,520	3,717	3,902
	의료비용	소 계	3,268	3,509	3,499	3,693	3,877
		인건비	2,410	2,575	2,610	2,803	2,972
		운영비	538	627	612	574	583
		재료비	320	307	277	316	322
	의료외 비용		180	44	21	24	25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적자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전체 수용 환자 중 장기요양(입원 및 통원)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산재 근로자가 산재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 단가가 하락하고, 장기요양환자의 병상 장기 점유로 인해 병상회전률이 저하되면 신규환자 수용 여력이 감소하여 실질 수익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됨.

2020~2024년 산재병원 환자를 요양기간별로 보면, 10년이 넘게 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매해 약 40% 정도이며, 매해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산재병원 환자의 약 절반이 5년 넘게 산재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민간병원에서 요양이 곤란한 장기요양 환자(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진폐환자, 사지마비 환자 등)들을 수용하고 있는 산재병원의 공적 역할과 산재근로자 개인마다 상병의 정도 및 상태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요양기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환자관리 방안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조기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산재병원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장기요양환자 감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관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장기요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병원 운영의 효율화와 경영성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②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년 의료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훈의료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병원 운영 효율화 및 보훈병원 특성화 등 장단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2~2024년에 매년 4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2020-20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영업수익(A)	영업비용(B)	영업외수익(C)	영업외비용(D)	법인세비용(E)	당기순이익 (=A-B+C-D-E)
2020	1,030,209	1,100,520	35,092	4,639	△11,542	△28,317
2021	1,071,886	1,158,222	78,662	4,497	△1,180	△10,991
2022	1,060,264	1,177,938	82,060	4,376	1,983	△41,973
2023	1,176,032	1,252,415	32,000	6,494	-	△50,877
2024	1,252,909	1,338,779	44,107	5,423	△14	△47,172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료사업 수익 및 비용으로, 매년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매년 의료사업에서의 손실(= 의료사업수익 - 의료사업비용)의 규모가 당기순손실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음.

공단은 의료사업 손실의 원인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낮은 병상가동률로 제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병상가동률이 80%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오히려 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진료대상의 감소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의료사업비용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가상승 및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공단은 병상가동률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훈의료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장단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③ 수안보 상록호텔 매각 결정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수안보상록호텔 매각을 전제로 토지매각대 계획액 9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각에 실패하여 계획액 대부분이 미수납되고 있고, 수안보호텔 영업실적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실시 중에 있으므로, 기금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각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자산효율화 기준에 입각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계획안 수립 당시(2022년 7월) 수안보상록호텔의 수익성·잠재가치가 낮다고 평가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음.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 이후 공무원 합숙유치 및 시설운영 정상화 등의 사유로 실적이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봄. 동 자산의 매각결정이 내려질 당시(2022년 7월)에는 2020년·2021년 이용인원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이 문제되었으나, 최근 2년간(2023~2024) 이용인원은 각각 6.2만명, 6.0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또한 2024년 4월 1일부로 실시한 요금인상 조치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이용인원 및 영업손익을 보면 전년도(2023년) 같은 기간 대비 이용인원 합계는 417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합계는 9,100만원 증가하고 있어 요금인상 조치가 영업실적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봄.

한편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동 자산의 매각에 실패하였음에도, 2025년 매각예정액을 전년 대비 감액조정(230억원→215억 2,400만원)하여 재차 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2025년 5월말 기준)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찰된 이력이 있는 자산을 무리하게 감액조정하여 매각하기보다 영업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절한 매각대상을 새로 선정하여 기금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산효율화를 적기에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재무관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재정지출과 효과가 유사함에도 보증 동의 여부 및 규모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공익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출연, 현금출자, 보조 등과 같은 재정 지원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국가보증채무, 현물출자 등과 같은 재정 외 수단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지원할 수도 있음.

국가보증채무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국가보증채무는 동법에 따른 국가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12)]

2025년 5월 말 기준 보증채무 잔액은 12.5조원으로 GDP 대비 0.5% 규모이나, 2024년 10월 최초발행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3)]이 연내 5조원 한도까지 발행되는 경우 15.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이후 2028년까지 GDP 대비 1.3% 수준인 38.5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임.[14)]

---

12)「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함.

14) [주요 발행조건]

통 화	원화(KRW)	만기	3년
발행규모	1,900억원	금리조건	연 2.96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4.10.4.

[최근 국가보증채무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
▣ 보증채무	12.5	10.9	10.6	10.5	10.4	12.5
(GDP 대비, %)	(0.6)	(0.5)	(0.5)	(0.4)	(0.4)	(0.5)
- 장학재단채권[주1)]	10.5	10.2	9.9	10.0	10.2	10.7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주2)]	0.5	0.8	0.7	0.5	0.2	0.2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주3)]	1.5	-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주4)]	-	-	-	-	0.4	1.6

주 1) 장학재단채권 : 2024년 보증한도 1.9조원, 7월말 기준 발행실적 0.7조원(0.5조원 상환)
2)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2024년 발행계획 없음, 7월말 기준 0.3조원 상환
3)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2021년 8월말 상환 완료, 보증잔액 없음
4)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2024년 보증한도 5.0조원, 2024년 하반기부터 발행 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및 2025년 6월호 「월간 재정동향」 등

[2024~2028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 보증채무	**15.8**	**26.5**	**32.4**	**35.9**	**38.5**
(GDP 대비, %)	(0.6)	(1.0)	(1.2)	(1.2)	(1.3)
- 한국장학재단채권	10.6	11.5	12.1	12.7	13.2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2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5.0	15.0	20.3	23.2	25.3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4.9.

이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도입·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임.[15] 공급망안정

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화기금채권은 국가보증채권으로,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국가보증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보증 동의 여부 및 규모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출과 효과가 다르지 않음에도 국가가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채무로 집계되지 않음.

그러나 국가보증채권은 언제든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채권의 발행규모, 대출상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강화 방안 검토 필요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국회는 이를 다음연도 결산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제60조[16]에 따르면 정부는 ①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②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음.

2024년에도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이유로 4조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정책금융 수행능력 제고 및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자금공급 여력 확충 등을 이유로 각각 2조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출자하였음.

---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16)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8년 이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액
2018	한국해양진흥공사	유가증권	13,500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970
	소 계		24,470
2021	한국자산관리공사	유가증권	6,500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차량정비기구 등	1,80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03
	소 계		8,707
2022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5,650
	한국자산관리공사	유가증권	5,00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25
	소 계		11,075
2023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20,000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4,35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288
	주식회사 에스알	유가증권	3,590
	소 계		28,228
2024	주택도시보증공사	유가증권	40,000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20,000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20,000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국가재정법」제53조제2항[17]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사전에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국가회계법」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물출자는 지분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출자대상이 현물인 점 외에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2024년 기준 8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17)「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현행「국유재산법」제60조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물출자에 관한 국회의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는 현물출자가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18]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다)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특별계정출자금 편성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사업은 2024년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불용 및 반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당초 의도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여 기관의 자본금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은「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국가신용도가 낮아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조성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승인이 가능함.[19]

2024년까지 정부 출자금 6,250억원, 수출입은행 재원 6,875억원으로 1조 3,125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승인액은 2019년 5,131억원, 2022년 3,481억원, 2023년 410억원으로 등 총 9,022억원으로, 전체 조성액 대비 68.7% 수준이며 2024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음.

---

18)「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2024.11.1. 제안, 의안번호 제2205156호

19)「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조성액	정부	2,300	1,600	1,100	250	-	1,000	-	2,750	9,000
	수은	2,300	1,600	1,100	375	-	1,500	-	4,125	11,000
	소계	4,600	3,200	2,200	625	-	2,500	-	6,875	20,000
지출(승인)액		5,131	-	-	3,481	410	-	-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집행내역]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집행액
2019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건설사업	4,612
2022	탄자니아 철도차량 공급사업	1,700
	앙골라 원유운반선 수출사업	1,419
2023	나이지리아 비료플랜트 건설사업	198
합계		7,9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4년 특별계정 예산 1,000억원은 전액 집행되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에 사용되었고, 2024년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불용 및 반납 처리가 불가능함. 출자금은 일단 집행되고 나면 정부배당 외에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정부는 국가신용도가 낮아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 목적을 가진 특별계정 출자금이 당초 의도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여 기관의 자본금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후보사업]

국가	프로젝트	총사업비	지원가능액
탄자니아	철도차량 수출사업(기승인 사업 후속)	US$0.5억	US$0.2억
이라크	소방용 헬기 수출사업	US$2.4억	US$2억
몽골	울란바토르 메트로 사업	US$24억	US$3억
투르크메니스탄	AMI(지능형검침미터기) 공급사업	US$1.2억	US$1.0억
나미비아	태양광 패널 공급사업	US$2.0억	US$1.6억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라) 기금출연금이 기관 자본금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기금출연금 중 특정 사업목적을 바탕으로 교부된 출연금의 2024년 수요가 없음에 따라 전액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므로, 정부는 특정 사업목적을 가진 출연금이 당초 의도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여 기관의 자본금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원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 발주처의 요청으로 수출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활하게 수출보증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임. 2024년도 예산 250억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금융성기금인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되는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이며, 「무역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음.[20]

그런데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2024년 한 해에만 약 8,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을 가정하고 편성된 계획액이나, 2024년 원전 기자재 관련 수출계약 체결 건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수출보증보험 수요도 없어 전액 실집행되지 못하였음.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보증공급 실적이 없음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연초에 교부받은 250억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액까지 무역보험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였음.[21]

즉 정부는 원전수출보증사업의 목적으로 250억원을 출연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교부하였으나, 원전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확충에만 기여하는 결과를 낳은 것임. 이처럼 특정 사업목적을 상정하고 교부된 출연금이 당초 의도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자본금으로 처리되면, 국회가 그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이나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정부는 해당 사례처럼 예산을 교부하고 한 회계연도를 도과하였음에도 보증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및 조건을 설정하여 교부한 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자금의 실소요가 발생할 경우 재교부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특정

---

20) 「무역보험법」
제32조(기금의 관리)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1)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 · 회수금 · 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사업목적을 가진 출연금이 당초 의도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여 기관의 자본금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과다·과소 편성 및 집행 문제

①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집행 필요(한국국제협력단)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적립된 사례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의 2024년 말 기준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2,231억 3,700만원 중 집행액은 1,501억 4,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7.3%이고, 총 45건의 사업 중 24건(53.3%)은 국제기구의 실집행률(누적지급액 대비 누적집행액)이 60% 미만으로 약 절반 정도의 사업에서 국제기구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국제기구 누적지급액·누적집행액 및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 분	총사업수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누적집행액 (B)	실집행률(B/A)		
					60% 이상 사업	60% 미만 사업
국제기구협력(ODA)	45	223,137	150,141	67.3	21	24

주 1) 누적지급액(A): 2024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
2) 누적집행액(B): 미화 기준, 2024년 기준환율 1,300원 적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24건의 사업 중 4건의 사업은 2023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의 70%도 집행되지 않았으나 한국국제협력단이 2024년에 추가로 약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국제기구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약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적립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

하고,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국제기구의 예산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출연금 집행잔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재단에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년도 이월액(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년도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주요 수입원은 대부분 '개도국 개발협력(ODA)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 출연금과 전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년도 이월액(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으로부터의 이월액의 경우 2022년으로부터의 이월액 대비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그 규모가 151억 6,2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 총액의 23.5%에 해당함.

동 재단에 출연된 출연금은 대부분 사업출연금으로 이는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 집행가능한 액수보다 많은 출연금 예산이 편성·교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여 동 재단에 출연금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이자수익이 재단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 국회 차원에서 출연 사업의 적정 규모를 평가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예산 교부시 예산 집행상황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하는 한편, 전년도 잉여금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③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내역사업을 통하여 2024년 나이지리아・알바니아・부탄 및 파라과이에 신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음.

2024년 초 파라과이의 현지 정세 불안과 현지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파라과이측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였음.

그런데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5년에 다시 협의를 통하여 현지실사 및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에 출연금 전액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교부하였음.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행률은 96.7%로 집계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집행률은 76%이고,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만 고려하면 실집행률이 3.7% 수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예산의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하였음.

[2024년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예산 (A)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최종 집행액 (B)	이월액	최종 집행률 (B/A)
628	512	116	512	23	489	3.7

주) 2024년에 편성된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에 대하여만 작성한 것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이미 1년가량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계획 또는 목적과 다른 예산집행

① 출연금 사업의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집행 부적정(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탁과제로 받은 2024년도 출연금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을 하는 등 내역사업별 조정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전액 소진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자동차교환 환불제도 운영사업"(9억원)의 경우 중재부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재부 운영 및 사무국 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예산을 축소 집행하거나 전산시스템 관리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운영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위원회 운영	68,125	64,629	위원회 회의 수당, 회의 운영비 등
중재부 운영	608,878	614,779	중재위원 수당, 민원 상담 인건비, 심리판정, 공간 임대료
사무국 운영	45,157	47,271	출장 여비, 사무용품 임대료 등
전산시스템 관리	177,840	173,321	정보화시스템 용역
합계	900,000	900,000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은 개별사업 출연금을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22] 사업출연금의 경우 별도의 처리지침이 없는 경우 기관운영출연금과 달리 집행잔액을 정산 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집행잔액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지출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2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4.

②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간 불일치 발생(해양환경공단)

침몰선박 관리사업은 잔존유 확인 없이 잔존유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다른 문제가 있으므로, 잔존유 확인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이에 맞추어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예산에는 용산호 회수 55억 1,000만원, 제5영원호 회수 50억원 등 2척의 잔존유 회수를 위하여 10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용산호 회수에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제5영원호 회수 비용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선박 3척에 대한 잔존유 확인과 9척에 대한 현장조사 작업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제5영원호 잔존유 회수의 경우 잔존유 확인 작업이 지연되어 2024년 4월 완료되었고, 잔존유 확인 결과 잔존유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회수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런데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회수 비용이 절감되자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비교]

구 분	2024년 예산액 (산출근거)	2024년 결산액 (상세 집행내역)
현장조사	3억 5,000만원 ※ 5척×단가 7,000만원	9억 8,000만원 ※ **14척**×단가 7,000만원
잔존유 확인 및 회수	105억 1,000만원 ※ 용산호 회수 55억 1,000만원 제5영원호 회수 50억원	52억 100만원 집행 (46억 7,900만원 이월) ※ 용산호 회수 **25억 2,000만원** **비고마리너 확인 24억 7,000만원** **알렉산드리아 확인 25억 3,000만원** **진잉호 확인 23억 6,000만원**
합 계	108억 6,000만원	108억 6,000만원(이월액 포함)

자료: 해양환경공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잔존유 확인을 우선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잔존유 회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도 면밀한 계획 하에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③ 회계·기금의 혼용 부적정(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지원을 위하여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립은 2024년 8월 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87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개최 필요성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논의될 수 없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필요성과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4년 예비비로 신규 편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어야 함.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0월 28일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은 그 전인 2024년 9월 26일에 개최하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수행 중이던 4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음.

이와 같은 예산의 집행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추진했어야 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동 행사와 관련이 적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특정 행사 개최를 위해 합쳐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④ 전국과학전람회 행사 확대를 위한 예산 전용 부적정(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전국과학전람회를 확대 개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과학관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국과학전람회 개최를 위하여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의 예산안을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수정 없이 확정되었음.

이후 국립중앙과학관은 2024년 4월 1일에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관련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이유로 전시관운영(손익계정) 사업 예산 2억원과 시설관리운영(손익계정) 사업 예산 5,000만원을 각각 과학교육(손익계정)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고, 2024년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최를 위하여 본예산 3억 1,100만원에 전용액 2억 5,000만원을 더한 5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음.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관련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4.1.)	전시관운영 (손익계정) (2231-402)	210-09	200	과학교육 (손익계정) (2232-407)	210-14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관련 특별전시 및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추가 예산 확보
	시설관리운영 (손익계정) (2233-411)	210-15	50			

자료: 국립중앙과학관

그러나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과학전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예년 수준만큼 편성되어,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과학전람회를 개최했어야 하나,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전람회를 확대 개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집행 방법·시기 등 부적정

①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전 기자재 사전 구입 부적정(한국콘텐츠진흥원)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손망실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2개소씩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의 및 협의의사록(RD)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1차년도인 2023년에는 양성센터 구축이 불가능하였음.

이후 2024년 1월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2024년 8월 자카르타 양성센터가 제일 먼저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나, 두 번째로 구축하려던 시카 양성센터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요청에 따라 마카사르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되면서 2025년 5월에 개소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23~'24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위탁용역업체의 실집행률은 100%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2023년 하반기에 자카르타와 시카 양성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의 기자재를 미리 구입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손망실 위험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자재 구입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마카사르 양성센터와 같이 각 양성센터별 리모델링 공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구체화된 후 기자재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이와 같이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장기간 창고에 보관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출연금 및 수탁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운영계좌 사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연금 사업과 정부수탁사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비 집행을 특정 운영계좌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23] 건설기술 연구·개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건설기술 연구 · 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 ·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 ·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 · 개발 사

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계리하고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연금 등에 대한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나 계별사업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고, 특정 '운영자금 계좌' (국민은행 ***-**-****-***)에서 먼저 일괄 지출(선지출)하고, 이후 개별사업 계좌에서 운영자금으로 이관(후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는 선지출과 후이관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자금흐름을 불분명하게 하며, 운영자금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에 대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운영계좌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을 기금변경 등을 통해 추진한 것은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4년 국제예술교류지원 등 상기 3개 사업에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① 먼저,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에서는 자체 계획변경한 일반수용비 7억 9,500만원 등을 활용하여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이하 "제10차 총회"라 함) 개최를 위한 개최분담금으로 1억 979만원, 행사 대행 용역비 선금으로 7억 6,010만원 등 약 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러한 계약체결은 각종 정부 예산 및 기금사업의 수행과 경비 지출을 위한 지출원인

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행위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된 제10차 총회 관련 예산이 총 6억원(행사운영 4억 6,100만원)에 불과하여, 용역비용 충당을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기금변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②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예산 3억 8,000만원 및 공연예술창작 육성 사업 예산 4,800만원 등 2개 사업 예산을 통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 사업을 기금변경 절차 없이 추진하였음.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은 각 시스템의 기능·활용도 및 유지보수·관리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면밀히 비교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재정당국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동 사업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라) 집행잔액·이월 또는 결산잉여금 등 처리 부적정

① 원인행위 없는 출연금의 이월 및 재이월 부적정(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출연금 집행잔액 일부를 임의로 ‘미집행 이월’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인행위 없이 이월 및 재이월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여 집행잔액의 정산·반납 및 이월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자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은 집행잔액을 임의로 “미집행 이월”과 “불용액”으로 구분한 후, ‘미집행 이월’은 매년 원인행위 없이 이월과 재이월을 반복하고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미집행 이월액 규모는 약 1조 9,835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일반철도(1조 6,926억원)·시설계량(1,138억원) 및 광역철도(758억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미집행 이월액 중 39.3%에 해당하는 7,795억원은 이월예산으로서 재이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2024년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명	2024년 예산현액(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D=A-B-C)
			사고	미집행	소계(C)	
합계	7,519,133	4,878,836	179,913	1,983,482	2,163,395	476,902
본예산	5,439,476	3,620,819	137,799	1,203,956	1,341,755	476,902
이월예산	2,079,657	1,258,017	42,114	779,526	821,640	-
□ 관리비	57,792	57,792	-	-	-	-
본예산	57,792	57,792	-	-	-	-
이월예산	-	-	-	-	-	-
□ 사업비	7,461,341	4,821,044	179,913	1,983,482	2,163,395	476,902
본예산	5,381,684	3,563,027	137,799	1,203,956	1,341,755	476,902
이월예산	2,079,657	1,258,017	42,114	779,526	821,640	-
□ 고속철도	598,507	531,795	20,264	41,448	61,712	5,000
본예산	518,202	502,554	10,296	352	10,648	5,000
이월예산	80,305	29,241	9,968	41,096	51,064	-
□ 일반철도	3,946,503	1,649,594	136,715	1,692,573	1,829,288	67,621
본예산	2,096,990	552,571	104,569	972,229	1,076,798	467,621
이월예산	1,849,513	1,097,023	32,146	720,344	752,490	-
□ 광역철도	556,263	469,051	7,167	75,842	83,009	4,203
본예산	464,901	392,296	7,167	61,235	68,402	4,203
이월예산	91,362	76,755	-	14,607	14,607	-
□ 시설유지보수	516,515	471,233	768	44,514	45,282	-
본예산	510,991	465,716	768	44,507	45,275	-
이월예산	5,524	5,517	-	7	7	-
□ 시설개량	1,704,994	1,576,204	14,979	113,811	128,790	-
본예산	1,665,427	1,536,638	14,979	113,810	128,789	-
이월예산	39,567	39,566	-	1	1	-
□ 기타사업	138,559	123,167	20	15,294	15,314	78
본예산	125,173	113,252	20	11,823	11,843	78
이월예산	13,386	9,915	-	3,471	3,471	-

자료: 국가철도공단

이와 같이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연도에 사정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출연금 집행잔액을 “미집행 이월” 처리하고, 차년도에 다른 내역사업에 배정하는 것은 원인행위 없는 이월 · 재이월 및 내역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공단은 미집행 이월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 제약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업기간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재정법」과 지침에서 정한 이월 · 재이월 취지에 부합하도록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출연금 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및 이월에 관한 지침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② 연말에 불용 예상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충전한 캐시 등의 국고 반납 필요(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촉진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카카오톡 알림톡 캐시 등을 충전하는 데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미사용한 캐시 등은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정산보고서에는 민간위탁사업비 15억 7,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었음.

그런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2024년 실적보고서를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4년 12월 24일 타스온 메시지 서비스(일반문자 서비스) 캐시 400만원, 2024년 12월 26일 플랫폼 기업메시징(자동문자 서비스) 캐시 550만원, 2024년 12월 30일 카카오톡 알림톡 캐시 1,430만원을 충전하였음.

[카카오톡 캐시 등 충전 내역]

결의일자	세부항목	집행금액(원)
2024.12.24.	귀어귀촌종합센터 메시지 서비스(타스온) 캐시 충전	4,000,000
2024.12.26.	플랫폼 기업메시징 캐시 충전	5,500,000
2024.12.30.	카카오톡 캐시 충전	14,302,880

자료: 「2024년 귀어귀촌 촉진(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사업 실적보고」 일부 발췌

이는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카카오톡 캐시 등을 충전한 것으로,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위탁계약서에 따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고, 카카오톡 캐시 등은 기관이 외부 통제 없이 관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캐시 등을 충전하는 것은 부적정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카카오톡 캐시 등을 충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집행잔액으로 충전하였으나 미사용한 캐시 등에 대해서는 환불 후 즉시 국고에 반납할 필요가 있음.

③ 공단 장기 미정산 금액의 조속한 정산 필요(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산을 거쳐 교부받은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기준 1,307억 2,900만원이 미정산 상태이므로, 환경부는 조속한 정산 완료와 국비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말 기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누적 금액이 1,307억 2,9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338억 7,600만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서 작성 절차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서가 송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3년 이전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국가 및 지자체로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792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동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준공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인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 총 19억 9,700만원이 2024년까지도 지방자치단체 미회신을 이유로 반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인수인계를 마친 후 8년 동안이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최근 10년간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준공 후 미반납 사업]

(단위: 개, 백만원)

준공연도	미반납 사업 현황				합 계		
	정산서 작성 중 (소송 중 포함)		지자체 미회신 (공단 정산은 완료)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누적금액
계	22	33,876	57	96,853	79	130,729	130,729
2024년	17	30,057	16	21,404	33	51,461	130,729
2023년	3	2,484	15	31,938	18	34,422	79,268
2022년	-	-	9	16,775	9	16,775	44,846
2021년	1	1,401	4	4,829	5	6,230	28,071
2020년	-	-	4	10,357	4	10,357	21,841
2019년	1	△66	3	7,193	4	7,127	11,484
2018년	-	-	3	2,368	3	2,368	4,357
2017년	-	-	1	△8	1	△8	1,989
2016년	-	-	2	1,997	2	1,997	1,997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준공 후 조속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처리 절차를 이행하여 국고 미반납 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공단의 승인으로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필요(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으로 사업종료연도를 도과하여 재이월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의 2차 피출연기관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2023년도 이월액 중 일부 금액을 2025년으로 재이월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3년 이월금 12억 700만원 중 2024년에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10억 5,800만원을 2025년으로 재이월하였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재이월금은 2023년 이월금 8억 5,600만원 중 2024년 집행액 5억 9,300만원을 제외한 2억 6,300만원임.

이는 2차 피출연기관 수준에서 사업출연금(350-02목)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3조를 준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재이월 및 이월 요청을 승인하여 준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최종집행액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종집행액	2023년 이월금 중 집행액	2024년 예산액 중 집행액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10	149 (2023년 이월금 1,207)	61
녹색에너지연구원	797	593 (2023년 이월금 856)	20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사업수행기관 수준에서 사업계획서상 종료연도(2024년)를 도과하여 2025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만으로 이월 및 재이월을 승인하여 주는 것은 투명한 예산관리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월제도는 단년도 회계주의의 예외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재이월의 경우에는 이월의 경우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이 사례와 같이 사업종료연도를 도과하여 발생한 재이월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수입 관리 강화 필요

(가) 발생한 수입원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

① 미집행된 사업출연금으로 발생한 이자금에 대한 관리규정 정비 필요(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은 사업출연금(350-02목)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사업수행기관 수준에서 이월하여 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사용범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발명진흥회는 2020년부터 실집행이 100.0%에 크게 미달하여 출연사업 계좌에서 이자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기준 누적 이자수익 규모는 8억 9,100만원으로 나타남.

[2020~2025년 발명진흥회 담보 IP 매입 출연회계 내 이자수익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합계
기말 이자수익	16	18	22	397	437	1	891

주) 세후 이자수익 기준임
자료: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자수익금을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계정에 누적하여 적립함과 동시에, 8억 9,100만원 중 3,500만원은 기업신용정보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구매에 집행하였음.

사실상 대부분의 이자수익금이 집행가능성이 낮은 채로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동 지침에서 이자금액에 대한 반납 또는 이월에 대한 중앙관서장의 승인절차 없이 이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동 지침은 사업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이자수익에 대해서 매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사업 수행기관 수준에서 이월하여 소유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사용범위에서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자동차안전도 평가에 사용한 시험차 매각대금의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위해 구매한 시험차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을 출연금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바, 매각 대금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사용한 자동차와 부품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4)]

공단의 시험차 매각 수익을 살펴보면, 매년 약 1~2억원 내외로 최근 4년간 6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시험차 매각대금]

연 도	매각 대금(원)
2020	148,390,000
2021	179,964,279
2022	173,888,000
2023	133,170,732
합계	635,413,011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매각 대금이 출연금 결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시험차 매각대금과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 부족분 등을 예산 편성시부터는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출연금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4)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선로사용료의 예산 반영 필요(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부터 SR이 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선로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유지보수비에 추가 편성·집행하고 미정산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유지보수 관련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2023년 9월부터 SR이 일반철도 구간(경전·동해·전라선)에 대한 운행을 개시하면서, 공단은 SR을 대상으로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음. 공단이 2023년부터 SR로부터 추가로 징수한 선로사용료는 2023년 19억 5,600만원, 2024년 45억 1,500만원, 2025년 45억 1,500만원임.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3.9~)	2024년	2025년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합 계	405,486	408,045	408,045
	철도공사	403,530	403,530	403,530
	SR	**1,956**	**4,515**	**4,515**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편성	합 계	403,530	408,045	410,001
	철도공사	403,530	403,530	403,530
	SR	-	4,515	6,471

주) 2025년 SR 유지보수비(6,471백만원) = 2023년 징수액(1,956백만원)+ 2025년 징수액(4,515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공단은 매년 SR로부터 징수받은 선로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해당 연도 유지보수비에 편성하거나 수익으로 인식 후 차년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등 임의적으로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24년 징수분은 2024년 유지보수비에, 2023년 선로사용료는 2024년에 수익으로 인식 후 2025년 유지보수비에 편성·집행하였음.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인건비·경비·보수비에 대한 실소요액을 산출한 후 선로사용료를 차감하여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유지보수비와 선로사용료 수입만큼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감소하게 되며, 정산 차액만큼 재원이 낭비되거나 국고가 과다 지원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함.

향후,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출연금 지원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미수납 수입금에 대한 징수·수납 실적 제고

① 미수납 기술료 징수결정 필요(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촉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지 못한 기술료를 전수 조사하여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계상함으로써 기금 수입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게 수납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기술료를 수납받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고, 납부기한이 2019~2024년에 걸쳐 있는 기술료 중 2025년 3월 기준 미납된 기술료는 총 97개 기업으로부터 14억 5,400만원임.

[2019~2024년이 납부기한이나 아직 미납된 기술료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기업수	기술료 미납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3	43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2	519
한국산업단지공단	3	16
계	97	1,454

주) 2025년 3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2024년 6년 동안 미납된 기술료가 14억 5,4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촉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581억 6,800만원으로 동일한데 이는 미납된 기술료를 징수결정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기술료 중 미납된 기술료도 전수 조사하여 국고로 수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고, 수납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개발비 정산금 등 미수납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R&D 사업에서 제재부가금과 정산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를 조속히 수납하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장기 미수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 R&D 사업은 6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5개 사업 총 2,276억 9,100만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립생물자연관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환경부 R&D 사업 수행기관별 현황]

기관명	사업수	예산액(백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5개	227,691
국립생물자원관	2개	18,687
국립환경과학원	1개	47,559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개	6,39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개	648
한국연구재단	1개	300
합계	41개	301,27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하도록 하고,[25]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개발비 정산 후 연구기관에 정산금 반납 요청을 하고 있고, 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등 제재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음.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기준 제재부가금 미수납액 8억 8,000만원과 정산금 미수납액 2억원을 합하여 총 10억 8,000만원이 수납되지 않고 있음.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환경부 R&D사업 중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종류	부과년도	세부사업명	미수납액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제재부가금 미수납	2022	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250
		2023		496
		2024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4
		합계		880
	정산금 미수납	2023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기술 개발	31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9
		2024	지중환경오염위해 관리기술 개발사업	30
		합계		200
	총 합계			1,08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수하여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금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수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연구 제재처분 환수금 미납금을 신속히 환수할 필요(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 제제처분에 의한 환수금 미납금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히 환수할 필요가 있음.

2018~2024년 총 7년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처분에 의한 환수금 발생액은 422억 4,400만원임.

그러나 2025년 7월 말 기준 전체 환수금 중 122억 4,300만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2018~2024년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전체 환수금 (A)	납부한 환수금 (B)	미환수금(C=A-B)			미 환수율 (C/A)	미환수 과제 수
				납기가 도래한 금액(D)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C-D)		
2018년	7,765	6,884	881	881	-	11.3	9
2019년	7,174	6,556	618	618	-	8.6	6
2020년	6,563	5,991	573	573	-	8.7	1
2021년	5,267	2,781	2,486	2,486	-	47.2	6
2022년	3,367	2,754	612	612	-	18.2	5
2023년	7,598	2,518	5,080	5,080	-	66.9	4
2024년	4,510	2,57	1,993	1,993	-	44.2	5
계	42,244	27,741	12,243	12,243	-	29.0	36

주 1) 전체 환수금: 제재부가금 + 연구개발비 환수금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은 제외함)
2) 납부한 환수금: 연구수행기관이 전문기관에 납부한 환수금이 아닌, 부처에 최종적으로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즉, 국고 반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환수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부정사용하거나 연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 등이 환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히 환수할 필요가 있음.

(다) 수입원 신규 발굴 또는 기존 수입원 존치 필요성 검토

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의 정액 사업비 편성 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정액의 관리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받을 필요가 있음.

공단은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를 1.00%로 하고 이와 별도로 공단의 위탁수수료도 0.10%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별표1> 대출금리]

대출 방식	대출금리	융자취급수수료
간접대출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00%p, 대기업은 1.50%p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공단 0.10%p)

주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이 사업은 융자 대출금리의 0.1%p를 융자취급수수료로 산정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융자 예산금액이 늘어날 때 관리비 증액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취급수수료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이 사업은 융자 규모가 2022년 912억원, 2023년 1,470억원, 2024년 2,236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융자취급수수료도 증가한 상황임.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는 등 관리와 무관한 외부 사유에 의하여 인건비 등 관리비로 집행되는 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취급수수료가 사업 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R&D 사업이나 보조사업과 같이 정액의 관리비를 사업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② 정부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은 기관 수입의 대부분이 정부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도국 수출 등 정부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재정정보원법」은 재정정보원의 사업범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과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은 그간 경험전수, 초청연수, 자문, MOU, KSP, 범정부 수출개척단, 컨설팅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실적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 한국재정정보원의 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액 821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743억원(90.5%)으로 기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탁사업비, 기타수입 및 전기이월금도 정부 출연금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기관의 모든 수입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2024년 한국재정정보원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Ⅰ. 출연금 수입	74,307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2,802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17,679
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917
4. 재정정보분석	565
5.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40,344
Ⅱ. 수탁사업비 수입	162
Ⅲ.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846
Ⅳ. 전기이월금	6,786
1. 전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6,781
2. 기본재산	5
총 계	82,101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6년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된 이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외의 자체 수익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 출연금으로 수입구조가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타 기관의 연구용역 사업 등 수입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경영 및 조직 관리 개선 필요

(가) 복리후생제도 개선 필요

①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첫째, 현행 능률성과급 지급 체계 하에서는 자체수입의 과소계상을 통한 성과급의 과다 지급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자체수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함으로써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구성되고, 능률성과급의 재원이 결산잉여금의 일부임을 고려하면,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이 증가할수록 능률성과급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즉, 수입예산 편성 단계에서 간접비 목표수입을 과소 설정함으로써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을 증가시켜 성과급을 과다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매년 결산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3년 통일화된 자체수입 산정기준(3개년 가중평균)을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자체수입을 3개년 가중평균으로 통일화한 이후 수탁연구 수요 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와 직・간접비 불균형으로 인한 수입-지출 구조의 기형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국 2019년 가중평균제도를 폐지하고 적정 수준의 자체수입 목표예산액을 산정하는 한편 능률성과급 한도 규모를 설정(월보수액의 100%)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음.

그런데 능률성과급 규모와 관련하여 가중평균제도 폐지 전 6개년(2013~2018) 평균과 폐지 후 6개년(2019~2024) 평균을 비교하면,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에서 양자 간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함.

능률성과급 재원의 대부분이 자체수입(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임을 고려하면, 가중평균제도 폐지 전후로 연평균 능률성과급 지급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은 각 연구기관이 자체수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함으로써 능률성과급의 재원을 마련할 유인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자체수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함으로써 능률성과급을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연구기관들이 성과급 제도 운영 과정의 차등화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연구기관은 성과급 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의 차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이므로 동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 부여라는 성과급 제도의 일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지침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2017. 10. 13.)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은 연구수행실적 등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반드시 차등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업적평가 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② 최상 · 최하 등급의 인원 비율을 전체 인원의 10% 이상으로 하며, ③ 특정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함. 또한 ④ 최상 · 최하 등급 간 지급률은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충분한 수준의 차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그런데 연구기관별 능률성과급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6개 기관에서 업적평가 등급 수가 5개 미만이었고, 7개 기관에서 최상 또는 최하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10% 미만이었으며, 13개 기관에서 특정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50%를 초과하였고, 15개 기관에서 최상 등급의 지급률이 최하 등급의 2배 미만으로 설정되는 등 상당수 기관들의 성과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등급 간 차등화가 부족하였음.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차등화 정도가 부족한 연구기관]

구분(기관 수)	해당 기관명
업적평가 등급 수가 5개 미만(6)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최상 또는 최하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10% 미만(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문연구직, 행정직),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특정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50%를 초과(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최상 등급의 지급률이 최하 등급의 2배 미만(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구분(기관 수)	해당 기관명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등급 간 차등화 정도를 충분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능률성과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복리후생 관련 지출 재검토 필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재직 임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임직원에게 연간 1인당 15만원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에도 퇴직 등으로 발생한 복리후생비 잔액을 활용하여 재직 임직원에게 건강관리용품 구입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 씩 매년 1,5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는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 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타공공기관이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리후생제도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국가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로 재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임직원을 위해 건강관리용품을 구입·지급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적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함.

③ 지침상 대부 상한을 초과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문제(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 상한을 초과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는 대부 초과금액의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잠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말 기준 대부총액 기준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준 인원이 지원인원의 50%를 초과하고, 금액으로는 그 비율이 80%에 근접하고 있음.

[2024년 한국석유공사의 주택임차 등 지원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대부총액 (A)	한도 초과 대부금액 (B)	비율 (B/A)	지원인원 (a)	한도 초과 지원인원 (b)	비율 (b/a)
주택임차	10,936,307,294	9,118,807,294	83.4%	108	68	63.0%
주택구입	37,510,719,496	27,123,303,940	72.3%	411	192	46.7%
생활안정자금	16,709,200,000	13,344,900,000	79.9%	728	434	59.6%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는 공사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뿐만 아니라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석유공사는 노사협의를 통한 대부 초과금액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본잠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필요

① 대외활동 관리 강화 필요(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연구기관별 대외활동의 상한시간 및 상한액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대외활동과 본연의 업무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받음.

한편 같은 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강의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하며,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직원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외활동이 이에 포함됨.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부강의등 대외활동의 사례금에 대해 시간당, 건당 상한액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연간 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 대외활동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은 연구기관마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외활동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연구기관별 집필활동에 대한 규정상 상한시간 및 상한액을 살펴보면, 일부 기관에서는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직원이 제한 없이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음.

[예시: 연구기관별 집필활동에 대한 규정상 상한시간 및 상한액]

구분	상한시간(또는 횟수)	상한액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국토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간 600만원
산업연구원	-	건당 500만원, 연간 2,00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무 시간 중 집필 불가	500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통일연구원	-	연구원 대외활동규칙 제10조에 따른 금액 적용

구분	상한시간(또는 횟수)	상한액
한국개발연구원	-	5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	-	건당 4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개 이상 외부사업 참여시 인사위원회 심의	4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월 3회 제한(단, 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300만원
한국노동연구원	-	1,00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건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국법제연구원	-	건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4회 이내	건당 700만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외부 공동연구 상한액은 연간 1,500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건당 800만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 1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한국행정연구원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한국환경연구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함	
건축공간연구원	-	건당 40만원
KDI국제정책대학원	-	-
육아정책연구소	-	-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대외활동에 대한 내부규정상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간 101회 이상 대외활동을 수행한 36명의 직원이 103회에 걸쳐 회당 100만원 이상의 사례금 2억 8,355만원을 수령하였음. 특히 산업연구원의 경우 6명의 직원이 35회에 걸쳐 8,294만원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횟수 및 금액이 가장 많았음.

이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직원이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의 취지 및 연구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활동의 상한시간 및 상한액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대외활동과 본연의 업무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저연차 직원의 인력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은 최근 5년간 전체 퇴직자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퇴직자 비율이 60.4% 수준이며,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조직융합 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최근 5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퇴직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297명의 정원 중 24명이 퇴사하여 퇴직률이 8.1%에 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5.7%의 퇴직률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은 기관 특성상 IT 개발자들을 다수 채용하고 있으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대규모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경력을 쌓은 후 보수 등 조건이 좋은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최근 5년간 근속연수별 퇴직 현황을 보면, 5년간 전체 106명의 퇴직자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는 60.4% 수준으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어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방안 및 조직융합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2020~2025.4. 연도별 근속연수별 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4.	합계	
								%
1년미만	5	7	5	4	2	1	24	22.6
1년이상~2년미만	4	4	9	2	1	-	20	18.9
2년이상~3년미만	1	2	7	6	4	-	20	18.9
3년이상~4년미만	8	1	1	1	2	1	14	13.2
4년이상~5년미만	6	2	-	2	1	2	13	12.3
5년이상~6년미만	-	-	-	-	4	1	5	4.7
6년이상~7년미만	-	-	1	3	1	1	6	5.7
7년이상~8년미만	-	-	-	1	1	-	2	1.9
8년이상	-	-	-	-	1	1	2	1.9
총계	**24**	**16**	**23**	**19**	**17**	**6**	**106**	**100**

주) 임기에 의한 퇴직(임원), 정년 퇴직을 제외한 퇴직자 대상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인력채용 지연으로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단의 인력이 단순 사무직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세부과제 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등 연구개발과제 전주기 관리, 참여자 모집 및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임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연으로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사업단 운영비 예산액 13억 6,400만원 중 2024년 12월 말 기준 3억 9,200만원이 실집행(집행률 29.0%) 되었음.

해당 집행액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 Ezbaro)에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등 등록이 지연된 금액은 제외된 것인데, 이를 포함하더라도 6억원(집행률 44.0%)이 최종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정공모기관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이후 계획된 현장 컨설팅 및 회의비 등 연구활동비 집행이 순연(4개 부처 전체 연구활동비 집행률 22.2%)되고, 인력채용 지연과 중도퇴사로 인하여 인건비 집행이 미진함(4개 부처 전체 연구활동비 집행률 72.5%)에 따른 것임.

[2024년 다부처 사업단 전체 연구비 및 인건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세목	예산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률
연구활동비 등	5,460	1,778	3,682	22.2
인건비	2,181	1,581	600	7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사업단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립된 비법인 사업단으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어, 일부 직원들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업단의 인력은 사업의 세부과제 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등 연구개발과제 전주기 관리, 참여자 모집 및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 향후 과제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④ 신규인력 적기 확보에 따른 과제 수행 차질 발생 방지 필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인력 미채용에 따라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연기되어 인건비를 이월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던 과제들은 모두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수행하던 12개 과제였음.

[신규인력 미확보로 인건비가 이월된 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예산액 (A)	매칭 (B)	예산현액 (C=A+B)	최종집행액 (D)	집행률 (D/C)
레이저 절단/해체 기술 고도화 및 실증	75	-	75	17	22.7
중수로 폐수지 탱크내 혼합물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77	-	77	20	26.0
저방사능 폐수지 열화학적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74	-	74	16	21.6
중수로 특화 C-14/H-3 함유 폐활성탄 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81	-	81	23	28.4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100	-	100	29	29.0
중수로 칼란드리아 절단 및 열수송계통 제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고도화	874	600	1,474	247	16.8
원전해체시 발생하는 고농도/저농도 액체폐기물 통합 처리 기술 개발	110	-	110	21	19.1
확장현실 기반 해체공정 검증 및 교육 시스템 개발	108	-	108	42	38.9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가열분쇄 기반 고도감용 공정 실증	69	-	69	19	27.5
대단위 극저준위 폐기물 제염용 자동화 연마제염 플랫폼 개발	99	-	99	18	18.2
진공 유도가열 및 플라즈마 토치 용융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부피 감용 기술 실증	100	-	100	23	23.0
전해액 재생 기반 전해제염 기술개발	90	-	90	57	6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과제들은 2024년 12월에 연구원이 채용되거나 또는 2025년에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2024년에는 인력 채용에 차질이 발생하여 과제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인력 미채용에 따른 연구수행과 원전해체 기반 설비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⑤ 사무국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별 업무량 격차가 상당하고 사무국의 직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인건비가 불용되는 등 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경직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적인 업무실적 지표로서 지사별 조정접수 건수를 살펴보

면, 2024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서울지사는 674건, 한국부동산원 소속 인천지사는 201건인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제주지사는 15건으로 최대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2024년 기준 1인당 업무 처리건수로 환산하더라도, 서울 74.9건, 인천 40.2건, 제주 5건으로 1인당 업무량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정위원회(2개소)는 한국부동산원 조정위원회(10개소)에 비해 조정접수 1건당 예산투입액이 약 3배에 이르고 있음.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량 분석]

(연말 기준, 단위: 백만원)

	접수(건)	집행예산	인원(명)	건별 예산	처리건(1인당)
한국부동산원	843	5,656	32	6.7	26.3
LH	33	752	6	22.9	5.5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 업무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경직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임.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심사관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강원·경북 등 지방 사무국의 경우 변호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최근 4년간 약 66억원의 인건비가 불용되었음.

향후 국토교통부는 사무국의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사별 업무량 ·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인력 관리와 예산 배분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필요

(가)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준수 필요 사항

① 정부광고 시행 시 관련 법령 준수 필요(마약퇴치운동본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광고 시행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광고 시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 중 **‘대국민 예방교육’** 내역사업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강사 양성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47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부광고 시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집행이 의무화되었음. 그럼에도 동 본부는 2024년도에 시행한 정부광고 중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를 관련 법령에 따른 의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집행의 일원화를 통해 광고의 공익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광고 자체집행은 동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임. 따라서 향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부광고 집행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② 해외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집행 부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일부 과제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국가연구개발과제 공고 권장시점보다 늦게 공고되어 해외 정부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글로벌 R&D 과제의 준비기간이 해외기관과의 일정 조율 등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231-302)(마약안전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 사업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본 사업의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전기연구원 등 62개 연구수행기관에 예산액을 교부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 28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동 사업의 과제 중 11개 과제는 연구수행기관에서의 최종집행률이 2024년 연말 기준 30.0% 미만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최초 공고기간은 2024년 2월 26일에 개시되어 4월 30일까지 약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음. 이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적어도 1월 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비추어 볼 때, 공고시점이 늦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글로벌 R&D 과제가 해외기관과의 일정 조율 등 일반적인 R&D 과제보다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③ 기한 내 연구비 적시 등록 독려 필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통합RCMS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비가 적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사업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2024년 계획현액은 433억 1,300만원임.[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제2항제1호는 연구비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비관리시스템인 통합RCMS에 기 집행한 연구비를 등록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해 보였던 24개 기관은 대부분 인건비를 월별로 집행하고 이를 연말에 한번에 등록해온 관행에 따라 입력을 지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집행실적 파악이 투명하지 못하여 예산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2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에너지 국제공동연구(R&D)(5801-301)(에너지정책관)

2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5703-344)(원전산업정책국)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집행한 연구비가 법령상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지침 또는 규정 제·개정 필요

①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 개정 필요(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급금을 전액 지급한 비율이 최근 3년간 매년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한국연구재단은 인건비, 경상경비 및 기관 사업추진비를 지원받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58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건 중 28건(84.8%)에 대하여 선급금을 100% 지급하였음.

이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내규인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용역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동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용역비 지급 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외에는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선급금 지급액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한국연구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 내규 등에서 선급금 지급액의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이 다른 기관과 달리 선급금 지급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정산이 완료된 R&D 종료과제에 대해 기한 내 정산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규정된 정산 완료기한의 적정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9)(기초원천연구정책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연구가 종료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연구비 정산을 3개월 이내에 '실시' 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제6항은 정산업무 처리기한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정산을 완료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규정한 정산 마감기한에 따르면 연도말 종료과제가 차차년도에 정산이 완료될 것이므로 국고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규정된 정산 완료 기한 1년 6개월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산 조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법적 근거가 미흡한 차입 부적정(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차입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부차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사업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은 고유업무 및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출연금을 지원받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5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30]

현행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 및 정관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사업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으로만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 4월 정부 예산 교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10억원을 차입한 적이 있으며, 최근 2024년에는 10월 드론인증센터 구축 관련 시공사 공사중단 및 타절 등 분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1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30) **국토교통부 소관**, 일반회계-항공안전기술원출연(3732-307)(항공정책실)

연내 사업추진 등 부득이한 외부 차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차입절차 또는 차입한도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이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와 경영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에는 차입금을 활용한 재원조달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외부 차입이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차입금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④ 민간위탁사업비 추가 지원 적절성 문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탁계약 상 결손 보전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응시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계약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국가시험원에 추가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탁사업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은 의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예산 7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31)]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수가 급감(예상 3,256명 → 실제 364명, 최초 접수 기준)함에 따라 17억 9,300만원의 국가시험원의 응시수수료 수입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내역변경을 통해 8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이를 제89회 의사 실기시험 시행에 지원하였음.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국가시험관리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계약상 추가 지원 규정 또는 계약변경 등의 조치 없이 재차 민간위탁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특히「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실기시험 시행’은 위탁계약 상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범위 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실질적 계약내용의 변경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원 과정에서 위탁계약 변경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미흡한 측면이

31)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국가시험원 운영(4331-301)(보건의료정책관)

있다고 보이므로, 계약관련 법령 준수 등 위탁사업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⑤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마련 필요(한국산업기술시험원)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주관기관으로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시설 및 장비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3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32)]

동 사업을 통하여 구축될 예정인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는 구축 이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할 계획으로, 우주항공청은 시험평가센터 및 장비 구축 이후 운영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추진 계획은 수립 중이라는 입장임. 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수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등을 통해 센터 운영비용을 확보할 계획이고, 운영 실적 등의 관리 방안에 관하여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계약 체결 및 관리 필요

①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약금액의 규모와 계약상대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한국연구재단은 인건비, 경상경비 및

32) **우주항공청 소관,** 일반회계-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1339-301)(우주항공산업국)

기관 사업추진비를 지원받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58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33)]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체결이 원칙이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계약 120건 중 83건(69.2%)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수의계약 체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수의계약 83건 중 58건(69.9%)의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계약금액의 규모와 계약상대기업의 유형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조건만 만족하면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업무 수행 시 경쟁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약금액의 규모와 계약상대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절 사용(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원칙적으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낙찰차액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등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36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 정보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25억 6,700만원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일부인 5,586만 2,000원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음.

그러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9)(기초원천연구정책관)

34)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3032-300)(보건산업정책국)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의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침의 취지에 따라 동 진흥원의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역시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예외적인 집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후관리 미흡으로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의 발생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③ 낙찰차액을 사용한 개발비 집행 부적정(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 항목 중 감리비의 낙찰차액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국민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관계기관 간 시스템 등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4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2024~2025년 시스템 감리용역 발주액은 4억 4,000만원이었으나 계약액은 3억 5,200만원이며, 2024년분의 경우 발주액은 2억 5,578만원 중 계약액은 1억 9,578만원으로 6,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여야 함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4년 10월 감리용역 계약 후에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개발비로 사용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단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④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반납 필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양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사업의 이자를 원칙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자수익이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았고, 2024년에는 예산 6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35)]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일반적인 위탁사업과는 달리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중 일부를 직접 해당 사업의 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178만원이 동 사업에 사용되었음.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위탁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이자수익을 포함한 모든 집행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을 해당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자수익을 국고에 반납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5)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231-509)(마약안전기획관)

(8)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성과 실적제고 필요

①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 안내 강화 필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육성주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및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한해 동안 총 180건의 확인 요청 중 5건(2.8%)만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음.

[분기별 신청 및 선정 현황 표]

(단위: 개)

연도	2024.2분기	2024.3분기	2024.4분기	합계
신청수	130	33	17	180
선정수	1	3	1	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대비 인정 비율이 저조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도 있을 것이나, 제도 초기에 기업 등이 어떤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인지에 대한 확인 기준이나 선정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육성주체 위주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확인 제도에 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육성주체를 대상으로 제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IP의 수익화를 위한 매각 및 실시권 부여 등 실적 제고 노력 강화 필요(한국발명진흥회)

매입한 IP의 매각대금 및 연간 실시료 수입이 저조한 상황으로 정부지원이 관성화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특허청은 IP의 수익화를 위한 매각 및 실시권 부여 등 실적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IP를 향후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전문기관은 2020~2024년 5년 동안 총 307건의 IP를 220억 5,800만원에 매입하였음.

그러나 매입한 IP를 다시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권 등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수한 비용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IP 77건 5억 8,700만원에 불과함.

[2020~2024년 담보IP 수익화 실적]

(단위: 건, 개, 백만원)

구분	합계			매각			실시권 부여		
	건	IP 개수	금액	건	IP 개수	금액	건	IP 개수	금액
2020	-	-	-	-	-	-	-	-	-
2021	2	2	7	-	-	-	2	2	7
2022	7	23	114	-	-	-	7	23	114
2023	11	18	88	3	4	53	8	14	35
2024	13	34	378	4	10	274	9	24	104
합계	33	**77**	**587**	7	14	327	26	63	260

주) 수익화 실적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특허청

매각 및 실시권 부여 사례 중 일부 건에 대한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4,000만원 및 2024년 1억 5,600만원의 매각 건을 제외하고는 매각액 또는 연간 실시료가 매입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금과 같이 매입한 IP 금액에 비해 연간 실시료가 소액이거나, 매각을 통한 수익화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회수금이 매입금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부실기업의 IP 매입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관성화될 우려가 있음.

수익금이 IP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이라는 점에서, 특허청은 IP의 수익화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EMR 사용인증 제고 방안 마련 필요(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사용인증 참여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데, 이는 EMR 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EMR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증인 '제품인증'과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용인증'으로 구분됨.

그런데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3만 6,234개의 의료기관 중 82%가 제품인증을 받은 EMR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실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해 사용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단 11%에 그치고 있음.

[인증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24.12월 기준)

구분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체 의료기관	36,234	47	330	1,380	34,477
인증 EMR도입 의료기관	29,728 (82%)	47 (100%)	257 (78%)	947 (69%)	28,477 (83%)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	4,052 (11%)	47 (100%)	167 (51%)	50 (4%)	3,788 (11%)

주) 2024.12월 심평원 청구자료 기준(치과, 정신, 요양, 한방병원, 보건기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EMR 시스템 인증제도의 한 축인 사용인증은 단순히 인증 제품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 임상에서 기능변경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진료품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사용인증의 긍정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안전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EMR 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의료기관에 대한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④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2,000개 이상 집계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학교의 실적 인정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제2항·제3항·제4항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받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기관 49,786개 중 2,120개의 기관은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중 2,063개의 기관이 어린이집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대학교의 경우「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43.6%로 집계되어 다른 유형의 기관들이 모두 85% 이상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더 두드러지는데, 우선 최근 5년간 매년 교육 미이수 기관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 ~ 2023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미실시 기관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A)	58,975	54,552	54,466	52,779	49,786
교육 미실시(B)	4,789	3,879	3,640	2,785	2,120
어린이집(C)	3,623	3,435	3,509	2,681	2,063
비율(100 x C/B)	76	89	96	96	9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최근 5년간 유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무교육인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능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⑤ 사업 성과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모색 필요(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은 최근 정원 미달 규모 및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적정 인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성과가 저조한 원인을 점검·분석하여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게임인재원은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2019년 8월 개원하여 2021년 8월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음.

그런데 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교육생 모집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제4기 교육생 65명을 모집할 때 선발인원이 56명으로, 9명이 미달되어 처음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음. 이후 2023년 제5기 교육생부터 모집인원이 12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선발된 인원은 2023년 106명, 2024년 94명, 2025년 91명으로, 정원 미달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한편 교육생 중도 탈락 및 졸업 현황을 보면, 제2기 교육생부터 중도 탈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졸업생 수가 목표인원(입학인원) 대비 2022년(제4기)은 75%, 2023년(제5기)은 67%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과가 다소 저조함.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 1~5기 교육생 중도 탈락 및 졸업 현황]

(단위: 명, %)

입학년도 (기수)	교육기간	모집 인원 (A)	입학 (B)	자퇴 (C)	제적 (D)	중도 탈락 (E=C+D)	중도 탈락률 (E/B)	졸업 (F)	휴학	목표 달성률 (F/A)
2019년 (1기)	'19.9.~'21.8.	65	65	14	3	17	26.2	48	-	73.8
2020년 (2기)	'20.9.~'22.8.	65	65	12	0	12	18.5	53	-	81.5
2021년 (3기)	'21.9.~'23.8.	65	65	14	0	14	21.5	51	-	78.5
2022년 (4기)	'22.9.~'24.8.	65	56	12	2	14	25.0	42	-	64.6
2023년 (5기)	'23.3.~'25.2.	120	106	28	7	35	33.0	69	2	57.5

주) 2025년 2월말 기준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렇다고 교육생 선발 기준 및 교육과정 수준을 완화하여 정원을 채우거나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것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당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선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적정 인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⑥ 보훈원 입주율 제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보훈원 입주율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보훈원 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보훈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기관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상이자인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및 그 유족(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입소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연도별 보훈원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을 의미하는 입주율이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음. 2024년 입주율은 53.5%(=115/21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2020~2024년 보훈원 정·현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계획액	정원(A)	현원(B)	입주율(B/A)
2020	3,417	215	143	66.5
2021	3,417	215	135	62.8
2022	3,417	215	123	57.2
2023	3,417	215	119	55.3
2024	3,417	215	115	53.5
2025. 4.	3,543	215	102	47.4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국가보훈부는 입소대상 확대 이외에도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보훈원 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나) 성과지표 등 체계 개편

① 교육 사업의 실적 부진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필요 등(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국민 예방교육의 계획 대비 실적은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선정 목표 인원이 과소한 측면이 있고, 중등을 제외한 유아·초등·고등 대상군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교육의 실효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 교육 인원 재설정 및 교육 전달 방식 등 동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대상 중 청소년(유아·초등·중등·고등)의 경우 현장 강의와 체험형 교육 등을, 성인은 현장 강의와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 대상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임.

우선, 성인 교육대상의 경우 교육대상 수가 4,300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표인원은 6만 5,000명에 불과하여, 전체 대상 규모에 비해 목표 인원이 다소 과소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실적 대비 목표 달성률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성과 과다 산정은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적정한 목표인원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음, 중등을 제외한 유아·초등·고등 대상군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이 2019년 239명(1.5%)에서 2023년 1,477명(5.3%)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재의 교육 내용 및 방식이 이들의 수용 수준과 학습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및 전달 방식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사업 내용 및 필요성 검토

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매몰비용 재발 방지 필요 등(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의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목표 달성이 불가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몰비용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은 2021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카고드론의 기본·상세설계, 제작 및 구성품 시험을 수행한 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비행체/지상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을 수행할 계획이었음.[36]

그런데 1단계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 상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한 성능시험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2022년 1월~2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엔진이 개발될 경우 이를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계속하여 검토하였음.

그러나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엔진은 개발되지 않았고, 이에 2단계 연구비용 및 범위를 확대하여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계평가 결과 2024년 예산이 삭감된 점이나 관련 표준과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저조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음.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상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처음부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목표를 조정하였다면 과제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정부출연금 총 160억 7,300만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6) 우주항공청 소관, 일반회계-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1733-306)(항공혁신부문)

② 회차별 공익광고 편차 축소 필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 제작 편수를 각 여론조사 및 주제선정 회차별에 상응하도록 균등하게 분배하여 시의적절한 공익광고가 제작·방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4년 계획현액은 15억 9,200만원임.[37]

공사는 공익광고 주제 선정을 위하여 4개월마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각 부처로부터 공익광고 주제에 대한 신청을 받아 공익광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있음.

2024년도 공익광고 방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에 이루어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4개의 주제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였고, 2024년 5월에 이루어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개의 주제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였으며, 2024년 9월에 이루어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개의 주제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였는데, 장애인을 주제로 제작된 공익광고의 경우 해당 주제는 2024년 1월에 선정되었으나 방영은 2024년 10월에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그런데 대국민 여론조사를 4개월마다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최근 관심사가 반영된 시의적절한 공익광고 제작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각 회차별로 균등하게 공익광고를 방영하여 각 시기별로 방영되는 공익광고에 국민의 관심사가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③ 근거법 개정에 따른 사업 통합 운영 검토 필요(한국한의약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실태조사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업무가 되었으며, 현재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예산이 운영지원 항목을 통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사업이 된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38]

---

37)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3134-303)(방송기반국)

동 사업은 실태조사 성격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는 연구개발비(260-01) 비목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으나, 2024년 2월「한의약 육성법」제13조의 개정으로 ‘통계의 조사·분석·제공’ 업무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법정 고유업무로 포함되면서, 2025년부터는 예산 비목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전환되었음. 그러나「한의약 육성법」제13조에서는 진흥원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미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세부사업을 통해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이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예산이 이미 운영지원 항목을 통해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고유사업 경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중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산 편성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고유사업비 지원 예산과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 구조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④ 지자체 사업과의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완화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은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예산 1,83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단과 별개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1인당 지원금액 한도를 정하여 국가기술자격 외에 다양한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음. 2023년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당시 청년 국가 지자체와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장간담회 결과 지자체에서 응시료 지원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복 지원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4년 129개·2025년 135개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사업 이후 지자체가 응시료 지원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38)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3233-311)(한의약정책관)

39)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직업능력정책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이중으로 행정인력을 투입하고 별도의 시스템과 홍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또한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⑤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일수 증가 및 공단과 판례의 상이한 산재판단기준 문제 개선 필요 등(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사업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등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수행하고 있고, 2024년 계획현액은 7조 8,760억 9,100만원임.[40]

첫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후 승인 여부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기간이 2020년 172.4일에서 2024년 227.7일로 점차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산재승인 여부가 이루어져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평균처리일 수는 2020년 172.4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27.7일로 2020년의 172.4일 대비 32% 이상 증가하였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및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재해노동자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없어 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후 재활도 지연되어 사회 복귀가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전문조사, 특별진찰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순·반복업무의 전산화, 역학·전문조사와 특별진찰 위탁물량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속·공정하게 업무상 질병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산업재해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공단의 산재판정에 대해 불복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 또한 높아지고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산재근로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

40)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4051-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학적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반면, 법원의 경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업무환경이나 근무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이 공단과 법원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법원과 공단의 산재판단기준이 상이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인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소송 수행 건수 및 패소율이 2019~2024년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산재승인의 1차 판단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반복되는 불복소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⑥ 노후의료장비 개선 필요(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 및 재활지원을 통한 조기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노후화된 산재병원 의료장비의 적극적인 교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출연 방식으로 전국 15곳의 산재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은 327억 6,200만원임.[41)]

근로복지공단은 「중기 의료기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제 도입되는 장비 실적은 저조하며, 노후화된 장비가 정상적인 산재근로자를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고 있음.

노후화된 장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나, 2024년에서야 인천병원의 CT가 교체되었음. 중단 및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의료장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장기적인 산재병원의 경영성과 개선과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장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41)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병원지원(4054-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나) 사업 추진방식 검토

① 책임PM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 마련 필요(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PM 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고 책임PM의 권한에 대한 별도 훈령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PM의 권한과 대우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에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교부하고 있고, 2024년에는 예산 100억원이 편성되었음.[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설치하고, 전략센터 내에 기존의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이하 "PM"이라 한다)보다 권한을 확대한 책임PM을 두며, 책임PM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및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또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68호, 2024.5.17. 제정)을 제정하여 책임 PM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책임PM 제도 운영을 위해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고, 책임PM의 권한에 대한 별도 훈령을 제정하였음에도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서는 책임PM의 책임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PM의 권한과 대우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책임확보 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궁극적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지원 필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대상 기업의 융자금 사용용도가 원전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담기관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2024년 계획현액은 1,000억원임.[43)]

---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한계도전 R&D 프로젝트(R&D)(1158-450)(기초원천연구정책관)

그러나 금융지원을 받은 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폭넓게 설정함에 따라, ①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대출금 대환을 목적으로 지원받거나, ② 동일기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가 나타났음.

2025년에도 1,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수혜기업을 포함하여 금융지원 자금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4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원전생태계금융지원(7403-313)(원전산업정책국)

(10) 수지차보전기관 제도개선 사항

① 조화로운 공익성과 수익성 달성을 위한 대관 및 대관료 부과 방식 개선 필요(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은 기초예술 보호 및 재무구조 개선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지나친 장기 대관을 지양하는 한편, 뮤지컬·장기 공연 등 상업 공연 대상으로 대관료 현실화와 함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고려한 대관료 부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의 창달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예산 16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44]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설립 목적이 존재함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인건비·경상비 등 예산을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는바,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먼저 공익성 차원에서 최근 예술의전당 공연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보다 시설대관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 및 지나치게 공연장이 장기 대관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024년 시설별 사용일수를 살펴보면, 총 사용일수 중 대관공연에 제공된 비율이 80.2%로 월등히 높았음. 이와 함께 현재 계획된 2025년~2026년 오페라하우스 연간 공연 일정(안)을 살펴보면, 3주 이상 장기 대관되고 있는 공연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6주 이상 장기 대관되고 있는 공연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다음으로 수익성 차원에서 최근 예술의전당의 수지차를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차입금이 102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적자 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임. 그런데 현재 책정된 공연장별 대관료를 보면, 우선 대관료가 2012년에 산정된 대관 원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예술의 전당은 공익성 차원에서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대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운영을 기획 공연·음악·전시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지나친 장기 대관을 지양하는 한편, 수익성 차원에서 뮤지컬·장기 공연 등 상업 공연을 대상으로 대관료 현실화와 함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고려한 대관료

4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예술의전당 지원(1631-304)(예술정책관)

부과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초예술 보호 및 재무구조 개선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관련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가.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가) 과다·과소 편성 및 집행 문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기구협력 (ODA)	81,915	80,207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집행 필요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12,170	12,170	출연금 집행잔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개도국정보이용 환경개선사업 (개도국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3,496	3,380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나) 사업계획 또는 목적과 다른 예산집행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출연금 사업 등	242,882	232,514	출연금 사업의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집행 부적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방지 (침몰선박 관리사업)	10,860	10,860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간 불일치 발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	261.5	회계·기금의 혼용 부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손익계정) (과학경진대회 개최)	773	752	전국과학전람회 행사 확대를 위한 예산 전용 부적정
(다) 예산집행 방법·시기 등 부적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760	754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전 기자재 사전 구입 부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출연금 및 수탁사업 등	-	-	출연금 및 수탁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운영계좌 사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창작지원, 문화예술향유지원 등	-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라) 집행잔액·이월 또는 결산잉여금 등 처리 부적정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7,519,133	4,878,836	원인행위 없는 출연금의 이월 및 재이월 부적정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소멸대응지원 (귀어귀촌촉진)	3,843	3,743	연말에 불용 예상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충전한 캐시 등의 국고 반납 필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897,377	773,853	공단 장기 미정산 금액의 조속한 정산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산업지원(종료)	8,483	8,483	공단의 승인으로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필요

나. 수입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가) 발생한 수입원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1,686	미집행된 사업출연금으로 발생한 이자금에 대한 관리규정 정비 필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도강화 (자동차안전도평가)	3,835	3,835	자동차안전도 평가에 사용한 시험차 매각대금의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510,991	510,991	선로사용료의 예산 반영 필요
(나) 미수납 수입금에 대한 징수·수납 실적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경상이전수입	58,168 (징수결정)	58,168 (수납액)	미수납 기술료 징수결정 필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R&D 사업 41개	303,584	300,246	연구개발비 정산금 등 미수납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연구 제재처분 환수금 미납금을 신속히 환수할 필요
(다) 수입원 신규 발굴 또는 기존 수입원 존치 필요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223,600	223,600	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의 정액 사업비 편성 필요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40,356	40,356	정부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다. 경영 및 조직 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가) 복리후생제도 개선 필요				
국무조정실 (경제 · 인문 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	-	-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지원	13,658	13,658	복리후생 관련 지출 재검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	-	-	지침상 대부 상한을 초과하여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문제
(나)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필요				
국무조정실 (경제 · 인문 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	-	-	대외활동 관리 강화 필요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40,356	40,356	저연차 직원의 인력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R&D) (산자부 사업)	10,777	10,777	인력채용 지연으로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43,313	43,313	신규인력 적기 확보에 따른 과제 수행 차질 발생 방지 필요 등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7,326	6,408	사무국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라.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가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가)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준수 필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5,933	15,929	정부광고 시행 시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28,540	28,540	해외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집행 부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43,313	43,313	기한 내 연구비 적시 등록 독려 필요
(나) 지침 또는 규정 제·개정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58,896	58,784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 개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정산이 완료된 R&D 종료과제에 대해 기한 내 정산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5,647	5,647	법적 근거가 미흡한 차입 부적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가시험원 운영	7,223	7,223	민간위탁사업비 추가 지원 적절성 문제
우주항공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3,850	3,850	시험평가센터 및 장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
(다)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계약 체결 및 관리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58,896	58,784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36,480	36,480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절 사용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내내역사업)	4,239	4,239	낙찰차액을 사용한 개발비 집행 부적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947	6,900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반납 필요

마.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가) 성과 실적제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499	499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 안내 강화 필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1,686	IP의 수익화를 위한 매각 및 실시권 부여 등 실적 제고 노력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1,643	1,643	EMR 사용인증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건전정보문화조성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4,306	4,306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육성 (게임인재원 운영)	5,360	5,360	사업 성과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모색 필요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8,653	8,616	보훈원 입주율 제고
(나) 성과지표 등 체계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대국민 예방교육)	4,752	4,752	교육 사업의 실적 부진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필요 등

바.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가) 사업 내용 및 필요성 검토				
우주항공청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2,573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매몰비용 발생 방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내역사업)	1,592	1,592	회차별 공익광고 제작 수의 편차 축소 필요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366	354	근거법 개정에 따른 사업 통합 운영 검토 필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83,814	175,582	지자체 사업과의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완화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7,876,091	7,633,318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일수 증가 및 공단과 법원의 상이한 산재판단기준 문제 개선 필요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지원	32,762	32,734	노후의료장비 개선 필요
(나) 사업 추진방식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10,000	10,000	책임PM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 마련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원전생태계금융지원	100,000	100,000	융자금 사용용도의 사업목적 부합성 여부 검토 필요

사. 수지차보전기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공공기관)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지원	16,701	16,701	대관 및 대관료 부과 방식 개선 필요

8.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가. 개 요

「대한민국헌법」 제54조[2]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84조[3]는 예산안 및 결산의 회부와 심사를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명문화하고 있음.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심사라는 헌법적 기능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승인 절차를 넘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자원의 배분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정책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보면,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거나 통폐합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물가상승·인건비 증가 및 복지 수요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목별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의 실질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도·예산집행 적정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

문의 : 박제성 예산결산조사관 thesquare@assembly.go.kr (02-6788-5677)

2)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편성과 정책 설계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국회는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송부하고, 정부는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송부하여 그 이행여부를 점검 받고 있음.

(1)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법」 제84조제2항[4]은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라 국회는 2024년 12월 2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2,319건(중복 68건 포함)을 채택하였고, 이를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제도개선 1,330건, 주의 808건, 시정 248건, 징계 1건, 변상은 없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및 조치현황]

(단위: 건, %)

구분	유형별 시정요구사항						합계 (A)	조치결과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 완료(B)	조치중	조치율 (B/A)
결산	-	1	244	793	1,323	68	2,293	1,831	462	79.9
예비비	-	-	4	15	7	-	26	24	2	92.3
합계	-	1	248	808	1,330	68	2,319	1,855	464	80.0

주 1) 정보위원회 소관 제외
2) (중복)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중복 적용한 경우를 말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5.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

4)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2025년 5월 말)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총 2,319건 중 1,855건(80.0%)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464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 부대의견 조치결과

예산안 및 결산의 부대의견은 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 없이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행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안에 첨부하여 의결하는 국회의 의견을 말함.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총 53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현황]

구 분	부대의견 수	해당 중앙관서·기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3건	정부 공통 16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건, 국무조정실 1건, 금융위원회 2건, 기획재정부 5건, 관세청 1건, 교육부 3건, 통일부 1건, 법무부 3건, 행정안전부 4건, 경찰청 2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농림축산식품부 1건, 산업통상자원부 2건, 보건복지부 2건, 환경부 3건, 국토교통부 3건, 새만금개발청 1건, 여성가족부 1건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또한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총 34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21건을 조치 완료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현황]

구 분	부대의견 수	해당 중앙관서·기관
조치완료	21	정부공통 1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건, 국가보훈부 1건, 금융위원회 2건, 기획재정부 2건, 외교부 1건, 국방부 1건, 문화체육관광부 2건, 보건복지부 1건, 국토교통부 4건, 농촌진흥청 1건, 산림청 1건, 해양수산부 1건, 해양경찰청 1건
조치중	13	정부공통 2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건, 법무부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건, 국방부 1건, 행정안전부 1건, 소방청 1건, 문화체육관광부 2건, 보건복지부 1건, 국토교통부 1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총 계	34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5.

나. 검토의견

(1) 연례적으로 미조치 건수가 많은 부처의 개선 노력 필요

여성가족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율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연례적으로 미조치 건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중앙관서들은 시정요구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우선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전부처 평균 조치율은 80.0%로 2022회계연도 전부처 평균 조치율 82.6%보다 하락하였음.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 및 정책 추진에 있어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이행력 확보가 전년도 보다 다소 저조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부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책임성과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전부처 평균 조치율(결산의결 다음연도 4월 말 기준)]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전부처 평균 조치율	81.6%	전부처 평균 조치율	83.0%	전부처 평균 조치율	82.6%	전부처 평균 조치율	80.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율 하위 10개 중앙관서를 보면, 통계청(45.5%)이 가장 낮은 조치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우주항공청(50.0%), 여성가족부(5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60.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여성가족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년 기간 동안 세 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방청 등 3개 기관은 4년 기간 동안 두 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정요구사항 조치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조치율 평균 및 하위 10개 중앙관서(결산의결 다음연도 4월 말 기준)]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중앙관서명	조치율
전부처 평균	81.6%	전부처 평균	83.0%	전부처 평균	82.6%	전부처 평균	80.0%
여성가족부	43.5%	행복청	33.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0%	통계청	45.5%
사회적참사특조위	50.0%	국가보훈부	50.0%	기상청	58.8%	우주항공청	50.0%
행복청	53.8%	진실화해위	50.0%	국가보훈부	59.1%	여성가족부	58.3%
법무부	56.9%	질병청	53.8%	여성가족부	6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0.0%
국조실및총리비서실	6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4.5%	대법원	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2.5%	금융위	58.8%	국가인권위	6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5%
5.18위	66.7%	기상청	58.8%	해양경찰청	66.7%	해양수산부	65.2%
관세청	66.7%	병무청	62.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8.0%	방송통신위원회	66.7%
통일부	66.7%	국조실및총리비서실	63.6%	농림축산식품부	7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6.7%
국가보훈부	67.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6.7%	소방청	72.7%	소방청	66.7%

주) 결산 의결일: 2020회계연도 2021.12.2./ 2021회계연도 2022.11.10./ 2022회계연도 2023.12.20./ 2023회계연도 2024.12.02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중(미조치) 하위 10개 중앙관서를 보면, 국토교통부(38건)가 가장 많은 미조치 건수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33건), 보건복지부(27건), 법무부(24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국방부는 4년 기간 동안 4번 모두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4년 기간 동안 3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기관은 4년 기간 동안 2번씩 하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도별 시정요구사항 미조치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연도별 시정요구사항 미조치 하위 10개 중앙관서(결산의결 다음연도 4월 말 기준)]

(단위: 건)

순위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결산	
	중앙관서명	조치중	중앙관서명	조치중	중앙관서명	조치중	중앙관서명	조치중
1	**보건복지부**	29	**법무부**	16	**국토교통부**	29	**국토교통부**	38
2	**국토교통부**	29	고용노동부	13	농림축산식품부	22	**문화체육관광부**	33
3	**여성가족부**	26	**국방부**	11	**보건복지부**	20	**보건복지부**	27
4	**법무부**	22	**행정안전부**	11	**환경부**	19	**법무부**	24
5	고용노동부	18	금융위원회	7	**국방부**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6	**기획재정부**	15	국가보훈처	6	**문화체육관광부**	14	해양수산부	23
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4	농림축산식품부	6	대법원	12	**기획재정부**	20
8	금융위원회	12	질병관리청	6	**기획재정부**	12	**여성가족부**	20
9	**국방부**	12	국회	5	교육부	12	교육부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	방위사업청	12		
10	농림축산식품부	12	통일부	5	산업통상자원부	12	**국방부**	16
			문화재청	5			**행정안전부**	16
			산업통상자원부	5	고용노동부	12	**환경부**	16

주) 결산 의결일: 2020회계연도 2021.12.2./ 2021회계연도 2022.11.10./ 2022회계연도 2023.12.20./ 2023회계연도 2024.12.02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많은 미조치 건수를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 로드맵 마련, 정기적 점검·평가 체계를 연계한 피드백 구조를 도입하는 등 책임 행정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5)]

또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시정요구사항 이행 제고를 위한 협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미이행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에 대한 실질적 환류 효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 미조치 건수 및 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

(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필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가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계속해서 조치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완료 여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는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조치중인 건이 조치가 완료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국회법」에 근거하여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송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정부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결산 의결일 다음 해인 5월 말에 제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율을 보면, 2021회계연도는 총 시정요구 1,416건 중 1,175건을 조치완료하여 83.0%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고, 2022회계연도는 총 시정요구 1,916건 중 1,582건을 조치완료하여 82.6%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는 총 시정요구 2,319건 중 1,855건을 조치완료하여 80.0%의 조치율을 보여, 연도가 경과할수록 조치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합계				결산				예비비			
	계(1+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1)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소계(2)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율
2021	1,416	1,175	241	83.0	1,394	1,159	235	83.1	22	16	6	72.7
2022	1,916	1,582	334	82.6	1,889	1,559	330	82.5	27	23	4	85.2
2023	2,319	1,855	464	80.0	2,293	1,831	462	79.9	26	24	2	92.3

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다음으로 결산에 첨부되어 의결되는 부대의견의 연도별 후속조치 조치율을 보면, 2021회계연도는 총 부대의견 21건 중 14건을 조치완료하여 66.7%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고, 2022회계연도는 총 부대의견 26건 중 17건을 조치완료하여 65.4%의 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는 총 부대의견 34건 중 21건을 조치완료하여 61.8%의 조치율을 보여, 연도가 경과할수록 조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시정요구사항 보다 낮은 조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단위: 건, %)

회계연도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조치율
2021	21	14	7	66.7
2022	26	17	9	65.4
2023	34	21	13	61.8

주) 각 연도 4월 30일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각 회계연도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그런데 정부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각 연도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후 조치 중인 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2021회계연도 241건, 2022회계연도 334건, 2023회계연도 464건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으며, 부대의견의 경우 2021회계연도 7건, 2022회계연도 9건, 2023회계연도 13건이 조치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었음.

지금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완료 보고가 없으면 국회가 제기한 지적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정책 반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 제도의 핵심 기능인 사후 환류(feedback)와 재정통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6]를 국회에 제출한 후에도 조치중인 건이 조치완료 될 때,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적정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각 연도 5월 말에 제출

(3) 예산안 심의 결과에 배치되는 집행 사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거나,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이 과도하게 변경되어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대한민국헌법」및「국회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국가재정법」제45조[7]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 제46조[8]는 예산의 전용을 규정하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민주적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①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②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7)「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8)「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경우

우선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현황은 총 5개 중앙관서에 9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IT 운영' 및 '주연보 IT 운영' 사업에서 각각 14억 5,600만원과 3억 2,300만원을 자체변경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사업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지원을 위하여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편성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 예산을 사용(2억 6,200만원) 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해복구비(종교)'**, **'재해복구비(관광)'**, **'재해복구비(체육)'**의 세부사업을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집행하였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과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 사업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음.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1) 금융위원회	주신보 IT 운영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및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 개편 등)	4,848	6,304	5,7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등 국회 심사를 우회하여 신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연이은 자체변경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주연보 IT 운영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1,629	1,952	1,615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	262	26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지원을 위하여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편성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함
(3)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	-	110	110	차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예산 편성을 위하여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증)하여 신규 사업인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사업(ISMP)을 추진하였음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4) 문화체육 관광부	재해복구비(종교)	-	253	201	재해복구비 사업을 매년 이·전용 등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부된 예산의 연내 실집행 또한 부진함
	재해복구비(관광)	-	293	293	
	재해복구비(체육)	-	3,470	3,470	
(5)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 본부 기본경비 (총액)	-	78	75	예비비 항목간의 과도한 변경은 예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324	288	전용 증액을 통해 ISP를 수립한 후, 예비비 배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용 증액과 예비비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사업 예산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은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등 모든 사업을 포함
자료: 각 부처 검토보고서 자료 취합

②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

다음으로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는 총 9개 부처에 12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형별로 사업비 변경 및 미집행이 국세청 등 3개 부처에 4개 사업이고, 사업계획 변경이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 8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제도의 시행이 2026년 1월로 2년간 유예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과도하게 이용 집행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차입금 이자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당초 예산액 보다 많은 1,115억원을 이용(증)하였음.

법무부는 **‘형사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액 400억원의 93%인 372억 2,5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증)하여 집행하는 등 매년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직접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후 시기상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 보조금에 대해 10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연도 중에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인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여 국회의 당초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에서 융자 수요가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어야 할 예산을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국내외 유전개발 내역사업에 추가로 집행하였음.

[국회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변경 내역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1) 국세청	사업비 변경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409	9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요금으로 자체 이용하여 집행하였는 바,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사업비 변경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390	1,772	1,659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의 시행이 2026년 1월로 2년간 유예되었음에도 관련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단위: 백만원)

부처	변경 내역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2) 기획재정부	사업비 변경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99,209	210,709	210,709	일시차입금 이자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총 1,115억원을 이용하여 집행함
(3) 법무부	사업비 변경	형사보상	40,000	77,225	77,219	법무부는 2024년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액 400억원의 93%인 372억 2,500만원을 이·전용(증)하여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4)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지원	5,000	5,000	4,969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은 연중 직접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기상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사유로 2024년 한시적으로 10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함
(5)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변경	공동브랜드 지원	1,366	1,366	1,366	사업연도 중에 사업내용, 선정방식 및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연말에서야 어워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업계획 및 집행이 부적정함
	사업계획 변경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51,348	351,348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조정은 온누리상품권 재정보전과 직결되어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주된 심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연도 중에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인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당초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한 것임
(6) 국무조정실	사업계획 변경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운영	306	306	306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단위: 백만원)

부처	변경 내역	사업명	당초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비고
(7) 문화 체육 관광부	사업계획 변경	청년문화예술 패스	17,000	17,000	4,240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이용률이 저조하자 사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국회의 계획안 심의·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8) 산업 통상 자원부	사업계획 변경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38,163	39,817	39,817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의 융자수요가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어야할 금액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에 추가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임
(9) 해양 수산부	사업계획 변경	침몰선박 관리사업	10,860	10,860	10,860	침몰선박 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다른 문제가 있음
	사업계획 변경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4,093	4,093	3,708	당초 예산 반영 내역과 달리 연도 중 사업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확대된 사업 내용이 타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음

자료: 각 부처 검토보고서 자료 취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집행은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약화시키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예산 집행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향후 해당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취지에 반하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정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80%를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조치완료’ 사항 중 실제로는 조치가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미조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조치완료 여부의 신중한 검토과 연례적 미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2,319건 중 80.0%인 1,855건을 ‘조치완료’하였다고 2025년 5월 국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완료’로 보고된 내용 중 아직 개선이 미흡하거나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조치완료’로 보고된 사례가 총 12개 중앙관서에 15건이 있었고, ‘조치중’으로 보고되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미조치되고 있는 사례는 2개 부처에 2건이 있었음.

유형별로 보면, 당해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미흡’이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되었음에도 조치가 미흡한 ‘연례적 미조치’ 사항이 관세청 등 5개 부처에 5건 있었음.

지금과 같이 ‘조치완료’로 국회에 보고된 사항이 검토결과 ‘조치미흡’ 또는 ‘연례적 미조치’로 분류되면, 정부의 시정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신뢰성이 저해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시정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일부 시정요구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미조치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정요구사항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정요구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미흡한 사례]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 보고	검토의견
조치미흡(1)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완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은 여전히 동일하며, 2024년 예산도 전액 불용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조치미흡(2)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 방지 필요	시정	조치완료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2.2조원 상당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조치미흡(3)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제도 개선	제도개선	조치완료	2023년도 결산 심사 시 전문관 보직 임용이 부진하다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관 보직 임용이 부진한 상황임
조치미흡(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공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라는 국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나, 2025년도에도 공모 없이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음
조치미흡(5)	감사원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	시정	조치완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한 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치미흡(6)	감사원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시정	조치완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감사원이 마련한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가 의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제도이므로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치미흡(7)	문화체육관광부	자펀드 결성지연에 따른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주의 필요	주의	조치완료	'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해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자펀드 조기 결성을 통하여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자펀드 결성지연 및 투자소진율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보고	검토의견
조치미흡(8)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를 비롯한 3개 내역사업에서 2023년 이월금 중 일부가 2025년으로 재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조치미흡(9)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주의	조치완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의 융자수요가 없어 불용되어야 할 금액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치미흡(10)	경찰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경찰청은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연령대·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차등 지원 방식 등 실질적인 사업방식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조치미흡(11)	인사혁신처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건 분할 집행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다시 제한금액(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건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조치미흡(12)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시설 연례적 이월에 대한 시정과 결산잉여금 관리 개선 필요	시정	조치완료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부 내역사업에서 인건비가 큰 규모로 이월되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연례적 미조치(1)	관세청	과태료·가산금의 연례적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관세청은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로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을 수차례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과태료 수납률은 2022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패널티 부과 등 과태료 수납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연례적 미조치(2)	국무조정실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 지양 필요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훈령 개정을 통해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을 사실상 상설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구분	중앙관서	시정요구명	유형	조치결과 보고	검토의견
연례적 미조치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시정	조치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연례적 미조치 (4)	감사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시정	조치완료	시정요구에 대해 2025년도 국내여비 예산을 감액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2~2024년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져 관성화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례적 미조치 (5)	국가유산청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및 사전준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등 개선 방안 강구 필요	주의	조치완료	집행 부진 및 연례적 이월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료: 각 부처별 검토보고서 자료 취합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주신보 IT 운영	6,304	5,701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등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
	주연보 IT 운영	1,952	1,615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등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262	26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지원을 위하여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편성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	110	110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증)하여 신규 사업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사업(ISMP)을 추진하는 등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재해복구비(종교)	253	201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세부사업을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
	재해복구비(관광)	293	293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세부사업을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
	재해복구비(체육)	3,470	3,470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세부사업을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
	청2년문화예술패스	17,000	4,240	사업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78	75	예비비 항목간의 과도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324	288	전용 증액과 예비비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사업예산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획재정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10,709	210,709	일시차입금 이자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총 1,115억원을 이용하여 집행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국세청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9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에도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용하여 다른 지출로 집행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1,772	1,659	사업추진이 유예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용하여 다른 지출로 집행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법무부	형사보상	77,225	77,219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이·전용(증)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액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지원	5,000	4,969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사유로 2024년 보조금에 대해 10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브랜드 지원	1,366	1,366	사업연도 중에 사업내용, 선정방식 및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연말에서야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51,348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인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운영	306	306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대신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액을 활용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39,817	39,817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의 융자수요가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어야 할 금액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에 추가 집행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해양수산부	침몰선박 관리사업	10,860	10,860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달라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수산물안심 확보 지원	4,093	3,708	당초 예산 반영 내역과 달리 연도 중 사업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

9.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가. 개 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의의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총사업비는 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됨.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1] 및 제38조제1항[2]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및 정보화사업 등,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규모·총사업비 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을 의미함.[3]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만 예외적으로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 도로·상하수도 등의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됨.

(2)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주요 연혁

1994년에 처음 도입된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수행되던 공공투자사업관리 관련 제도들이 '총사업비의 관리'라는 독립된 법조문으로 규정되었음.

2012년에 「국가재정법」 제34조가 개정(2012. 3. 21.)되어 2015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개요·증감 내역 및 증가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국회 심의를 강화하였음.[4)]

그리고 국회 결산 심사 시 예산안과 달리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사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개정(2017. 12. 26.)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부속서류에 처음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집행명세서가 포함되었음.[5)]

또한 2020년에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이 개정(2020. 3. 31.)되어 타당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 · 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 · 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5)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성재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과 타당성재조사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하였음.[6]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총칙,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총사업비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조정기준, 중앙관서 자율조정, 행정사항 등으로 구성됨.[7]

(3) 총사업비 관리 절차

총사업비 관리 절차는 크게 계획단계·설계단계 및 공사단계로 구분되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이를 '사업구상'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총 7단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사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책정하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까지 각 단계별로 총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또는 각 부처 자율조정을 실시함.

또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의 수요

---

6)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7)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와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등에는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경우 등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절차]

단 계		주요 내용
계획단계	① 사업구상	▪ 중앙관서의 장은 유사사업의 예를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
	②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등에 따라 실시
	③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
설계단계	④ 기본설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조달청장 및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⑤ 실시설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기간 등을 협의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계약 의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공사단계	⑥ 발주 및 계약	▪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 의뢰 ▪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발주의 의뢰가 있는 경우 그 의뢰받은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⑦ 시공	▪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나. 2024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결산 부속서류인 정부의 「2024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수는 1,252개이며, 총사업비는 458조 7,536억원임.

2024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부처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수는 국토교통부(328개), 방위사업청(158개), 환경부(101개), 국방부(98개), 경찰청(86개) 순으로 많으며, 총사업비 금액은 국토교통부(218조 5,732억원), 방위사업청(159조 9,559억원), 해양수산부(13조 6,406억원), 환경부(11조 6,361억원), 농림축산식품부(10조 5,892억원) 순으로 많음.

2024년도 예산현액 대비 평균집행률은 79.7%이며, 집행률이 50% 미만인 부처는 국회(1.6%), 대통령경호처(37.0%), 문화체육관광부(44.7%), 새만금개발청(19.4%), 여성가족부(25.3%), 외교부(30.6%), 중소벤처기업부(33.1%), 질병관리청(33.0%), 통일부(21.3%) 등 9개임.

[2024년도 부처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결산]

(단위: 개, 억원, %)

부 처	사업 수	2024년도 총사업비	2024년도 결산 현황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감사원	1	270	26	56	56	-	-	100.0
경찰청	86	33,228	2,299	2,517	2,065	411	42	82.0
고용노동부	12	4,504	773	1,281	871	399	11	6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402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44,742	5,143	6,767	4,651	1,950	166	68.7
관세청	2	338	65	121	121	-	-	99.8
교육부	57	32,971	2,668	3,919	2,134	1,554	230	54.5
국가보훈부	11	5,413	435	592	515	41	37	86.9
국가유산청	10	3,339	324	534	385	42	107	72.1
국방부	98	65,489	4,833	5,397	4,458	632	312	83.6
국세청	17	5,973	522	412	337	66	10	81.7
국토교통부	328	2,185,732	121,195	134,227	110,726	14,726	8,775	82.5
국회	2	756	57	51	1	26	24	1.6
기상청	5	1,687	163	240	208	24	9	86.6
기획재정부	12	6,954	765	812	747	57	8	91.9
농림축산식품부	34	105,892	2,714	2,928	2,779	142	7	94.9
농촌진흥청	7	10,027	1,061	1,117	831	109	177	74.4

(단위: 개, 억원, %)

부 처	사업 수	2024년도 총사업비	2024년도 결산 현황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대법원	13	12,223	892	1,106	885	198	23	80.0
대통령경호처	1	35	59	63	23	37	3	37.0
문화체육관광부	48	21,153	2,255	3,823	1,708	1,649	466	44.7
방위사업청	158	1,599,559	98,306	99,829	95,924	2,294	1,611	96.1
법무부	23	26,855	1,548	1,706	1,609	85	11	94.3
병무청	1	939	-	-	-	-	-	-
보건복지부	15	25,667	1,327	1,712	1,216	465	31	71.0
산림청	9	6,515	540	849	740	96	14	87.2
산업통상자원부	18	29,402	1,703	4,032	2,678	1,348	6	66.4
새만금개발청	4	21,863	127	130	25	6	99	19.4
소방청	5	2,998	978	1,240	1,012	225	3	81.6
식품의약품안전처	1	295	4	4	4	-	-	100.0
여성가족부	4	956	83	94	24	22	48	25.3
외교부	4	1,445	157	57	17	26	13	30.6
우주항공청	1	436	30	206	200	6	-	97.0
재외동포청	1	300	-	78	-	78	-	-
조달청	3	5,103	228	321	265	30	26	82.5
중소벤처기업부	4	2,646	88	157	52	47	59	3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41	84	88	87	1	-	99.4
질병관리청	8	3,324	217	217	72	19	127	33.0
통일부	3	2,534	485	485	103	33	349	21.3
해양경찰청	8	4,238	849	912	831	66	14	91.2
해양수산부	61	136,406	13,363	13,923	11,829	939	1,155	85.0
행정안전부	18	31,695	2,543	2,766	2,211	261	294	7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	26,630	1,170	2,074	1,147	915	13	55.3
환경부	101	116,361	8,083	10,990	8,295	1,826	869	75.5
합계	1,252	4,587,536	278,162	307,833	261,842	30,851	15,149	85.1

주 1) '2024년도 총사업비' 는 2024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2024년 말 기준 총사업비의 합계임
2)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3)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집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정부의 「2024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다. 검토의견

(1)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내역의 국회 제출 필요

정부는「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음에도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사업 중 군사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4조제3호의2[8]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1항제8호의2[9]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인「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별도 관리 중인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의 대상사업은 사업별 집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예산안 첨부서류에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제외하여 제출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10]은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등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8)「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9)「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의2.「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10)「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 · 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 · 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있으나, 군사 보안에 관련된 사업은 규정된 바가 없는 상황임.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이미 사업설명자료 등에 포함되어 제출되고 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보면, 증평 병영시설(431억원), 계룡 간부숙소(938억원), 장성 교육시설 2차(903억원)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대규모 사업 전체에 대하여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한국폴리텍대 - 경북권(427), 충청권(371), 경남권(197)	3개	995
② 국방시설	**증평 병영시설(431), 계룡 간부숙소(938), 장성 교육시설 2차(903)**	**3개**	**2,272**
소 계		6개	3,26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하수처리시설	대전시(1,022), 울릉군(1,765)	2개	2,787
② 하수관로시설	대구시(5,789), 삼척시(1,781) 청도군(2,025)	3개	9,595
소 계		5개	12,382
□ 예비한도액주)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	782
합 계		11개	16,431

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제2항)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4.9.

물론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전체가 공개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며, 병영생활관·관사숙소·간부숙소 및 군 교육시설 등은 군사 보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사업 중 군사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11]

11)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군사 보안 관계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액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국방분야는 제외되어 있고,[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13]에 따라 국방분야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다목(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에 국방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나목의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분야의 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는 국방분야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할 뿐 국방분야의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아니며, 국방 분야와 동일하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통일 · 외교관계 분야의 정보는 통일부 및 외교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12)「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가) 당초 계획수립 미흡으로 인한 집행 부진(방위사업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국가유산청)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계획 변경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집행 부진 예방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① 방위사업청의 **'다기능관측경'** 사업(총사업비 949억 9,200만원)은 2022년 10월 합참의 소요수정으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재검증이 진행되었음. 2024년도 예산은 2차 사업 납품대금 41억 1,000만원과 3차 사업 선금 14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6월 합참의 최종 소요수정 지연으로 인해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필요한 최소 행정기간(8~9개월)을 확보하지 못해 자산취득비 14억 6,000만원과 간접비 3,000만원이 이월되었음.[14)]

[다기능관측경 사업 변경 현황]

구분	당초 계획 (2024년 예산편성 기준)	실제 추진현황
사업 타당성 재검증 및 총사업비 조정	2023. 3. ~ 10.	2023. 3. ~ 10.
소요 수정(사업 타당성 재검증 결과 반영)	-	2024. 6.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구매계획 수정	2023. 11.	2024. 7.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2024. 1. ~ 3.	2024. 9. ~ 11.
협상 및 구매시험평가	2024. 5. ~ 8.	2025. 1. ~ 7.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	2024. 9. ~ 10.	2025. 8. ~ 9.
3차 사업 물량 납품	~ 2025. 12.	2025. 10. ~ 12.

자료: 방위사업청

일반적으로 해당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총사업비와 사업계획 등 제반 여건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소요수정으로 인한 일정 지연 가능성을 예산 집행 일정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음.

14) 일반회계-다기능관측경(2232-315)(기동사업부)

②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총사업비 382억 100만원) 추진을 위해 전체 공정률 대비 5%의 공사금액인 12억 1,800만원을 기초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절차에 따른 정비실 건립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2024년 착공이 불가능하여 국립소방병원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15)]

소방청은 이와 같은 집행결과에 대해 항공정비실 건립사업은 총 3회의 적정성 검토(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중 2회를 2024년에 실시하였고 적정성 검토기간 중 검토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사업설명 및 보완자료 대응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 결과 당초 2026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7년 6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1]이 100~500억원 공사비 건축의 경우 설계기간을 기본설계 4.5개월, 실시설계 7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등까지 고려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가재정법」 제39조[16)]에 따라 차년도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여성가족부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총사업비 311억 300만원)은 2022년~2024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2022~2023년의 경우 총사업비 조정협의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4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총사업비 조정협의로 사업이 12개월 동안 다시 중단되어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음.

---

15) 일반회계-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1132-312)(장비기술국)

16)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기본조사설계비	296	296	252	-	44	44	-	-	-	-	-	-
실시설계비	-	-	-	1,279	1,279	413	-	866	-	-	-	-
공사비	-	-		-	-	-	3,517	3,517	-	3,517	3,517	-
감리비	-	-	-	-	-	-	255	255	-	255	255	-
시설부대비	-	-	-	10	10	2	6	6	2	6	6	-
합계	296	296	252	1,289	1,333	459	3,778	4,644	2	3,778	3,778	-
예산액 대비 집행률			85.1%			35.6%			0.1%			0.0%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며,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17]를 각각 거쳐야 하고,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기획재정부와 조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18]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최초 사업계획수립 당시 기본설계(계획·중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최소 3회의 적정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건설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관련 절차 수행 기간을 충실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2023년에 편성하였던 1차년도 공사비 등 37억 7,800만원을 그대로 편

17)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8)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성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④ 국가유산청의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총사업비 457억원)은 수시배정 사업 지정, 설계공모 유찰[19]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수립('22.3.)과 설계계약 체결('22.10.)[20]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1년 기본계획 수립비 중 8,600만원과 2022년 실시설계비 중 4억 6,500만원이 연이어 이월되었음.[21]

2023년에는 공사비 등 예산 2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3억 9,800만원만 집행(집행률 13.9%)되고, 나머지 24억 6,700만원은 모두 불용되었음.[22] 이후 2024년에는 공사비 등 예산 8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3.5~'23.11.)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457억원→507억원)[23]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24.4~)하게 되면서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년	200	200	-	-	200	112	86	2	56.0
2022년	1,700	1,700	86	-	1,786	1,301	465	-	72.8
2023년	2,400	2,400	465	-	2,865	398	-	2,467	13.9
2024년	8,430	8,430	-	-	8,430	-	-	8,430	-

자료: 국가유산청

동 사업이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보인 이유는 수시배정 사업 지정·설계공모 유찰 및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 추진 지연 사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더불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기인함.

---

19) 1차 공모: 2022.6.15. ~ 8.4.(단독응찰로 유찰) / 2차 공모: 2022.8.8. ~ 9.22.

20)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기간: (당초) 2022.10.21. ~ 2023.7.19. / (1차 변경) 2022.10.21. ~ 2023.9.19. / (2차 변경) 2022.10.21. ~ 2024.1.19.

21) 일반회계-무형유산원운영(1132-303)(무형유산국)

22) 불용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된 실시설계비 1억 3,900만원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 못하여 불용된 공사비 등 23억 2,800만원임.

23) 계획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후 실시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24.1월) 결과, 사업기간 연장(2026년까지 1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50억원)이 결정되었음.

특히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유산청은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4월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 5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설명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기간 및 공사업체 선정기간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당초 총사업비가 457억원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면 공사 착공이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환경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공사비 상승 등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환경부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총사업비 5,005억 1,900만원)은 사업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교부한 당해연도 보조금이 2023년, 2024년 각각 모두 이월되어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24)]

당초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은 2023년 계약을 체결하고, 본공사를 2024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턴키공사 유찰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이 2024년 12월에 체결되었고, 본공사 시행도 2025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지연되어 2024년에 교부한 금액은 이월되었으며, 2028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임.

이와 같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4년 6월 28일 당초 편성된 본예산 전액을 서울특별시에 교부하였고, 교부한 금액은 계약 체결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이월되었음. 이에 환경부는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환경부는 **‘지질공원 사업’** 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조성사업’(총사업비 327억원)을 위하여 2022년 광주시에 7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2022년에는 67억 2,700만원, 2023년에는 60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4년에는 이월액 중 약 9,3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최종적으로 59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4) 일반회계-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수자원정책관)

[2022년 이후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조성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일시	교부액	실집행금액	이월액	불용액
2022	7,000	272	6,727	-
2023	-	724	6,003	-
2024	-	93	-	5,90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은 당초 사업 계획에서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필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 기간을 10개월로 설정한 데 기인한 것임.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2년에 총사업비 1차 조정으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사업 기간조차 경과하여 2025년에 총사업비 2차조정을 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따라서 환경부는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검증단계부터 사업 기간을 면밀히 산정하고,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환경부의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총사업비: 보호시설 조성 89억원, 질병 검역시행장 건립 265억원)에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야생동물시험장은 당초 계획상으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2025년 12월로 연기되어 총 1년 7개월의 지연이 발생하였음.[25)]

이는 검역시행장 건립 시 당초 인천국제공항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설계단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 결과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임.

그런데 동 사업은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26)] 동법 시행 시점인 2024년 5월에 맞춰 검역 시설이 완비되어야

25) 환경개선특별회계-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1831-309)(자연보전국)

했지만, 2025년 6월까지도 준공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근거 규정과 실제 설치 절차 현황]

	2021. 5.	2021. 10.	2024. 5.	2025. 12.
근거 규정	법률 개정	-	법률 시행	-
검역시행장 설치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준공 (예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임시로 인천국제공항 인근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설치 중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에 맞추어 설치 완료 및 검역 수행을 목표로 계획한 것으로, 임시 공간을 활용한 검역 수행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역시행장 운영을 위하여 동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3) 「총사업비 관리지침」 준수 필요

(가) 총사업비 변경 조정 절차 미준수(대법원)

대법원은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시스템 오픈 지연의 사유로 내역변경을 통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하는 관리용역비를 공식적인 총사업비 변경 조정 절차 없이 집행한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총사업비 975억 5,010만원)의 2024년 관리용역비는 당초 시스템 오픈(2024. 9.)을 고려하여 시스템 오픈 후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인 4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그러나 시스템 오픈일정이 2025년 1월 31일로 미뤄지면서 2024년 편성된 시스템 오픈 후에 사용해야 할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대법원은 관리용역비 예산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오픈(2024년 9월말)에 따라 당초 2024년 8월까지만 운영 예정이었던 기존 시스템 등을 12월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내역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오픈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면 기획재정부와 공식적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기간 변경 및 관리용역비 등 연차별 관련 예산을 변경 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업기간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내역변경을 통하여 관리용역비를 집행하였음.[28)]

결국 대법원은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시스템 오픈 지연의 사유로 내역 변경 통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하는 관리용역비를 공식적인 총사업비 변경 조정 절차 없이 집행한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7) 일반회계-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3)(사법정보화실)

28) 대법원은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2025. 1. 23.에 완료하였음.

(나)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규정 미준수(조달청)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른 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사업 수행기간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각종 재정사업의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이하 ‘설계적정성검토’라 함)를 수행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및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4조[29] 등은 설계적정성검토 기간을 설계 유형에 따라 10~20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적정성검토 평균 소요기간은 매년 관련 규정상 검토 기한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연도별 평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20년(61.6일)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24년(51.2일)에 전년(74.3일)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서 정한 설계적정성검토 기간을 크게 상회함.

[설계적정성검토 평균 소요기간]

(단위: 일)

구 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감(B-A)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62.8	58.9	72.1	71.5	56.4	△6.4
국방사업 시설공사·정보화사업	62.4	64.8	83.8	75.7	64.1	1.7
보조사업 시설공사	49.2	60.2	75.4	77.3	18.9	△30.3
맞춤형서비스사업	66.0	71.3	79.8	90.1	37.7	△28.3
평 균	**61.6**	**61.9**	**75.2**	**74.3**	**51.2**	**△10.4**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해 조달청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검토기간은 64일이나, 수요기관의 소요기간[30]을 제외한 조달청 검토기간[31]은 8일 가량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요기

29)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정의 및 범위)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계획설계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설계·실시설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도 요청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4조(기타 운영사항) ② 설계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조달청 업무처리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요기관이 증·감액 산출서 및 VE제안서 등의 작성을 위해 소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10일
2. 중간설계·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각 15일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5일(설계 적정성 검토와 병행 시 20일)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15일

30)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검토의견에 대한 재설계 및 공사비 증감액 산출서, 면적검토서 및 단가 산출서 등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함

간 내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의 검토기간에서는 증감액산출서 작성 등 수요기관의 소요기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요기관의 소요기간 또한 검토의 일부분으로 보고 가급적 지침상 명시된 검토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32]

31) 조달청의 설계도서 검토 및 의견서 취합, 예산 증액사유서 검토, 면적 적정성 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함

32) 이에 대해 조달청은 2015년 이후 설계적정성 검토업무에 예산 및 규모 검토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수요기관의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1~2개월)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미반영되었으므로, 조달청의 검토기간 단축 노력과 함께 수요기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검토 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방위사업청	다기능관측경	5,632	4,140	소요수정으로 인한 일정 지연 가능성을 예산 집행 일정에 반영하지 못하여 집행 부진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건립	2,428	2,115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예산 집행 일정에 반영하지 못하여 집행 부진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	사업계획 수립 당시 설계 관련 절차 수행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집행 부진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8,430	-	총사업비 협의 기간 및 공사업체 선정기간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집행 부진
환경부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12,500	12,500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턴키공사 유찰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
환경부	지질공원사업 (내역사업)	1,966	1,646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 연장 및 사업 지연
환경부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내역사업)	28,300	18,597	관계 기관 협의 결과 공사 진행 방식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 지연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495	2,304	기획재정부와의 조정 절차 없이 임의로 내역변경을 통해 일부 예산액을 조기 집행

10.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가. 개 요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3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①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34)「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사업임.

다만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및 문화재 복원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연혁

1999년에 처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되다가,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상사업의 선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행정지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음.[35)]

2010. 5. 17. 「국가재정법」 제30차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2014. 1. 1. 제42차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심의를 강화하였음.

또한 2020. 3. 31. 에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제하기 위해 경제성이 부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 변동·사업 재기획 등이 없는 한 면제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였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증가 등에 따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 제도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편익 및 사업별 특수성 반영 미흡 등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음.[36)]

---

35)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 변화
: ('08~'12) 90건(61.1조원) → ('13~'17.5.) 94건(25조원) → ('17.5.~'22.4.) 149건(120.1조원)

해당 개편 방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며, SOC·R&D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처 자율성 및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

2024. 12. 12. 에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정부의「국가재정법」및「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이 제출되었음. 이는 ① R&D 예비타당성조사가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②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비타당성제도를 통해 R&D 사업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개정안은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한편「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주관 하에 R&D 사업 중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및 사업계획 변경 심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음.

[R&D 예타폐지 관련 발의 또는 제출 법률안]

법률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주요 내용	심사경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2024.6.10.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	대안반영폐기
	정부	2024.12.12.	구축형 R&D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축형 R&D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절차를 규정	
	이해민 의원	2024.12.19.	R&D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	
	황정아 의원	2025.6.9.	R&D 예타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 제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2024.6.1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소위회부
	정부	2024.12.12.		
	이해민 의원	2024.12.19.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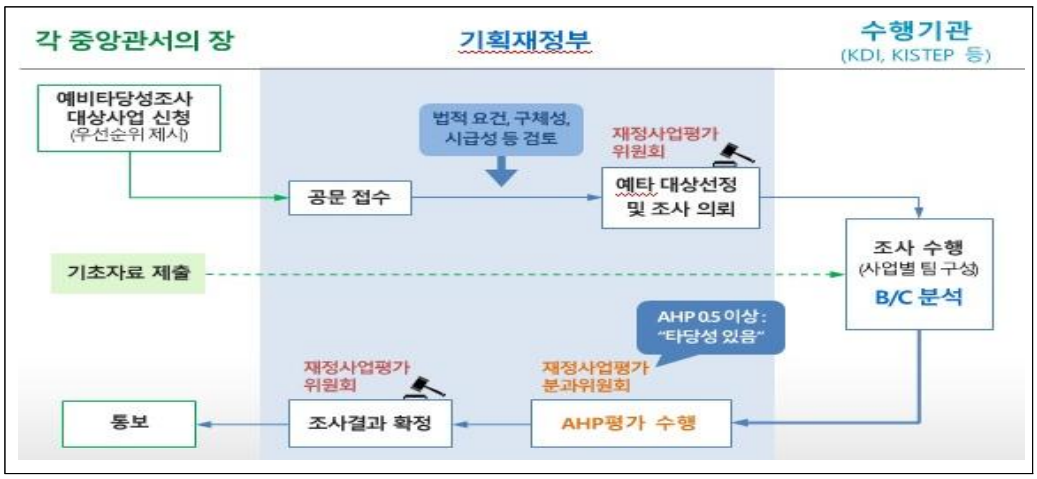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제출 또는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놓은 상황임.

(3)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고,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3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사업 중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대상 사업의 편익·비용 등을 검토하는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여건 및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는 정책성 분석,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수행한 후, 계층화분석법(AHP)을 통해 종합평가를 하여 이루어짐.[38]

---

3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조(기본 수행절차)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 경제성 분석 : 수요·편익·비용 추정 등
3. 정책성 분석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등

(4)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39]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장에서는 타당성재조사의 대상 사업, 요건 및 조사 내용 등을 정하고 있음.

동 지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는 ①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②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함.[40]

---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5.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등
6. 정책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39)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4조(타당성재조사의 목적)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4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가. 총사업비 증가율은 제107조에 의거 최초 등록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다. 물가변동분 계산시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

그 외에도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였거나,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사원 또는 국회가 재조사를 요구하였거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동 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②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③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④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⑥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등의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41]

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

라. 지가변동분 계산시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와 대비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지수 등을 이용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다. 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종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종에 대한 설계 결과의 공사비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종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41)「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동 지침 제49조제1항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또는 동 지침 제4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42]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나.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 · 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42)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나. 202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202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551개의 부처별 결산 현황을 보면, 사업 수는 국토교통부(183개), 국방부(74개), 산업통상자원부(7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44개), 환경부(42개), 해양수산부(30개) 순으로 많음.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평균집행률은 90.9%이며, 집행률이 70% 미만인 부처는 방위사업청(7.9%), 새만금개발청(19.4%), 인사혁신처(54.8%) 등 3개 부처임.

[2024년도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

부 처	사업 수	2024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경찰청	5	13,354	39,156	38,812	329	15	99.1
고용노동부	5	63,969	75,672	73,386	-	2,285	9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	970,529	1,008,516	978,851	14,166	15,498	97.1
관세청	1	1,824	1,824	1,788	36	0.4	98.0
교육부	3	511,539	511,539	479,295	-	32,244	93.7
국방부	74	543,503	538,671	538,642	-	29	100.0
국토교통부	183	7,495,212	7,609,485	6,665,024	262,764	661,628	87.6
기상청	3	14,856	15,037	14,678	53	306	97.6
기획재정부	10	174,697	174,697	170,923	3,774	-	97.8
농림축산식품부	4	43,979	45,186	44,364	788	34	98.2
대법원	7	1,049,676	1,125,168	1,092,837	14,531	17,798	81.5
문화체육관광부	6	142,133	150,873	128,233	13,958	8,682	85.0
방위사업청	1	18,900	29,874	2,347	27,527	1	7.9
법무부	10	75,447	85,448	78,103	6,542	805	91.4
보건복지부	5	196,673	196,673	175,692	-	20,981	89.3
산업통상자원부	74	2,115,758	2,125,895	2,011,019	-	104,739	94.6
새만금개발청	1	12,679	13,020	2,526	574	9,920	19.4
소방청	1	52,130	65,254	52,585	12,668	-	80.6
외교부	1	1,638	1,638	1,638	-	-	100.0
우주항공청	9	390,783	390,783	390,293	-	490	99.9
원자력안전위원회	2	25,323	25,323	25,323	-	-	100.0
인사혁신처	1	230	230	126	-	104	54.8
중소벤처기업부	13	146,045	146,045	146,008	-	37	100.0
질병관리청	8	29,630	29,630	28,318	1,098	215	95.6
해양수산부	30	1,084,709	1,115,118	945,020	64,728	105,358	84.7
행정안전부	8	265,398	262,100	246,115	1,050	14,935	93.9
환경부	42	442,817	448,453	415,583	9,316	23,554	92.7
계	551	15,883,431	16,231,308	14,747,529	433,902	1,019,659	90.9

주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포함하며, 신규 및 계속사업을 포함
2)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다. 2024년도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 현황

기획재정부는 202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①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상 규모로 증가한 15개 사업(제1호), ②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6개 사업(제2호), ③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10개 사업(제3호)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였음.

[2024년 타당성재조사 시행 사업 목록]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억원)	타당성재조사 요건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토부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	607	제49조제1항제1호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906	제49조제1항제1호
국토부	국지도98호선 양근대교 도로건설공사	575	제49조제1항제1호
국토부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안산-인천) 건설공사	21,722	제49조제1항제1호
국토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3,913	제49조제1항제1호
국토부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봉암교 확장)	889	제49조제1항제1호
국토부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함안-의령 건설공사***	***672***	***제49조제1항제1호***
문체부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535	제49조제1항제1호
질병청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4,207	제49조제1항제1호
행안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592	제49조제1항제1호
환경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634	제49조제1항제1호
환경부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568	제49조제1항제1호
환경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1,785	제49조제1항제1호
환경부	금호강 동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593	제49조제1항제1호
환경부	***대불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96***	***제49조제1항제1호***
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507***	***제49조제1항제1호***
해수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1,577	제49조제1항제2호
행복청	종합체육시설 건립	4,483	제49조제1항제2호
행안부	서면대교 건설공사	1,200	제49조제1항제2호
행안부	지방도372호선 광덕터널 도로개설사업	2,153	제49조제1항제2호
행안부	소양8교 건설사업	1,100	제49조제1항제2호
국토부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건설사업	1,150	제49조제1항제3호
국토부	국지도 69호선 온정-원남 건설공사	1,881	제49조제1항제3호
국토부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당진-아산) 건설공사	29,622	제49조제1항제3호
국토부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확장공사	5,921	제49조제1항제3호
국토부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 김제-삼례 확장공사	3,405	제49조제1항제3호
국토부	제천-영월 고속국도 건설공사	18,171	제49조제1항제3호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억원)	타당성재조사 요건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토부	국도5호선 신림-판부 도로건설공사	1,620	제49조제1항제3호
문체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1,187	제49조제1항제3호
행복청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6,353	제49조제1항제3호
환경부	사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736	제49조제1항제3호

주 1) 2024년에 재조사가 시작되었거나, 2024년에 재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2)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3) 이탤릭 처리된 사업은 재조사가 도중 철회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 제4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①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한 5개 사업(제1호), ②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판단한 1개 사업(제2호), ③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개 사업(제4호), ④「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24개 사업(제5호)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음.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 사업 목록]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적정성 재검토 요건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11,265	제49조제2항제1호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제2전산동 증축	239	제49조제2항제1호
농림부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서울 가락시장)	9,942	제49조제2항제1호
해수부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2단계)	471	제49조제2항제1호
환경부	포항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32	제49조제2항제1호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디지털-디자인 박물관 부문)	1,300	제49조제2항제2호
환경부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환경정비사업	1,528	제49조제2항제4호
경찰청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0	제49조제2항제5호
경찰청	충남 논산경찰서 신축	208	제49조제2항제5호
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 신축	499	제49조제2항제5호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374	제49조제2항제5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416	제49조제2항제5호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463	제49조제2항제5호
국세청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재건축	487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	14,989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7,491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9,788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세종-청주) 건설공사	9,731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7,240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49,438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접근도로)	5,257	제49조제2항제5호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적정성 재검토 요건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토부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12,862	제49조제2항제5호
국토부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15,511	제49조제2항제5호
대법원	창원가정법원 신축	316	제49조제2항제5호
대법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전 신축	0	제49조제2항제5호
법무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325	제49조제2항제5호
질병청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450	제49조제2항제5호
해수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1,422	제49조제2항제5호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5개소)	407	제49조제2항제5호
환경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198	제49조제2항제5호
환경부	양구군 소각시설 신설사업	178	제49조제2항제5호

주)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 집행부처의 소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검토의견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대규모 예산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집행률이 50.0% 이하)한 사업은 21개로, 소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 1개, 국토교통부 15개, 해양수산부 1개, 환경부 4개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계획		2024년도 결산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경찰청	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신축 (부산 사하경찰서 재건축)	2024~2029	46,529	355	9	-	-	9	0.0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2012~2027	183,311	6,590	6,934	744	-	6,190	10.7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17.1.1.~착공 후 5년	5,453,233	17,286	17,286	1,149	15,631	506	6.6
국토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2023~2029	201,800	4,000	4,000	-	-	4,000	0.0
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2023~2032	2,450,493	5,000	5,000	-	-	5,000	0.0
국토부	이천~문경 철도건설	2005~2026	2,514,985	42,290	42,290	10,985	-	31,305	26.0
국토부	춘천~속초 철도건설	2016~2027	2,976,517	321,360	321,360	96,400	-	224,960	30.0
국토부	문경~김천 철도건설	2023~2032	1,284,253	3,000	3,000	-	-	3,000	0.0
국토부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2024~2032	719,215	10,000	10,000	-	-	10,000	0.0
국토부	우이신설선연장선	2021~2031	471,295	1,300	1,300	200	-	1,100	15.4
국토부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2021~2030	885,921	13,800	13,800	-	-	13,800	0.0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22.12.1.~ 29.12.31.	1,484,502	12,983	12,983	-	-	12,983	0.0
국토부	울산도시철도 1호선	2021~2028	381,440	2,742	2,742	-	-	2,742	0.0

(단위: 백만원)

	건설								
국토부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2019~2025	254,803	2,000	-	-	-	-	0.0
국토부	안산-인천 고속도로건설 (안산-인천 고속도로건설)	2019~2029	1,688,900	41,003	-	-	-	-	0.0
국토부	청북IC-요당IC	18.9.10.~ 28.6.5.	54,677	18	1,379	430	12	937	31.2
국토부	포천이동-철원서면	24.12.23.~ 28.12.21.	42,487	787	1,341	301	787	253	22.4
국토부	인제 상남-기린	22.6.30.~ 31.12.31.	161,513	100	100	30	70	-	30.0
국토부	서산 대산 독곶-대로	22.06.17.~ 29.12.31.	52,226	500	100	3	97	-	3.0
국토부	부안-흥덕	2018~2029	215,301	7,634	7,112	3,101	4,011	-	43.6
국토부	신안 암태 수곡-신석	21.09.30.~ 29.12.31.	58,246	1,000	100	40	60	-	40.0
국토부	거제 남부-일운	22.07.15.~ 32.12.31.	202,190	500	70	-	70	-	0.0
국토부	거제-마산	12.07.20.~ 25.12.31.	1,212,577	5,000	5,000	-	-	-	0.0
국토부	양천-대항	22.07.15.~ 31.12.31.	107,247	2,000	140	-	140	-	0.0
국토부	성주 선남-대구 다사	21.12.31.~ 29.12.31.	139,469	1,000	70	-	70	-	0.0
국토부	안동 풍산-서후	22.07.15.~ 31.12.31.	177,631	1,000	70	-	70	-	0.0
국토부	울주 범서-경주 외동	22.07.15.~ 30.12.31.	88,992	500	87	17	70	-	19.5
국토부	청송 진보-영양 입암	22.07.15.~ 30.12.31.	91,999	1,000	70	-	70	-	0.0
문체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이건희 기증관 건립)	2022~2028	118,355	5,961	5,961	848	4,020	1,093	14.2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2023~2029	1,128,652	12,679	13,020	2,526	574	9,920	19.4
질병청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Ⅱ(R&D) (바이오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2024~2028	71,208	1,157	1,157	175	768	215	15.1
해수부	동해신항(관리부두)	2022~2030	50,495	2,641	3,206	-	600	2,606	0.0
해수부	동해신항	2021~2027	231,866	21,480	8,238	788	422	7,028	9.6

(단위: 백만원)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해수부	평택·당진항(진입도로)	2018~2030	180,902	1,803	768	21	747	-	2.7
환경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2022~2028	2,495,960	1,920	1,920	-	-	1,920	0.0
환경부	하수처리장설치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2022~2027	65,978	986	986	-	-	986	0.0
환경부	하수처리장설치 (전주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2017~2026	79,431	617	617	-	-	617	0.0
환경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인천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21~2025	54,574	1,987	10,615	-	1,987	8,628	0.0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2023~2028	538,605	8,010	8,010	2,000	-	6,010	25.0

주) 2024년 집행률 50.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주로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났음. 특히 총사업비 조정 절차 지연·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수립 지연 문제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부진 사유]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집행 부진 사유
경찰청	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신축 (부산 사하경찰서 재건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확정기간(10개월) 소요로 사업 지연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공항등급 상향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설계대가 미지급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설계 선행절차 추진에 따른 실집행 불가
국토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으로 예산집행 불가
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노선 및 환기구 설치 반대 민원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지연
국토부	이천~문경 철도건설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초과 배정된 예산액이 불용
국토부	춘천~속초 철도건설	노반 기타공사 착공 시기에 따른 공사 절대기간 부족
국토부	문경~김천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 착수 곤란
국토부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 착수 곤란

국토부	우이신설선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입찰공고 2회 유찰로 기본설계 착수 지연
국토부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기본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입찰공고 3회 유찰로 기본설계 착수 지연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연
국토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국토부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서청주-증평 고속도로건설)	실시설계 중
국토부	안산-인천 고속도로건설 (안산-인천 고속도로건설)	기본설계 타당성재조사
국토부	청북IC-요당IC	시공사 타절로 인한 공정 부진
국토부	포천이동-철원서면	실시설계 진행중
국토부	인제 상남-기린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협의에 따른 발주 지연(2025. 5. 총사업비 협의 완료)
국토부	서산 대산 독곶-대로	관계기관 협의(총사업비 등) 지연
국토부	부안-흥덕	관계기관 협의(총사업비 등) 지연에 따른 하반기 사업 발주로 미착공
국토부	신안 암태 수곡-신석	관계기관 협의(총사업비 등) 지연에 따른 하반기 사업 발주로 미착공
국토부	거제 남부-일운	관계기관 협의(해역이용협의 등) 지연
국토부	거제-마산	거가대교(민자)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전 행정절차 필요
국토부	양천-대항	실시설계 진행 중
국토부	성주 선남-대구 다사	보상협의 지연
국토부	안동 풍산-서후	타당성 재조사 예정
국토부	울주 범서-경주 외동	관계기관 협의(문화재 등) 지연
국토부	청송 진보-영양 입암	관계기관 협의(하천 등)
문체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이건희 기증관 건립)	설계용역 계약 완료시점 미도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계약방법을 변경(경쟁→수의)함에 따라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 지급 불필요
질병청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II(R&D) (바이오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참여자 모집 지연에 따른 인체자원저장 운영비 불용 및 용역계약기간 미도래
해수부	동해신항(관리부두)	총사업비 협의 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실시설계 등 후속 용역 발주 지연
해수부	동해신항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계약방법 변경(경쟁→수의) 및 입찰·계약기간 소요

해수부	평택·당진항(진입도로)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로 공사발주 지연
환경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지역주민 반대로 하류 기본 및 실시설계 미발주
환경부	하수처리장설치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행정절차(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환경부	하수처리장설치 (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행정절차(설계VE 및 반영에 따른 설계보완 등) 지연
환경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인천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행정절차(총사업비 변경 사전협의 중) 지연으로 공사 미착공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건설업계 경영난에 따른 공사 입찰 유찰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해당 사업들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될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취지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는 대규모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의 정비와 함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면제 사업 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현황을 보면 2020년 43.7%였던 면제비율은 2024년 68.4%까지 상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신규사업 중 3분의 2 이상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채 예산에 편성되고 있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타면제 요구 사업 수(A)	예타면제 선정 사업 수(B)	면제 비율(B/A)
2020	70	31	43.7%
2021	77	31	40.3%
2022	60	26	43.3%
2023	55	28	50.9%
2024	57	39	68.4%

주) 과기부 이전 사업은 제외, 도중 철회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 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 5년간 면제사업 수를 면제 사유별로 보면, 2020년에는「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17건(5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제8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14건(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2020~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합계
2020	건수	5	-	-	1	2	2	-	4	-	17	31
	(비중)	(16.1)	-	-	(3.2)	(6.5)	(6.5)	-	(12.9)	-	(54.8)	(100.0)
2021	건수	7	-	2	-	1	4	-	11	2	4	31
	(비중)	(22.6)	-	(6.5)	-	(3.2)	(12.9)	-	(35.5)	(6.5)	(12.9)	(100.0)
2022	건수	6	-	6	-	-	1	4	7	1	1	26
	(비중)	(23.1)	-	(23.1)	-	-	(3.8)	(15.4)	(26.9)	(3.8)	(3.8)	(100.0)
2023	건수	8	-	2	-	1	-	-	7	4	6	28
	(비중)	(28.6)		(7.1)		(3.6)			(25.0	14.3	21.4	(100.0)
2024	건수	10	-	-	-	-	-	3	14	4	8	39
	(비중)	(25.6)	-	-	-	-	-	(7.7)	(35.9)	(10.3)	(20.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0호 사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0년에는 제10호 사유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 국회의 지적으로 2022년 1건으로 감소한 후 2024년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근거로 면제받은 사업은 2020년 4건(12.9%)에서 2024년 14건(42.4%)로 증가하였음.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목록]

(단위: 억원)

사업명	예산액	면제사유
서울 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	1,309	제1호
경기남부 부천원미경찰서 신축	867	제1호
부산 연제경찰서 신축	505	제1호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914	제1호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신축 사업	521	제1호
주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	2,738	제1호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564	제1호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매입	675	제1호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신설	1,068	제1호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964	제1호

(단위: 억원)

사업명	예산액	면제사유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990	제7호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584	제7호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779	제7호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2,917	제8호
당진시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BTL)	933	제8호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 전업지원	3,562	제8호
대구광역시 달서천(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694	제8호
순천시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	2,809	제8호
광주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38	제8호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214	제8호
고성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1,621	제8호
청도군 공공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969	제8호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2,103	제8호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792	제8호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1,951	제8호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BTL)	2,471	제8호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1,776	제8호
신도시 리츠(기금 출자)	59,000	제9호
주택정비사업(융자)	900	제9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4,000	제9호
AI 혁신펀드	1,000	제9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14,677	제10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9,743	제10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11,971	제10호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7,292	제10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	5,483	제10호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	9,790	제10호
국도45호선(용인 이동~남동) 건설	8,843	제10호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874	제10호
합계	**173,701**	-

주) 과기부 이전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례 중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

이 법률상 사업 수행을 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근거로 제시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내용인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규정을 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43]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근거로 제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내용인 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규정을 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44]

---

43)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16. 2. 3.>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4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46] 등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조항인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을 직접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

[법률상 사업 수행을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가재정법」에 따른 면제사유	2024년도 결산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문체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제38조제2항제8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추진)	4,711	4,711	4,711	-	-	100.0
산자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제38조제2항제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제30조에 따라 추진)	52,591	65,101	52,591	-	-	80.8
산자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처분검사건물 신축)	제38조제2항제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제30조에 따라 추진)	2,220	333	2,220	-	-	666.7
산자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3단계 처분시설 건설)	제38조제2항제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제30조에 따라 추진)	2,675	2,189	2,675	-	-	122.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4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4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한정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제가 남용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법률의 위임 없이 훈령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단위를 규정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타 대상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과 일부 내역사업으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향후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사업단위에 관해서는 정한 바 없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에서 예타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47)]

이 지침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나 내역사업의 하위인 내내역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타를 받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될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단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 훈령에서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으로 사업단위를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

4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2008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등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대상으로 규정하는 분야는 2008년 법률 개정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분야들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정보통신 분야에 이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해당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정부는 신규 세부사업 중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1조 6,194억원)'과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300억원)'은 통신 분야의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각호[48]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대상 사업으로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49]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50]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특정 분야[5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기 2개 사업은 제4호의 특정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 분야 사업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특정 분야'는 2008년 법률 개정

---

4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5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 · 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당시의 재정지출이 급증한 분야들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 및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타 대상사업 분야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변화]

구분	2007. 1. 1. ~ 2008. 2. 28.	2008. 2. 29. ~ 2008. 7. 22.	2008년 7월23일 ~ 현재 (2014년 법률로 상향 규정)
예타 조사 대상	**(공통기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

주) 정보화 사업의 경우 근거 법률이 「정보화촉진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용 법률은 달라졌으나 내용은 유사하게 유지되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52]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은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규정한 바 있음.

이후 시행령에 일반 연구개발사업(2008년 2월)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 사업(2008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국가재정법」 개정 시 시행령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특정 분야 사업들이 포함될 당시의 「국가재정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평가 제도는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 대상사업에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되는 사회복지 등 분야의 신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대상 분야의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타당성 및 적정 사업규모 등을 심층적으

52)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

로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 이라 밝히고 있음.

이에 따르면 통신 분야는 2008년 7월 시행령 개정 시에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2008년에 비해 현재는 사회 전 분야에서 ICT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래 주요 성장 동력인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신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통신 분야가 2008년 당시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과 같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부적절한 설계 과정을 토대로 타당성 재조사를 회피한 문제(소방청)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기본설계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타당성 재조사의 취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의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 전담기관을 충청북도 음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2019. 11. 27.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2020. 11. 2. 설계에 착수하였고, 2021년 내에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완료하였음.[53]

그런데 소방청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헬리패드, 의료가스장비・배관공사, 방사선차폐공사 등이 설치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발생으로 인해(주차대수 161.5% 증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헬리패드 등 일부 공사를 별도공사로 전환하고 설계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헬리패드 등 일부 공사가 설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동 지침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4. 7. 동 지침 제111조에 따른 제재를 요구하였음.[54]

---

53) 일반회계-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기획조정관)

5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을 반영 시 당초 총사업비 907억원에서 약 301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여, 동 지침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할 예정이므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함. 그러나 133억원 규모의 일부 공사가 별도공사로 제외됨으로써, 총사업비를 약 168억원만 증액하여 당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미만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사후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부적절한 설계로 보고 제재를 요구한 것임.

이후 소방청은 제외된 공사를 낙찰차액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발생 시 총사업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였음.[55] 결국 2024년에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발주를 위해 119항공정비실 공사비 등 불용예정액 16억 1,8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총사업비 78억원(헬리패드 38억원, 의료가스장비·배관공사 26억원, 방사선차폐공사 6억원, 의료IT시스템 8억원)을 증액하였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제3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제107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등록·미등록·지연등록,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의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국고, 지방비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구분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어 이미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임.[56]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 사업에서와 같이 부적절한 설계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회피함으로써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타당성 재조사의 취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바) 타당성 재조사 철회 관련 집행관리 강화 필요(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내역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규모 조정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되었는바, 단계적·합리적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의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내역사업은 2021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초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매년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음.[57]

2024년에는 공사비 등 예산 8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3.5~'23.11.)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457억원→507억원)[58]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24.4~)하였고, 2024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국가유산청은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동 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본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규모 조정 및 인접한 전수교육관과 진입로, 지하주차장, 옥외공간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건립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

56)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57) 일반회계-무형유산원운영(1132-303)(무형유산국)

58) 계획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후 실시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24.1월) 결과, 사업기간 연장(2026년까지 1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50억원)이 결정되었음.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되고, 2025년 2월 총사업비가 457억원으로 재결정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된 본 사업에 대하여 향후 단계적·합리적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였음.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의 예산안 편성 당시 시급성이 인정되고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였음.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해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음.[59)]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이를 고려하면, 국가재정의 운용 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예산 편성 시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업시작 전인 2023년 말까지 전체 사업계획 및 총 사업비, 연차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결국 동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확정(2023. 12.) 이후에 적정성 검토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2024년도에 편성된 495억원의 예산 중 57.6%만이 집행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일지라도 적정성 검토 결과가 예산 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정 집행의 비효

59) 일반회계-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보건산업정책국)

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적정성 검토 전 예산 편성은 사업 수행 중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과제수 및 예산액 조정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당초 계획('24~'33)		적정성 검토결과('24~'32)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임무 1~4	48	8,640	40	7,200
임무 5	16	8,000	10	1,800
기반 1(신속지원)	10	500	-	-
기반 2(국제협력)	-	363	-	13.5
운영비(기획평가비)	-	1,331	-	904.7

자료: 보건복지부

(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의 이관 지연으로 인해 비용이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하여 2024년 기존 통계의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단되는 등 이관이 지연되고 있어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및 위탁운영 비용이 각각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위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통계청은 디지털 전자조사 플랫폼 마련을 통해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통계시스템 활용으로 생산시간 감소, 유사·중복자료 생산을 방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2021년~2023년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음.[60]

통계청은 최초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도입 당시 2025년까지 470종의 통계를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이관이 지연되어 2024년까지 이관된 통계는 112종에 불과하였음.

이는 특히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의 총사업비가 당초 465억원에서 692억원으로 증가

60) 일반회계-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2031-305)(통계서비스정책관)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4년 예산에는 운영 전환을 위한 비용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임.[61]

[연도별 통계조사 이전 계획 및 이전 현황(2024.12.기준)]

(단위: 종)

연도	통계조사 이전계획 건수		
	당초 계획	변경계획(’ 24. 12.기준)	이전완료
2021	5	-	-
2022	22	33	33
2023	58	79	79
2024	298	-	-
2025	87	235	-
2026	-	91	-
2027	-	-	-
2028	-	-	-
합계	470	438	112

자료: 통계청

이관 지연에 따라 기존 나라통계시스템과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유지보수 비용이 구축비의 10% 수준에서 연례적으로 편성·집행되기 때문임.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관리대상 통계 이관에 따라 각 시스템의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가 매년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한 동일하게 지출됨.

61)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 따르면 타당성 재조사 진행 당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3개년 구축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어 타당성 재조사가 2024년 6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변경 진행되었음.

[2023~2025년 기존 및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및 위탁운영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		422	343	331
	위탁운영 비용		3,832	2,669	2,616
	유지보수 비용		1,576	1,576	1,576
차세대나라통계 시스템	관리대상 통계		32	121	123
	위탁운영 비용		462	1,912	1,992
	유지보수 비용	상용 SW	80	82	90
		응용 SW	-	-	1,039

주 1) 2024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의 이관된 통계 112종과 신규 구축 9종으로 구성됨
2) 2025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는 2024년 대행조사에 대한 신규 구축 통계 2종이 추가됨
자료: 통계청

위탁운영 비용의 경우에도 업무범위의 변경에 따라 지출금액에 차이는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차세대 시스템이 모두 운영되면 2개 시스템 모두에 대하여 매년 지출이 발생하게 됨. 2025년 6월 기준 통계청은 2026년까지 관리대상 통계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나 이관이 지연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 위탁운영 비용의 이중 지출이 이후에도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관리대상 통계 이관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관련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건립	84,422	71,753	타당성 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기본설계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내역사업)	8,430	-	타당성 재조사 철회 관련 집행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49,500	28,520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6,524	6,45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의 이관 지연으로 인해 비용이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

11. 성과관리제도

가. 개 요

(1) 의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란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정부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재정법」은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를 의미하며, ‘성과평가’는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의미함.[1)]

* 성과목표관리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	Monitoring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		
* 재정사업평가 (성과관리 대상)	-	Review & Feedback (재정사업 자율평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	Evaluation & Feedback (사업별 심층평가)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4.9.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후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래 2006년 4대 재정개혁(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재정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최근에는 2021년 「국가재정법」에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2022년 수립한 5개년 기본계획(‘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중점 추진체계로 ‘성과목표관리 개편’과 ‘사업성과평가 개편’ 등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 개편’은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전부처 성과지표를 1,000여개에서 500개 이하로 감축하여 평가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 성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처별 2~5개의 성과지표를 선정·관리하며,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임.

‘사업성과평가 개편’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6개 부처 11개 사업평가제도로 인한 피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1사업-1평가 원칙으로 부처협의를 통해 평가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미흡 사업 중심의 지출구조조정과 재도개선 시 성과평가 활용을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임.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기본방향

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행정부담 경감

⑵□정과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제도화

ㅇ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원칙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ㅇ 성과 미흡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의무화

⑶ 재정운용 성과정보의 대국민 공개 강화

중점 추진체계

⑴ **성과목표관리 개편**

(가)□(**성과지표 감축**) 부처별 성과지표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여 평가로 인한 행정부담 최소화 및 부처별 성과의 이해도 제고

-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 하에 全부처 성과지표를 1,000여개 (프로그램당 2~3개) → 500개 (프로그램당 1개) 이하로 감축
- 부처별 평균 18개 성과지표를 8~9개로 축소

(나)□(**대표지표 선정**) 부처별 2~5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대국민 공개

(다)□(**목표달성도 공개**)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재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⑵ **사업성과평가 개편**

(가)□(**통합평가체계 구축**) 피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평가의 평가항목 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원칙적으로 1사업-1평가 추진

❶ (공통항목) 목표달성도, 집행률 등 공통 평가항목*을 선별하여 1 회계연도 1회 자료제출로 모든 재정사업 평가에서 활용 * 집행률, 목표달성도, 사업 설계·관리의 적정성, 성과우수도 등

❷ (평가시기) 예산순기를 감안하여 모든 평가를 5월말까지 완료

* 통합평가지침 통보(전년 11~12월) → 평가실시(1~4월) → 평가결과 확정(5월말)

❸ (평가단위・등급) 예산환류・이력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평가대상 사업단위(세부사업) 및 평가등급(3등급, 우수-보통-미흡) 일원화

❹ (평가중복 최소화) 평가 대상사업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관계도(mapping)'를 작성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중복사업 최소화

(나) □ **평가 통폐합**) 중장기적으로 존치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 평가제도 신설시 재정당국 협의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 검토

* 평가 차별성 및 결과활용도(예산환류, 정책반영) 등을 고려하여 평가 부담-실익 형량

(다) □ **환류 제도화**) 미흡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 제도개선 추진 등 성과평가 결과활용을 제도화

❶ (지출 구조조정) 6개 부처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예산의 일정비율(예: 최소 1%) 구조조정 원칙 도입

❷ (제도개선) '미흡' 사업 중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시 미흡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계획 제출 의무화

❸ (연례적 부진사업)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사업 재설계(부처) 및 컨설팅(재정당국) 실시,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 사업폐지

(3)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가) □ 제도설계) 정부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 재정사업군에 대한 성과제고를 목표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당국 중심으로 전주기(편성・집행・평가) 관리

(나) (대외결과) 평가결과를 그래픽 정보로 공개하여 국민 관심・이해 제고

(4)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가) □ 디지털 인프라)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각종 평가이력을 망라한 성과DB 구축

(나) (협업체계 구축) 평가 주관부처(6개) 협의체를 운영하여 평가표준화, 통합평가지침 마련, 평가제도 정비 등에서 협력 / 재정성과평가포럼을 통해 전문기관,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정보공유 활성화

(다) (부처역량 강화)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담당인력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2) 2024년 성과목표관리 현황

(가)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가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2년부터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음.

2024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60개[2] 중앙관서의 전략목표는 187개, 프로그램 목표는 475개였고,[3] 성과지표 수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3년도 1,069개에서 562개가 감소하여 507개가 되었음.

[2021년~2024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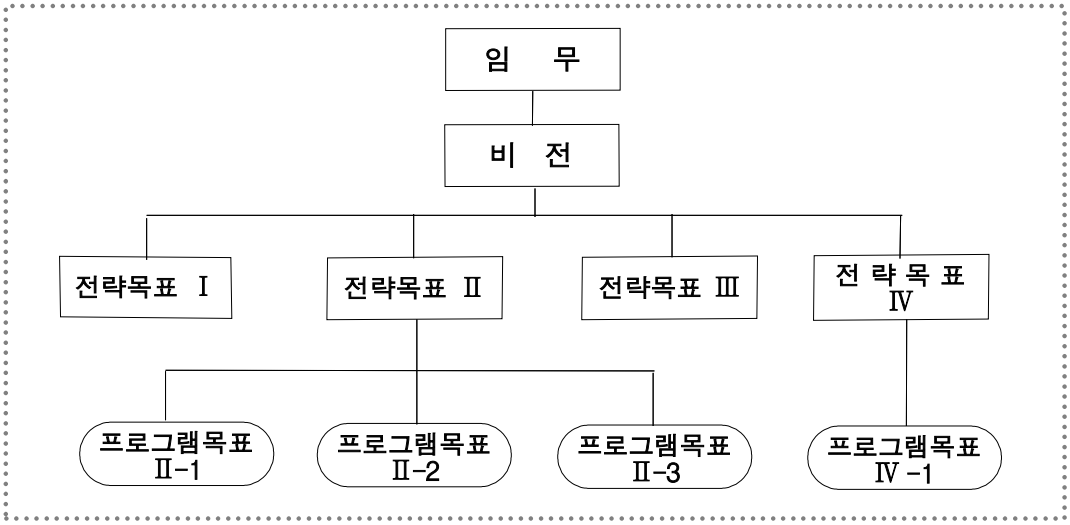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당 성과지표 수
2011	56	183	475	5,349	11.3
2022	58	179	473	1,047	2.2
2023	58	179	473	1,065	2.3
2024	60	187	475	507	1.1

자료: 2021년~2024년의 성과계획서(총괄편)(대한민국 정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2) 61개 예산 소관 중 국가정보원 제외, 국가교육위원회('22년 9월 출범)와 재외동포청('23년 6월 출범) 포함

3) 각 중앙관서의 성과목표관리 체계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성과지표 성격별로 구분하면,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4]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방법으로 구분하면,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5]로 구성되었음.

[2023년 및 2024년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회계연도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2023	475	1,069	16	30	295	728	794	275
		(100.0)	(1.5)	(2.8)	(27.6)	(68.1)	(74.3)	(25.7)
2024	475	507	21	14	117	355	375	132
		(100.0)	(4.1)	(2.8)	(23.1)	(70.0)	(74.0)	(26.0)

자료: 2024년 성과계획서(총괄편)(대한민국 정부)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7.2%였음.[6]

---

4)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과정・선출・결과지표)으로 구분됨.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 ·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

5) 성과지표는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라 정량・정성지표로 구분됨.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반영
사례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3%), 경찰청(10.2%) 등은 기관 특성상 인건비 ·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낮은 항목의 비중이 높아 총 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았고, 행정안전부(6.7%), 교육부(15.6%)는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

(단위: 억원)

회계연도	총지출(A)	성과관리대상 사업 금액(B)	성과관리대상 사업 설정비율(B/A)
2024 (a)	6,559,569	3,748,826	57.2%
2023 (b)	6,378,750	3,487,175	54.7%
증감(a-b)	180,819	261,652	2.5%p

(나)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각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보고서로서 사업의 주요내용, 성과지표별 달성현황,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프로그램예산 체계상 “프로그램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성과보고서는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집행단계 및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7]되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60개 기관은 성과지표 총 507개 중 415개(81.9%)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92개(18.1%)는 미달성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 중 43개(8.5%)는 목표를 130%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고 함.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낮았으며, 기획재정부(7.1%)는 차입금이자상환 및 예비비 비중이 크고,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낮았음.
반면, 방송통신위원회(466.3%), 금융위원회(363.5%), 원자력안전위원회(140.5%), 질병관리청(223.1%), 산업통상자원부(110.2%), 중소벤처기업부(103.5%), 환경부(100.3%), 여성가족부(100.5%)는 해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소관 기금과 금융성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하였음.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기금을 통합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며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중앙관서별 프로그램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목표수	지표수 (A)	달성 (B)	초과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2	2	0	100.0%	100.0%
대통령경호처	1	1	1	1	0	100.0%	100.0%
국회	2	5	5	3	0	60.0%	97.9%
대법원	2	2	2	1	0	50.0%	99.8%
헌법재판소	1	1	1	1	0	100.0%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2	1	0	50.0%	9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2	3	1	1	66.7%	97.4%
감사원	1	1	2	0	1	50.0%	80.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1	2	1	0	50.0%	99.3%
기획재정부	4	15	16	13	1	87.5%	98.5%
교육부	4	20	20	17	1	90.0%	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33	33	26	6	97.0%	99.7%
외교부	6	12	15	13	2	100.0%	100.0%
통일부	2	8	8	4	2	75.0%	97.6%
법무부	5	9	9	8	0	88.9%	99.8%
국방부	5	10	13	7	1	61.5%	99.6%
행정안전부	6	16	17	16	0	94.1%	100.0%
국가보훈부	5	9	10	7	0	70.0%	97.4%
문화체육관광부	6	33	34	19	2	61.8%	97.6%
농림축산식품부	5	16	17	11	4	88.2%	99.2%
산업통상자원부	6	24	24	19	0	79.2%	95.0%
보건복지부	4	25	26	22	1	88.5%	99.6%
환경부	6	16	16	16	0	100.0%	100.0%
고용노동부	4	9	9	8	0	88.9%	98.3%
여성가족부	4	5	5	3	0	60.0%	99.9%
국토교통부	6	33	33	23	4	81.8%	96.0%
해양수산부	3	13	14	12	0	85.7%	97.7%
중소벤처기업부	5	11	13	7	5	92.3%	99.4%
인사혁신처	5	7	7	6	0	85.7%	99.6%
법제처	1	1	2	2	0	100.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5	10	11	9	1	90.9%	96.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1	1	0	100.0%	100.0%
국가인권위원회	1	1	2	0	0	0.0%	64.0%
국가교육위원회	1	1	1	0	1	100.0%	100.0%
방송통신위원회	2	4	4	3	0	75.0%	99.5%

(단위: 개)

중앙관서명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목표수	지표수 (A)	달성 (B)	초과달성 (C)	달성률 ((B+C)/A)	성과지표별 달성률 평균
공정거래위원회	3	4	4	2	0	50.0%	98.8%
금융위원회	4	11	14	10	1	78.6%	98.7%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0	100.0%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2	3	3	3	0	100.0%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2	2	2	0	100.0%	100.0%
국세청	5	6	8	6	0	75.0%	99.2%
관세청	4	6	6	6	0	100.0%	100.0%
조달청	1	2	3	0	1	33.3%	96.9%
통계청	3	5	5	5	0	100.0%	100.0%
재외동포청	1	2	2	1	0	50.0%	94.0%
병무청	4	4	5	5	0	100.0%	100.0%
방위사업청	3	7	7	4	0	57.1%	99.0%
경찰청	4	10	12	6	2	66.7%	98.7%
소방청	1	1	1	0	0	0.0%	99.7%
국가유산청	3	7	7	3	2	71.4%	99.1%
농촌진흥청	2	7	7	6	0	85.7%	100.0%
산림청	5	7	7	5	1	85.7%	99.7%
특허청	2	5	5	5	0	100.0%	100.0%
질병관리청	4	9	9	8	0	88.9%	99.5%
기상청	4	7	7	3	2	71.4%	96.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	2	2	0	100.0%	100.0%
새만금개발청	3	3	3	0	0	0.0%	84.1%
해양경찰청	5	5	5	4	1	100.0%	100.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1	1	1	0	100.0%	100.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1	1	1	0	100.0%	100.0%
총 계	187	476	507	372	43	81.9%	97.7%

자료: 2024년 성과보고서

(다) 성과목표관리 결과보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 바,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1%로 전년(76.9%) 대비 5.2%가 상향하였고, 이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집중적·전략적인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음.[8)]

또한 2025년부터는 새롭게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9]을 하였으며, 「종합우수기관」은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 및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및 해양경찰청 등이 선정되었고, 전년 대비 성과달성도가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이 선정되었음.

한편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 및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과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 및 성과 우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역농업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조안전활동’(해양경찰청),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통관’(관세청) 등이 선정되었음.[10]

[우수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명	주 요 성 과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 ‘농산물상품화매출액 증가율’ 상승(('23)17.8%→('24)20.0%) ■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관리 지원, 농촌융복합 사업을 통한 상품화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 ‘국내외 SCI 논문 질적수준’ 제고(('23)78.12점→('24)81.48점) ■ 유전체, 대사질환, 뉴로모픽 칩,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R&D사업에서 혁신적 기술개발 실현
해양경찰청	구조 안전활동	■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상승(('23)93.5%→('24)93.7%) ■ 민·관 합동 해양구조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교육부	학생지원 (특수학교)	■ ‘장애학생 교육지원 만족도’ 상승(('23)80.7점→('24)86.6점) ■ 직업분야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개교('24.9.) 지원 등 장애학생 교육의 품질 향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정보화	■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제공건수’ 증가(('23)27,840건→('24)34,127건) ■ 민간수요가 큰 국가중점데이터(자동차종합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 증가
관세청	수출입통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	■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실적 건수’ 증가(('23)14,203건→('24)14,514건) ■ 식약처·기표원과 협업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 대상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절차를 혁신하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을 경감

8)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58.3%(35개 중앙관서, 전년 44.8% 대비 13.5%p 상향)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임.

9) 기획재정부와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구성된 재정성과평가단이 각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함께 평가하여 우수기관(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각 6개)을 선정하였음.

10)미흡 프로그램으로는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등지원’(국토교통부),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등 6개가 선정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하는 한편,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3) 2024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11]는 각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는 평가제도로서,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대상이나 R&D 사업평가 등 다른 평가를 받는 사업은 제외되고, '세부사업' 단위로 상대평가하고 '미흡'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며, 2024년 총 1,72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과기부), 재난안전(행안부), 균형발전(균형위), 복권기금(복권위), 일자리(고용부), 중소기업지원(중기부) 사업 등은 제외(별도 평가 진행, 평가중복 최소화)
□ (평가사업의 단위) **'세부사업' 기준**
  * 다만, 평가목적 상 단위사업별 평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국토부 국도유지관리 사업 등) 예외적으로 별도 협의 가능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상대평가** 실시
  o '사업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다만, '미흡'의 경우 예산규모 기준(5% 이상)도 준수

1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결과환류 :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추진
  ㅇ ❶미흡 등급 세부사업에 대해서 △10%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❷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의무지출 등은 제외) 총예산의 △1% 삭감 준수 (※불가피한 경우 보통사업 등도 포함)
  * 총지출구조조정 목표(△1%)를 충족한 경우로써, 세부사업별 △10%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대외공개 :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 대외 공개(원칙)
□ 자체평가위원회 : 소관부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집행의 효율성·성과 달성도·성과 우수성・환류 및 개선노력・가감점
  ㅇ (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통합평가지침 적용

한편 개별법령에 기초하여 R&D사업(과기부), 재난안전사업(행안부), 균형발전사업(지방시대위원회), 일자리사업(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중기부)에 대한 사업평가가 시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기금평가・보조사업평가 및 복권기금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타 평가 대상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제외하는 한편(평가중복 최소화), '1사업 1평가' 원칙을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통항목 양식 표준화[12]・평가단위 일원화[13] 및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14] 등을 통해 성과평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12)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로 필수적인 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사업관리 적정성, 성과달성도, 성과우수성, 환류・개선 노력)은 '공통항목'으로, 개별 평가 취지를 고려한 항목은 '개별항목'으로 정비하고, 공통항목 양식을 표준화하여 1회 자료제출로 모든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13) 종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단위는 '단위사업'이었으나, 다른 사업평가제도와 일원화를 위해 세부사업으로 개편하였음.

14) 재정사업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대상사업의 일정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전 평가제도로 확대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성과지표 수 감축에 따른 문제

정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과 성과보고서 작성 등 성과목표관리의 사업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상향하고, '1프로그램 1지표' 원칙에 따라 성과지표를 2021년 5,349개에서 2024년 507개로 감축하였으나, 그 결과 프로그램 성과보고서가 세부사업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활용되는 지표 상당수가 성과지표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성과목표관리 대상을 2021년까지는 '단위사업'으로 관리하였으나, 2022년부터 '프로그램'으로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 5,349개였던 성과지표의 수가 2022년 1,047개로 감소하였고, 2024년부터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507개로 줄어들었음.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 변동 현황]

(단위: 개)

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성과지표(A)	단위사업 성과지표(B)	성과지표 합계(A+B)
2021	56	183	475	680	4,669	5,349
2022	58	179	473	1,047	-	1,047
2023	58	179	473	1,065	-	1,065
2024	60	187	475	507	-	507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1~2024년 각 연도「성과계획서」

반면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성과평가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6개 부처 11개 사업평가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평가단위는 예산환류·이력관리 등에 용이하도록 '세부사업'으로 표준화한다는 계획임.

즉 성과목표관리는 '프로그램'으로, 성과평가는 '세부사업'으로 관리(평가)단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5)]

실제로는 성과목표는 프로그램 세부사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되고, 성과지표는 이 중 일부 세부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지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교육부 '대학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성과목표는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고, 성과지표는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실적 평균' 으로 설정되었음.

그러나 동 프로그램에는 9개의 세부사업, 33개 내역사업이 있는데, 성과지표인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실적 평균' 은 이 중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예산액 2,010억원, 프로그램 예산액의 40.5%)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반면, 다른 32개 내역사업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지표임.

[(교육부) 대학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단위사업	세부사업(내역사업)	예산	결산
대학교육 역량강화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실적 평균	대학미래역량 강화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1,464	1,434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245	245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7,900	6,800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443,765	440,375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201,001**	**201,001**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BRIDGE3.0))	21,000	21,000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14,000	14,000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1,464	1,46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00	25,800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3,000	63,000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117,500	114,110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1,564	1,477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3,331	13,247
			대학 창업 활성화	23,132	22,296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936	2,936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2,517	2,517
		계		**496,854**	**491,327**

자료: 2024년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5)「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 · 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생활 활력을 증진한다’ 이고, 성과지표는 ‘농산물상품화매출액 증가율’ 로 설정되었음.

다만 ‘농산물상품화매출액 증가율’ 은 동 프로그램 세부사업 중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사업(예산액 40억 4,100만원, 프로그램 예산액의 2.8%)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반면,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예산액 501억 4,600만원, 프로그램 예산액의 34.5%)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16)]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지표]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	결산	보조사업평가 지표
지역농업 특성화	**농산물 상품화 매출액 증가율**	기술농업지원 (일반)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보조)	15,668	15,610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서비스 수혜율 - 농경지 토양환경 (pH, 유기물) 적정관리 비율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50,146	50,136	- 병해충 피해감소 효과
		농촌생활활력증진 (농특,구조)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505	2,505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지역농촌지도 사업활성화지원 (지특,지역자율)	지역농촌지도 사업활성화지원 (보조,지역자율)	67,585	67,585	- 사업참여방문자증가율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지특,지역지원)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보조,지역지원)	3,951	3,940	- **농산물 가공상품화 매출액 증가율**
			농촌자원소득화지원 (보조,지역지원)	2,960	2,960	- 개소당 농촌자원 개발 건수 -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수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특,제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보조, 제주)	1,900	1,900	-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6차산업활성화 지원(지특,제주)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보조, 제주)	90	90	- **농산물 가공상품화 매출액 증가율**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특,세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보조, 세종)	500	500	-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소계		145,305	145,225	

자료: 2024년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참고로 2023년 성과계획서·보고서에서는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 ‘농산물 가공상품화 매출액 증가율’, ‘병해충 피해감소효과’ 2개가 설정되었으나, 1프로그램 1지표 원칙을 강화한 2024년부터 ‘병해충 피해감소효과’ 가 제외되었음.
한편,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사업의 보조사업 평가에서는 ‘농산물 가공상품화 매출액 증가율’ 이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반면,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보조사업 평가에서는 ‘병해충 피해감소효과’ 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세부사업 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모든 세부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 지표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1프로그램 1성과지표'를 고수할 경우 그 성과지표는 일부 세부사업과는 연관성이 큰 반면, 다른 세부사업과는 연관성이 적은 지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첫째, 프로그램 성과보고서가 성과지표와 연관성이 큰 일부 사업에 치우쳐 프로그램 전체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교육부 '대학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17]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인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실적 평균'을 기초로 하므로, '혁신융합대학 사업' 이외의 사업은 예산액 비중이 약 6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과가 성과보고서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임.

정부는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성과목표관리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상향하였다고 설명하나, 1개 지표로 프로그램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성과목표관리 대상이 일부 세부사업으로 감축된 것과 같이 운영된다면 이는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임.

둘째,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성과지표 수를 507개로 줄인 결과, 8,400개 세부사업[18] 상당수는 성과지표 이외의 지표에 기초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나, 성과계획서·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해당 지표들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담보되기 어려움.[19]

정부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 부처별 성과지표를 축소하여 평가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에 필요하여 계속 관리해야 하는 지표가 성과목표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행정부담이 완화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음.

---

17) 전술하였듯이, 프로그램 성과지표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별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실적 평균'은 해당 프로그램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1개 사업에만 연계되는 지표이고, 예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또는 세부사업)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음.

18) 2024년 예산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는 다음과 같음.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6대	74개	652개	2,768개	8,400개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19) 현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약본만 공개되고 있는 등 성과평가의 구체적 내역 공개가 제한되고 있어 성과평가에 활용된 지표의 현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만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성과지표 이외의 지표는 산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수천 개에 이르는 세부사업 성과평가가 객관적 지표 없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평가의 적정성·신뢰성이 저하될 것임.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 관리(평가)단위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가 '재정사업 성과관리'라는 하나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많이 있음.[20][21]

따라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목표관리를 하면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성과지표 수를 감축한 결과, 프로그램 성과보고서가 세부사업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활용되는 지표 상당수가 성과지표로 관리되지 않게 된 것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국가재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르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 성과목표관리 결과 성과평가 반영의 한계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는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성과평가 시 가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감점이 적용되는 세부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평가지표와 직접 관련되는 세부사업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성과목표관리의 의미와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음.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는 "성과보고서 상 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부사업에는 가점(+3), 미흡프로그램에 포함된 세부사업에는 감점(△3)을 필수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1)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인 재정사업의 기준(제85조의2제2항), 재정사업 성과관리 원칙(제85조의3),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제85조의4),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체계(제85조의5)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 부처 자체평가 항목]

단 계	평 가 항 목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한가? (10)
2. 집행의 효율성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
3. 성과 달성도	•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0)
4. 성과 우수성	•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10)
5. 환류 및 개선노력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6. 가감점	• **성과보고서 상 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부사업에는 가점(+3), 미흡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부사업에는 감점(△3) 필수 적용** • 이외 가감점 항목은 부처별 자체 수립·활용 가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가감점이 적용될 세부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게 된다고 함.

다만 프로그램 세부사업 전부에 가감점을 적용할 경우 프로그램 성과지표와 관련성이 낮은 세부사업은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반면 프로그램 성과지표와 관련성이 있는 일부 세부사업을 선정할 경우 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와 함께 성과지표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된 세부사업은 향후 (성과지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성과보고서 등 성과목표관리 활동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성과목표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류 과정에서 도리어 그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

결국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대상 세부사업 범위의 설정 및 그에 따른 효과를 감안할 때 온전한 평가 환류 제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임.

(3) 국회 예·결산 심사 시 프로그램 단위 성과보고서 활용도 제한

국회의 예·결산 과정에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지나, 정부가 작성·제출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져 국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성과정보의 예산으로의 환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과정보의 적절한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성과목표관리 대상이 '프로그램'으로 상향되고, 2021년 5,349개였던 성과지표의 수는 2022년 1,047개, 2024년 507개로 감소함에 따라 국회 예·결산 심사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연계시키기 어려워졌음.

즉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세부사업 단위의 심사가 기본이 되며, 더 나아가 내역사업 단위까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과관리의 대상이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예·결산 심사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연계시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국가재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국회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고, 성과에 대한 정보를 배제한 채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게 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됨은 물론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됨.

이로 인해 성과관리의 목표인 성과정보의 예산편성으로의 환류가 어렵고, 환류를 하더라도 프로그램 중 어느 단위사업, 어느 세부사업에 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성과정보의 적절한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출구조조정 대상 적절 선정 필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환류가 일어나고 있으나, 사업부처에서 법령이나 계약관계 등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는 등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가 보이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대상사업 수를 기준으로 미흡 등급이 15% 이상이 나오도록 상대평가를 하고, 미흡 등급 세부사업은 원칙

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22]

그러나,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집행단계에서 법령이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하는 사례가 있음.

① 인사혁신처 '주택사업관리' 사업은 공무원임대주택 퇴거자 대상 보증금 반환금, 시설물 유지비 및 공공요금·제세 등[23]으로 구성되며, 2023년과 2024년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계획액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이후 증액변경을 거쳐 초과집행되었음.[24]

[2023년·2024년 주택사업관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계획액	당해연도 계획액(A)	변경분(B)	계획현액(A+B)	집행액
2023	444,339	412,371	24,800	437,171	435,880
2024	412,371	339,282	82,666	421,948	421,788

자료: 인사혁신처

② 교육부(사학연금공단)의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근거 법령[25]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금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2023년과 2024년 계획액이 지출구조조정으로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두 해 모두 증액변경을 거쳐 초과집행되었음.

22) 또한, 미흡 등급 세부사업의 예산규모가 5% 이상이어야 하며,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이상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23) 각각 반환금 및 손실금(710-03목)·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및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로 편성됨.

24) 전년 대비 감액조정된 2023년 계획액 4,123억 7,100만원에 비해 집행액은 4,358억 8,800만원으로 오히려 계획액 대비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감액조정된 2024년 계획액 3,392억 8,200만원에 비해 집행액은 4,217억 8,800만원으로 오히려 계획액 대비 증가하여, 지출구조조정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 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2023년·2024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계획액	당해연도 계획액	변경분	계획현액	집행액
2023	53,182	41,481	15,889	57,370	54,162
2024	41,481	37,125	17,326	54,451	51,288

자료: 교육부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는 사실상 의무지출, 지출구조조정이 무의미한 사업[26] 등은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사실상 의무지출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후 집행단계에서 증액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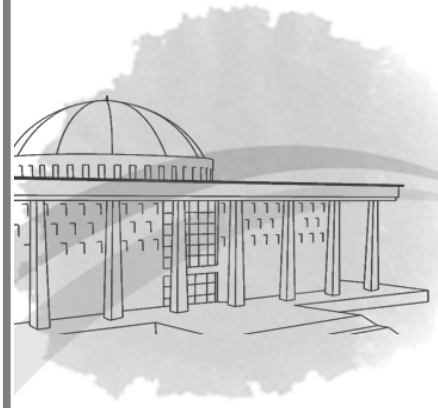
26) - 사실상 의무지출: 법령 규정 및 국가간 계약 등에 따른 사업 등
- 지출구조조정 의미가 없는 사업: 단순이관, 자연종료 및 사업폐지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주요 지적사항

(단위: 억원, 배)

부처	세부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인사 혁신처	주택사업관리	1,232	1.73	2023년과 2024년 지출구조조정으로 계획액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증)을 거쳐 초과집행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공무원임대주택 퇴거자 대상 보증금 반환금 등임.
교육부	국고대여 학자금융자	2,033	1.62	2023년과 2024년 계획액이 지출구조조정으로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나, 이후 기금운용계획 번역(증)을 거쳐 초과집행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근거 법령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금임.

Ⅳ. 주제별 검토



1. 국민건강보험 재정

가. 개 요

(1) 검토 배경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임.[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임의가입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2)] 1989년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시작되어 보편적 건강보장체계를 확립하였고, 2003년 7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가 확립되었음.[3)]

정부는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에서 급여항목 확대·보장성 강화 및 운영체계 일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의 보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 및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국민의료 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약 100조에 이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중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24년 12.2조원)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는 등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대부분이 실질적인 국회 예산심의·의결 없이 편성·집행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반해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인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국가재정 내로 운용되고 있음.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시 정부 및 기업의 불충분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출발함.

3)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며,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면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장 피부양자에 해당함.

상술하면, 건강보험의 수입 측면에서 준조세 성격의 국민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일반회계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건강보험 수입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부재하여 보험료율의 결정에 객관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도 보험급여비가 총지출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급여비의 핵심요소인 급여의 범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등의 결정 과정에서 국회가 배제되고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당시 '건강보험의 기금화 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건강보험 재정운용체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우려와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등 변화된 재정 환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금화 등 국가재정 내로의 편입을 통해 재정관리 및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임.[4)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추진내용
제1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05~'08)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암, 심뇌혈관, 심장질환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고액진료비) MRI 급여 적용 확대, 입원 식대 급여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장애인 임신부 진료 활성화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 면제,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 인하

4)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5)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전망 공개 및 재정정보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구분	주요 추진내용
제2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09~'13)	○(증증 고액질환자 진료비 경감)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급여 확대,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률 본인부담 경감 등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MRI 검사 급여 확대,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추진,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등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 대응 보장성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확대 등
제3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14~'18)	○(필수의료 보장강화)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생애주기별 보장강화(임출산 보험 적용 강화, 신생아 의료비부담 완화,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험적용 등) ○(고액 비급여 해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비급여의 해소, 의료비 부담이 큰 고가검사 보험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 중심 선별급여 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보 지원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지에 대한 건보 지원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7~'22)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등 3대비급여 해소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및 외래진료비 개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행위,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자 확대 등 ○(의료안전망 강화) 본인부담상한제[1]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2] 확대등으로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주 1)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보험료 분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사업임
2)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를 대상으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원. 가구의 소득구간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한정)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소득구간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의료비를 지원함

자료:「대한민국 사회보험」 발췌, 국회예산정책처, 2024.7.

(2)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재정 구조

(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구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영 주체로서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되, 실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에 해당함.

이 구조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관리하

면서도 실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6]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국민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역시 강제징수하고 있어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7]

또한 당해연도 보험급여(지출)를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1년 단위의 단기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기간의 지불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소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관간 기능별 분담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각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 보유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합의·의결기구로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요양급여 기준,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등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집행 등 실질적 운영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수행

(나)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구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재외국민까지 포함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8][9]

6) 「대한민국 사회보험」, 국회예산정책처, 2024.7.

7)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며, 2025년 3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인구는 총 5,138만명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가입자 및 사업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국고지원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를 통칭하여 건강보험 적용인구라고 함.

[국민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수입	보험료수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국고지원금	- 일반회계: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6% (단, 최대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
지출	보험급여비	건강보험급여인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부담분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운영비 등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다른 사회보험들과는 달리 사업관리운용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데,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음.[10]

참고로 이와 같은 구조는 정부 내부절차이므로 대외적인 감시나 통제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데, 특히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 등 대외적인 감시와 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제21대국회에서도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제22대국회에서는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의원명	주요 내용
제21대국회	서정숙의원	-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영토록하며 업무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 상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강기윤의원	-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 공단회계와 기금회계 구별

10)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다른 사회보험(4대 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들과 달리 국가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구분	의원명	주요 내용
	한정애의원	-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보고 - 국민건강보험 재정 결산의 국회 승인 제도 도입
제22대국회	한정애의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국회소관상임위원회위원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2명의 추가 위원을 선정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발췌

(다) 건강보험 재정 운용 현황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이 발생하여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2020년까지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2021년 이후부터 지출 증가폭에 비해 수입 증가폭이 더 높아 당기수지 흑자로 다시 전환되었으며, 당기수지 흑자규모는 2021년 2조 8,229억원, 2022년 3조 6,291억원, 2023년 4조 1,276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도에는 1조 7,244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2016년 이후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총 수 입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949,113	990,870
- 보험료수입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815,180	839,520
(증가율)	(7.4)	(5.7)	(7.3)	(9.5)	(6.4)	(10.8)	(10.6)	(6.5)	(3.0)
- 정부지원금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109,702	121,658
(정부지원율)	(15.0)	(13.6)	(13.2)	(13.2)	(14.8)	(13.8)	(13.7)	(13.5)	(14.5)
- 기 타 수 입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24,231	29,692
▮ 총 지 출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907,837	973,626
- 보험급여비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18,291	757,265	831,660	887,961	952,529
ㄴ 선지급					8,767	△8,756	△2		14,844
(증가율)	(9.8)	(8.8)	(9.1)	(14.0)	(4.0)	(5.4)	(9.8)	(6.8)	(7.3)
- 기타사업비 등	15,798	17,539	17,041	18,457	19,425	19,427	19,822	19,876	21,097

▮수지	- 당기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41,276	17,244
	- 누적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297,221
		(4.7개월)	(4.5개월)	(4.1개월)	(3.1개월)	(2.9개월)	(3.2개월)	(3.4개월)	(3.8개월)	(3.8개월)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료율 (인상률)	6.12% (0.9%)	6.12% (0%)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7.09% (0%)
수가인상률	1.99%	2.37%	2.28%	2.37%	2.29%	1.99%	2.09%	1.98%	1.9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적수지(준비금) 규모는 2016년 20조 656억 원에서 2020년 17조 4,181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당기수지 흑자에 따라 2024년 29조 7,22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총수입이 4.4%, 총지출이 7.2% 증가함에 따라 당기수지는 1.7조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2023년도 당기수지 4.1조원 흑자 대비 2.4조원(△58.5%) 감소한 수치임.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총수입	**계**	**949,113**	**990,870**
	◦보험료수입	815,180	839,520
	◦정부지원금	109,702	121,658
	◦기 타 수 입[1)]	24,231	29,692
총지출	**계**	**907,837**	**973,626**
	◦보험급여비	887,961	952,529
	◦기타사업비 등[2)]	19,876	21,097
수지	당 기	41,276	17,244
	누 적	279,977	297,221

주 1) 차상위지원금, 기타징수금, 이자수입 등
2) 심평원부담금, 통합징수분담금, 인건비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체적인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총수입은 예산현액 98조 8,251억원 대비 3,842억원이 늘어난 99조 2,093억원이 수납(수납률 100.4%)되었음.

건강보험 일반회계의 경우 보험료율이 동결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액이 예산현액 대비 8,886억원 감소한 반면, 자산운영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4,596억원 증가하였으며, 일산병원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4,280억원 대비 503억 줄어든 3,777억원의 수입(수입률 88.2%)이 발생하였음.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사업 회계 항목별 수입 결산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예산현액주) (A)	수입액 (B)	예결산차액 (A-B)	수입률 (B/A*100)
합 계	**988,251**	**992,093**	**△3,842**	**100.4**
□ 일반회계	983,971	988,316	△4,345	100.4
○ 사업수입	845,582	836,696	8,886	98.9
- 보험료수입	845,582	836,696	8,886	98.9
○ 임대사업수입	6	5	1	83.3
○ 정부지원금	128,591	127,812	779	99.4
- 건강보험국고지원금	102,636	102,636	-	100.0
- 담배부담금	19,022	19,022	-	100.0
- 차상위지원금	4,882	4,584	298	93.9
- 농어촌경감지원금	2,051	1,570	481	76.5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수입	1,028	1,026	2	99.8
○ 사업외수입	18,181	22,777	△4,596	125.3
- 자산운영수입	6,205	9,055	△2,850	145.9
- 징수금 등 수입	5,745	5,948	△203	103.5
- 기타수입	6,231	7,774	△1,543	124.8
○ 당기잉여금	△9,417	-	△9,417	-
□ 특별회계(일산병원)	4,280	3,777	503	88.2
○ 사업수입	3,349	2,860	489	85.4
○ 사업외수입	192	225	△33	117.2
○ 일반회계전입	739	692	47	93.6

주)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수탁사업 추경(174억 원)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총지출은 예산현액 98조 8,888억원 중 97조 2,346억원이 집행(집행률 98.3%)되고, 48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6,061억원이 불용됨.

이 중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를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에서 예산현액 96조 472억원 중 94조 6,746억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1조 3,726억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예산현액 3,945억원 중 3,481억원이 집행(집행률 88.2%)되고, 381억원이 불용됨.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사업 회계 항목별 지출 결산현황]

(단위: 억 원, %)

항 목	예산액 (A)	예산 결정 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E)	불용액 (C-D-E)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추경				
합 계	**988,077**	**637**	**110 △110**	**308 △308**	**174**	**988,888**	**972,346**	**481**	**16,061**
□ 일반회계	983,797	620	110 △110	203 △203	174	984,591	968,815	260	15,516
○ 사업비용	969,894	51	-	9 △188	173	969,939	955,747	83	14,109
- 보험급여비	960,472	-	-	-	-	960,472	946,746	-	13,726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비	855	-	-	-	173	1,028	1,026	-	2
- 주요사업비	4,073	51	-	9 △188	-	3,945	3,481	83	381
- 심평원부담금	4,494	-	-	-	-	4,494	4,494	-	-
○ 행정운영경비	8,668	-	110	-	-	8,778	8,220	-	558
- 인건비	8,191	-	110	-	-	8,301	7,793	-	508
- 기본경비	477	-	-	-	-	477	427	-	50
○ 통합징수분담금	2,152	-	-	-	-	2,152	2,101	-	51
○ 사업외비용	1,789	1	-	192	1	1,983	1,705	82	196
- 잡손실	804	-	-	94	-	898	840	-	58
- 분담금	513	-	-	98	-	611	599	-	12
- 타기관수탁사업	472	1	-	-	1	474	266	82	126
○ 비유동자산	703	568	-	2 △15	-	1,258	1,042	95	121
○ 예비비	591	-	△110	-	-	481	-	-	481
□특별회계	4,280	17	-	105 △105	-	4,297	3,531	221	545
○ 사업비용	3,892	-	-	105 △89	-	3,908	3,369	-	539
○ 사업외비용	6	-	-	-	-	6	5	-	1
○ 비유동자산	382	17	-	△16	-	383	157	221	5
○ 예비비	-	-	-	-	-	-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건강보험 재정 중기 재정전망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해 노인층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료 수입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등과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과 관련하여, 재산보험료 축소('24.2.)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2년) 등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감소·인구고령화·보장성 강화 및 의료개혁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2026년에 적자로 전환 후 2031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입	101.0	106.8	114.7	121.2	128.0	135.8	144.2	153.1	162.2	169.1	5.9
지출	98.3	106.2	116.1	126.2	135.3	144.2	156.6	170.0	182.0	197.4	8.1
재정수지	2.7	0.9	△0.5	△4.0	△6.3	△8.4	△12.4	△16.9	△19.8	△28.3	-
준비금	30.7	31.6	31.1	27.1	20.8	12.4	0.04	-	-	-	-

주 1) 보험료율의 경우 '26~'28년은 해당 기간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정수준(1.5% 내)으로 유지한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08.30.)」에 따라 '23년 인상률(1.43%) 유지, '29년 이후는 보험료율 동결 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2.05%) 적용, '32년부터는 보험료율 상한(8%) 적용
2) 건강보험 지출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08.30.)에 따른 건강보험투자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2025년)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2028년)은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1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23.5월) 주요내용]
①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6대 중증질환 한정 → (입원·외래) 모든 질환
② 의료비 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5% 초과 시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③ 재산기준: 재산 5.4억원 이하 가구 → 재산 7억원 이하 가구
④ 지원한도: 연 3천만원 → 연 5천만원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2024~2033년)]

(단위: 조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적자 증가분
현행유지	1.8	0.9	△0.5	△4.0	△6.3	△8.4	△12.4	△16.9	△19.8	△28.3	-
①의료개혁	1.8	△3.1	△6.2	△9.7	△9.7	△10.7	△14.8	△19.2	△22.1	△30.7	(30.5)
②비상진료 대책	1.8	0.5	△1.8	△4.0	△6.3	△8.4	△12.4	△16.9	△19.8	△28.3	(1.7)
③: ①&②	1.8	△3.5	△7.5	△9.7	△9.7	△10.7	△14.8	△19.2	△22.1	△30.7	(32.2)

주) 음영은 누적준비금 소진시점을 나타냄

자료:「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4.12.

보건복지부 역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를 통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그 적자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28년에는 1조 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수입	988,955	1,045,611	1,115,354	1,183,196	1,252,201
총 지출	962,553	1,040,978	1,118,426	1,191,091	1,268,037
당기수지	26,402	4,633	△3,072	△7,895	△15,836
준비금	306,379	311,012	307,940	300,045	284,209
(지급가능월수)	(3.8개월)	(3.6개월)	(3.3개월)	(3.0개월)	(2.7개월)

주) (보험료율) '24년 7.09%, '25년부터 +1.49%('23년 인상률) 적용
(정부지원) '24년 12.2조원, '25년부터 보험료 수입 대비 14.4%('23년 지원율) 적용
(수가 인상률) '24년부터 +1.98%('23년 인상률) 적용

자료:「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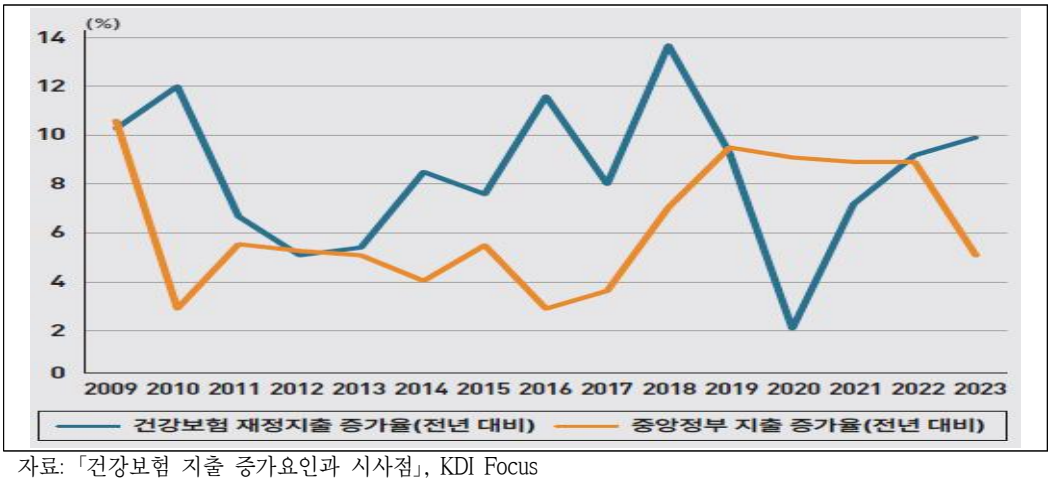
나. 검토사항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국고지원 확대 여력과 보험료 인상 여건 모두 점차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지출이 적절한 외부통제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자의적·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한 국가재정 편입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경상의료비의 경우 2009년 GDP 대비 5.9% 수준에서 2022년 8.8%, 2023년 8.5%로 증가 추세에 있음.[12)]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데, 특히 건강보험의 급여 의료비 지출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 기간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13)]

[건강보험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추이]



자료: 「건강보험 지출 증가요인과 시사점」, KDI Focus

12) OECD 평균: 9.1%

13)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지출을 기준으로 수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또는 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 확충 방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중기('25~'29)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데, 수입 확충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인상 추진 및 정부지원금 확보 등을 주요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화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3.)

그러나 저성장 국면의 지속과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해 국고지원 확대 여력과 보험료 인상 여건 모두 점차 제약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수입 확충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65세 이상(천명)	11,125	11,597	12,125	12,521	12,980
비율(%)	21.6	22.5	23.6	24.4	25.3

자료:「장애인구추계」, 통계청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이 2030~2031년에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부과소득 자연증가율인 2~3% 수준에 머무르는 등 보건의료 수입 증가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14)]

[2017년 이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강보험료율(%)	6.12	6.24	6.46	6.67	6.86	6.99	7.09	7.09	7.09
인상률(%)	-	2.04	3.49	3.20	2.89	1.89	1.49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대부분(97.8%)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급여비는 통상 급여의 범위·수가 책정 및 의료수요 등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데,[15)16)] 지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수반하게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됨.

예를 들면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당기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바 있고, 2024년에는 필수·지방의료 강화, 비상진료체계 지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8.5% 감소한 1.7조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14)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1.

15)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총지출은 97조 3,626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급여비는 95조 2,529억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대부분(97.8%)을 차지하고 있는데(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금 1조 4,844억 제외 금액), 이는 2016년 51조 541억원에서 86.5%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6)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를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함.

특히 현재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의료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고, 의료인력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있어 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재정 투자 방향]

ㅇ (공급부족: 5조원+α) 난이도, 업무강도 등으로 의료공급 부족 분야
- (중증응급)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가산 확대 * 평일 주간 50→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00→150% 등
- (자원소모 기반 보상강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검체·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 처치 지원 강화
- (고난도·고위험) 의료진의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항목 수가 집중 인상
▸(외과계 고난도)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이식외과 등 고난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당직 시술체계 상시 운영 분야
- (사후보상)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단위 일괄 사후보상 도입
ㅇ (수요부족: 3조원+α) 의료수요 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분야
- (분만)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도입, 고위험 분만 정책가산 30→ 200% 확대
- (소아입원, 진료) 소아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입원보상 강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 시 정책가산 신설
- (소아수술) 소아외과계열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 대폭인상(1,5k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1세미만 200%→400% 등)
ㅇ (연계협력: 2조원+α)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분야
- (심뇌혈관) 심뇌혈관질환의 신속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24.1분기~) 추진
- (응급의료) 응급환자 최종치료 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시범사업 추진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대부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임의적·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화를 통한 국가 재정내 편입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 거버넌스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등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기금화 등 국가재정 편입의 필요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수입 측면에서 기금화를 통한 관리 필요성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그 재원이 준조세의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없이 그 일부인 국고지원 예산만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17]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규모를 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지역가입자)은 구체적인 기준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규정되고 있음.[18]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단기보험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공급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것은 일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보임.

그러나 준조세 성격의 납부액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인 보험료율의 결정이 건정심과 시행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이 의무가입을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 국민이 부담주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료율 등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이고,

보험료율 결정에 국회 등이 참여하는 경우 수입 뿐만 아니라 보장성 확대 등을 포함한 보험 급여비 지출 계획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19]

---

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8)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정부가 매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총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최근 인구 고령화 및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지원율과 지원규모가 증가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기준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 정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중 정부지원금 현황]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부지원금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109,702	121,658
(정부지원율)	(15.0)	(13.6)	(13.2)	(13.2)	(14.8)	(13.8)	(13.7)	(13.5)	(14.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지원금은 의무지출 성격으로 볼 수 있음에도 재정여력 등에 따라 재정당국의 판단을 통해 매년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데,[20] 이는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특히 정부지원금은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는 비용은 조세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9)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이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법률로 결정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20)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국가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례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지출 측면에서 기금화를 통한 관리 필요성

현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주요 의사 결정이 외부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무적 납부에 기반한 공적 재원이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재정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과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그에 맞는 예산 편성 그리고 적정한 집행이 필요함.

그러나 부처·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다른 국가 예산과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 지출(수가 등)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 등 사실상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만 검토되어 지출되는 현행 체계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있어 민주성 및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더욱이 현행 구조에서는 재난이나 의료공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국가 일반재정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적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원리상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① 수가 등 결정 체계의 객관성·투명성·책임성 확보 필요

수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핵심 보상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수가 결정을 위한 재정추계 등 핵심 자료의 비공개로 인해 수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의 객관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임.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기준인 동시에 의료기관 수익의 핵심요소로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그리고 종별 가산율의 세 가지 요소를 곱해 산정됨.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체계]

구분	내 용
요양급여비용=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점) × 환산지수(1점당 원) × 종별 가산	
상대가치 점수	각 의료행위의 의사 업무량, 자원 투입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한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화' 한 것(5~7년 단위로 조정)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점수당 단가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간 계약을 통해 결정(1년 단위로 조정)
종별 가산	종합병원 등이 중증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강화 측면에서 기관 단위 차등 가산 적용 (수술·검사 등) * 종별가산율 :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

자료: 보건복지부

이 중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행위별 소요자원과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약 5~7년 주기로 조정되는 반면, 환산지수는 매년 조정됨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가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

환산지수 결정 절차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간 매년 5월 말까지 협상 및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하게 됨.[21)]

21)「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2. ~ 7. (이하 생략)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수가 결정 구조는 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 간 자율적 협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보험 당사자 자치원리를 존중할 수 있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보임.

i) 우선 수가 협상 및 건정심 심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 추계 및 재정전망 자료의 비공개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지출 전망 및 보험료 수입 전망 등은 수가 결정에 중대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가입자단체·시민사회·국회 등의 수가에 대한 적정성·객관성 등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가 결정의 합리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2년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에서 수가 결정과정에서의 재정추계 불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동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재정추계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경우 수가협상 및 건정심 심의 시 재정건전성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수가 결정 등에 활용되는 재정전망 자료의 산출 근거 및 추계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ii) 다음으로 현행과 같은 폐쇄적인 수가 결정체계는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가 결정을 위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및 수가 결정구조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 등의 공급 부족 및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22]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익성 악화, 의료인력 기피, 지역 내 의료공급 격차 등 문제를 고착화 시킬 수 있음.[23]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2)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저수가(低酬價), 의료분쟁에 따른 위험, 잔존 의료인력의 고강도 노동, 병원의 수익구조 문제 등 '고위험-저보상-고강도-저비전'이라는 왜곡된 의료생태계 구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024.2.).

23)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수가계약에서는 현행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모든 행위의 획일적 인상구조를 탈피, 환산지수 인상재정 일부를 저평가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점수 집중인상에 활용토록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였다는 설명임.

최근 진료과목별 원가보전율 자료를 살펴보면,[24] 8대 필수진료 과목 중 산부인과·내과·소아청소년과 등 대부분 진료과목의 원가보전율(수익/비용)이 각 진료과목별 원가보전율의 단순 평균 수치인 9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수가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25][26]

[8대 필수진료 과목 급여진료의 비용 대비 수입(원가보전율)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수익	비용	원가보전율
내과	125,687	174,937	72
소아청소년과	80,157	101,795	79
신경과	83,312	88,885	94
산부인과	75,058	122,869	61
신경외과	167,044	199,508	84
외과	202,313	241,073	84
심장혈관흉부외과	71,936	71,860	100
응급의학과	118,739	115,310	103

주 1) 본 수치는 계산방법론 등에 대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논의 전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임의 계산방법이기 때문에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종합병원 기준, 병·의원급 제외)
2) 3차 상대가치 개편('24.1) 이전 자료이므로 개편에 따른 저보상 행위의 추가보상 보정 및 현재 수가코드가 적용되지 않았음
3)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심의 회계자료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물론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단순히 수가만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진료과목별 수가 보전의 불균형은 필수의료인력의 유입과 지속성 확보에 있어 실질적 저해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27]

특히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하고, 건정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가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특정 진료과목 및 지역에서 의료공급 위축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2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익은 수가별·환자별 수익 등을,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됨.

25) 필수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26) 중앙일보, "진료과목별 원가 보전율 최대 4배차…필수의료 수가 개선해야", 2024.8.11.

27) 정부 역시 필수의료의 붕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저수가(低酬價)를 지목하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의료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투자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원 이상 규모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수가체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는 곧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필수의료 인력의 확보와 유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건강보험의 핵심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결국 수가 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는 단순한 가격 책정의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인력 유인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 전반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보임.[28)]

②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법적 근거 미흡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매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됨에도 지급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성 재정지출이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중심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도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의료질평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 제도는 2014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으며,[29)] 2015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30)] 2024년의 경우 총 7,809억원이 집행되었음.

[최근 5년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액]

(단위: 억원, 기관, %)

연도	총지급액(A)	종별 구분	기관수	지급액(B)	비율(B/A)	기관당 평균지급액
2020년[1)]	9,704	상급종합병원	42	7,070	72.9	168
		종합병원	287	2,635	27.1	9
2021년	8,036	상급종합병원	42	5,767	71.8	137
		종합병원	297	2,269	28.2	8

28) 정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재정 운영 ·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재정지표 공개 확대 및 국회보고 절차 강화,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29)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

30) 2018년 선택진료 제도의 완전 폐지 이후, 동 제도는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성 보상체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동 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 수가 형태로 지급되고 있음.

(단위: 억원, 기관, %)

연도	총지급액(A)	종별 구분	기관수	지급액(B)	비율(B/A)	기관당 평균지급액
2022년	8,245	상급종합병원	45	6,204	75.2	138
		종합병원	301	2,041	24.8	7
2023년	8,852	상급종합병원	45	6,456	72.9	143
		종합병원	314	2,397	27.1	8
2024년	7,809	상급종합병원	45	5,349	68.5	119
		종합병원	318	2,461	31.5	8

주 1) 2020년: 2019년 9월 ~ 2020년 12월 진료분(16개월)
2) (2024년) 2025년 2월 심사결정분까지 산출된 금액으로, 최종 금액은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
(그 외) 마지막 지급월 기준 4개월 후 심결까지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동 지원금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임.

i)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동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질 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며,[31]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산정 기준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음.[32]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목적이 가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급여 제공이라는 점, 동 제도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성 재정지출이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중심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ii) 다음으로 동 제도는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보건복지부

31)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이는 기술 발전 및 보건의료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설명됨.

는 매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진료실적에 대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5단계 등급별 수가 가산 방식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에 추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33)]

[2024년 평가 결과에 따른 202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단위 : 원)

등급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상급	종합	상급	종합				
1등급	가	27,850	13,940	8,390	4,400	2,050	680	1,770	580
	나	22,850	11,650	6,970	3,660				
2등급		21,500	10,960	6,600	3,460	960	310	1,010	330
3등급		14,130	7,620	4,590	2,400	220	70	250	80
4등급		1,640		540					
5등급		470		160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전체 지원금의 약 68.5%가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 편중 현상은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및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최근 3년간 각 분야별 의료질 평가 결과]

(단위: 기관, %)

구분	평가등급		2024년			2023년			2022년		
			전체	상급종합	종합	전체	상급종합	종합	전체	상급종합	종합
의료질 통합 분야	계		367(100)	47(100)	320(100)	364(100)	45(100)	319(100)	359(100)	45(100)	314(100)
	1등급	가	8 (2.2)	8(17.0)	-	8 (2.2)	8(17.8)	-	8 (2.2)	8(17.8)	-
		나	29 (7.9)	26(55.3)	3 (0.9)	29 (7.9)	24(53.3)	5 (1.6)	28 (7.8)	23(51.1)	5 (1.6)
	2등급		38(10.4)	12(25.6)	26 (8.1)	36 (9.9)	11(24.4)	25 (7.8)	36(10.0)	13(28.9)	23 (7.3)
	3등급		40(10.9)	1(2.1)	39(12.2)	41(11.3)	2(4.5)	39(12.2)	40(11.1)	1(2.2)	39(12.4)
	4등급		69(18.8)	-	69(21.6)	68(18.7)	-	68(21.3)	69(19.2)	-	69(22.0)
	5등급		181(49.3)	-	181(56.6)	179(49.2)	-	179(56.2)	178(49.6)	-	178(56.7)
	등급제외		2 (0.5)	-	2 (0.6)	3 (0.8)	-	3 (0.9)	-	-	-

33) 평가방식은 3개 분야(①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②교육수련, ③연구개발)의 기관별 종합점수를 종별 구분없이 상대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함.

(단위: 기관, %)

구분	평가 등급	2024년			2023년			2022년		
		전체	상급종합	종합	전체	상급종합	종합	전체	상급종합	종합
교육수련 분야	계	367(100)	47(100)	320(100)	364(100)	45(100)	319(100)	359(100)	45(100)	314(100)
	1등급	39(10.6)	34(72.3)	5 (1.6)	39(10.7)	29(64.4)	10 (3.1)	38(10.6)	32(71.1)	6 (1.9)
	2등급	58(15.8)	13(27.7)	45(14.1)	58(15.9)	16(35.6)	42(13.2)	57(15.9)	13(28.9)	44(14.0)
	3등급	97(26.4)	-	97(30.3)	96(26.4)	-	96(30.1)	95(26.5)	-	95(30.3)
	등급제외	173(47.1)	-	173(54.1)	171(47.0)	-	171(53.6)	169(47.1)	-	169(53.8)
연구개발 분야	계	367(100)	47(100)	320(100)	364(100)	45(100)	319(100)	359(100)	45(100)	314(100)
	1등급	35 (9.5)	24(51.1)	11 (3.4)	35 (9.6)	23(51.1)	12 (3.8)	34 (9.5)	24(53.3)	10 (3.2)
	2등급	52(14.2)	23(48.9)	29 (9.1)	51(14.0)	22(48.9)	29 (9.1)	50(13.9)	19(42.2)	31 (9.9)
	3등급	86(23.4)	-	86(26.9)	86(23.6)	-	86(27.0)	84(23.4)	2(4.4)	82(26.1)
	등급제외	194(52.9)	-	194(60.6)	192(52.7)	-	192(60.2)	191(53.2)	-	191(60.8)

자료: 보건복지부

이 같은 지원금 편중 현상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지표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의 평가지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구조와 자원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평가 과정에서 이들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2025년 기준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평가점수]

구분	계	① 의료질 통합				② 교육수련	③ 연구개발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등		
평가지표(개)	54	12	9	10	9	10	4
가중치 계(%)	99	35	19	20	11	8	6
종합점수(점)	99	85				8	6
등급구분	-	1~5등급				1~3등급	1~3등급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평가 및 평가 결과 따른 수가 가산 방식은 결과적으로 대형 의료기관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평가지표의 합리적 조정과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34]

34)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를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분리평가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지원금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임.

③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공공정책 및 복지정책의 추진 부적정

첫째, 현행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통제와 적정성 검토 절차가 미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는 등 재원의 성격과 정책 목적의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책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심의·평가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의 시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5)]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보건복지부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 기획·집행 및 평가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 훈령에서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에 신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시범사업 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36)]

[2021~2024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58,400[1)]
2022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49,873[2)]
2021~202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492
2021~2024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71
2021~2024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454
2021~2024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208

35)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제2조(설치) 제1조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신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위: 백만원)

연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1~2024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1,425
2021~2024	암환자(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873
2022~2024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38
2021~2024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69,023
2021~2024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4,155
2021~2024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21,221
2021~2024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010
2021~2024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7,490
2021~2024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989
2022~2024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707
2023~2024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1,672
2024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751
2024~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625,123
2021~2024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20,095
2021~2024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805
2024~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24,558
2021~2024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1,236,428
2021~2024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43,975
2023~2024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56,416
2021~20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26,948
2023~2024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1
2024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27,678
202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6,240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8,809
202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1,252
2022		1,371
2023		1,495
2024		1,632
20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997
2022		2,656
2023		5,971
2024		6,088
20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41
2022		99
2023		258
2024		365
20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3,372
2022		3,755
2023		4,060
2024		4,465
2022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2.1
2023		4.0
2024		25.8

(단위: 백만원)

연도	시범사업명	집행액
20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1,540
2024		27,876
202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537
2024	건강실천생활지원금제 시범사업	263
2021~2024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655

주 1) 통합병동 입원료와 일반병동 입원 시 입원료의 차이값 중 급여 지급 액수('24년 기준('25.6.24.현재))
2) 평가대상기간 기준 지원금 지급액(지급 예상급액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일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i) 우선 일부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단순한 의료정책 실험을 넘어 복지정책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성격과 재원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건강실천생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참여자에게 연간 최대 6~8만원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는 병원 진료비 외에도 약국, 복지몰 등에서 생필품·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이를 고려하면, 동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 복지정책의 시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본래 목적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ii)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시범사업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반복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국가재정법」상 일정 규모 이상 신규사업에 요구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나 적정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구조임.[37]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2024.12.)을 통해 신규 시범사업 도입시 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중간 보고 및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였다는 설명임.

37)「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안 주요 내용]

① 신규사업 도입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② 평가체계 고도화 - 중간 보고 및 성과평가 기준 마련 ③ 본인부담률 원칙 신규 수립 ④ 시범사업 위원회 개선(위원 6인→9인, 운영위원회 표준안 마련) ⑤ 시범사업 성과(비용·질) 모니터링 - 재정지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 검토와 자체 평가만으로는 시범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특히 실질적으로 제도화 이전 단계의 정책 실험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 책임성과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i) 더불어 시범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외부의 실질적 심의나 통제가 미흡하여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국가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건강보험정책의 경우에도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건정심(소위원회 포함)에 보고하는 절차 외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별도의 통제 절차가 부재한 상황임.[38]

종합하면, 현재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구조는 재정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존재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영향 평가 및 외부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8) 동 훈령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 절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둘째,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비상진료대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3조 2,904억원을 투입하였는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 점과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정책 갈등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재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는데,[39]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의사 총파업 및 전공의 사직 등 심각한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단위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중임.

[의료개혁 및 의대증원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 4대 우선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추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의대 증원[40]	- 「의사인력 확대 방안」(2024.2.6.)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 계획

자료:「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4.12.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1조 4,844억원)을 제외하고도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조 8,0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였는데,[41][42] 2025년 6월말 현재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지속중이며, 의료기관의 미청구로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39) 2024년 2월 6일, 정부는「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려는 것이었음.

40)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을 확대한 4,567명으로 확정되었으나, 이후 최종 1,507명이 증원됨.

41)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체계(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유지, 비상진료 지원(수가인상) 등을 위해 2024년 예비비 2,003억 9,800만원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월 2,08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당초 비상진료 상황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지원이 의결되었으나, 추석연휴 대비 대책(285억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기간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면서 월 지원금을 2,085억원으로 수정의결('24.9.26.)한데 따른 것임.

42) 수련병원이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3개월간(6~8월) 기관별 전년동월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4월부터 청구급여비에서 균등 상계 처리 예정

[지원항목별 비상진료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2024년 2월~12월	2025년 1월~6월	기타
합계	18,060	8,816	2,993	6,251
1. 응급진료체계 유지지원[1)]	3,600	2,411	1,188	0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3,097	1,970	1,127	-
-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356	297	59	-
-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137	136	-	-
-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10	7	3	-
2. 경증환자 회송지원	386	289	97	0
- 회송료 한시 인상	386	289	97	-
3.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8,884	1,938	693	6,251
-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2,094	1,501	593	-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주)]	6,251	-	-	6,251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540	438	100	-
4. 일반 입원진료 지원	5,189	4,176	1,012	0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5,046	4,075	972	-
-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143	102	41	-

주) 추석연휴 비상진료 지원금 포함, 사후 보상 접수 건 일괄지급: 해당일자(①7.31., ②12.24., ③12.27.) 지급분 합산 6,251억

자료: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유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 응급·중증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급여 항목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의 단기적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43)]

그러나 비상진료체계는 재난, 감염병 유행 등과 같은 공공성과 긴급성이 매우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고,[44)] 특히 이번 의료공백 위기는 정부정책의 결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하면, 국가 추진 정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적절성(사회적 합의 여부 등) 및 적정 지원 규모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 건정심의 심의·의결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재정운용

4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진료 지원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치였다는 설명임.

44)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로 지원하기 어려운 당직수당,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예비비를 투입하였음.

의 민주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외부의 재정통제 절차 없이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향후 정부가 다양한 정책 갈등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재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고착화 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에 대한 급여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상급종합병원 수가 권역별 병상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환자 비중은 소폭 상승에 그쳐 정책 목표 달성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상급종합병원이란「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중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료기관으로,[45] 보건복지부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역별로 고시된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한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46]

---

45)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기~5기 상급병원 지정 현황]

구분	1기 ('12~'14)	2기 ('15~'17)	3기 ('18~'20)	4기 ('21~'23)	5기 ('24~'26)
지정 상급병원 수	44개소	43개소	42개소	45개소	47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권역별 '소요병상 수' 외 전체 지정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상한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역별 수요 산정에 따라 '소요병상 수'가 확대되면서 지정 병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음.[47]

[권역별 소요병상수 변동 현황]

(단위: 개소)

1기		2기		3기		4기		5기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수도권	14,202	서울	13,446	서울	13,380	서울	13,350	서울	14,182
경기 서부	4,498	경기 서북부	4,909	경기 서북부	5,114	경기 서북부	5,365	경기 서북부	5,785
경기 남부	2,654	경기 남부	4,306	경기 남부	4,523	경기 남부	5,444	경기 남부	6,085
강원	1,651	강원	1,732	강원	1,766	강원	1,496	강원	1,530
충북	1,369	충북	1,515	충북	1,589	충북	1,319	충북	1,362
충남	3,430	충남	3,500	충남	3,658	충남	3,593	충남	3,809
전북	1,961	전북	1,923	전북	2,026	전북	2,064	전북	2,157
전남	4,068	전남	4,204	전남	4,162	전남	4,097	전남	4,194
경북	4,735	경북	4,860	경북	5,022	경북	4,919	경북	5,103

46) 보건복지부장관은 11개의 권역별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진료·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47) 보건복지부령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권역별로 고시된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위: 개소)

1기		2기		3기		4기		5기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진료 권역	소요 병상수
경남	7,521	경남	7,597	경남	7,648	경남 동부	6,160	경남 동부	6,423
						경남 서부	2,296	경남 서부	2,368
전국	43,174	전국	44,637	전국	45,458	전국	46,414	전국	48,574

자료: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고시) 발췌

상급종합병원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종합병원 대비 5%p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의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48)49)]

요양급여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2012년 16.3%에서 2023년 1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비 총액 역시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나, 정작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적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임.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급여비		
			상급종합(A)	요양기관 전체(B)	상종 비중(A/B)
1기	44개	2012년	5,836,190	35,714,596	16.3%
	43개	2013년	6,416,833	38,124,824	16.8%
		2014년	6,734,452	40,792,084	16.5%
2기	43개	2015년	7,541,155	43,972,242	17.1%
		2016년	8,642,229	48,731,225	17.7%
		2017년	9,647,175	52,975,309	18.2%
3기	42개	2018년	10,731,328	58,748,995	18.3%
		2019년	11,937,249	64,888,129	18.4%
		2020년	12,329,608	65,291,607	18.9%

48)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급 5%, 의원급 0%(2025년 기준)

49)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사업을 통해 3년간 3.3조원을 지원(①기능강화 지원(연 2조 3,000억원) ②성과평가 지원(연 1조))하고 있고, 의료질평가를 통해 2024년기준 5,349억원(45개 상급종합병원 기관 당 평균 119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급여비		
			상급종합(A)	요양기관 전체(B)	상종 비중(A/B)
4기	45개	2021년	14,180,884	71,556,874	19.8%
		2022년	15,001,675	79,509,908	18.9%
		2023년	15,850,344	83,092,485	19.1%

주 1) 2013년 1월 춘천성심병원 지정 반납
2) 의료기관 및 약국 포함하여 급여비 산출
3) 동 자료는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참조한 것으로 2024년 통계연보는 2025년 4분기 경 산출 예정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진료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중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51.6%에서 2023년 52.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가 정책적 효과성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임.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중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기관수	입원 환자 수(비중)			
		전체[1]	전문[2]	일반	단순
2020	42	1,905,099	983,335	787,582	126,013
		(100.00)	(51.62)	(41.34)	(6.61)
2021	45	2,040,788	1,052,491	847,112	133,016
		(100.00)	(51.57)	(41.51)	(6.52)
2022	45	2,071,462	1,078,971	859,570	125,507
		(100.00)	(52.09)	(41.50)	(6.06)
2023	45	2,194,379	1,150,688	901,312	134,135
		(100.00)	(52.44)	(41.07)	(6.11)

주 1) 전체 환자 수: 전문 + 일반 + 단순 + 기타(장기이식환자 등) 분류 환자 수의 합
2) 중증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유사지표인 상급종합병원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로 대체
3) 비중 산출: (질병군별 환자 수 / 전체 환자 수) × 100
4)「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의한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의 수를 단순히 병상 수 증가에 연동하기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수준에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50]

50)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 이용량의 변화에 따라 적정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으며, 중증·고난도 진료라는 상급종합병원 기능에 부합한 의료 이용유도를 위해 진료권, 소요 병상 산정 방식 개편 등 검토 중으로「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다음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개편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3) 통합재정 확립을 위한 기금화 필요성

첫째,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보건복지부(건정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 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지 않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는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에 포함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 계상하여 예산으로 편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51] 이는 국가 전체 재정을 통합적·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만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운용 및 예·결산과 관련한 의사결정 역시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 등 외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52][53]

[4대 보험제도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구분	도입연도	근거 법률	집행 기관	국회 재정통제권
국민건강보험	1977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없음
국민연금	1988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심의
고용보험	1995	고용보험법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심의
산재보험	19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심의

자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1.

51)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2) 국가재정 내에 포함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만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5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게 되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 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 또한 보건복지부에 부여되어 있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건정심의 심의·의결,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 및 예·결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

구분		의사결정 주체 및 결정사항
수입	보험료율	- 건정심 의결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정부지원금	- 국가재정에서 지원(국회 심사·승인) * 다만,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연동
지출	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건정심 심의 후 국회 상임위 보고
	개별 의사결정	- 건정심: 요양급여 기준, 상대가치점수 등 심의·의결
건정심 구성		- 보건복지부: 건정심 위원 임명·위촉
예산·결산		-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예·결산 승인

이와 같은 체계는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게 되어 보건복지부의 임의적·자의적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지출 구조 관리 및 재정계획 수립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등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통합재정의 원칙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면서도, 현재 국고지원 예·결산 심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시행계획 국회 제출,[54]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등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임.

또한 현재 건정심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는 보험의 직접당사자인 가입자·공급자가 수입·지출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당사자 중심의 운영방식으로써, 의학적 전문성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기반으로 타 사회보험과 달리 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감염병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국민 생명·건강 보장에 필요한 의료·방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복수의 기관이 감시와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재난 등에 대한 대응 역시 건강보험 재정보다는 예비비 등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1차적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급여체계와 보장성 확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의 경우 재정당국과 국회의 심의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정심의 심의를 통한 대표성 확보와 이해당사자간 계약의 자율성 역시 자율적 의사결정 후 국회의 심

54)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전망 및 재정운영방향, 보장성 확대 계획,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사항 포함 제출

사・의결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유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둘째,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 과소 추계 등 우리나라의 총지출 규모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함으로써 통합재정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 수지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책적 책임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임.[55]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정부지원금 등 일부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실제로는 보건복지 분야 재정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전체 복지 지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56]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은 약 37% 수준이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정부 총지출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그 비중이 46.5%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음.[57]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60.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예산이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국가재정의 총지출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58][59]

---

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재정당국)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재정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출상한 설정 및 준수기제 등 거시적 차원의 재정관리 매커니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Brief, 2023.12.19., No.154)

56)「국가재정법」제7조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각 기금별 재정수지 등에 대한 전망과 관리계획, 기금 부채 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57)「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Ⅱ」, 국회예산정책처, 2023.10.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하는 경우의 국가재정 변화(2017~2021년)]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지출	건강보험 미포함	400.5	428.8	469.6	512.3	558.0
	건강보험 포함	449.6	483.7	531.2	578.9	626.3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감사원, 2022.7.) 발췌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보험 중 연간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사회의 재정위험요인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오히려 국가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임의적·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에 편입되는 경우 기금이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는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고,[60]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평가 및 국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다 엄밀한 재정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 내로 운용될 필요성은 높다 할 것임.

58)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2022.7.

59) OECD SOCX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337.4조원) 대비 보건분야 지출(113조원)은 33.5%로 나타난 반면,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분야 총지출(199.9조원) 대비 보건분야(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14조 219억원)의 비율은 7.0%에 불과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 1,536억원 편성」(2020.9.1.)).

6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사회보험은 국가재정 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R&D)

가. 개 요

2024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26조 5,369억원은 정부총지출(656조 6,182억원)의 4.0%에 해당함. 2019년 이후 국가 R&D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 추이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조 5,409억원이 감소하였음.[1)]

[정부 총지출 대비 R&D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정부총지출	4,754,021	5,547,188	6,048,989	6,795,024	6,387,277	6,566,182	7.2
R&D 분야	208,532	242,558	275,072	295,138	310,778	265,369	5.0
비율	4.4	4.4	4.5	4.3	4.9	4.0	-

주) 추경이 편성된 해의 경우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 R&D 사업 결산 결과 예산현액 26조 5,862억원 중 26조 3,825억원이 집행(집행률 99.2%)되었음.

[2024년도 국가 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2023		2024			집행률 (C/B)	증감	
예산	결산(A)	본예산	예산현액(B)	집행액(C)		C-A	(C-A)/A
310,778	309,336	265,369	265,862	263,825	99.2	△45,511	△14.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다만 각 부처의 정책연구개발사업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등이 기존 R&D 사업에서 비 R&D 사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감소한 예산 1.8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감소 규모는 2.7조원 정도임.

(1) 집행 현황

(가) 부처별 집행 현황

2024년 국가 R&D 사업이 편성된 총 32개의 부·처·청·위원회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 규모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8조 2,725억 1,8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4조 8,094억 3,100만원), 방위사업청(4조 6,260억 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 정부 R&D 사업 부처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5년 예산
과기부	일반회계	6,388,232	6,388,232	6,379,513	99.9	7,391,010
	균특회계	280,309	280,309	265,726	94.8	454,198
	에특회계	387,195	387,195	380,712	98.3	420,694
	소특회계	337,142	337,142	332,800	98.7	415,764
	고특회계	47,890	47,890	47,890	100.0	109,206
	우특회계	435	435	435	100.0	435
	과진기금	56,345	56,345	56,345	100.0	54,944
	원자력기금	171,040	171,040	171,040	100.0	192,198
	방발기금	318,784	318,784	318,624	99.9	315,320
	정진기금	319,433	319,433	319,433	100.0	290,070
	소계	8,306,805	8,306,805	8,272,518	99.6	9,643,839
산업부	일반회계	1,985,957	1,985,957	1,985,957	100.0	2,417,446
	소특회계	1,727,645	1,727,645	1,727,645	100.0	1,815,779
	에특회계	358,928	358,928	358,928	100.0	303,551
	균특회계	148,082	148,082	148,082	100.0	140,271
	전력기금	537,752	537,752	537,752	100.0	543,858
	방폐기금	34,567	34,567	34,567	100.0	40,031
	산촉기금	16,500	16,500	16,500	100.0	15,490
	소계	4,809,431	4,809,431	4,809,431	100.0	5,276,426
방사청	일반회계	4,636,969	4,645,514	4,626,089	99.6	4,889,359
	소계	4,636,969	4,645,514	4,626,089	99.6	4,889,359
교육부	일반회계	60	60	60	100.0	-
	고특회계	1,286,855	1,286,855	1,266,726	98.4	1,373,718
	소계	1,286,915	1,286,915	1,266,786	98.4	1,373,718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5년 예산
중기부	일반회계	1,204,316	1,204,316	1,204,316	100.0	1,354,215
	소특회계	69,077	69,077	69,077	100.0	35,711
	균특회계	118,628	118,628	118,628	100.0	137,025
	소진기금	1,199	1,199	1,199	100.0	-
	소계	1,393,220	1,393,220	1,393,220	100.0	1,526,951
농진청	일반회계	716,265	717,789	692,546	96.5	705,852
	농특회계	1,500	1,500	1,500	100.0	600
	균특회계	8,248	8,248	8,248	100.0	8,248
	소계	726,013	727,537	702,294	96.5	714,700
해수부	일반회계	598,112	604,393	595,677	98.6	576,690
	교특회계	95,819	95,819	95,819	100.0	89,531
	농특회계	36,541	36,546	36,370	99.5	35,591
	균특회계	227	227	227	100.0	200
	소계	730,699	736,985	728,093	98.8	702,012
복지부	일반회계	824,957	824,957	802,562	97.3	877,834
	책특회계	11,186	11,396	10,747	94.3	11,223
	건강기금	6,667	6,667	6,667	100.0	7,410
	소계	842,810	843,020	819,976	97.3	896,467
우주청	일반회계	674,681	689,681	680,115	98.6	908,506
	소계	674,681	689,681	680,115	98.6	908,506
국토부	일반회계	250,813	250,981	250,953	99.9	302,200
	교특회계	176,587	176,587	171,830	97.3	180,675
	균특회계	5,000	5,000	5,000	100.0	5,000
	소계	432,400	432,568	427,783	98.9	487,875
국조실	일반회계	524,561	524,561	505,063	96.3	533,018
	에특회계	11,631	11,631	10,956	94.2	12,374
	소계	536,192	536,192	505,063	96.2	545,392
환경부	일반회계	9,500	9,500	9,500	100.0	16,720
	환특회계	288,960	290,790	286,775	98.6	280,865
	소계	298,460	300,290	296,275	98.7	297,585
농림부	일반회계	48,290	55,814	53,549	95.9	49,976
	농특회계	167,632	167,632	167,632	100	176,693
	소계	215,922	223,446	221,181	99.0	226,669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5년 예산
산림청	일반회계	120,986	126,450	125,372	99.1	123,122
	농특회계	4,749	4,749	4,749	100.0	4,353
	소계	125,735	131,199	130,121	99.2	127,475
식약처	일반회계	145,229	145,229	141,732	97.6	161,950
	소계	145,229	145,229	141,732	97.6	161,950
기상청	일반회계	101,736	102,022	99,229	97.3	144,803
	소계	101,736	102,022	99,229	97.3	144,803
원안위	일반회계	87,297	87,297	86,256	98.8	101,670
	소계	87,297	87,297	86,256	98.8	101,670
문체부	일반회계	95,951	95,951	95,878	100.0	104,224
	체육기금	2,940	2,940	2,940	100.0	800
	관광기금	1,160	1,160	1,160	100.0	1,160
	소계	100,051	100,051	99,978	100.0	106,184
행안부	일반회계	95,934	95,961	94,729	98.7	98,435
	균특회계	8,020	8,020	8,020	100.0	5,600
	소계	103,954	103,981	102,749	98.8	104,035
질병청	일반회계	219,619	222,236	214,396	96.5	198,817
	책특회계	157	157	150	100.0	152
	소계	219,776	222,393	214,546	96.5	198,969
국방부	일반회계	67,639	67,639	67,188	99.3	70,617
	소계	67,639	67,639	67,188	99.3	70,617
특허청	책특회계	62,193	61,859	61,694	99.7	64,769
	소계	62,193	61,859	61,694	99.7	64,769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28,852	28,852	27,804	96.4	32,489
	문보기금	35,315	35,315	34,005	96.3	29,951
	소계	64,167	64,167	61,809	96.3	62,440
경찰청	일반회계	56,691	56,691	56,691	100.0	57,979
	소계	56,691	56,691	56,691	100.0	57,979
해경청	일반회계	41,194	41,194	41,194	100.0	48,945
	소계	41,194	41,194	41,194	100.0	48,945
소방청	일반회계	22,182	22,182	22,100	99.6	30,531
	소계	22,182	22,182	22,100	99.6	30,531
관세청	일반회계	4,379	4,379	4,368	99.7	1,676
	소계	4,379	4,379	4,368	99.7	1,676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5년 예산
기재부	일반회계	892	892	739	82.9	970
	기후기금	430,641	430,641	430,580	99.9	639,237
	소계	431,533	431,533	431,319	99.9	640,207
법무부	일반회계	2,677	2,677	2,633	98.4	4,400
	소계	2,677	2,677	2,633	98.4	4,400
개보위	일반회계	7,111	7,111	7,111	100.0	7,188
	소계	7,111	7,111	7,111	100.0	7,188
조달청	조특회계	1,816	2,000	2,000	100.0	2,968
	소계	1,816	2,000	2,000	100.0	2,968
대통령 경호처	일반회계	1,000	1,000	1,000	100.0	3,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3,000
총계		26,536,877	26,586,208	26,382,542	99.2	29,429,305

주) 2024년 R&D 사업 기준으로 취합하여, 일부 2025년 신규 R&D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표의 2025년 예산 합계는 2025년 R&D 본예산(약 29.7조원)보다 낮게 집계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회계·기금별 집행 현황

2024년 국가 R&D 사업이 편성된 총 24개의 회계・기금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 규모로는 일반회계(18조 9,620억 8,200만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2조 1,338억 6,4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조 3,347억 4,5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 정부 R&D 사업 회계·기금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5년 예산
일반회계	18,962,082	19,009,518	18,874,320	99.3%	21,213,642
소특회계	2,133,864	2,133,864	2,129,522	99.8%	2,267,254
고특회계	1,334,745	1,334,745	1,314,616	98.5%	1,482,924
균특회계	568,514	568,514	553,931	97.4%	750,542
에특회계	757,754	757,754	750,596	99.1%	736,619
우특회계	435	435	435	100.0%	435
농특회계	210,422	210,427	210,251	99.9%	217,237
교특회계	272,406	272,406	267,649	98.3%	270,206
책특회계	73,536	73,412	72,591	98.9%	76,144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본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5년 예산
환특회계	288,960	290,790	286,775	98.6%	280,865
조특회계	1,816	2,000	2,000	100.0%	2,968
과진기금	56,345	56,345	56,345	100.0%	54,944
원자력기금	171,040	171,040	171,040	100.0%	192,198
방발기금	318,784	318,784	318,624	99.9%	315,320
정진기금	319,433	319,433	319,433	100.0%	290,070
전력기금	537,752	537,752	537,752	100.0%	543,858
방폐기금	34,567	34,567	34,567	100.0%	40,031
산촉기금	16,500	16,500	16,500	100.0%	15,490
소진기금	1,199	1,199	1,199	100.0%	0
건강기금	6,667	6,667	6,667	100.0%	7,410
체육기금	2,940	2,940	2,940	100.0%	800
관광기금	1,160	1,160	1,160	100.0%	1,160
문보기금	35,315	35,315	34,005	96.3%	29,951
기후기금	430,641	430,641	430,580	100.0%	639,237
총계	**26,536,877**	**26,586,208**	**26,382,542**	**99.2%**	**29,429,305**

주) 2024년 R&D 사업 기준으로 취합하여, 일부 2025년 신규 R&D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표의 2025년 예산 합계는 2025년 R&D 본예산(약 29.7조원)보다 낮게 집계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다) 연구 단계별 집행 현황

국가 R&D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응용 단계 집행액이 10.9%로 가장 높고, 연도별 집행 규모는 개발 단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단계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기초	50,714	53,068	58,024	57,714	3.3
응용	38,907	45,620	52,338	58,953	10.9
개발	78,754	94,566	97,032	100,389	6.3
소계	**168,375**	**193,253**	**207,394**	**217,056**	**6.6**
기타	70,429	72,537	79,388	88,675	5.9
총계	**238,803**	**265,791**	**286,782**	**305,731**	**6.4**

주 1) 기타는 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개발단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2) 2018년부터 출연연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출연연 '연구운영비지원' 사업을 운영경비(인건비+경상경비)와 주요사업비(직접비)로 분리함에 따라 기존 과제 내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 경상경비가 '기타'로 분류되어 이전 연구개발단계 비중과 단순 비교 불가
자료: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라) 과제 수행 기관별 집행 현황

국가 R&D 사업의 과제 수행 기관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집행 규모는 출연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대기업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기관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국공립연	11,323	12,313	13,024	14,404	6.2
출연연	90,289	96,058	103,737	110,861	5.3
대학	57,508	63,317	69,738	74,033	6.5
대기업	3,820	4,327	5,889	8,121	20.7
중견기업	18,212	16,166	18,716	18,545	0.5
중소기업	39,753	49,721	54,924	58,379	10.1
정부부처	1,914	2,634	626	755	△20.7
기타	15,986	21,254	20,128	20,635	6.6
합계	**238,803**	**265,791**	**286,782**	**305,731**	**6.4**

주 1) 출연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부처 직할 연구기관 등의 R&D 관련 출연연구기관을 포함
2) 국공립연구소는 국립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3)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자료: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 주요/일반 R&D 현황

R&D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및「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됨. 주요 R&D 사업은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R&D, ② 미래 성장동력 창출 R&D, ③ 기초과학 분야 R&D, ④ 연구시설・장비구축 사업, ⑤ 다부처 R&D 등으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됨.[2)]

주요 R&D에 속하는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일반 R&D 사업은 주요 R&D 사업이 아닌 R&D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안을 편성함.

2024년 주요 R&D 예산은 21조 9,079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82.6%이며 이는 전년 대비 12.2% 감액된 규모임. 일반 R&D 예산은 4조 6,289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17.4%로, 이는 전년 대비 21.7% 감액된 규모임.

[2021 ~ 2024년 주요 R&D 및 일반 R&D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B-A)	증감률
예산 (비중)	주요 R&D	224,894 (82.1)	242,363 (81.4)	249,392 (80.2)	219,079 (82.6)	△30,313	△12.2
	일반 R&D	49,112 (17.9)	55,407 (18.6)	61,386 (19.8)	46,289 (17.4)	△15,097	△24.6
	계	274,005	297,770	310,778	265,369	△45,409	△14.6

주 1) 본예산 기준
2) 2020년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경비가 일반 R&D에서 주요 R&D로 변경
3) 2022년도부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비목신설하여 기관・회계별로 통합편성 함에 따라 일반 R&D로 재원 이관됨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

2)「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2024년 국가 R&D 예산을 9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비중이 높은 분야는 기계소재(20.4%), 기초기반(14.3%), 생명의료(8.3%), 에너지원자력자원(7.2%)의 순으로 나타났음.

전년 대비 감소율은 공공해양환경(△28.6%), 바이오제조농림수산(△24.4%), 인공지능ICT(△21.3%), 기계소재(△1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생명의료(5.0%), 기초기반(2.8%)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3~2024년 기술분야별 주요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증감 (C=B-A)	증감률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공공해양환경	10,835	4.3	7,737	3.5	△3,098	△28.6
기계소재	54,530	21.9	44,773	20.4	△9,757	△17.9
기초기반	30,536	12.2	31,384	14.3	848	2.8
바이오제조농림수산	13,543	5.4	10,237	4.7	△3,306	△24.4
생명의료	17,342	7.0	18,212	8.3	870	5.0
양자반도체	9,018	3.6	8,918	4.1	△100	△1.1
에너지원자력자원	17,740	7.1	15,659	7.2	△2,081	△11.7
우주항공국토	11,879	4.8	10,329	4.7	△1,550	△13.0
인공지능ICT	15,316	6.1	12,052	5.5	△3,264	△21.3
기타	68,653	27.5	59,778	27.3	△8,875	△12.9
합계	249,392	100	219,079	100%	△30,313	△12.2

주 1) 본예산(주요R&D) 기준
2) 기타에는 고급인력양성, 정보시험서비스, 연구장비 구축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4) 신규사업 및 신규과제 현황

2024년 국가 R&D 신규사업은 26개 부·처·청의 205개 세부사업에 6,928억 9,700만원으로, 2023년에 비해 세부 사업수는 4개, 총액은 826억 8,600만원 감소하였음.

2020~2022년 코로나19 등에 대응하여 신규 R&D사업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23년 및 2024년에는 신규사업 대비 계속사업에 대한 R&D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음.

[신규 주요 R&D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소관부처	세부사업	총액	비고 (주요 R&D)
2018년	16	73	221,958	과기정통부 415억원, 산업부 396억원
2019년	18	187	772,061	산업부 2,345억원, 과기정통부 1,630억원
2020년	19	211	1,510,247	산업부 4,179억원, 과기정통부 3,724억원
2021년	22	253	1,689,624	과기정통부 4,138억원, 산업부 3,570억원
2022년	22	291	1,884,197	과기정통부 6,078억원, 산업부 3,313억원
2023년	23	209	775,583	과기정통부 2,407억원, 산업부 1,954억원
2024년	26	205	692,897	과기정통부 2,250억원, 산업부 1,128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단위로 살펴보면, 2024년 신규과제 수는 21,436건으로 전년 대비 4,614건(△17.7%) 감소하였음. 한편 신규과제의 연구비는 6조 8,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6억원(1.4%) 증가하였음.[3)]

[신규 R&D 과제 및 연구비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B-A)/A
과제 수	신규	34,458	30,900	30,577	26,050	21,436	△4,614	△17.7
	계속	39,043	43,845	45,475	45,754	39,131	△6,623	△14.5
연구비	신규	69,169	70,637	88,385	67,414	68,370	956	1.4
	계속	169,634	195,153	198,396	238,317	187,380	△50,937	△21.4

주) 2025년 10월 국과심 운영위 심의 시까지 일부 수치는 수정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단위는 크게 사업·과제로 나눌 수 있음. 과제는 실제 연구 수행의 단위이며, 사업은 목적이 유사한 과제들의 모임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2023년)[4)]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양적 성과를 살펴보면, 총 45,658건의 SCIE급 논문,[5)] 18,955건의 국내 특허 등록, 2,834건의 해외 특허 등록, 11,768건의 기술료, 31,598건의 사업화 성과가 창출되었음.

[2018~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

(단위: 건, %)

연도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2018년		41,143	19,200	2,151	9,029	26,171
2019년		41,919	20,210	2,347	8,858	28,800
2020년		44,563	21,330	2,612	9,974	32,910
2021년		48,381	21,566	1,990	8,482	25,403
2022년		47,101	18,126	1,938	7,876	32,068
2023년		45,658	18,955	2,834	11,768	31,598
증가율	전년대비	△3.1	4.6	46.2	49.4	△1.5
	연평균	2.1	△0.3	5.7	5.4	3.8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연구개발 소관부처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SCIE 논문은 기초연구 비중이 높은 과기정통부(54.9%), 교육부(26.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화 건수는 중기부(44.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처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부처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과기부	25,086	54.9	6,876	36.3	1,348	47.6	2,342	19.9	2,134	6.8
교육부	11,893	26.0	1,672	8.8	551	19.4	1,138	9.7	191	0.6
산업부	2,780	6.1	3,601	19.0	453	16.0	2,105	17.9	11,134	35.2
복지부	1,357	3.0	226	1.2	77	2.7	50	0.4	46	0.1
농진청	760	1.7	272	1.4	3	0.1	844	7.2	1,914	6.1
중기부	61	0.1	1,545	8.2	22	0.8	4,554	38.7	13,912	44.0
기타	3,721	8.2	4,763	25.1	380	13.4	735	6.2	2,267	7.2
합계	45,658	100.0	18,955	100.0	2,834	100.0	11,768	100.0	31,598	100.0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4)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확정은 2026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5)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란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 중 질적인 수준과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 저널을 의미함.

연구개발 단계별로 성과 창출 내역을 살펴보면, SCIE논문의 67.8%는 기초연구에서 창출되었고, 국내 특허 등록건수의 45.4%는 개발연구에서 창출되었으며, 해외 특허 등록건수는 3개 단계가 유사하게 나타났음. 기술료 건수의 69.4%와 사업화 건수의 84.1%는 개발연구에서 발생하였음.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단계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억원)

단계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2023 집행액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기초	28,771	67.8	5,278	30.3	903	36.8	1,390	12.7	858	3.1	57,714
응용	8,369	19.7	4,232	24.3	763	31.1	1,966	17.9	3,498	12.8	58,953
개발	5,305	12.5	7,897	45.4	790	32.2	7,598	69.4	23,035	84.1	100,389
소계	**42,446**	**100.0**	**17,407**	**100.0**	**2,456**	**100.0**	**10,954**	**100.0**	**27,391**	**100.0**	**217,056**
기타	3,212	-	1,548	-	378	-	814	-	4,207	-	88,675
총계	**45,658**	**-**	**18,955**	**-**	**2,834**	**-**	**11,768**	**-**	**31,598**	**-**	**305,731**

주) 연구개발단계가 기타인 과제에서 발생한 건수는 제외하고 비중을 산정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연구수행 기관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대학은 SCIE논문의 76.4%, 국내 특허 등록의 37.4%, 해외 특허 등록의 44.7%를 창출하였음. 출연연구기관은 SCIE논문의 13.7%, 국내 특허 등록의 20.2%, 해외 특허 등록의 29.0%를 차지하였음.

또한 기술료 건수와 사업화 건수는 중소기업에서 각각 54.0%, 69.6%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음.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기관별 성과 현황]

(단위: 건, %, 억원)

유형	SCIE 논문		특허 등록 (국내)		특허 등록 (해외)		기술료		사업화		2023 집행액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국공립연	1,007	2.2	503	2.7	30	1.0	871	7.4	1,634	5.2	14,404
출연연	6,251	13.7	3,832	20.2	823	29.0	1,573	13.4	1,580	5.0	110,861
대학	34,871	76.4	7,083	37.4	1,268	44.7	2,264	19.2	1,954	6.2	74,033
대기업	277	0.6	392	2.1	37	1.3	90	0.8	233	0.7	8,121
중견기업	329	0.7	694	3.7	124	4.4	299	2.5	1,166	3.7	18,545
중소기업	1,675	3.7	5,447	28.7	489	17.3	6,349	54.0	22,003	69.6	58,379
기타	1,249	2.7	1,004	5.3	65	2.3	322	2.7	3,028	9.6	20,635
합계	45,658	100.0	18,955	100.0	2,834	100.0	11,768	100.0	31,598	100.0	304,976

주) 정부부처 직접 과제 수행의 경우 따로 성과 통계를 내지 않아 제외되어 정부부처의 집행액 755억원은 2023 집행액 합계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나. 검토의견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논의 관련 검토

(가) 개요

① R&D 예비타당성조사 연혁 및 절차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6]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음.

이후 2008년 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연구개발사업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국가재정법」 개정 시 시행령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음.

또한 2018년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시행되었음.[7]

현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제38조의3에 근거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8]

---

6)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

7) 「국가재정법」(법률 제15342호, 2018.1.16. 일부개정)

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변화]

구분	2007년 1월 1일 ~ 2008년 2월 28일	2008년 2월 29일 ~ 2018년 4월 16일 (2014년 법률로 상향 규정)	2018년 4월 17일 ~ 현재
예타 조사 대상	**(공통기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개별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	**(개별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별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수행 주체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국고지원의 적합성·국고지원 요건 등에 대한 평가(기술성평가)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함.

이후 선정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되어 사업계획의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받게 됨.[9)]

9)「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2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미만)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은 제3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4. 국고지원의 적합성·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
제29조(대상사업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평가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논의 경과

정부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음.[10][11]

이후 2024년 12월 12일에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대체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음.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발의 또는 제출 법률안]

법률안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주요 내용	심사경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2024.6.10.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	대안반영폐기
	정부	2024.12.12.	구축형 R&D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축형 R&D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절차를 규정	
	이해민 의원	2024.12.19.	R&D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	
	황정아 의원	2025.6.9.	R&D 예타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 제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2024.6.1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소위회부
	정부	2024.12.12.		
	이해민 의원	2024.12.19.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8.1.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제출 또는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중인 상황임.

---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전면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6.19.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하여 예타 통과에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기술 진부화 등 신속한 기술 경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변경의 경직성으로 인해 유연한 R&D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하여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사업추진심사·계획변경심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사업(이하 본문에서 "연구형 R&D"라 함)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12]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연계하도록 규정하였음.

둘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하 본문에서 "구축형 R&D"라 함)의 범위를 규정[13]하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셋째, 구축형 R&D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1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다음 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함.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임시번호 DD20361, 국회 과방위 제출, 2025.7.7.)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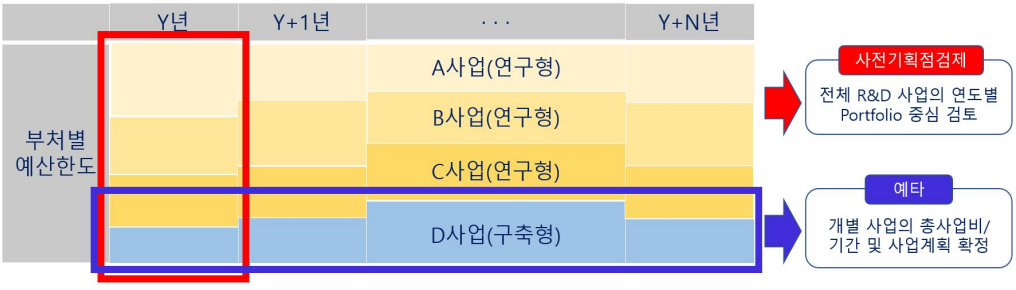
[현행 예비타당성제도 및 과방위 대안 비교]

구분	현행	과방위 대안	
사업 유형	모든 신규 R&D	비 구축형 R&D	신규 구축형 R&D
규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비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심사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대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연구형 R&D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방법이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축형 R&D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형 R&D의 경우 대상사업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기획점검(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진행할 계획이고, 각 부처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이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예타와 사전기획점검제 비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구축형 R&D의 경우 투자 적정성 점검과 함께 구축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심사 절차를 차별화할 계획으로, 연구시설구축 및 체계개발 등 난이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구축 필요성 심사 외에 세부계획 심사도 진행하여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보다 더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나) 검토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체제도 도입 시 대규모 R&D에 대한 사전 타당성 점검을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화,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 다부처 사업의 부처별 역할 조정 등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착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적시성 저하 우려가 있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연구개발사업이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역기능이 지적되어 왔음.

이와 같은 역기능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하여 일부 보완되는 측면이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음.

①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제10호를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R&D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음.[14]

[R&D 예타 면제 사업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예타 시행완료 또는 실시 중인 사업 수[1]	44	32	23	17	12
예타 면제사업 수	1	0	3	6	0
[국가재정법] 제38조②10호에 따른 면제사업 수	0	0	2	5	0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사업 수[2]	1	0	3	6	0

주 1) 해당 연도에 R&D 예타 착수 또는 조사 종료된 사업 수
2)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사업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적정 사업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 총사업비 조정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적정 사업 규모를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타당성이 부족한 대규모 R&D 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은 부족함.[15)]

②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한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는 평균 8개월이 소요되고, 시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함.[16)]

예를 들어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은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202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25년 7월부터 이루어짐.

이와 같이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역기능이 존재하고 그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R&D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대체 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그간 대형 R&D 사업의 충실한 기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타당성과 적정 소요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까지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시행 판정을 받은 사업의 부처 요구 총사업비는 65조 6,751억원 규모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확정된 총사업비는 36조 1,649억원으로 총 29조 5,103억원의 예산을 조정하기도 하였음.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할 수 있다.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사업 수는 9개이며, 현재 8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해당 사업들의 적정성 검토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8개월로 집계됨.

[R&D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시행판정) 사업 총사업비 조정액]

(단위: 개, 억원)

구분	사업 수	요구 총사업비(A)	확정 총사업비(B)	조정액(A-B)
시행 판정 사업	82	656,751	361,649	295,103

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R&D 예타 조사가 위탁된 2018.4월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기준(주관부처 조사 철회 사업은 제외)

2) 예타 결과 미시행 판정을 받은 총 79개 사업의 요구 총사업비는 44조 3,338억원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연구형 R&D에 대한 사전기획점검 및 구축형 R&D에 대한 사업추진심사·계획변경심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사업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 규모나 추진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R&D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일단 통과된 사업은 그 타당성이 일정 부분 입증되고, 추진 일정과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용이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구형 R&D의 경우에는 사전 기획점검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충분한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점검 이후의 부처 내 우선순위 조정이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전 기획점검의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한 면밀한 설계를 통하여 사전 기획점검 결과가 부처 내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R&D 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했고,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R&D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역할이 정립되었음.

그러나 연구형 R&D의 경우에는 사전 기획점점 이후 각 부처에서 이를 고려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 관점의 R&D 추진에는 불리할 수 있고, 다부처 R&D 사업 추진 시 사전 기획점검만으로는 참여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배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의 내용대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대체제도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이와 같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순기능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체 제도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관련 검토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는 크게 산(기업)·학(대학)·연(연구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하게 분류되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에는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로 분류하고 그 외의 연구기관들[17]은 모두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1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연구수행주체 분류 기준]

구분	분류 기준
산	· 대기업: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대규모인 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중소규모인 기업
학	· 대학: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포함
연	· 국공립연구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 · 출연연구소: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정부부처	· 정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연구를 수행하는 부처·청
기타	·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의 수행주체 등

자료: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는 출연연구소를 ①「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 이라 함)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③각 부처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분류는 출연연구소를 광의로 해석한 것으로, 협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을 의미함.[19]

---

17)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출연연구기관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1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 ·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도입 및 운영 경과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이후 1973년 제정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근거로 핵심 기초·산업 기술 분야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 부처별로 소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이 이루어졌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 당시 근거 법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76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표준과연구원	1975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기계연구원	1976년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
한국화학연구원	1976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전기연구원	1976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에너지연구원	1977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건설연구원	1983년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생명연구원	1985년 (KIST 부설센터로 출범)	·유전공학육성법(1995, 부설연구소) ·정부출연기관법(1999, 독립법인화)
한국식품연구원	1987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88년 (한국과학재단 부설센터로 출범)	·정부출연기관법(1999, 독립법인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로 출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1996, 독립법인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89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국한의학연구원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법
한국철도연구원	1996년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주) 기관명은 설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1996년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PBS제도[20] 도입 및 1999년 직할연 체계의 문제[21] 해결 목적으로 「정부출연기관법」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분

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20)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는 R&D 재정지원 체계를 프로젝트(사업·과제) 단위로 전환하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여 예산·과제를 편성하는 것으로, 과제비 편성시 해당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연구자들을 실명화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과제비 편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

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현재의 출연연 제도가 자리 잡았음.

그리고 2004년「과기출연기관법」제정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이라 함)의 소관을 기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면서 과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통합관리 체계가 수립되었음.

2004년 당시 과기출연기관은 3개 연구회 체제하에서 운영되다가 기술 분야 간 융합·협력연구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08년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201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체제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연혁]

구분	주요 내용	도입 이유
1966.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제정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산업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최초의 출연연 설립
1980.11월	과학기술 출연연 통합조정(16개→9개)	부처별 산하기관 통폐합 및 과학기술처로 관리 일원화
1996.1월	PBS제도 도입	연구생산성 제고
1999.1월	「정부출연기관법」 제정 (과기분야 3개 연구회 체제)	직할연 운영체계의 단점 보완
2004.9월	「과기출연기관법」 제정	과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수립
2007.1월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08.2월	2개 연구회 체제로 전환	기술분야 간 융합·협력 연구 필요성 증대
2014.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	기술분야 간 융합·협력 연구 필요성 증대
2024.1월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과기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독립적 운영 보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할연구기관이 개별 부처의 수요에만 대응함에 따라 △기관 간 연구개발 중복,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설정 미흡, △심층연구·전문성 제고보다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다) 검토의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도입 이후 과기출연기관이 직할 연구기관으로 전환되거나 부처별로 직할 연구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직할 연구기관의 수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의 운영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연구기관의 운영형태가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999년「정부출연기관법」제정 및 2004년「과기출연기관법」제정을 통하여 각 부처 소관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운영 중이던 연구기관 일부를 연구회 소속의 과기출연기관으로 이관하여 이들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이후 과기출연기관이 개별 부처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전환되거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직할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사례가 발생함.

① 과기출연기관이 직할 연구기관으로 전환된 사례

2004년「과기출연기관법」제정을 통하여 과기출연기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한 이후, 2012년 해양과학연구소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되면서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음.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인근 한국해양대학교 등과의 상호교류 및 겸직 등을 허용하여 학·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해양 정책 전담부처(국토해양부)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국가해양현안 및 신개척 필요분야(해양플랜트·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부처(국토해양부)와 관리·감독 부처(교육과학기술부)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22]을 제정하면서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의 직할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음.

다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 2024년 5월 27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직할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음.

22)「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법률 제111454호, 2011. 12. 31. 제정)

② 출연연 제도 도입 이후 직할 연구기관 설립 사례

출연연 제도 도입 이후 200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07년 울산과학기술원, 2007년 한국원자력의학원,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직할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외에도 2006년 6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직할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직할 연구기관으로 운영 중이고, 2006년 11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직할 연구기관으로 설립되기도 하였음.

[출연연 제도 이후 설립된 직할 연구기관 사례]

기관명	소관 부처	설립 근거	설립 연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법」	200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6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	2007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
치의학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설립 예정

주 1) 일부 사례를 모아놓은 것으로 이 외에도 설립된 직할 연구기관이 더 있을 수 있음
2)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다가 독립 법인화 된 경우에는 독립 법인화된 해에 설립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현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 중인 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설립 당시 그 근거 법률을 「과기출연기관법」에 두고 과기출연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과 직할 연구기관으로 운영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직할 연구기관으로 설립되기도 하였음.[23)]

23) 그 외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설립 당시 과기출연기관과 직할 연구기관 중 어느 형태로 운영할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됨.

③ 과기출연기관 및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필요

출연연 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연구기관이 부처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관 간 연구개발 중복,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설정 미흡, 심층연구·전문성 제고보다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인 출연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이나 외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직할 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직할 연구기관의 운영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직할 연구기관의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각 부처의 직할 연구기관의 난립에 따라 기관 간 연구개발 중복·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설정 미흡·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에 연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인 출연연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하면, 출연연 제도 도입 이후 다시 직할 연구기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구기관의 운영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연구기관의 운영형태가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출연연 및 직할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과기 출연연	36,142	38,914	39,097	38,216	37,339	39,633	42,212	44,891	49,219	52,149
직할 연구기관	33,338	33,854	33,665	35,309	37,287	36,862	42,425	45,321	48,441	52,720
경인사 출연연	5,485	5,467	5,543	5,313	5,875	6,102	5,651	5,847	6,076	5,991
합계	74,966	78,235	78,305	78,838	80,502	82,597	90,289	96,058	103,737	110,861

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2014년 이전에는 출연연과 직할 연구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집행 실적을 발표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과기출연기관 및 직할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상 연구 주제나 목표설정 등 운영을 상향식 중심으로 한다면 과기출연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데 반해, 하향식 중심으로 한다면 직할 연구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사례는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책적·정무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과기출연기관 및 직할 연구기관 비교]

구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과기출연기관	직할 연구기관
법적근거	「과기출연기관법」	개별 법률
관리주체	연구회 (간접 관리)	정부 부처 (직접 관리)
이사회 운영형태	연구회가 이사회 기능 수행	기관별 이사회 운영
예산 편성 과정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 → 연구회는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후 총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소관 부처 장관에게 제출
실질적 구분 기준	・설립 목적상 기관 운영방향 중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지 → 상향식일 경우 연구회 출연연 / 하향식일 경우 직할연	
	상향식 중심 운영(Bottom-up)	하향식 중심 운영(Top-down)
	・출연연이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주제, 성과목표를 결정하고 연구수행 (정부부처는 제도적 지원 및 성과관리・통제) ・각 부처가 분야별 기술개발 등을 위해 공모를 거쳐 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	・정부 부처가 연구주제, 성과목표를 설정(미션부여)하고 출연연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구수행 ・정부 부처의 정책적 목표를 기술적・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수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대규모 국책과제인 슈퍼컴퓨터 구축・운영의 경우 과기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6호기 구축을 위한 사업(총사업비 4,483억)을 수행하고 있고, 산업 R&D 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총사업비 1조 1,643억원)도 과기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정하는 연구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기초 분야의 연구단과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각 연구단 등이 연구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수행하는 상향식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도 함.

이와 같이 과기출연기관과 직할 연구기관을 구분함에 있어 기관의 운영방향을 명확한 구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관의 운영 방향 외에 다른 과기출연기관과의 융합연구 필요성, 분야별 특성 및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 주도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2024년 R&D 예산 규모에 따른 영향

(가) 2024년 R&D 현황

2024회계연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규모는 25.9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총지출(656.9조원) 대비 3.9%[24]에 해당함.

최근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추이를 보면, 2014년 기준 18.9조원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31.1조원이 되었으나, 2024년에는 전년대비 4.5조원이 감소(△14.6%)하였음.

[최근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18.9	19.1	19.5	19.7	20.5	24.2	27.4	29.8	31.1	26.5
전년대비 증감액	1.1	0.2	0.4	0.2	0.9	3.7	3.2	2.4	1.3	△4.5
전년대비 증가율	6.4	0.9	1.9	1.1	4.4	18.0	13.1	8.7	4.4	△14.6
총지출 대비 비중	5.0	4.9	4.9	4.6	4.4	4.7	4.9	4.9	4.6	4.0

주) 2024년에 전년대비 감소한 4.5조원 중 1.8조원은 각 부처의 정책연구개발사업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등 1.8조원 규모의 사업을 비 R&D 사업으로 재분류한 결과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축소에 대하여 2023년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 결과에 담은 것이라고 발표하였음.[25]

정부는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년(4.7조원) 대비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

24) 2023년도의 경우 총지출(638.4조원)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규모(31.1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해당함.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 등 'R&D를 R&D답게' 혁신한다」, 2023.8.22.

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 연구개발사업에 10조원을 집중 투자하였고,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약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각 부처의 정책연구개발사업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등 1.8조원 규모의 사업을 비 R&D 사업으로 재분류하였음.

이와 같은 정부의 R&D 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26]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마치고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하나, 8월이 되어서야 심의를 완료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 증가, 학생연구원 지원 축소, 기존 투자 성과의 매몰 및 대응 민간투자 축소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후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초연구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 예산 2,078억원, 기업 R&D 지원 예산 1,782억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 및 운영 지원 예산 434억원, 출연연 연구지원 예산 388억원 등 6,217억원이 증액된 26.5조원으로 확정되었음.[27]

(나) 검토의견

첫째, R&D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연 단위로 바꾸는 것은 관련 분야 참여자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연구 및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R&D의 성과는 단기에 창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업전망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획을 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26)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정부 R&D 예산, 26.5조로 확정·신진연구자 지원 등 강화」, 2023.12.21.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함.[28)]

그런데 정부는 2023년 3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에서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 5개월이 경과한 2023년 8월에 2024년도 R&D 예산안을 25.9조원(정부 총지출의 3.9% 수준)으로 편성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하였음.[29)]

이후 2025년에는 R&D 예산이 29.6조원 규모로 편성되어 2024년 본예산(26.5조원)에 비해 약 3.1조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29.7조원으로 확정되었는데, 2023년 R&D 예산 중 2024년에 비R&D로 이관된 사업의 예산을 제외하면 29조 281억원 수준이므로, 2025년 R&D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더 확대되었음.

그리고 정부는 R&D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의 이유를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

28)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발췌

2023-2027년 정부 R&D 투자 목표

□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R&D 투자 규모 지속 확대**

○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과 그간의 **투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예산)의 5% 수준을** 유지(국정과제 74-2)

⇒ **정부 R&D 5년간 170조원 투자**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그 성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년(4.7조원) 대비 6.3%를 증액한 5조원을 투자한 것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매년 10%씩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이는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밝힌 분야조차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R&D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법정계획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수개월 후에 변경하는 것은 관련 분야 참여자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연구 및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법령상 규정된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R&D 사업 예산 조정 시에는 관련 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30][31] 및 같은 법 제8조[3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31) 개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년에 한번 평가를 하고 있음.

3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 ·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함.[33]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근거 절차로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나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34]

우선 단계평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는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을 받거나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5]

---

3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 · 변경 · 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 · 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는 다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그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목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연구개발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특별평가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짐,

이와 같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별 평가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통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나 연구개발과제의 국비 지원 규모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2024년 정부가 R&D 예산을 조정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개발협약서에 근거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36] 사업의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국비 지원 규모를 축소시킴에 따라 연구가 지연되거나 최종 성과가 축소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①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R&D) 사업의 연구과제 수행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22년 3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억원, 2023년에는 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24년 계획액이 4억원으로 전년대비 90% 감액되면서 국비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되었음.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6)「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표준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협약서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과제별 국비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원스텝-원팟 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인공미생물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	667	1.334	133.4	568
2	석유계 가소제 대체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소제 생산기술 개발	666	1.332	133.2	567
3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용 바이오락톤 소재 기술개발	667	1.334	133.4	568
합계		2,000	4,000	400	1,70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성과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4년에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축소하였다가 2025년에 일부 복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과제 중단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고, 일부 과제는 중단되었다가 2025년에 재개되는 등 연구과제 수행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문제가 있음.

②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사업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우주항공청)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은 3단계(1단계 기본설계 → 2단계 상세설계 및 일부 부품 제작 → 3단계 QM(인증모델)급 상단 엔진 제작 및 연소시험·평가)로 이루어진 경쟁형 R&D 사업으로, 2024년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55억원) 대비 29억원 감액된 26억만 편성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을 통해 국비지원 규모를 과제당 21억원에서 11억원으로 축소하였고, 연구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연구목표 일부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였음.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 2024년도 연구내용 변경 내역]

구분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연구 내용	엔진시스템 및 구성품 규격 확정 및 **상세설계 수행**	**4차년도 수행**	구성품 규격 확정 및 상세설계 검토 일정 조정
	일부 엔진 구성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일부 엔진 구성품에 대한 **초도품 제작** 및 시험	엔진 구성품 초도품 제작 및 기능 확인 시험

자료 : 우주항공청

그런데 이 사업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상단 QM급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단계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목표 달성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구 실패로 인한 국가예산과 연구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큼에도, 단계목표를 하향하여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③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R&D) 사업의 장비구축 지연 및 축소에 대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23년 사업 착수 이후 2023년 및 2024년 예산 전액 교부되었으나, 연구개발기관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47억 1,000만원 2024년 36억 3,6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최종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2023년	12,000	-	12,000	7,290	4,710
2024년	6,000	4,710	10,710	7,074	3,63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성과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4년에 계획 대비 36.4% 수준으로 축소하였는데, 그 결과 장비 구축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또한 2026년 이후부터는 반도체설계검증 제공 목표 횟수가 기존의 2배(연 6회 → 연 12회)로 증가될 예정인데, 장비고도화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반도체설계검증 제공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4)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의 정산

(가)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37]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38]에 따라 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 등이 기재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실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39]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40]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41]

---

3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3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는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분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분함.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연구개발비 정산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의 완료 기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의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완료 시점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각 부처에서 고시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전문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의 정산 검토 완료를 협약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최종적으로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되고 국고에 납입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42)]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정산금의 국고납입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문기관 단계에서의 정산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43)]

그 외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4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 검토해야만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4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규정은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연구개발비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을 진행하고 있거나, 규정하더라도 부처 간 그 시점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구비 정산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료된 이후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반하여 정산금이 반납 기한(1개월)내에 국고로 반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완료 이후 회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정산이 완료된 과제의 정산금이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과제 중 2020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500만원, 2021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6억 400만원, 2022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5억 7,000만원, 2023년 종료과제의 정산금 18억 8,300만원, 2024년 종료과제의 정산금 22억 2,800만원이 아직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5.4.30. 기준)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20년	7,685	5	7,713	47,199	47,194	5
2021년	7,892	6	7,925	69,488	68,884	604
2022년	9,566	16	9,589	68,057	67,487	570
2023년	9,649	176	9,513	50,411	48,527	1,883
2024년	10,390	431	9,957	18,706	16,477	2,22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환경부)

환경부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정산금 반납액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수납되지 않고 있는 연구과제가 6개로, 정산금 미반납 2억원이 수납되지 않고 있음.

[환경부 R&D사업 중 연구개발비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미정산 세부사업명	반납 대상액	반납액	미반납액
정산금 미반납	2023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기술 개발	4,647	4,477	31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9
	2024	지중환경오염위해 관리기술 개발사업	1,591	1,561	30
	합계	-	6,238	6,038	2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과제 중 2020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12억 3,900만원, 2021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21억 6,300만원, 2022년도 종료과제의 정산금 72억 300만원, 2023년 종료과제의 정산금 98억 8,300만원, 2024년 종료과제 128억 5,900만원이 아직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5.4.30. 기준)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완료 과제		
		2024년 말	2025년 4월 말	국고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20년	4,077	-	-	6,128	4,889	1,239
2021년	3,724	-	-	14,176	12,013	2,163
2022년	5,186	-	-	16,885	9,682	7,203
2023년	5,608	8	3	19,582	9,700	9,883
2024년	5,261	1,288	328	19,980	7,121	12,85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정산금 반납 기한 위반 사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2020~2024년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된 과제 중 122개 과제에서 78억 4,700만원의 정산금이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0~2024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R&D 과제 정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과제 종료연도	정산완료 되었으나 미반납 금액이 있는 과제	
		과제수	미반납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년	5	11
	2021년	11	239
	2022년	2	49
	2023년	54	3,314
	2024년	11	76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1년	1	9
	2022년	3	482
	2023년	10	369
	2024년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0년	7	113
	2021년	8	2,340
	2022년	4	69
	2023년	6	85
	2024년	-	-
합계		122	7,847

주) 2025년 7월 기준 각 연도말 종료된 과제의 정산 현황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 개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44]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관련 기술료 사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4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정부지분기술료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100분의 10 이상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6]

---

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8. 시행)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② 기업 관련 기술료 징수 규정

또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은「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7)]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48)]은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의 일부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함.[49)]

---

2.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7)「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48)「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9)「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

(나) 검토의견

첫째, 여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료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각 부처의 직할 연구기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기술료 사용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사용 규정 미준수 사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년도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외에는 모두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비율(10%)이 10% 미만이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은 참여연구원 보상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료를 징수한 연도 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년 기술료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4년 기술료 사용(C)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 경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기타	소계
합계	**82**	**64,977**	**2,235**	**18,021**	**4,984**	**9,397**	**12,870**	**164**	**112,7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3,136	-	503	-	300	11	7	3,957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	-	-	-	-	-	-	-

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4년 기술료 사용(C)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 경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기타	소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19	37	-	26	25	-	10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558	43	533	-	133	251	4	3,5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434	81	-	7	16	66	-	604
한국한의학연구원	-	343	33	137	150	38	13	-	7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3,703	637	935	1,144	687	970	9	8,08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9,824	891	8,394	1,441	3,887	7,926	-	52,36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680	67	94	-	76	89	54	1,06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903	72	198	-	198	368	25	2,76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348	12	1,045	-	112	200	-	2,7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073	28	50	66	-	371	-	1,588
한국식품연구원	-	613	19	-	61	252	235	2	1,182
세계김치연구소	-	115	22	8	150	9	18	-	32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945	-	-	159	150	249	-	1,503
한국기계연구원	27	3,317	-	1,690	△120	864	381	3	6,16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3,164	-	297	-	990	3	-	4,454
한국전기연구원	-	4,056	20	686	-	694	433	-	5,889
한국화학연구원	52	2,409	-	2,387	-	530	274	50	5,702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124	7	33	-	16	44	3	227
한국원자력연구원	-	1,835	367	550	367	183	367	-	3,669
한국재료연구원	3	3,065	-	246	-	197	352	6	3,86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318	74	198	-	39	53	-	682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②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술료 사용 규정 미준수 사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50% 미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료 사용 현황(2021 ~ 2024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50% 이상)	22.5	50.0	6.7	22.6	10.9	16.9	13.2	31.5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15%이상)	-	-	-	-	18.2	28.2	10.8	25.6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10%이상)	-	-	-	-	-	-	-	-
그 외(재투자 비용 등)	22.5	50.0	22.9	77.4	35.4	54.9	18.0	42.9
합 계	45	100	29.6	100	64.5	100	42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료 사용 규정 미준수 사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한 사례가 없고, 2023년 및 2024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50% 미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료 사용 현황(2021 ~ 2024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50% 이상)	37.4	50	8.5	50	2.0	21.5	10.0	47.2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15%이상)	37.4	50	8.5	50	7.3	78.5	11.2	52.8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10%이상)	-	-	-	-	-	-	-	-
그 외	-	-	-	-	-	-	-	-
합 계	74.8	100	17	100	9.3	100	21.2	10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④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료 사용 규정 미준수 사례(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한 사례가 없고, 2021년 및 2022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50% 미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연도 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료 사용 현황(2021 ~ 2024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50% 이상)	247.8	28.4	365.6	41.7	1,306.4	73.9	1,810.1	67.0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15%이상)	207.1	23.8	241.7	27.5	393.6	22.3	544.0	20.1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10%이상)	-	-	-	-	-	-	-	-
그 외	416.9	47.8	270.3	30.8	68.2	3.9	346.6	12.8
합 계	871.8	100.0	877.6	100.0	1,768.2	100.0	2,700.7	100.0

자료: 우주항공청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마다 재정상황, 기술료 수입 규모 및 사업화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임.[50]

각 기관별로 기술료 사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각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의무 강화를 위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상기술료는 기업들의 ‘과제 관련 사업화매출액’과 ‘기술기여도’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6월 30일까지 기업들이 제출한 과제 관련 사업화 매출액 등이 기재된 매출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기술료를 부과함.[51]

50) 구체적으로 각 기관들은 ①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부재하거나 연구자 주도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기여자 선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이 있어 해당 목적으로 기술료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 ②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사유로는 집행 시점이 여러 해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보상금 산정 시 기관매출액을 제외한 사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과이전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한 사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었음.

5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2024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전체 기업 중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경상기술료 관련 매출실적보고서 제출/미제출 현황]

(단위: 개사, %)

연도	경상기술료 납부대상 기업수 (A=B+C)	매출실적보고서 제출 기업수(B=a+b)			미제출 기업수(C)
		계(B)	기한 내 제출(a)	기한 경과 제출(b)	
2019	1,683	1,620	945 (56.1%)	675 (40.1%)	63 (3.7%)
2020	1,845	1,753	1,003 (54.4%)	750 (40.7%)	92 (4.9%)
2021	2,750	2,629	1,667 (60.6%)	962 (35.0%)	121 (4.4%)
2022	3,693	3,497	1,986 (53.8%)	1,511 (40.9%)	196 (5.3%)
2023	4,415	4,133	2,755 (62.4%)	1,378 (31.2%)	282 (6.4%)
2024	5,014	4,747	3,930 (78.3%)	821 (16.4%)	263 (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정기한 내에 매출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기업의 법령상 의무 위반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 강화를 위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부 부처에서 전문기관이 기술료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이 수납을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만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이 수납받지 못한 기술료도 징수결정액에 포함하여 기술료 수입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52]는 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부처의 경우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기술료 수입 산정 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납을 완료한 기술료에 대하여만 징수결정을 하여, 전문기관이 아직 수납받지 못한 기술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2019~2024년이 납부기한 이지만 아직 미납된 기술료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기업수	기술료 미납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3	43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2	519
한국산업단지공단	3	16
계	97	1,454

주) 2025년 3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아직 수납받지 못한 기술료도 국고금을 통한 연구개발활동에서 발생한 기술료이므로 각 부처의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반영하여 기술료 수입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관리 강화 등

첫째, 다수의 부처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이 수납을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만 징수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이 수납받지 못한 금액도 징수결정액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수납액 징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53]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제재부가금 및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부처에서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수입을 관리할 때에 최종적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만 징수결정액을 기재하여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전문기관 단계에서는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미수납액을 징수결정액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수납액 징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개발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수납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을 하고 있어 미수납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중소벤처기술정보진흥원의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환수금 미수납액 규모가 누적되고 있어 2025년 6월 기준 연구개발환수금 140억 6,700만원, 제재부가금 324억 8,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

5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환수금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2025.6.30. 기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계
연도별 환수 결정액	9,848	9,652	4,257	4,109	2,802	377	31,045
2024년 기준 미수납 총액	3,944	4,076	1,905	1,666	2,631	-	14,222
2025.6월 기준 미수납 총액	3,933	4,028	1,762	1,639	2,385	320	14,067

주)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2025.6.30. 기준)

구분	2020	2021	2022	2022	2023	2024	2025.6.	계
적용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132	65	196	967	11,930	12,630	11,535	37,455
2024년 기준 미수납 총액	61	1	196	805	9,858	12,311	-	23,232
2025.6월 기준 미수납 총액	61	1	196	805	9,296	11,054	11,070	32,483

주 1)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함

2)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직접 수납·징수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종료된 R&D 과제의 정산결과 국고반납금 및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금을 각 회계/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받고 있는데, 미환수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4년 일반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기금에서 R&D 과제의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미환수금을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2018~2024년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전체 환수금 (A)	납부한 환수금 (B)	미환수금(C=A-B)			미환수율 (C/A)	미환수 과제 수
				납기가 도래한 금액(D)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C-D)		
2018년	7,765	6,884	881	881	-	11.3	9
2019년	7,174	6,555	619	619	-	8.6	6
2020년	6,564	5,809	754	754	-	11.5	4
2021년	5,267	2,715	2,552	2,552	-	48.5	6
2022년	3,367	2,705	662	662	-	19.7	7
2023년	7,598	2,317	5,281	5,281	-	69.5	4
2024년	4,510	2,437	2,073	2,073	-	45.9	5
계	42,245	29,423	12,822	12,822	-	30.4	41

주 1) 전체 환수금: 제재부가금 + 연구개발비 환수금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금액은 제외함)
2) 납부한 환수금: 연구수행기관이 전문기관에 납부한 환수금이 아닌, 부처에 최종적으로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즉, 국고 반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환수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8개 회계/기금별 R&D 정산금 및 환수금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국고납입액
일반회계	32,800	32,8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866	7,86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23,931	23,931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7,352	7,352
기후대응기금	513	51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36	1,036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158	1,158
전력산업기반기금	8,927	8,927
합계	83,583	83,58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다부처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의 명칭과 예산체계를 일치시켜 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심사의 기본 단위인 세부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참여 부처가 동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운영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부처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및 다부처공동사업 운영에 관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운영중인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공동사업 참여부처는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내역사업 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되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 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55)]

---

54)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 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5)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시행 등을 위해 수요조사, 공동기획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부처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이란 공동기획사업을 거쳐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6조(예산의 신청 및 배분) ① 공동사업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에 공동사업에 관한

그런데 다부처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의 명칭과 예산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심사가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인 세부사업 단위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다부처공동사업 예산의 신청 시 세부사업 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도록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다부처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부처공동사업을 내내역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사업 명칭도 다른 부처의 사업과 통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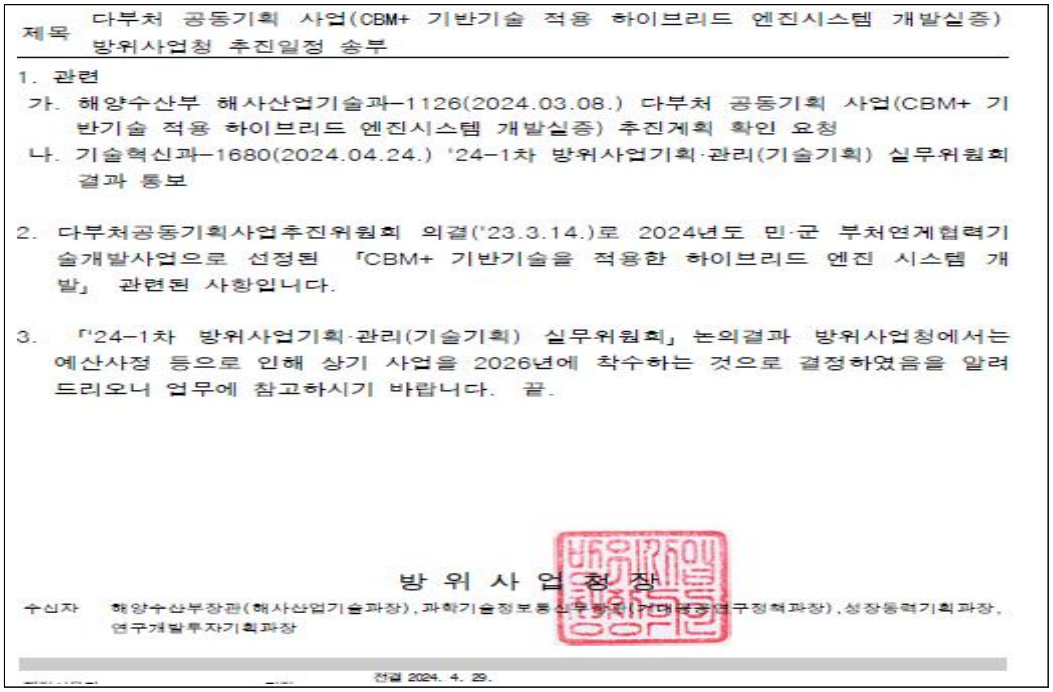
방위사업청은 다부처공동사업 예산을 내내역사업으로 반영하였으나, 2024년 4월 「24-1차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논의결과 방위사업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2026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참여부처에 통보하였음.[56]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시급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된 공동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부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내역사업 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되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예산 조정 · 배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공동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다만, 추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56) <관련 공문>



제목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실증) 방위사업청 추진일정 송부

1. 관련
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1126(2024.03.08.)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실증) 추진계획 확인 요청
나. 기술혁신과-1680(2024.04.24.) '24-1차 방위사업기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 결과 통보

2.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의결('23.3.14.)로 2024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CBM+ 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 관련된 사항입니다.

3. 「'24-1차 방위사업기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 논의결과 방위사업청에서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상기 사업을 2026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방 위 사 업 청 장

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개발투자전략과장), 성장동력기획과장,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전결 2024. 4. 29.

그 결과 두 참여부처(해양수산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위사업청의 사업 없이 해양수산부 단독 또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만으로는 사실상 과제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2024년 6월 제1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57]

방위사업청이 다부처공동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반영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관련된 다른 부처의 예산 전액이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57) 관련 사업: 일반회계-(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2046-347)(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일반회계-민군기술협력(R&D)(1158-442)-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내역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R&D 총괄 관련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활성화 (R&D)	10,710	7,074	사업의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2024년 예산이 축소되어 장비 구축 축소 및 지연 등 사업추진 차질 발생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R&D)	400	400	사업의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2024년 예산이 축소되어 매몰비용 및 과제 수행 지연 발생
우주항공청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R&D)	10,000	9,510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발생
	소형발사체 개발역량지원 (R&D)	2,600	2,600	사업의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2024년 예산이 축소되어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에 차질 발생 우려
해양수산부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1,080	1,080	다부처 사업추진 시 부처 간 협의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액 불용 부적정

3.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가. 개 요

(1) ODA 개념 및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라 함)란 한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수원국)의 경제개발·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임. 다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ODA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수원국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는 다자원조로 나뉘고, 양자원조는 다시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 ODA와 무상 ODA로 구분됨.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1]가 ODA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유상 ODA를, 외교부는 무상 ODA를 주관함.

ODA 시행기관은 주관기관 감독하에 ODA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기관들인데, 유상 ODA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시행하고, 무상 ODA는 외교부 감독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40개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

[ODA 형태별 담당기관 현황]

ODA 형태		법적 근거	주관기관(시행기관)	총괄기관
양자원조	유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EDCF)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KOICA), 40개 개별기관 (7개 지방자치단체 포함)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개별 법률 등	외교부, 17개 개별기관	

자료: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

(2)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현행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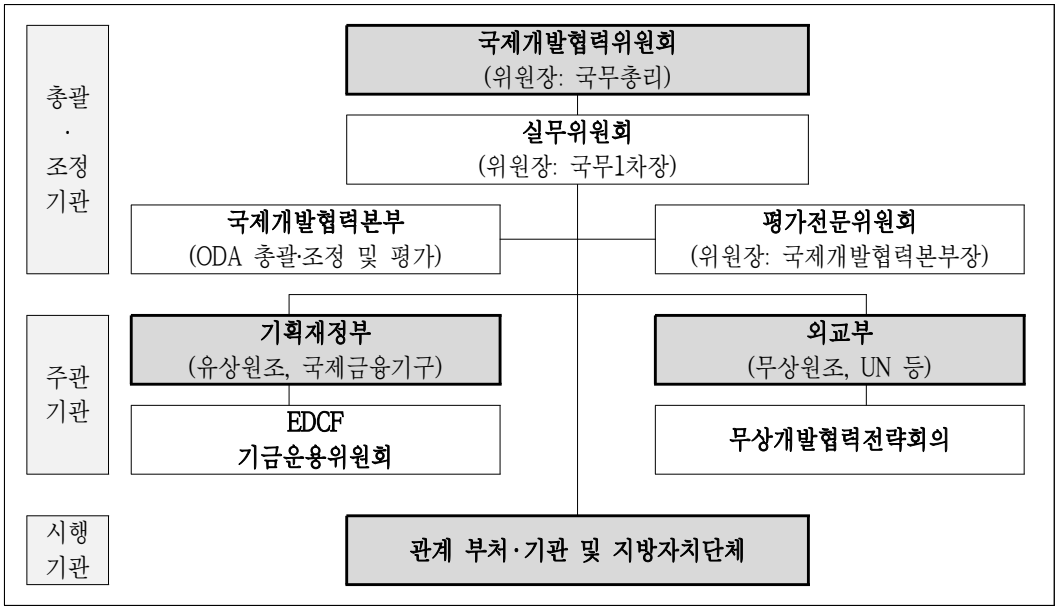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ODA 총괄·조정기관으로서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ODA와 무상ODA의 주관기관으로서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을 점검함.

기획재정부는 유상ODA 주관기관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무상ODA 주관기관으로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통해 사업을 심사·조정하고 있음.

시행기관으로는 해당 사업의 관계부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기관별로 사업 추진 과정 및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준비, 심사, 승인, 시행,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쳐 추진됨.

[ODA 정책 추진 체계]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

(3) 사업계획 및 조정절차

우리나라 ODA 관련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3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24년 12월까지 총 5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등 ODA 주요 정책을 의결하였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시행기관은 이에 따라 개별 사업을 발굴함. 시행기관이 발굴한 ODA 사업은 주관기관의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연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에 반영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사업내용·예산이 다시 연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포함되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최종 확정되어 추진됨.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심의 절차]

①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2월, 주관기관 → 각 부처
↓	
②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출	3월, 각 부처 → 주관기관
↓	
③ 시행계획안 협의·조정	4월, 주관기관
↓	
④ 분야별(유·무상) 시행계획안 수립·제출	4월 말,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⑤ 분야별 시행계획안 조정·심사	5월, 국무조정실
↓	
⑥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심의·의결(요구액 기준)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⑦ 조정결과를 반영한 예산요구서 제출	7월, 각 부처 → 기획재정부
↓	
⑧ 예산안 편성 및 심의	7~12월, 국회·기획재정부
↓	
⑨ 확정예산을 반영한 연간 종합시행계획안 수립·제출(확정액 기준)	12월,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

주관기관과 국무조정실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화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ODA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사업은 다음 연도 ODA 시행계획에서 제외하고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미리 조정하며, 유무상 사업간 또는 무상사업 간 연계를 검토하고 있음.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서는 총 144건 294개 사업의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이 이루어졌음.

[연도별 사업간 연계 및 중복방지 실적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단위: 건,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무상 연계	건 수	13	10	15	12	12	24	29	36	33	**39**
	사업 수	30	21	45	33	28	67	79	88	62	**80**
무상간 연계	건 수	24	16	7	12	38	88	108	59	89	**91**
	사업 수	54	38	17	27	77	193	259	154	215	**200**
중복 방지	건 수	19	14	16	10	11	11	3	3	6	**14**
	사업 수	45	30	56	21	23	23	3	4	17	**14**
합계	건 수	56	40	38	34	61	123	140	98	128	**144**
	사업 수	129	89	118	81	128	293	341	246	294	**294**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4) 2024년도 ODA 현황

(가) ODA 규모

2024년 ODA 총 예산액은 6조 2,629억원으로, 전년도 4조 7,771억원 대비 1조 4,858억원(31.1%) 증가하였음. 이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6조 4,000억원 공여 달성' 이라는 목표의 97.9%에 해당하는 규모임.

ODA 규모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5~10%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21.3%, 2024년에는 31.1%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ODA 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유형별로 보면 양자협력이 5조 1,282억원, 다자협력이 1조 1,347억원으로 82:18의 비율로 추진되었고, 양자협력 중 유상협력이 2조 320억원, 무상협력이 3조 962억원으로 40:60의 비율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양자협력 비율은 5%p, 무상협력 비율은 1.3%p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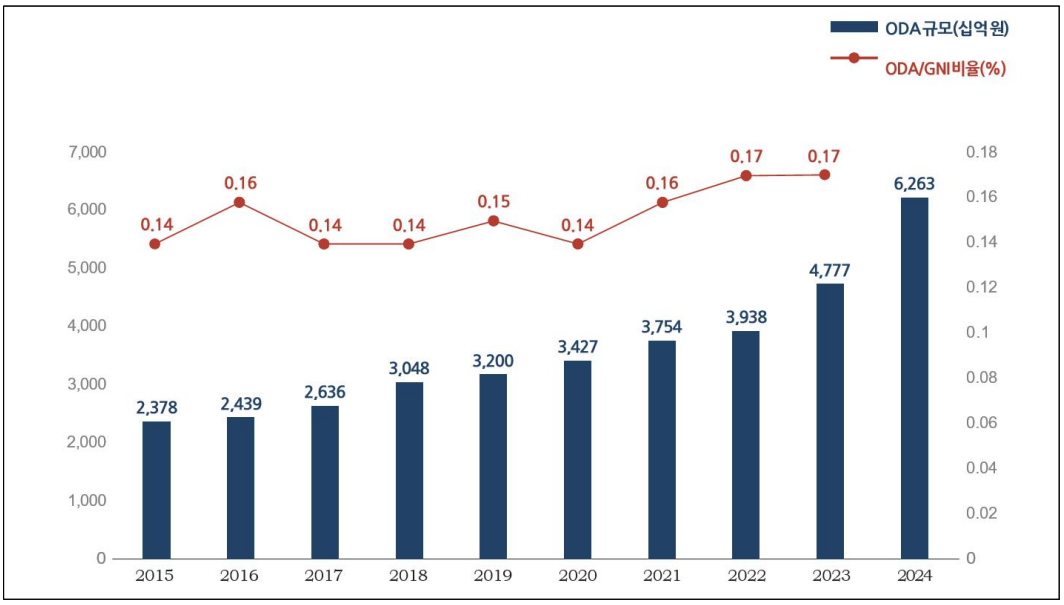
[2019~2024년 ODA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자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유상	11,412 (45.8)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6)
무상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다자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합계 (총 ODA)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전년도 대비 증감액(증감률)	1,521 (5.0)	2,267 (7.1)	3,273 (9.6)	1,840 (4.9)	8,388 (21.3)	14,858 (31.1)

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

[2015~2024년 ODA 규모 변화]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ODA 총지출 규모는 2023년도 기준 34억 9,300만달러로, 이는 OECD DAC[2] 33개 회원국 중 13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2024년도 OECD 잠정통계 기준 OECD DAC 33개 회원국의 ODA/GNI 비율 평균은 0.33%였으며,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21%로 OECD DAC 회원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비율임.

[ODA 지출 추이 및 ODA/GNI 비율 변동]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대한민국 ODA 지출	총지출	2,424	3,157	3,060	3,493	4,350
	전년대비 증가율	△8.6	30.2	△3.1	14.2	24.5
	OECD DAC 순위	15위	14위	15위	13위	-*
ODA/GNI 비율	대한민국	0.14	0.16	0.17	0.17	0.21
	OECD DAC 평균	0.33	0.33	0.37	0.37	0.33
	OECD DAC 순위	28위	26위	29위	29위	26위

주 1) 2024년은 OECD 잠정통계 기준
2) 2024년 확정 통계는 2026년 1월(확정) 발표 예정
3) ODA/GNI 비율 산정시 분자인 ODA 실적은 OECD 통계지침에 따라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산출
자료: 국무조정실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주요 분야별 37개 위원회의 하나로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

(나) 양자협력 분야

① 지역별 실적

양자협력 분야를 지역별로 보면, 2024년도 우리나라 ODA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중동·CIS 비중이 전년 대비 5.1%p 증가하였음.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각각 6.7%p, 1.1%p 감소하였음에도 31.8%, 18.3%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20~2024년 지역별 ODA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오세아니아	기타	합계
2020년	10,928 (39.4)	4,970 (17.9)	1,362 (4.9)	1,748 (6.3)	155 (0.6)	8,586 (30.9)	27,749
2021년	11,661 (40.5)	5,403 (18.7)	1,601 (5.6)	2,091 (7.3)	129 (0.4)	7,933 (27.5)	28,818
2022년	11,899 (37.0)	6,047 (18.8)	1,648 (5.1)	2,478 (7.7)	220 (0.7)	9,907 (30.8)	32,199
2023년	14,128 (38.5)	7,126 (19.4)	1,502 (4.1)	2,770 (7.5)	248 (0.7)	10,965 (29.8)	36,739
2024년	16,321 (31.8)	9,396 (18.3)	4,719 (9.2)	3,936 (7.7)	400 (0.8)	16,510 (32.2)	51,282

주 1)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국제기구 기여금 별도(2024년도 총 60개 기구, 1조 1,347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② 분야별 실적

2024년 ODA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 분야가 전년 대비 6.5%p 증가한 1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교통, 보건, 공공행정, 교육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급증하는 전 세계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호 및 복구, 추가 재난예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대비 지원규모가 7,288억원(434.6%) 증가하였고, 전체 대비 비중이 11.5%p 증가하여 전체 규모 확대 추세 대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3)]

교통, 보건, 공공행정, 산업, 통신 분야는 ODA 규모 확대 추세에도 ODA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나, 교육,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환경보호 분야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0~2024년 분야별 ODA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인도적 지원	교통	보건	공공 행정	교육	에너지	농림 수산	수자원 및 위생	환경 보호	산업	통신	기타	합계
2020	1,677 (6.0)	3,764 (13.6)	2,773 (10.0)	2,328 (8.4)	2,886 (10.4)	2,445 (8.8)	2,734 (9.9)	- (-)	2,194 (7.9)	- (-)	- (-)	6,949 (25.0)	27,750
2021	1,930 (6.7)	4,413 (15.3)	3,358 (11.7)	2,187 (7.6)	2,847 (9.9)	1,851 (6.4)	2,497 (8.7)	2,318 (8.0)	985 (3.4)	645 (2.2)	158 (0.5)	5,628 (19.5)	28,817
2022	3,163 (9.8)	4,224 (13.1)	4,250 (13.2)	2,472 (7.7)	2,933 (9.1)	1,894 (5.9)	2,398 (7.4)	2,486 (7.7)	836 (2.6)	820 (2.5)	234 (0.7)	6,489 (20.2)	32,199
2023	4,036 (11.0)	4,816 (13.1)	4,733 (12.9)	2,974 (8.1)	3,233 (8.8)	1,482 (4.0)	2,550 (6.9)	2,047 (5.6)	1,453 (4.0)	1,020 (2.8)	703 (1.9)	7,691 (20.9)	36,738
2024	8,965 (17.5)	7,706 (15.1)	4,592 (9.0)	4,434 (8.6)	3,556 (6.9)	3,044 (5.9)	2,928 (5.7)	2,407 (4.7)	1,648 (3.2)	1,127 (2.2)	647 (1.3)	10,174 (19.8)	51,228

주 1)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2020년: 에너지 = 에너지 + 산업
3) 국제기구 기여금 별도(2024년도 총 60개 기구, 1조 1,347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3) 이와 관련하여 OECD는 2024년 개발협력 동료검토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인도적 지원 규모를 기존의 두 배 이상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 p.60)

③ 형태별 실적[4)]

2024년에는 프로젝트 사업(3조 2,559억원, 63.5%)을 중심으로 프로그램(1조 576억원, 20.6%), 연수사업(1,917억원, 3.7%), 봉사단 파견(1,343억원, 2.6%)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순서는 전년과 동일하였음.

한편 프로그램 사업은 2020년 대비 지원 규모가 9,323억원(증가율 744.1%), 전체 대비 비중이 16.1%p 증가하여 전체 규모 확대 추세 대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2020~2024년 형태별 ODA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개발 컨설팅	행정비용	기타 기술협력	기타	합계
2020	17,830 (64.2)	1,253 (4.5)	1,521 (5.5)	1,570 (5.7)	759 (2.7)	1,075 (3.9)	323 (1.2)	416 (1.5)	3,003 (10.8)	27,750
2021	20,174 (70.0)	732 (2.5)	1,385 (4.8)	921 (3.2)	794 (2.8)	986 (3.4)	392 (1.4)	505 (1.8)	2,931 (10.2)	28,820
2022	21,387 (66.4)	1,190 (3.7)	1,572 (4.9)	1,184 (3.7)	811 (2.5)	934 (2.9)	420 (1.3)	215 (0.7)	4,486 (13.9)	32,199
2023	24,704 (67.2)	5,274 (14.4)	1,589 (4.3)	1,059 (2.9)	873 (2.4)	854 (2.3)	452 (1.2)	72 (0.2)	1,862 (5.1)	36,739
2024	32,559 (63.5)	10,576 (20.6)	1,917 (3.7)	1,343 (2.6)	1,115 (2.2)	1,022 (2.0)	495 (1.0)	105 (0.2)	2,150 (4.2)	51,282

주 1)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연수사업: 장학 지원 포함
3) 국제기구 기여금 별도(2024년도 총 60개 기구, 1조 1,347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4) ODA 사업 유형
-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
- 프로그램: 수원국의 개발계획 일반 또는 특정 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
- 연수사업: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식·기술 전수
- 봉사단 파견: 파견기간, 사업명칭, 파견대상자와 무관하게 소정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유형의 사업
- 민관협력: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
- 개발컨설팅: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자문 등 기술용역 제공
- 행정비용: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으로 사업별로 포함되지 않는 순수 행정비용에 해당
- 기타 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이외의 기술협력(국내외 교육성 워크샵 개최, 사전타당성조사, 평가 등)

(다) 다자협력 분야

2024년 다자협력 분야는 총 60개 기구 대상, 17개 기관, 1조 1,347억원 규모였고, 이 중 7,220억원은 세계은행 등 8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었으며, 4,127억원은 UN 등 52개 기구에 대한 기여였음.

UN 및 기타기구에 대한 기여 4,127억원 중 UN 5대 중점협력기구[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는 1,068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642억원(151%)이 증가한 것으로 다자협력 분야 전체 ODA 실적 증가율(2.9%)보다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2020~2024년 다자협력 분야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제금융기구	4,723	6,050	5,798	7,488	7,220
세계은행(WB)	2,690	3,512	3,170	5,168	3,855
UN 및 기타기구	1,796	2,233	2,428	3,544	4,127
UN 5대 중점협력기구	311	348	316	426	1,068
합계	6,519	8,283	8,226	11,032	11,347

주 1)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 UN 5대 중점 협력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5) 2024회계연도 회계·기금별 ODA 사업 결산

2024회계연도 정부 ODA 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7), 기금(5)에 총 17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2024년도 예산현액 6조 3,389억 6,200만원 중 6조 328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고 168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92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1% 보다 0.1%p 높은 것임.

[2020~2024회계연도 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2020	34,285	30,857	29,334	215	1,308	95.1
2021	36,751	37,384	35,852	209	1323	95.9
2022	39,367	38,509	37,759	253	496	98.1
2023	45,242	45,496	43,279	246	1,971	95.1
2024	63,130	63,390	60,329	168	2,893	95.2

주) 세부사업명 뒤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회계·기금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 기준으로 일반회계 3조 9,100억 8,500만원(64.8%), 특별회계 611억 2,800만원(1.0%), 기금 2조 616억 7,300만원(34.2%)이었음.

지출액 규모 기준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순으로 나타났고, 기금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 회계·기금별 ODA 사업수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일반회계	143	4,003,949	4,012,278	3,910,085	2,917	99,276
특별회계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43,772	45,698	41,798	2,757	1,143
	환경개선특별회계	4	9,206	9,206	9,202	-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4,056	3,863	3,843	-	2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2,498	2,498	2,498	-	-
	우편사업특별회계	1	1,826	1,826	1,826	-	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	1,440	1,440	1,417	-	23
	조달특별회계	1	544	544	544	-	-
기금 (5)	대외경제협력기금	12	2,093,093	2,107,491	1,909,413	11,128	186,950
	국제질병퇴치기금	6	92,081	93,564	91,706	-	1,858
	기후대응기금	1	30,102	30,102	30,102	-	-
	전력산업기반기금	1	21,149	21,149	21,149	-	-
	방송통신발전기금	1	9,303	9,303	9,303	-	-
합계		177	6,313,019	6,338,962	6,032,886	16,803	289,274

주) 세부사업명 뒤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2024회계연도 부처별 ODA 사업 결산

2024년 ODA 사업이 편성된 총 34개 기관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 규모로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 부처별 ODA 사업수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외교부	일반회계	45	2,700,461	2,700,461	2,615,026	-	85,435
	국제질병퇴치기금	6	92,081	93,564	91,706	-	1,858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9	482,460	483,752	480,681	-	3,071
	기후대응기금	1	30,102	30,102	30,102	-	-
	대외경제협력기금	12	2,093,093	2,107,491	1,909,413	11,128	186,950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3	185,622	185,955	183,725	2,200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125	125	119	-	6
교육부	일반회계	3	152,530	152,541	150,386	-	2,155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4	74,256	74,256	73,256	-	1,0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2,498	2,498	2,498	-	-
	전력산업기반기금	1	21,149	21,149	21,149	-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1	93,474	93,474	93,474	-	-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43,647	45,573	41,679	2,757	1,137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1	40,766	40,766	40,280	-	486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5	28,039	34,016	32,789	-	1,227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1	32,435	32,435	32,434	-	1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3	26,912	27,522	27,322	-	199
산림청	일반회계	2	26,857	26,857	26,853	-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일반회계	7	15,983	15,983	14,712	-	1,271
	방송통신발전기금	1	9,303	9,303	9,303	-	-
	우편사업특별회계	1	1,826	1,826	1,826	-	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	24,483	24,483	23,669	16	798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7	17,497	17,497	17,241	-	256

(단위: 백만원, 개)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환경부	일반회계	1	4,513	4,513	4,513	-	-
	환경개선특별회계	4	9,206	9,206	9,202	-	4
관세청	일반회계	2	13,890	13,890	13,633	48	209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1	13,088	13,088	13,088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회계	8	11,955	11,955	11,750	-	205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10	9,241	9,241	8,835	92	3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	1,440	1,440	1,417	-	23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	10,227	10,227	10,227	-	-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2	9,800	9,800	9,712	-	88
기상청	일반회계	2	8,093	8,093	8,070	-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3	7,944	8,055	5,822	537	1,695
통계청	일반회계	2	6,268	6,268	5,634	-	634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4,056	3,863	3,843	-	20
법무부	일반회계	2	2,859	2,860	2,815	24	21
경찰청	일반회계	1	2,744	2,744	2,717	-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1	784	784	685	-	99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1	544	544	544	-	-
감사원	일반회계	1	292	292	286	-	6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1	298	298	286	-	12
국세청	일반회계	1	100	100	95	-	5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1	78	74	69	-	5
합계		177	6,313,019	6,338,962	6,032,886	16,803	289,274

주) 세부사업명 뒤에 '(ODA)'가 부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ODA 규모: 당초 계획 대비 급격한 증가에 따른 총규모 재검토 및 국회 예산심의권 고려 필요

(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예산 투입 재검토 필요

정부는 2021년 1월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음.[5)]

2024년 ODA 총 예산액 규모는 2030년까지 목표로 설정한 6조 4,000억원의 97.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6조 4,000억원 공여 달성'을 목표 시점보다 5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음.

[2019~2024년 총 ODA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ODA 규모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전년도 대비 증감액(증감률)	1,521 (5.0)	2,267 (7.1)	3,273 (9.6)	1,840 (4.9)	8,388 (21.3)	14,858 (31.1)

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자료: 「2024년 대한민국 ODA 백서」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연도별 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에 반영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6)]

한편 2021년 9월 3일 정부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한 외교부문 투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ODA 예산을 포함한 외교부문 예산을 연평균 4.4%의 증가시켜 2024년에 4조 8,08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음.

---

5)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여건이 양호하지는 않으나, 중견 공여국으로서 책무 및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등 감안 ODA 규모 확대 기조 유지[* '19년 대비 '30년까지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오사카 G20 정상회의, '19.6)]
○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추진

6)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재원배분계획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2021~2025년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57,037	60,286	62,294	64,278	66,330	3.8
ㅇ 외교부문	41,958	44,950	46,132	**48,080**	49,811	**4.4**
○ 통일부문	15,079	15,336	16,162	16,198	16,519	2.3

자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외교부문 투자계획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ODA 예산을 포함한 외교·통상부문 예산을 연평균 6.3% 증가시키고 2024년에 5조 2,133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음.

[2022~2026년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59,543	63,880	67,299	69,632	71,604	4.7
ㅇ 외교·통상부문	44,180	49,020	**52,133**	54,446	56,404	**6.3**
○ 통일부문	15,363	14,860	15,166	15,186	15,200	△0.3

자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달리 2024년에 이미 ODA 총규모가 6조 2,629억원에 달하였고, 이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4년 외교부문 전체 투자계획 4조 8,080억원의 130.3%에 달하는 금액으로, 실제 정부 ODA 사업 추진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밝힌 계획을 초과하였음을 의미함.

또한 증가율로 보더라도 2024년도 ODA 총규모는 2021년 이후 매년 약 18%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외교부문 투자계획 연평균 증가율(4.4%, 6.3%) 및 2021~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2.5 ~ 8.9%)을 크게 상회하였음.[7)]

결국 ODA 총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확대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여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예산 편성에도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여 사업 추진 지연 및 실집행률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무리한

7) 2019~2025년 총지출(자료: 열린재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지출액(조원)	558.0	607.7	638.7	656.6	673.3
증가율(%)	8.9	8.9	5.1	2.8	2.5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ODA 총규모 증가 추세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대규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국제기구 출연 시 국회보고 등 절차마련 필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기구 출연 등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의사결정 시에는 대략적인 금액 및 납부기간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의 결산 현황을 보면, 2020년 예산은 1,053억 6,700만원이었으나, 2024년 예산은 4,574억 6,1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임. 특히 2024년의 경우 전년(2,305억원) 대비 98.5%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2020	105,367	102,679	2,777
2021	262,611	256,375	6,236
2022	206,013	211,494	663
2023	230,487	208,534	22,074
2024	457,461	456,175	1,39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8]으로, 2024년 전체 국제부담금 예산 중 75.4%를 차지하고 있음. 동 사업의 예산 추이를 보면, 2020년 예산은 829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3,451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제금융기구 출연	82,883	217,302	155,436	159,348	345,05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8) 일반회계-국제금융기구 출연(3334-301)(개발금융국)

국제부담금은 정부 대표자 등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출연대상 기금 및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결정하고, 이후 예산안에 편성하여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국회는 출연금 결정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미 결정된 국제부담금에 대한 예산심사 시 사실상 이를 감액할 수 없어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제약을 받게 됨.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국제부담금의 의사결정마다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기구 출연 등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의사결정 시에는 대략적인 액수 및 납부기간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9)]

9)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와 협의가 진행 중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기구와 협의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2) ODA 사업간 조정: 지역별 사업 조정 및 연계 필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통합적 정책추진 및 주요 사항의 조정 및 심사·의결을 위해 제7조의 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관하여 소관 분야의 사업 심사 및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음.[10)]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 수요 등을 심의하고 있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수행하고 있음.[11)][12)]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9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의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유·무상 분야 ODA 사업의 연계수요를 발굴·선정하고 있음.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1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9조의2(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지원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 수요 등을 심의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관계기관 임 · 직원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2)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략회의의 기능) 전략회의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 · 통합적 ·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 · 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

[2024년 기획재정부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개최내역]

일자	회의명	의결 사항
2024.12.19.	제5차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유·무상 연계 사업 이행상황 점검, 신규 유·무상 연계후보 사업 선정 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는「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심사 및 조정(사업간 연계, 중복방지)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를 두고 있음.

무상 ODA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기서 심사·조정된 사업은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종합시행계획으로 최종 의결되고 있음.

[2024년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등 개최내역]

일자	회의명	의결 사항
2024.1.	하반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2024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4.2.2.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실무회의	2024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
2024.2.7.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2024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
2024.5.9.	상반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2025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
2024.6.3.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실무회의	2025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 개발컨설팅사업 가이드라인
2024.6.12.	제8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2025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 개발컨설팅사업 가이드라인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144건 294개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을 통한 ODA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졌으나, 사업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동일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간 연계 또는 한 기관이 다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간 중복방지였고, 국가 범위를 벗어난 지역별 사업 연계 사례는 없었음.[13)]

현재 마련된 ODA 사업간 조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조정(연계 및 중복배제)은 같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국한되고, 대상 국가를 벗어난 지역별 사업의 연계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지역별 조정 및 연계 등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2024년도 사업간 연계 내역 예시[자료: 2024년 국가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가) ODA 사업 연계 및 차별화 필요(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ODA 사업 규모가 최근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외교부(KOICA) 사업 ODA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므로, 사업 방향성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조정을 통해 차별성 있는 ODA 사업수행이 필요함.

대외무상협력(ODA) 사업의 총괄 부처는 외교부(수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임. KOICA에서는 다양한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촌개발, 교통·에너지, 과학기술, 성평등 등 13개 분야)에 걸쳐 무상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 개발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농업기술 전수 및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종자개발·확산 지원 등을 수행 중이며,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농업가치사슬(제도정비-생산인프라구축-가공·유통 활성화-참여주체 역량강화 등)에 기반한 세부사업(생산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전문가 파견-역량·기술 강화교육-사업모니터링 등) 수행으로 여러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ODA)으로 수행 중인 주요 사업들에는 관개시설구축 및 경지정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진단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시설 구축, 농기자재 지원 등 농업전후방산업 지원, 농업생산기반 관련 연수·교육 등인데, 이러한 사업내용들은 외교부(KOICA) 및 농촌진흥청 등이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등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연번	협력국	기관명	사업명	연계내용
1	앙골라	EDCF	치안강화 2차 사업 (프로젝트, '23-'26, 1,061억원, 계속)	○ 유상으로 113 긴급신고 시스템 확장, 무상으로 113 긴급신고센터 대상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경찰청	치안역량강화 3차 사업 (연수사업, '24, 1억원, 신규)	
2	튀니지	EDCF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프로젝트, '23-'27, 798억원, 계속)	○ 유상으로 구축한 토지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통계청의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공 (토지정보·실업률 등 축적된 통계 데이터를 대국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통계청	통계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24-'28, 74억원, 신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농업관련 ODA 사업 비교]

구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규모 및 주요 사업	-13,644.5억원, 57개국(2025) -ODA 플랫폼 사업, 농촌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 가치사슬사업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농림수산 인프라, 기자재지원, 생활인프라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현지 지원을 위한 개발조사 -긴급구호, 물자, 자금, 시설지원 -민간단체 국제협력활동지원 -외국원조기관 및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등	-2,439.2억원, 19개국, 9개 국제기구(2025)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관개시설구축 및 경지정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진단 등 -농업전후방산업 지원 ・농산물 저장・가공・유통 시설 구축, 농기자재 지원 등 -농업생산기반 교육・연수 -디지털농업시스템 구축 사업 -식량위기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국제기구 연계 협력사업 등	-301.1억원, 22개국(2025) -농업기술 개발 및 전수 -기술개발+농가실증+시범마을 ・식량(벼, 밀, 감자, 옥수수), 원예(과수, 채소), 축산(육우, 양계, 사료) 등 -자원 공동개발 및 탐색 ・유전자원, 농업자원 ・현지 적용기술 공동개발 -전문가 장기파견 및 시험포장 운영 -글로벌인재양성사업(청년인재양성) -부처간 협업사업으로 시너지창출 등
협력대상	-상대국 정부기관, 지방정부, 대학 ・마을 공동체개발 담당부서	-상대국 농업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 대학, 국제기구 ・농업부, 농업개발부 등 농업담당 부서	-상대국 정부기관 ・농업부 또는 농업연구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2024년 KOICA 대외무상협력 사업계획(2024.3)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그러나 비록 각 부처의 ODA사업이 동일 국가・동일 지역 및 동일 사업으로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외교부(KOICA)가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ODA)의 대상국가・사업내용・구체적 지원내역에 있어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교부(KOICA)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간 연결고리인 가치사슬을 구성하여 영역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 개별 부처는 부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외교부 사업과 개별부처 사업들 간의 방향성 및 사업간 세부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ODA 지원과제 선정 및 현지에서의 사업운영시 부처(기관)간 정보공유 및 사업단계별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는 ODA 사업들이 사업수행 부처(기관)이 다르다는 사유로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수혜대상 차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 ODA사업의 수행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ODA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ODA사업은 외교부(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유사한 ODA 사업의 지역별 연계 또는 시행기관 단일화 필요(외교부, 산림청)

외교부(KOICA)와 산림청이 각각 진행하는 ODA 사업 중 맹그로브 숲 복원 관련 사업은 유사한 사업내용이 국가에 따라 소관을 달리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경험 공유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연계 또는 국가별 지원수준 표준화를 위해 시행기관 단일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에 따르면 맹그로브 숲 복원 관련 ODA 사업은 총 4건이고, 이 중 1건은 외교부(KOICA), 3건은 산림청의 소관으로 진행됨.

이 사업들은 국가에 따라 그 소관이 외교부와 산림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주요 사업내용은 4건의 사업 모두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주변 생태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 보임.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 맹그로브 숲 복원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총사업 예산	'24년 예산	주요 사업 내용
외교부 (KOICA)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	11,050	347	○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 ○ 맹그로브 복원센터(홍보관) 구축 ○ 중앙·지방 공무원 역량강화 ○ 지역관계자 산림 복원 인지도 제고 활동
산림청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20-'26)	5,800	2,300	○ 남딘·닌빈 지역 맹그로브 숲 복원 (조성 및 관리) ○ 양묘장조성 및 운영 ○ 주민 생계개선 및 역량강화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가이아나/'24-'27)	3,869	741	○ 마하이카 해변 맹그로브 숲 복원 ○ 지역공동체 기반 생태계 관리 강화 ○ 농경지 보호활동
	인도-태평양 맹그로브숲 기술센터 추진여건 조성('24)	333	333	○ 맹그로브 숲 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 ○ 맹그로브 숲 기술센터 조성 계획 수립 ○ 맹그로브 협력 네트워크 및 기술전수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기술센터 조성 대상지 선정 준비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및 각 사업 입찰공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부처의 사업이 동일 국가 대상의 동일 내용의 사업은 아니나 각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공유 및 상호보완을 통해 효과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별 지원수준 표준화를 위해 시행기관의 단일화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각 국가별 유사 사업에 대한 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한 지역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연계를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또는 사업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3) 편성측면: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일부 부처의 ODA 사업은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출연금 집행잔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재단에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년도 이월액(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년도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주요 수입원은 대부분 '개도국 개발협력(ODA)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 출연금과 전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년도 이월액(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으로부터의 이월액의 경우 2022년으로부터의 이월액 대비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그 규모가 151억 6,2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 총액의 23.5%에 해당함.

[2022~2024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 현황]

[표 1] (단위: 천원)

구 분	'22년 예산 (계획)	'22년 수납실적	'23년 예산 (계획)	'23년 수납실적	'24년 예산 (계획)	'24년 수납실적
정부지원금 계	**56,451,000**	**56,451,000**	**50,357,000**	**50,357,000**	**64,387,000**	**64,387,000**
- 출연금[1)]	47,411,000	47,411,000	50,217,000	50,217,000	64,387,000	64,387,000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36,338,000	36,338,000	37,954,000	37,954,000	52,217,000	52,217,000

[표 1] (단위: 천원)

구 분	'22년 예산 (계획)	'22년 수납실적	'23년 예산 (계획)	'23년 수납실적	'24년 예산 (계획)	'24년 수납실적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지원사업	11,073,000	11,073,000	12,263,000	12,263,000	12,170,000	12,170,000
- 보조금	9,040,000	9,040,000	140,000	140,000	-	-
- 위탁사업비	-	-	-	-	-	-
- 기타	-	-	-	-	-	-
자체수입 계	**21,746,141**	**24,165,230**	**26,255,288**	**28,791,192**	**15,162,762**	**17,034,978**
- 이자수익 등[2]	38,100	1,411,469	-	826,188	-	537,719
- 이월금[3]	20,783,041	20,783,041	26,255,288	26,255,288	15,162,762	15,162,762
- 후원금	925,000	1,970,720	-	1,709,716	-	1,334,497

주 1) 정부예산 확정액
2) 당해연도 이자수익 등 발생액
3)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동 재단에 출연된 출연금은 대부분 사업출연금으로 이는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 집행가능한 액수보다 많은 출연금 예산이 편성・교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여 동 재단에 출연금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이자수익이 재단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 국회 차원에서 출연 사업의 적정 규모를 평가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예산 교부시 예산 집행상황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하는 한편, 전년도 잉여금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4]

14)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 편성시 2024년도 사업별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일부사업을 자체 감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2025년 주요 감액사업: 해외긴급구호 △0.8억원('24년 실집행률 84.3%), 의료자원지원 △3.7억원('24년 실집행률 49.1%) 등 총 4.5억원 감액

(나) 사업 추진의 추이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는 실집행단계에서 사업의 추진이 10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사업 추진의 추이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은 가나의 수산업 가공 역량 부족으로 수산 자원 낭비 및 가계 소득 창출 한계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수산물 가공·위생·보관시설 개보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체계 개선방안 제시, 현지 어민단체 연계 여성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임.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이고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 연차별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계
금 액	10	10	10	10	4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이 사업은 최초 사업연도인 2023년도부터 개보수공사 설계 및 시공 관련 계약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실집행단계에서 8억 8,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차연도 사업이 2024년 9월에야 종료되었음.

[2023년~2024년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예산 현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2023년	1,000	1,000	1,000	1,000	-	1,000	117	1,000	117	883	-	11.7
2024년	1,000	1,000	1,000	1,000	883	1,883	1,009	1,000	126	850	24	12.6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2차연도 사업은 2024년 10월에야 시작하여 2024년도에 교부된 보조금 10억원 중 1억 2,600만원만 집행(집행률 12.6%)되고 8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당초 2024년에 계획된 구조물 시공 등이 2025년에 실시될 예정임.

동 사업은 최초 사업연도부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의 추진 추이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문화체육관광부)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은 관행적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의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ODA 사업 예산을 편성 및 교부하여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3월 필리핀에 관광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23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종합계획 수립, 관광두레 구성, 관광 방문객센터 조성 등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종합계획 완결, 관광두레 구성,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 연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6,500만원이 감액된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4년 4월에야 협의의사록이 체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수행사(PMC) 선정 및 계약체결 또한 순연되어 2024년 12월 17일에 선금 8억원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음.

[2023년~2024년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805	805	-	805	-	805	-	805	-	-
2024년	540	540	-	540	805	1,345	805	540	-	5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국 2023년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어 2024년 12월 사업수행사(PMC) 선금으로 지급된 것에 이어, 2024년 교부된 예산 또한 전액 2025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는 보조금의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15]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교부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의 추진 여건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ODA 사업 예산을 편성 및 교부하여,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집행측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연례적인 예산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지양 필요

일부 ODA 사업은 집행이 지연되거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원활한 사업으로 조정하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예산을 교부하거나 사업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등 ODA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지연 및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 개선 필요(외교부)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가별 협력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로 양호한 것으로 보임.

국가별 협력사업 423건 중 현액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24건(5.7%)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147건(34.8%)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집행률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15)「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024년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현황]

(단위: 건)

구 분	총사업수	본예산 대비 60% 미만 집행사업	예산현액 대비 60% 미만 집행사업	예산 미배정
국가별 협력사업	**423**	**147**	**24**	1
계속사업 (종료 예정사업 포함)	352	96	12	1
2024년 신규사업	71	51	12	-

주 1) 예산 미배정: 본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사업
2)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이러한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통한 집행률 제고는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 이후 매년 30% 이상의 사업이 본예산 대비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임.

[국가별 협력사업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건)

구분	총사업수	60% 미만 집행사업(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	예산 미배정
2021	361	122 (33.8%)	44 (12.2%)	20 (5.5%)
2022	377	126 (33.4%)	40 (10.6%)	6 (1.6%)
2023	394	123 (31.2%)	40 (10.2%)	17 (4.3%)
2024	423	147 (34.8%)	24(5.7%)	17 (4.0%)

주 1) 예산 미배정: 본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사업
2)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이 배정된 '베트남' 사업을 보면, 2024년 수행된 30건의 사업 중 24건의 사업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음. 이 중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이 9건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집행실적을 제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 베트남(ODA)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큰 사업 현황(한국국제협력단 단계)]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전용 조정액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집행액 - 본예산 (C-A)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①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 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20-'25/1,050만불)	2,983	49	△1,563	1,469	1,384	94.2	△1,599	46.4
②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21-'25/1,398만불)	2,398	-	△1,018	1,380	1,371	99.3	△1,027	57.2
③ 베트남 축산 고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농업대학교 역량강화 사업 ('21-'30/1,270만불)	1,818	-	1,104	2,922	2,921	100	1,103	160.7
④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1-'25/950만불)	3,064	-	△1,789	1,275	1,275	100	△1,789	41.6
⑤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UNDP) ('22-'26/2,500만불)	3,407	-	2,984	6,391	6,364	99.6	2,957	186.8
⑥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설립사업('22-'26/1,200만불)	3,765	-	△1,000	2,765	2,763	99.9	△1,002	73.4
⑦ 베트남 한베 ICT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22-'27/770만불)	3,286	-	△1,486	1,800	1,717	95.4	△1,569	52.3
⑧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500	-	△1,459	41	-	-	△1,500	-
⑨ 베트남 북부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사업 ('24-'29/2,000만불)	2,400	-	△1,004	1,396	1,396	100	△1,004	58.2

주1) 전용조정액 등 = 전용조정액 + 미교부액
2)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재와 같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그 취지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여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초과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내역사업을 통하여 2024년 나이지리아·알바니아·부탄 및 파라과이에 신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2024년 초 파라과이의 현지 정세 불안과 현지 기관의 내부 사정[16]으로 인하여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파라과이측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였음.

[2024년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일정]

구분	사업계획서상 추진 일정 (4개 국 공통)	현재 추진일정 (파라과이)
2024	o 1월 ~ 3월 : 정보접근센터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o 4월 ~ 6월 : 현지실사, 공사/기자재 업체 선정 및 운영진 초청연수 o 7월 ~ 9월 : 신규 구축 추진 o 10월 ~ 12월 : 신규 구축 추진(계속), 개소식	o 1월 ~ 3월 : 현지 사정(정세불안, 기관 사정) 등으로 일정변경 논의 o 4월 ~ 9월 : 사업 추진 관련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 o 10월 ~ 12월 :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한 협약 변경(기간 연장, ~2025년)
2025	-	o 1월 ~ 3월 :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현지 기관 협의 o 4월 ~ 6월 : 현지실사, 공사/기자재 업체 선정 및 운영진 초청연수 o 7월 ~ 9월 : 신규 구축 추진 o 10월 ~ 12월 : 신규 구축 추진(계속), 개소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5년에 다시 협의를 통하여 현지실사 및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에 출연금 전액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교부하였음.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라과이는 2023년 대선 및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폭력시위 등으로 정세 불안이 2024년 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라 현지 기관(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산하 센터) 내부의 대폭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함.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행률은 96.7%로 집계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집행률은 76%이고,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만 고려하면 실집행률이 3.7% 수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예산의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하였음.

[2024년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예산 (A)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최종 집행액 (B)	이월액	최종 집행률 (B/A)
628	512	116	512	23	489	3.7%

주) 2024년에 편성된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에 대하여만 작성한 것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실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된 것처럼 집계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17]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이미 1년가량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전 기자재 사전 구입 부적정(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손망실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2개소씩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의 및 협의의사록(RD)[18]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1차년도인 2023년에는 양성센터 구축이 불가능하였음.

17)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s) : 수원국과 ODA 사업의 목적 및 기간, 대상 분야, 공여국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측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

이후 2024년 1월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2024년 8월 자카르타 양성센터가 제일 먼저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나, 두 번째로 구축하려던 시카 양성센터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요청에 따라 마카사르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되면서 2025년 5월에 개소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23~'24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위탁용역업체의 실집행률은 100%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2024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위탁용역업체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탁용역업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계약금	지급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3년	730	728	725	720	706	706	706	100
2024년	760	754	750	737	680	676	676	100

주) 2025년 2월말 기준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는 2023년 하반기에 자카르타와 시카 양성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의 기자재를 미리 구입한 것에 이어, 2025년 2월 잠비 양성센터에서 사용할 기자재 중 일부를 미리 구입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 구매·설치 등 추진 경과]

구분	기자재 구매내역(금액)	추진 경과
2023년 예산	자카르타 양성센터 기자재 (194,862,733원)	1) **자카르타·시카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 구매 및 입고: '23.9.~'23.11.** 2) 기자재 수출: '24.5.23.(한국 내륙 운송)→'24.5.27.(한국 부산)→'24.6.8.(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 **자카르타 양성센터 기자재 설치 완료: '24.8.29., 기자재 활용(교육 개시): '24.8.30.** ※ 시카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보관(교육문화연구기술부 건물 내) 4) **시카 양성센터 사용목적 기자재 일부 전용(시카→마카사르): '24.12.27.** ※ 전용되지 않은 시카 양성센터 기자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속 보관 중(향후 잠비, 치르본, 시카, 바둥으로 이관 예정) 5) 마카사르 양성센터 사용 목적 기자재 구매 및 입고: '25.1.~2. 6) **마카사르 양성센터 기자재 설치 및 인수인계: '25.2.21.~2.28.** 7) **잠비 양성센터 기자재 일부 구매 및 입고: '25.2.28.**
	시카 양성센터 기자재 (148,237,267원)	
2024년 예산	마카사르 양성센터 기자재 (61,656,000원)	
	잠비 양성센터 기자재 (78,615,000원)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손망실 위험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자재 구입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마카사르 양성센터와 같이 각 양성센터별 리모델링 공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구체화된 후 기자재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이와 같이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장기간 창고에 보관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교부로 인한 건립사업 무산 부적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2022년~2024년 3개년에 걸쳐 예산에 총사업비를 전액 반영하고 교부함에 따라, 2024년 약 15억원이 불용처리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건립사업이 무산되고 설계비 등은 매몰비용이 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캄보디아가 신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에 주목하면서[19]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ODA 사업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22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2024년 예산에는 3차년도 사업비 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고, 건축 보조사업자 공모 및 건축사업 기획운영(PM) 업체 선정 등도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실집행률이 2022년 1.8%, 2023년 5.9%, 2024년 10.9% 등으로 매년 부진하여 이월이 계속되었음.[20]

19)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 제4기 사각전략('19-'23)을 통해 인적자원 양성 및 신 경제성장 동력 개발 추진(주요 산업인 농업, 의류제조, 건설 외에 문화산업 진흥으로 다변화)

20)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연도별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2,142	2,142	-	2,142	-	2,142	38	2,104	-	1.8
2023년	4,510	4,510	-	4,510	2,104	6,614	388	6,226	-	5.9
2024년	398	398	-	398	6,226	6,624	722	4,401.2	1,500.8	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캄보디아와의 협의의사록이 2차년도인 2023년 2월에 체결되고, 건축 기획조사, 설계 용역 등의 일정도 전체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2022년~2024년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에 반영된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 매년 형식적으로 2차례로 분할하여 보조사업자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전액 교부해왔음.

일자	추진 경과	비고
2020.11.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2021.4.	사업요청서(PCP) 접수	
2022.3.	사업 기본계획 및 방향성 수립, 건축 보조사업자 공모 준비	
2022.6.	건축 보조사업자 공모 / 건축 예비조사 실시, 수원기관 방문 / 전문가 자문	
2023.2.	**협의의사록(RoD) 체결(2. 8.) / 건축 PM 선정**	
2023.3~5.	건축 기획조사 실시	
2023.7.	건축 CM 입찰	
2023.8.	건축 CM 계약 / 역량강화 연수 대행 용역 입찰, 계약	
2023.9.	설계·감리사 입찰 / 현지기초연수 실시	
2023.10.	설계·감리사 계약 / 설계 착수	
2023.12.	국내 초청 심화연수 실시	
2024.1.	기초설계(Preliminary Design) 완료(1. 25.)	
2024.2.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 개발 용역 입찰, 계약	
2024.3~10.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5종 연구 · 개발	
2024.5.	중간설계(Schematic Design) 완료(5. 28.)	기본설계 완료
2024.9.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지 시범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계약	
2024.10~12.	캄보디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지 시범운영 실시	
2024.12.	**실시설계(Detailed Design) 완료(12. 30.)**	
2024.11~12.	**시공사 입찰 추진 (유찰)**	
2025.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무상원조사업 변경 추진	외교부 검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차 교부		2차 교부	
			교부일	교부액	교부일	교부액
2022년	2,142	2,142	2022.3.2.	1,705	2022.10.11.	437
2023년	4,510	4,510	2023.6.20.	3,000	2023.9.20.	1,510
2024년	398	398	2024.6.4.	265	2024.9.4.	1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국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여건,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ODA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마) 사업기간 변경을 전제로 한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 승인 절차 준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ODA 수원국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등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에 따라 외교부의 승인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의 승인 전 사업기간 변경을 전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베트남을 수원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 동 ODA 사업은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수원국의 내부절차 지연(2024년 9월 베트남 보건부 승인)으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이 2025년 5월까지로 연장되었음.

[최근 3년간 동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항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전용·이월·불용사유
2022년	일반연구비	-	1,040	1,039	-	1	낙찰차액 불용
2023년	일반연구비	-	560	445	111	4	용역사업 계약금 잔금 이월('23.6~'24.2) 및 낙찰차액 불용
2024년	일반연구비	111	-	111	-	-	-
	관리용역비	-	664	124	537	3	수원국 내부 절차 지연 잔금 이월('24.11~'25.5) 및 낙찰차액 불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 ODA사업은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총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수원국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등 변경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음.[21]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른 동 사업 시행계획]

(단위: 억원)

사업유형	총사업예산	'24예산	신규/계속	총사업 기간	구분
프로젝트	74.35	6.64	계속	2019~2024	양자무상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동 사업의 기간 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2024년 12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25년 1월 9일 외교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22] 최종적으로는 2025년 2월 20일에 개최된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업기간 변경이 의결됨.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와의 협의가 개시되기도 전인 2024년 11월 29일에 이미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업기간 변경이 공식 승인되기 이전에 해당 변경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선행하여 체결한 것임.

[2024년 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관리용역계약 내역					계약유형 (낙찰자결정방법)
	계약명	발주금액 (입찰공고서 기준)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시스템 선진화 지원	2024년 베트남 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추가지원)	664	657	주식회사 미소테크	2024.11.~ 2025.5.	수의계약

주) 동 사업에 편성된 관리용역비는 베트남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현지 개통식 및 완료 보고회 개최('24.2) 후 구축된 베트남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운영 경험의 안전한 전수를 위한 ODA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같은 주관기관(외교부)의 검토·승인 및 위원회 의결 전 계약체결은 ODA 사업 기간 변경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ODA 사업의 일정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를 선행한 이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교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무상원조사업(ODA)의 변경 검토 요청은 2025.1.3.에 이루어졌음.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1. ODA 규모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기획재정부	국제부담금	457,461	456,175	대규모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국제기구 출연 시 국회 사전보고 등 절차마련 필요

2. ODA 사업간 조정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	162,461	160,240	ODA사업 연계 및 차별화 필요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40,766	40,280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7,657	7,560	유사한 ODA사업의 지역별 연계 또는 시행기관 단일화 필요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26,557	26,553	

3. 편성측면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12,170	12,170	출연금 집행잔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52,217	52,217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45,573	41,679	사업 추진의 추이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540	540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4. 집행측면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외교부	국가별 협력사업	5,531	5,372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 개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정보이용 환경개선사업	3,896	3,780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760	754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전 기자재 사전 구입 부적정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107	1,107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 교부로 인한 건립사업 무산 부적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ODA)	6,878	4,647	사업기간 변경을 전제로 한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 승인 절차 준수 필요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 개 요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의의 및 유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1] 한국은 OECD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

순번	구분	사업내용	예시
①	직접 일자리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복지부)
②	직업훈련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제공	내일배움카드 (고용부)
③	고용 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여 빈 일자리를 채우는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④	고용 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육아휴직급여 (고용부)
⑤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융자) (중기부)
⑥	실업소득 유지·지원	근로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구직급여 (고용부)
⑦	지원고용 ·재활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부)

자료: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2024회계연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결산 현황

(1) 직접 일자리

‘직접 일자리’ 유형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 경과적 · 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접 일자리 유형은 **‘노동시장이행형’**과 **‘사회봉사 · 복지형’**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됨.

노동시장이행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 · 지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청년이나 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을 습득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고, 사회봉사 · 복지형은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퇴직자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 활동 기회와 활동실비를 제공하는 것임.

2024년 직접 일자리 유형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2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3조 5,569억 1,400만원 중 3조 5,456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21만 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2조 123억 6,200만원 집행되어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6,594억 6,200만원),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5,453억 600만원), 산림청의 산림재해일자리(1,048억 3,000만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627억 900만원) 순으로 집행규모가 컸음.

[2024년 직접 일자리 유형 중 집행액 상위 5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명)

연번	부처	세부사업	내역(내내역)사업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실적		본예산
				예산액	인원	집행액	인원	
1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 외 나머지 사업	2,017,628	1,030,000	2,012,362	1,073,558	2,175,685
2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659,462	69,000	659,462	60,767	719,545
3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546,105	38,959	545,306	39,478	539,422
4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	107,050	11,928	104,830	12,448	108,707
5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	62,709	8,555	62,709	7,958	17,560
전체				3,556,914	1,177,745	3,546,562	1,210,058	3,709,06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직업훈련

‘직업훈련’ 유형은 실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직자 훈련’**, **‘재직자 훈련’** 및 **‘일・학습 병행’** 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됨.

구직자 훈련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고 재직자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임.

일・학습 병행 유형은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 제공하는 일터기반 학습임.

2024년 직업훈련 유형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4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2조 6,112억 3,400만원 중 2조 4,503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8%)됨.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일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 4,754억 9,900만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3,680억 2,300만원),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3,015억 4,700만원),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고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직종 훈련(2,965억 5,300만원),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고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985억 7,200만원) 순으로 집행 규모가 컸음.

[2024년 직업훈련 유형 집행액 상위 5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세부사업	내역(내내역)사업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1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3,188	475,499	478,116
2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56,828	368,023	300,670
3	고용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11,632	301,547	276,632
4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	일반직종 훈련	331,239	296,553	332,890
5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25,960	198,572	205,160
전체				2,611,234	2,450,327	2,262,84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유형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기타’** 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됨.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은 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제공, 직업훈련 소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은 직업과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과 행정지원 사업임.

역량강화 유형은 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며, 기타 유형은 특수계층(출소자 등) 성격의 지원대상에게 컨설팅이나 취업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2024년 고용서비스 유형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에서 38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1조 6,389억 3,100만원 중 1조 6,988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3.7%)됨. 당초 예산 보다 집행액이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에서 연말 구직촉진수당 부족으로 예비비 608억 3,600만원을 집행한 것에 기인함.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이 9,305억 7,500만원(1유형 8,427억 6,700만원, 2유형 878억 800만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1,701억 500만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인력지원(943억 6,100만원),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827억 7,300만원) 순으로 집행 규모가 컸음.

[2024년 고용서비스 유형 집행액 상위 5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세부사업	내역(내내역)사업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762,373	842,767	844,744
2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03,193	87,808	
3	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	171,820	170,105	214,090
4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	94,640	94,361	97,719
5	고용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82,801	82,773	109,384
전체				1,638,931	1,698,898	1,693,24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유형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에 처한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모성보호장려금’**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됨.

고용유지장려금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위험상황에 처한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이며, 고용안정장려금은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한 장려금임.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용자 또는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하여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채용을 촉진하는 것이며, ‘모성보호장려금’은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방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024년 고용장려금 유형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에서 4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4조 3,122억 8,400만원 중 4조 2,908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됨.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육아휴직 급여가 2조 524억 8,700만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4,870억 30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출산전후휴가급여(3,536억 8,900만원),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2,937억 9,800만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1,579억 7,000만원)순으로 집행규모가 컸음.

[2024년 고용장려금 유형 집행액 상위 5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세부사업	내역(내내역)사업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1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1,986,864	2,052,487	3,402,970
2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7,780	487,003	777,181
3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347,012	353,689	352,497
4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80,638	293,798	336,637
5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49,048	157,970	233,521
전체				4,312,284	4,290,816	5,681,04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창업지원

‘창업지원’ 유형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 초기지원’**, **‘창업금융’**, **‘사업화 지원’**, **‘인프라’**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됨.

창업 초기지원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한 창업보육, 기술・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고, 창업금융은 (예비) 창업자에게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투자하거나 융자해주는 것임.

사업화 지원 유형은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인프라 유형은 (예비) 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임.

2024년 창업지원 유형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2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3조 1,147억 2,200만원 중 3조 1,541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1.3%)됨. 당초 예산 보다 집행액이 큰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창업기반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1조 4,958억원) 대비 400억원 더 집행된 것에 기인함.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지원금제외)가 1조 5,358억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3,776억 5,6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TIPS(3,411억 4,7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3,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협력창업자육성(사내벤처육성 제외)(2,065억 600만원) 순으로 집행 규모가 컸음.

[2024년 창업지원 유형 집행액 상위 5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세부사업	내역(내내역)사업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1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1,495,800	1,535,800	1,035,800
2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	377,656	377,656	362,226
3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341,147	341,147	477,651
4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300,000	300,000	300,000
5	중기부	민관협력창업자육성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아기유니콘200육성,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지원, 글로벌기업협업(사내벤처육성 제외)	206,506	206,506	186,281
전체				3,114,722	3,154,122	2,884,123

주) 2025년 창업사업화지원의 일부 내역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실업소득 유지·지원

‘실업소득 및 유지·지원’ 유형은 근로능력은 있음에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2024년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은 고용노동부, 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1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12조 9,172억 300만원 중 14조 1,315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9.4%)됨.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큰 것은 경제상황 악화로 구직급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직급여 지출액이 당초 계획인 10조 9,143억 9,600만원 보다 8,260억 9,000만원 많은 11조 7,404억 8,600만원 지출된 것에 주로 기인함.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가 11조 7,404억 8,600만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8,767억 9,500만원),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지급(7,271억 9,800만원), 고용노동부의 조기재취업수당(5,442억 8,400만원), 고용노동부의 체불청산지원융자(융자) 사업(769억 1,800만원) 순으로 집행 규모가 컸음.

[2024년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 중 집행액 상위 5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세부사업	내역(내내역)사업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1	고용부	구직급여	-	10,914,396	11,740,486	10,917,074
2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836,243	876,795	882,899
3	고용부	대지급금지급	-	474,733	727,198	526,403
4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	463,837	544,284	525,484
5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융자(융자)	-	40,190	76,918	70,352
전체				12,917,203	14,131,524	13,095,38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지원고용 및 재활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은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유형임.

2024년 지원고용·재활 유형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1조 401억 300만원 중 1조 691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2.8%)됨.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큰 것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요 증가로 장려금 지출액이 당초 계획인 3,118억 7,200만원 보다 300억원 더 많은 3,418억 7,200만원 지출된 것에 주로 기인함.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3,418억 7,200만원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관리지원(2,480억 600만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2,226억 9,500만원),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874억 2,800만원),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528억 8,300만원) 순으로 집행 규모가 컸음.

[2024년 지원고용·재활 유형 중 집행액 상위 5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	세부사업	내역(내내역)사업	2024년		2025년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1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311,872	341,872	372,015
2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248,006	248,006	252,114
3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	222,695	222,695	233,332
4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88,585	87,428	60,611
5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52,883	52,883	52,856
전체				1,040,103	1,069,146	1,075,40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결산 개요

(1) 2024년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결산

2024년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예산 29조 1,913억 9,100만원 보다 1조 1,500억 400만원 많은 30조 3,41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3.9%)되었음.

예산 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및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로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이 예산보다 1조 2,143억 2,100만원 더 많이 집행된 것에 주로 기인함.

유형별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실업소득유지·지원유형이 14조 1,315억 2,400만원(46.6%) 집행되어 집행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고용장려금 4조 2,908억 1,600만원(14.1%), 직접일자리 3조 5,465억 6,200만원(11.7%), 창업지원 3조 1,541억 2,200만원(10.4%), 직업훈련 2조 4,503억 2,700만원(8.1%), 고용서비스 1조 6,988억 9,800만원(5.6%), 지원고용 및 재활 1조 691억 4,600만원(3.5%)순으로 규모가 컸음.

[2019~202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별 예산 및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직접일자리	2,858,729	3,159,901	3,207,940	3,224,399	3,222,404	3,556,914	3,546,562
직업훈련	2,243,409	2,264,796	2,478,897	2,730,051	2,525,724	2,611,234	2,450,327
고용서비스	1,199,429	1,733,043	1,892,151	1,774,515	1,456,640	1,638,931	1,698,898
고용장려금	5,345,944	7,600,214	6,524,632	5,063,417	4,688,093	4,312,284	4,290,816
창업지원	2,358,547	2,407,114	2,837,115	3,148,405	3,247,304	3,114,722	3,154,122
실업소득 유지·지원	11,493,725	13,348,060	13,773,185	13,440,441	13,603,708	12,917,203	14,131,524
지원고용 및 재활			866,845	966,901	987,373	1,040,103	1,069,146
합 계	25,499,783	30,513,128	31,580,765	30,348,129	29,731,246	29,191,391	30,341,395

주)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의 경우 2022년부터 별도 유형으로 관리
자료: 고용노동부

(2) 2024년 부처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결산

2024년 부처별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금액인 30조 3,413억 9,500만원 중 고용노동부가 61개 세부사업에서 22조 7,213억 8,100만원(74.9%)을 집행하여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보건복지부가 7개 세부사업에 3조 5,013억 3,200만원(11.5%), 중소벤처기업부가 19개 세부사업에 3조 1,861억 9,300만원(10.5%), 교육부가 6개 세부사업에 2,892억 7,700만원(1.0%), 산림청이 5개 세부사업에 1,305억 1,700만원(0.4%)을 집행하였음.

[2024년 주요 부처(500억원 이상 집행)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부처명	구분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합계
고용부	개수	1	9	18	15	1	9	8	61
	예산	12,654	2,369,233	1,540,302	4,021,411	1,056	12,860,608	794,328	21,599,592
	결산	11,680	2,208,876	1,600,909	3,999,949	1,056	14,075,540	823,371	22,721,381
복지부	개수	3	-	1	-	-	1	2	7
	예산	3,223,195	-	8,742	-	-	34,582	242,606	3,509,125
	결산	3,217,130	-	8,742	-	-	32,854	242,606	3,501,332
중기부	개수	-	2	2	1	12	1	1	19
	예산	-	30,173	6,641	121,685	2,973,486	15,008	3,169	3,150,162
	결산	-	30,155	6,604	121,685	3,013,372	11,208	3,169	3,186,193
교육부	개수	-	2	1	2	1	-	-	6
	예산	-	113,800	2,000	165,977	7,500	-	-	289,277
	결산	-	113,800	2,000	165,977	7,500	-	-	289,277
산림청	개수	5	-	-	-	-	-	-	5
	예산	133,177	-	-	-	-	-	-	133,177
	결산	130,517	-	-	-	-	-	-	130,517
여가부	개수	1	1	1	-	-	-	-	3
	예산	23,642	21,731	28,095	-	-	-	-	73,468
	결산	23,642	21,596	28,017	-	-	-	-	73,255
문체부	개수	3	5	2	-	3	-	-	13
	예산	24,694	10,350	2,848	-	31,265	-	-	69,157
	결산	24,679	10,268	2,848	-	30,782	-	-	68,577
환경부	개수	3	1	-	-	-	-	-	4
	예산	42,537	17,718	-	-	-	-	-	60,255
	결산	41,908	17,426	-	-	-	-	-	59,334
농림부	개수	-	1	1	2	3	-	-	7
	예산	-	8,000	11,081	1,405	75,726	-	-	96,212
	결산	-	8,000	11,046	1,405	75,726	-	-	96,177
과기부	개수	1	4	-	-	1	-	-	6
	예산	27,936	28,108	-	-	2,402	-	-	58,446
	결산	27,936	28,108	-	-	2,402	-	-	58,446
행안부	개수	1	-	-	-	1	-	-	2
	예산	63,343	-	-	-	11,868	-	-	75,211
	결산	63,343	-	-	-	11,868	-	-	75,211

주) 사업개수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3) 2024년 회계 및 기금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결산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실적을 회계 및 기금별로 살펴보면, 전체 집행금액 30조원 중 고용보험기금에서 17조 801억 5,000만원(56.3%)이 집행되어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일반회계에서 8조 1,166억 5,100만원(26.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2조 360억 300만원(6.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8,202억 300만원(2.7%),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8,041억 1,600만원(3.0%) 집행되었음.

특이사항으로는 ① 코로나19(2020~2021년)로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 사업 지출규모가 증가하였다가 2022년~2023년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지출액이 2020년 4,939억 6,300만원에서 2024년 8,202억 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③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대지급금 수요 증가로 2020년 5,989억 3,000만원에서 2024년 8,041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0~2024년 주요 회계 및 기금(1,000억원 이상 집행)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고용보험기금	15,203,889	18,604,419	18,099,826	16,643,615	16,640,554	16,200,021	17,080,150
일반회계	6,893,476	8,125,505	9,273,090	9,247,053	8,378,838	8,187,093	8,116,651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	1,802,788	1,822,380	2,210,168	2,114,631	2,213,504	1,996,150	2,036,003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493,963	569,611	650,785	733,589	754,061	791,160	820,203
임금채권보장기금	449,105	693,841	673,799	607,488	759,690	514,923	804,11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27,406	450,871	377,266	512,030	507,942	930,931	925,11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	-	181,938	181,938	249,438	249,438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48,087	53,352	63,991	73,389	73,192	111,608	111,351
합계	25,499,783	30,513,128	31,580,765	30,348,129	29,731,246	29,191,391	30,341,39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검토의견

(1) 총괄분석

첫째, 2022년 기준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은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유형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유형별 규모와 유형 간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기준 한국은 GDP 대비 1.02%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집행하였고, 이는 OECD 평균인 0.978%에 비해 0.042%p 높음.

세부유형별로는 ‘고용서비스’가 0.061%로 OECD 평균 0.109%에 비해 △0.048%p 낮았고, ‘직업훈련’은 0.081%로 OECD 평균 0.098%에 비해 △0.017%p 낮았으며, ‘보호 및 지원고용과 재활’ 유형이 0.039%로 OECD 평균 0.087%에 비해 △0.048%p 낮았음.

반면 ‘고용장려금’ 유형은 0.092%로 OECD 평균 0.090%에 비해 0.002%p 높았고, ‘직접일자리’ 유형은 0.139%로 OECD평균 0.035%에 비해 0.104%p 높았으며, ‘창업지원’ 유형은 0.043%로 OECD 평균 0.010%에 비해 0.033%p 높았음.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유형별 지출비율(2022년)]

(단위: %)

국가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장려금	보호 및 지원고용과 재활	직접 일자리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전체
캐나다	0.114	0.063	0.006	0.002	0.012	0.002	0.440	0.654
프랑스	0.260	0.347	0.047	0.082	0.066	0.033	1.700	2.540
독일	0.292	0.159	0.021	0.018	0.029	0.007	0.778	1.300
일본	0.066	0.012	0.205	0.010	0.002	-	0.183	0.477
스웨덴	0.350	0.057	0.350	0.224	-	0.007	0.259	1.250
미국	0.016	0.025	0.008	0.017	0.004	-	0.113	0.191
한국	**0.061**	**0.081**	**0.092**	**0.039**	**0.139**	**0.043**	**0.564**	**1.020**
OECD	0.109	0.098	0.090	0.087	0.035	0.010	0.529	0.978

자료: OECD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직접일자리’와 ‘창업지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임.[2)]

2) 2024년에도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GDP(2,549억 1,200억원) 대비 지출비율은 2022년과 유사하였음.

직접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나, 생산성이 다소 낮고 사업 참여 종료 이후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창업지원 유형의 경우 자금이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나 초기자본,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반면 직업훈련의 경우 단기에 고용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훈련 후 취업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중도탈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으나, 훈련 종료 후 숙련된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기대할 수 있음.[3)]

위와 같은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유형의 절대적인 규모 및 유형간 투입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일부 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고, 기존 재정일자리사업의 일부는 유형을 변경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매년 4~6월간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각 유형별 판단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세부사업 중 ① '여성과학기술인 R&D경력복귀 활성화 지원' 내내역사업은 결혼·임심·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는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또는 모성보호장려금)'의 성격이 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②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지원'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 R&D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또는 모성보호장려금)'의 성격이 있음.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유형별 지출비율>

(단위: %)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장려금	보호 및 지원고용과 재활	직접 일자리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전체
0.067	0.096	0.168	0.042	0.139	0.124	0.554	1.19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최근 감사원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만 고려하고, 퇴직 등으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인원을 대체하는 수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인력 수요와 공급 간 격차는 최대 8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 중 일자리 관련 내역사업]

내역사업(내내역사업)	예산('25년)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159억 4,000만원	
①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활성화 지원	71억 7,000만원	경력단절 과학기술인 연구활동 재개를 위한 R&D과제 지원('25년 299개 과제)
②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82억 7,000만원	육아기 재직 과학기술인 연구 유지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25년 331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 환류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고, 유사한 구조의 사업과 동일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효과 비교도 용이한 측면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활성화 지원' 및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4)]

한편,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종료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 등)에게 소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고용서비스'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음.

구직활동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구직급여'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으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고용서비스'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매해 소득지원 목적의 구직촉진수당지급액이 전체 집행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5)] '고용서비스'의 성격이 크다고 보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판단기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하였음.

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참여자들에게 15만원의 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원 추가 지급)과 취업 성공수당(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을 제공하고 있는데(2024년 합계 485억 3,000만원 지급) 이러한 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에서 수당의 성격을 가진 지출 비중은 더 커지게 됨.

어렵고, 현재와 같이 관리될 경우 ‘고용서비스’ 유형은 과다산정되고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은 과소산정되어 유형별 재원투입 규모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제주) 집행액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집행액 (A)	구직촉진 수당 지급액(B)	전체 집행액	구직촉진 수당 지급액	전체 집행액	구직촉진 수당 지급액	전체 집행액	구직촉진 수당 지급액
1,057,560	711,482	892,071	586,950	934,374	586,821	1,011,467	659,263
B/A: 67.3%		B/A: 65.8%		B/A: 62.8		B/A: 65.2%	

주) 2025년 6월 마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 직접 일자리 유형

첫째, 직접일자리유형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2024년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들의 취약계층참여율이 저조하였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고용정책의 지향점은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므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은 예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6)]

따라서 직접일자리는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시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바로 얻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24년 직접 일자리 유형 사업 중 취약계층[7)]참여비율(해당사업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수/해당사업 참여인원 수)이 낮은 사업들이 존재하였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2%, 산림청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은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6.7%, 문화체육관광부의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11.0%에 불과하였음.

[2024년 직접 일자리 유형 중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낮은(하위 5개) 사업]

(단위: %)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유형	취약계층 참여비율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이행형	3.2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노동시장이행형	6.7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이행형	11.0
유산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노동시장이행형	20.5
문체부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노동시장이행형	20.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고용정책론」, 김영중, p.129

7)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상 규정된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등 12개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약계층이 아닌 인원은 상대적으로 역량과 자생력을 가진 인원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없이도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직접일자리 사업 운영 시 취약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직접일자리 유형 중 노동시장 이행형의 경우 일 경험을 습득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나,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훈련·고용서비스 연계로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노인 등 특정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봉사·복지형'과는 다르게 '노동시장이행형'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을 습득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므로 사업 후 민간노동시장으로의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사업 참여 종료 이후 고용도 종료되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일자리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고용으로 이행하여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노동시장이행형 사업의 경우 훈련·서비스연계율(참여 종료 이후 180일 이내에 훈련,서비스 사업에 등록된 사람/해당사업 참여 인원 수)과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취업률(참여 종료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해당사업 참여인원 수)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 직접일자리 사업 후 민간노동시장으로 이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임.

예를들어,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사업은 훈련·서비스연계 실적이 없고 취업률은 16.8%였으며, 환경부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훈련서비스 연계가 없고 취업률은 17.9%임.

[2024년 노동시장 이행형 유형 직접일자리 사업 중 취업률 하위 5개 사업의 훈련 서비스 연계율]

(단위: %)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훈련 서비스 연계율	취업률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	16.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17.9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5.4	19.4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	23.7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24.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직업훈련이나 직업상담으로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등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행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직업훈련 유형

2024년 일부 직업훈련 사업들은 높은 중도탈락률, 훈련 종료 후 낮은 취업률, 취업 후 낮은 임금 등 관련 성과가 다소 저조하였으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전문학교운영)’** 사업은 중도탈락률(해당사업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해당사업 참여인원)이 각각 15.6% 및 28.7%로 높게 나타났음.

중도탈락률이 높은 사업들은 장기간 진행되는 직업훈련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은 1년 이상 진행되는 직업훈련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전문학교운영)’ 사업은 2년간 진행되는 직업훈련임.

중도탈락률이 높을 경우 참여자가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채 재원만 소요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장기훈련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고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직업훈련 유형 중 중도탈락률 상위 5개 사업]

(단위: %)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유형	중도탈락률
문체부	게임산업육성	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전문학교(게임인재원)운영)	구직자훈련	28.7
문체부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영화인역량강화 교육지원)	구직자훈련	18.7
과기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채용연계형SW전문인재양성	구직자훈련	16.8
고용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	일학습병행	15.6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구직자훈련	13.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의 ‘여성재취업훈련’ 및 ‘일반고특화훈련(구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8]사업 등은 취업률[9]이 35%미만으로 다소 낮았음.

---

8)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사업은 재직자 대상(819명), 석·박사 과정생(247명), 청년 대상(309명)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미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재직자’와 계속하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를 제외한 ‘청년’ 대상 취업률은 72.2%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음. 모수에 재직자가 포함될 경우 실제 취업률(훈련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이 과소평가되므로 향후 실제 구직자 취업률만을 별도로 산출하는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훈련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참여자 중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인원

[2024년 직업훈련 유형 중 훈련 참여 후 취업률 하위 5개 사업]

(단위: %)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유형	취업률
과기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구직자훈련	11.6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구직자훈련	32.0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평생크레딧 (K-디지털기초역량훈련)(구직자)	구직자훈련	32.3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구직자훈련	34.5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고특화훈련(구직자)	구직자훈련	34.7

주)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을 취득한 재직자와 계속하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생 교육인원을 제외한 청년 대상 취업률은 72.2%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의 ‘여성재취업훈련’ 및 ‘일반고특화훈련(구직자)’ 사업은 훈련 참여 후 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국내 1년 미만 경력자 평균임금(212만 8,173원)의 90%(약 191만 5,355원)에 미치지 못하였음.

[2024년 직업훈련 유형 중 취업 후 임금 하위 5개 사업]

(단위: %)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유형	임금수준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구직자훈련	31.9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고특화훈련(구직자)	구직자훈련	62.9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구직자훈련	87.1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	일반직종훈련(구직자)	구직자훈련	93.4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구직자훈련	93.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고졸청년과 같은 취업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인 ‘여성재취업훈련’ 및 ‘일반고특화훈련(구직자)’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취업률도 저조하고, 취업 후 임금도 낮았는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종료 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고용서비스 유형

고용서비스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기준 26.3%로,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인 30.3%에 비해 다소 저조하고, 특히 청년 선발형(24.7%), 비경활 선발형(16.4%)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게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며,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는 24만 7,546명이고, 이 중 수급기간 내 취업한 인원은 6만 5,068명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6.3%였음.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022년 28.1%에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1]	332,528	214,758	224,431	247,54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2]	83,859	60,264	61,051	65,06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5.2	28.1	27.2	26.3
	요건 심사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41,908	85,194	82,730	87,59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41,970	28,173	27,312	27,77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9.6	33.1	33.0	31.7
	청년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30,177	99,802	113,411	133,63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34,086	27,590	29,055	32,967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6.2	27.6	25.6	24.7
	비경활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60,443	29,762	28,290	26,31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7,803	4,501	4,684	4,325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12.9	15.1	16.6	16.4

주 1) (A): 해당년도 1회차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자(심사결정일 기준 해당년도에 기재)
2) (B): (A)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창업일자가 구직촉진수당 지급계획 기간 내에 있는 자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마감 기준)

반면 2024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30.6%로, 2020(26.8%)~2024년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현황]

(단위: 천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재취업률			재취업률			재취업률			재취업률			재취업률
1,211	325	26.8	1,337	359	26.9	1,211	339	28.0	1,237	374	30.3	1,244	380	30.6

주) 수급인원: 수급종료자 기준, 자영업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와 재취업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직장경험이 없는 청년·경력단절여성·노무제공자 등 불완전취업자와 같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직활동의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수급자의 구직활동 어려움이 심화되는 점과, 2024년 구직촉진수당 수요증가로 당초 예산 6,718억 3,800만원 보다 814억 4,600만원 많은 7,532억 8,400만원이 집행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세부적으로는 청년 선발형(24.7%), 비경활 선발형(16.4%)의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는데, ① 청년의 경우 소득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더라도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참여기간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지원금 수급을 위한 시간보냄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②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일 경험 부족을 해소하고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동안 수급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고용장려금 유형

고용장려금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중심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운영으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동 예산이 편성된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와 연관성이 직접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의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들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음. 2001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당시 모성보호가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인식하에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된 것임.[10)]

육아휴직급여 등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재원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특히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2025년 모성보호급여 지급액 인상 등의 제도개선으로 전년 대비 지출계획액이 1조 4,487억원 증가하여 실업급여 계정지출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5%까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못하였고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15.5%에서 2025년 13.7%로 감소하였음.[11)]

---

10) 제도 도입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1.6.) 〉

> 주 문
> 대한민국국회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하여 우선 고용보험 적용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1. 정부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 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 2.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11) 모성보호급여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연도 중에 계획을 변경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급여계정의 부담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2020~2025년도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 급여(B)	비율 (B/A)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C)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2015년	54,978	8,859	16.1	2,590	6,269	700	7.9
2016년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2017년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년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년	98,558	13,500	15.1	2,701	10,799	1,400	10.4
2020년	138,860	15,614	11.2	2,942	12,671	1,800	11.5
2021년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년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년	143,307	22,615	15.8	3,342	19,273	3,000	13.3
2024년	151,541	25,738	17.0	3,633	22,105	4,000	15.5
2025(안)	157,775	40,225	25.5	3,860	36,365	5,500	13.7

주) 2015~2024년은 결산값이며 표의 ‘출산전후휴가급여’ 항목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를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에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포함됨.

자료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정이 실업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계정임을 고려할 때,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 부담으로 기금계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12)]

또한 고용보험가입자 중심으로 육아휴직급여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충족자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들(급여 사각지대), ②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를 미적용받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들(제도적 사각지대)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12) 게다가 실업급여계정은 2020~2024년간 「고용보험법」 제84조제2항 2호에 따른 법정적립배율(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연례적으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 범주화]

<table>
<tr><td colspan="8">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과 남성</td></tr>
<tr><td rowspan="5">비경제활동
인구</td><td rowspan="5">실업자</td><td></td><td colspan="4">취업자</td><td></td></tr>
<tr><td>비임금</td><td>근로자</td><td colspan="3">임금근로자</td><td></td></tr>
<tr><td rowspan="3">무급가족
종사자</td><td rowspan="3">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td><td rowspan="2">적용제외</td><td colspan="3">고용보험 적용대상</td><td></td></tr>
<tr><td>미가입자</td><td colspan="2">가입자</td><td></td></tr>
<tr><td>초단시간</td><td>영세사업장,
비정규직</td><td>퇴사자</td><td>자격
미충족자</td><td>육아휴직
급여
수급자</td></tr>
<tr><td colspan="3">〈제도적 사각지대〉</td><td colspan="3">〈급여 사각지대〉</td><td></td></tr>
</table>

자료 : 고용노동부

실제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주 수혜 연령대인 20~49세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약 1,557만 2,000명이지만 해당 연령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상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약 976만 9,000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약 580만 3,000명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 수 비교]

(단위: 천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A) (상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606	1,707	1,969	1,702	1,947	1,838	9,769
경제활동인구 (B)	1,114	2,588	2,941	2,676	3,119	3,134	15,572
(B-A)	508	881	972	974	1,172	1,296	5,803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및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4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 입(a)	13,628,678 (10,328,678)	14,814,055 (10,840,080)	13,567,529 (13,120,717)	14,387,917 (14,387,917)	14,910,478 (14,910,478)
사업비(b)	13,885,952	14,413,779	14,132,507	14,330,660	15,154,139
수지차(a-b)	△257,275 (△3557,275)	400,277 (△3,573,699)	△564,978 (△1,011,790)	57,258 (57,258)	△243,662 (△243,662)
연말적립금	3,866,572 (566,572)	4,266,495 (△3,007,480)	3,695,306 (△4,025,481)	3,752,509 (△3,968,278)	3,508,310 (△4,212,477)
적립금배율	0.3 (0.0)	0.3 (△0.2)	0.3 (△0.3)	0.3 (△0.3)	0.2 (△0.3)

주) 괄호 안은 공공자금 예수금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최근에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확산되고 있고 사람은 일생 동안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모성보호지원제도가 지속될 경우 사각지대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호를 받는 집단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 간 불평등 문제와 불안정성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현재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휴직 개념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은 실업급여 계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과 기금 계정의 건전성 확보,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재원 구조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13)]

13) 대다수 해외국가는 일반조세 또는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여 육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국가별 모성보호육아휴직지원제도 관련 재원 〉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캐나다	일본
일반조세	일반조세	일반조세	부모보험기금	가족수당기금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자료: 고용노동부

(6) 창업지원 유형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는 단순 사업화자금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및 수출바우처 연계지원 등 창업기업에 대한 복합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계지원의 실적이 일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계지원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30억 9,600만원 중 1,030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4]

[2024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창업사업화지원	377,656	377,656	-	-	377,656	377,656	-	-	403,567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103,096	103,096	-	-	103,096	103,096 [102,503]	-	-	130,996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딥테크 분야[15]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초격차 분야 중에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우량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화자금 등 창업자금과 R&D 지원,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함.[16]

이 사업은 그 중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창업 후 10년이 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우량 기업에게 매년 2억원(평균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종료 후에는 매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추가 후속지원도 제공함. 특히 다른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직접적인 사업화자금 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

14)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5132-302)(창업벤처혁신실)

15) 딥테크(deep tech) 분야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로서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술분야를 의미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 등이 있음.

16) 동 사업은 2020~2022년 ‘BIG3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사업’,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분야) 사업’,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지원분야가 각각 3개, 5개, 10개로 확대되었음.

증, R&D 지원, 수출바우처 등 다른 창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심사 간소화 및 가점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연계지원하고 있음.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503개 지원 기업 중 정책자금 융자 지원기업은 73개사(14.5%), 기술보증 지원기업은 199개사(39.6%) 및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은 79개사(15.7%)로, R&D 지원을 제외한 연계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지원기업 (B1)	지원율 (B1/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2)	지원율 (B2/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3	4.5	300	24	36.4	1,233
바이오헬스	156	14	9.0	517	66	42.3	1,364
미래 모빌리티	91	22	24.2	978	35	38.5	1,164
친환경에너지	55	11	20.0	969	23	41.8	1,512
로봇	57	16	28.1	256	27	47.4	1,201
빅데이터・AI	35	2	5.7	625	11	31.4	1,911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2	9.5	200	7	33.3	964
우주항공・해양	12	3	25.0	233	4	33.3	874
차세대원전	5	-	-	-	1	20.0	200
양자기술	5	-	-	-	1	20.0	1,235
계	503	73	14.5	458	199	39.6	1,308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R&D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B3)	지원율 (B3/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4)	지원율 (B4/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50	75.8	432	9	13.6	31.6
바이오헬스	156	91	58.3	823	18	11.5	39.5
미래 모빌리티	91	59	64.8	928	12	13.2	33.8
친환경에너지	55	41	74.5	512	11	20.0	34.6
로봇	57	40	70.2	422	16	28.1	36.1
빅데이터・AI	35	27	77.1	555	7	20.0	30.8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8	38.1	304	5	23.8	32.6
우주항공・해양	12	5	41.7	462	1	8.3	45.0
차세대원전	5	3	60.0	270	-	-	-
양자기술	5	3	60.0	424	-	-	-
계	503	327	65.0	5,132	79	15.7	3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육성’ 사업은 혁신·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나, 지원대상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아기유니콘육성’ 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20억원 중 220억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24년도 아기유니콘육성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06,506	206,506	-	-	206,506	206,506	-	-	186,281
아기유니콘육성	22,000	22,000	-	-	22,000	22,000 [19,549]	-	-	(22,000) 이관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아기유니콘육성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시장개척자금 3억원 및 글로벌 컨설팅, IR, 금융 등 다양한 후속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지원체계]

후속지원강화	특별보증 최대 50억(기보)	+	이차보전사업	+	아기유니콘 플러스
글로벌 진출	글로벌 IR	+	글로벌 컨설팅	+	글로벌 박람회
신시장 진출	시장개척자금 3억원	+	[투자 연계] 국내외 VC와 IR	+	북미시장 진출지원
금융 + R&D	투자조건부융자 (중진공)	+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중진공)	+	중기부 R&D우선권(기정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선정된 50개 기업 중 40개(80%) 기업이 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이고, 2020~2024년 선정된 300개 기업 중 243개(81%)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며, 비수도권 기업은 57개(19%)에 불과하였음.

[2020~2024년 아기유니콘육성 사업 지역별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0년	7	1	-	-	2	1	-	28	-	-	1	-	-	-	-	40
'21년	16	-	-	1	1	2	2	32	-	-	2	-	-	2	1	59
'22년	18	2	4	3	1	3	4	58	-	1	1	2	1	1	1	100
'23년	10		1	1	1	2		29	1	1	1	1	1	1	1	51
'24년	11	2	1	2	-	3	-	27	-	-	2	1	-	1	-	50
합계	62	5	6	7	5	11	6	174	1	2	7	4	2	5	3	3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지역의 인프라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정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산업 공동화, 인재 유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역량 및 생태계 양극화 등의 문제도 우려됨.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

첫째,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최근 반복수급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구직급여 의존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 지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단기취업 등의 고용 관행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반복수급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 규모의 추이를 보면,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한 반복수급자는 2020년 9만 3,019명에서 2024년 11만 2,823명으로 1만 9,804명(2020년 대비 21.3%) 증가하였고,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0년 4,799억 6,700만원에서 2024년 5,803억 9,500만원으로 1,004억 2,800만원(2020년 대비 20.9%) 증가하였음.

[2020~2024년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수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1회 수급자	1,282,797	9,386,898	1,328,909	9,546,616	1,194,322	8,499,025	1,197,344	8,609,298	1,207,072	8,877,368
2회 수급자	326,697	1,983,563	344,964	2,012,253	334,467	1,910,686	364,028	2,144,204	377,201	2,281,439
3회 수급자	64,996	355,582	71,040	372,795	71,891	368,063	78,366	416,669	80,764	440,677
4회 수급자	15,522	73,481	16,675	75,458	17,371	78,267	18,102	81,375	18,139	84,092
5회 이상 수급자	12,501	50,904	12,776	50,672	13,059	52,239	13,709	54,204	13,920	55,626
합계	1,702,513 (100.0)	11,850,428 (100.0)	1,774,364 (100.0)	12,057,794 (100.0)	1,631,110 (100.0)	10,908,280 (100.0)	1,671,549 (100.0)	11,305,750 (100.0)	1,697,096 (100.0)	11,739,202 (100.0)
3회 이상	93,019 (5.5%)	479,967 (4.0%)	100,491 (5.7)	498,925 (4.1%)	102,321 (6.3%)	498,569 (4.6%)	110,177 (6.6%)	552,248 (4.9%)	112,823 (6.6%)	580,395 (4.9%)

주) 괄호안의 숫자는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빈번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단기고용 등의 왜곡된 고용관행을 야기하거나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에 의존해 구직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개선되어야할 문제임.

반복수급자 증가의 원인은 ① 높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202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25%)에 따른 고용불안정, ②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일자리의 월급보다 구직급여 한 달 분이 더 많아 실업자가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17]

(1) 높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에 따른 영향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25%가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한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안정성이 낮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약 25%가 한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며, 전체 한시적 근로자 562만 8,000명 중 499만 9,000명(88.8%)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었음.

[2020~2024년 비정규직 고용동향]

(단위: 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금근로자	20,446 (100%)	20,992 (100%)	21,724 (100%)	21,954 (100%)	22,143 (100%)
정규직	13,020 (64%)	12,927 (62%)	13,568 (63%)	13,832 (63%)	13,685 (62%)
비정규직	7,426 (36%)	8,066 (38%)	8,156 (38%)	8,122 (37%)	8,459 (38%)
한시적 근로자	4,608 (23%)	5,171 (25%)	5,348 (25%)	5,259 (24%)	5,628 (25%)
기간제	3,933 (19%)	4,537 (22%)	4,689 (22%)	4,809 (22%)	4,999 (2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해당 유형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17) 짧은 수급기간이 반복수급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급기간이 반복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타나는 원인은 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계약 관행, ②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한 수급요건, ③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급 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하한액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 2025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당시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사유별 구직급여 수급현황을 보더라도 경영상 필요(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에 따른 실업에 이어 계약만료나 공사종료로 인한 실업을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가 많았음.

[2020~2024년 실업사유별 구직급여 수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분류	2020		2021		2022		2023		2024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지급 인원	지급 금액	지급 인원	지급 금액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51,701	376,188	56,225	413,801	56,479	423,504	53,521	403,660	48,983	376,207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3,017	170,306	24,283	178,302	21,081	156,233	22,295	161,217	24,345	179,326
폐업, 도산	69,326	490,282	63,746	442,801	59,199	404,566	60,958	423,510	59,400	430,598
경영상 필요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750,650	5,564,150	729,771	5,369,304	625,121	4,517,872	655,105	4,750,392	667,646	5,000,684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장계해고, 권고사직	61,578	429,491	58,218	401,559	54,004	374,357	50,958	358,892	51,358	365,418
정년	55,867	594,582	66,851	718,973	65,624	691,950	67,535	736,888	66,031	710,197
계약만료, 공사종료	532,987	3,501,235	611,907	3,909,008	623,969	3,994,692	617,841	4,022,436	613,412 (40.0%)	4,140,786 (36.9%)
기타	60	243	64	241	341	843	2,261	11,311	3,148	15,750
합계	1,545,186	11,126,477	1,611,065	11,433,989	1,505,818	10,564,016	1,530,474	10,868,306	1,534,323 (100.0)	11,218,966 (100.0)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단기고용(한시적 근로자)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인상해[18] 필요 이상의 과도한 단기고용을 완화하고,[19]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2024.7.19.)하였음.

19)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도록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조정에 신중해지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형성됨. 또한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도록 한 사업장은 더 많은 보험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구직급여 의존에 따른 영향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는 구조로 지급되고 있음.「고용보험법」 제45조[20]와 제46조[21]에 의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임.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변화가 없으나,[22]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상한일액과 하한일액의 차이가 1,808원에 불과해 사실상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음.[23]

[2020~2025년 구직급여 상한일액 및 하한일액]

(단위: 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한일액(A)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하한일액(B)	60,120	60,120	60,120	61,568	63,104	64,192
차이(A-B)	5,880	5,880	5,880	4,432	2,896	1,808
상한액 대비 하한액 (B/A)	91.1	91.1	91.1	93.3	95.6	97.3

자료: 고용노동부

20)「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 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1)「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 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2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3) 구직급여의 경우 직장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수급자는 2025년 기준으로 최소 179만 7,376원에서 최대 184만 8,000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운영구조로 인하여 2025년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수령액 보다 구직급여일액의 월환산액이 더 크고,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보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최저임금 근로자는 한 달에 약 187만원[24]을 받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한 달에 약 192만 5,760원(8,024원×8시간×30일)을 수급할 수 있음.[25]

[2025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월환산액 비교]

(단위: 원,%)

1일 소정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A)	구직급여일액의 월 환산액(B)	최저임금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월환산액 대비 월 실수령액 비율(B/A)
1시간	189,694	240,720	126.9
2시간	399,840	481,440	120.4
3시간	717,880	722,160	100.6
4시간	954,130	962,880	100.9
5시간	1,184,960	1,203,600	101.6
6시간	1,415,250	1,444,320	102.1
7시간	1,641,045	1,685,040	102.7
8시간	1,870,601	1,925,760	102.9

주 1)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주 소정근무일수는 5일로 가정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미포함)

2) 구직급여일액의 월 환산액: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30일

자료: 고용노동부

일을 할 때 보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 소득이 높아지고 실업자가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한다는 구직급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26]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7]

---

24)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09만 6,270원(10,030원×209시간)의 월 임금을 받음. 그러나 부양 가족이 없고 비과세액이 0원인 경우 국민연금(9만 4,330원)・건강보험(7만 4,310원)・장기요양보험(9,620원)・고용보험(1만 8,860원)・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87만원임.

25)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 등과 같은 복지지원제도와 세제혜택을 활용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 은 실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26)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2023년 7만 1,483건에 이어 2024년 9만 8,075건에 이르고 있음.

둘째,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로 재취업활동을 인정 받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를 통한 재취업활동의 실효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업인정 방식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①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60세 미만은 최대 2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취업특강을 통한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이 없고, ② 60세 미만의 경우 자원봉사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자원봉사 또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2020~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온라인교육와 자원봉사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현황을 보면 비중이 점차 증가('20년:6.4%→'24년: 49.5%)하고 지급액 또한 증가('20년:1,518억 1,700만원→'24년:1조 4,919억 4,800만원)하고 있음.

27) 추가로 고용보험료는 법에서 보험료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득에 증가하면 보험료도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임을 감안하더라도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 급여 혜택 간에 불균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예를들어 구직급여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 별 수급현황을 보면 직전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는데,

〈2020~2024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 별 수급현황 〉

(단위: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전체	1,702,725	11,855,625	1,774,614	12,062,473	1,631,270	10,910,504	1,671,623	11,307,120	1,697,150 (100.0)	11,740,341 (100.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828,787	5,912,683	827,186	5,754,506	715,228	4,906,350	670,306	4,666,038	613,010 (36.1%)	4,372,720 (37.2%)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381,444	3,044,533	444,315	3,377,938	427,167	3,221,067	514,496	3,814,701	608,181 (35.8%)	4,512,182 (38.4%)

자료: 고용노동부

이들은 고용보험료 납부액 차이(24개월 근무 시 직전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와 350만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 차이는 32만 4,000원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금액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함.

[2020~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건수 및 구직급여 지급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실업인정건수		1,773,312	1,926,718	1,861,477	2,017,455	2,158,667
	온라인교육(A)	104,126 (5.9%)	289,092 (15.0%)	456,806 (24.5%)	716,733 (35.5%)	1,006,568 (46.6%)
	자원봉사(B)	8,401 (0.5%)	7,346 (0.4%)	12,191 (0.7%)	54,891 (2.7%)	62,171 (2.9%)
	A+B	112,527 (6.4%)	296,438 (15.4%)	468,997 (25.2%)	771.624 (38.2%)	1,068,739 (49.5)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2,512,199	2,719,887	2,602,164	2,866,641	3,096,873
	온라인교육(A)	138,456 (5.5%)	376,076 (13.8%)	664,373 (25.5%)	984,589 (34.3%)	1,392,850 (45.0%)
	자원봉사(B)	13,361 (0.5%)	11,408 (0.4%)	18,746 (0.7%)	86,179 (3.0%)	99,098 (3.2%)
	A+B	151,817 (6.0%)	387,484 (14.2%)	683,119 (26.2%)	1,070,768 (37.3%)	1,491,948 (48.2%)

주) 1~8차 기간 동안의 실업인정 건수 및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자료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실업인정 건수 및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에서 해당 건수와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의 재취업 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구직급여는 최대 8회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취업특강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60세 이상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12.2%, 자원봉사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60세 이상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8.7%에 불과하였음.[28)]

28) 60세이상 70세 미만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22년부터 2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0~2024년 연령대별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

연령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60세 이상 70세 미만	345,989	23.8	392,834	23.9	385,142	25.4	410,851	26	437,637	25.8
70세 이상	9,497	6.5	10,962	6.7	11,562	8.5	13,712	9.2	16,627	9.4

주 1) 수급자 수: 자영업자 제외, 구직급여(연장포함), 2년에 걸쳐 수급하는 경우 각각 포함

2) 재취업률: 수급 중 재취업자수 / 수급 종료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반면 온라인취업특강과 봉사활동을 제외한 구직 외 활동(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중 같은 활동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60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24년 21.1%로 나타났음.

[온라인특강자원봉사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단위: 명, %)

재취업활동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온라인 취업특강	20,994	7.4	61,068	10.5	100,676	12.3	145,393	12.1	168,589	12.2
자원봉사	1,364	9.3	1,783	7.3	4,001	9.0	13,367	8.5	13,212	8.7
구직 외 활동 전체	172,382	22.1	232,101	21.1	235,863	21.9	275,640	21.7	294,330	21.1

주 1) 수급자 수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 각각 포함
2) 재취업활동별 중복 가능(취업특강 3회, 봉사활동 3회 인정 시 각각에 포함),
3) 구직외활동 전체는 온라인취업특강, 봉사활동 외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모든 구직 외 활동 중 같은 활동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받은 수급자
4) 자영업자 제외, 구직급여(연장포함), 60세 이상 수급자 기준
5) 재취업률: 수급 중 재취업자 수/ 수급 종료자 수
6) 전문위원실 요청에 따라 추출한 통계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통계는 아님
자료: 고용노동부

제한적인 재취업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구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행 중이며, 해당 방안에는 ① 60세 미만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은 기존 3회에서 2회까지만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나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제한없는 취업인정이 현행 유지되었으며, ② 자원봉사의 경우 활동 인정을 확대하여 1365자원봉사포털(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VMS자원봉사포털(보건복지부)를 통한 봉사활동도 인정하게 됨.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구분		현행			개선	
재취업 활동 기준	횟수 제한	〈횟수제한〉		→	〈횟수 제한〉	
		60세 미만	취업특강(3회), 직업심리검사(1회), 심리안정프로그램(1회)		60세 미만	•취업특강(2회까지 인정), 그 외 현행 유지
		60세 이상 및 장애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횟수 제한 없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60세 이상, 장애인은 현행유지하되 60~64세는 구직활동으로 유도
		〈자원봉사: 60세 이상, 장애인〉 •횟수: 제한없음 •기준: 1일 4시간 이상, 같은 날 봉사활동만 합산 가능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 60세 이상, 장애인〉 •횟수: 현행유지 •기준: 현행유지 •1365(행정안전부)외 VMS(보건복지부)포털 추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 취지상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60세 이상 수급자는 법정 정년 이후인 특성이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여건이 녹록지 않으므로 실업인정 요건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경제 및 사회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취지에서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① 자원봉사의 경우 구직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하고 있어 구직급여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②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26년 약 798만명 → '34년 약 843만명)로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지출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업인정 방식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지원고용·재활 유형

지원고용·재활 유형 사업의 주요 재원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률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조 2,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29)]

[2019~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639,032	793,130	807,319	827,571	879,340	1,013,735
지출(B)	484,896	591,140	685,848	772,194	865,954	935,797
사업비지출	420,378	519,138	610,819	693,356	784,648	851,734
수지차 (A-B)	154,136	201,990	121,471	55,377	13,386	77,938
적립금	1,310,840	1,521,783	1,650,715	1,705,932	1,736,776	1,830,333
여유자금	910,106	967,340 (6.3)	1,099,564 (13.7)	1,105,144 (0.5)	1,135,584 (2.8)	1,229,552 (8.3)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400,000	553,890	550,000	600,000	600,000	600,000
한국은행 예치금	734	553	1,151	788	1,192	781

주 1)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수입(A) = 부담금 등 자체수입(공자기금 회수액 및 이자, 여유자금 회수 제외)
지출(B) = 사업비+운영비(공자기금 예탁금, 여유자금 지출 제외)
여유자금 = 누적금액
2)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2021년 5,500억원에서 2022년 6,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 매해 6,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립금은 약 1조 8,303억원으로, 사업비지출액 8,517억원의 2배 이상임.

29) 고용노동부는 사업비(공단 인건비 등 운영비 포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운용수입 누적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사업비(공단 인건비 등 운영비 포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운용수입 누적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생산가능 장애인구와 장애인 일자리 기회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수단을 폭넓게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30]

그러나 장애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5년간 48%~50%대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매해 전년대비 장애인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음.

[2020~2024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8.0	49.0	50.3	49.8	48.4

주)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상황과 외부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고용의무 이행 강화 등으로 의무고용 사업체(약 3만개)의 장애인 고용률[31] 및 중증 장애인 비중[32]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였음.

[2021~202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추진 현황]

연도	신규사업 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
2021	**('21년 6,789억원)** 저임금 중증장애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지원 -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원),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2022	**('22년, 7,663억원, 전년대비 874억원 증가)** 신규고용장려금* 신설(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8→10천명) *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시 月 30~80만원, 12개월 지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상향('22년 3.6%),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장애인공무원까지 확대

3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 개선, 연계고용 적용 대상 확대, 고용컨설팅 제공, 디지털훈련센터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등

31) 장애인고용률(%): ('20) 3.08% → ('21) 3.10% → ('22) 3.12% → ('23) 3.17% → ('24) 3.21%

32) 중증장애인비중(%): ('20) 29.9% → ('21) 31.9%→ ('22) 33.7% → ('23) 35.0% → ('24) 35.8%

연도	신규사업 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
2023	**('23년, 8,478억원, 전년대비 815억원 증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 및 인턴제 단가 인상,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 〈'23〉 2,977억 ↳ 지원수준(만원): 男·경증 30→35, 女·경증 45→50, 男·중증 60→70, 女·중증 80→90 * 장애인인턴제 : 〈'22〉 32억(월 최대 80만원) → 〈'23〉 46억(월 최대 100만원)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22〉 2,047억(1만명) → 〈'23〉 2,270억(+500명)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 〈'22〉 26억(3.9천명) → 〈'23〉 69억(15천명) ↳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2024	**('24년, 9,053억원, 전년대비 575억원 증가)**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표준사업장·디지털 훈련센터(+4개소) 확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상향('24년 3.8%) * 중증장애인출퇴근비용지원(월 7만원(+2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3,119억, +302억)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확대(13천명, +2천명)·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근로지원인(11천명, +5백명), 중증장애인 인턴(1천명, +3백명)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172개소, +25개소), 보조공학기기(15천점, +1천점)
2025	**('25년, 9,372억원, 전년대비 319억원 증가)** 고용장려금 확대 및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지원한도 10억→15억 상향, 30억, 10개소),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및 디지털훈련센터 확충(+3개소) * 장애인고용장려금: 3,774억(+540억, 76만명(+13만명), 취업성공패키지: 265억(+18억, 14천명(+1천명))

자료: 고용노동부

지속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고용률이 정체 상태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33)]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률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34)]

33) 기금의 적립금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사업확대를 통한 사업비 증대뿐만 아니라 수입원인 부담금 등을 감면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측면에서 수입에 대한 제도개선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4) 참고로 2022회계연도 결산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편성된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동 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편성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총괄 보고서(재정지원 일자리)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재정지정 일자리사업 세부 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8,844	18,84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어 관리 필요
고용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1,003,391	1,002,899	'고용서비스' 유형에서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으로 관리 필요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고용부	모성보호 육아지원	2,573,841	2,573,780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구조 개편 필요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377,656	403,567	복합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계지원의 실적 부진
중기부	민관협력창업자 육성	206,506	186,281	지원대상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비수도권지역의 우수기업 발굴 노력 필요
고용부	구직급여	11,787,793	11,740,486	반복 수급자 관리 필요 및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요건 개선 필요

5. 재난안전 대응

가. 개요

(1) 개념 및 유형

‘재난안전사업’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함)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법률상 정의만으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2] 실무상으로도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내용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3]안에서 통합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가 통합된 ‘재난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재난관리·안전관리 정의 및 특성]

구분	재난관리	안전관리
정의[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특성[2]	대규모 재난 중심, 일사분란한 명령과 통제 시스템 필요	다양한 분야의 예방적 관리 중심, 다양한 관리주체에 의한 분산 관리

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
2)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및 ‘재난 외 각종 사고’로 구분되고 있고, 재난은 다시 피해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고 있음.[4]

---

1) 국회예산정책처(2017), 「재난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5쪽.

2) 「재난안전법」 문언상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관련 활동’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대상범위를 갖지만, 안전관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대상범위로 하고 있어 개념상 재난관리에 해당하는 활동들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재난안전법」 문언상 사회재난의 원인 중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포함되어 있어 ‘재난’과 ‘사고’의 개념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3)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구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단일한 종합계획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4) 「재난안전법」상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을 세부 전략(전략4-5.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을 통해서 별도로 대응하도록 구성되고 있음.

이 구분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사회재난은 ‘자연현상 외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각각 구분될 수 있음. 또한 「재난안전법」상 ‘재난 외 각종 사고’가 재난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있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이에 대응하는 ‘안전사고’라는 별도의 유형이 반영되고 있음.[5)]

[재난안전관리의 대상]

유형구분		정의
「재난안전법」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자연재난	자연재난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가목**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풍수해, 대설, 가뭄, 한파, 폭염, 황사, 산지재해, 지진, 조류
사회재난	사회재난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화재, 폭발, 산불, 건축물 붕괴, 교통사고,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해양·유도선사고, 해양오염, 수질오염,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재난, 감염병, 가축 및 수산생물전염병
재난 외 각종 사고	안전사고[주)]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25쪽** 승강기 사고, 전기·가스 사고, 등산·레저 사고, 물놀이 사고, 생활제품 사고, 식품사고, 의료제품사고, 범죄, 자살, 사업장 산재, 농어업사고, 안전취약계층 사고

주)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상 유형. 「재난안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안전사업의 범위는 실무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사업은 예산안 편성 시 사전협의 단계에서 각 부처의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고 있음.

5) 「재난안전법」상 ‘재난 외 각종 사고’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안전사고’라는 별도 유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음.

「재난안전법」의 정의상 재난안전의 유형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재난 외 각종 사고’ 등으로 구분되고 있고, 그 외 ‘해외재난’이 따로 구분되고 있음. 또한 「재난안전법」은 구성상 단계별로 예방 단계(제4장), 대비 단계(제5장), 대응 단계(제6장) 및 복구 단계(제7장)를 구분하고 있음.

정부는 이상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재난안전사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의 수립 및 같은 기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편성 시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6)]

제4차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자연재난’이 피해유형에 따라서 구분되고, ‘사회재난’과 ‘재난 외 각종 사고’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일반’ 유형을 따로 두어 「재난안전법」상 단계 구분에 대응하는 3개 유형(재난·사고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 및 ‘해외 재난’을 포함시키고, 그 밖에 교부세 등 재원이 특수한 사업들은 ‘기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분야	피해유형 (42개)		내용
자연재난 (9개)	풍수해		*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포함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 녹조, 적조 포함
	대설·한파		
	폭염		
	낙뢰 등 기타		* 낙뢰, 화산활동,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8개)	화재·폭발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 시설물 범위: 저수지, 댐, 문화·관광·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정시설, 자연휴양림시설,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도로, 교량, 정수장, 주거시설, 터널, 재래시장 등 * 피해 범위: 화재·폭발을 제외한 붕괴, 지반침하, 공동구, 추락, 낙상, 파손 등 * 단, 풍수해에 대비하여 저수지, 댐 등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은 풍수해 피해유형으로 분류
	교통재난·사고	도로교통	* 자전거 사고 포함
		철도교통	* 지하철, 고속철도 등 포함

6)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지침의 사업유형별 지침에 ‘32. 재난안전사업’ 장이 신설되었음.

분야	피해유형 (42개)		내용
		항공교통	
		선박	* 해양선박 사고, 해수면유도선 사고, 내수면유도선 사고 포함
	방사능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환경오염	미세먼지	
		수질오염	
		해양오염	
	국가기반체계 마비		* 에너지(전력, 가스, 석유 등), 통신(통신망, 전산망, GPS 등), 교통(도로, 철도, 항공, 항만, 지하철, 화물 등), 금융, 의료(의료서비스, 혈액 등), 수도(식용수 등), 공공청사, 쓰레기 매립지
	감염병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전기・가스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등산・레저	* 수상레저 제외
		물놀이	* 수상레저 포함
		생활제품	
	산업재난・사고	사업장 산재	* 산업단지, 건설현장, 연구실 포함
		농어업 사고	
	식품 사고		
	의료제품 사고		* 의약품, 의료기기 포함
	안전취약계층 사고		*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사업(타 유형에 포함되더라도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 유형으로 분류) *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 등
	범죄		* 성・가정・학교폭력 등
	자살		
	전시재난・테러		
재난안전 일반 (5개)	재난・사고 예방		* 안전문화, 교육, 점검・진단, 홍보, 안전산업 등
	재난・사고 대비・대응		* 119 구급・구조, 응급의료 등
	재난・사고 복구		* 예비비, 재해대책비, 재난심리회복 지원, 재난구호지원 등
	해외재난		* 재외국민보호 등
	기타		* 교부세 포함

자료:「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118-119쪽.

한편, 같은 기간(2020-2024)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는 이와 다른 구분을 채택하고 있음. 자연재난 9개 유형은 기본계획과 동일하지만,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은 28개가 아닌 26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고,[7] 5개 '재난안전 일반' 유형은 8개 '공통'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구분기준에도 일부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재난안전 일반' 5개 유형은 단계별 구분에 따른 3개 유형(예방, 대비·대응, 복구), 해외재난, 기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예산안 사전협의(안) 등의 '공통' 8개 유형 일부는 사업내용('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재난 구호 및 복구', '재난안전관리체계'), 피해대상('국가핵심기반 사고'), 피해계층('안전취약계층 지원', '해외재난 관리') 및 재원특성('교부세, 국제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안) 및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재난 (9개)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산사태		「사방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산사태(산지붕괴), 토석류 등
	가뭄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
	지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황사		황사 발원지에서 대기를 통해 넘어 온 흙먼지 피해
	조류		하천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녹조, 적조 등
	대설·한파		폭설 및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폭염		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낙뢰 등 기타		낙뢰, 화산활동,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6개)	화재·폭발		건축물, 차량, 선박, 문화재 시설 등의 화재 및 폭발
	산불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이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불에 타는 재난·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기반시설, 지하시설,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 풍수해에 대비한 저수지, 댐 등 보수·보강 사업은 풍수해 유형으로 분류
	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기본계획(4차)상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이던 '국가기반체계 미비', '안전취약계층 사고' 등 2개 유형이 사전협의에서는 '공통'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철도교통 재난사고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된 사고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항공교통 재난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및 관련시설 사고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포함
		선박 재난사고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 누출 등 원자력 관련 사고 및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피해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사고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생명, 건강 등 피해 * 오염원 배출 최소화, 예보·예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포함
	수질오염		하·폐수 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해양오염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전염병 관련 사업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
		전기·가스 사고	▸ 전기감전 및 발전·송배전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가스 수급 관련 및 누출로 인한 사고(「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등산·레저 사고	▸ 등산,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 제외
		물놀이 사고	▸ 해수욕 등 물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포함
		생활제품 사고	▸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관련 사고, 불량 또는 불법적인 생활용품 관련 사고 등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산업 재난 사고	사업장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농어업 사고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 등 사고
	식품 사고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 * 축산·수산·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관련 사고 등
	의료제품 사고		▸ 의료제품 관련 부작용 및 사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포함
	범죄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
	자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시재난테러		▸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공통 (8개 유형)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 포괄적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 홍보,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 119 구조・구급 관련 사업, 응급의료 활동 지원, 응급의료 체계 운영,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 재난안전일반 분야 사업 중 구조, 구급, 응급의료 관련 사업(관리체계, 교육・훈련 등 포함)은 본 유형으로 우선 분류
	재난 구호 및 복구		▸ 예비비 성격의 사업, 재해대책비 등 재난 발생 후 지원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점검, 조사, 진단 등
	국가핵심기반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관련 사고 ▸ 전력・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재산・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사고,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사고, 식용수 공급 관련 사고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보호시설 개선 등)
	해외재난 관리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사고
	교부세 및 기타		▸ 교부세, 국제협력 등

(2) 주체 및 관리절차

(가) 재난안전관리 주체

① 개념상 주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국민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관리의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음.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이 포괄되고 있음.[8)]

[개념상 재난안전관리의 주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

구분		관련 책무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등을 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제5호가목)	계획수립, 관련 정보의 공개, 사고수습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할 책무 등을 부담(제4조제1항~제3항)
	그 외 재난관리기관 (제3조제5호나목)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할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할 책무 등을 부담(제4조제4항)
국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담(제5조)

자료:「재난안전법」제3조~제5조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3조제5호가목)는 국민 일반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게 되며,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관련 정보의 공개, 사고수습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할 책무 등을 부담하게 됨.(제4조제1~3항)

그 외 재난관리기관(제3조제5호나목)은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할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할 책무 등을 부담하게 됨.(제4조제4항)

또한 재난관리기관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담하게 됨.(제5조)

---

8)「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실무상 주체: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구분되고 있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관리 책무를 부담하는 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또는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 포함되고 있음.

[개념상 재난안전관리의 주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

구분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개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피해유형별·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료:「재난안전법」 제3조~제4조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실무상 재난안전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추진되므로, 재난안전사업의 소관 주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볼 수 있음.

(나) 재난안전사업의 관리절차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함)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체를 포괄하도록 규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은 제4차(2020-2024)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전략 외 피해유형별 안전관리대책에 의해 피해유형별(자연재난·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재난안전일반) 재난안전과제가 규정되고 있음.

「재난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전협의 및 기획재정부의 조정을 거쳐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실시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에 의해 해당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등이 평가되고 있음.

① 5년 단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에 적용된 개정 전 「재난안전법」에 따르면,[9]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제22조제3항), 국무총리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제22조제5항) 또한 동 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제22조제8항제1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제22조제8항제2호)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되고 있음.[10]

② 재난안전사업의 사전협의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고 있음(제10조의2).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제10조의2제3항),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해당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제10조의2제4항)[11]

---

9) 현행 「재난안전법」(2025.1.7. 일부개정, 2025.7.8. 시행)은 개정 전에 비해 국가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재난안전법」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재난안전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1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제10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을 검토하고, 자치단체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산확정 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산확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의4제4항)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에 대한 사전협의의 월별 추진경과를 보면, 2023년 3월 중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이 수립되어 각 부처에 통보되었고(2023.3.13.), 이를 바탕으로 4월에는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의견 등이 취합되고,[12] 직전 회계연도(2022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실시된 재난안전사업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관한 검토가 수행되었음.

이후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각 부처의 서면 질의 및 예산요구서가 취합(~2023.5.31.)되고 6월 중에는 세부사업별 검토·분석을 거쳐 사전협의(안)이 수립되고 통보되었음.[13]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대상 사전협의 월별 추진경과]

2023년 3월 ○ 2024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 및 각 부처 통보(2023.3.13.) 2023년 4월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의견 취합·검토 ○ 2023년(2022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 검토 2023년 5월~6월 ○ 사전협의-예산안 연계 강화를 위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기재부) 개정(2023.5.9.) ○ 투자우선순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부처 서면 질의 등 보완·검토(2023.5.10.~5.17.) ○ 부처 예산요구서 취합(~2023.5.31.) 및 세부사업별 검토·분석(6월) ○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안) 통보(2023.6.3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4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으로 28개 부처의 391개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각 부처의 요구액 기준 예산규모 합계는 24.6조원 수준임.[14]

[2024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결과]

구 분	계	투자확대(‘가’ 등급)	투자유지(‘나’ 등급)	투자축소(‘다’ 등급)
사업수(비중)	391개(100.0%)	114개(29.2%)	179개(45.8%)	98개(25.0%)
요구액(비중)	24조 6,163억원(100.0%)	9조 7,561억원(39.8%)	10조 7,682억원(43.9%)	4조 920억원(16.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12) 「재난안전법」상 각 부처의 중기계획서·투자우선순위 의견 등은 1월 31일까지 제출되도록 하고 있으나(제10조의2제1항), 실무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중점투자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의 중기계획서·투자우선순위 의견 등이 취합되어 검토되고 있음.

13) 2024년 사전협의 경과를 보면,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 개정(5.9.)되어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장이 신설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일정, ㉡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제외 및 ㉢ 재난안전사업의 유형별(43개 유형)·단계별(예방, 대비/대응, 복구) 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14) 특히 2024년에는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음.

③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사업의 효율성·효과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제10조의3제1항) 각 중앙행정기관이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안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의3제3항)

2024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처 자체평가 및 행정안전부의 상위평가 등 두 단계로 실시되었고, 상위평가 결과 '부적정'으로 분류된 부처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평가가 실시되었음. 이후 행정안전부의 재점검을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음.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대상 재난안전사업 평가 월별 추진경과]

2025년 1월 ○ 2025년(2024회계연도 사업) 재난안전사업 평가 실시계획 수립(~2025.1.14.) 2025년 2월 ○ 부처 평가부서 담당자 등 교육 및 자체평가 실시(2월 말) 2025년 3월~4월 ○ 행안부 상위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3월 말) ○ 부처 의견수렴 및 부적정 부처 재평가 실시(2025.3.31.~4.9.) ○ 행안부 재점검 및 2025년 평가 모범사업 선정(2025.4.10.~4.23.) ○ 평가결과 확정(4월 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자체평가는 부처별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소관사업을 평가하여 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임. 재난안전사업 수 3개 이상인 부처의 평가등급은 우수(상위 20% 이하), 보통(65% 내외) 및 미흡(하위 15% 이상)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다만, 3개 미만 부처의 평가등급은 기준점수를 바탕으로 별도로 부여되었음.[15] 평가점수는 이하의 항목에 의해 100점 만점에 가감점(+6/-3)을 부여하여 확정되었음.

15) 우수: 90점 이상, 보통: 70~90점, 미흡: 70점 미만

[2024년 재난안전사업 부처별 자체평가 배점]

평가기준		배점	
		신규사업	계속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5
환류 및 개선노력		-	15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10
집행 적절성		10	10
성과 달성도		30	30
성과 우수성		20	20
합계		**100**	**100**
가감점	도전적 성과 목표치 설정	+3	+3
	미흡사업 컨설팅 반영	+3	+3
	성과보고서 불성실	-3	-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상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위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처별 자체평가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임. 평가점수는 이하의 항목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부여되었고, 평가절차 미준수 시 감점(-5점)이 부여되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상위평가 배점]

구분		배점
구성・운영 (15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5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10
과정 (25점)	평가의견의 명확성・구체성	15
	증빙자료의 적절성	10
결과 (60점)	등급 부여의 적절성	40
	점수 부여의 적절성	20
합계		**100**
감점	평가절차 준수 여부	-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안부 상위평가(재점검 포함) 결과, 적정(70점 이상)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의 점수 및 부여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최종 부적정(70점 미만) 부처의 경우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상위평가단에서 직접 평가한 점수를 기반으로 등급을 부여함.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조치로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차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에 반영되어 예산안 편성 시 고려대상이 됨.[16)]

2024년 293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60개 우수 등급 사업의 예산액 합계가 2조 8,213억원으로 20.3% 비중이고, 185개 보통 등급 사업의 예산액 합계가 9조 4,813억원으로 68.2% 비중이며, 48개 미흡 등급 사업의 예산액 합계가 1조 5,922억원으로 11.5% 비중으로 나타났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요약(등급별 점수·예산규모)]

(단위: 개, 억원, %)

구분	전체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규모	293	138,948	60	28,213	185	94,813	48	15,922
비중	100.0	100.0	20.5	20.3	63.1	68.2	16.4	11.5

주)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미흡 등급을 받은 48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미흡사업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6월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게 되며, 2년 연속 미흡사업 또는 희망 부처에 대해서는 2025년 8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컨설팅이 추진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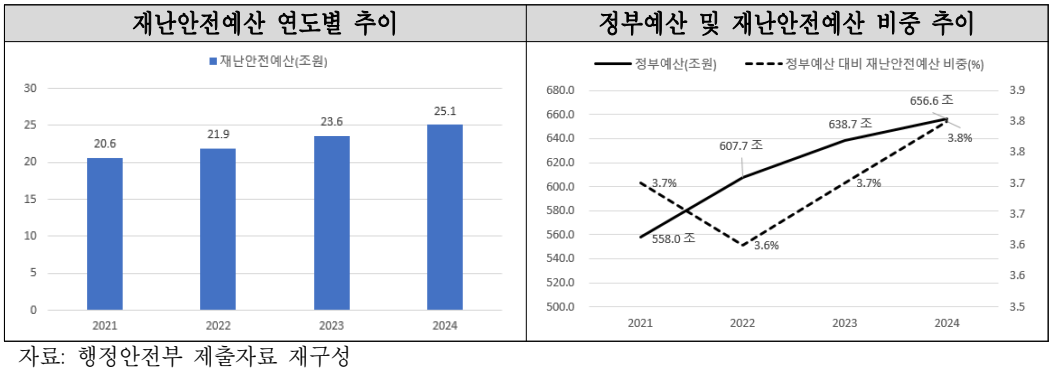
16) 예산안 사전협의 시 투자계획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평가결과는 35점 만점에 '우수' 등급은 35점, '보통' 등급은 25점, '미흡' 등급은 15점을 부여받고 있음.

(3) 재난안전사업의 현황

(가) 최근 4년간 재난안전사업 예산 규모

2024년 기준, 최근 4년간(2021-2024)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재난안전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

[최근 4년간(2021-2024) 재난안전예산 예산액·비중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4년 기준 최근 4년간(2021-2024) 부처별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해당 기간 평균 금액 및 비중 순으로 국토교통부(488억 4,800만원), 행정안전부(338억 6,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305억 7,600만원), 환경부(290억 5,800만원) 및 기획재정부(161억원)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규모·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상 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9.4% 수준임.

[최근 4년간(2021-2024) 부처별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간 평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토교통부	51,004	24.8	52,860	24.2	45,561	19.3	45,966	18.3	48,848	21.4
행정안전부	36,006	17.5	30,654	14.0	31,753	13.4	37,055	14.7	33,867	14.8
농림축산식품부	27,231	13.3	31,271	14.3	30,456	12.9	33,347	13.2	30,576	13.4
환경부	14,895	7.3	13,605	6.2	37,445	15.8	50,288	20.0	29,058	12.7
기획재정부	16,053	7.8	16,053	7.3	16,153	6.8	16,140	6.4	16,100	7.1
해양수산부	15,998	7.8	14,733	6.7	11,038	4.7	8,822	3.5	12,648	5.5
고용노동부	9,581	4.7	10,727	4.9	11,826	5.0	12,614	5.0	11,187	4.9

(단위: 억원, %)

부처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간 평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보건복지부	8,431	4.1	8,876	4.1	8,491	3.6	13,368	5.3	9,792	4.3
질병관리청	760	0.4	15,112	6.9	15,265	6.5	2,451	1.0	8,397	3.7
산림청	4,714	2.3	4,164	1.9	4,182	1.8	6,618	2.6	4,920	2.2
해양경찰청	2,432	1.2	2,924	1.3	5,984	2.5	6,216	2.5	4,389	1.9
식품의약품안전처	3,186	1.6	3,113	1.4	3,132	1.3	1,969	0.8	2,85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40	1.3	2,081	1.0	2,470	1.0	2,329	0.9	2,405	1.1
경찰청	2,003	1.0	2,352	1.1	1,851	0.8	3,359	1.3	2,391	1.0
교육부	2,546	1.2	2,507	1.1	2,238	0.9	2,014	0.8	2,326	1.0
산업통상자원부	2,385	1.2	1,870	0.9	1,554	0.7	1,535	0.6	1,836	0.8
소방청	1,086	0.5	928	0.4	2,026	0.9	2,281	0.9	1,580	0.7
기상청	1,204	0.6	1,252	0.6	1,377	0.6	1,789	0.7	1,406	0.6
국방부	1,035	0.5	1,604	0.7	1,096	0.5	325	0.1	1,015	0.4
원자력안전위원회	445	0.2	493	0.2	1,083	0.5	1,366	0.5	847	0.4
여성가족부	515	0.3	559	0.3	587	0.2	817	0.3	620	0.3
법무부	255	0.1	314	0.1	348	0.1	358	0.1	319	0.1
농촌진흥청	274	0.1	257	0.1	265	0.1	47	0.0	211	0.1
중소벤처기업부	205	0.1	226	0.1	139	0.1	-	0.0	190	0.1
외교부	139	0.1	146	0.1	155	0.1	174	0.1	154	0.1
문화체육관광부	158	0.1	142	0.1	154	0.1	-	0.0	151	0.1
국가유산청	10	0.0	3	0.0	3	0.0	464	0.2	120	0.1
방송통신위원회	11	0.0	8	0.0	9	0.0	13	0.0	10	0.0
대법원	9	0.0	9	0.0	-	0.0	-	0.0	9	0.0
합계	205,311	100.0	218,843	100.0	236,641	100.0	251,725	100.0	228,220	100.0

주) 기간 평균 예산 금액·비중 순으로 정렬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4년 기준, 최근 4년간(2021-2024) 피해유형 등 구분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해당 기간 사회재난·안전사고 유형에 속하는 재난안전사업의 연간 예산액 합계가 평균 11조 1,060억원 수준으로 4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통 유형에 속하는 재난안전사업의 연간 예산액 합계가 평균 6조 52억원 수준으로 26.6%의 비중을, 자연재난 유형에 속하는 재난안전사업 합계가 평균 5조 4,707억원 수준으로 2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21-2024) 피해유형 등 구분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간 평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연재난 유형	49,071	23.9	50,422	23.5	55,944	24.1	63,392	25.3	54,707	24.2
사회재난· 안전사고 유형	97,408	47.4	109,794	51.3	119,397	51.4	117,639	46.9	111,060	49.2
공통유형	59,212	28.8	54,007	25.2	57,135	24.6	69,854	27.8	60,052	26.6
전체	205,691	100.0	214,223	100.0	232,476	100.0	250,885	100.0	225,819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4년 기준 최근 4년간(2021-2024) 단계구분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평균 기준 예방 단계에 해당하는 재난안전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75.2%) 대비·대응 단계 비중이 그 다음이며(12.9%) 복구 단계에 해당하는 재난안전사업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11.9%).

다만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재난안전 분야에 할당된 예비비(1조 6,000억원)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약 8,521억원), 재난대책비(약 1조원), 소방안전교부세(약 8,648억원) 등의 사업이 '복구'가 아닌 '예방'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2023년 이후 단계 구분 기준에 따르면 예방-복구-대비·대응 순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음.

[최근 4년간(2021-2024) 피해유형 등 구분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간 평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방	171,030	86.3	175,377	81.9	156,505	66.2	172,277	68.7	168,797	75.2
대비 대응	23,258	11.7	34,496	16.1	34,235	14.5	23,856	9.5	28,961	12.9
복구	3,065	1.5	3,565	1.7	45,535	19.3	54,751	21.8	26,729	11.9
내역사업 미분류[1]	733	0.4	788	0.4	-	-	-	-	761	0.3
전체[2]	197,353	100.0	213,438	100.0	236,275	100.0	250,885	100.0	224,488	100.0

주 1) 2021년, 2022년은 내역사업의 단계를 미구분·2023년에는 내역사업의 단계도 구분·2024년부터는 재난안전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전체를 반영
2)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2024년 재난안전사업 결산

2024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총 26개의 부처, 436개 세부사업에서 예산현액 26조 2,333억 2,500만원 중 23조 2,304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6%)되고, 7,126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조 2,902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환경부에서 예산현액 5조 1,044억 6,600만원 중 4조 7,439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어 가장 많은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운용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4조 7,310억 7,500만원 중 4조 4,827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3조 7,565억 400만원 중 3조 5,983억 3,600만원(집행률 95.8%)되어 그 뒤를 잇고 있음.

[2024년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환경부	68	5,104,466	4,743,998	86,293	274,175	92.9
국토교통부	36	4,731,075	4,482,711	180,310	68,055	94.8
행정안전부	47	3,756,504	3,598,336	680	157,488	95.8
농림축산식품부	24	3,717,193	3,301,323	369,358	46,512	88.8
기획재정부	2	1,604,770	4,745	0	1,600,025	0.3
질병관리청	21	1,533,474	1,506,010	1,703	25,761	98.2
고용노동부	9	1,261,539	1,248,913	0	12,626	99.0
해양수산부	36	905,292	849,569	21,525	34,198	93.8
산림청	8	674,144	652,837	11,037	10,270	96.8
해양경찰청	21	627,032	619,002	4,734	3,296	98.7
보건복지부	18	437,110	421,389	944	14,777	96.4
경찰청	10	336,239	324,042	872	11,318	96.4
소방청	29	289,289	251,206	31,877	6,206	86.8
교육부	3	201,441	190,476	0	10,965	94.6
식품의약품안전처	33	196,990	194,380	77	2,533	98.7
기상청	23	187,112	181,833	2,324	2,955	97.2
산업통상자원부	14	161,852	159,991	0	1,861	98.9
원자력안전위원회	6	136,591	136,630	0	75	99.9
여성가족부	7	119,019	117,894	97	1,028	9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107,153	106,676	379	16	99.6
국가유산청	3	47,424	47,012	0	412	99.1
법무부	2	36,833	35,871	0	962	97.4
국방부	1	33,926	31,687	296	1,944	93.4
외교부	2	16,763	13,874	142	2,747	82.8
방송통신위원회	3	5,394	5,386	0	8	99.9
농촌진흥청	2	4,661	4,661	0	0	100.0
총합계	436	26,233,325	23,230,452	712,648	2,290,213	88.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2024년도 재난안전사업 결산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예방 단계 274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17조 7,738억 9,800만원 중 16조 6,486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7%)되었고, 대비·대응 단계 131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2조 7,627억 4,600만원 중 2조 6,786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0%)되었으며, 복구 단계 31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5조 6,966억 8,100만원 중 3조 9,030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5%)되었음.[17)]

[2024년 단계별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단계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예방 단계	274	17,773,898	16,648,633	620,347	504,917	93.7
대비·대응 단계	131	2,762,746	2,678,658	38,633	45,369	97.0
복구 단계	31	5,696,681	3,903,047	53,668	1,739,966	68.5
총합계	436	26,233,325	23,230,338	712,648	2,290,252	88.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2024년도 재난안전사업 결산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연재난 유형에 속하는 사업은 '풍수해' 등 총 6개 유형에 걸쳐 68개 세부사업이 실시되었고, 예산현액 6조 6,714억 8,700만원 중 6조 973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4%)되었음.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속하는 사업은 '화재·폭발' 등 총 25개 유형에 걸쳐 265개 세부사업이 실시되었고, 예산현액 12조 3,286억 9,000만원 중 11조 8,536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었음.

공통 유형에 속하는 사업은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등 총 8개 유형에 걸쳐 103개 세부사업이 실시되었고, 예산현액 7조 2,331억 4,800만원 중 5조 2,793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0%)되었음.

[2024년 단계별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피해유형		세부 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대분류	중분류						
자연재난 (6개)	풍수해	47	4,766,418	4,446,891	169,181	150,347	93.3
	산사태	2	276,111	273,283	1,136	1,692	99.0
	가뭄	8	1,431,094	1,182,552	230,147	18,395	82.6
	지진	9	113,975	113,042	241	692	99.2
	황사	1	54,306	52,071	1,612	623	95.9
	조류	1	29,583	29,466	1	116	99.6

17) 복구 단계 사업 중 기획재정부의 재해예비비 1조 6,000억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단위: 백만원, %)

피해유형		세부 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대분류	중분류						
	자연재난 합계	**68**	**6,671,487**	**6,097,305**	**402,318**	**171,865**	**91.4**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5개)	화재·폭발	5	49,898	49,458	0	440	99.1
	산불	4	263,917	253,013	6,136	4,768	95.9
	시설물재난·사고	7	36,606	29,273	532	6,801	80.0
	도로교통재난·사고	7	2,401,952	2,165,476	177,054	59,423	90.2
	철도교통재난·사고	10	2,388,973	2,386,125	117	2,732	99.9
	항공교통재난·사고	13	61,533	55,187	2,405	3,939	89.7
	선박재난·사고	24	691,891	680,546	4,925	6,420	98.4
	방사능재난·사고	8	146,610	146,481	0	129	99.9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7	43,637	40,504	1,287	1,846	92.8
	미세먼지	13	548,115	512,398	12,788	22,929	93.5
	수질오염	27	1,356,145	1,280,102	13,289	62,754	94.4
	해양오염	9	110,384	108,881	0	1,503	98.6
	감염병	18	1,553,824	1,526,901	782	26,141	98.3
	가축및수산 생물전염병	10	389,226	373,503	1,673	14,050	96.0
	승강기사고	1	12,730	12,693	0	37	99.7
	전기·가스사고	7	132,744	130,890	0	1,854	98.6
	물놀이사고	1	1,082	1,058	0	24	97.8
	생활제품사고	8	59,183	54,807	976	3,400	92.6
	사업장산재	12	1,268,790	1,256,164	0	12,626	99.0
	농어업사고	3	26,711	26,711	0	0	100.0
	식품사고	29	250,815	246,417	333	4,065	98.2
	의료제품사고	8	24,460	23,855	71	534	97.5
	범죄	20	322,873	311,186	959	10,722	96.4
	자살	2	52,341	52,001	165	175	99.4
	전시재난·테러	12	134,250	130,029	1,211	3,009	96.9
	사회재난 안전사고 합계	**265**	**12,328,690**	**11,853,659**	**224,703**	**250,321**	**96.1**
공통 (8개)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12	36,322	34,610	318	1,394	95.3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34	457,133	421,605	22,391	13,137	92.2
	재난구호 및 복구	20	4,285,709	2,552,129	52,161	1,681,420	59.5
	재난안전관리체계	20	195,131	184,137	9,961	1,033	94.4
	국가핵심기반사고	5	74,429	74,208	0	139	99.7
	안전취약계층지원	4	75,123	72,370	360	2,393	96.3
	해외재난 관리	1	14,883	12,117	137	2,629	81.4
	교부세 및 기타	7	2,094,418	1,928,198	299	165,921	92.1
	공통 합계	**103**	**7,233,148**	**5,279,374**	**85,627**	**1,868,066**	**73.0**
총합계		436	26,233,325	23,230,338	712,648	2,290,252	88.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1) 공통 검토사항

정부는 재난안전사업들에 대해 사전협의·재난안전사업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차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들의 운용상 문제점을 편성·집행·결과 및 환류 단계로 나누어보면, ㉠ 편성 단계에서는 2024년 선정된 436개 재난안전사업 중 119개 사업(계속사업 112개 포함)이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2023.6.)에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사후적으로 재난안전사업에 포함되고 있고, ㉡ 집행 단계에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의 이연집행 또는 관련 예산 미편성 등의 사유로 이·전용 등에 의해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 결과 및 환류 단계에서는 복구 단계에 속하는 재난안전사업 대부분이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특정 단계 사업들이 평가 및 환류 대상에서 과도하게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가)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증액 편성·집행되는 문제

2024년 436개 재난안전사업 중 119개 사업은 2023년 재난안전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부 사업은 증액편성되었다가 사업계획 부실 수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는 「재난안전법」상 명문화된 절차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입장[18]에서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난안전사업의 명단을 확정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재난안전사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년도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투자확대(가 등급)·투자유지(나 등급) 및 투자축소(다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음.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재난안전사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

18) 「재난안전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여 선정하는데, 2020년 418개·2021년 399개·2022년 394개·2023년 377개 등으로 매년 변동이 있었음. 2024년에는 28개 부처의 391개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각 부처의 요구액 기준 예산규모 합계는 24.6조원 수준임.[19)]

[2024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사전협의 결과]

구 분	계	투자확대 (‘가’ 등급)	투자유지 (‘나’ 등급)	투자축소 (‘다’ 등급)
사업수 (비중)	391개 (100.0%)	114개 (29.2%)	179개 (45.8%)	98개 (25.0%)
요구액 (비중)	24조 6,163억원 (100.0%)	9조 7,561억원 (39.8%)	10조 7,682억원 (43.9%)	4조 920억원 (16.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재난안전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은 재난안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부처로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20)]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난안전사업이 갖는 고유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자는 조치임.

그런데 2024년 확정예산 기준 436개[21)] 재난안전사업 중 119개(27.3% 비중) 사업이 2023년 재난안전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예산 1조 4,500억원(5.8% 비중)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어, 재난안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가 약화되고 있음.

19) 특히 2024년에는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음.

20) 「재난안전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21) 사전협의 대상 391개 사업 / 확정예산 기준 436개 사업

[2024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이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비중	2024년 본예산	비중
전체			436	100.0	25,088,399	100.0
2024년 예산안 사전협의 대상			317	72.7	23,638,168	94.2
2024년 예산안 사전협의 대상 外			119	27.3	1,450,231	5.8
	계속사업	합계	112	25.6	1,144,397	4.6
		전년(2023년) 대비 증액편성	49	11.2	601,145	2.4
		전년(2023년) 대비 유지 또는 감액편성	63	14.4	543,252	2.2
	신규사업	-	7	1.6	305,834	1.2

주) 2024년 확정예산 기준(24.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반영 또는 증액편성된 주요 사례를 보면, 신규반영된 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등 2개 사업 및 환경부의 ‘댐-하천디지털트윈물관리플랫폼 구축(정보화)’ 등 5개 사업은 증액 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0%를 초과하여, 예산 규모가 두 배 이상 증액되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중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증액사업 현황(주요 사례)]

(단위: 백만원, %)

가. 증액규모 순 (증액규모 50억 초과 7개 사업)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4년 본예산 (B)	증감액 (B-A)	증감액 비율 (B-A)/A
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	250,000	250,000	신규
환경부	재해대책비	-	50,000	50,000	신규
환경부	댐-하천디지털트윈물 관리플랫폼구축(정보화)	5,370	17,915	12,545	233.6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6,300	48,229	11,929	32.9
경찰청	안보수사역량강화	31,548	42,572	11,024	34.9
국토교통부	철도치안관리	3,116	11,297	8,181	262.5
경찰청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 관리	21,761	27,920	6,159	28.3

나. 증감율 순 (증감율 100% 초과 4개 사업)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년 본예산 (A)	2024년 본예산 (B)	증감액 (B-A)	증감액 비율 (B-A)/A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784	3,415	2,631	335.6
국토교통부	철도치안관리	3,116	11,297	8,181	262.5
환경부	댐-하천디지털트윈물관리플랫폼구축(정보화)	5,370	17,915	12,545	233.6
국토교통부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836	1,996	1,160	138.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사전협의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상 정의만으로는 재난안전사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사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사업의 범위가 전년도와 달라지고 있으며,[22] 일부 사업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반영되거나 증액편성되고 있어 예산안 편성 시 고려되는 재난안전사업의 범위와 확정예산 기준 재난안전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재난안전법」상 사전협의 절차는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예산안 수립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민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전년도(2023년)에도 추진되었던 112개의 재난안전사업이 사전협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대상을 적정하게 선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임.

또한 이하 사례들을 보면, 사전협의 없이 증액편성된 사업 일부에 대해서 사업규모 대비 성과미흡(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예산변경 과다(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사업계획 부실 내지 구체성 부족(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침몰선박 관리사업・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사업 및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사업)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22)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 검토 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정책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의 재난안전사업 범위가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증액된 사업 중 예산편성이 문제된 주요사례]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본예산 (내역사업)	2024년 집행액 (내역사업)	검토사항
경찰청	교통안전활동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42,894 (1,800)	41,052 (1,800)	**사업의 확대 추진**에도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107,050	104,830	예산변경 과다로 **편성과정에서 적절한 세목별 사업비 편성 필요** 지적
해양 수산부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5,218	5,218	**사업계획 부실**로 연간 50여억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
해양 수산부	해양오염사고 방지 (침몰선박 관리사업)	12,650 (10,860)	12,650 (10,860)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다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15,127 (5,380)	14,420 (5,102)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결여**로 일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16,175 (792)	15,707 (659)	**사업의 운영규정이** 유사사업 대비 **구체성 미흡**

자료: 각 부처 결산검토의견 참조하여 작성

따라서 정부는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사전협의 추진 시 사전협의대상을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여 가급적 차년도에 실시될 재난안전사업의 예산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정재원 미확보에 따른 이·전용 과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이·전용 등에 의해 부족액을 충당하거나 차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연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복구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용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함에도 요구되는 재원의 규모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3] 2024년 예산총칙에도 재해대책비 지출 등 예비비 사용의 근거가 있으나, 예비비 사용 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긴급한 지출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에 피해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고, 2024년에도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이 각 부처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었음.[24]

[2024년 피해복구비 등 지원사업 주요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2024년 예산현액 (A)	2024년 집행액 (B)	집행률 (B/A)
국가유산청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가유산 피해 관련 긴급보수비 지원	5,076	5,076	100.0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보상금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대상 살처분보상금 등 지원	80,570	68,679	85.2
	재해대책비	자연재난 피해농·어가 관련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복구비 지원	280,000	266,322	95.1

2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4)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는 절차상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긴급한 지출소요 발생 시 절차상 보다 신속한 지출이 가능한 본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2024년 예산현액 (A)	2024년 집행액 (B)	집행률 (B/A)
문화체육관광부	재해복구비(종교)	종교분야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지원	253	201	81.8
	재해복구비(체육)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 지원	3,470	3,470	100.0
	재해복구비(관광)	관광분야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지원	293	293	10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해 피해 관련 각종 시설복구비 등 지원	131,528	126,262	96.0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자연재해 피해 임가 대상 보전금·융자금 등 지원	2,588	279	10.8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2017년·2018년 포항지진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원	14	14	100.0
해양수산부	양식등재해대책비	자연재난 피해 어가 및 어항 대상 피해복구비 등 지원	50,000	19,266	38.5
행정안전부	재난구호지원	지자체 구호비용 일부 지원	1,000	1,000	100.0
	재난대책비(보조)	자연·사회재난 피해 관련 생활안정자금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653,763	653,763	100.0
환경부	재해대책비	환경기초시설·국립공원의 수해피해 복구비 등 지원	50,000	20,779	41.6
	하천재해대책비	국가·지방하천 피해복구비 등 지원	250,000	229,744	91.9
합계			**1,508,555**	**1,395,148**	**92.5**

주) 예비비·교부세 및 교부금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피해복구 재원이 편성된 재난안전사업들 중 재난대책비(보조)·재해대책비·산림재해대책비 및 하천재해대책비 등 4개 사업은 2024년 본예산으로 2023년 피해복구비가 편성 및 이연집행되었음.[25]

25)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은 2024년 예산 6,000억 4,000만원 중 5,402억 8,300만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 사업은 2024년 예산 2,800억원 중 488억 8,700만원이, 산림청의 '산

특히 재난대책비(보조)·산림재해대책비 및 하천재해대책비 등 3개 사업은 2023년 피해복구비가 2024년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0.0%, 81.3%, 94.4% 수준이어서 2024년에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예비비 지출이나 이·전용 등의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였음.

[2023년 피해복구비 등이 2024년 이연집행된 사례]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4년 본예산 (A)	2023년 피해복구비 (B)	비중 (B/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2024년 예산현액	2024년 집행액
행정 안전부	재난대책비 (보조)	600,040	540,283	90.0	-	53,723	653,763	653,763
농림 축산 식품부	재해대책비	280,000	48,887	17.5	-	-	280,000	266,322
산림청	산림 재해대책비	100,000	81,326	81.3	1,297	39,799 △9,568	131,528	126,262
환경부	하천 재해대책비	250,000	235,896	94.4	-	-	250,000	229,744

자료: 관계 부처

전년도에 발생한 지출소요에 당해년도의 예산이 이연집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고, 그 비중이 과도하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지출소요 대해서는 또다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 등의 예산변경 절차를 거쳐 부족액을 충당하게 될 것이므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해복구비(종교)·재해복구비(관광) 및 재해복구비(체육) 등 3개 사업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없이 이·전용(증)을 거쳐 피해복구비 등이 집행되었음.

림재해대책비' 사업은 2024년 예산 1,000억원 중 813억 2,600만원이, 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은 2024년 예산 2,500억원 중 2,358억 9,600만원이 각각 2023년 피해복구비로 편성되었음.

[2023년 피해복구비 등이 2024년 이연집행된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4년 본예산	이·전용 등	2024년 예산현액	2024년 집행액	불용액
문화체육 관광부	재해복구비 (종교)	-	253	253	201	52
	재해복구비 (관광)	-	293	293	293	-
	재해복구비 (체육)	-	3,470	3,470	3,470	-

자료: 관계 부처

본예산 편성 없이 이·전용 등의 예산변경에 의해 피해복구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기확정된 타 사업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처럼 당해년도 본예산이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 등을 충당하는 데 소진되거나 본예산 편성 없이 이·전용 등에 의해 충당되는 일이 반복되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감소하고 긴급한 지출소요를 본예산에 의해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가급적 최선의 예측을 바탕으로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편성하여 대응하되, 예측불가능한 대규모 피해발생 시에는 본예산 집행 외에 예비비를 적기에 사용하여 대응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복구 단계 사업이 과도하게 제외되는 문제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는 다수의 복구 단계 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향후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복구단계 사업을 가급적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사업특성에 맞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전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된 재난안전사업이 대상이고, 2024년 재난안전사업 436개 중 293개 사업에 대해 재난안전사업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가대상 사업 규모는 예산액 기준 약 13.9조원임.[26)]

[최근 4년간(2021-2024)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 사업 규모]

(단위: 개, 조원)

대상연도 (평가연도)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사업 수	257	251	252	293
규모	13.9	16	15.7	13.1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는 436개 재난안전사업 중 중 293개(67.2%) 사업이 포함되고 143개(32.8% 비중) 사업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타 재정사업 평가 사유로 20개 사업(4.6% 비중)이, 전년도 모범사업 사유로 5개 사업(1.1% 비중)이, 그 밖에는 예비비·교부세 등 평가 실익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118개 사업(27.1% 비중)이 제외된 것임.

이상의 방침에 따라 매년 일부 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재난안전사업 436개 중 143개 사업이 타 평가 대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외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사업수	2024년 예산	구분	사업수	2024년 예산
타 재정사업평가 대상	20	30,295	전년도 평가 모범사업	5	4,113
소액사업	51	315	사업종료	12	512
예비비·교부세	12	50,140	국가안보·책임운영기관	8	1,609
국제기구분담·보상금	5	990	보험금 등 기타[주)]	30	23,983

자료: 행정안전부

26) 2024년 436개 재난안전사업 예산 합계는 약 25.1조원임.

그런데 단계별 평가대상 사업의 비중을 보면, 예방 단계 274개 사업 중 71.2% 비중인 195개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대비・대응 단계 131개 사업 중 69.5% 비중인 91개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복구 단계 31개 사업 중 7개 사업만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평가대상 사업의 비중이 22.6%에 불과하였음.

[2024년 단계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 사업 선정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예방			대비・대응			복구		
	전체	대상	대상外	전체	대상	대상外	전체	대상	대상外	전체	대상	대상外
사업 수	436	293	143	274	195	79	131	91	40	31	7	24
비중	100.0	67.2	32.8	100.0	71.2	28.8	100.0	69.5	30.5	100.0	22.6	77.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예비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은 예산규모가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등 소관 부처가 사업운용상 재량을 거의 갖지 못하고, 사실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편성되는 사업들[27] 및 각종 보험 및 보상사업들[28] 등은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여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어려우며, 그 밖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사업들[29]이 제외되었다고 설명하였음.

[2024년 복구단계 31개 재난안전사업 평가 실시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4년 본예산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재난안전사업 평가제외사유
교육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200,142	-	교부세(금)
기획재정부	예비비	1,600,000	-	예비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사체처리지원	2,930	미흡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95,598	-	보험・보상사업 타 평가대상

27) 재난대책비(보조)・산림재해대책비・양식 등 재해대책비・하천재해대책비・재해대책비・재난구호지원・문화재긴급보수・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포항지진 등 이 이에 포함

28)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재해보험・살처분보상금・재보험금・양식어업재해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어업안전보험・풍수해보험 등

29)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재난안전의무보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재난원인조사및미래대형 복합재난대비 등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4년 본예산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재난안전사업 평가제외사유
	농업재해보험	657,104	-	보험·보상사업 타 평가대상
	살처분보상금	81,315	-	예비비성
	재보험금	120,000	-	보험·보상사업 타 평가대상
	재해대책비	280,000	-	예비비성
국가 유산청	문화재긴급보수사업	4,076	-	예비비성
보건 복지부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	4,874	미흡	-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	예비비성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2,588	-	예비비성
산업통상 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14	-	소액(10억원 미만)
여성 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961	-	타 평가대상
해양 수산부	양식등재해대책비	50,000	-	예비비성
	양식어업재해보험	24,110	-	보험·보상사업 타 평가대상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166,077	-	보험·보상사업 타 평가대상
	어업인안전보험	2,071	-	보험·보상사업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31,191	보통	-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14,698	보통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48,229	보통	-
행정 안전부	재난구호지원	1,000	-	예비비성
	재난대책비(보조)	600,040	-	예비비성
	재난심리회복지원	1,190	보통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925,421	-	교부세(금)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771	-	소액(10억원 미만)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503	-	소액(10억원 미만)
	풍수해보험	38,045	-	보험·보상사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15,127	보통	-
	재해대책비	50,000	-	예비비성
	하천재해대책비	250,000	-	예비비성
합계		**5,475,07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의 사업을 포괄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행정안전부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될 우려가 있음.

또한 2024년 복구단계 재난안전사업 중 보험·보상사업에 해당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재해보험·재보험금·양식어업재해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등 5개 사업은 같은 연도(2025년)에 실시된 다른 재정사업평가의 대상에는 포함되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실시하면서 '평가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평가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봄.

그리고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안전법」상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고,[30] 평가기준 역시 계획·관리 및 결과 등 재정사업의 전 단계를 평가하고 있으며, '미흡' 등급 사업에 결과 환류 역시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상 일부 단계에서 재량이 위축된다고 해서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봄.

[2024년 재난안전사업 부처별 자체평가 배점]

평가기준		배점	
		신규사업	계속사업
계획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5
	환류 및 개선노력	-	15
관리 (2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10
	집행 적절성	10	10
결과 (50점)	성과 달성도	30	30
	성과 우수성	20	20
합계 (100점)		**100**	**100**
가감점	도전적 성과 목표치 설정	+3	+3
	미흡사업 컨설팅 반영	+3	+3
	성과보고서 불성실	-3	-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 및 평가에 의해 재난안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과의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는 「재난안전법」상 관련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단계에 해당하는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에서 과도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30) 「재난안전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개별 사업 검토

(가) 사업계획 부실 수립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여 예산이 당초 편성 내역대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이·전용 등에 의한 예산변경이 과도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중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지적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7,976	7,728	서울시의 지반침하지도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철도사고조사	177	151	계획상 국외 전문교육 미실시
기상청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1,719	11,276	사업계획 부실수립으로 공공요금 예산과 집행금액 간 차이 발생
보건복지부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사업추진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천연물 안전관리원 구축)	4,469	4,469	안전관리원 구축 이후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2,158	2,029	계획성 부족으로 하나의 비목에서 전용 등의 증액과 감액이 반복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27,901	19,818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해양경찰청	범죄수사활동 (마약수사역량강화)	959	938	예산 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부적정하게 집행
	함정건조	198,823	198,253	계획상 함정 도입대수와 실제 도입대수 불일치
	항공기도입	60,978	60,977	계획상 항공기 도입대수와 실제 도입대수 불일치
해양수산부	해양오염사고 방지 (침몰선박 관리사업)	10,860	10,860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불일치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5,218	5,218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자체수입 없이 운영비 전액을 국고지원
	수산물 위생관리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4,093	3,708	사업의 임의 확대실시 및 타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5,380	5,102	구체적 시행계획 결여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866	659	사외 배관의 설치를 위한 규정인 「유해화학물질 사외 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구체성 보완 필요

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과 서울시의 지반침하지도 사업 간 중복 투자·운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31]을 통해 가스·통신 등 관리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정보와 지하구조물, 지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그런데 현재 구축된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포함정보나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반침하 방지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 투자가 우려됨.

[지하공간통합지도 우선정비구역도 비교표]

구분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공목적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	GPR 탐사 우선순위 검토
포함정보	지하시설물(7) :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지하구조물(6) : 지하철, 공동구,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상가 지반정보(3) : 시추, 관정, 지질 정보	지하시설물 6종의 직경과 선밀도 :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난방, 전력 지반조건(5) : 점토 두께, 침적토 두께, 모래 두께, 자갈 두께, 풍화토 두께
포함방법	3차원으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시설종류, 관리자, 관경, 관재질 등)	우선정비구역(5등급으로 표시)
구축지역	전국 (229개 시군)	서울시
제공대상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굴착10m이상의 지하개발사업자	서울시 해당 업무 담당자
제공형태	종이도면 제공	서울시 내부 행정망으로 접근가능한 “통합지하안전관리시스템” 안의 기능 중 하나

자료: 국토교통부

31) 일반회계-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270-504)(국토도시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구별된 내용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32)]

② 철도사고조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조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외 전문교육 여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연례적으로 국외업무여비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조사’ 사업[33)]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철도사고 조사 및 분석 능력을 구축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2024년 이 사업에는 철도사고조사관의 국외 전문교육 이수를 위한 국외교육여비(220-03)가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국외업무여비(220-02)로 변경하고 국외교육여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음.

[2024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국외업무여비(220-02)	9	9	11	20	20	20	20	-
국외교육여비(220-03)	13	13	△13	-		-	-	-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은 국외교육여비 내역변경(감) 및 미집행 사례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2022년에는 국외교육여비 1,300만원 중 6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로 내역변경(감)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에도 국외교육여비 1,300만원 중 800만원을 내역변경(감)하였고, 실제 사업목적에 따라 국외교육여비로 집행한 금액은 480만원에 불과하였음.

3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고, 그 중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33) 일반회계-철도사고조사(2731-307)(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22, 2023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국외업무여비(220-02)	9	9	6	15	14	1
	국외교육여비(220-03)	13	13	△6	7	-	7
2023	국외업무여비(220-02)	9	-	8	16.6	15.6	1
	국외교육여비(220-03)	13	-	△8	5.4	4.8	0.6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년간 국외 전문교육이수보다 철도 안전 관련 협의회 또는 사고조사 포럼 참석 등 국제적 안전 협의업무를 우선시한 결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국외교육여비를 집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연례적인 예산 내역변경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초 철도사고조사관의 전문 교육 추진 필요성과 수요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국외교육여비 금액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

③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기상청)

동 사업은 인증센터의 운영 시기 및 도입 장비 사양 등 센터 운영 계획이 당초 계획대비 변경됨에 따라 공공요금 집행률이 11.3%에 불과하므로, 운영 개시일 및 변경된 시험장비의 사양·소비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34]을 통해 기상·지진장비의 내구성·정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전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2024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공공요금 예산은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1,000kW급 풍동시험장비 2대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센터에 각각 945kW 및 445kW급 풍동시험장비가 1대씩 도입되었고, 센터 운영도 2024년 4월부터 시작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요금 예산 편성시에는 1월 1일부터 2,750kW를 기준으로 풍동시험장비를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4월 1일부터 낮은 사용량으로 인한 기본요금 기준인 825kW로 풍동시험장비가 가동되었음.

34) 일반회계-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1231-304)(관측기반국)

[2024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당초 계획과 실제 운영]

	예산 편성시 계획	실제 운영
센터 운영 시작일	1월 1일	4월 1일[35]
풍동시험장비	1,000kW 2대 도입	945kW 1대, 445kW 1대 도입
그 외 장비	750kW	750kW
공공요금 (기본요금) 계산	설비용량(2,750kW) 기준 산정	사용량 저조로 2,750kW x 30% (825kW) 기준 계산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기상청은 운영 개시일 및 변경된 시험장비 도입 사양·소비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계획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④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보건복지부)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2024년 신규편성되었으나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신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간 유사성·중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전액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비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첫째, 보건복지부는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36]을 통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심리지원에 더해 지진, 사고 등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따른 종합적 심리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지원을 수행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포항시 행정관할 상 경북권 관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기존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2024년도 편성 예산 2억 100만원 전액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충당을 위해 집행하였음.[37]

35) 2024년 1월 ~ 3월 센터 운영내역

시기	내용
2024. 1. ~	온도시험장비 등 시험 가동
2023. 12. ~ 2024. 2.	풍동시험장비 조립 및 설치
2024. 02.	풍동시험장비 열교환기 내부 설치 및 물탱크 칠러 시험
2024. 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풍동장비 성능 확인

36) 일반회계-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3245-323)(정신건강정책관)

37)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안 편성시 정부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

[2024년도 경북권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0.7.)	포항지진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 (3345-323)	330-01	201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3345-302)	330-01	마약류 중독자 급증 및 치료보호 수요량 증가로 치료비 예산 부족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중에 있는 점, 경북권에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권고하였음.

이는 동 사업 추진 초기 보건복지부의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둘째, 내역변경을 포함한 예산간 변경은 「국가재정법」 상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라는 점에서 사업간 유사성, 시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최소한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불용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에도, 이를 전액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및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음.

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물안전관리원은 국내 최초로 한약 등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원의 설립·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속히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38]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현행 「약사법」에서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기능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민간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음.[39]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구축 완료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⑥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동일 비목에서 세목변경의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어 예산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40]을 통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대응센터 운영비 부족,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실험실 이전비 부족 등에 따른 예산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도중 총 12회의 세목변경을 실시하였음.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세목조정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목-세목 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024.1.16.)	임차료 (210-07)	3	일반수용비 (210-01)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부족
세목변경 (2024.3.21.)	임차료 (210-07)	3	일반수용비 (210-01)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운영관련 제반 비용 재원 부족

38) 일반회계-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131-301)(바이오생약국)

3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5., p.100)

40) 일반회계-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6137-300)(질병대응센터)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세목변경 (2024.4.15.)	관리용역비 (210-15)	4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BL3시설 수리를 위한 비용 확보 필요
세목변경 (2024.7.25.)	임차료 210-07	4	일반수용비 (210-01)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운영관련 제반 비용 부족
세목변경 (2024.9.13.)	시험연구비 (210-13)	3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진단분석실 실험실 이전 비용 마련
	일반용역비 (210-14)	8		
세목변경 (2024.9.1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1	시험연구비 (210-13)	진단분석 실험실 이전 비용 마련
	일반용역비 (210-14)	25		
세목변경 (2024.9.26.)	시험연구비 (210-13)	3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진단분석 실험실 이전 비용 마련
			일반수용비 (210-01)	
세목변경 (2024.10.2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시험연구비 (210-13)	검역감염병 진단분석 시약 구매 재원 부족
	임차료 (210-07)	7		
세목변경 (2024.10.28.)	임차료 (210-07)	8	일반수용비 (210-01)	진단분석과 실험실 이전 관련 소요재원 및 운영관련 제반 비용 부족
세목변경 (2024.11.2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실험실 시설장비유지비 재원 부족
	일반수용비 (210-01)	4		
세목변경 (2024.12.9.)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5	일반용역비 (210-14)	감염병 원인병원체 실험실 검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염기서열 분석(시퀀싱) 수행
세목변경 (2024.12.10.)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0	일반용역비 (210-14)	

자료: 질병관리청

예산의 이·전용, 세목조정 등을 통한 예산의 변경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와 같은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세목조정은 당장의 예산 집행에 대한 편의성만을 고려한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과도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⑦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은 국가 정책변화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이 거의 실집행되지 않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 이상반응 보상금(기타보전금)은 예산현액 255억 3,000만원 중 175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9%)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4억 9,000만원을 제외한 본예산의 경우 100억 4,000만원 중 24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24.8%)되고 7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12,031	12,031	15,870	27,901	19,818	12,031	4,436	-	8,083	7,700
- 일반수용비(210-01)	504	504	-	504	465	504	465	-	39	504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100	100	100	-	-	100
- 기타보전금(310-04)	10,040	10,040	15,490	25,530	17,594	10,040	2,487	-	7,936	6,033
- 민간위탁사업비(320-01)	1,387	1,387	380	1,767	1,659	1,387	1,384	-	108	1,063

자료: 질병관리청

이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당시에는「감염병예방법」제25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권고·실시('21.2월~'24.6월)되었으나,[41] 2024년 하반기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접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최근 4년간 코로나19 연도별, 접종대상별 접종 건수]

(단위: 건)

구분		코로나19 접종실적			
연도	대상	계	보건소	의료기관	접종센터
2021	국민(6,628만명)	103,415,932	1,629,645	85,447,585	16,338,702
2022	국민(4,430만명)	30,943,359	595,699	30,320,747	26,913
2023	국민(1,657만명)	6,456,774	228,395	6,228,379	-
2024	고위험군(633만명)	5,180,763	118,192	5,062,571	-

자료: 질병관리청

이와 같은 집행부진은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 역시 정책변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코로나19 이상반응 보상금은 2023년도 예산도 거의 실집행되지 않아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정 예산 규모를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면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되지 못하는 경우 과다·과소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동 사업과 같이 과다편성되는 경우 이는 집행부진으로 이어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마약수사역량강화(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은 세목조정을 통하여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를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2.1배 규모로 확대하여 집행한 반면,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는 당초 예산 대비 12.8% 규모로 축소하는 등 예산 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바,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 등을 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역량강화'** 사업[42]을 통해 해상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등 중대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의 규모를 확대하고 컨퍼런스 관련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한편, 회의장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2일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와 임차료로 각각 세목조정하고 총 예산규모도 확대하였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9.2.)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01 (일반수용비)	18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07 (임차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회의장소 임차
세목조정 (2024.9.2.)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01 (일반수용비)	54	범죄수사활동 (3102-301)	210-14 (일반용역비)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진행 용역

자료: 해양경찰청

결과적으로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는 기존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세목조정으로 증액된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를 활용하여 총 8,250만원 규모로 진행되어 당초 예산 3,880만원 대비 2.1배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였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예산 편성 내역 및 실제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편성 내역			실제 집행 내역		
세목	내역	금액	세목	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컨퍼런스 운영비	38.8	일반수용비	행사 간행물 발행 등	10.4
			임차료	컨퍼런스 회의장 임차	18.2
			일반용역비	행사 진행용역비	53.9
합계		38.8	합계		82.5

자료: 해양경찰청

42) 일반회계-범죄수사활동(3102-301)(수사국)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2023년에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2.9배로 확대(2억원→5억 7,000만원)하여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 등을 할 필요가 있음.

⑨ 함정건조·항공기 도입(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제 함정 및 항공기의 도입 대수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함정건조'** 사업[43]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구조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을 위하여 경비함정 등을 신규증강 또는 대체건조 하고, **'항공기도입'** 사업[44]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항공기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에 해양경찰청은 제정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제1차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였음.

기본계획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상 연간 함정 및 항공기 도입 목표가 실제 연차별 도입 실적과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43) 일반회계-함정건조(3101-300)(장비기술국)

44) 일반회계-항공기도입(3101-301)(장비기술국)

[기본계획상 2024년 도입 목표 및 실제 2024년 도입 현황 비교]

구 분			기본계획	2024년 실제
함정	신규증강	(대형)서해전력	1척	1척
		(중형함정) 독도전담	**1척**	**-**
		(특수정) 화학방제정	1척	1척
		(특수정) 연안구조정	**6척**	**2척(△4척)**
		(특수정) 예인정	**1척**	**-**
	노후대체	**(대형함정) 대형함정 대체**	**1척**	**-**
		(소형함정) 100톤 대체	**4척**	**10척(+6척)**
		(특수정) 형사기동정 대체	**2척**	**-**
		(기타) 고속단정 대체	**-**	**7대**
항공기	신규증강	**대형헬기 1대**	**1대**	**-**
		터보프롭 1대	**1대**	**-**
	노후대체	**노후 헬기 대체**	**3대**	**1대(△2대)**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⑩ 침몰선박 관리사업(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침몰선박 관리사업은 잔존유 확인 없이 잔존유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다른 문제가 있으므로, 잔존유 확인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이에 맞추어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침몰선박 관리사업’**[45]에 의해 잔존유 유출 등으로 해양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 위해도 평가, 잔존유 제거 등을 통해 침몰선박으로부터의 2차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2024년 예산에는 용산호 회수 55억 1,000만원, 제5영원호 회수 50억원 등 2척의 잔존유 회수를 위하여 10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용산호 회수에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제5영원호 회수 비용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선박 3척에 대한 잔존유 확인과 9척에 대한 현장조사 작업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45) 일반회계-해양오염사고 방지(1036-306)(해양정책실)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비교]

구 분	2024년 예산액 (산출근거)	2024년 결산액 (상세 집행내역)
현장조사	3억 5,000만원 ※ 5척×단가 7,000만원	9억 8,000만원 **※ 14척**×단가 7,000만원
잔존유 확인 및 회수	105억 1,000만원 ※ 용산호 회수 55억 1,000만원 제5영원호 회수 50억원	52억 100만원 집행 (46억 7,900만원 이월) ※ 용산호 회수 **25억 2,000만원** **비고마리너 확인 24억 7,000만원** **알렉산드리아 확인 25억 3,000만원** **진잉호 확인 23억 6,000만원**
합 계	108억 6,000만원	108억 6,000만원(이월액 포함)

자료: 해양환경공단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제5영원호 잔존유 회수의 경우 잔존유 확인 작업이 지연되어 2024년 4월 완료되었고, 잔존유 확인 결과 잔존유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회수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리고 용산호의 경우는 잔존유 회수 방식을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포화 잠수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표면공급식 잠수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잔존유 회수 비용이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절감됨.

그런데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회수 비용이 절감되자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 사업에서는 2023년에는 당해연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5영원호의 잔존유 확인을 추진한 바 있는 등 연례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비교]

구 분	2023년 예산액 (산출근거)	2023년 결산액 (상세 집행내역)
현장조사	3억 5,000만원 ※ 5척×단가 7,000만원	8억 4,000만원 ※ **12척**×단가 7,000만원
잔존유 확인 및 회수	78억 4,500만원 ※ 용산호 확인 26억 9,500만원 마린스타엠호 회수 24억원 알데바란호 회수 27억 5,000만원	59억 7,700만원 집행 (8억 4,000만원 이월) ※ 용산호 확인 20억 5,300만원 마린스타엠호 및 알데바란호 회수 18억 2,900만원 **제5영원호 확인 20억 9,500만원**
합 계	81억 9,500만원	68억 1,700만원(이월액 포함)

자료: 해양환경공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위해도 저감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잔존유 확인을 우선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잔존유 회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도 면밀한 계획 하에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⑪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은 현재 건조 완료 후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비 전액을 매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부실로 연간 50여억원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여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46]에 의해 악천후 및 외해에서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원활한 방제업무 수행을 위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의 건조·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2022년 5월 건조완료 후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당초 사업설계 시에는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활동을 수행하고, 평상 시에는 준설 작업 등 수익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건조완료 후 2025년 4월까지 준설 시범사업 1건(2억 9,200만원)만 수행하였고, 매년 100일 이상을 출동대기 상태로 운영 중이며, 연간 50여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2022년(8개월분) 29억원, 2023년 49억원, 2025년 52억원].

46) 일반회계-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1036-305)(해양정책실)

특히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평상 시 준설 또는 해양폐기물 수거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여 운영유지비를 충당할 계획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비 자체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박 건조비용 총 700억 1,500만원 중 135억 8,300만원을 준설장비 설치 비용에 집행하였음.

[「준설·폐기물 수거 겸용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 3, 사업의 주요 내용
>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운영기관(해양환경공단)이 평상 시 준설, 해양폐기물 수거 등 복합적 업무 수행을 통해 운영유지비를 충당**
> - **선박유지비용은** 준설 등 복합기능 운영을 통한 **자체조달**(연간 약 62억원)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권역과 운영방식을 매뉴얼화하는 한편 빈도가 낮은 대형사고 대응 외의 시간에는 선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준설 등의 활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준비가 요구된다고 정책제언을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방제 업무 지원 등 재난 대비 목적으로 건조되어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매년 50여억원의 적지 않은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국고 부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⑫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반영 내역과 달리 연도 중 사업 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확대된 사업 내용이 타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47]에 의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를 받는 단위해역의 수산물 안심확보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 편성 내역과 달리 사업 내용을 확대·변경하여 지정확인서 발급뿐만 아니라 안심관리 마을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고, 이러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였음.

4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수산물 위생관리(3041-303)(수산정책실)

용역은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용역결과보고서상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사업 내용인 지정확인서 발급 관련 경비보다 사실상의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안심관리 마을 홍보 및 소비 촉진 관련 경비가 더 많이 집행되었음.

[2024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용역결과보고서 중 사업비 발췌]

□ 수협중앙회

(단위: 천원)

구분	사업계획(a)	집행실적(b)	증감(b-a)	비고
합 계	1,359,432	1,359,432	-	-
□ 직접경비	1,153,408	1,153,408	-	-
○ 여비	4,935	4,935	-	-
○ 유인물비	42,500	42,500	-	-
○ 회의비	15,225	15,225	-	-
○ 임차료	1,500	1,500	-	-
○ 교통통신비	10,100	10,100	-	-
○ 사업추진비	1,079,149	1,079,149	-	-
- 해역관리자 수당, 조합 운영관리비	221,250	221,250		
- 지정확인서 발급	**98,250**	**98,250**		
- 홍보・회계 정산	23,960	23,960		
- 수산물 출하・유통물품 지원	**735,689**	**735,689**		
□ 인건비	160,053	160,053	-	-
□ 일반관리비	45,971	45,971	-	-

□ 한국어촌어항공단

(단위: 천원)

구분	사업계획(a)	집행실적(b)	증감(b-a)	비고
합 계	2,082,168	2,082,168	-	-
□ 직접사업비	1,547,915	1,547,915	-	-
○ 안심관리마을 물품지원	**1,063,648**	**1,064,853**	**+1,205**	**-**
- 유통・출하 물품지원	**923,772**	**923,772**	**-**	**-**
- 조사답례품 제작・배포	**43,087**	**43,087**	**-**	**-**

구분	사업계획(a)	집행실적(b)	증감(b-a)	비고
- 조사원 수당	**51,558**	**51,558**		**-**
- 임차료	**9,578**	**9,578**	**-**	**-**
- 인쇄 및 유인물비	**15,772**	**17,127**	**+1,355**	**-**
- 사무용품비	**2,011**	**2,002**	**△9**	**-**
- 공공요금 및 제세	**300**	**161**	**△139**	**-**
- 안심관리마을 사업안내	**17,570**	**17,568**	**△2**	**-**
○상품유통 지원	**193,622**	**193,622**	**-**	**-**
-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지원	**143,622**	**143,622**	**-**	**-**
- 특별장터·박람회 운영	**50,000**	**50,000**	**-**	**-**
○조사·평가 정책방향 연구	245,000	245,000	-	-
○국내여비	22,625	22,627	△18	-
○회의비	18,000	16,313	△1,687	-
○회계검증비	5,000	5,500	500	-
□ 인건비	416,394	416,394	-	-
□ 일반관리비	117,859	117,859	-	-

자료: 2024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용역결과보고서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상 당초 편성 사유였던 지정확인서 발급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9,825만원으로 예산 편성액의 1/40 규모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편성된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계상되었음. 특히 지정확인서 발급 실적이 연간 52,150건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직접 소요 경비가 크지 않아 당초 예산 편성 시 단가 설정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4년 지정확인서 발급 실적]

지역별구분	누적발급수(건)	지역별구분	누적발급수(건)
경기·인천	555	부산·울산·경남	12,171
충남	3,358	제주	2,689 (서면발급 1,892건 포함)
전북	1,515	경북	747
전남	29,968	강원	1,147
합 계		52,150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추진 시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함에 따라 사업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내용과 달리 확대·변경되고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환경부)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결여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48]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 및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수행한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9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가습기살균제 지원 중장기 로드맵 등에 따라 백신접종 사업은 2021년부터,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2024년까지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 전액이 2024년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이·전용을 통하여 집행하였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비용 지원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	150	-	150	59	-	91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사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두 사업 모두 2024년 중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 사업의 경우 2월까지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48) 환경개선특별회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2206-306)(환경보건국)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각종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 기간이 단축됨과 함께 두 지원사업 모두 별도 수요 조사 절차 없이 수요 인원을 산출함에 따라 두 사업 모두 당초 예측한 인원인 769명, 1,000명에 비해 실제 신청 인원이 각각 448명(58.2%), 95명(9.5%)에 불과하여 실제 신청 인원과 예측 인원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측인원과 실제 신청 인원]

	백신접종	인터넷 강의 수강권
예측 인원	769명	1,000명
실제 신청	448명 (58.2%)	95명 (9.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향후 피해자 지원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계획단계부터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수행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사업 추진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⑭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환경부)

지상 사외배관 설치 규정이 다른 수송관의 설치규정과 비교했을 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경부는 안전한 지상 사외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사업[49]을 통해 사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주민 및 환경 피해 우려가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개선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고시는 사외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 ‘적절한 기준’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기준’을 구체화한 별표에서도 지상 사외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는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만 지상 설치 배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49) 일반회계-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2320-302)(환경보건국)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배관의 설치 등) 배관의 설치 등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배관을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으로서, 유 · 누출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대장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1]

2)-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 ~ (3) 생략

(4) 차량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5)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이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의 경우 적합한 열수송관 설치 요건을 차량 충돌에 대비한 충격도 계산방법을 별표로서 별도의 산식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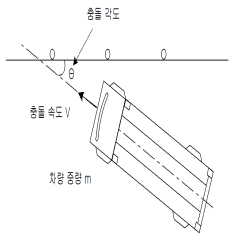
이는 두 규정 모두 관을 통해 물질을 이송하는 설비의 안전성 기준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설치 규정은 추상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50)「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4조 (열수송관의 설치일반)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휨 · 신축 · 진동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불균형 침하에 의하여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로부터 차량 충돌 등의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열수송관에는 이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도 계산방법은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에 따른다.
4. 고열의 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열에 의하여 주위에 심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열수송관의 내진설계는 [별표 1] "열수송관 내진설계기준" 을 따른다.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



$$IS = \frac{1}{2} \cdot m \cdot (\frac{V}{3.6} \cdot \sin\theta)^2$$

IS	:	충격도	(kJ)
m	:	충돌 차량의 중량	(ton)
V	:	충돌 속도	(km/시)
θ	:	충돌 각도	(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사외배관 안전사고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상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재난안전사업이 당초 설정한 목적 및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내 사업추진 및 실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중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부진 지적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기상청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4,294	4,285	사업지연으로 인한 연례적 실집행 부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2,400	1,400	연례적 실집행부진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119항공정비실 건립)	2,428	2,115	사업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5,459	5,459	국고보조금 실집행 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4,469	4,469	사업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6,388	6,388	실집행실적 부진에도 예산액 전액 교부 부적정
해양경찰청	항공기 도입 (대형헬기(5호기) 1대)	20,610	20,610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행정안전부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	667	659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도 전년도(2023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부진이 발생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13,731	6,000	사업지연에 따른 실집행부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12,500	12,500	2년 연속 실집행부진

① 기상관측표준화 추진(기상청)

동 사업은 관측지점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연례적으로 부지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상청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원활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업[51]을 통해 관측기관의 국가기상관측시설 표준화로 관측시설 개선을 통한 관측자료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관측지점 이전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 난항 등의 사유로 이전이 되지 않는 지점들이 발생하여 관련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측지점 부지 매입 실집행 불용 현황]

(단위: 개)

연도	계획지점	확보 건수	불용 건수	불용 사유
2022년	108	63	45	건물 구조안전진단 부적합, 유관기관 협의 결렬, 부지 확보 난항 등
2023년	85	53	32	건물 구조안전진단 부적합, 유관기관 협의 결렬, 부지 확보 난항 등
2024년	89	68	21	민원, 유관기관 협의 결렬, 부지 확보 난항 등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계획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존 관측지점의 열악한 환경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상관측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부지 매입 불용의 대부분의 사유가 유관기관과 협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상청은 이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대체부지 발굴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부지 확보를 통한 정확한 기상관측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1) 일반회계-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관측기반국)

②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관련 예산 편성시 지자체의 설치 수요 및 부지 확보 등 사업 수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52]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기관 설치 지연으로 인해 지자체의 실집행 내역 역시 부진한 상황인데, 2023년의 경우 1개소, 2024년에는 5개소 기관 설치 예산이 불용되는 등 지자체의 설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53] 지자체는 낮은 설치 단가로 인한 건물 확보의 어려움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추경 반영 등으로 인한 설치 추진 지연을 실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년	4,200	4,200	3,190	3,190	-	3,190	1,509	1,607	372	36.0
2023년	2,400	2,400	2,100	2,100	1,607	3,707	2,079	1,470	158	37.5
2024년	2,400	2,400	1,400	1,400	1,470	2,870	1,994	576	300	38.0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지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수행여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임.[54]

52) 일반회계-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인구아동정책관)

53)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의 경우 낮은 신규설치 단가,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지자체 설치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54)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는 지자체자본보조금(330-03)으로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공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과다 불용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 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119항공정비실 건립(소방청)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조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건축사업 추진 시 단계별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55]을 통해 전국 소방헬기의 계획 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 부품재고 관리와 신속한 정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헬기정비 예산절감을 위해 119항공정비실 건립을 추진하였음.

그런데 2024년 119항공정비실 건립을 위해 전체 공정률 대비 5%의 공사금액인 12억 1,800만원을 기초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절차에 따른 정비실 건립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2024년 착공이 불가능하여 국립소방병원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도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119항공 정비실 건립	3,587	3,587	-	-	2,428	2,115	2,369	2,056	186	127	12,919
건설보상비 (410-00)	1,200	1,200	-	-	1,200	1,200	1,200	1,200	-	-	1,200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324	324	59	-	383	383	324	324	-	-	-
실시설계비 (420-02)	813	813	-	-	813	532	813	532	186	95	-
공사비 (420-03)	1,218	1,218	-	△1,218	-	-	-	-	-	-	11,495

55) 일반회계-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1132-312)(장비기술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감리비 (420-04)	24	24	-	-	24	-	24	-	-	24	173
시설부대비 (420-05)	8	8	-	-	8	-	8	-	-	8	51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항공정비실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적정성 검토(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중 2회를 2024년에 실시하였고, 계획설계 검토에 54일('24.3.27.~5.20.), 중간설계 검토에 72일('24.7.15.~9.25.)이 소요되어 적정성 검토기간 중 검토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총사업비 증액요구사항인 물가상승률 및 기초파일공사비, 감리비에 대한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설명 및 보완자료 대응에 약 2개월이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 결과 당초 2026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7년 6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 현황]

단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비고
예비타당성조사		-	-	-
타당성조사		-	-	-
기본계획 수립		2022.5.	2022.5.	-
부지 선정		2021.12.	2021.12.	-
공공건축 사전검토		-	-	-
시(군)관리계획		-	-	-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	2023.8.~12.	2023.11.~2024.7.	7개월 지연
	실시설계	2024.1.~4.	2024.7.~2025.7.	1년 3개월 지연
토지보상		2023.3.	2023.12.	9개월 지연
공사		2024.9.~2026.3.	2025.10.~2027.6.(예정)	1년 3개월 지연 예정
시설완공		2026.3.	2027.6.(예정)	1년 3개월 지연 예정
운영		-	-	-

자료: 소방청

다만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인 2023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이 체결되지 않고 2023년 11월 24일에서야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11월 30일에 용역이 착수된 사정과 공종·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을 규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1]이 100~500억 공사비 건축의 경우 설계기간을 기본설계 4.5개월, 실시설계 7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와 관계기간 협의 등까지 고려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공종별·설계단계별(기본설계,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7	10	12
항만	12	13	14	10	11	12
댐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단지조성	4	-	-	7	-	-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1]

따라서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제39조[56]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년도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56)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소방청은 향후 건축사업 추진 시 단계별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여 적기에 공사비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④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소방청)

소방청의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실무협의체 회의 및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에서 정상추진 및 집행가능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향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57]을 통해 전문적인 화재진압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화재 훈련시설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실무협의체 회의 및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에서 정상추진 및 연내 국비 전액집행 가능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액 교부 이후 시·도 소방본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2024년 8월까지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9월 보조금 전액 교부 이후에 사업완료기간 지연이 예상되어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함.

[2024년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충청남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1,092	1,365	1,092	273	-	80.0
서울특별시	1,365	1,365	1,365	1,365	-	1,365	-	1,365	-	1,365	-	0.0
경상남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	1,365	-	1,365	-	0.0
전북특별자치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917	1,365	917	448	-	67.2
합계	5,460	5,460	5,460	5,460	-	5,460	2,009	5,460	2,009	3,451	-	36.8

자료: 소방청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58]

57) 일반회계-실화재훈련시설 구축(1132-324)(기획조정관)

58) 2024년 구축 대상 지역 중 충청·전북·경남 3개소는 2025년내로 구축완료 예정이며, 서울의 경우 설계 용역 완료 이후 2026년 하반기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

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당초 2024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싱크홀 발생 우려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동 관리원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59]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동 구축 사업은 설계공모절차 지연, 공사 계약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일정 대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당초 2024년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까지로 연장되었음.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개요]

- 설립목적 : 국내 최초 한약 등 품질관리 지원 전문기관 설립 - 공사기간 : 2023.6 ~ 2025.4월(예정) - 사업수행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치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6번지(부산대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내) - 사업규모 : 부지 3,686.97㎡, 건축면적 1,780.09㎡, 연면적 5,315㎡(지하1층, 지상3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싱크홀 발생 우려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현장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로 굴착 및 토목공사 등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기간이 다시 2025년 12월까지로 추가 연장되었음.[60]

그러나 동 사업은 국내 최초로 한약 등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 목적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 관리원을 조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 향후 추진 일정>

① 전북 : 훈련시설 설치 및 완공 예정(~'25.7.) / 국비 전액 집행 예정 ② 충청 : 훈련시설 설치 및 완공 예정(~'25.7.) / 국비 전액 집행 예정 ③ 경남 : 훈련시설 설치 및 완공 예정(~'25.12.) / 국비 전액 집행 예정 ④ 서울 : 설계용역(~'25.6.) 및 착공 예정(~'25.9.) → 국비 전액 집행 방안 마련중

자료: 소방청

또한 국고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5대 개선과제(① 사전 심사강화, ② 교부방법 개선, ③ 집행점검 강화, ④ 2개년 사업 추진, ⑤ 교육정례화)를 추진하여 국고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하였음.

59) 일반회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의약품안전국)

60) 도로함몰(싱크홀) 우려에 따라 도로굴착방식 변경(횡단굴착→보도면 평행굴착) 및 토목공사(외부도로, 주차장 등) 전 연약지반 보강

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⑥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관리청)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2024년도 예산액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교부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미리 검토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임.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61]을 통해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 감염병동 설치·운영을 위한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호남권 1개소의 경우 착공에 들어 갔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소는 설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도 예산에는 호남권역 총공사비 552억 4,900만원(국비) 중 63억 8,8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음.

그런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나, 2024년도에 교부된 예산액 63억 8,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2024년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질병관리청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6,388	6,388	6,388	6,388	17,718	24,106	5,224	6,388	-	18,882	-	-

자료: 질병관리청

61)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감염병위기대응국)

또한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년 0.2%, 2023년 0.6%에 그쳤고,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1.6%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 신규 교부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2021~2024년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이월액 및 사업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목표공정률[1]	
					계획	실제
2021년	19,543	856	12,290	4.4	-	-
2022년	17,326	27	13,466	0.2	-	-
2023년	26,192	177	17,718	0.6	-	-
2024년	24,106	5,224	18,882	21.6	16	7.45

주1) 2024년 6월 착공
자료: 질병관리청

따라서 향후 질병관리청은 사업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62]

아울러, 호남권 뿐만 아니라 충청권·경남권·경북권·수도권의 경우도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 재조사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⑦ 대형헬기(5호기) 1대(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대형헬기(5호기) 1대 도입 사업은 최초 계획 대비 약 2년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헬기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사업은 2023년~2026년(4년)에 걸쳐 도입될 예정으로, 2023년에 1차년도 사업비 11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62) 당초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기간은 2018~2021년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최종 2018~2026년으로 늦춰진 상황임.

[2023년 예산 기준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도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4년차 사업 ‣ 규격: 좌석수 20개 이상, 최대순항속도 140노트 이상, 항속거리 500마일 이상, 체공시간 4.5시간 이상 등 ‣ 연차별 사업비: 2023년 11.5억원 ⇒ 2024년 195억원 ⇒ 2025년 282억원 ⇒ 2026년 285억원

자료: 해양경찰청

그러나 2023년 추진된 입찰 과정에서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5회 유찰되며 사업비 전액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고, 2024년에도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연이어 유찰되며 4회의 재공고를 통하여 2024년 10월에야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 5월말 기준 신규 헬기의 도입 완료시기는 당초 계획 대비 약 2년 지연된 2028년 10월 예정이고 연차별 사업비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음.

[2025년 5월말 기준 신규 대형헬기 1대(5호기) 도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 5년차 사업 ‣ 규격: 좌석수 20개 이상, 최대순항속도 140노트 이상, 항속거리 500마일 이상, 체공시간 4.5시간 이상 등 ‣ 연차별 사업비: 2024년 195억원(2023년 이월 예산 11억 4,900만원 별도) ⇒ 2025년 27억 500만원 ⇒ 2026년 226억원 ⇒ 2027년 21억원 ⇒ 2028년 194억원

자료: 해양경찰청

동 사업은 계약 체결이 2024년 10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현액 전액을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여,[63] 예산 집행상으로는 2024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계약 체결 시기를 고려할 때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임.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신규 대형헬기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점검을 면밀히 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약의 특례) 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 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도 사업의 실수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년도(2023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령상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대안의 실효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 사업[64]을 통해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에 보강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사업 실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전년도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4년 기준 30개소를 대상으로 총 14억 6,7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8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규모 합계도 당초 예산 대비 44.9% 수준(6억 5,900만원)에 불과하였음. 또한 당해년도에 교부된 국비의 실집행 실적이 전무하였음.

[최근 3년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A)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2	1,565	1,565	-	-	-	-	-	-	-	-	-	-
2023	1,467	1,467	534	534	-	534	500	534	500	34	-	34.1
2024	1,467	1,467	659	659	34	692	21	692	-	659	13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10→20%), 지방세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등을 통해 사업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24.12.31.)[65]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시행 시점이 각각 2024년 12월·2025년 1월이고, 2025년에는 연구용역만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조치들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는 못하였음.

행정안전부는 2025년 실시되고 있는 1억원 규모의 연구용역(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대책 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수요 확보를 위해 조치된 대안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64) 일반회계-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자연재난실)

65)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1027

⑨ 대심도 하수저류시설(환경부)

동 사업은 무응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부금액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66]을 통해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에 45억원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없고 교부받은 금액이 전액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인 이월로 인하여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년도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3	서울특별시	5,435	5,435	4,500	4,500	-	4,500	0	4,500	0	4,500	0	0.0
2024	서울특별시	13,731	13,731	6,000	6,000	4,500	10,500	4,501	6,000	1	5,999	0	0.01

자료: 환경부

이러한 연례적인 이월은 사업계획 변경에 기인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조달청 공고 이후 사업이 2차례 무응찰되어 2024년 2월 총사업비 재협의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고, 총사업비도 강화문과 강남역을 합하여 6,000억원에서 8,683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추진으로 이월금을 집행하고, 이후 우선 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2024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음.

이에 따라 2024년 환경부는 광화문의 경우 9월 23일, 강남역의 경우 10월 18일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에는 이월된 금액만 집행되고 2024년에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 60억원 중 100만원만 집행되었음.

6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수관로정비(1132-312)(물환경정책관)

[2024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교부일자	전년도 이월액	교부액	예산현액	2024년 집행액	이월액 제외 집행액
계	-	4,500	6,000	10,500	4,501	1
서울특별시 (광화문)	2024. 09. 23.	2,000	4,000	6,000	2,001	1
서울특별시 (강남역)	2024. 10. 18.	2,500	2,000	4,500	2,500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이월된 59억 9,900만원 중에서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용역준공과 감리선금으로 총 5억 6,200만원만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추진을 이유로 2024년의 교부한 금액은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67]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자체 집행계획[68]]

(단위: 백만원)

		2025년					
		1~5월	6월	7월	8~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 합계		562	1,542	2,726	-	13,226	2,943
광화문	집행예정액	25	824	800	-	8,407	2,943
	집행원인	용역준공	모형실험 등	공사 기성		실시 설계비	우선시공분 및 감리 준공
강남역	집행예정액	537	718	1,926	-	4,819	-
	집행원인	감리선금	모형실험 등	공사기성 및 인허가 용역준공		실시 설계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6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제2항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8)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1~5월 집행예정액은 집행되었으나, 6월 및 7월 집행예정액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았음.

⑩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환경부)

환경부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이 계약 유찰 등으로 인하여 2년 연속 교부한 금액의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69]을 통해 도림천 일대에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남에 따라 침수예방을 위하여 수행하였음.

2024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을 위하여 125억원의 예산 전액을 사업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교부하였는데, 교부한 보조금 전액이 이월되어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이 0%임.

그런데 2023년에 교부했던 30억 3,100만원의 예산도 당시 전액 이월되어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이 0%였고, 해당 보조금이 2024년 12월에서야 집행되는 등 연속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3	서울시	3,031	3,031	3,031	3,031	-	3,031	-	3,031	-	3,031	-	-
2024	서울시	12,500	12,500	12,500	12,500	3,031	15,531	3,031	12,500	-	12,500	-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부할 필요가 있고,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게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69) 일반회계-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수자원정책관)

(다) 부적정 집행행위

일부 재난안전사업에서는 집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지침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중 부적정 집행행위로 인한 지적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국방부	재난 및 안전관리	33,926	31,687	수의계약 비율 과다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438,022	1,437,965	일부 사례에서 평가결과가 아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순위가 조정
기상청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고층기상관측망 운영)	5,667	4,243	정보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우선조달대상자로 선정
				시제품이 있음에도 관련 장비 도입계획 수립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건립	84,422	71,753	공사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감)하여 타당성 재조사 우회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180	180	「국가계약법」에 반하여 입찰공고를 갈음하는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
질병관리청	국가결핵예방 (결핵환자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576	569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용역비로 편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907	3,907	부적정 비목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지출 방식의 세입 계상
				근거 법령상 1인 병실 지원에도 다인실 운용 지속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치료제 구입비)	503,288	502,112	코로나19 치료제 보관·유통비와 치료제 구입비를 통합하여 편성한 것은 부적정 비목 편성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중앙방역비축물품)	4,567	4,511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의 사업계약 체결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특공대 활동 지원)	4,112	3,931	불용예산의 목적 외 사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000	20,000	펀드 회수액(용선료)의 반납 필요
	원양어선 안전관리 (원양어선 안전관리)	7,500	7,500	펀드 회수액(용선료)의 반납 필요
행정안전부	안전사고 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범정부차원의 재난 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435	294	당초 사업목적과 상이한 신규사업의 임의 집행

① 재난 및 안전관리(국방부)

동 사업 추진시 재난예방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70]을 통해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및 안전교육훈련 발전 등 국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SPD

2024년도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 관련 계약을 총 211건 체결하였으며 이 중 수의계약을 160건(75.8%),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51건(24.2%) 체결하였음. 최근 4년간 재난예방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수의계약 89.8%에 경쟁입찰 10.2%로 나타나고 있고, 2024년도는 수의계약 75.8%에 경쟁입찰 24.2%로 수의계약 비율이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의계약의 비율이 경쟁입찰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재난예방공사 계약 현황]

(단위: 건, %)

연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총 계약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년	221	89.8	25	10.2	246	100.0
2022년	160	88.9	20	11.1	180	100.0
2023년	171	83.8	33	16.2	204	100.0
2024년	160	75.8	51	24.2	211	100.0

자료: 국방부

70) 일반회계-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군수관리관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71]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명경쟁,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경쟁입찰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향후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 계약 집행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②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순위가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72]을 통해 노후화되어 안전이 취약한 일반철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하여 철도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2021 ~ 2025년)」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장애 빈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장 빈도가 높고 사고·장애 시 피해가 큰 시설물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우선순위 선정결과 중 선로시설개량 중 레일장대화 부문의 경우 당초 2024년 사업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분당선(야탑-정자), 전라선(익산-동익산), 태백선(석항-예미) 구간이 가장 시급한 개량대상이였던 분당선(수서-가천대) 구간 등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순위가 변경되었음.

---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72) 일반회계-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2)(철도국)

[선로시설개량(레일장대화) 우선순위 변경 사례]

구간		2024년 우선순위 (최초)		2024년 우선순위 (최종)		변경 사유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분당선	수서-가천대1	1	79.8	20	79.8	차단일정 변경 및 보선장비 운용일수 부족에 따라 재료구매로 변경
분당선	수서-가천대2	2	79.8	21	79.8	
분당선	한티-개포1	3	78	22	78	
분당선	한티-개포2	4	78	23	78	
분당선	대모산-수서1	5	75.6	24	75.6	
분당선	대모산-수서2	6	75.4	25	75.4	
경원선	외대앞-석계	7	68	26	68	
분당선	야탑-정자	-	53.8	17	53.8	노후레일 마모발생 개소 레일교체 시행
전라선	익산-동익산	-	53.8	18	53.8	
태백선	석항-예미	-	53.6	19	53.6	

자료: 국토교통부

전기설비개량 중 연동장치 부분 또한 경전선 예당역 등 후순위에 있던 사업이 100위권 이상 조정되어 우선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전기설비개량(연동장치) 우선순위 변경 사례]

선별	역명	2024년 우선순위 (최초)		2024년 우선순위 (최종)		변경 사유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호남선	황등	108	81	8	81	단종 부품(relayless) 발생으로 장애예방을 위해 우선 반영
경전선	원창	174	78	9	78	
경전선	예당	175	78	10	78	
경전선	조성	176	78	11	78	
경전선	벌교	177	78	12	78	
경전선	득량	178	78	13	78	
경전선	보성	179	78	14	78	
경전선	명봉	180	78	15	78	
경북선	점촌	181	78	16	78	
우암선	우암	182	78	26	78	

자료: 국토교통부

문제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 변경이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재산정하는 등 계량화되지 않고 순위조정으로 이루어져 비합리적이라는 점임. 예상하지 못한 마모가 발생하거나 단종 부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변경이 폭넓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계량화된 근거가 없는 과도한 순위조정은 우선순위에 따른 개량계획 수립의 신뢰를 저하하고, 당초 우선순위권에 있는 시설물의 적기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고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투자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③ 고층기상관측망 운영(기상청)

첫째, 기상청은 2023년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후 정보보안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2024년 장비 조달 시에도 정보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우선조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정보보안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고층기상관측망 운영' 사업[73]을 통해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 한반도 고층 대기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여 강수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2023년 6월 특정 연직바람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정보보안 사고를 계기로 기상관측장비 도입에 있어 정보보안 기준을 강화하고자 관련 정보보안 규정을 두 차례 개정하였음.

[기상청의 관측장비 관련 정보보안 규정 개정내용]

년도	규정	내용
2023. 06. 21.	-	관측장비 악성코드 정보보안 사고 인지
2023. 12. 27.	기상관측장비 도입절차 종합매뉴얼	기술제안서에 정보보안 평가 항목 신설
2024. 05. 17.	기상정 정보보안업무 규정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기상측기는 보안성 검토 대상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두 차례 정보보안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2024년 11월 신규 연직바람관측장비 조달 과정에서 제안된 정보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장비를 기술평가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우선조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확인한 후 조달을 철회하였음.

이는 2023년 정보보안 사고 발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달 과정에서는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장비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개정된 규정이 조달 과정에서 실효성있게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73) 일반회계-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관측기반국)

따라서 기상청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단계에서 정보보안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상청은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예정 지역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연구개발장비 시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 관측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운용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향후 기존 연구개발장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이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한 관측장비 시제품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실증연구가 수행되어 4월까지 해당 시제품 소유 업체와 장비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음.

그런데 해당 관측장비 시제품이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장소가 연직바람관측장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곳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신규 도입 논의 시 시제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만약 당초 계획대로 장비가 도입되었다면 해당 관측 지역에 장비가 중복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었음.

[연직바람관측장비 시제품 운용 상황과 도입 계획]

년도	연직바람관측장비 시제품	신규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2022. 6. ~ 2024. 1.	실증연구 수행	-
2023. 1. ~ 2024. 1.	실증연구 종료 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음	신규 도입 논의
2024. 1. ~ 4.	업체와 활용방안 논의	조달발주 준비 등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기상청은 관측장비를 도입할 때 기존 장비의 실증연구와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운용 및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④ 국립소방병원 건립(소방청)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회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추진 행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74]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기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용 일부를 임의로 제외시켜 해당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는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75]

그런데 총사업비 약 300억원이 증액될 경우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76]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77],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78]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

74) 일반회계-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기획조정관)

7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76)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7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7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

했으나, 소방청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경우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기본설계 단계까지 반영된 헬리패드, 의료가스장비·배관공사·방사선차폐 공사·의료IT시스템 등을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외하였음.

제외 후 2021년 12월에 총사업비를 168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18.5%)만 증액하였고,[79]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외한 공사는 낙찰차액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발생 시 총사업비를 감액하도록 규정[80]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였음.

결국 2024년에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발주를 하고자 119항공정비실 공사비 등 불용예정액 16억 1,8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총사업비 78억원(헬리패드 38억원, 의료가스장비·배관공사 26억원, 방사선 차폐 공사 6억원, 의료IT시스템 8억원)을 증액하였음.

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79)

〈 국립소방병원건립사업 총사업비 조정내역 〉

(단위: 백만원)

차수	차수설명	변경일	총사업비	공사비증감	감리비증감	시설부대비증감	설계비증감	비고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2020.02	90,687	81,535	3,954	186	5,012	
1차	설계협의1차	2020.09.21	97,584	6,897				
2차	설계협의2차	2021.12.28	114,404	16,414	373	33		
3차	설계협의3차	2022.06.28	130,069	13,534	2,101	30		
4차	공사자율1차	2023.02.20	116,653	△11,920	△1,232	△25	△239	낙찰차액 반납
5차	공사자율2차	2024.03.19	117,941	1,288				
6차	공사자율3차	2024.05.30	122,222	4,107	168	6		
7차	공사협의1차	2024.07.24	133,477	10,743	488	24		
8차	공사자율4차	2024.08.08	134,481	1,004				
9차	공사자율5차	2024.12.30	135,878	1,282	115			
10차	공사자율6차	2025.03.19	136,771	893				
11차	공사협의2차	2025.04.14	140,126	2,528	821	6		
12차	공사자율7차	2025.06.14	141,370	1,244				
합 계				129,549	6,788	260	4,773	

자료: 소방청

8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국고, 지방비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구분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2024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10.)	전국소방헬기통합 관리운영지원(312)	420-03	1,218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119항공정비실 공사비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전용 ('24.10.)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301)	420-03	97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구조본부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전용 ('24.10.)	지진대비대응역량 강화(305)	420-03	303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구조본부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합계			1,618			

자료: 소방청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제3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어 이미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임.[81]

공사의 일부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계상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중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다시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부당하게 우회하는 것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당성 재조사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것임.

따라서 소방청은 유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⑤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외교부)

외교부는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할 대학교를 모집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82]을 통해 대학교에 국제관계, 법학, 행정학 등 여러 분야를 융합하여 영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영사인력 양성을 지원하였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물품의 제조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문 등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교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83] 이는 입찰공고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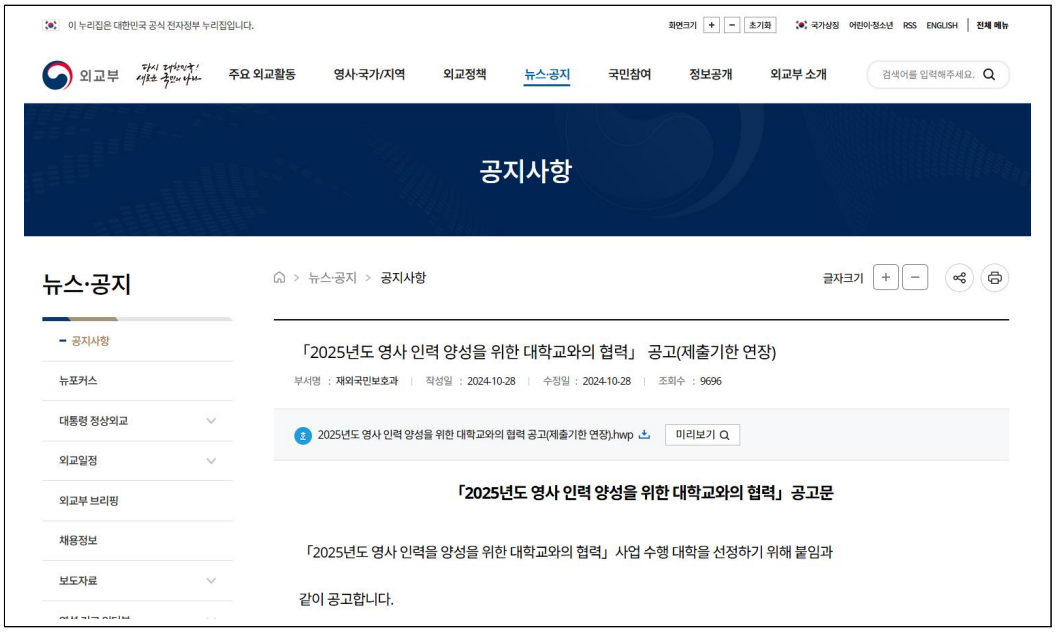
그런데 외교부는 사업의 수행 대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여 입찰공고를 대신하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

82) 일반회계-재외국민 보호(2731-401)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공고]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따라서 외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올리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대학교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의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⑥ 국가결핵예방(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은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므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는 관리용역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결핵 신고·감시, 역학조사, 결핵환자 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등 국가결핵사업 전반에 활용되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일반연구비는 국가로부터 전산개발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목으로는 적절하나, 이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비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 유지・보수 비목을 관리용역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⑦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질병관리청)

첫째, 질병관리청은 국가병원(국립목포병원,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입원치료병상 운영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 지원항목의 집행 사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정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은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4]

그런데 국가병원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정기점검 등 관리용역비로 집행해야할 내역에 집행되는 등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 사례]

(단위: 원)

집행 내역		집행액
국립목포병원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4월분	1,650,000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5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6월분	1,650,000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7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8월분	1,650,00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검증 및 TAB 용역	17,00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9월분	1,650,00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훈증소독 용역	6,820,000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10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11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12월분	1,650,000
	합계	38,670,000
국군수도병원	의료물품의 소모성 재료비	9,520,000
	시설유지보수(계약)	26,820,810
	훈증소독(계약)	8,106,000
	TAB(계약)	3,558,500
	시설 종합 검증(계약)	3,600,000
	승강기관리(계약)	1,898,750
	회계감사수수료	1,000,000
	합계	131,844,060

자료: 질병관리청

국가 예산은 집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정하고 세목조정 등의 절차 없이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성만을 고려한 집행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집행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일반지출(계좌이체) 방식의 예산 교부 및 집행잔액의 세입 계상은 국가 재정 운용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85]을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격리입원치료를 통해 병원 및 지역 사회로의 2차감염 최소화 및 신종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음.

질병관리청은 국가병원에 대한 예산 교부시 국립목포병원에 대해서는 관서간 예산 재배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일반지출(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수도병원 역시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활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시스템 사용을 이유로 일반지출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므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병실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관에서 다인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인실의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을 통해 현재 시·도 및 국가병원 38개 사업자에 대해 233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을 지원해야함.[86]

그런데 2015년 이전에 지정된 병실은 1인 병실이 아니더라도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여전히 다인실 20병실(57병상)이 존재하고 있음.

---

85) 응급의료기금-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2837-322)(감염병위기관리국)

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지정 현황]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총 병실수 (병상수)
1	국가병원	국군수도병원	8	-	8(8)
2	국가병원	국립목포병원	2	4*2	4(10)
3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4	5*3	7(19)
4		서울대병원	7	-	7(7)
5		서울의료원	10	-	10(10)
6		중앙대병원	4	-	4(4)
7		한일병원	3	-	3(3)
8	부산	부산대병원	5	-	5(5)
9		부산시의료원	5	-	5(5)
10		삼육부산병원	5	-	5(5)
11		온종합병원	6	-	6(6)
12	대구	경북대병원	5	-	5(5)
13		대구의료원	1	2*2	3(5)
14	인천	인천의료원	7	-	7(7)
15		가천대길병원	5	-	5(5)
16		인하대병원	7	-	7(7)
17	광주	조선대병원	5	-	5(5)
18		전남대병원	7	-	7(7)
19	대전	충남대병원	8	-	8(8)
20		건양대병원	5	-	5(5)
21		대전보훈병원	8	-	8(8)
22	울산	울산대병원	9	-	9(9)
23	경기	명지병원	7	2*2	9(11)
24		분당서울대병원	14	-	14(14)
25		고대안산병원	5	-	5(5)
26	강원	강원대병원	6	-	6(6)
27		강릉의료원	1	2*2	3(5)
28		원주의료원	5	-	5(5)
39	충북	충북대병원	3	3*2	5(9)
30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7	-	7(7)
31		아산충무병원	5	-	5(5)
32	전북	전북대병원	10	4*1	11(14)
33		원광대병원	3	-	3(3)
34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2	3(5)
35	경남	경상대병원	1	2*3	4(7)
36		창원경상대병원	5	-	5(5)
37		마산의료원	7	-	7(7)
38	제주	제주대병원	7	2*1	8(9)
실 총계			213	20(57)	233(270)

자료: 질병관리청

이와 같은 다인실의 운영 및 지원은 1인실 설치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다인실을 1인실로 전환하는 등 다인실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⑧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은 당초 개인보호구 보관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확보 이전에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용역계약 체결시 배정된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 상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은 현장 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개인보호구 등을 보관·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당초 개인보호구 보관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개인보호구 보관을 위해 재원 마련 전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23일 세목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전인 2024년 1월 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확보 전 계약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용역사업	이·전용 날짜	이·전용 등 금액	용역 계약일주)	사업기간	사유
중앙방역 비축물품	2024년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2024.1.23	3,172	2024.1.1.	2024.1.1. ~ 12.31.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보관 필요
		2024.12.5.	100	계약변경		개인보호구 추가 배송 등에 따른 비용 필요

주) 용역계약일은 사업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1월 1일로 작성됨.
자료: 질병관리청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87]

87)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한 후 지출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재원 확보전 계약 체결 행위는 「국고금 관리법」 상 지출원인행위 준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예산 운용 방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⑨ 치료제 구입비 사업(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치료제 구입비 사업은 정부 예산이 비목별 예산 편성·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치료제 보관·유통비와 치료제 구입비를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비목별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요구됨.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88]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정책을 설계·시행하고, 방역물품·의약품 비축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 편성시 공급가·보관유통비 및 관세 등을 포함한 예산단가로 산출한 후 재료비(210-11)로 편성하고 있는데,[89] 보관·유통비에 대한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일반수용비(210-01) 또는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 후 집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22일 코로나19 치료제 운송 및 보관을 위해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로 각각 8,000만원과 2억 8,000만원을 세목조정한 후 집행하였음.

[2024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 및 유통을 위한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2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10-11 (재료비)	8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10-01 (일반수용비)	코로나19 치료제 운송비용 등

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88) 일반회계-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감염병위기관리국)

89) 예산단가: 베클루리주 2.8백만원/명분, 먹는치료제 0.98백만원/명분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6232-330)			(6232-330)		
세목조정 (2024.1.2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28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4 (일반용역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계약 체결
세목조정 (2024.6.2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11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4 (일반용역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계약 체결
세목조정 (2024.7.2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4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01 (일반수용비)	코로나19 치료제 운송비용 등
세목조정 (2024.11.2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93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4 (일반용역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계약 체결

자료: 질병관리청

그러나 정부 예산 편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비목별 예산 편성·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사업비를 집행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비목상 성격이 다른 치료제 구입비와 보관·유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 편성한 후 필요할 때마다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방식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이와 같은 비목 통합 편성은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 비목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향후 비목을 구분 편성하는 한편, 사업 추진시 비목별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⑩ 특공대 활동지원(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은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티드론건 1대를 구입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특공대 활동 지원’**은 해상테러 예방·진압, 해상경호업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대테러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에는 드론탐지기 1대 도입을 위하여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드론탐지기 구매를 위하여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 드론탐지기 도입 예산이 일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불용예상액과 대테러장비구매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불용예상액 일부를 활용하여 안티드론건 1대(4,350만원)를 구입하였음.

안티드론건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90]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⑪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원양어선 안전관리(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출자 후 회수된 지원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추후 재투자에 활용할 예정인데, 이러한 회수액의 재투자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고, 모태펀드 등 타 정책펀드와 달리 존속기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회수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추후 추가 지원 필요시 예산안 등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91] 및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92] 등에 의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화물선 및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고 있음.

---

90)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91) 일반회계-연안선박 현대화 지원(6133-307)(해운물류국)

92) 수산발전기금-원양어선 안전관리(3541-301)(수산정책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선박 건조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용선료의 형태로 회수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두 펀드 모두 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있으나 펀드 회수액(용선료)의 재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93] 사업 지침에만 회수액의 재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규 출자 없이 회수된 지원액을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행상 소관 부처의 자율성이 큰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특히 두 펀드 모두 모태펀드 등 타 정책펀드와 달리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수액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경우 펀드의 청산 시기 및 펀드 출자액의 국고 회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향후 출자 자금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94]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회수액을

---

93)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해운법 시행령」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원양어선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94) 참고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책목적을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펀드운용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고,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에 반납하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⑫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범정부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일부가 당초 사업목적과 상이한 신규사업에 집행되었는 바,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95]을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활동 등에 종사하는 일선 현장근무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을 격려·지원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당초 물품 지원을 위해 계상[96]했던 예산 3억 3,500만원 중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6,700만원을 국회에서 심의된 바 없는 '재난현장종사자 사기진작·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집행하였음.

새로 추진된 사업의 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종사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 및 가족들을 「KBS 열린음악회 특집방송」(2024.12.22. 방영)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서, 당초 계획상 지출용도인 물품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사기진작 홍보 프로그램 사업 내용]

- (추진배경) 일선에서 재난업무에 수고하는 재난·안전 공무원 등을 KBS 열린음악회에 초청 격려하고 재난현장에서의 노고를 알리기 위한 특집방송 기획·홍보 - (특집방송 계획) 2024. 12. 22.(일) 「KBS 열린음악회 특집방송」, 17:40 - (참 석 자) 재난/안전 부서 공무원, 소방·경찰·해경 및 그 가족 등 1,150명 - (행사내용) 일선 재난·안전 현장 종사자 등의 지친 심신 격려를 위한 감사의 인사 전달, 대한민국 안전 영웅 활약상 소개, 위로 무대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해석상 모호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편성내역과 상이한 사업을 기성 예산을 사용하여 신규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95) 일반회계-안전사고 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2632-305)(안전예방정책실)

96) 2024년 예산 기준 산출내역: 10,000명 × 33,500원 = 3억 3,500만원

(라) 비효율적 사업운영

일부 재난안전사업에서는 사업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방식의 개선을 요함.

[2024년 재난안전사업 중 비효율적 사업운영 관련 지적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국토교통부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1,226	1,175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적 대응에 대한 비중이 높아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우려
기상청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5,414	5,404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 및 평균 복구 시간 매년 증가
행정안전부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3,251	3,251	학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
				ISP 수립 전 실증공모를 실시하여 실증공모 결과를 반영 노력 필요

①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사전예방적 안전점검보다는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적 대응에 대한 비중이 높아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및 인력조정 등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사업[97]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 인증, 항공분야 안전감독 수행 및 안전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와 수행방법을 규정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사 '안전점검' (상시점검·특별점검) 외에도 각종 인가·증명·승인,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사실조사' 를 병행하고 있음.[98]

---

97)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항공기안전인증 및 감독활동(3636-303)(항공정책실)

98)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감독관의 직무) ① 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항증명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그런데 감사원이 실시한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실조사가 항공안전감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99] 감사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 사례[100] 등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에게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 상시점검 등 사전예방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업무범위·인력·업무수행방법 등을 조정·개선하여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101]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실조사 업무를 신설하고 2020년에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을 2명을 신규채용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사실조사 감독관 충원은 없는 상황임. 현재 항공안전감독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은 2명이고 나머지 28명은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실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중임.

[항공안전감독관 운영 현황]

분야	조종	정비	객실	위험물	운항관리	사실조사	계
인원(명)	9	12	2	2	3	2	30

자료: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는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항공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안전점검과는 성격이 다르고,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안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운항정지, 과징금 부과 등

---

2.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및「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및「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4. 정비조직인증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5. 사실조사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6. 안전활동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등

제12조(상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에 따라 필수점검, 위험기반점검, 계획점검 등의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령 또는 안전운항 규정 등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99) 항공사 안전점검 이외에 각종 인증·인가사항 검토 및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에 대한 사실검토와 사실조사 등으로 담당업무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안전과 관계된 이벤트 발생에 따른 사후적 대응이 우선시되어 안전점검이 소홀해지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89%는 사실조사로 항공안전감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감사원,「항공기 안전관리실태(인증·정비 분야)」, 2018.12).

100) 미국은 안전감독부서와 사실조사부서를 따로 두고 사실조사 인력도 별도 채용하는 등 안전점검과 사실조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101) 감사원,「항공기 안전관리실태(인증·정비 분야)」, 2018.12.

행정처분을 위해 현장확인・관계자 면담・법령해석・적용 등을 거치게 되어 사실조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평균 165일이 걸리는 등 장시간이 소요됨.

[최근 5년간 항공운항과 사실조사 현황(20년~24년), 완료건 기준 소요기간]

(단위: 명, 건)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B)	49	6	14	6	11	12
평균 조사기간	165	152	189	256	208	130
평균 투입인원	3	2	3	3	3	3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안전점검 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이 사실조사 등 사후적 대응 활동을 병행할 경우 사전예방 성격의 항공사 안전점검 등이 위축되고 사실조사 또한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 인력 충원 등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기상청)

기상청이 운용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정확한 기상 값 측정을 위하여 관측장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사업[102]을 통해 양질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수는 1~2대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장 건수는 2023년 156건, 2024년 59건 증가하여 장비 도입 증가 폭에 비하여 고장 건수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102) 일반회계-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관측기반국)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지점(측정소)별 고장 건수]

연도	장비 수(대)	전년도 대비 장비수 증가(대)	고장건수	전년도 대비 고장 증가건수	평균 복구 시간
2022년	637	-	385건	-	34시간 7분
2023년	639	2	541건	156건	35시간 25분
2024년	640	1	600건	59건	33시간 40분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4년 640개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한 해 동안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는 283개에 불과하고, 5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6대, 6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4대로 고장이 발생하여 복구한 장비도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자동기상관측장비 별 고장 건수]

구분	고장건수							합계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장비 수	283개	216개	78개	38개	15개	6개	4개	640개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고장 발생 시 국가 기상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행정안전부)

첫째, 동 사업은 학습데이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현 사업 여건상 비용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데이터 활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당초 육안관제를 인공지능에 의한 지능형관제로 완전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지능형관제의 오탐률이 높아 육안관제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업내용을 직접 지능형관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에서, 각 지자체의 지능형관제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사업 ISP 수립 전-후 사업내용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총사업비	내용	총사업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CCTV 전면 교체**	4,400 ~7,600억원 (추정)	CCTV 영상 기반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재난유형별** **학습데이터 제작·관리**	304억 9,700만원 (ISP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4.11.29.),「지능형 CCTV 관제체계 전환 목표 수정 검토 보고」

그런데 변경된 사업내용은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표대로 '육안관제를 지능형관제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민간업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육안관제를 지능형관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CCTV의 도입 및 영상 제공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CCTV의 도입비용 및 실영상 데이터의 관리비용 등이 요구됨.

또한 연구개발에 의한 영상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고도화된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운용하는 비용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없을 경우[103]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 등이 요구됨.

이는 당초 CCTV 전면 교체를 위한 총사업비로 추정되었던 7,600억원[104] 규모 이상의 비용이 각 지자체에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105] 해당 비용에 더하여 총 37개

103)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영상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유형에 따른 별도의 연구개발 수행이 필요한데, 민간업체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수행할 유인이 없음.

104) 행정안전부(24.11.29.),「지능형 CCTV 관제체계 전환 목표 수정 검토보고」

105) 행정안전부는 CCTV 교체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경비를 37.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비용은 지능형 CCTV의 비율이 10% 미만인 22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CCTV 30,946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에 불과함.

유형에 달하는 재난유형별로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추정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106]

행정안전부는 육안관제를 지능형관제로 전면 대체한다는 당초의 목표 대신 각 지자체 주도로 지능형관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며, CCTV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현재 지능형 CCTV 운용비율이 낮은 지자체들부터 CCTV 교체 등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민간업체의 참여여건이 불투명한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서 영상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력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고, 재정력에 여력이 있더라도 각 지자체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지능형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학습데이터가 공유되더라도 육안관제가 지능형관제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별로 영상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모델 개발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학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에서는 정보화사업과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와 ISP를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진방식으로는 ISP 수립 시 실증공모의 결과물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실증공모의 결과가 ISP에 활용될 수 있도록 ISP 수립 이전에 실증공모를 추진 및 완료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외에 실증공모를 위한 2건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일정상 실증공모 사업보다 ISP가 먼저 종료되어 실증공모 사업의 최종결과물이 ISP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음.[107]

---

106) 영상분석시스템의 개발은 재난유형별로 따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제5차 국가재난안전계획(2025~2029)」 및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채택하고 있는 분류체계에 따르면 공통 유형(8개)을 제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은 자연재난 9개 유형・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8개 유형 등으로 총 37개 유형에 이르고 있음.

107) 2건의 시범사업은 2024년 연말까지 추진되고 있어, 일정상 사업결과가 ISP 최종결과물 제출(24.8.9.)에 반영될 수 없었음.

[2024년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주업체	계약기간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ISP	431	43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24.8.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820	82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24.12.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2,000	2,0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24.12.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의 경우 2023년부터 추진된 연구개발사업(R&D)인 ‘지능형 CCTV 및 관제시스템 표준 프로토타입 개발’의 연구결과를 지자체에 시범적용하는 사업으로서, ISP 사업은 AI 학습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설계가 주된 내용이므로 실증사업과 사업내용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이태원 참사(2022.10.) 및 오송지하차도 참사(2023.7.)의 후속대책 핵심과제로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ISP와 2건의 실증공모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2024년 실시된 2건의 실증공모 사업은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ISP를 거쳐 추진될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학습데이터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ISP 수립 이전에 실시 및 완료되는 것이 보다 적정하였을 것으로 보임.

[시범개발적용 사업 및 실증공모 사업주요 내용]

구분	시범개발적용 사업	실증공모 사업
사업명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범개발 및 시범적용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사업비	8억 2,000만원	20억원
사업기간	24.2.~24.12.	24.2.~24.12.
목적	지능형 표준 프로토타입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6가지 유형) 시범 적용(2개 지자체)	지자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문제해결(4개 지자체)
내용	R&D 결과물을 적용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기술 실증	지자체 수요조사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영상분석 기술 및 지자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실증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본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실증공모를 가급적 ISP 수립 이전에 실시·완료하여 관련 내용이 ISP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마) 사업성과 미흡

재난안전사업 일부는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재난안전사업 중 성과미흡 관련 지적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경찰청	교통안전활동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1,800	1,800	사업 확대에도 만65세 이상 운전자 교통발생비율은 증가
고용노동부	유해작업환경개선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81,276	80,765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 계획에도 대상물질 확대 실적 부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유해위험요인시설 개선)	95,707	95,707	지원대상 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 개선실적 미흡
	안전보건교육 및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 (안전보건교육)	9,216	8,971	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필요
	업종별 재해예방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12,600	5,344	목표 대비 실적 부진
국토교통부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1,575	1,543	'조류충돌 발생건수' 증가에도 감축목표치 미설정 문제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8,953	6,552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690	690	현장 업무 근무자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소방안전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1,100	666	위탁운영과업 과제 수행 등이 미흡하여 보완요청 등으로 기한 미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 활성화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1,020	1,009	스마트 HACCP 도입성과 미흡
해양경찰청	경비대테러역량강화 (드론운용)	1,796	1,523	드론 관련 직무교육의 실효성 미흡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경찰청)

경찰청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납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인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108]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예산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109] 2024년의 경우 예산현액 18억원 중 17억 9,0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99.4%)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총 11만 4,436건으로 전년대비 반납 건수가 증가하였음.[110]

[최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실집행 내역 및 운전면허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자치단체 실집행 내역				운전면허 현황		
	예산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A)	자진반납 건수 (B)	자진반납 비율(B/A)
2020	1,392	1,392	1,316	76	3,682,632	76,002	2.1
2021	1,392	1,392	1,335	57	4,016,538	83,997	2.1
2022	1,800	1,800	1,781	19	4,387,358	112,942	2.6
2023	1,800	1,800	1,781	19	4,747,426	112,896	2.4
2024	1,800	1,800	1,790	10	5,166,386	114,436	2.2
2025	2,700						

자료: 경찰청

그러나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42,369건이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비율은 21.6%로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대비 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이 교통안전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8) 일반회계-교통안전활동(1331-312)(생활안전교통국)

109) 2018년 부산시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되었음.

110) 예산 편성 당시 계획인원(2024년 기준 총 60,000명)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진 자치단체의 경우, 초과 지원금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체 교통사고 (A)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B)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비율 (B/A)
2020	209,654	31,072	14.8
2021	203,130	31,841	15.7
2022	196,836	34,652	17.6
2023	198,296	39,614	20.0
2024	196,349	42,369	21.6

주)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자료: 경찰청

②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고용노동부)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의 경우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상물질을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일용직·공동주택 종사자 및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를 계획하였음.

그러나 1990년 발급 대상 물질 11종을 최초로 규정한 이후 2005년 니켈·카드뮴 및 벤젠이 추가되고 2017년 비파괴검사(X-선)업무가 추가된 이후로 2024년까지 발급 대상 물질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이력이 없음.

[건강관리카드 제도 연혁]

- ('90년) 건강관리수첩 제도 첫 시행(노동부, 11개 물질)
- ('93년) 건강관리수첩 제도 공단 위탁 (일선기관 발급·사후관리 업무 시작)
- ('94년) 직업성 암 첫 승인('93. 석면)에 따라, 석면 취급(제조 → 노출) 추가
- ('99년) 발급대상을 '이직자' 대상 →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 ('05년) 니켈, 카드뮴, 벤젠 추가, 용접흄 삭제, 세부 작업요건 반영
- ('08년) 석면 해체·제거·보수 업무 추가

▸('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취득 개인정보 변경(주민번호 → 생년월일)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 추가(벤젠, 염화비닐)
▸('13년) 요양급여 신청 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카드로 제출 가능
▸('14년)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시행
▸('17년) 비파괴검사(X-선) 업무 추가
▸('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명칭 변경(건강관리수첩 → 건강관리카드)
▸('21년) 석탄발전소 하역·이송·저장·혼합·분쇄·연소 등의 작업(석탄) 추가
▸('25년)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프로판 등 4종 추가, 비파괴검사 요건 완화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카드 발급 대상물질(15종) 중 6종(베타-나프틸아민,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 카드뮴)은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실적이 없고, 베타-나프틸아민 및 베릴륨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된 이력이 없음.

[2020~2024년 건강관리카드 발급 요건(물질)별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벤지딘	지원건수	18	14	8	9	6
	지원금액	405	331	198	226	134
석면	지원건수	332	389	363	325	240
	지원금액	8,041	5,940	6,269	4,981	6,961
분진	지원건수	166	203	155	184	112
	지원금액	3,639	1,073	1,162	1,093	2,280
염화비닐	지원건수	10	66	34	36	46
	지원금액	78	528	79	153	138
크롬산·중크롬산	지원건수	284	303	137	349	239
	지원금액	5,767	1,496	1,609	3,375	5,254
니켈	지원건수	33	72	10	64	109
	지원금액	545	223	269	324	2,169
벤젠	지원건수	23	111	47	34	60
	지원금액	183	897	377	268	488
제철용 코크스	지원건수	105	146	64	95	127
	지원금액	1,824	2,837	1,473	1,692	2,589
비파괴검사	지원건수	13	1	2	11	5
	지원금액	8	8	8	22	9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1990년 제도 시행 후 수시로 법령을 제·개정하여 제도운영상 개선을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2025년 인체 발암물질로 확인된 산화에틸렌 등 4종[111]의 물질을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로 추가하였고, 대상 요건도 완화[112]하였다고 설명하였음.

향후 직업성 질환(암)의 예방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성 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업군과 물질들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발급대상물질로 지정하는 등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영세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5년간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발생 비율이 23.9~27.7%에 정체되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3대(추락·끼임·부딪힘)사고[113] 유형의 8대 요인을 특별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계획액 714억 6,700만원 중 545억 2,200만원을 지출해 4,079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하였음.

---

111) (현행) 15종 → (개정) 19종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프로판)

112) (현행) 비파괴검사 X-선 → (개정) 비파괴검사 X-선 및 γ-선

113) ①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② 끼임: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③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2020~2024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예산 및 결산]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물량	목표 지원 사업장 수 (A)	6,900	8,100	8,900	8,900	8,900
	실제 지원 사업장 수 (B)	5,010	5,515	7,332	4,943	4,079
	B/A	72.6	68.1	82.4	55.5	45.8
금액	예산 (C)	55,417	65,053	71,467	71,467	71,467
	결산 (D)	55,567	62,214	78,005	54,629	54,522
	D/C	100.3	95.6	109.1	76.4	76.3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3[11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115]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받고 있고, 지원사업장과 동일 조건의 미지원 사업장을 추출하여 미지원사업장의 떨어짐 재해자 발생비율과 지원사업장 떨어짐 재해 발생비율의 격차를 비교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전년대비 건설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116] 지원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이 높아졌으며, 2019~2024년간 지원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23.9~27.7%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117]

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건설업 산재의 경우 건설업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됨.(건설업 경기가 호황일수록 건설업 관련 산재도 많아지게 되는 것임) 2024년의 경우 2023년에 비해 건설기성(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주로 건축 부문의 침체에 기인함.

<2020~2024년 건설기성(불변, 계절조정)>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38,647,584	128,793,621 (△7.1%)	132,261,799 (2.7%)	143,073,754 (8.2%)	136,901,581 (△4.3%)
건축	98,978,946	95,263,266 (△3.8%)	99,240,763 (4.2%)	109,427,895 (10.3%)	102,316,304 (△6.5%)
토목	39,668,638	33,530,355 (△15.5%)	33,021,036 (△1.5%)	33,645,859 (1.9%)	34,585,277 (2.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9~2024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성과평가 결과]

사고재해발생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지원 사업장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A)	35.5%	35.7%	32.0%	32.0%	33.0%	32.9%
지원 사업장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B)	27.7%	27.3%	23.9%	25.3%	24.3%	26.4%
실 적(A-B)	7.8%p	8.4%p	8.1%p	6.7%p	8.7%p	6.5%p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 실적이 정체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설업 산재 예방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④ 안전보건교육(고용노동부)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장이 2024년 8곳 중 3곳만 운영되고, 2곳은 건립 중이며, 3곳은 시설 노후화 및 안전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하는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118]에 따라 설치된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 중임.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4년 신규건립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중부 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2020년 1월 운영을 중단한 이후 2025년말 준공 예정을 목표로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 중임.

---

117)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은 짧은 기간에 소멸하는 등 동일한 사업장의 지원 전·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을 받은 건설현장과 지원을 받지 않은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자 발생비율의 차이를 성과지표로 사용중이나, 지원 건설현장 수는 매년 5천 개소 내외로 대조군인 미지원 사업장 수(7~8만개소)에 비해 훨씬 적어 떨어짐 재해자(분자)가 줄어도 전체 재해자 수(분모)에 따라 재해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8)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반면 경남·경북·충청지역의 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코로나 확산('20~'21년) 및 구조물 노후화('23년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으로 운영 중단)로 인해 교육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상황이며, 2024년에는 제천·담양·여수의 안전체험교육관만 운영되었음.[119]

[2020~2024년 공공 안전체험교육장 교육실적]

(단위: 건,명)

교육장명	위치	개장일	운영 중단 시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중부	인천 부평구	'97.05.	'20.01.	-	-	-	-	-	-	-	-	-	-
경남	경남 김해	'02.06.	'24.01.	2	34	-	-	2	45	32	865	-	-
경북	경북 경산	'08.02.	'24.01.	-	-	-	-	-	-	-	-	-	-
충청	충남 공주	'09.04.	'24.01.	4	80	1	23	30	519	1	21	-	-
제천	충북 제천	'19.03.	-	20	323	-	-	102	1,763	173	2,868	308	4,987
담양	전남 담양	'23.05.	-	10	212	-	-	-	-	127	2,065	301	4,295
여수	전남 여수	'23.12.	-	-	-	-	-	-	-	-	-	595	8,775
익산	전북 익산	'24.12.	-	-	-	-	-	-	-	-	-	-	-
합계				36	649	1	23	134	2,327	333	5,819	1,204	18,057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주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과 달리 비용이 소요되고, 일부 회사의 근로자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우가 있어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의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119)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은 사업주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체험교육장 이용 시 교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⑤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이 집적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자부담 비용, 지원 수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문제들을 보완하고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회나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회원사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방문컨설팅 등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채용인원당 월 25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음.

2024년에는 협회나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회원사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600명 채용분 1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63명만을 채용하여 53억 4,400만원만 집행되었고, 72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구분	내용
자율안전 관리 체계구축	편성 근거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순증) ('24) **126억원** - 세부내역 : 지원금(600명 × 250만원 × 8개월 = 120억원), 수행경비(600명 × 100만원 = 6억원)
	집행 내역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53억 4,400만원**(363명 × 1,47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집행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2024년에 신규로 도입되어 사업 초기 홍보가 부족하여 협회와 단체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② 소규모 단체의 경우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으며, ③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지원 80%, 협·단체 20%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원한도가 월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부담은 20%인 약 70만원 수준을 초과한다고 호소하는 협·단체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사업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20]

⑥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의무보고자료의 분석결과 조류충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목표치 설정 없이 모니터링 지표로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전성과지표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사업[121]을 통해 국가항공안전데이터(12종) 수집·분석·연구·공유를 위한 인프라 확보, 분석시설 및 인력 운영 등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음.

국토교통부는「항공안전법」제58조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가 항공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122]

[2024년 안전성과지표 현황]

지표명	지표명
활주로이탈	회항
부적절한 활주로 접촉	항공기 간 접촉(충돌)
활주로침범	항공기-장비/차량 간 접촉
조종제어상실	분리치 미확보
기내여압관리 실패	항행안전시설 성능장애

120) 고용노동부는 조기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확대하며, 홍보 강화 등의 사업 참여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121)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3636-340)(항공정책실)

122)「항공안전법」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3. 항공안전보증
4. 항공안전증진

지표명	지표명
순항 중 고도·경로 이탈	난기류 조우 부상
이착륙 중 고도·경로 이탈	운항지장 초래
유도로 오진입 이탈	고장 연기·화재
비행중 엔진정지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관리하고 있음.[123)]

다만 최근 3년간 항공안전장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조류충돌이 2024년 기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만 운항당 조류충돌 발생건수는 2020년 295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2.6배 증가하였음에도 그간 조류충돌 지표의 발생 경향성을 감시하고 감축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최근 항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통해 수집·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가 단순히 동향분석이나 연구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안전성과목표 달성 등 실효적 안전관리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안전장애 현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⑦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결과가 미흡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124)]을 통해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유지관리, 스마트항공교통시스템, 국가공역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첨단비행로 유

123)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수집 · 저장 · 통합 · 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24) 교통시설특별회계-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3636-311)(항공정책실)

지관리, 공역개선 관련 연구 등 항공안전증진 및 항행기술 발전에 따른항공안전체계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상위계획과의 연계 및 재난안전관리 단계에 따른 목적이 미흡하고, 사업방식 개선 노력이 미흡하며, 성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3년에 이어 20204년에도 재차 “미흡” 등급을 받았음.

[재난안전사업평가 주요 미흡 분야]

ㅇ (계획) 상위계획과의 연계, 재난안전관리 단계에 따른 목적 명시,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이슈 연계, 전년 사업 평가 의견 반영 등 설명 미흡(17.3점/30점)
ㅇ (관리) 예산 집행율이 낮고, 예산집행계획 미준수, 이월 예산 발생, 예산집행률 제고 및 예산절감 노력 부재 등 사업방식 개선 노력 미흡(13.7점/20점)
ㅇ (결과)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성과 활용 등의 노력 부재(35점/50점)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전년도 평가의견의 사업계획 반영 정도(10점)와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10점) 항목에 대해서 2년 연속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사업의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환류) 또는 사업성과 확산 노력에 대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음.

[재난안전사업평가 0점을 받은 항목 및 근거]

① 전년도 평가의견의 사업계획 반영 정도(10)

구분	2023년('22년 회계)	2024년('23년 회계)
ㅇ 전년도 평가의견의 사업계획 반영 정도(10)	0	0
- 평가의견	ㅇ 전년도 평가의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ㅇ 전년도 평가의견

	그에 관한 환류 계획을 검토한 실적이 없음 - 향후 평가의견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됨 - 특별한 평가의견 없이 우수라고 판정된 경우에도 검토 환류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0점” 부여	반영여부 확인 불가

②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10)

구분	2023년('22년 회계)	2024년('23년 회계)
○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10)	0	0
- 평가의견	○ 사업성과 확산 노력에 관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판단할 자료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항공기 충돌방지 및 항공교통흐름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재난안전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국가항행계획,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 및 재난안전관리 단계와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수립된 계획이 확실히 이행되어 성과평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⑧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소방청)

소방청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교대근무를 하는 현장 업무 종사자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소방관들의 참여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소방공무원 중 희망자 및 ‘마음건강 고위험군’,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선발하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적 충격 해소 및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소방공무원 중 행정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인 것과 비교할 때 행정인력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2024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참여현황]

연도	화재	구조	구급	상황실	화재조사	행정	기타	합계
2023년	901명 (35%)	255명 (10%)	447명 (17%)	94명 (4%)	59명 (2%)	796명 (31%)	53명 (2%)	2,605명 (100.0%)
2024년	950명 (38.1%)	200명 (8%)	396명 (15.9%)	74명 (3%)	65명 (2.6%)	749명 (30.1%)	55명 (2.2%)	2,489명 (100.0%)

자료: 소방청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지침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인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장업무 근무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소방청은 향후 현장 업무 근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25]

⑨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소방청)

이 사업은 위탁운영과업 71건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등 22건이 미흡하여 보완요청이 이루어지고 기한 내 과업이 완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소방청은 향후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126]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개방하여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민간업체에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

소방청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2개월 주기로 성과 실적을 점검

125) 소방청은 2025년부터 '직무분야별 배정 기준(직무분야별 인원 및 스트레스 정도 등 반영)'을 마련하여 현장인력의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 2025년 4월말 기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참여 현황 >

화재	구조	구급	상황실	화재조사	행정	기타
338 (39.9%)	72 (8.5%)	260 (30.7%)	29 (3.4%)	1 (0.1%)	137 (16.2%)	10 (1.2%)

자료: 소방청

126) 일반회계-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화재예방국)

하고 있으며, 과업 실적은 주 단위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의 경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위탁과업 71건 중 22건이 미흡하여 보완요청이 이루어지고, 계약한 기간 내에 과업이 완수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2억 8,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위탁사업자에게 2,258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하였음.

[2024년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위탁운영 불합격 통보 관련 주요 시정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평가결과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형에 따른 적절한 회원 관리 및 현행화	가입된 회원정보 조회시, 소속, 연락처 등의 상세한 정보가 없으며,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한 만료 회원에 대한 처리 지원 (재동의, 회원 탈퇴 처리 등)	재동의 등의 절차 부재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취약점 점검 후 후속 보완조치 미수행
테스트	-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 미수립 - 신규 기능 위주의 관리자 기능 테스트 수행,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미수행 - 구축단계 산출물에 단위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과 결과서가 있을 것임. 최소한 그것을 활용하여 기능 이상 유무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남겨야 함
	- 단계별·유형별 각 테스트 계획서에는 시작조건과 완료 조건을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담당자와 협의 미진행 해당 산출물에 시작 조건과 완료 조건 필요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함	각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안과 결과서가 없음.
시스템	- 정기점검은 원칙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12월 정기점검 결과는 11월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함
	- 정기점검 시 각종 로그 등을 분석하여 항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조정	로그 분석은 수행한 바 없음. Process 및 디스크, DB 용량 체크가 전부임
	- 장애 복구 완료 후 당일 장애 복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2월 14일 장애발생 통보(PM에게 오류 화면을 문자로 전송)하였으나, 장애 복구 결과보고서 미제출
	- 장애 발생 이후, 개선 계획에 대한 조치실시	개선계획을 전달받은 바 없음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송수신 현황에 대한 점검 내역 미제출

구분	요구사항	평가결과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대한 결과보고서 부재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불필요한 포트에 대한 점검 부재
	- 발주처의 요청 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분석 점검 툴을 이용하여 점검하거나, 사업단에서 취약점 툴을 이용하여 점검한 결과물을 년 1회 이상 처리하여 개선해야함	취약점 점검 후 후속 보완조치 미수행
사업 관리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전담 사업자 귀책으로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담 사업자가 일괄 책임져야 함	- 클라우드 비용 사후 정산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 귀책을 주관기관에 전가 - 클라우드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집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분석	- 타분야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연계 분석 수행(2건 이상) 및 홈페이지 게시	분석 결과보고서의 품질 미흡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미충족)
	금융 빅데이터 등 타분야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연계 분석 추진(2건 이상)	

주) 2025년 1월 24일 준공검사 완료
자료: 소방청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⑩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HACCP을 도입한 등록업체가 전체 HACCP 인증업체 대비 2.1%에 불과하고, 신규 등록업체 수 및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비용이 발생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스마트 HACCP 도입을 실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127]을 통해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전(全)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HACCP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24년 12월 말 기준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는 452개소로 전체 HACCP 인증업체 21,180개소 대비 2.1%에 불과한 상황인데, 2024년 스마트 HACCP 신규 등록업체 수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보급이 정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2020~2024년 스마트 HACCP 업종별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HACCP 인증업체	스마트 HACCP 등록 현황(누적)				
			2020	2021	2022	2023	2024
식품	식품제조가공업	10,866	24	62	122	178	229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9	-	-	3	4	4
	기타(기타식품판매업 등)	245	-	-	-	4	6
	소계	**11,130**	**24**	**62**	**125**	**186**	**239**
축산물	식육가공업	2,793	11	16	28	45	62
	유가공업	403	4	8	14	22	25
	알가공업	221	-	-	3	5	6
	식육포장처리업	4,111	18	30	56	78	102
	식육판매업	546	-	-	-	6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4	-	-	-	1	1
	식용란 (선별포장업, 수집판매업)	1,671	-	-	-	3	11
	기타	251	-	-	-	-	-
	소계	**10,050**	**33**	**54**	**101**	**160**	**213**
합계		**21,180**	**57**	**116**	**226**	**346**	**452**
신규 등록업체 수			57	59	110	120	106

주) 2024.12.31.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업체가 보다 쉽게 스마트 HACC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동 제도를 확산하고자 하

127) 일반회계-HACCP제도 활성화(1032-300)(식품안전정책국)

고 있으나,[128] 2024년 말 기준 빵류는 11개소, 김치류는 7개소 등 극소수의 업체만 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범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신청 현황]

(단위: 개소)

연도	빵류	김치류	과자류
2021	-	-	-
2022	3	-	-
2023	20	2	
2024	11	7	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스마트 HACCP 등록업체에 제공되는 우대조치는 ①정기 조사평가 면제(자체평가 전환), ②스마트 HACCP 심벌 사용, ③연장심사시 HACCP 관리 가점 부여 등에 한정되어 있음.[129]

그러나 이러한 우대조치조차도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스마트 HACCP 저변 확대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임.[130]

더욱이 스마트 HACCP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1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별 선두기업을 대상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발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무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29)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대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하여 별표 8 나목에 따른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

1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피한 사유로 CCP 100% 적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CCP 60% 이상 등록한 경우까지 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100% 적용을 통해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스마트 HACCP은 기존의 수기 기반 HACCP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는데,[131]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HACCP의 도입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해 사업자가 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도입할 만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⑪ 드론운용 사업(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드론운용 사업은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2024년 1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기존 직무교육 이수자 중 35.8%가 드론 운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직무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드론 직무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드론 운영 직무에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드론운용' 사업에서 2021년부터 함정 탑재 드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억 5,600만원을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집행하였음.

해양경찰청은 2021년 18명, 2022년 16명, 2023년 33명, 그리고 2024년 28명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35.8%인 34명이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음.

[드론 관련 직무교육 실시 현황]

연도	집행액	교육대상자 수	교육 수료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경험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미경험자 수	현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
2021년	9,400만원	18명	18명	14명	4명 (22.2%)	1명
2022년	9,300만원	16명	16명	11명	5명 (31.3%)	3명
2023년	1억 5,200만원	33명	33명	13명	20명 (60.6%)	12명

131) 스마트 HACCP은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의 부주의, 데이터 미기록 및 위·변조 등의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연도	집행액	교육대상자 수	교육 수료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경험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미경험자 수	현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
2024년	1억 5,600만원	28명	28명	23명	5명 (17.8%)	23명
합계	4억 1,700만원	95명	95명	61명	34명 (35.8%)	39명

자료: 해양경찰청

또한 전체 함정 탑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가 2021년~2023년 각각 28명이고, 2024년에는 5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전체 드론 직무교육 이수자 중 드론 운영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함정 탑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종사자 수	28명	28명	28명	52명

자료: 해양경찰청

드론 도입 이후 운영 미흡으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드론 운영 관련 직무교육의 실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교육 수료 인력이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교육 운영의 실효성 및 활용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을 것임.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기존 드론 운영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출연사업 수입의 예산 미반영 부적정

재난안전사업 일부는 출연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법령상 예산에 반영해야 할 수입 일부를 미반영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024년 재난안전사업 중 사업수입 예산 미반영 부적정 관련 지적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510,991	510,991	유지보수비 재원으로 SR이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선로사용료를 임의로 사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도강화 (자동차안전도평가)	3,835	3,835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사용한 시험차 매각대금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미반영

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부터 SR이 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선로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유지보수비에 추가 편성·집행하고 미정산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유지보수 관련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132]을 통해 일반철도시설의 점검・보수・교체 등을 수행하여 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시켜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2023년 9월부터 SR이 일반철도 구간(경전・동해・전라선)에 대한 운행을 개시하면서, 공단은 SR을 대상으로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음. 공단이 2023년부터 SR로부터 추가로 징수한 선로사용료는 2023년 19억 5,600만원, 2024년 45억 1,500만원, 2025년 45억 1,500만원임.

132) 일반회계-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2731-301)(철도국)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현황][133]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3.9~)	2024년	2025년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합 계	405,486	408,045	408,045
	철도공사	403,530	403,530	403,530
	SR	**1,956**	**4,515**	**4,515**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편성	합 계	403,530	408,045	410,001
	철도공사	403,530	403,530	403,530
	SR	-	4,515	6,471

주) 2025년 SR 유지보수비(6,471백만원) = 2023년 징수액(1,956백만원)+ 2025년 징수액(4,515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공단은 매년 SR로부터 징수받은 선로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해당 연도 유지보수비에 편성하거나 수익으로 인식 후 차년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등 임의적으로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24년 징수분은 2024년 유지보수비에, 2023년 선로사용료는 2024년에 수익으로 인식 후 2025년 유지보수비에 편성·집행하였음.[134]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인건비·경비·보수비에 대한 실소요액을 산출한 후 선로사용료를 차감하여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유지보수비와 선로사용료 수입만큼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감소하게 되며, 정산 차액만큼 재원이 낭비되거나 국고가 과다 지원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함.

향후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출연금 지원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33)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에 「철도시설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①코레일-SR 공용노선 · 차량과 ②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자를 대상으로 단위사용료를 일부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134)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말에 SR 열차가 신규 투입됨에 따라 유지보수 물량이 적고 당초 계획된 유지보수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2025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② 자동차 안전도 평가(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위해 구매한 시험차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을 출연금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바, 매각 대금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135]을 통해 국내에 시판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 및 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자동차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차를 구매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8종 구매를 위한 예산 1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사용한 자동차와 부품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36]

공단의 시험차 매각 수익을 살펴보면, 매년 약 1~2억원 내외로 최근 4년간 6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시험차 매각대금]

연 도	매각 대금(원)
2020	148,390,000
2021	179,964,279
2022	173,888,000
2023	133,170,732
합계	635,413,011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매각 대금이 출연금 결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시험차 매각대금과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 부족분 등을 예산편성시부터는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출연금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35) 일반회계-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모빌리티자동차국)

136)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가. 개 요

(1) 정 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개념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1]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2]을 의미함.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를 의미함.[3]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으로,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유급 고용원이 1인 이상 존재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구분됨.[4]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10억원 등)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통계청, 「통계용어사전」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념도]

<table>
<tr><th>법인</th><th colspan="3">개인</th><th>무등록사업자</th></tr>
<tr><td colspan="4">소상공인: 766만개(2022)
(간판 없는 소상공인, 복수사업자 포함)</td><td rowspan="4"></td></tr>
<tr><td>법인: 72만개</td><td colspan="3">개인: 662만개</td></tr>
<tr><td rowspan="3"></td><td colspan="3">개인사업자: 865만명(2023)
(사업자등록기준, 복수사업자 포함)</td></tr>
<tr><td>일반과세자:
522만명</td><td>간이과세자:
211만명</td><td>면세사업자:
132만명</td></tr>
<tr><td colspan="4">자영업자: 562만명(2025.4.)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td></tr>
</table>

주 1) 소상공인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기본통계」참고
2) 개인사업자 통계는 국세청의「국세통계연보」참고
3) 자영업자 통계는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참고
자료: 관계 부처 합동,「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024.7.3.)을 재가공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근거 법령과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의미로 사회 통념상 혼용해서 사용되고, 모두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는 집단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상공인'으로 통칭하여 서술함.

(2) 현 황

2022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 수는 766만 개, 종사자 수는 1,074만 명, 매출액은 1,273조 원으로 전체 기업의 95.1%, 전체 고용의 45.9%, 전체 매출의 17.0%를 차지하고 있음. 전년 대비 소상공인 기업 수는 32만 개(4.3%), 종사자 수는 28만 명(2.7%), 매출액은 107조 원(9.1%)이 증가하였음.[5)]

5)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본통계」(검색일 2025.7.23.)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업	전체	6,898,958	7,295,393	7,723,867	8,053,163
	소상공인	6,445,316	6,842,959	7,335,397	7,656,718
	(비중)	93.4	93.8	95.0	95.1
종사자	전체	21,254,650	21,580,496	22,865,491	23,410,899
	소상공인	9,223,529	9,461,073	10,461,890	10,740,812
	(비중)	43.4	43.8	45.8	45.9
매출액	전체	56,295,399	56,599,655	64,500,838	74,944,317
	소상공인	9,548,951	9,688,748	11,658,742	12,729,183
	(비중)	17.0	17.1	18.1	1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본통계」(검색일 2025.7.23.)

2022년 기준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가 200만개로 가장 큰 비중(26.1%)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소상공인 사업체가 121만개(15.8%), 숙박 및 음식점업 소상공인 사업체가 84만개(11.0%), 운수 및 창고업 소상공인 사업체가 66만개(8.6%)였음.

[2020년~2022년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A. 농업, 임업 및 어업	90,686	98,374	106,449
B. 광업	2,292	2,259	2,228
C. 제조업	513,192	551,049	562,672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0,194	125,386	143,387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7,834	8,736	9,506
F. 건설업	480,293	520,239	551,148
G. 도매 및 소매업	1,675,994	1,845,255	2,007,388
H. 운수 및 창고업	618,115	635,262	658,227
I. 숙박 및 음식점업	784,621	829,603	841,639
J. 정보통신업	125,071	151,100	174,324

(단위 :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K. 금융 및 보험업	52,522	56,845	58,979
L. 부동산업	1,221,800	1,258,699	1,210,55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4,761	251,912	278,417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2,957	158,172	167,357
P. 교육 서비스업	228,345	247,134	264,95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777	52,482	53,5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6,116	151,531	157,436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5,389	391,359	408,538
합 계	6,842,959	7,335,397	7,656,71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본통계」(검색일 2025.7.23.)

2024년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를 살펴보면, 평균 경기체감지수는 58.2포인트로 전년 대비 6.2%p 하락하였고, 평균 경기전망지수는 71.9포인트로 전년 대비 14.0%p 하락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거나 전망하는 경기동향은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경기전반) 현황]

(단위: 포인트)

20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체감	48.1	50.0	64.5	64.8	64.4	57.3	54.5	55.4	65.6	69.1	62.4	53.7	58.2
전망	79.5	65.2	74.6	78.1	73.4	67.4	57.9	56.6	82.8	83.9	79.8	79.3	71.9
20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체감	47.6	51.3	66.5	63.6	70.0	-	-	-	-	-	-	-	59.8
전망	75.5	69.3	86.6	86.9	79.8	79.1	-	-	-	-	-	-	79.5

주1) 경기동향지수는 100포인트 이상인 경우 경기 호전을, 100포인트 미만인 경우 경기 악화를 의미함
2) 2024년 평균 경기체감지수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경기전망지수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값을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3)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주무부처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지원·경영안정·구조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6]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해당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7]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 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 · 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 · 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 · 회계 처리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기반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융자사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으로 구성된 경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억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액		결산 (B)	수납률 (B/A)	구 분	계획액		결산 (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총 계	75,085	75,085	84,035	111.9	총 계	75,085	75,085	84,035	111.9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434	3,434	3,397	98.9	1234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1,254	1,254	1,254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27	527	5,251	995.6	4131 소상공인지원(기금)	7,875	7,875	7,874	100.0
융자원금회수	28,801	28,801	37,365	129.7	4151 소상공인지원융자(기금)	37,100	37,100	35,592	95.9
일반회계 전입금	16,350	16,350	16,350	100.0	4154 전통시장활성화지원	4,207	4,207	4,207	100.0
기금예수금	25,971	25,971	21,671	83.4	7200 중소기업행정지원	660	660	660	100.0
					9100 기금간 거래(예수원금상환)	18,738	18,738	18,738	100.0
					9200 기금간 거래(예수이자상환)	5,251	5,251	4,966	94.6
					9700 여유자금운용	-	-	10,745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외의 일부 부처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달리 소상공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자영업자 관련 예산에 대해 전부처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절차가 없는 상황임.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연구개발 사업과 같이 부처별·지원 유형별(보조·융자·보증지원 등)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8)]

참고로, 2024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일부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서민정책금융의 일환으로,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② 신용보증기금의 별도 계정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대위변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함.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금규모가 확대된 이래 연례적인 기금 수지 적자로 인해 순자산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검토함.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 차원에서, 기금의 수입인 융자원리금 회수 및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 등 기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검토함.

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각종 융자·보증 및 보조사업과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사업 등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살펴봄.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진작 수단으로 활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전환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함.

8) 예컨대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자문회의의 심의·의결대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나. 검토의견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등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상태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융자 원리금의 회수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주된 기금수입으로 하고, 사업성 경비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보조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건비 등의 기금 운영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을 주된 기금지출로 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금 수입재원으로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하였던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의 회수, ② 각종 보조금 등의 정산액 등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④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하고 있음.

[2022~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융자원금 회수	재산 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자 기금	소계		
2022년	2,413,487	236,003	82,641	2,732,131	41,159,672	-	5,175,634	46,335,306	-	602,142
2023년	2,674,181	305,418	345,326	3,324,925	569,974	-	3,000,000	3,569,974	-	-
2024년	3,736,466	339,715	525,133	4,601,314	1,635,049	-	2,167,138	3,802,187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금의 지출로 ① 소상공인 관련 각종 보조금 등 경상적 지출,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서의 융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④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⑤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2022~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여유 자금 운용 (순증)
	경상	융자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자 기금	소계			
2022년	44,336,760	3,508,193	47,844,953	-	-	1,761,552	1,761,552	63,074	-	-
2023년	1,036,532	2,945,876	3,982,408	-	-	2,338,794	2,338,794	62,330	-	511,367
2024년	1,333,405	3,559,150	4,892,555	-	-	2,370,447	2,370,447	66,041	-	1,074,4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산(A)	10.12	13.31	14.38	14.70	14.59
부채(B)	10.34	15.79	19.59	20.71	21.01
순자산(A-B)	△0.23	△2.47	△5.2	△6.01	△6.41
부채비율(B/A)	102.2	118.6	136.2	140.9	14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성방안 모색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상성 지출 증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속 가능한 수입·지출 구조를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소상공인 융자 지출은 종전의 융자 원리금의 회수금을 기초로 운영되고,[9] ② 보조사업 및 운영경비 등 경상성 지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10]

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의 경우, 정책지원에 따른 순이자 역마진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일부 필요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상사업비 지출, 운영비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도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경상성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상 사업비(A)	5,222	5,097	4,765	5,032	6,758	50,707	174,465	443,367	10,365	13,334	53,769
기금 운영비(B)	261	286	326	341	399	466	511	630	623	660	686
소계 (A+B)	5,483	5,383	5,091	5,373	7,157	51,173	174,976	443,997	10,988	13,994	54,455
일반회계 전입금(C)	5,639	6,373	5,937	5,937	8,249	50,997	155,177	411,597	5,670	16,350	38,253
차이 (C-A-B)	156	990	846	564	1,092	△176	△19,799	△32,400	△5,318	2,356	△16,202
충당률 (C/(A+B))	102.8%	118.4%	116.6%	110.5%	115.3%	99.7%	88.7%	92.7%	51.6%	116.8%	70.2%

주1) 2015~2024년도는 결산 기준으로, 2025년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차이가 (+)인 경우 기금 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인 경우 기금 수지 적자에 기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예결산 사업설명자료를 재가공

경상사업비는 2015~2019년에는 4,000~6,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급증하여 2020년 5조 700억원, 2021년 17조 4,400억원, 2022년 44조 3,400억원에 달하였고, 2023년 1조 400억원, 2024년 1조 30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 2025년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라 5조 3,800억원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었음.

일반회계전입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상사업비 및 운영비의 합산 금액에 비례하도록 편성되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규모가 확대된 2021~2023년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지출규모를 온전히 충당하지 못하여 기금 건전성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 수지구조〉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자수익(a)	1,484	1,120	984	1,225	2,101	2,543	2,727
이자비용(b)	1,511	1,424	1,542	2,102	3,384	2,958	2,984
순이자역마진(c=b-a)	27	304	558	877	1,283	415	257
대손비용(d)	459	975	672	2,326	2,262	1,603	158
재정부담추계액(c+d)	486	1,279	1,230	3,203	3,545	2,018	415

10) 법정 출연금 등 자체 재원이 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특성상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은 결국 미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거나 차환을 통해 상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음.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조 9,800억원, 2022년 3조 2,400억원, 2023년 5,300억원 규모의 지출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였으며, 2025년에도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인해 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1조 6,2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충당이 발생하였음.

한편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1] 이는 해당 법률의 전신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012년 개정하면서, FTA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3%로 정하게 된 것임.

그러나 2015년 이후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정 편성기준(관세액의 3%)을 크게 초과하였음. 2024년 기준으로 전년도 관세 수납액은 7조 2,883억원으로 관세 수납액의 3%는 2,186억원인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7.48배 수준인 1조 6,350억원에 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코로나19 또는 각종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관련 각종 보조사업 등 경상성 지출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당시 재정여력에 따라 임의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금의 본질적인 재원마련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 편성기준과 무관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임.

[연도별 전년도 관세액 및 일반회계전입금 배율]

연도	전년도 관세액(A)	전년도 관세액의 3%(B)	일반회계전입금		배율 (C/B)
			당초	수정(C)	
2015년	8조 7,210억원	2,616억원	5,639억원	5,639억원	2.16배
2016년	8조 4,954억원	2,549억원	5,945억원	6,373억원	2.50배
2017년	8조 454억원	2,414억원	5,457억원	5,937억원	2.46배
2018년	8조 5,292억원	2,559억원	5,649억원	5,937억원	2.32배
2019년	8조 8,152억원	2,645억원	7,602억원	8,249억원	3.12배
2020년	7조 8,221억원	2,347억원	8,263억원	5조 997억원	21.73배
2021년	7조 585억원	2,118억원	1조 3,633억원	15조 5,177억원	73.27배
2022년	8조 2,227억원	2,467억원	3조 8,548억원	41조 1,597억원	166.84배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연도	전년도 관세액(A)	전년도 관세액의 3%(B)	일반회계전입금		배율 (C/B)
			당초	수정(C)	
2023년	10조 3,241억원	3,097억원	5,670억원	5,670억원	1.83배
2024년	7조 2,883억원	2,186억원	1조 6,350억원	1조 6,350억원	7.48배
2025년	6조 9,723억원	2,092억원	1조 5269억원	1조 5,269억원	7.30배

자료: 연도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 및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상성 지출의 적정 총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조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축소에 온전히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 발생 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축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재원은 상환의무가 없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상환의무가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있고,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해서는 차환(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후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편성)을 통해 사실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상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환이 계속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산 기준으로 기금의 자산은 14조 5,936억원, 부채는 21조 63억원으로 순자산이 △6조 4,128억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자산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4년 평잔 기준 1조 7,226억원을 운용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여 기금 수입(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으로 계상한 것은 전무하였음. 또한 2024년 말잔 기준으로는 3조 594억원의 여유자금이 운용 가능한 상태로 남겨놓았는데, 이는 순자산 적자 규모를 절반 가량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모임.

[2022~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규모 (연말잔액)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2	1,447,194	1,345,904 (2.39%)	-	1,345,904 (2.39%)	-
2023	1,972,382	1,476,418 (4.16%)	-	1,476,418 (4.16%)	-
2024	3,059,448	1,722,558 (4.00%)	-	1,722,558 (4.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는 이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이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현재 기금운용 전담 인력이 없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을 직접 운용하지 못하고 전액 연기금투자풀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 발생 시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규모를 줄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여유자금 중 필요최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기금으로 조속히 회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금 수입재원으로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하였던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의 회수, ② 각종 보조금 등의 정산액 등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④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이 6조 4,000억원 적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수입 제고방안이 필요함.

이하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의 지연으로 인한 기타경상이전수입 계상 문제와 정책자금 융자 상환유예 등으로 인한 융자 원리금 회수 지연 등에 대해 서술함.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조금 집행잔액의 국고반납 지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조사업 중 사업의 완료 및 정산 후 집행잔액이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뒤늦게 반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잔액을 곧바로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뒤늦게 반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2020년 이전 보조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교부받은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액은 103억원으로 정산보고서 제출 이후에 실제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을 뒤늦게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자체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부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과 달리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을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지연 사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인해 업무가 가

중되었고, 환수금 발생으로 추가 반납건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보조금시스템 도입 이전 수기 관리로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0년도 이전 교부한 보조사업의 2024년 집행잔액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교부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전체교부액	189,851	180,025	200,396	93,437	380,978	4,217,489	5,262,176
반납액	1,903	46	8	2,735	1,402	4,220	10,314
반납건수	2	1	2	3	6	9	23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서 보조금의 집행 후 정산·반납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이유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보조금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보조사업의 정산 및 국고반납이 지연되는 경우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면 기금의 자체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교부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반납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기금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출연사업의 집행관리 및 집행 후 정산·국고반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및 출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정책자금 융자의 상환연장에 따른 수입 감소 문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소상공인 융자가 갈수록 부실화되는 상황에서 대출부실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접 대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경영애로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12)]

12)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요]

2024년 7월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환연장 제도의 확대는 현재 수취하여야 할 원리금 상환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13]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연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 수입(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산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산은 14조 5,936억원, 부채는 21조 63억원으로 순자산이 △6조 4,128억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음. 직접대출 잔액 7조 3,560억원과 직접대출 부실률 13.77%를 고려할 때 2024년 직접대출 잔액 중 정상 상환이 예상되는 6조 3,431억원을 모두 상환받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부실률이 2021년 1.6%, 2022년 2.8%, 2023년 10.0%, 2024년 13.8%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실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실이 미래로 이연되어 실현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개요)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직접대출 방식의 정책자금 원금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자 납부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 (요건) ① 다중채무자(2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② 전기 대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NCB 839 이하), ③ 공단자체 모니터링 부실징후 업체 중 1개 이상 요건 해당
○ (내용) 이용중인 대출 잔여 상환기간에서 5년(60회) 추가연장, 약정금리+0.2%p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환기간 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상환능력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상환을 지속 유도하는 제도로, 기금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상환연장시 가산금리를 부과(정상차주 +0.2%p, 단기연체차주 +0.4%p)하고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실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차주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정책자금의 융자부실은 미래로 이연될 뿐 상환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고 정책자금의 관리비용만 증가하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1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출 등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기금의 지출로서 ① 소상공인 관련 각종 보조금 등 경상적 지출,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서의 융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④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⑤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사업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사업(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대환보증)이 수행된 바 있음.

이하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에 대해 융자·보증·보조 및 매출진작 사업 분야별로 나누어서 서술함.

(가) 융자 부분

① 소상공인 대환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목표 대비 지원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시 적극적인 정책자금 홍보 등을 통해 신속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먼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나이스 신용평가점수(NCB) 91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리 7% 이상의 대출 또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이 안되는 대출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5%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지원하는 사업임.[15)]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요]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대상)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한도) 동일기업(개인·법인) 당 5,000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000만원 이내 한도 적용)
○(금리) 연 4.5% 고정금리
○(기간) 운전자금 10년(거치기간 없음)
○(방식) 은행권 대리대출(15개 은행)
○(계획 및 실적) 2024년 목표: 5,000억원 / 실적: 2,491억원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 관계부처 합동,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2024.1.17.

당초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15개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대환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년 동안 2,491억원 지원하는 것에 그쳤음.

한편 2024년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 기업의 판매기업 미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발생하자,[16]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을 통하여 저리 지원을 시행하고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금리 3.4%에 1,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2.5%로 낮추었음.

[2024년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 (배경) 2024.7.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에 따른 소상공인 유동성 애로 등 피해 발생 ○ (대상)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 ○ (심사)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한도) 미정산 금액(금감원·공정위 확인) 이내 5억원 한도* *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10.28)에 따라 대출한도 확대(1.5억원→5억원) ○ (금리) 연 2.5% 고정금리* * 추석 민생안정대책(2024.8.28.)에 따라 금리 인하(정책 기준금리 →2.5% 고정금리) ○ (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현황) 1,130건, 465억원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당초 1,7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465억원 지원에 불과하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역시 82건의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에 그쳤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 부진 이유로 소상공인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 금융권 대출을 선택함에 따라 신청이 부진하였고,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의 90% 이상은 미정산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1,000만원 미만)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16) 2024년 7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고, 티몬·위메프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7.22.)'으로 인해 일부 판매자가 상품계약을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이 지연되는 등 상황이 악화된 바 있음.
※ e-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규모
- 위메프·티몬 : (기업수) 4.8만개사, (피해금액) 1.3조원 → (업체당 피해) 2,658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은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인데, 해당 융자 사업의 실적 부진은 결국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이라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다른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임.

②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계획 대비 실적 저조(금융위원회)

2024년 새출발기금의 계획 대비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의 원리금 감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상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규모는 4조 2,303억원으로, 당초 계획액(2022.10. 기준) 9조원의 47.0%이고 변경된 계획액(2024.9. 기준)의 56.0%에 불과함. 2024년 채권매입가액은 1조 9,204억원으로, 채권매입가율은 45.4%로, 예상매입가율 40.7%를 상회하였음.

[새출발기금의 월별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 실적 및 예상치]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2022	채권 매입액	(2022.10. 새출발기금 출범)									-	750	2,202	2,952
	채권 매입가액										-	364	500	863
2023	채권 매입액	1,693	2,222	1,777	2,114	2,130	1,859	576	2,784	2,819	2,868	2,695	2,608	26,145
	채권 매입가액	406	611	826	947	976	796	311	1,432	1,410	1,320	1,119	1,155	11,309
2024	채권 매입액	2,520	2,525	2,900	3,076	3,464	4,257	4,933	3,991	4,148	3,506	3,008	3,975	42,303
	채권 매입가액	1,209	1,158	1,350	1,306	1,596	1,861	2,313	1,830	2,004	1,284	1,481	1,812	19,204
2025	채권 매입액	4,007	5,099	5,748	4,717	7,050	-	-	-	-	-	-	-	26,621
	채권 매입가액	1,770	2,231	2,408	2,187	3,357	-	-	-	-	-	-	-	11,953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재가공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2개월동안 채권매입액 누적 실적은 9조 8,021억원으로 변경된 계획액 33조 4,000억원의 29.3%에 그침.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33조 4,000억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진도비가 29.3%에 지나지 않은 것임.

금융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말까지 19개월 간 총 23조 5,979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채권매입액은 1조 2,42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24년 월평균 채권매입액은 3,525억원에 불과함.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4년 실적의 3배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

(나) 보증 부분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 소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실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2024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본재산이 사실상 소진되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의 건전성 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역신용재단의 보증부실이 악화되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액에 대한 대위변제인 손실보전금이 계획 대비 증가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결산잉여금 등을 적립한 기본재산을 활용하였음.

[2021~2025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초 계획	2025 제1회 추경
보증잔액		425,123	461,547	442,658	427,917	410,000	430,000
재보증잔액(A)		228,560	249,649	238,068	227,885	220,498	231,254
손실보전금 순지급률(B)		1.02%	1.07%	3.36%	5.34%	3.36%	4.68%
지출	소계(C)	2,405.14	2,752.48	8,100.25	12,290.82	7,506.36	10,920.32
	손실보전금(A*B)	2,325.13	2,665.50	8,002.62	12,175	7,408.73	10,822.69
	관리비용 등	80.01	86.98	97.63	115.82	97.63	97.63
수입	소계(D)	2,515.07	2,872.70	6,691.41	11,037.28	5,470.96	5,550.55
	재보증료	1,730.94	1,872.29	1,762.77	1,675.34	1,631.69	1,711.28
	금융기관출연금	543.88	598.92	645.25	1,183.67	1,472.25	1,472.25
	운용수익	119.50	274.74	514.04	305.83	514.04	514.04
	기타수익	120.75	126.75	1,171.63	2,406.16	1,852.98	1,852.98
	기본재산(조달)	-	-	2,597.72	5,466.28		
수입 대비 지출 차액(D-C)		109.93	120.22	△1,408.84	△1253.54	△2,035.40	△5.369.77
정부출연금		2,368.86	1,643.80	1,408.84	1253.54	2,035.40	5.369.7
기본재산 등 적립		2,478.79	1,764.02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보증부실이 이연되는 과정에서 적립하였던 기본재산을 사실상 2024년에 소진하였음. 2023~2024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 재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기본재산을 2년간 8,064억원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 연말 중앙회의 기본재산은 210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2017~2024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 적립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본재산	2,140	2,477	2,967	2,873	2,464	3,831	6,114	7,370	4,658	2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대위변제의 급증 원인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신용보증의 보증공급 확대 및 2023년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후 손실보전율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지역신용보증 보증잔액은 22조 1,865억원, 중앙회의 재보증잔액은 11조 3,684억원이었으나, 2020년 지역신용보증 보증잔액은 38조 7,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5% 증가하였고 중앙회의 재보증잔액은 21조 1,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86.3% 증가하였음.

이와 달리, 손실보전금은 2019년 2,232억원, 2020년 2,461억원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2020년 신규 공급된 보증의 대출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보증부실이 미래로 이연되었기 때문임.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된 2023년에는 손실보전금이 8,003억원으로 크게 급증하였고, 2024년에는 1조 2,175억원으로 더욱 증가하였음.

[2021~2025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현황]

(단위: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지역신용보증 보증잔액	183,884	196,454	221,865	387,238	425,123	461,547	442,658	427,917	440,66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재보증잔액	93,663	100,697	113,684	211,802	228,560	249,649	238,068	227,885	230,988
손실보전금	1,574	1,730	2.232	2.461	2,325	2,666	8,003	12,175	6,693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1.68%	1.72%	1.96%	1.16%	1.02%	1.07%	3.36%	5.34%	5.84%주)

주) 2025년 6월말 기준 순지급율은 기준월 연환산 방식으로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계획 대비 저조한 사업실적(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보증공급 목표 9조 5,000억원의 17.5% 수준인 1조 6,601억원의 저조한 보증공급실적을 보였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잦은 사업변경이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5.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저리대출에 대해 보증(대출액의 90%)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환보증 공급액 8조 5,000억원을 목표로 출연금 6,800억원, 2023년도 예산은 대환보증 공급액 1조원을 목표로 출연금 8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말 기준 누적공급액 1조 6,601억원, 보증잔액 1조 4,652억원에 그친 채 보증공급 사업이 종료되었음.[17)]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3년 2회, 2024년 1회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내용 변경내역]

<table>
<tr><th></th><th>2022.9.30.
~2023.3.12.</th><th>2023.3.13.
~2023.8.30.</th><th>2023.8.31.
~2024.3.17.</th><th>2024.3.18.
~현재</th></tr>
<tr><td>목표
공급규모</td><td>‣ 8.5조원</td><td colspan="3">‣ 9.5조원</td></tr>
<tr><td>신청대상</td><td>‣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받은 정상차주</td><td colspan="3">‣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코로나피해 관련 요건 면제)</td></tr>
<tr><td>금리
요건</td><td colspan="4">‣ 연 7% 이상 고금리대출</td></tr>
<tr><td>대출
종류</td><td>‣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td><td colspan="2">‣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신용대출</td><td></td></tr>
<tr><td>시기
요건</td><td colspan="2">‣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td><td>‣ (사업자대출) 20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목적 가계대출) 2020.1.1 ~2022.5.31. 중 취급된 대출</td><td>‣ (사업자대출) 20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목적 가계대출) 2020.1.1 ~2023.5.31. 중 취급된 대출</td></tr>
<tr><td>차주당
대출한도</td><td>‣ (개인기업) 5천만원
‣ (법인기업) 1억원</td><td>‣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td><td colspan="2">‣ (개인기업) 1억원 (사업목적 가계신용대출 대환한도 2천만원 포함)
‣ (법인기업) 2억원</td></tr>
</table>

17)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5.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저리대출에 대해 보증(대출액의 90%)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9.30. ~2023.3.12.	2023.3.13. ~2023.8.30.	2023.8.31. ~2024.3.17.	2024.3.18. ~현재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1.0% / 일시납(일부연납)	‣ (1~3년차) 0.7% (4~10년차) 1.0% / 10년치 일시납시, 총액의 15% 할인		‣ 최초 1년간 0.7%p 추가 감면 (은행 출연)
중도상환 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만기구조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 (3~5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 이내	‣ (1~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 이내		‣ (1년차) 최대 5.0% ‣ (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운용기한	‣ 2023.12.31.까지	‣ 2024.12.31.까지		

주) 밑줄은 종전과 달라진 부분을 표시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동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기본재산 7,600억원은 대위변제에 필요한 수준에 비해 과도하여 유휴재원으로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보조사업 부분

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연도 중 사업내용 변경 부적정 등(중소벤처기업부)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연중 여러 차례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해당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구상 시에는 현재 활동 중이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26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기준 등 사업대상을 3배 이상이나 확대(3,000만원→6,000만원→1억 400만원)하고, 고지서 등의 증빙절차를 완화하며, 지원금액을 확대(20만원→25만원)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음.[1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 변경 내역]

구 분	1차·2차 공고 (2024.2.15.~7.7.)	3차 공고 (2024.7.8.~9.1.)	4차 공고 (2024.9.2.~12.31.)
매출기준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억 400만원 미만
주요 변경 사항	(직접)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한도액 이상 고지서 첨부	(직접) 한전 고객번호 제출 (비계약) 월 1.2만원 증빙인정	(공통) 고객번호 없이 신청 6,000만원 이하 업종제한
신청건수 (누적)	58만 7,000건	75만 8,000건	124만 3,000건
지원건수 (누적)	31만 6,000건	48만 7,000건	86만 7,000건
집행실적 (누적)	632억 4,000만원	974억원	2,258억 1,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가 사업기간 동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함.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대상 확대 이유로, 사업 도중에 지원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나,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 및 사업수요 추계가 미흡하였고 과다계상으로 인한 집행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종료 전에 지원금액을 소급하여 늘린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지원대상 기준인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수를 126만 5,000명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 신청자수는 58만 7,000명, 지원자 수는 48만 5,000명으로 각각 46.4%, 38.3%에 불과함.

최종적으로 변경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수도 258만 3,000명으로 예상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자 수는 124만 3,000명 실제 지원자 수는 89만 6,000명으로 각각 48.1%,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상 수를 과다추계하거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18)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대상 확대 이유로, 사업 도중에 지원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였다는 의견임.

[소상공인 전기요금 사업의 지원 대상 예상 대비 실적]

매출 기준	예상 지원 대상 수	실제 지원 실적	비율
3,000만원 이하	126만 5,000명	48만 5,065명	38.3%
3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72만 2,000명	23만 9,108명	33.1%
6,000만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59만 6,000명	17만 1,796명	28.8%
합계	258만 3,000명	89만 5,969명	34.7%

주) 비활동 업체,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신생기업 제외한 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였는데 원칙적으로 국고 반납되어야 할 예산을 사업변경을 통해 집행한 것이고,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자체실적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종료를 앞둔 11월부터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한 것은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만큼 국가 보조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미교부잔액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임.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 부진으로 인해 연도 중에 사업대상 확대, 지원금액 상향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수차례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목표 대비 지원실적만 보고 100% 초과 달성하였다고 성과평가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②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의 수요 과다예측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 이자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000억원의 기금 재원을 투입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을 통해 약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19] 2024년 실제 지원실적은 26만 4,242건으로 2,112억 500만원(2024년 4사분기 신청분 포함)이 지원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수요가 과다 추계된 것으로 나타남.

19) 관계부처 합동,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2024.1.17.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지원금액 산정기준) 2023.12.31. 기준, 금리구간별 차등 지원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 일괄 적용 (적용금리: 5.0~5.5%→4.5~5.0%)	적용금리와 5% 간 차액 (적용금리: 5.5~6.5%→5.0%)	모든 금리에 1.5% 일괄 적용 (적용금리: 6.5~7.0%→5.0~5.5%)

○ (개별 한도) 1년 이상 이자 납입 차주 1년치 금액 일시 지급, 1인당 대출액 1억원 한도· 최대 지원금액 150만원
○ (사업규모) 공급규모 2,970억원 내외(예산 3,000억원)
○ (지원절차) ① (기업)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에 지원금 신청, ② (금융기관) 기업에 이자차액 지급, ③ (금융기관) 협회·중앙회에 지원금액 통지, ④ (협회·중앙회) 취합된 금융기관별 지원금액 중진공에 통지, ⑤ (중진공) 협회·중앙회에 지원금 지급, ⑥ (협회·중앙회) 금융기관에 지원금 보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수요 부진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에서 800억원을 불용하였고, 비은행권 협회·중앙회로의 보조금 교부액 2,172억 6,300만원 중 1,739억 9,100만원은 연내에 실집행되고 나머지 432억 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이듬해에 실집행되었음.

[2024년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비은행권 업권별 협·중앙회	300,000	297,000	217,263	217,263	-	217,263	173,991	217,263	173,991	43,272	-	58.6

주) 동 사업은 당초 예산 전액이 민간경상보조 비목(320-01)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 2월 민간경상보조 30억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비목을 자체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비은행권 협회·중앙회 등에 교부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2,970억원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금융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 과다추계로 인한 예산 미배정 및 집행부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요를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4)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진작 정책수단: 온누리상품권을 중심으로

(가)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계획에 없는 집행 변경 부적정

①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와 다른 할인율 상향조정 부적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연도 중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할인율을 조정하여 판매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이 국회가 당초 심사한 내용과 달리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5조원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여, 지류형 상품권은 비할인 또는 5%,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5% 또는 10% 할인판매 하기 위한 계획안이 총 3,513억 4,8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24년 9월 당초 계획에 없던 '2024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지류형 상품권은 10%,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15%의 할인판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음.

[2024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개요]

□ 특별할인판매 개요
○ (할인기간) (1차) 2024.9.2.(월) ~ 2024.9.5.(목), (2차) 2024.9.9.(월) ~ 2024.9.30.(월)
○ (할인율·한도) (할인율) 지류 5→10%, 모바일·카드형 10→15% (대책에는 모바일·카드형만 발표)
○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200만원
○ (할인규모) (1차) 지류 500억원, 디지털 2,500억원, (2차) 예산 소진시까지

□ 2024년 특별할인판매기간 중 판매실적

(단위: 억원)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합계
비할인	978	3	2	983
5% 할인	782	-	-	782
10% 할인	5,241	99	74	5,414
15% 할인	-	2,833	3,921	6,754
소계	7,001	2,935	3,997	13,9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4조 3,092억원으로, 이 중 9월 특별판매기간 동안 판매 실적은 1조 3,933억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함. 특히 특별판매기간 동안 계획보다 할인율을 인상하여 지류형 10% 할인판매 5,241억원, 모바일 15% 할인판매 2,833억원, 카드형 15% 할인판매 3,921억원 총 1조 1,995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특별판매기간 중 판매액의 대부분(86.0%)을 차지하고, 연내 총 판매액의 27.8%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보임.

[2024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획액	판매실적			
			전체 판매 실적	1-8월 판매실적 (특별판매 제외)	9월 특별판매 기간 실적	10-12월 판매실적 (특별판매 제외)
지류	비할인	8,000	3,795	2,264	978	553
	5% 할인	6,000	17,697	15,545	782	1,370
	10% 할인	-	**5,241**	-	**5,241**	-
	15% 할인	-	-	-	-	-
	소계	14,000	26,732	17,809	7,001	1,923
모바일	비할인	-	5	0	3	2
	5% 할인	5,000	-	-	-	-
	10% 할인	5,000	5,120	3,599	99	1,422
	15% 할인	-	**2,822**	**0**	**2,833**	**-11**
	소계	10,000	7,947	3,599	2,935	1,413
카드	비할인	-	11	5	2	4
	5% 할인	17,000	-	-	-	-
	10% 할인	9,000	4,487	3,227	74	1,186
	15% 할인	-	**3,915**	-	**3,921**	**-7**
	소계	26,000	8,413	3,231	3,997	1,184
계		50,000	43,092	24,639	13,933	4,520

주) 음영 부분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에는 없었으나, 연도 중에 계획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금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할인판매를 개최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안과 다르게 할인율을 높여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음.

[2025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개요]

□ 특별할인판매 개요

○ (할인기간) 2025.1.10.(금) ~ 2025.2.10.(월)

○ (할인율·한도) (할인율) 디지털 10 → 15% (지류 제외)

○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200만원

○ (할인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단위: 억원)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합계
비할인	739	-	70	809
5% 할인	1,135	-	-	1,135
10% 할인	-	△5	△6	△11
15% 할인	-	3,330	5,063	8,939
소계	1,874	3,326	5,127	10,3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6월 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조 7,950억원으로, 이 중 1~2월 특별 판매기간 동안 판매 실적은 1조 327억원임. 특히 특별판매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8,453억원이 판매되었는데, 이 중 계획보다 할인율을 5%p 높인 디지털 15% 할인 판매가 8,393억원으로 특별할인판매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넘어서서 발행가능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2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온누리상품권 발행목표를 5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6월 현재 발행규모를 3조 5,000억원(지류형 1조 3,000억원, 디지털 2조 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조정은 온누리상품권 재정보전과 직결되어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주된 심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연도 중에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인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당초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한 것이고 향후 계획안 심사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의 잦은 조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오히려 향후 할인행사를 기대하여 상품권 구매시기를 늦추는 등 상품권의 정가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②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통한 지류형 상품권 발행 확대 부적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한 것과 달리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규모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온누리상품권발행 사업의 2024년 계획안은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액을 5조원으로 하면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1조 4,000억원(28%),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1조원(20%),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2조 6,000억원(52%) 발행하도록 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의 소지가 있는 지류형 상품권을 축소하고 발행·판매·회수가 전산 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20) 할인율 5%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가능규모는 약 절반으로 감소하고, 할인율 10%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당초 계획의 약 6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그러나 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같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추가할인이 없는 경우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초 정책 추진방향과 배치됨.

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4조 3,092억원 중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2조 6,732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7,947억원(18%),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8,413억원(20%)으로 그 비중이 낮은 상황임.[21)]

[2024년 온누리상품권의 유형별 당초 판매 계획 대비 실적]

구분	판매 계획(목표) (A)		판매 실적 (B)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B/A)
지류	14,000	(28%)	26,732	(62%)	191%
모바일	10,000	(20%)	7,947	(18%)	79%
카드	26,000	(52%)	8,413	(20%)	32%
계	50,000	(100%)	43,092	(100%)	8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발행계획액 중 지류형 상품권의 비중을 2022년 57.1%, 2023년 42.5%, 2024년 28.0%로 축소하고 있으나, 실제 발행액 기준으로는 2022년 84.7%, 2023년 63.6%, 2024년 61.8%로 지류형 상품권의 비중을 축소하려는 계획에 비해 실제로는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음.

21) 발행액 기준으로는, 2024년 지류형 상품권은 2조 6,520억원 모바일 상품권은 7,947억원, 카드형 상품권은 8,413억원 발행되었음.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발행 이후 은행 등에서 판매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여 발행액과 판매액이 다르게 나타남.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발행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2025.6.30.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지류	20,000	30,000	17,000	12,890	14,000	26,520	17,000	3,091
모바일	5,000	4,831	4,000	3,389	10,000	7,947	38,000	14,424
카드	10,000	560	19,000	3,963	26,000	8,413		
계	35,000	35,391	40,000	20,242	50,000	42,880	55,000	17,515

주 1) 2022년 발행계획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발행개시 이후 수립한 계획임
2) 2025년부터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및 사용에 대한 단속 철저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여 할인발행을 통해 지원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효과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인발행한 상품권을 특정 대상의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환급(이른바 '상품권 깡')과 주류 및 금지금(金地金) 등의 구매 등에 활용되어 목표했던 정책효과가 일부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먼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특정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이 마늘가게와 허위매장 2개소를 동원하여 이들 3곳이 월 최대 192억원, 2년 간 총 1,300억원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고 62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해당 지적이 제기된 이후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정유통 가맹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449개 업체 중 124개사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거나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구매가 제한된 주류[22]를 우회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음.

22) 온누리상품권의 업종제한 대상 중 주류 도매업 및 주류 소매업이 포함되어 해당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불가하나, 식자재 마트나 정육점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주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연합뉴스, "위스키 살 때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처 논란", 2024.10.20.)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 실태조사 결과]

(단위: 개사, 2025.5.31.기준)

		대상	정상	적발						조치			
				계	부정 환전	유령 점포	구역외 수취	주류 취급	조사 기피	고발	행정 처분	자진 취소	처분 검토중
1차		15	6	9	7	1	1	-	-	7	8	-	1
2차	고액	347	304	43	14	7	21	1	-	14	30	12	1
	주류	87	15	72	-	-	-	72	-	-	44	28	-
계		449	325	124	21	8	22	73	-	21	82	40	2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음 2025년 1~2월에는 금 가격 상승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이 맞물려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금 실물(금지금) 구매도 문제되었음.[23] 금지금을 실물로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나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15%를 고려할 때 금지금 구매 후 판매하는 경우 5%p의 할인혜택이 발생하게 되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의 금은방을 통한 금 구매가 문제된 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설명절 특별 판매기간 동안 시계·귀금속 소매업(금은방)에서 6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졌음.

[2025년 설명절 특별판매 기간(1.10.~2.10.) 시계·귀금속 소매업의 온누리상품권 회수액]

(단위: 억원)

구 분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합계
회수(사용)금액	2.9	57.0	2.2	62.1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주체의 왜곡도 발생하였음. 온누리상품권을 자기 의사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아동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경우가 발생한 것임.

2024년 0~5세 아동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76억 3,600만원, 6~10세 아동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169억 4,700만원인데, 해당 아동의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부모 또는 지인의 1인당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명의가 활용된 것으로 추측됨.[24]

23) 서울경제, “금값 얼만데 5% 싸게 산다니... 온누리상품권 꼼수 성지 더 키우나”, 2025.2.18.

[연도별 아동(0~10세)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말	
		0~5세	6~10세	0~5세	6~10세	0~5세	6~10세	0~5세	6~10세	0~5세	6~10세
지류형	인원	4,605	8,122	2,843	4,873	1,298	2,624	1,286	2,846	-	-
	금액	7,394	13,917	6,532	12,312	7,085	15,513	7,636	16,947	-	-

주) 2024년은 연초부터 11월 30일까지의 구매실적을 반영한 것이고, 2025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금지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으로의 소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정책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사용 등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임.

24) 국민일보, “갓난아이가 사고 금 구입에 쓰고... 변질되는 온누리상품권”, 2025.5.14.
SBS BIZ, “아기가 온누리상품권 사고 위고비 구매?... 부정사용 그만”, 2025.5.20.

(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환의 문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온누리상품권 대행운영 계약이 2024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플랫폼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동 사업은 2026년 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축·운영,[25]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결제 지원, 콜센터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려는 것임. 상품권 발행액에 기준 수수료율 0.527%를 곱한 금액을 사업 예산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이관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3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을 오픈하였음.

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관련 구체적 사업 예산 미편성 부적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명시적으로 별도 편성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수수료를 기초로 수행되었는데, 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각각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수행 시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온누리상품권 운영 계약이 2024년 말 종료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카드형·모바일→디지털)함에 따라 새로운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의 사전 준비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등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수수료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한 통합운영 대행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였음.

동 사업은 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등 및 기존 데이터 이관, ② 신규 플랫폼에서의 충전·환불·가맹점 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등 발행·결제 지원, ③ 운영 전담인력 및 콜센터 등 운영, 가맹점 관리. 홍보·마케팅 지원 및 부정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사업범위로 함.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별도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거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에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충전식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플랫폼의 기능을 추가·개선하여야 하므로 ‘구축·운영’으로 표기함. 실제로 제안요청서의 ‘통합 운영’ 과업 범위에는 앱·웹에서의 필수 지원사항, 소비자·가맹점 전용 기능 지원사항, 유통·통계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 등 통상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과업범위가 다수 기재되어 있음.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통합 책정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내용 중 발행·결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 상품권 발행액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예산을 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26] 현행 방식과 같이 플랫폼 구축사업이나 운영 지원 사업의 대금을 판매·결제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에 연동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경우에 분리산정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함.[27]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축·운영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국회의 심사를 우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과 무관한 고정비용 성격의 사업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에 연동하여 사업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면밀하게 산정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임.

②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 시 사업자 간 분쟁 조정 미흡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분쟁 을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한국조폐공사를 선정하고 9월초 계약을 체결하였음.[28] 당초 계획으로는 2024년 11월까지 신규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이관 등을 마치고 12월에 베타서비스 등 최종 점검을 한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플랫폼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시점을 2025년 1월 1일 자정부터 개시할 예정이었음.

---

26)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등 및 기존 데이터 이관’ 사업은 상품권 발행에 선행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축사업 필요 예산은 향후 발행할 상품권 규모와 관계 없이 기능 및 투입인력 등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사업비용을 상품권 발행액과 연동시킬 필요가 없고, ‘전담인력 및 콜센터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지원’ 사업은 상품권 발행액보다는 상품권 문의 건수 및 가맹점 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상품권 발행액이 아니라 별도의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사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27) 참고로, 동 사업의 제안요청서에서는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상품권의 실제 발행·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발행액에 따라 수수료율의 변동은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수수료율 0.527%은 상품권 발행규모와 무관하게 유지됨. 그런데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8조원을 발행할 계획었으나, 이에 더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1조 3,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될 예정임.

28)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통합운영 대행용역 사업 추진 경과]

[당초 계획 상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추진 일정]

추진내용	~2024.7.	2024.8.	2024.9.	2024.10.	2024.11.	2024.12.	2025.1.~
운영기관 선정평가 및 협상, 계약 체결	■						
신규 플랫폼 개발 (인수인계, 이관, 연동 등)		■	■	■	■		
신규 플랫폼 최종 점검 (베타서비스 등)						■	
신규 플랫폼 정식 출시							■
운영 및 모니터링, 민원대응 등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4.6.

그러나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1달 가량 늦어지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데이터 이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통합 플랫폼 오픈일을 3월 초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기존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은 2025년 3월에서야 운영이 개시되었음.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① 시스템 설계도(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이전 문제, ② 불법 하도급 문제, ③ 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손실 비용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29]

먼저 ERD 자료는 기존 온누리상품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관계를 시각화한 일종의 플랫폼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자가 기존 온누리상품권의 데이터 분석을

○ (2024.6.27. ~ 2024.7.25.)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 (2024.7.30.) 제안서 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4.7.31.) 최종 개찰 (조달청 나라장터)
○ (~2024.8.21.) 기술 협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조폐공사)
○ (2024.9.3.) 계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조폐공사)
○ (2025.2.15.) 기존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중단 및 데이터 이관(비즈플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폐공사)
○ (2025.3.1.) 신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오픈 (한국조폐공사)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 서울경제, “사업자 갈등에 온누리상품권 불똥... 소상공인·이용자 혼란 우려”, 2024.12.18.
전자신문, “새해 온누리상품권 삐걱... 사업자 교체에 운영 차질 우려”, 2024.12.19.
디지털데일리, “온누리상품권 진실 공방 2라운드...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반박에 재반박”, 2024.12.23.
매일일보, “온누리상품권 갈등 심화... 기술 탈취 둘러싼 진실 공방”, 2025.1.9.
ZDNET코리아, “온누리상품권 논란에 소상공인만 불안... 비즈플레이 vs 조폐공사 갈등 심화”, 2025.1.5.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ERD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ERD 자료에 대한 정보보안 확약서 작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3개월 가량 지연되었음.[30]

다음 신규 사업자의 하도급이 당초 계획 요청서 관련 논란이 제기되었음.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공고하고 도급 업체를 선정하였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서는 "하도급은 허용되나 선불전자지급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31] 기존사업자는 신규사업자의 도급 계약의 내용에 선불전자지급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하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32]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오픈 지연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가 신규 플랫폼 오픈 시까지 사업을 연장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추가비용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주장한 바 있음.[33]

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사업 시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두 업체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자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업자간 협력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30)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ERD 자료 관련 논란에 대해, "기존사업자(비즈플레이(주))는 ERD가 고유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신규 사업자(조폐공사)가 외부 기관(용역업체 등)에 유출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계약조건(제안요청서)에 따라, 해당 ERD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동 사업 산출물이므로 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ERD를 수취하여 신규 사업자(조폐공사)에 전달하였으며 보안 확약 및 비밀유지 협약 등에 따라 관리 중에 있고, 해당자료는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목적 달성 후 공단 감독 하에 파기 예정이다." 라고 설명함.

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2024.6., p.19.

3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도급 관련 논란에 대해,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용역은 기구축한 공사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주한「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운영 대행용역」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는 '전자금융업' 을 의미하며,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용역의 경우 '전자금융업' 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 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도급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내용(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고 설명함.

33) 기존 사업자는 계약연장을 통해 발행수수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수취하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업무나 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하기로 했는데, 선물하기 기능, 기존 모바일상품권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해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연장으로 추가 과업(설명절 특판행사 등)을 수행함에 따른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기존 사업자가 신규 플랫폼 오픈 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임.

③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 문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이 2025년 3월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중단, 환급액의 사용기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3월 초 오픈 시에도 앱 오류 등 사용자 불편이 제기되는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환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였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이 2025년 1월에서 2025년 3월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기존 온누리상품권 발행 중단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 및 소상공인 매출진작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025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선물하기·기업구매가 중단되었고,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모두 2025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체 서비스(구매·환불·결제·결제취소 등)가 중단되었음.

종전의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데이터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을 위한 서비스 중단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20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2025.1.10.~2.10.) 이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매출진작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 3월 1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의 정식 오픈된 이후에도 접속·결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잔액 이관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2월 28일 사전 점검을 위해 가오픈하여 정상 운영을 확인하였으나, 오픈 당일인 3월 1일 접속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접속 시 로그인 지연 및 종료현상이 발생하였고, 시스템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오류사항 등의 재점검 및 안정화를 통해 장애 대처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함.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 이전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던 20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환급 사업(1~4차)'을 추진하면서,[34] 캐시백의 등록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여 이용자가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제기된 바 있음.

---

34)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설 명절 15% 환급행사 개요]
- ○ (행사기간) 2025.1.10.(월) ~ 2025.2.10.(금)
-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7,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최대 8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 (환급액) 154.9억원

즉 ‘온누리 상품권 명절 환급’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캐시백 금액을 이용자의 계정에 바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선물함으로 지급한 뒤 이용자가 직접 등록해야만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짧은 등록기한(1~3차: 5일 내 미등록 시 소멸) 및 보유금액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35]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액 154억 9,000만원 중 17억 1,900만원이 등록기한 내 등록되지 않아 소멸된 것임.

35) [2025년 설 명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5% 환급행사 현황]

차수	지급기간	선물등록 기한	소멸(등록기한종료) 기준 시점	지급액	미수령액
1차	2025.1.10.~1.17.	5일	지급일로부터 5일	29억 575만원	3억 7,383만원
2차	2025.1.18.~1.24.			38억 6,697만원	4억 617만원
3차	2025.1.25.~1.31.			34억 8,069만원	5억 4,272만원
4차	2025.2.1.~2.10.	1개월*	지급일로부터 1개월	52억 3,300만원	3억 9,666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00	3,559,150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상환 연장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 문제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354	125,35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실로 인한 기본재산 소진
	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281,339	281,193	연도 중 사업내용 변경 부적정 등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온누리상품권 발행)	420,669	420,669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계획에 없는 집행 변경 부적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용에 대한 단속 철저 필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환 문제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300,000	220,000	수요 과다예측에 따른 예산 미배정·불용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금	1,635,049	1,635,04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속가능한 수입·지출 구성방안 모색 필요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330,000	새출발기금의 부실채권 매입계획 대비 실적 저조
	대환보증 대위변제	254,436	123,679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계획 대비 저조한 사업실적

7. 정책금융 사업

가. 개 요

정책금융 사업은 정부가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 사업으로, 정부가 융자·이차보전·보증 및 투자 등의 형태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정의함.[1)]

정책금융 사업을 자금지원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융자지원·이차보전(利差補塡)지원·보증지원 및 투자지원(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① 융자지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융자수행기관(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대출의 실행과 관리, 대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직접융자'와 금융기관이 대출의 실행과 관리, 대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국가는 사전에 정해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간접융자'로 나눌 수 있음. ② 이차보전지원은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 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차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지원임. ③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후 대출 부실화 시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수행됨. ④ 투자지원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는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짐.

2024회계연도 부처별 정책금융 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총 23개 부처의 예산현액 51조 8,835억 1,600만원 중 46조 7,899억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2%)되었음. 결산액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54%(25조 2,759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9%(8조 9,094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8.1%(3조 7,871억원)으로 상위 3개 부처가 전체 정책금융 사업의 81.2%를 차지하고 있음.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

1)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보고서(2013.8.)에서의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의 상업적 기능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자금의 접근성·가용성·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해주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으로 정의함.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2022.6.)에서의 '정책금융'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 및 금융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정책금융을 주요 기능별로 중소금융·수출금융·개발금융·주택금융 및 서민금융으로 분류함.

[2024회계연도 부처별 정책금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2024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2,451,382	2,441,632	2,464,632	2,275,577	2,213,235
교육부	777,657	794,983	794,983	787,380	933,5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1,500	81,500	81,500	81,500	177,000
통일부	112,742	112,742	112,742	-	66,817
국방부	70,142	96,833	96,833	94,623	87,995
행정안전부	150	150	150	113	150
국가보훈부	35,249	42,326	42,326	42,110	36,161
문화체육관광부	1,144,230	1,144,230	1,144,230	1,093,130	1,195,730
농림축산식품부	4,017,095	4,006,316	4,041,124	3,787,103	4,099,106
산업통상자원부	1,244,739	1,244,739	1,244,739	1,232,847	1,566,921
보건복지부	47,298	51,511	51,511	51,454	38,078
환경부	382,188	382,188	382,188	381,488	411,428
고용노동부	677,909	744,919	744,919	723,937	761,793
국토교통부	29,509,181	29,391,726	29,393,726	25,275,886	30,872,211
해양수산부	666,625	663,409	663,409	521,772	693,253
중소벤처기업부	8,829,541	9,069,541	9,069,541	8,909,354	11,280,915
인사혁신처	934,065	1,004,229	1,004,229	996,536	797,900
금융위원회	502,433	502,433	502,433	491,545	472,591
방위사업청	18,148	18,148	18,148	15,362	18,513
산림청	12,652	12,652	12,605	11,318	13,357
해양경찰청	648	648	648	468	664
특허청	11,400	11,400	11,400	11,400	8,000
우주항공청	5,000	5,000	5,000	5,000	3,500
합 계	51,531,974	51,823,255	51,883,016	46,789,903	55,748,824

자료: 전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46조 7,899억원이 집행된 정책금융 사업을 융자지원·이차보전지원·보증지원·투자지원 등에 따른 유형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융자지원 유형은 총 42조 423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고,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2024년 기준 2조 1,956억 3,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연평균 2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4개 유형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투자지원 유형은 2024년 지출액이 1조 9,405억 4,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연평균 19.0%의 증가율을 보였고, 보증지원 사업은 2024년 6,114억 5,9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연평균 1.4% 감소하였음.

[2019~2024년 정책금융 사업 주요 유형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융자지원	37,199,598	43,061,607	45,675,233	45,413,541	39,554,756	42,042,261	2.5
이차보전지원	833,989	787,530	829,178	1,127,123	1,733,197	2,195,638	21.4
보증지원	655,133	4,539,675	2,256,440	2,540,456	620,901	611,459	△1.4
투자지원	814,688	1,637,713	2,211,719	1,822,261	1,313,696	1,940,545	19.0
합계	39,503,408	50,026,525	50,972,570	50,903,381	43,222,550	46,789,903	3.4

주) 융자지원은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 및 일부 통화금융기관융자금(450-02목), 이차보전지원은 이차보전금(320-05목)을 기준으로 추출한 값이며, 보증 및 투자 지원은 사업별로 편성 비목을 달리하므로 사업별 지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자금지원 유형별 현황

(1) 융자지원 사업 결산

2024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융자지원 사업은 15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46조 8,238억 3,100만원 중 42조 422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8%)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8조 7,550억원), ‘전세임대(융자)’(4조 8,789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융자)’(3조 5,591억원) 등이 있음.

[2024년 부처별 융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융자(융자)	560	560	560	560	560
		민간보육시설지원(융자)	560	560	560	560	560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아차관	849,890	717,780	717,780	631,608	870,189
		아프리카차관	416,981	416,981	416,981	405,278	380,458
		중동-CIS차관	112,383	133,575	133,575	107,143	85,999
		중남미차관	43,864	35,206	35,206	23,849	30,089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608,861	728,437	728,437	680,666	516,501
	기후대응기금	친환경설비투자	-	-	23,000	18,883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221,600	221,600	221,600	221,600	215,000
교육부	사학연금기금	국고대여학자금융자	37,125	54,451	54,451	51,288	33,412
		생활안정자금대여	630,959	630,959	630,959	630,929	524,594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융자)	69,000	69,000	69,000	69,000	218,063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융자)	28,623	28,623	28,623	28,623	29,737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융자)	4,450	4,450	4,450	40	200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	-	-	-	120,000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융자)	99,014	99,014	99,014	-	59,051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8,100	8,100	8,100	-	5,265
		개성공단운영대출(융자)	1,781	1,781	1,781	-	-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학자금 대부	18,035	18,835	18,835	18,776	20,940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국가유공자대부(융자)	22,388	22,388	22,388	22,322	22,388
		5.18민주유공자대부(융자)	178	178	178	175	178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계획현액)		(계획현액)
		특수임무유공자대부(융자)	113	113	113	93	113
		제대군인대부(융자)	1,755	1,755	1,755	1,628	1,54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536,500	536,500	536,500	536,500	586,50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157,880	157,880	157,880	112,351	157,18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	1,080	1,080	1,080	-	576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3,814	3,814	3,814	3,288	3,350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	3,800	3,800	3,800	3,800	3,8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융자)	6,800	6,800	6,800	6,800	2,400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63,300	63,300	63,300	63,300	60,135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5,400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44,633	144,633	144,633	138,614	163,368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23,932	313,932	313,932	313,932	308,407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58,246	456,246	456,246	456,246	458,246
	농지관리기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6,700	6,700	6,700	6,700	6,000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233,700	233,700	233,700	233,700	182,400
		농지연금(융자)	242,309	262,561	262,561	262,561	246,877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201,500	1,201,500	1,201,500	1,201,500	1,093,095
	축산발전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	1,040	1,040	1,040	630	914
		말산업육성지원(융자)	1,099	1,099	1,139	300	600
		축산물수급관리(융자)	10,000	10,000	10,000	10,000	9,000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32,865	32,865	32,865	32,336	33,924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89,600	89,600	89,600	88,980	100,500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300,000	300,000	300,000	259,931	300,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원유소비활성화(융자)	7,000	7,000	7,000	7,000	지원종료
		과수 생산유통지원(융자)	26,960	26,960	26,960	26,960	27,277
		축사시설현대화(융자)	99,995	80,964	80,964	65,864	95,95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스안전관리(융자)	4,726	4,726	4,726	4,726	3,970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2,216	2,216	2,216	2,216	1,861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융자) (국내외유전개발)	38,163	38,168	38,163	39,817	-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계획현액)		(계획현액)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융자) (해외광물자원개발)	1,654	1,654	1,654	-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융자) (해외자원개발융자)	-	-	-	-	39,000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19,440	19,440	19,440	19,440	15,55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287,000	287,000	287,000	287,000	286,038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장기수송열수송관개체)	5,000	5,000	5,000	5,000	5,00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90,000	90,000	90,000	90,000	12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생산 및 시설자금)	361,280	361,280	361,280	361,280	424,3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운전자금)	2,000	2,000	2,000	2,000	2,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신산업융자)	5,000	5,000	5,000	5,000	-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42,183	46,396	46,396	46,396	38,000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20,0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45,492	45,492	45,492	25,055	34,78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4,299	14,299	14,299	14,264	20,859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458,640	458,640	458,640	458,640	458,640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청산지원융자(융자)	40,190	77,200	77,200	76,918	78,481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88,462	118,462	118,462	118,234	106,34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7,000	7,000	7,000	997	-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2,700	2,700	2,700	801	-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	1,200	1,200	1,200	-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64,500	10,671,445	10,671,445	8,755,030	14,081,555
		집주인임대주택사업	65,000	65,000	65,000	20,324	49,000
		분양주택(융자)	2,015,332	2,015,332	2,015,332	1,589,519	1,471,639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계획현액)		(계획현액)
		국민임대(융자)	157,653	157,653	157,653	92,177	94,297
		공공임대(융자)	818,896	818,896	818,896	697,791	603,970
		민간임대(융자)	1,477,009	1,477,009	1,477,009	1,373,063	1,500,000
		행복주택(융자)	838,319	838,319	838,319	280,835	314,009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612,000	4,637,000	4,637,000	4,371,172	3,319,894
		전세임대(융자)	4,546,931	5,056,531	5,056,531	4,878,890	5,434,872
		통합공공임대(융자)	1,401,288	1,401,288	1,401,288	1,049,331	1,481,708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45,000	45,000	45,000	4,841	41,400
		도시재생지원(융자)	131,000	156,365	156,365	156,365	105,000
		도시재생씨앗융자	40,000	40,000	40,000	39,450	50,0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06,800	385,235	385,235	385,235	332,500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양식어업지원	2,240	2,240	2,240	2,240	2,24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00	96,784	96,784	18,999	80,000
		수산장비구입지원	1,600	1,600	1,600	801	1,600
		우수수산물지원	132,401	132,401	132,401	127,447	148,946
		수산물수매지원	115,370	115,370	115,370	92,162	152,743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118,686	118,686	118,686	118,586	131,28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995,800	2,035,800	2,035,800	2,035,800	1,835,8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89,370	234,370	234,370	234,370	482,5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531,800	571,800	571,800	571,800	750,100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458,750	1,488,750	1,488,750	1,488,750	1,311,11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00	235,000	235,000	235,000	55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00	3,710,000	3,710,000	3,559,149	4,270,00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대부 융자	650,000	650,000	650,000	649,985	530,000
		대여학자금 융자	284,065	354,229	354,229	346,551	267,900
합 계			46,569,928	46,800,796	46,823,831	42,042,261	48,615,15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2024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17개 부처 예산현액 2조 4,966억 3,100만원 중 2조 1,956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9%)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이차보전 지원(주택계정)’(1조 3,902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자금 이차보전’(4,037억원)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894억원), 금융위원회의 ‘이차보전지원’(356억원) 등이 있음.

[2024년 부처별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525	525	525	522	2,308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	31,908	31,908	31,908	30,408	53,967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52,107	77,998	77,998	75,847	67,055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150	150	150	113	150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국가유공자대부관리(이차보전금)	10,368	17,031	17,031	17,031	10,388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이차보전금)	87	140	140	140	87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이차보전금)	72	109	109	109	72
		제대군인대부관리(이차보전금)	288	612	612	612	288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5,000	5,000	5,000	4,962	4,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이차보전 운영지원)	5,000	5,000	5,000	1,401	5,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5,850	5,850	5,850	3,915	6,55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557,722	557,722	592,490	403,661	681,878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12,500	12,500	12,500	6,075	11,250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 이차보전사업	2,490	2,490	2,490	2,490	7,5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2,575	2,575	2,575	-	-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계획현액)		(계획현액)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7	7	7	5	6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08	108	108	53	72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9,928	9,928	9,928	9,928	13,328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	19,860	19,860	19,860	19,860	18,100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2,400	2,400	2,400	1,70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장려금(융자))	1	1	1	0.7	-
	장애인기금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630	630	630	630	1,072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이차보전)	9,872	9,872	11,872	11,782	12,58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6,360	6,360	6,360	6,021	5,300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주택계정)	1,395,141	1,425,141	1,425,141	1,390,237	1,839,836
		소규모주택정비(이차보전지원)	6,800	3,000	3,000	2,995	4,500
		이차보전지원(도시계정)	2,000	2,000	2,000	1,013	2,000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4,004	4,004	4,004	3,706	3,151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10,137	10,137	10,137	9,724	11,851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	25	25	25	25	8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노후어선 대체건조)	1,830	1,830	1,830	1,684	2,050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123,332	123,332	123,332	89,398	112,79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20,194	20,194	20,194	19,576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수출기업글로벌화)	11,130	11,130	11,130	11,130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개발기술사업화)	12,000	12,000	12,000	4,170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	-	-	-	57,896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지원	44,893	44,893	44,893	35,565	13,851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계획현액)		(계획현액)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방위산업육성자금,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18,148	18,148	18,148	15,362	18,513
산림청	일반회계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정책자금상환연기, 정책자금 대체자금, 부채상환인센티브)	112	112	65	42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기・신규대출 이차보전)	12,431	12,431	12,431	11,167	13,240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109	109	109	109	109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노후유도선현대화이차보전)	648	648	648	468	664
합 계			2,400,742	2,459,910	2,496,631	2,195,638	2,984,62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보증지원 사업 결산

2024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보증지원 사업은 8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6,195억 6,100만원 중 6,114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54억원), 국토교통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1,33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450억원) 등이 있음.

[2024년 부처별 보증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34,000	34,000	34,000	34,000	-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50,000	50,000	50,000	50,000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경제교류협력보험	3,847	3,847	3,847	-	2,50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완성보증계정 출연)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	1,000	1,000	1,000	50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00	45,000	45,000	45,000	380,000
	전력산업기반자금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	5,785	5,785	5,785	2,893	300
		원전수출보증	25,000	25,000	25,000	25,00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0,195	30,195	30,195	30,195	64,611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123,380	134,380	134,380	133,017	83,145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 출연	80,000	80,000	80,000	80,000	100,00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	-	-	-	20,000
		기술보증기금 출연	20,000	20,000	20,000	20,000	11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354	125,354	125,354	125,354	536,977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	-	-	-	281,269
합 계			608,561	619,561	619,561	611,459	1,764,303

주) 금융지원 사업의 총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성 기금을 제외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투자지원(펀드) 사업 결산

2024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14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1조 9,429억 9,300만원 중 1조 9,405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4,500억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2,700억원) 등이 있음.

[2024년 부처별 투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63,250	58,500	58,500	58,500	45,604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펀드조성)	3,000	-	-	-	-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2,000	-	-	-	-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창업활성화 (대학창업펀드)	7,500	7,500	7,500	7,500	7,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AI 혁신펀드	-	-	-	-	5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6,500	6,500	6,500	6,500	-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	-	-	-	-	12,000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35,000	35,000	35,000	35,000	5,000
	정보통신진흥기금	SaaS혁신펀드	20,000	20,000	20,000	20,000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AI 혁신펀드	-	-	-	-	100,000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60,000
		K-콘텐츠 펀드 출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25,000	25,000	25,000	25,000	55,000
		K-콘텐츠 펀드 출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45,000	45,000	45,000	45,000	15,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기업 육성펀드)	20,000	20,000	20,000	20,000	33,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스포츠산업펀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5,000	55,000	55,000	55,000	- *농특회계 이관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 *FTA기금 추진	- *FTA기금 추진	- *FTA기금 추진	- *FTA기금 추진	55,00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유전개발사업출자	48,140	48,140	48,140	48,140	83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186,770	186,770	186,770	186,770	119,3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5,000	5,000	5,000	5,000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	30,000	30,000	30,000	30,000	60,000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국토교통 혁신펀드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조성)	20,000	20,000	20,000	20,000	30,000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수산발전기금	수산모태펀드 출자	19,000	19,000	19,000	19,000	7,000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안전펀드)	7,500	7,500	7,500	7,500	9,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450,000	450,000	450,000	450,000	900,000
	기술보증기금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75,143	75,143	75,143	74,255	75,263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76,200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	-	-	35,000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	-	-	3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67,540	67,540	67,540	65,980	67,540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모태조합 출자	11,400	11,400	11,400	11,400	8,000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진흥기금	뉴스페이스투자지원	5,000	5,000	5,000	5,000	3,500
합 계			1,952,743	1,942,993	1,942,993	1,940,545	2,384,74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의견

이하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검토는 자금지원 4가지 유형별로 융자지원 사업, 이차보전지원 사업, 보증지원 사업 및 투자지원(펀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서술함.

먼저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융자 사업수요의 추계 부적정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 활용, 융자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 융자지원 사업 전담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 수취 문제 및 융자지원 사업에 따른 기금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을 살펴봄.

다음으로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사업 집행 부문에 대한 검토, 중장기 재정소요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성 등으로 구성됨.

다음으로 보증지원 사업의 경우, 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로 인한 기금의 건전성 우려,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의 회수 부진, 유동화회사보증의 리스크 관리, 보증성 기금에 대한 적정 출연금 편성 문제 및 보증지원 사업 관련 운영·지원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투자지원(펀드) 사업의 경우 민간 자금의 마중물로서의 역할,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지연, 주목적투자비율 제고 및 청산시점 지연 최소화 등 펀드 운용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함.

(1) 융자지원 사업

(가) 융자 사업수요의 추계 부적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융자 사업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함에 따라 융자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내역사업 대신 다른 융자사업에 활용하는 등 집행 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융자 사업수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중 원격재생형 훈련 관련 추계 부적정(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격재생형 훈련 대상 융자실적을 관리하지 않아 2024년부터 지원대상 직업훈련에서 원격재생형 훈련을 제외함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를 적절하게 추계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지출계획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음.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융자지원대상 직업훈련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2023년 계획액 535억 2,000만원 대비 80억 2,800만원 감액된 454억 9,200만원을 2024년 계획액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원격훈련 대상 융자금액은 2023년(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 및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392억 5,900만원에서 2024년(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 24억 6,000만원으로, 367억 9,900만원이나 감소하였음.

[2020~2024년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단위: 명,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전체	17,120	101,808	29,901	173,005	10,840	53,848	14,611	78,953	4,535	25,055
원격훈련*	2,220	22,343	9,897	45,192	4,820	23,070	8,020	39,259	494	2,460
집체훈련	14,900	79,465	20,004	127,813	6,020	30,778	6,591	39,694	4,041	22,595

주) 원격훈련의 경우 2020~2023년까지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과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모두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만 지원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결국 고용노동부가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에 따른 융자수요감소를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202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사업의 당초 계획액 454억 9,200만원 중 204억 3,700만원이 불용되고 집행률도 55.1%로 부진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원격훈련 중에서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실적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추계의 정확성이 낮았던 것에 기인함.[2)]

② 해외광물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의 부진 및 사업내용 변경 부적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추진 시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의 융자수요가 없어 불용하여야 할 금액을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에 추가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2022년부터 2024년에는 해당 내역사업으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국내외유전개발을 위한 융자금으로 대신 집행하였음.

2) 고용노동부는 원격훈련 전체 실적만을 관리할 뿐 원격훈련 내에서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과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2021~2024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내역사업명	연도	융자사업집행부문				
		융자사업 예산	계획		최종실적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국내외 유전개발	2021년	33,113	33,113	6	33,113	8
	2022년	89,278	89,278	7	90,158	9
	2023년	172,716	172,716	11	175,408	7
	2024년	38,163	38,163	9	39,817	7
해외 광물자원개발	2021년	1,816	1,816	5	-	-
	2022년	880	880	3	-	-
	2023년	2,692	2,692	1	-	-
	2024년	1,654	1,654	3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에는 융자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문 면담을 통해 집행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융자 신청의사 철회 및 융자 승인요건 미달로 결과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외광물자원개발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이를 국내외유전개발 내역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동일한 지적을 받았고,[3] 2025년부터 두 내역사업을 통합하고 핵심광물자원개발 융자지원비율을 상향하여[4] 그 수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불용되어야 할 예산을 국회 심의와 달리 다른 내역사업에 연례적으로 보충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13)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필요	○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 전액을 국내외유전개발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예산편성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주의

4) 2024년까지는 민간기업의 광물자원개발 투자비의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③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부진(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중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목표 대비 지원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시 내실 있는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나이스 신용평가점수(NCB) 91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리 7% 이상의 대출 또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이 안되는 대출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5%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 지원하는 사업임.[5)]

당초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15개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대환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년 동안 2,491억원 지원하는 것에 그쳤음.

한편 2024년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 기업의 판매기업 미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발생하자,[6)]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을 통하여 저리 지원을 시행하고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금리 3.4%에 1,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2.5%로 낮추었음.

그러나 e-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실적은 1,700억원 공급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465억원 지원에 불과하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역시 82

---

5)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요]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대상)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한도) 동일기업(개인·법인) 당 5,000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000만원 이내 한도 적용)
○(금리) 연 4.5% 고정금리
○(기간) 운전자금 10년(거치기간 없음)
○(방식) 은행권 대리대출(15개 은행)
○(계획 및 실적) 2024년 목표: 5,000억원 / 실적: 2,491억원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 2024년 7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고, 티몬·위메프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7.22.)’으로 인해 일부 판매자가 상품계약을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철수로 환불이 지연되는 등 상황이 악화된 바 있음.
※ e-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규모
- 위메프·티몬 : (기업수) 4.8만개사, (피해금액) 1.3조원 → (업체당 피해) 2,658만원

건의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에 그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은 지속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융자 사업의 실적 부진은 결국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이라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다른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임.

(나) 융자지원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사업내용 및 부적절한 사업변경의 문제

융자지원의 수혜대상이 편중되거나 융자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이 지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융자사업 사업내용의 개선 및 사전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특정 직종에 대한 융자 편중(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정보 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타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2020년터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음.[7)]

그러나 사업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보험설계사에 융자지원이 편중되고 있음. 2024년에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104억 1,800만원 중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가 39억 7,400만원으로, 전체 융자금액의 38.1%를 차지하였고,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원 2,232명 중 보험설계사가 966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음.

---

7)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개 업종(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방문강사, ④ 골프장,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 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⑬ 건설현장 화물차주, ⑭ 화물차주, ⑮ 소프트웨어프리랜서, ⑯ 방과후 강사, ⑰ 관광통역안내사, ⑱ 어린이통학버스 기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종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

융자대상 확대(특고)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고,[8]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상대적으로 열약한 임금 조건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불확실하여 고용 안정성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한 생계보호가 더욱 필요한 측면이 있음.

② 원전생태계금융지원의 융자목적 미부합 및 중복지원 문제(산업통상자원부)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원전생태계 활성화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통상적 대출지원과 시설·운영자금의 중복 지원사례가 일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전 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감 수주실적을 개선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융자 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폭넓게 설정함에 따라, ① 원전사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대출금 대환을 목적으로 지원받거나, ② 동일기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먼저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나 원전산업과 무관한 공장 증축, 대출금 대환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사례의 경우에는 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겠으나, 원전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9]

다음, 동일 기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사례의 경우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대출 목적에 명확한 기준이 설계되지 못하여 포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문제가 있음.

---

8) 「제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11. p.29.

9)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있으며, 기업경영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동 자금이 사용될 우려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음. (자료: 제410회 국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3.11.21.) 회의록 p.38~39)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들이 각 자금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및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보다 금융지원 자금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임의적 금리 산정(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024년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시 대출금리를 일반적인 지원수준에 비해 우대하여 지원하였는데, 대출금리 하향에 대해 지원대상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리산정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시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을 이유로 당초 3.4%대 수준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대출금리를 2.5% 고정금리로 낮추었으나, 금리 추가 인하의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일반적인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에 대비하여 어떠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지원 대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상황별 유연성·긴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고 융자조건의 완화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및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대지원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경우 특정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정책집행이 지연될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완화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다수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으나, 사안별로 융자요건을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임시방편과 같이 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내용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융자 요건 완화 결정을 자문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대규모 중소기업의 피해업종·피해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므로, 과거 피해업종·피해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금리 인하,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융자요건의 완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경제장관회의, 중대본 회의, 재난 대책위원회 등 범부처 대책협의회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적으로 융자요건 완화 결정을 자문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한 바 없는 상황임.

④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의 연도 중 융자한도의 연례적 변경(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은 연도 중 전체 융자한도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업종과 지역을 선별하여 우대지원하고자 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 중에 대부조건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있음. 2022년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월 대부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였음.

[2020~2024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연도중 사업내용 변경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변경 시점	전체 융자 금액	변경전 융자 금액	변경 후 융자 금액
202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한도) 월 200만원, 총 1,000만원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한도) 월 300만원, 총 2,000만원 (지원대상)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수준 악화 감안 요건 완화	20.7.1. (~12.31.)	101,808	17,676	84,132

2022	(소득요건) 중위소득 80%이하	(소득요건) 중위소득 이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2022.7.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대부 요건 완화	22.8.1. (~12.31.)	53,848	33,547	20,301
2023	(지원한도)월 2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	(지원한도)월 3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2023.2)」에 따른 생계비 대부한도 한시적 확대	23.3.1. (~6.30.)	78,953	8,075	38,297
	(지원한도)월 3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	(지원한도)월 2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		23.7.1.		46,372	32,581
2024	(지원한도) 월 200만원, 총 1,000만원	(지원한도) 월 200만원, 총 1,500만원	장기훈련 참여 훈련생 대상 대부지원을 통한 생계부담 경감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	24.8.1. (~12.31.)	25,055	14,781	10,274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의 대부조건은 훈련기간과 생계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에 지속적으로 한도액이 변화하는 것은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전체 대부 한도액의 증액은 「고용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음.[10] 「고용보험법」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등의 취지는 제한된 재원 내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은 선별하여 우대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부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0)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는 '저소득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의 신청·결정 절차,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전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액의 인상으로 저소득 피보험자를 지원하여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생계비 융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에게 차등적으로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융자지원 사업 전담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 수취 문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정액의 관리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심의받을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공단은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를 1.00%로 하고 이와 별도로 공단의 위탁수수료도 0.10%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한 0.10%의 위탁수수료는 2022년 355만원, 2023년 9,010만원, 2024년 1억 8,42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탄소중립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공단 정규직 및 계약직 인건비로 집행하였음.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별표1> 대출금리]

대출 방식	대출금리	융자취급수수료
간접대출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00%p, 대기업은 1.50%p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공단 0.10%p)

주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이 0.1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 사업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에서는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음.[11] 이는 그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서 융자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융자취급수수료를 모두 금융기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12]

11) [에특회계 융자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정액의 관리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받을 필요가 있음.[13)]

(라) 융자지원 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거나, 기존 융자의 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융자원리금 회수가 이연되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융자지원 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① 농지은행 사업 확대로 인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 증가 문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은행(맞춤형농지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융자)' 등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관리계획과 상충하므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648.2%, 2028년 771.9%(전망)으로 35개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높은 상황임.

[한국농어촌공사 10년간 부채 내역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산	106,646	112,977	122,846	129,116	141,919	156,903	168,491	176,594	188,382	189,223	202,734

(단위: %)

사업명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금융기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1.00
가스안전관리(융자)	-	1.50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	0.70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융자	-	1.5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50
녹색혁신금융(융자)	-	1.50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3) 융자취급수수료를 융자 대출금리의 0.1%p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예산금액이 증가할 때 수수료 금액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데, 사업 관리와 무관한 외부 사유에 의하여 인건비로 집행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부채	85,839	91,734	101,550	107,412	119,657	134,514	145,972	153,863	165,508	166,074	179,483
공사 부담 부채	6,157	6,110	7,092	6,977	7,941	10,703	11,624	11,683	13,018	13,657	13,700
부채 비율	**412.5**	**431.8**	**476.8**	**494.9**	**537.5**	**600.8**	**648.2**	**676.9**	**723.6**	**717.4**	**771.9**
공사 부담 부채	29.6	28.8	33.3	32.1	35.7	47.8	51.6	51.4	56.9	59.0	5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사업수행 구조로 인해, 사업확대에 따라 부채규모 역시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함.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규모화 및 청년농정책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관리계획과 상충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맞춤형농지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사업(융자) 및 새만금개발사업을 조속히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농 3만명 육성 등을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및 농지연금 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확대 추진했던 것이 공사 부채비율 상승을 초래함.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부담부채비율은 2018년도 29.6%에 비해 2028년 58.9%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융자액은 2023년 8,447억 6,200만원에서 2024년 1조 1,741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했고, 이로 인해 농지은행사업 전체 융자규모는 2023년 1조 3,985억 900만원에서 2024년 1조 6,703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음.

[연도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집행(융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합계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연금
2018년	728,910	346,661	281,952	100,297
2019년	896,206	449,111	293,299	153,796
2020년	1,088,032	632,533	278,777	176,722
2021년	1,186,692	758,366	243,512	184,814
2022년	1,345,852	781,981	323,120	240,751
2023년	1,398,509	844,762	290,689	263,058
2024년	1,670,343	1,174,112	233,679	262,552
합계	8,314,544	4,987,526	1,945,028	1,381,990

주) 맞춤형농지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규모화(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 지원), 선임대 후매도 지원(2023년 신규) 등 주로 고령농의 영농은퇴를 독려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정비한 후 규모화 등을 통해 청년농에게 임차・매매하는 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육성 확대 및 영농규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지구개발사업이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점(총사업비 2조 6,203억원, 사업기간 2008-2030년) 등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체적인 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당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비율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 문제(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출부실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경영애로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2024년 7월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바 있음.[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요]

○ (개요)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직접대출 방식의 정책자금 원금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
○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자 납부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 (요건) ① 다중채무자(2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② 전기 대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NCB 839 이하), ③ 공단자체 모니터링 부실징후 업체 중 1개 이상 요건 해당
○ (내용) 이용중인 대출 잔여 상환기간에서 5년(60회) 추가연장, 약정금리+0.2%p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 구체적으로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기존 상환연장 대상요건 중 '업력 3년 이상,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음. 이를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지만 상환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직접대출 형태의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p를 가산하도록 하였음. 또한 12월부터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 중 ① 다중채무 요건을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에서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로 완화하였고, ② 매출액 요건도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환연장 제도의 확대는 현재 수취하여야 할 원리금 상환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연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 수입(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산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산은 14조 5,936억원이고, 부채는 21조 63억원이며, 순자산은 △6조 4,128억원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음. 직접대출 잔액 7조 3,560억원과 직접대출 부실률 13.77%를 고려할 때 2024년 직접대출 잔액 중 정상 상환이 예상되는 6조 3,431억원을 모두 상환받더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부실률이 2021년 1.6%, 2022년 2.8%, 2023년 10.0%, 2024년 13.8%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실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실이 미래로 이연되어 실현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시 상환연장 수혜기업의 부실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심사 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부실이 미래로 이연·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리스크 관리에 임하는 한편, 채권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체 재무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2) 이차보전지원 사업

(가) 금융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 금융기관 및 수급자가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급자가 은행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먼저,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이차보전율을 제외한 부분만 부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는 유인이 적음.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출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을 받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경쟁을 통해 수급자를 유치하려는 유인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높일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보전 지원금 혜택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

실제로 2024년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대출금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부 사업에서 대출 건별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

①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의 이차보전 사업 대출금리 점검 필요(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에서 2024년 실행된 대출의 대출금리 분포를 보면, 대부분 5~6%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대출의 경우 7%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출금리 책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2024년 이차보전율을 2.5%p로 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2024년 동 사업에서 실행된 대출 585건의 대출금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89.2%에 해당하는 522건이 5~6%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나, 5% 미만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 건이 26건이 있는 반면(최솟값 3.298%), 7%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된 건도 37건이 존재하여(최댓값 8.83%),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책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의 이차보전지원 사업 대출금리 분포 현황]

(단위: %, 건)

합계	대출금리							
	3.0~4.0	4.0~5.0	5.0~6.0	6.0~7.0	7.0~8.0	8.0~	최솟값	최댓값
585	2	24	265	257	30	7	3.298%	8.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높은 보전금리 설정 문제(산업통상자원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은 높은 보전금리를 설정할 경우 사업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보전금리를 설정하고,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적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은 최대 보전금리가 5.5%p이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리는 최저 0.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보전금리로 인해 평균 대출금리도 6.06%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2024년 동 사업에서 실행된 대출 541건의 대출금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45.5%에 해당하는 246건이 6.0%(정부의 최대 보전금리 5.5%+기업의 최저 부담금리 0.5%)를 초과하고 있으며, 대출 건별 금리 차이가 최소 4.71%에서 최대 9.04%로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대출금리 분포 현황]

(단위: %, 건)

합계	대출금리						
	4.0~5.0	5.0~6.0	6.0~7.0	7.0~	평균	최솟값	최댓값
541	3	292	208	38	6.06%	4.71%	9.0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이 사업의 대출금리에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취급수수료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출을 실시한 11개 은행에 대한 취급수수료율이 2.20%에서 3.57%로 대출금리 중 40% 이상의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24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대출을 실시한 11개 은행의 취급수수료율]

은행명	조달금리(A)	취급수수료율(B)	대출금리(A+B)
기업은행	3.42%	2.59%	6.01%
신한은행	3.27%	2.68%	5.95%
하나은행	3.41%	2.61%	6.02%
농협은행	3.47%	2.58%	6.05%
대구은행	3.35%	3.57%	6.92%
전북은행	3.30%	2.20%	5.50%
광주은행	3.54%	2.88%	6.42%
경남은행	3.55%	2.78%	6.33%

주) 취급수수료율은 업무원가, 신용원가, 법적비용, 영업마진, 감면금리 등을 반영한 수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정부는 보전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그 수혜가 금융기관에 귀결되어 사업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차보전지원 사업 설계 시 적정 보전금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금리를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적 관리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16)]

(나) 이차보전지원 사업 집행 부문에 대한 검토

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의 연례적인 이차보전금 불용 문제(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은 수요 부족 등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이차보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정 보전금리의 설정 및 사업 수요의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은 이차보전금 예산이 2022년 7억 4,600만원, 2023년 15억원, 2024년 25억 7,500만원 편성되었으나 3년 동안 모두 불용되었음.[17)]

16) 이차보전지원 사업에서 은행은 여신규정에 따라 기업의 상환 능력에 대해 은행의 책임으로 심사 후 은행의 위험으로 대출여부, 대출 금액・금리 등을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대출금리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금리를 적용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한 조치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할 필요성은 있을 것임.

17) 2022년도 예산 7억 4,6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타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된 7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2~2024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이차보전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년	746	746	-	746	-	-	746
2023년	1,500	1,500	-	1,500	-	-	1,500
2024년	2,575	2,575	-	2,575	-	-	2,57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에는 국내외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3.79%의 고정된 보전금리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고, 2023년에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개편하였음에도 지속된 고금리 기조, 높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장기대출 불안정 및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특성 상 긴급성 부재 등의 사유로 수요가 부재하였음.

2024년에는 2023년 예산보다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25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2023년 개편된 사업방식으로도 수요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금리나 이차보전방식 등 사업방식에 대한 변경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2월 공고 후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를 발굴하였으나 수요자들이 이차보전보다 안정적인 정책융자를 선호함에 따라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를 찾지 못하였고, 2025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입장임.

②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 대비 이차보전 집행실적 부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예산의 일부를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집행실적이 융자지원 대비 매우 저조하므로, 당장의 재정절감 규모만을 고려하기보다 현장의 대출 수요 및 정책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융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별 적정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를 유지·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중 융자지원의 예산 일부를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추진하였음.

그런데 융자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것과 달리,[18]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2023년 사업준비기간 소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1.5%에 그쳤고, 2024년에도 집행률 28.0%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3~2024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2,500	-	-	2,500	37	-	2,463	1.5
2024	5,000	-	-	5,000	1,401	-	3,599	2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은 적용금리를 취급은행이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함에 따라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실 부담금리가 적은 일반융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19] 향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차보전율 상향 등 융자와 이차보전 선호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차보전은 재정규모 대비 수혜범위가 넓은 장점은 있으나,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발생 이자가 수입으로 편입되어 사업에 다시 쓰일 수 있는 직접 융자와 달리 융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으로 기금 재원 확보에 불리하고,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초기 단계 기업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순히 당장의 재정 절감 규모만을 고려하기보다 현장의 대출 수요 및 정책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융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별 적정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의 수요 과다예측으로 인한 불용 문제(중소벤처기업부)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 연구개발(R&D) 계속·종료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수요의 과다예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액의 3분의 1만 집행되고 과다한 불용을 야기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차보전 수요를 정확히 추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18) 반면, 융자지원은 2023~2024년 상반기 집행률이 각각 66.4%, 70.9%에 달하고, 신규 신청접수가 2023년에는 10월, 2024년에는 8월부터 중단되는 등 조기에 소진되고 있음.

19) 실부담금리('25년 1분기 기준): 일반융자(1%후반 = 2.87% - 우대금리), 이차보전(2%중반 = 5%후반 - 2.5%~3%)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도 계획안에 연내 4,300억원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융자신청 저조로 실제 대출이 1,481억원만 실행됨에 따라 41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4.8%)되고 78억 3,0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년도 계획안에는 2024년 기존대출 1,492억원 및 2025년 신규대출 1,526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12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2/4분기까지 신규대출액이 115억원에 불과하는 등 2025년 말까지 1,526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20]

[2024~2025년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2025.6.30. 기준)

구 분			2024년 2/4분기	2024년 3/4분기	2024년 4/4분기	2024년 실적
개발기술	신규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963	502	16	1,481
		이차보전율	5.5	5.5	5.5	5.5
		이차보전액	3	18	21	42
	누적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963	1,465	1,481	1,481
		이차보전율	5.5	5.5	5.5	5.5
		이차보전액	3	21	42	42
구 분			2025년 1/4분기	2025년 2/4분기	2025년 말 예상	누적
개발기술	신규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	115	1,526	3,007
		이차보전율	5.5	5.5	5.5	-
		이차보전액	-	0.6	42	84
	누적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1,481	1,596	3,007	3,007
		이차보전율	5.5	5.5	5.5	-
		이차보전액	19	39.2	120	162

주) 신규는 해당 분기에 신규 이차보전지원에 편입된 대출에 대해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발기술사업화 R&D 이차보전 사업은 R&D 연구개발비 감액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편성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이 감액된 모든 기업에 최대한도로 지원 가능한 규모(4,300억원)로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했으나, 융자신청 저조로 실제 대출은 1,481억원만 실행됨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2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2025년 예산의 경우 R&D 감액 기업의 불만·애로사항을 감안하여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모든 R&D 감액사업에 최대한도로 지원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며, R&D 감액 중소기업 대상으로 동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2025년도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그러나 R&D 예산 감액에 상응하여 지원대책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R&D 사업지원,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방식 중 이차보전은 사업화 자금에 대한 채무상환의 부담을 지고 민간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업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향후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제 신청자 및 금융기관의 선호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④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범위를 초과한 집행 문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연례적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4년 본예산에 5,577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현액 5,924억 9,000만원 중 4,036억 6,100만원만 사업 수행기관(농협은행 등)에 실제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 1,888억 2,900만원이 세입재원 없이 이월되었기 때문임.

[2024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집행 부문(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농협은행 등)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지급 소요 (B)	미지급액 (B-A)
557,722	34,768	592,490	403,661	188,829	642,130	238,469

주) 전년도 이월액 347억 6,800만원 또한 2023년 농특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 세입재원 없이 이월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관련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2024년 지급하여야 할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소요는 6,421억 3,000만원으로, 2024년 실제 지급한 금액인 4,036억 6,100만원 대비 2,384억 6,9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1]

21) 이 중 2024년 당해연도 발생분으로 편성된 예산인 5,025억 8,200만원(2024년 본예산에서 2023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편성된 551억 4,000만원을 제외한 규모) 대비 초과집행된 금액은 1,395억 4,800만원임.

이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이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사업수행기관(농협은행 등)의 부담으로 이차보전지원 예산 규모를 초과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됨에 따라 편성금리와 실제 정산금리 간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 대비 초과 집행액이 발생한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경우 농업인 등에 대한 신규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에 위배되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해당함.

특히, 이와 같은 초과 집행에 따라 2024년 예산에 2022년도 정산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551억 4,000만원이 편성된 데 이어, 2025년 예산에는 2023년도 정산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1,290억 5,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향후 2026년 예산에도 2024년도 정산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2024~2025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에 편성된 과년도 정산 미지급금 예산 현황]

구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본예산 기준)	정산 미지급금 예산
2024년	5,577억 2,200만원	551억 4,000만원('22년 정산 미지급금)
2025년	6,818억 7,800만원	1,290억 5,700만원('23년 정산 미지급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차보전 지원은 통상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와 이차보전 목표금리 간 차이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에 일종의 의무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지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이차보전지원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다) 중장기 재정소요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융자·이차보전 사업 계획 마련 필요

정부는 2022년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사업방식을 다수 전환한 이후 2023년도 예산에서 직접융자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을 4대 재정혁신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4대 재정혁신 방안 중 하나로서 정책금융에 대해 직접금융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지출구조조정'과 '수혜자 접근성'을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정책설계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22)]

먼저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융자지원 방식은 융자원금을 당해연도 재정지출로 지원하여야 하는 반면, 이차보전지원 방식은 융자 건별 정책대상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중 이차보전지원분에 대해서만 재정지출로 지원하게 되므로 당해연도 재정지출 총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음.

반면 수혜자 접근성의 관점에서 융자지원은 담보능력·신용 등이 부족하거나 융자실행조건을 미충족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미수금 또는 대손)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정책대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차보전지원 방식은 원금 손실에 대해 별도의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저신용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정책계층에 대해 이차보전지원 상품을 공급할 유인이 제공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추가로, 최근의 고금리 여건 하에서 대출 정책금리가 정해진 경우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격이 더 커지게 되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자 차액만을 보전하는 경우 최종적인 정책금리가 여전히 해당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감당가능한 금리 수준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이차보전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우려도 있음.

그런데 일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이와 같은 각 유형별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만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중장기 재정소요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2)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4대 재정혁신(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정책금융)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는 확대(예,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 전환)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검토

① 이차보전지원 사업 예산 규모 확대의 적정성 검토 및 총괄적인 규모 파악 필요

이차보전은 직접융자에 비해 단기적인 재정지출 감소효과가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선호될 수 있으나 대출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정지출의무가 발생하여 중장기 재원부담은 가중시키므로, 최근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첨부서류 및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이차보전과 융자에 대한 종합명세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그 총괄적인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전년 대비 4,624억 4,100만원(26.7%) 증가한 2조 1,956억 3,8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연평균 2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19년 대비 연평균 2.5% 증가한 융자지원 지출액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9~2024년 이차보전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이차보전지원	833,989	787,530	829,178	1,127,123	1,733,197	2,195,638	21.4
융자지원	37,199,598	43,061,607	45,675,233	45,413,541	39,554,756	42,042,261	2.5

주) 융자지원은 기타민간융자금(450-04목) 및 일부 통화금융기관융자금(450-02목), 이차보전지원은 이차보전금(320-05목)을 기준으로 추출한 값이며, 사업별 지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차보전 지원은 직접융자와 달리 융자원금을 당해연도 재정지출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정책대상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중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만큼만 재정지출로 지원하게 되므로 당해연도 재정지출 총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직접융자보다 이차보전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호하게 될 유인이 더욱 큰데,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2022년 1조 1,271억 2,300만원에서 2024년 2조 1,956억 3,800만원으로 최근 2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직접융자'는 담보능력·신용 등이 부족한 대상 등에 대하여 국가가 대출을 시행하고 원금 손실위험을 직접 감수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정책대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기관이 위험을 안게 되는 대신 국가가 이자 차액 및 수수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자금을 이용하여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각 정책대상과 목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이처럼 이차보전지원은 직접융자와 대상과 목표를 달리하고, 융자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는 직접융자와 달리 소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중장기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재원조달의 용이함을 이유로 이차보전지원 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차보전지원은 대출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정지출의무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결산 심사 시 부처별·사업별 집행 현황 및 전망 등 총괄적인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첨부서류 및 결산 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이차보전과 융자에 대한 종합명세서를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② 중장기 재정소요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식 선택 필요

일부 사업의 경우 동일한 지원 내용에 대하여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방식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소요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광산업 융자지원' 및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의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병행 편성 관련 문제(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재정절감 규모뿐만 아니라 현장의 대출 수요 및 정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융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별 적정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상당한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이차보전 방식을 병행하기보다 직접융자 방식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에서는 각각 1973년 및 1991년부터 직접융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규모를 절감하되 수혜 규모를 유지·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두 사업의 융자지원 예산 일부를 전환하여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음.

그런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의 주요 재원인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 국제관광이 재개되며 수입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23)]

이런 상황에서 부담금 정비 조치의 일환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부과 연령이 2세에서 12세로 상향됨에 따라, 2025년부터 출국납부금 수입이 연간 1,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24]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에서 재정지출 규모 절감을 위해 직접융자 외에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3~2024년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직접융자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으나,[25] 이차보전 예산의 경우에는 2023년 사업 준비기간 소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 1.5%에 그친 데 이어, 2024년에도 집행률이 28.0%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3~2024년 관광산업 융자지원 중 이차보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2,500	-	-	2,500	37	-	2,463	1.5
2024	5,000	-	-	5,000	1,401	-	3,599	2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재정절감 규모뿐만 아니라 현장의 대출 수요 및 정책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융자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별 적정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에서의 전입금 등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하므로,[26] 당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는 이차보전

23) 2019~2024년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국납부금	400,591	92,996	13,439	66,693	288,800	335,797
카지노납부금	247,077	269,669	85,842	86,641	210,610	242,615
합계	647,668	362,665	99,281	153,334	499,410	578,4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인원을 42,777,964명(2019년도 기준, 출국납부금 면제자 제외)으로 가정할 때 2024년 출국납부금은 674억 3,695만원 감소(당초 4,005억 9,127만원 → 변경 3,331억 5,431만원)하고, 2025년 출국납부금은 1,338억 7,391만원 감소(당초 4,005억 9,127만원 → 변경 2,667억 1,736만원)함.

25) 융자지원 예산은 2023~2024년 상반기 집행률이 각각 66.4%, 70.9%에 달하고, 신규 신청접수가 2023년에는 10월, 2024년에는 8월부터 중단되는 등 조기에 소진되고 있음.

26)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여유자금 규모는 연말잔액 기준 3조 2,410억 1,600만원으로,

방식의 대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낮음.

따라서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방식을 병행하기보다 직접융자 방식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구매자금’ 사업의 이차보전과 직접융자 차별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유사한 지원 목적·내용에 대해 이차보전과 직접융자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중장기 재정소요 및 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차보전과 직접융자 방식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이차보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직접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각각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구매자금 사업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 동시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융자(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이차보전(농특회계)			
	예산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예산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2024	2025			2024	2025		
축사시설현대화	51,200	67,946	20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영위한 중·소규모 농가	고정 1.0%, 5년 거치 10년 상환	54,300 (11,472)	49,000 (11,048)	축산업농가 (대규모농가)	고정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농특회계)			
	예산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예산액		대상자	금리 및 거치기간
	2024	2025			2024	2025		
사료구매자금	300,000	300,000	축산농가	고정 1.8%, 2년이내 상환	700,000 (20,834)	700,000 (31,335)	축산농가	고정 1.8%, 2년이내 상환

주) 이차보전은 융자규모 기준으로 작성, 이차보전 예산액은 ( )에 기재,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內 육견농가전업 지원 자금(융자규모 20,000백만원, 이차보전액 22백만원)은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중평잔 기준으로도 2조 5,753억 8,200만원에 달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기금에 편성된 융자는 2014.12.31.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특회계에 편성된 이차보전은 기금 지원 농가를 제외한 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구매자금의 경우에는 기금재원부족으로 인해 이차보전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직접융자 사업이 존재함에도 각 기금의 재원부족을 사유로 유사한 목적·내용의 이차보전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재정소요 및 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보증지원 사업

(가) 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로 인한 기금 건전성 문제

보증성 기금의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는 상승하게 됨. 보증성 기금은 개별법에서 규정한 법정 운용배수의 한도 외에도 기관별로 적정 운용배수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될 요인이 될 수 있음.

보증성 기금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보증성 기금의 최근 5년간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액	646,493	652,866	646,493	669,483	678,702
		보증잔액(A)	833,689	785,888	833,689	816,227	794,711
		기본재산(B)	81,922	88,791	105,482	117,227	121,794
		운용배수(A/B)	8.2	8.9	7.9	7.0	6.5
매출채권보험계정(신용보증기금)		인수잔액(A)	51,112	51,913	53,819	57,015	63,633
		기본재산(B)	3,847	4,211	4,645	4,794	4,678
		운용배수(A/B)	13.3	12.3	11.6	11.9	13.6
기술보증기금		보증공급액	254,398	254,903	260,355	287,234	294,791
		보증잔액	257,045	264,929	266,989	282,803	292,207
		기본재산(B)	21,504	29,625	34,215	35,341	33,760
		운용배수(A/B)	12.0	8.9	7.8	8.0	8.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액	81,871	80,147	96,402	89,599	86,432
		보증잔액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기본재산(B)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운용배수(A/B)	16.7	15.2	14.6	16.8	17.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계정	보증공급액	646,593	650,943	729,907	755,260	762,576
		보증잔액(A)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1,309,7,7
		기본재산(B)	79,176	86,654	88,993	100,176	110,595
		운용배수(A/B)	13.3	13.4	13.7	12.6	11.2
	주택담보노후연금	연금지급잔액(A)	52,484	62,811	78,860	98,466	119,582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증계정	기본재산(B)	4,524	6,495	7,844	10,205	12,764
		운용배수(A/B)	11.6	9.7	10.1	9.6	9.4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액	282,705	244,538	269,611	243,011	252,134
		보증잔액	387,263	425,239	461,547	442,658	424,224
		기본재산(B)	40,213	46,580	52,952	55,372	55,858
		운용배수(A/B)	9.6	9.1	8.7	8.0	7.6

자료: 전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하에서는 보증사업의 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기금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 검토함.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보증·사업자보증 부실 우려 등(금융위원회)

첫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계정의 대위변제가 연례적으로 과소추계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연중에 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대위변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계획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의 결산액을 보면, 2020년 2,487억 6,700만원에서 2024년 8,578억 5,7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2024년에는 당초 계획액으로 6,69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증가한 대위변제 집행소요에 대응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006억원을 증액하였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C)	집행액 (D)	집행률 (D/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A)	수정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20년	240,000	253,130	13,130	5.5	-	253,130	248,767	98.3	-	4,363
2021년	281,000	281,000	-	-	-	281,000	228,622	81.4	-	52,378
2022년	291,200	320,000	28,800	9.9	-	320,000	316,767	99.0	-	3,233
2023년	306,100	594,445	288,345	94.2	-	594,445	589,067	99.1	-	5,378
2024년	669,400	870,000	200,600	30.0	-	870,000	857,857	98.6	-	12,143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 계정의 대위변제 사업은 2023년 당초 계획액의 94.2%인 2,883억 4,500만원 증액, 2024년 당초 계획액의 30.0%인 2,006억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계획액의 과소 추계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반복되고 있음.[27)]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으로 인한 전세보증 부실이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되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대위변제 집행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대위변제 사업의 계획변경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대위변제 사업의 계획액 추계는 단순히 해당 사업의 적정 예산을 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 재무건전성 및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편성 규모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추계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인한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공급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의 대위변제액이 확대된 것은 주로 전세보증자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잔액 및 사고발생액 증가에서 기인함.[28)]

2024년 주택신용보증계정의 총 대위변제액은 8,579억원으로, 2022년 3,168억원, 2023년 5,891억원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중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119억원(71.3%)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275억원(26.5%)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위변제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61억원, 2023년 840억원에서 2024년 2,27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세자금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24년 0.99%로 2022년 0.34%, 2023년 0.81%에 비해 상승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율은 1.48%로 2022년 0.15%, 2023년 0.87%에 비해 증가하였음.

---

27) [2024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목-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4.10.2.	710-03	대위변제	200,600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세·반환보증의 대위변제 집행소요 증가
합 계				200,600	

자료: 금융위원회

28) 2024년도 총 보증잔액 130조 9,777억원 중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잔액은 83조 6,030억원으로 전체 보증잔액의 63.8%를 차지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잔액은 15조 4,110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함.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준금리 인하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29]

셋째, 비수도권 PF 사업장 부실화를 막기 위한 PF 특례보증상품이 신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PF 부실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사업자보증에 더해 2024년 4월부터 '시공사 부실사업자 정상화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2024년 7월부터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시공사 부실사업자 정상화 특례보증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총사업비의 70~90%→100%)하고 자금지원시기를 연장(입주자모집공고까지→준공 시까지)하려는 것이고,[30]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상향(총사업비의 70~90%→총사업비의 90%, 필요사업비의 100%), 자금지원시기 확대(입주자모집공고까지→준공 시까지), 건축공사비 추가 지원(보증상품의 자금용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임.

금융위원회는 잔여 부동산 PF 대출부실 및 정리·재구조화된 부동산 PF에 대한 신규 PF특례보증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PF 관련 사업자 보증의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확대(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실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2024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본재산이 사실상 소진되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의 건전성 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역신용재단의 보증부실이 악화되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액에 대한 대위변제

29) 5월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효과를 주시하면서도 필요시 '핀셋 규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국일보,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전 막차... 가계부채 급증에 당국 추가 규제?", 2025.6.1.)

30)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2024.4.11.

인 손실보전금이 계획 대비 증가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결산잉여금 등을 적립한 기본재산을 활용하였음.

[2021~2025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초 계획	2025 제1회 추경
보증잔액		425,123	461,547	442,658	427,917	410,000	430,000
재보증잔액(A)		228,560	249,649	238,068	227,885	220,498	231,254
손실보전금 순지급률(B)		1.02%	1.07%	3.36%	5.34%	3.36%	4.68%
지출	소계(C)	2,405.14	2,752.48	8,100.25	12,290.82	7,506.36	10,920.32
	손실보전금(A*B)	2,325.13	2,665.50	8,002.62	12,175	7,408.73	10,822.69
	관리비용 등	80.01	86.98	97.63	115.82	97.63	97.63
수입	소계(D)	2,515.07	2,872.70	6,691.41	11,037.28	5,470.96	5,550.55
	재보증료	1,730.94	1,872.29	1,762.77	1,675.34	1,631.69	1,711.28
	금융기관출연금	543.88	598.92	645.25	1,183.67	1,472.25	1,472.25
	운용수익	119.50	274.74	514.04	305.83	514.04	514.04
	기타수익	120.75	126.75	1,171.63	2,406.16	1,852.98	1,852.98
	기본재산(조달)	-	-	2,597.72	5,466.28		
수입 대비 지출 차액(D-C)		109.93	120.22	△1,408.84	△1253.54	△2,035.40	△5.369.77
정부출연금		2,368.86	1,643.80	1,408.84	1253.54	2,035.40	5.369.7
기본재산 등 적립		2,478.79	1,764.02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보증부실이 이연되는 과정에서 적립하였던 기본재산을 사실상 2024년에 소진하였음. 2023~2024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 재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기본재산을 2년간 8,064억원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 연말 중앙회의 기본재산은 210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2017~2024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 적립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본재산	2,140	2,477	2,967	2,873	2,464	3,831	6,114	7,370	4,658	2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대위변제의 급증 원인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신용보증의 보증공급 확대 및 2023년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후 손실보전율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지역신용보증 보증잔액은 22조 1,865억원, 중앙회의 재보증잔액은 11조 3,684억원이었으나, 2020년 지역신용보증 보증잔액은 38조 7,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5% 증가하였고 중앙회의 재보증잔액은 21조 1,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86.3% 증가하였음.

이와 달리, 손실보전금은 2019년 2,232억원, 2020년 2,461억원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2020년 신규 공급된 보증의 대출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보증부실이 미래로 이연되었기 때문임.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된 2023년에는 손실보전금이 8,003억원으로 크게 급증하였고, 2024년에는 1조 2,175억원으로 더욱 증가하였음.

[2021~2025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현황]

(단위: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지역신용보증 보증잔액	183,884	196,454	221,865	387,238	425,123	461,547	442,658	427,917	440,66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재보증잔액	93,663	100,697	113,684	211,802	228,560	249,649	238,068	227,885	230,988
손실보전금	1,574	1,730	2,232	2,461	2,325	2,666	8,003	12,175	6,693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1.68%	1.72%	1.96%	1.16%	1.02%	1.07%	3.36%	5.34%	5.84%주)

주) 2025년 6월말 기준 순지급율은 기준월 연환산 방식으로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 부진 문제

보증성 기금의 대위변제 증가추이에 비해 구상채권 회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므로, 정부는 보증성 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래에서는 개별 기금의 구상권 회수 부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

①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 부진(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 실적이 부진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상권 회수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기금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술보증기금의 2024년 신규 보증액은 5조 9,313억원, 보증잔액은 29조 2,207억원이며, 부실순증액은 1조 3,583억원, 대위변제액은 1조 1,677억원임.

2024년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을 1,551억 9,400만원 회수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1년 1,805억 400만원, 2022년 1,769억 5,900만원, 2023년 1,754억 8,7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2021년 4,906억원, 2022년 4,946억원, 2023년 9,596억원, 2024년 1조 1,677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이와 대비되며, 대위변제액의 증가와 구상권 회수액의 감소는 결국 구상권 미수납액의 증가로 이어짐.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보증공급 및 부실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보증잔액(A)	257,045	264,929	266,989	282,803	292,207	293,000
신규보증액	78,208	49,276	42,638	62,948	59,313	60,000
부실잔액	2,834	2,909	3,528	4,544	5,081	5,130
부실순증액	8,737	6,725	7,221	11,879	13,583	13,863
부실률	3.4	2.5	2.7	4.2	4.6	4.7
대위변제액	6,420	4,906	4,946	9,596	11,677	11,354
대위변제율	2.5	1.9	1.9	3.4	4.0	3.9
기본재산(B)	21,504	29,625	34,215	35,341	33,760	29,295
운용배수(A/B)	12.0	8.9	7.8	8.0	8.7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구상권 회수액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6조 9,166억 1,800만원 중 수납액은 1,551억 9,400만원(2.2%)을, 미수납액은 6조 2,966억 1,500만원(91.0%)을, 불납결손액은 4,648억 900만원(6.7%)을 차지하였음.

특히 2024년 구상권 회수로 인한 수납액보다 구상권 장기 미회수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3배 가량으로 많은 상황이고, 불납결손액이 2022년 2,067억 3,400만원에서 2024년 4,648억 900만원으로 2년 만에 2.2배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상권 회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구상권 회수액 수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구상권 회수액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1	138,900	138,900	138,900	6,188,752	180,504	5,749,195	259,053	130	2.9
2022	145,000	145,000	145,000	6,001,157	176,959	5,617,464	206,734	122	2.9
2023	130,000	130,000	130,000	6,410,080	175,487	5,929,794	304,799	135	2.7
2024	157,013	157,013	157,013	6,916,618	155,194	6,296,615	464,809	99	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상권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아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구상권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리하여 회수가능한 구상권의 회수에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상권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② 완성보증계정 출연 및 구상권 회수 부진(문화체육관광부)

최근 문화체육부 소관 완성보증계정의 사고율 및 보증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리스크관리 강화 및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해 동 계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완성보증계정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 모두에서 2023년~2024년 사고율 및 보증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5년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연간 채권회수 실적은 대위변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24년 대위변제액이 229억 7,000만원으로 2020년 30억 6,000만원 대비 7.5배 증가하였음. 이에 비해 2024년 채권회수 실적은 10억 1,000만원으로 2024년 대위변제로 인한 지출액의 4.4%만 구상권을 회수한바 부실이 우려됨.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2024년 대위변제액이 87억원으로 2020년 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비해 채권회수 실적은 5억원에 불과하여 대위변제액 대비 5.7%만 회수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완성보증계정(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	341.3	476.5	657.8	767.4	722.8
	보증잔액(A)	759.4	1,034.6	1,208.5	1,558.7	1,860.1
	대위변제액(B)	30.6	43.6	41.9	96.6	229.7
	대위변제율(B/A)	4.0	4.2	3.5	6.2	12.3
	보증사고 금액	55.1	21.0	43.4	147.5	232.0
	사고율	7.3	2.0	3.6	9.5	12.5
	채권회수 실적(C)	3.2	3.8	0.7	15.3	10.1
	대위변제액 대비 채권회수금액(C/B)	10.5	8.7	1.7	15.8	4.4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84	132	203	193	151
	보증잔액(a)	139	354	613	821	965
	대위변제액(b)	4	5	16	55	87
	대위변제율(b/a)	3.0	1.4	2.6	6.7	9.0
	보증사고 금액	9	-	17	86	116
	사고율	6.4	-	2.7	10.5	12.0
	채권회수 실적(c)	-	-	-	0.4	5
	대위변제액 대비 채권회수금액(c/b)	-	-	-	0.7	5.7

주 1) 기본재산 = 전년도 결산 자본총계 + 당해연도 출연금 - 대위변제금 + 회수 등
2) 사고율 = 보증사고 금액 / 보증잔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되고, 기본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를 증가시키는데, 기금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될 요인이 될 수 있음.

실제로 2024년 기술보증기금에 175억원, 신용보증기금에 75억원이 출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가 증가함에 따라 각 기금 완성보증계증의 기본재산은 전년 대비 각각 44억 6,000만원 및 42억원 감소하여 부실이 심화되고 있음.

[2024년 완성보증계정(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기본재산 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년말 기본재산(A)	2024년 출연금	2024년말 기본재산(B)	증감 (B-A)
기술보증기금	767.4	175	722.8	△44.6
신용보증기금	193	75	151	△42
합계	960.4	250	873.8	△86.6

주) 기본재산 = 전년도 결산 자본총계 + 당해연도 출연금 - 대위변제금 + 회수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 개선 필요 등 (고용노동부)

첫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 잔액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의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2024년 1,182억 3,400만원), ②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사업(2024년 250억 5,500만원), ③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2024년 353억 9,100만원), ④ 산재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2024년 142억 6,500만원)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6개월 이상의 원리금 상환 연체 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통해 일괄하여 대위변제를 수행하고 있음.

신용보증금액은 2020~2023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2020년부터 취약계층 융자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금별로 융자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인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금액 역시 증가하게 되었음.

해당 융자에 대한 보증부실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도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0~2024년도 사업별 대위변제금 회수 및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4,570	10,221	4,726	13,176	5,088	17,432	4,742	18,346	5,147	16,301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1,369	3,095	1,482	3,874	1,696	8,788	1,784	12,510	2,139	10,9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909	2,135	880	1,368	931	1,399	747	1,739	780	1,529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	-	-	2	92	21	439	86	750
합 계	6,848	15,451	7,088	18,418	7,717	27,711	7,294	33,034	8,152	29,555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불납결손액도 74억 6,300만원 발생하였음.

[2020~2025년(3월말)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15,451	6,908	44.71	8,543	3,361
2021	18,418	7,147	38.80	11,271	4,170
2022	27,711	7,756	27.99	19,955	6,532
2023	33,035	7,320	22.16	25,715	6,942
2024	29,555	8,173	27.65	21,382	7,463
2025년 3월말	28,068	2,362	8.42	25,706	0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고용노동부는 타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손실분에 대하여 융자사업 소관 기금별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은 타 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2020~2024년 동안 누적하여 78억 2,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20~2024년 신용보증사업 기금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고용보험기금	1,997	7,210	△4,183	△6,806	△7,524	△9,306
산재보험기금	△838	△56	△33	△538	△189	△1,654
임금채권보장기금	-	580	614	1,067	665	2,926
장애인고용기금	61	60	39	26	20	206
합계	1,220	7,794	△3,563	△6,251	△7,028	△7,828

주) 장애인고용기금 소관 융자사업은 종료되어 대위변제금 회수만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다른 3개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상환 위험을 부담하여 3개 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임.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이 기금 내 융자사업의 상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은 다른 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에 따라 1% 이내의 보증료를 받고 있으나,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보증료 수입과 구상채권 회수액보다 많아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복지계정으로부터 전출받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기금의 규모가 작고 복권기금 전입금과 보증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수입구조가 다소 취약하므로,[31]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로 인해 중소복지계정 내 자체사업(근로자복지지원, 퇴직연금사업 운영 등)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타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종료하여 각 기금별 융자사업에 대한 손실분을 각 소관 기금에서 자체부담하는 방안 또는 융자사업 보증으로 인한 손실분을 각 소관기금별로 분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1) 2024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은 복권기금으로부터 635억 1,300만원을 전입받고,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312억 1,5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97억 1,400만원을 다시 복권기금으로 반환하였음.

(다) 유동화회사보증의 부실 가능성

유동화회사보증은 유동화회사(SPC)가 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여 매각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의 대출 채무 등에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은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함. 그러나 기업 경기 악화로 인해 유동화회사보증의 기초자산의 부실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지원하였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대위변제로 인한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므로 유동화회사보증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구조도]



자료: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① 스케일업 금융 부실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액 및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스케일업 금융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선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발행기업이 후순위 증권을 더 많이 인수하도록 하여 위험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정부 재정을 통해 후순위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후순위증권에서 손실분이 차감되어 기금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동 사업을 통해 인수한 후순위증권의 부실률은 2019년 인수분 24.5%, 2020년 인수분 25.3%, 2021년 인수분 42.1%로 나타남. 손실액은 각각 245억원, 246억원 및 295억원임.

[P-CBO 발행연도별 스케일업 금융 부실현황]

(단위: 억원)

발행연도	발행금액 (A)	후순위 인수액(A')	회수액 (B)	후순위 손익 (C=B-A')	부실률 (D=C/A)	후순위 부실률 (E=C/A')
2000~2010	28,486	5,335	2,561	△2,774	(연환산)2.95% / 9.7%	52.0%
2019	3,536	1,000	755	△245	(연환산)2.31% / 6.9%	24.5%
2020	3,506	974	728	△246	(연환산)2.34% / 7.0%	25.3%
2021	2,603	700	405	△295	(연환산)3.78% / 11.3%	42.1%

주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까지 3년 만기 P-CBO 발행(2023년 발행분부터 5년물)
2) 2022년 이후 발행된 P-CBO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실률 현황에서 제외
3) 해당 부실률은 법원 해산절차 종료 후 변동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대손액 추이를 살펴보면, 대손액의 규모는 2022년 73억 200만원, 2023년 298억 8,900만원, 2024년 474억 2,000만원으로 연도별로 대손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스케일업 금융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임.

[연도별 스케일업 금융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연도	기초 후순위증권 매입규모	당해연도 후순위증권 매입액	대손액	당해연도 후순위증권 회수액(매각액)	기말 후순위증권 매입규모	후순위증권 매입대상 업체 수
2020년	100,000	97,400	13,406	-	183,994	210
2021년	183,994	70,000	11,944	-	242,050	277
2022년	242,050	60,000	7,302	-	294,748	368
2023년	294,748	60,000	29,889	-	324,859	462
2024년	324,859	100,000	47,420	143,576	233,863	574
2025년 2월	233,863	-	-	-	-	5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과거 '스케일업금융'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였던 '유동화지원' 사업 수행과정에서 2000년~2010년간 총 2조 8,486억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하여 5,335억원의 후순위증권을 인수한 바 있으나, 이 중 2,774억원(52.0%)이 손실로 이어진 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증권을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해당 부실을 대부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실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기업 선별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발행기업의 후순위증권 인수비율(연 1% 수준)을 상향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32)]

②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직접발행 규모 확대 필요(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은 법률 개정에 따라 P-CBO 직접 발행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절감 효과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신규 유동화회사보증 시 직접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발행사업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집행액은 2024년 1,335억원으로 2022년 490억원, 2023년 34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은 대규모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이 종료되고 최근 경기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유동화회사보증 부실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33)]

[2021~2024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집행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위변제 계획액(A)	2,561	1,812	2,280	3,971
대위변제 집행액(B)	1,505	490	346	1,335
집행률(B/A)	58.8	27.1	15.2	33.6

자료: 신용보증기금

특히 최근 유통업계의 법정관리 절차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P-CBO의 기초자산이 부실화되어 문제된 바 있고,[34)] 회사채 시장 경색 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차환 요건을 완화하고,[35)] 3억원 이하 기초자산 기업의 경우 일반보증으로 전환하여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나, 향후 유동화회사보증의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차환기업의 상환비율 및 후순위 유동화증권 인수비율 상향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5년 3월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절감 및 특수채 지위 인정 등으로 인해 기업당 50bp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36)]

---

32)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한 혁신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신용평가(B+) 기업 중 신용평가 등급전망 기준 이하 및 특이사항 보유기업 위주로 투자소위원회를 통해 심층(선별)적으로 심의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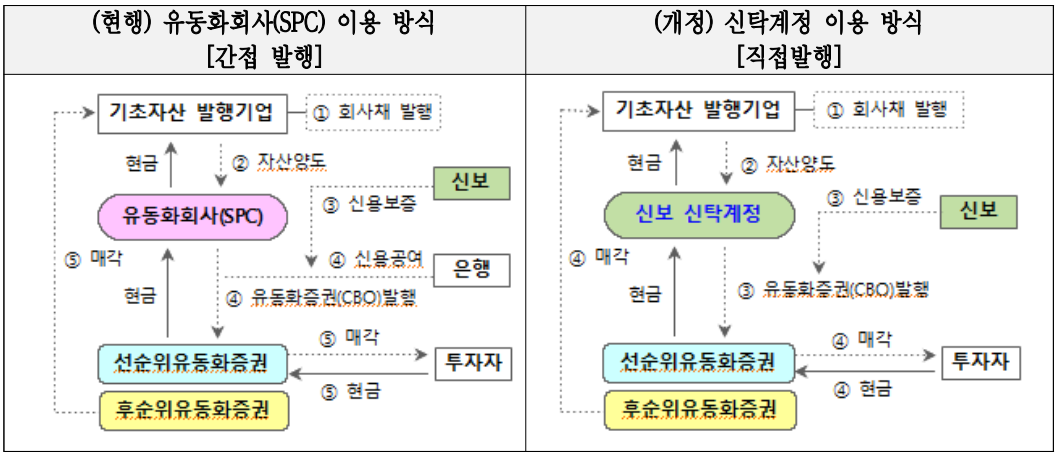
33) 2023년 기초자산 부실금액은 3,671억원으로, 2021년 1,170억원, 2022년 915억원에 비해 상승하였음.

34) 연합뉴스, “신보에 ‘SOS’ 친 홈플러스, 2년 만에 P-CBO 560억 조달”, 2023.10.31.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채권 디폴트에 국민혈세도 ‘줄줄’... 신보도 난감”, 2025.3.11.

35) 차환시 편입기업 상환비율을 2020년 상반기부터 최저 10% 수준(기존 20% 이상)으로 인하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은 P-CBO 직접 발행 등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기업 조달금리 인하 효과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신규 유동화보증 발행 시 직접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는 향후 직접 발행과 SPC 방식의 P-CBO 금리차이 등을 분석하여 직접발행 방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 방식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약 50bp 절감합니다", 2025.3.13.

(라) 보증성 기금에 대한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 문제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적립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편성하게 되는데, 보증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경우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가 문제됨.

① 원전수출보증 사업부진으로 인한 출연금의 적정성 문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2024년 원전수출계약 및 보증서 발급수요가 없어 관련 예산 전액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사업목적을 위해 편성된 출연금이 공공기관의 자본금 확대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보증발급 실적에 연동한 예산 교부 및 금융성기금

36) 구체적으로는 직접 발행을 통해 P-CBO 발행업무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여 기업의 금리인하 재원으로 사용(19~21bp)되고,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P-CBO 발행 금리가 인하(26bp)될 것으로 예상됨.

출연금의 환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2024년 약 8,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을 가정하여 2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37] 실제로는 원전 기자재 관련 수출계약 체결 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수출보증보험 수요도 없어 전액 실집행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되는 이 사업 계획액 250억원은 2024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기금사업단에 250억원을 전액 교부한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액 수령하였으며, 「무역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음.[38] 또한 2025년 5월 현재까지 보증공급 실적이 없음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연초에 교부받은 250억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액까지 모두 무역보험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이 되었음.

더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협약 해약 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 사업 250억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39]

즉, 정부는 원전 수출 보증사업의 목적으로 250억원을 출연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교부하였으나, 원전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확충에만 기여하는 결과를 낳은 것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보험보증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발급 실적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계약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처럼 연초에 1회 전액 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예산 교부 후 한 회계연도를 도과하였음에도 보증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및 조건을 설정하여 교부한 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자금의 실소요가 발생할 경우 재교부하는 등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7) [2024년 예산편성 당시 원전 수출계약 전망]

계약명	발주사	계약 전망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한국수력원자력	2024.4.~6.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 설비 계약	한국수력원자력	2024.3.~12.
튀르키예 아큐유(Akkuyu)원전 설비 수출	에너지엔	2020~2023년 계약 건에 대한 보증 수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8) 「무역보험법」
제32조(기금의 관리)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39)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협약서>
제7조(협약의 해약) 협약 해약 시 기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금 잔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마) 보증지원과 연관된 각종 지원·운영사업 관련

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성과 및 실적 부진(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의 성과 및 실적이 부진하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금 수입 확대에 모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선정 기준 및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로 78개 기업 및 14개 프로젝트투자 건에 대해 658억원을 투자하였고, 매각차익 159억원과 배당금 등 6억원을 포함한 165억원의 투자수익을 수취하였으나, 99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66억원의 투자손익이 발생하였음. 보증연계투자 투자수익률은 연간 기준으로 1.92%, 누적 투자수익률은 3.81%에 불과함.

특히 동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와 비교할 때 투자의 성과 및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2024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관련 투자액은 741억원, 투자기업 수는 92건이며, 투자수익률은 연간 기준 15.13%, 누적 기준 39.19%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혁신신도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 등급이 TI 8등급' 인 기업에 한정하여 보증연계투자를 수행하나, 신용보증기금은 구체적인 기술평가 기준 없이 투자 대상 사업을 심사·선정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투자실적 비교]

(단위: 억원,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액	신보	591	591	557	664	658
	기보	255	394	493	981	741
투자기업수	신보	62	110	112	110	78
	기보[1)]	52	50	57	97	92
연간 수익률	신보	△1.97	1.87	△0.79	5.04	1.92
	기보	△0.90	42.32	4.49	22.91	15.13
누적 수익률	신보	△0.56	0.60	0.06	3.01	3.81
	기보	12.53	33.29	31.61	35.88	39.19

주: 기술보증기금의 투자기업 수는 기존 투자기업에 추가 투자 시 각 연도에 중복으로 실적이 계상됨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 기업 중 손실발생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해당 상품이 투·융자 복합지원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융자에서도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과의 부진이 두드러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기업 대비 손실 기업의 비중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7% 수준인데, 기술보증기금은 2023년 10%, 2024년 12% 수준으로 차이를 보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유사사업 대비 투자의 성과 및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기업평가를 체계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보증연계투자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수수료 과다추계 문제(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필요한 사업수수료가 과다추계되어 사업수수료의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56.8%에 불과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보증공급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사업수수료 예산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수수료 사업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매년 7만건 이상 신규 공급될 것을 전제로 전년도 당초 계획 98억 3,400만원의 172.5% 수준인 16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신규 보증공급규모를 과다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사업 수수료 사업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2023년 공급건수는 3만 5,567건, 2024년 공급건수는 4만 5,359건으로 당초 계획(2023년 7만 4,177건, 2024년 7만 3,366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초 계획액 169억 6,700만원의 56.9%인 96억 5,400만원만 집행되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급금액	2,491	10,700	30,650	68,298	92,666
공급건수	1,597	5,904	15,519	35,567	45,359

자료: 금융위원회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중 관리수수료의 경우 정산대상 신규 보증공급건수를 7만 221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3만 9,000건에 그쳐 당초 계획액 19억 2,900만원 중 11억원만 집행되었고,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정산대상 아파트·비아파트 감정평가 건수를 당초 734건과 2,049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211건과 408건에 그쳐 계획액 12억 4,000만원 중 2억 4,500만원만 집행되었음.

개인보증 위탁수수료의 경우 보증평잔(예상 120.8조원→실제 109.5조원), 보증료수익실현요율(예상 0.0765%→실제 0.065%), 개인보증비율(예상 93.2%→실제 83.1%) 등이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액 80억 8,300만원 중 51억 2,700만원만 집행되었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의무지출 항목 지출 증가 등을 위해 사업수수료 예산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정보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말 보증료환급 사업으로 계획변경한 20억원 중 82%에 해당하는 16억 3,900만원을 불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2024년 사업수수료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기재부협의 변경 (2024.6.14)	210	01	사업수수료	△992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개편으로 사업 수수료 감액 및 주신보IT운영 예산 증액
자체변경 (2024.10.22)	210	01	사업수수료	△3,000	보증료 환급 소요 증가(구입자금보증 ·PF보증)로 관련 예산증액을 위해 사업수수료 감액
자체변경 (2024.12.13)	210	01	사업수수료	△2,000	PF대출 중도 상환 및 보증해지 증가로 사업자보증의 보증료환급이 증가함에 따라 주신보 보증료환급 예산 증액을 위해 사업수수료 감액
합 계				△5,992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보증공급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사업수수료 예산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변경한 금액의 대부분을 불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4) 투자지원(펀드) 사업

(가) 민간 자금의 마중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첫째, 벤처투자에 대한 공공 부문의 비중이 2020년 이후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24년 다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 부문 중심의 벤처펀드 투자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펀드에 대한 출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정부·금융공기업 등)에서의 재정출자와 민간부문의 출자를 바탕으로 정책펀드를 구성하고, 운용사를 선정한 후 운용사가 2차 운용사 또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초기자본을 지원하고 있음.

정책펀드 사업은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①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중소기업모태펀드,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③ 개별 부처에서 운용하는 정책펀드로 분류할 수 있음.

2024년 벤처펀드의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부문은 2조 4,226억원(23.0%), 민간 부문은 8조 1,324억원(77.0%)을 출자하여, 2020년 26.0%에서 2023년 1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공공 부문의 비중이 23.0%로 다시 증가하였음.

이는 공공 부문의 출자 금액이 2023년 2조 1,770억원에서 2024년 2조 4,2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6억원 증가한 영향도 일부 있으나, 민간 부문의 출자 금액이 2023년 10조 8,558억원에서 2024년 8조 1,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234억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민간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산은 등 제외) 2조 8,721억원(27.2%), 일반법인 2조 3,152억원(21.9%),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1조 2,009억원(11.4%), 일반 개인 1조 999억원(10.4%), 연기금 및 공제회 3,265억원(3.1%), 기타단체 및 외국인 3,178억원(3.0%) 순으로, 모든 부문에서 출자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연도별 벤처 펀드 결성의 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11.3%
	비중	26.0%	19.1%	18.1%	16.7%	23.0%	-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37.8%
	비중	13.3%	9.8%	8.5%	7.5%	12.8%	-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4.2%
	비중	5.5%	5.0%	5.6%	2.7%	3.8%	-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26.8%
	비중	3.6%	2.3%	2.1%	3.4%	3.1%	-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14.4%
	비중	3.6%	2.1%	1.9%	3.1%	3.2%	-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25.1%
	비중	74.0%	80.9%	81.9%	83.3%	77.0%	-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23.5%
	비중	8.3%	16.2%	13.1%	11.0%	10.4%	-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5.0%
	비중	18.3%	22.4%	20.7%	20.9%	21.9%	-
금융기관 (산은 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31.9%
	비중	23.3%	25.2%	27.8%	32.4%	27.2%	-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6.2%
	비중	11.2%	3.8%	7.5%	5.7%	3.1%	-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12.3%
	비중	9.8%	11.5%	10.6%	10.5%	11.4%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11.4%
	비중	3.0%	1.8%	2.1%	2.8%	3.0%	-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산업은행을 제외한 민간 금융기관의 비중이 2020년 23.3%에서 2023년 32.4%로 증가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24년 27.2%로 감소하고, 금액 역시 2조 8,721억원으로 2021~202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고 있으므로, 민간 금융기관 중심으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벤처투자 결성금액 중 연기금·공제회 부분이 3,265억원으로 전체 중 3.1%에 불과하고 금액 역시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기금·공제회가 국내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벤처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모태펀드 일부 투자분야의 경우 정책 출자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자금의 마중물이라는 정책펀드의 사업목적을 감안하여 민간출자 비중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정책 출자비중(모태펀드+정책기관 등)이 2020년 45.3%, 2021년 45.7%, 2022년 41.5%, 2023년 49.4%, 2024년 52.7%로 2022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책 출자비중이 2020년 56.4%, 2021년 59.6%, 2022년 61.4%, 2023년 64.3%, 2024년 60.1%로 2022년 이후 계속 6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 모태펀드	모태펀드	14,295	38.3	17,725	37.2	15,028	35.7	11,388	39.1	13,360	42.4
	정책기관 등	2,605	7.0	4,055	8.5	2,453	5.8	2,984	10.3	3,240	10.3
	연금/공제회	4,097	11.0	4,625	9.7	5,265	12.5	1,690	5.8	550	1.7
	VC	3,836	10.3	4,052	8.5	4,130	9.8	2,179	7.5	2,792	8.9
	민간금융기관	6,592	17.7	9,356	19.6	6,375	15.1	5,186	17.8	5,294	16.8
	일반법인	4,377	11.7	6,745	14.1	7,111	16.9	4,621	15.9	5,379	17.1
	기타단체, 외국인	988	2.6	348	0.7	766	1.8	597	2.1	408	1.3
	개인	502	1.3	789	1.7	1,004	2.4	452	1.6	472	1.5
	계	37,290	100.0	47,695	100.0	42,133	100.0	29,096	100.0	31,494	100.0
농림수산 식품모태 펀드	모태펀드	980	54.2	1,047	54.2	1,656	60.7	1,315	61.4	1,360	55.6
	정책기관 등	40	2.2	105	5.4	20	0.7	62.4	2.9	110	4.5
	운용사(GP)	357	19.8	346.4	17.9	550.3	20.2	214.3	10.0	249.7	10.2
	민간금융기관	217	12.0	115	5.9	175	6.4	70	3.3	80	3.3
	일반법인	189	10.5	220	11.4	315.2	11.6	460	21.5	617	25.2
	기타단체	9	0.5	100	5.2	-	-	20	0.9	-	-
	개인	15	0.8	-	-	10.5	0.4	-	-	10	0.4
	외국인	-	-	-	-	-	-	-	-	20	0.8
	계	1,807	100.0	1,933.4	100.0	2,727	100.0	2,141.7	100.0	2,446.7	100.0

주) 정책기관 등: 지자체, 기타 모펀드, 기금,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아울러 2024년 운용 중인 모태 출자펀드의 투자분야별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경우 14개 계정의 15개 분야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경우 2개 계정의 13개 분야에서 정책 출자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해당 분야를 살펴보면 ‘디지털콘텐츠해외진출’, ‘농식품벤처’ 등 기대수익률이 낮아 정책출자 비중이 높아진 분야도 있으나, 기준수익률 중위값이 3%로 수익성이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스케일업’ 등에서도 정책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 운용 중인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중 정책출자 비중이 70% 이상인 분야]

(단위: %, 억원)

펀드명	계정	분야	기준 수익률	결성액 총합	A+B	모태 펀드(A)	정책 기관 등(B)	연기금	운용사 (GP)	금융 기관	일반 법인	개인 등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진	임팩트	3	100% (365)	79.6	54.9	24.7	-	8.5	5.5	6.4	-
	지방	규제자유특구	3	100% (352)	75.6	56.5	19.1	-	6.1	9.1	8.5	0.7
		지방기업	3	100% (1,449)	75.1	55.0	20.1	-	7.5	5.8	8.5	3.2
	엔젤	창업초기 (벤처투자)	1	100% (515)	72.3	59.8	12.5	-	7.2	2.3	17.9	0.4
	혁신 모험	창업초기 (지역허브)	1	100% (100)	89.0	60.0	29.0	-	5.0	-	1.0	5.0
	문화	애니/캐릭터	2	100% (267)	71.3	67.5	3.8	-	11.8	-	16.9	-
	관광	관광기업 육성	3	100% (2,984)	70.6	66.4	4.2	-	9.8	2.6	17.0	-
	스포츠	스포츠 프로젝트	2	100% (120)	70.0	70.0	-	-	13.3	-	16.7	-
	과기 정통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0	100% (150)	92.0	70.0	22.0	-	5.0	-	3.0	-
	도시 재생	도시재생	1	100% (625)	81.6	80.0	1.6	-	7.3	1.6	3.1	6.4
	국토 교통 혁신	공유주택	1	100% (251)	83.7	79.7	4.0	-	3.2	-	10.0	3.2
	중진 (복지)	사회서비스	2	100% (215)	76.7	69.8	7.0	-	3.3	11.1	6.0	2.8

(단위: %, 억원)

펀드명	계정	분야	기준 수익률	결성액 총합	A+B	모태 펀드(A)	정책 기관 등(B)	연기금	운용사 (GP)	금융 기관	일반 법인	개인 등
중소 기업 모태 펀드	교육	대학창업 (1유형)	0	100% (403)	71.2	68.5	2.7	-	19.7	-	1.4	7.6
	환경	스케일업	5	100% (440)	83.5	66.5	17.0	-	9.7	-	4.5	2.3
	중진 (고용)	사회적기업	2	100% (278)	78.8	64.7	14.0	-	8.5	-	4.8	7.9
농식품 모태 펀드	농식품	6차 산업화	3	100% (600)	78.3	70.0	8.3	-	17.5	-	4.2	-
		AgroSeed	0	100% (100)	90.0	90.0	-	-	10.0	-	-	-
		R&D	3	100% (100)	80.0	70.0	10.0	-	10.0	-	10.0	-
		농식품벤처	0	100% (1,255)	78.4	78.1	0.3	-	10.3	-	11.3	-
		마이크로	0	100% (515)	81.9	79.5	2.4	-	6.2	-	8.3	3.6
		소형 프로젝트	3	100% (600)	73.5	70.0	3.5	-	11.2	-	12.8	2.5
		스마트 농업	2	100% (1,460)	70.2	70.2	-	-	18.2	2.7	8.9	-
		영파머스	0	100% (662)	86.1	85.3	0.8	-	10.9	-	3.0	-
		징검다리	3	100% (436)	72.3	68.8	3.5	-	17.2	8.0	2.3	0.2
		창업보육	0	100% (71.4)	70.0	70.0	-	-	30.0	-	-	-
		창업초기	3	100% (80)	70.0	70.0	-	-	12.0	12.5	5.0	0.5
		직접투자	0	100% (40)	100.0	99.0	1.0	-	-	-	-	-
	수산	수산 벤처창업	0	100% (501)	77.8	75.8	2.0	-	8.9	-	10.3	3.0

주 1) 기준수익률: 분야별 자펀드 기준수익률의 중위값
2) 정책기관 등(B): 지자체, 기타 모펀드, 기금,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러나 정부가 모태펀드에 예산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운용사를 선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뒤 자펀드를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향후 펀드사업 추진 시 민간 출자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주목적투자비율 제고 및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 마련 필요

첫째, 모태펀드는 일부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이 자펀드의 주목적에 투자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최소한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는 높게 설정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책 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주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산운용사의 수익보전,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을 위해 투자의무비율을 100%로 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목적 상 적어도 공공부문의 출자분(정부재정·회수재원)은 해당 펀드의 투자목적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서 2024년 운용 중인 자펀드 중 정책자금 출자비율보다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낮은 펀드가 다수 발견되었음.

[정책자금 출자비율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보다 높은 펀드 현황]

(단위: 억원)

정책펀드	계정	자펀드명	주목적 투자대상	결성일자	모태 출자액 (A)	정책기관 등 출자액 (B)	결성 규모 (C)	정책자금 출자비율 (A+B)/C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진	OOOOOO	재도약	2023-11-23	160	100	405	64.2%	60%
		OOOOOO	루키리그	2024-07-30	80	15	150	63.3%	60%
		OOOOOO	루키리그	2024-07-05	170	40	244	86.1%	70%
		OOOOOO	임팩트	2024-07-29	100	20	173	69.6%	60%
		OOOOOO	재도약	2024-07-29	150	10	260	61.5%	60%
		OOOOOO	임팩트	2024-09-05	100	50	172	87.2%	60%
	청년	OOOOOO	청년창업	2023-11-23	100	15	170	67.8%	60%
	혁신 모험	OOOOOO	창업초기	2023-12-13	125	154	360	77.5%	60%
		OOOOOO	창업초기 루키	2024-01-26	100	45	223	65.0%	60%
		OOOOOO	초격차	2023-11-27	100	90	300	63.3%	60%
		OOOOOO	초격차	2023-12-05	150	128	408	68.1%	60%
		OOOOOO	창업초기	2024-08-27	100	30	170	76.5%	60%
		OOOOOO	창업초기	2024-09-05	180	70	300	83.3%	60%
	소부장	OOOOOO	소재부품장비	2023-07-31	100	10	170	64.7%	60%
		OOOOOO	소재부품장비	2023-10-17	100	50	220	68.2%	60%
		OOOOOO	소재부품장비	2023-10-30	100	20	170	70.6%	60%
	지방	OOOOOO	지역AC세컨더리	2024-07-16	50	20	100	70.0%	60%
		OOOOOO	지역AC세컨더리	2024-07-16	50	5	85	64.7%	60%

(단위: 억원)

정책펀드	계정	자펀드명	주목적 투자대상	결성일자	모태 출자액 (A)	정책기관 등 출자액 (B)	결성 규모 (C)	정책자금 출자비율 (A+B)/C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
		OOOOOO	지역 라이콘	2024-08-12	30	5	50	7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8-28	30	10	50	8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17	18	3	30	7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29	30	10	50	80.0%	60%
		OOOOOO	지역 창업초기	2024-07-09	30	10	60	66.7%	60%
	관광	OOOOOO	관광기업육성	2023-11-10	150	-	215	69.8%	65%
	문화	OOOOOO	K-콘텐츠IP	2023-08-09	150	15	251	65.8%	60%
		OOOOOO	K-문화일반	2023-08-11	100	-	200	50.0%	40%
	스포츠	OOOOOO	스포츠산업	2023-11-15	119	-	184	64.7%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3-09-05	28	-	40	70.0%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3-12-04	28	-	40	70.0%	60%
		OOOOOO	스포츠산업	2024-08-26	221	-	322	68.6%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4-08-29	35	-	50	70.0%	60%
		OOOOOO	스포츠출발	2024-11-20	35	-	50	70.0%	60%
		OOOOOO	스포츠프로젝트	2024-11-25	84	-	120	70.0%	60%
	중진 (복지)	OOOOOO	사회서비스	2024-09-24	50	-	70	71.4%	60%
	해양	OOOOOO	해양신산업	2023-11-28	130	-	200	65.0%	60%
농림수산 식품모태 펀드	농식품 투자	OOOOOO	영파머스	2023-07-18	135.0		152.0	88.8%	70%
		OOOOOO	직접투자	2023-07-06	29.7		30.0	99.0%	60%
		OOOOOO	마이크로펀드	2023-07-17	52.0	12.4	65.0	99.0%	60%
		OOOOOO	지역특성화	2023-12-15	60.0	20.0	120.0	66.7%	60%
		OOOOOO	농림축산식품	2024-07-25	150.0	50.0	300.0	66.7%	60%

주) 정책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모펀드, 기금,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는 ① 정책펀드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 중 일부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정투입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②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펀드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민간자금이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될 수 있다는 문제가 각각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향후 투자의무비율 설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일한 분야 내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 유도 및 민간출자자 유치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투자분야별 기준수익률의 일관된 설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펀드 기준수익률이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IRR)로, 펀드 청산 후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일정비율을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게 됨.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자펀드에 대한 성과보수를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수익률은 운용계획에서 투자분야별 하한을 마련하되 세부 적용은 자펀드 규약 협의 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을 보면, 주목적 투자대상 및 투자목적이 같은 하나의 분야 내에서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2024년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25.3월말 기준)]

(단위: 개)

계정	분야	1%	2%	2.5%	3%	3.5%	4%	5%	6%	7%	8%
중진	스타트업코리아	-	-	-	-	-	-	7	-	4	9
	루키리그	-	-	-	-	-	-	6	1	1	2
	재도약	-	-	-	1	-	-	-	-	1	-
청년	청년창업	-	-	-	-	-	-	2	-	-	1
지방	지역 라이콘	-	-	-	4	-	-	-	-	1	-
혁신모험	창업초기	-	-	-	-	-	-	3	-	-	3
문화	IP	-	-	-	-	3	-	-	-	1	-
	M&A-세컨더리	-	-	-	-	-	-	1	-	1	-
	문화일반	-	-	-	-	-	-	1	-	1	-
	신기술	-	-	-	-	1	-	-	-	1	-
스포츠	스포츠출발	-	1	-	-	-	-	-	-	1	-
과기정통	공공기술사업화	-	-	-	1	-	-	1	-	-	-
교육	대학창업	-	1	-	3	-	-	-	-	-	-

주) 모태펀드 계정 중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계정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기준수익률은 펀드별로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최소 기준수익률[40] 이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스포츠출발 분야의 경우 자펀드 기준수익률이 2% 또는 7%로, 루키리그 분야의 경우 5%에서 8%로 설정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자 유치 및 운용사의 수익성 제고 유인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준수익률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0) 기준 수익률의 하한은 시장 금리 및 민간 출자자 모집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고 시점에 출자 분야별로 정하고 있음.

(다)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펀드 추진 중단 및 예산 불용 부적정

2024년 기후대응기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탄소제로펀드는 펀드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출자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후 정부 및 민간자금(발전공기업 등)을 매칭하여 재간접펀드를 운용할 계획으로 2024년 기후대응기금에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이 소액 편성(20억원)됨에 따라 소규모 펀드조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어, 펀드 추진을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펀드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확보로 2030년 국제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기후대응기금에 글로벌 탄소제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그러나 국제감축사업이 초기 단계로 투자 대상 사업이 없고 펀드 규모가 작아 운용사 공모 지원이 저조함에 따라 펀드 추진을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그런데 소규모 펀드조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나 펀드 이익금의 분배와 같은 사안은 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검토한 후 펀드 추진을 중단하고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태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정책펀드 사업의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지연

정책펀드 사업은 정책자금이 출자되더라도 민간자금이 매칭되어 자펀드가 결성되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자펀드 결성 전까지 재정출자액은 모펀드 내에서 장기간 유보되게 됨. 따라서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 재정투입과 실제 투자와의 시차가 발생하고, 적기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확대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이 중요함.

특히 자펀드 결성과 관련하여서는, 운용사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매년 11~12월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book closing) 시기에 자펀드 운용사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자펀드 결성 역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자펀드 운용사의 LP(Limited Partner) 유치가 용이하도록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운용사 선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자펀드의 조기 투자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기간(3~4년) 동안 적정한 투자대상을 탐색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위한 시일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펀드 투자 지연으로 인해 정부재정의 민간투자 유인효과(마중물 역할)가 감소하고, 모펀드에 유보된 미투자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자펀드의 조기 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부처별 개별 사업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자펀드 결성 지연 문제 및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모펀드 투자기간(2년) 내 조속히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결성시한 연장 시 제재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모펀드는 재정(후순위), 지방소멸대응기금(후순위), 산업은행(선순위)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됨.

금융위원회는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펀드를 선정하였다고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2025년 5월 기준 여수 프로젝트 펀드 1건에만 투자금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41)]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시한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소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단양・구미・여수・경주 4개 지역의 프로젝트 펀드에서 자펀드 결성시한을 계속 연장하였음.

41) 2025년 5월 현재 ①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680억원 규모) 및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876억원 규모), ③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규모), ④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7,716억원 규모), ⑤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1,300억원 규모) 등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음.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금융위원회)]

(2025. 5. 31. 기준)

지역	모펀드 약정총액	심사일	1차 연장기간	2차 연장기간	결성일 (계약체결 기준)	투자금액 집행액
단양	(1차) 113억원 (2차) 68억원	(1차) 2024.2.16. (2차) 2024.11.26.	2024.6.16. ~9.19. 2025.3.28.~6.27.	2024.9.19.~12.19. 2025.6.28.~9.29.	-	-
구미	(1차) 89억원 (2차) 89억원 (3차) 39억원	(1차) 2024.2.22. (2차) 2024.11.26. (3차) 2025.1.23.	2024.6.22.~9.24. 2025.3.28.~6.27. 2025.5.27.~8.25.	2024.9.24.~12.24. 2025.6.28.~9.29. 2025.8.26.~11.24.	-	-
여수	1,435억 5,000만원	2024.8.29.	2025.1.3.~4.2.	-	2025. 2.28.	2.5억원
경주	771억 5,700만원	2024.11.26.	2025.3.28.~6.27.	2025.6.28.~9.29.	-	-
서산	130억원	2024.12.24.	-	-	-	-

주 1) 자펀드 결성시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 심사 이후 내부결재 등 사유로 인하여 심사일과 선정통보일이 일부 상이
3) 단양 및 구미 프로젝트 펀드는 총사업비 조정, 일부 투자조건 변경 및 지자체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실시(단양 1회, 구미 2회)하여 결성시한이 신규로 부여됨
4) 여수와 경주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협의를 통해 여수는 1차례, 경주는 2차례 자펀드 결성시한을 연장함
5) 서산 프로젝트 펀드는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신규 운용사가 2025년 하반기 중 재신청 예정임
6) 투자금액 집행액은 자펀드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

이는 현재 모펀드 위탁운용사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계획 공고에 펀드 결성시한 내 미결성 페널티 규정이 자펀드 위탁운용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중 자펀드 결성 페널티 규정]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자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그러나,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펀드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민간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가 아니라 펀드 결성 지연사유별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 면제사유 역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규정만 마련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결성기한 내 자펀드 미결성 시 모펀드 운용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역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42)]

② 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의 투자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재정 투입 필요(금융위원회)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블라인드 자펀드의 결성이 지연되어 조기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프로젝트 자펀드의 민간자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가용 가능한 민간재원 및 투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투자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1~3차 펀드는 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이 전담 운용하였고, 4~6차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담 운용하고 있음.

2024년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블라인드 자펀사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는 6월 24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은 8월 8일에 이루어졌고, 블라인드 펀드의 조성은 12월 31일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자펀드 결성은 2025년 4월 30월에서야 모든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었음.[43)44)]

---

4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투자실적 홍보 등을 위해 명확한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사업설계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을 위해 준비가 완비되지 않은 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신청할 유인이 있음.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결성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신청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부족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임.

43) 자펀드 조성은 자펀드 운용사가 유한 책임투자자(LP) 등으로부터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하여 모펀드 운용사에 제출한 것을 의미하고, 자펀드 결성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등록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바로 투자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44) 구체적으로는 블라인드 펀드 중 루키리그 2개 자펀드는 2024년 11월, 12월에 결성이 완료되었으나, 소형펀드 3개 펀드는 각각 2025년 1월, 2월, 4월에 결성되었고, 중형펀드 1개 펀드는 2025년 3월에 결성이 완료되었음.

2023년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블라인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는 5월 2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은 6월 28일에 이루어졌고 블라인드 펀드의 결성은 6개월 후인 12월 27일에야 완료되었음.

이와 같이 자펀드 결성이 연말 또는 이듬해까지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자펀드 결성을 통한 조기투자 유인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제4차(2023년) 기업구조혁신펀드는 8개 자펀드 총 1조 1,190억원이 결성되었는데, 2025년 5월까지 3,668억원이 투자되고 7,522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은 상황이고, 제5차(2024년) 기업구조혁신펀드는 6개 자펀드 총 1조 2,862억원이 결성되었는데, 2025년 5월까지 6개 기업에 대해 1,855억원이 투자되고 1조 1,007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은 상황임.

[제4차(2023년)·제5차(2024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개, 억원, 2025. 5. 기준)

구분 (확정예산 회계연도 기준)	정부 출자액 (a)	정책금융기관 출자액 (b)	민간 출자액 (c)	자펀드 결성액 (a+b+c)	자펀드 결성 수	주목적 투자비율	2025년 5월 기준		미투자액 (a+b+c-d)	약정 상 자펀드 투자기간
							투자액 (d)	투자 건수		
제4차 (2023년)	-	5,000	6,190	11,190	8	블라인드 60% 프로젝트 100%	3,668	15	7,522	4~5년
제5차 (2024년)	500	4,500	7,862	12,862	6		1,855	6	11,007	4~5년

주) 자펀드 결성액과 관련하여, 블라인드펀드는 실제 모집액을 반영하였으나, 프로젝트펀드는 수시 제안접수 방식으로 최소 결성 목표금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제4차(2023년)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공고 이듬해인 2024년 8월·10월과 2025년 4월에 각각 1개의 프로젝트 펀드가 결성되었고,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2024년)는 공고 이듬해인 2025년 5월 현재 아직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2025년 5월 현재 두 펀드를 합쳐 6,341억원의 펀드 재원이 아직 투자되지 못한 상황임.

[제4차(2023년)·제5차(2024년) 기업구조혁신펀드 프로젝트 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2025. 5. 기준)

차수	프로젝트 펀드명	조성현황			결성연월	투자액	미투자 잔액	회수액 (모펀드)	주목적 투자비율
		모펀드	민간	합계					
제4차 (2023년)	A 펀드	120	120	240	2024.8.	240	-	-	사전적 구조조정
	B 펀드	220	682	902	2024.10.	902	-	-	사전적 구조조정
	C 펀드	250	767	1,017	2025.4.	1,017	-	-	사후적 구조조정
	미정	1,610	1,231	2,841[1)]	-	-	2,841	-	-
	프로젝트 펀드 소계	2,200	2,800	5,000	-	2,159	2,841	-	-
제5차 (2024년)	미정	1,650	1,850	3,500	-	-	3,500	-	-
	프로젝트 펀드 소계	1,650	1,850	3,500	-	-	3,500	-	-

주 1) 제4차 펀드의 모펀드 잔여재원 1,610억원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2,841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임
2) 제5차 펀드의 모펀드 잔여재원 1,650억원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3,5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기존 블라인드 및 프로젝트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신속 투자 집행을 유도하여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이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예산 500억원(전체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액 5,000억원 이상 예상)이 편성되었으므로,[45)] 기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사 펀드 사업 추진 시 투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투자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콘텐츠 전략펀드 사업의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필요(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5)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일정(안)

2025년 3~4분기	■ 재정·정책 모펀드 정관 체결 및 설립(~9월)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선정공고 및 심사(~12월)
	■ 자펀드(프로젝트펀드) 수시 출자 제안 접수 및 심사(10월~)
2026년~	■ 선정 자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거쳐 투자집행 개시(2026년~)

자료: 금융위원회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여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5년간 정부 출자 1,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9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음.

이를 위해 1차년도인 2024년에는 정부 출자 8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원)과 민간 출자 1,200억원으로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자펀드 조성 단계에서 4,000억원 규모의 민간 출자를 모집하여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민간 참여기관들과의 출자 여부 및 규모, 참여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모펀드 조성이 지연되었고, 민간 출자 규모 또한 목표의 절반 수준인 600억원만 모집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감소한 1,4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다음과 같이 조성되었으며 자펀드 조성 목표를 당초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하였음.

[2024년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모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펀드 결성일	결성총액(A)	출자자 구성		
			기관명	약정금액(B)	약정비율(B/A)
재정 펀드	'24.11.28.	800	문화체육관광부	450	56.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	43.75
비재정 펀드	'25.3.31.	600	㈜씨제이이엔엠	200	33.33
			메가박스중앙㈜	30	5.00
			에스엘엘중앙㈜	70	11.67
			중소기업은행	100	16.67
			한국방송공사	100	16.67
			한국산업은행	100	16.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실상 2025년 3월말 모펀드 조성이 완료되면서 2025년 6월 현재 자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46] 이처럼 모펀드 및 자펀드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6) 2025년 2월부터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였는데, 블라인드 펀드는 4~6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후 자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 프로젝트 펀드는 수시모집을 진행하는 중이나 6월 기준 아직 자펀드 운용사가 선정되지 않고 있음.

④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의 자펀드 결성 지연 문제(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연내 투자소진율이 부진하고 문화계정 내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하고 있는 금액(투자여력)이 상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2024년 예산 2,700억원을 모두 한국벤처투자로 집행하여 집행률 100%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4년 민간출자를 포함한 총 결성규모(목표) 7,119억원 대비 투자액은 481억원에 불과하여 연내 투자소진율이 6.8%로 저조하고, 연내 결성된 자펀드의 총 결성규모 5,717억원 기준으로도 투자소진율이 8.4%로 부진함.

이는 주로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것으로, 2024년 당초 계획한 16개 자펀드 중 12개의 자펀드만이 연내 결성되었고, 그 중 4개가 4/4분기 이후 결성됨에 따라 3개 자펀드는 연내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024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자펀드 연번	분야	펀드 결성일	최초 투자일	결성규모(목표)		투자금액 (B)	투자 소진율 (B/A)
				정부 출자금	총액(A) (민간출자 포함)		
1	IP	'24.07.10.	'24.08.07.	300	510	71	13.9
2	IP	'24.09.02.	'24.12.20.	300	600	20	3.3
3	IP	'24.09.11.	'24.10.30.	300	500	42	8.3
4	IP	'24.08.07.	'24.10.04	300	501	60	11.9
5	M&A-세컨더리	'24.05.30.	'24.10.04	200	1000	152	15.2
6	문화일반	'24.10.30.	'25.03.19.	200	400	-	-
7	수출	'24.07.26.	'24.08.27.	225	384	58	15.1
8	수출	'24.11.18.	'24.12.17	225	375	29	7.7
9	수출	'24.11.26.	-	225	375	-	-
10	수출	'24.10.25.	'25.03.18.	225	400	-	-
11	신기술	'24.07.26.	'24.10.04.	200	334	30	9.0
12	신기술	'24.07.26.	'24.09.13.	200	338	20	5.9
(연내 결성 자펀드) 소계 (C)				**2,900**	**5,717**	**481**	**8.4**
13	M&A-세컨더리	'25.02.24.	'25.04.30.	200	334	-	-
14	M&A-세컨더리	결성지연	-	200	334	-	-
15	문화일반	'25.02.21.	'25.04.10.	200	400	-	-
16	신기술	'25.06.05.	-	200	334	-	-
(연내 미결성 자펀드) 소계 (D)				**800**	**1,402**	**-**	**-**
합계 (C+D)				**3,700**	**7,119**	**481**	**6.8**

주) 투자금액 및 투자소진율은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2025년 3월말 기준 문화계정에는 약 9,000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2025년 출자액의 결성목표액까지 더할 경우 남아 있는 투자여력은 1조원을 초과하게 됨.[47]

[2021~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문화계정 결성규모 및 투자여력 현황]

(단위: 억원, %)

계정	출자연도	정부출자	민간	결성총액	투자집행액	투자소진율	투자여력
문화	2021	1,540	1,341	2,881	2,156	74.8	437
	2022	1,741	947	2,688	1,924	71.6	495
	2023	2,175	2,311	4,486	1,700	37.9	2,337
	2024	3,700	3,493	7,193	798	11.1	5,676
	계	9,156	8,092	17,248	6,578	38.1	8,945

주 1) 2025년 3월말 기준임
2) 투자여력은 자펀드 결성규모(2025년은 결성목표액)에서 旣 투자액과 펀드 운용비(운용사 보수 등으로 청산 시 확정되며, 통상 자펀드 결성액의 10% 이상 규모임. 이 표에서는 10%로 가정)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펀드 출자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펀드 결성 지연 등으로 인하여 투자가 늦어지는 경우, 특히 출자연도에 전혀 투자되지 못한 자펀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인 유동성의 적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⑤ 수산모태펀드 사업의 투자활성화 노력 필요(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는 자펀드 중 일부가 아직 투자에 집행되지 않고 투자재원이 자펀드 단계에서 잔존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4월까지 조성되어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수산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은 451억 8,200만원으로 투자여력이 크고, 특히 2021년에 조성되어 투자잔여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45억 9,100만원,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109억 9,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47)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5년 본예산 2,050억원에 재출자액 95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200억원 규모의 12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919억원 규모의 3개 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게 됨에 따라, 총 6,119억원 규모의 15개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임.

[결성되어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자펀드 투자 현황('25년 4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조성된 펀드 규모(A)	25,500	19,600	13,340	35,353	-	93,793
투자된 금액(B)	19,464	7,900	4,900	10,998	-	43,262
잔존 금액(C=A-B)	6,036	11,700	8,440	24,355	-	50,531
운용비용(D)[주1)]	1,445	709	43	3,152	-	5,349
투자잔여기간(년)[주2)]	0.38	1.24	2.45	3.29	-	7.36
투자여력(C-D)	4,591	10,991	8,397	21,203	-	45,182

주 1) 2024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 관리보수, 수탁보수, 기타 지급수수료 등
2) 평균투자 잔여기간으로 계산함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2024년 결성된 자펀드 중 하나는 2024년 9월 결성되었음에도 2025년 5월 기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24년 수산모태펀드 사업 자펀드 투자 현황('25.5월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펀드명	결성 일자	존속 기간	결성규모			투자 금액	미투자액
				정부 출자금	민간	총액		
수산 모태 펀드	미래수산식품투자조합	'24.7.2.	8년	120	82.03	202.03	110	92.03
	푸른NVC2024 수산세컨더리투자조합	'24.9.23.	8년	90	61.5	151.5	-	151.5

자료: 해양수산부

미투자된 재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펀드 조성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자펀드 결성 이후 실제 민간투자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마) 청산시점 지연 최소화 등 펀드 운용방식의 개선 필요

①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투자처 재선정으로 인한 청산시점 지연 최소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처 재선정으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투입된 국고금이 운용기한 내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초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가능한 투자처를 미리 검토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정부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 이전 조성된 펀드는 펀드결성 시점부터 10년간, 2021년 이후 조성된 펀드는 25년간 펀드를 운용하고, 이후 청산되면 출자금 및 배당이 국고로 귀속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펀드 운용기간이 도래한 2011~2014년 펀드 중 2012년 및 2013년 펀드는 청산을 완료하여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조치하였으나, 2011년 펀드는 2026년으로 청산이 지연되었고,[48] 2014년 펀드는 '공사' 단계에 있어 청산이 2029년으로 지연되었음.

[청산 시점이 도래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별 진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산업단지	사업내용(투자대상)	펀드결성액			청산계획	청산여부
			총	정부	민간		
2011	반월	호텔 & 오피스텔	606	150	456	2021년	2026년 청산예정
2012	시화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	394	160	234	2022년	청산
2013	창원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428	100	328	2023년	청산
2014	구미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888	130	758	2024년	2029년 청산예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청산시점이 지연된 2014년 구미산업단지의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은 최초 선정하였던 사업자의 사업성 악화로 투자계획이 무산되고 재선정함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투자취소 사례는 2015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총 41개 사업에서 정부 투자액(예정) 5,966억원이 투자대상 선정 후 사업성 악화·사업지연 및 부지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였음.[49]

48) 노후산단 내 호텔건립사업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매출 감소와 매수자 확보 불가로 펀드 만기 연장

[2015~2024년 투자대상 선정 후 취소된 사례]

(단위: 개, 억원)

전체 투자사업 수	정부 투자액(예정)	선정시점과 취소시점 사이의 기간
41	5,966	평균 12개월(1개월~27개월)

주) 2025년 5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들 투자대상은 선정된 이후 평균 12개월 이후에 취소되었고 대체 투자처를 찾는데 소요된 기간과 펀드 운용기간(10년)을 고려한다면 일부 사업은 2014년의 사례와 같이 청산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50]

그러나 펀드 결성액에 투입된 국고금은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마중물로서, 정해진 펀드운용기간을 거쳐 수익과 함께 청산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고 및 민간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금 회수지연에 따라 신규 투자여력이 축소되는 등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취소 및 대체 투자처 모색으로 펀드자금에 투입된 국고금이 운용기간 내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초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가능한 투자처를 미리 검토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②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자펀드 청산 지연 문제(특허청)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투자기업의 경영악화 및 회수시장 경직으로 인해 존속기간이 만료된 16개 자펀드 중 2025년 5월 기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가 3개에 불과하므로, 특허청은 청산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펀드를 신속히 청산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는 통상 7~8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운용사는 자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됨.

---

49) 이는 투자가 집행되기 이전에 사업성 악화 등으로 취소된 것으로, 펀드 결성액이 실제로 집행되기 이전에 취소된 것을 의미함.

50)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취소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금의 대체투자처는 추가 공고를 통해 17건의 투자처(정부투자액 총 3,450억원)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2025년 5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취소된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투자액이 어떠한 대체투자처에 투자가 완료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서 차이(취소된 사업 총 정부투자액은 5,966억원)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총회 개최가 원칙이나, 90일 이내로 잔여자산 처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기간 연장이 가능함.[51]

그런데 2014~2024년 결성된 자펀드 중 2025년 5월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가 16개이고, 이 중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3개에 불과함.[52]

[2014~2024년 결성된 특허계정 자펀드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의 청산 여부]

조합명(펀드명)	결성일	만료일	청산 여부
알○○○○조합	2014-02-28	2022-02-27	O
I○○○○조합	2014-07-11	2022-07-10	X
I○○○○조합	2014-10-31	2022-10-30	O
P○○○○조합	2014-12-05	2022-12-04	X
K○○○○조합	2015-02-10	2023-02-09	X
서○○○○조합	2015-07-06	2023-07-05	O
B○○○○조합	2015-10-02	2023-10-01	X
I○○○○조합	2015-11-13	2023-11-12	X
아○○○○조합	2016-04-25	2024-04-24	X
M○○○○조합	2016-09-30	2024-09-29	X
알○○○○조합	2016-06-21	2024-06-20	X
I○○○○조합	2016-06-23	2024-06-22	X
I○○○○조합	2016-09-09	2024-09-08	X
I○○○○조합	2016-10-27	2024-10-26	X
B○○○○조합	2017-10-17	2024-10-16	X
2○○○○조합	2019-11-15	2024-11-14	X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잔여자산 처분이 미완료되어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기간을 연장하였고, 투자기업의 경영악화 및 회수시장 경직 등의 사유로 잔여자산을 처분하는 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이처럼 청산이 지연될 경우 정책 및 시장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민간투자금 유치 여건이 악화되므로, 정부투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성급한 청산은 헐값 회수 및 저조한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특허청은 수익성이 더욱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펀드에 대해서는 청산을 신속히

51)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내용

참고	자펀드 규약 중 청산 관련 공통 내용
(중략) ④ 청산인(운용사)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참고로,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2006년 출범 이후 2024년까지 총 28개의 자펀드가 청산되었음.

실시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자펀드의 경우에도 청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투자처를 보다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③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의 회수된 지원액 국고 반납 필요(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출자 후 회수된 지원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추후 재투자에 활용할 예정인데, 이러한 회수액의 재투자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회수액을 조속히 국고에 반납하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 필요 시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선박 건조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용선료의 형태로 회수되고 있음.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2020년부터 용선료가 상환되기 시작하여 2024년말 기준 총 243억 1,700만원이 회수되었고,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이 회수될 예정이며,[53]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2023년부터 용선료가 상환되기 시작하여 2024년말 기준 4억 8,200만원이 회수되었고,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20~30억원이 회수될 예정임.[54]

53)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연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합계
2020	800	-	-	-	-	-	**800**
2021	800	-	-	-	-	-	**800**
2022	800	1,600	1,200	2,000	-	-	**5,600**
2023	800	1,600	1,600	2,000	1,200	-	**7,200**
2024	2,594	1,600	1,600	2,000	1,600	523	**9,917**
2025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6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7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8	2,594	1,600	1,600	2,000	1,600	1,047	**10,441**
2029	2,594	2,042	1,784	2,418	1,600	1,047	**11,485**
2030	2,594	2,484	2,337	2,837	1,600	1,047	**12,899**
2031	2,594	2,484	2,337	2,837	1,600	1,047	**12,899**
2032	649	2,484	2,337	2,837	2,835	1,047	**12,189**
2033	-	2,484	2,337	2,837	3,246	1,047	**11,951**
2034	-	621	1,168	709	3,246	1,047	**6,791**
2035	-	-	-	-	1,623	1,607	**3,230**
2036	-	-	-	-	-	1,205	**1,205**

자료: 해양수산부

회수된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추후 회수액을 재투자에 활용할 계획임.

그런데 두 펀드 모두 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있으나 펀드 회수액(용선료)의 재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55] 사업 지침에만 회수액의 재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규 출자 없이 회수된 지원액을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행상 소관 부처의 자율성이 큰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상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54) 원양어선 안전펀드 상환일정

(단위: 백만원)

년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합계
2023	-	57.66	-	-	-	-	-	**57.66**
2024	194.30	230.63	-	-	-	-	-	**424.93**
2025	419.09	488.07	500.00	500.00	500.00	-	-	**2,407.16**
2026	432.34	488.07	500.00	500.00	500.00	173.47	-	**2,593.88**
2027	446.0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42	**3,824.38**
2028	460.1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38.48**
2029	474.76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53.08**
2030	489.84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68.16**
2031	505.4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83.75**
2032	521.52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99.84**
2033	538.15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16.47**
2034	555.33	488.07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933.65**
2035	573.07	366.05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3,829.37**
2036	-	-	500.00	500.00	500.00	693.87	696.38	**2,890.25**
2037	-	-	-	-	-	693.87	696.38	**1,390.25**
2038	-	-	-	-	-	520.40	696.38	**1,216.78**

자료: 해양수산부

55)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두 펀드 모두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수액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경우 펀드의 청산 시기 및 펀드 출자액의 국고 회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향후 출자 자금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회수액을 국고에 반납하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56)]

④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투자 집행현황 점검 관련 규정 마련 필요(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2,000억원씩 민간 위탁운용사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묻기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민간 모펀드·자펀드 위탁운용사의 투자 집행현황을 점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모펀드는 재정(후순위), 지방소멸대응기금(후순위), 산업은행(선순위)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됨.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모펀드 출자기관(정부, 산업은행)은 관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모펀드 내에서 정부자금은 산업은행 출자보다 후순위 출자되고, ② 자펀드 내에서 민간투자자 출자액 일부(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며, ③ PF 대출의 경우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자금의 위험부담 역할이 가중되어 있는 반면에,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신탁사, 대주단, 보증기관 등 민간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자금관리가 이루어

56)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펀드 형식의 지원은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수요변화 등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나, 지적사항의 취지에 공감하여 향후 펀드의 존속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이 경우 존속기간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30년으로 하되,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투자기간 도과 후 신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 신규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모태펀드는 민간의 과소투자 분야 또는 집중적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와는 그 성격이 상이함.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가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회수된 지원액은 국고에 납입하고, 연차별 지원 계획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반영하여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보고 등의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임.[57]

그러나 이 사업은 매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1,000억원 출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모펀드 위탁운용사가 출연받은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펀드를 제대로 선정하였는지, 선정한 프로젝트의 자펀드 결성이 지연된 경우 자펀드 선정과정에서 미연에 점검할 수 있었던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프로젝트 펀드의 결성 이후에도 해당 SOC 프로젝트가 계획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각각의 과정마다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재원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및 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정부재정 출자분 및 산업은행의 자체재원 출자를 관리·감독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담당하는 등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주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모펀드 위탁운용사 역시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로서 정부자금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묻기 다소 어려운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민간 모펀드·자펀드 위탁운용사의 투자 집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운용사 보수 지급구조 개선 필요

첫째, 정책펀드 사업은 모펀드 결성액에서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모펀드 운용기관 간 성과보수 지급 여부 및 성과보수·관리보수 지급기준이 정책펀드마다 상이하며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체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 사업은 모펀드 결성액 중 일부를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있음.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모펀드 결성액 중 자펀드로 출자 가능한 재원이 감소하므로, 보수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각각 자체적으로 운용지침 및 규약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금

57)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모펀드 출자기관)는 일상적인 명령, 지시, 요청 및 직접적인 자금관리 등 펀드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함. 그러나 사전적인 명령, 지시, 요청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자금 운용 및 투자 실적에 대해 주기적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융위원회의 펀드는 모펀드 운용사 공고문, 신탁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펀드사업별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현황을 보면 지급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정책펀드별 모펀드 운용사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규정]

<table>
<tr><th>정책펀드</th><th>관리보수</th><th>성과보수</th></tr>
<tr><td>중소기업 모태펀드</td><td>
<table>
<tr><th>납입출자금 규모</th><th>연율</th></tr>
<tr><td>3,000억 이하 분</td><td>1%</td></tr>
<tr><td>3,000억 초과 6,000억 이하 분</td><td>0.8%</td></tr>
<tr><td>6,000억 초과 1조 이하 분</td><td>0.7%</td></tr>
<tr><td>1조원 초과 1.5조원 이하 분</td><td>0.6%</td></tr>
<tr><td>1.5조원 초과 2조원 이하 분</td><td>0.55%</td></tr>
<tr><td>2조원 초과 분*</td><td>0.4%</td></tr>
</table>
* 2조원 초과 시 5호에 의한 금액에 2조원 초과분에 대해 0.4% 곱한 금액을 합산
</td><td>○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률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기준수익률 초과액)의 일부를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table>
<tr><th>기준수익률 초과액</th><th>성과보수액</th></tr>
<tr><td>300억원 이하</td><td>기준수익률 초과액의 10%</td></tr>
<tr><td>3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td><td>30억원 + (300억원 초과액의 7%)</td></tr>
<tr><td>600억원 초과</td><td>51억원 + (600억원 초과액의 5%)</td></tr>
</table>
</td></tr>
<tr><td>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td><td>
<table>
<tr><th>납입출자금 규모</th><th>연율</th></tr>
<tr><td>3,000억원 이하 분</td><td>1%</td></tr>
<tr><td>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분</td><td>0.6%</td></tr>
<tr><td>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분</td><td>0.4%</td></tr>
</table>
* 1조원 초과시 1조 × 0.7% 금액만 지급
</td><td>○ 매년 자펀드의 청산에 따라 배분받은 수익의 합이 당해연도 청산 자펀드에 대해 모태조합의 기준수익률(5%)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 이내를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td></tr>
<tr><td>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td><td>
<table>
<tr><th>구분</th><th>보수율</th></tr>
<tr><td>최초 2년</td><td>매입약정총액×(연 0.29% ~ 0.3%)</td></tr>
<tr><td>2년 이후</td><td>(순자산총액 - 미투자금액)×(연 0.29% ~ 0.3%)</td></tr>
</table>
</td><td>없음</td></tr>
<tr><td>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td><td>
<table>
<tr><th>보수율</th></tr>
<tr><td>(순자산총액-미투자자산)×보수율*
* '(순자산총액-미투자자산)' 규모에 따라 보수율 차등 적용, (1,500억 이하) 연 0.25%, (1,500억 초과) 연 0.15%
* 단, 설정일로부터 2년간 MAX[2억원, 상기 운용보수] 조건으로 지급</td></tr>
</table>
</td><td>없음</td></tr>
<tr><td>금융위원회 기업구조 혁신펀드</td><td>
<table>
<tr><th>구분</th><th>보수율</th></tr>
<tr><td>설정 후 ~ 6년</td><td>모펀드 약정총액×연 0.2%</td></tr>
<tr><td>7년 이후</td><td>(순자산총액 - 미투자금액)×연 0.2%</td></tr>
</table>
</td><td>펀드내부수익률(IRR)이 연 6%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td></tr>
<tr><td>문체·과기부 콘텐츠 전략펀드</td><td>투자 총액의 0.393%</td><td>없음</td></tr>
<tr><td>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td><td>
<table>
<tr><th>구분</th><th>보수율</th></tr>
<tr><td>매입약정기간</td><td>매입약정총액의 30bp/년</td></tr>
<tr><td>매입약정기간 이후</td><td>매입약정총액의 25bp/년</td></tr>
</table>
</td><td>전년도 운용성과에 대한 성과평가결과(5등급 체계)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 매우 우수: +3bp, 우수: +1bp, 양호: 증감 없음, 부족: -1bp, 매우 부족: -3bp</td></tr>
</table>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성과보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펀드·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문체부·과기부의 콘텐츠 전략펀드는 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성과보수를 지급

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자체 운용지침을 근거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펀드내부수익률(IRR)이 연 6%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환경부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전년도 운용성과에 대한 성과평가결과(5등급 체계)에 따라 관리보수를 감액하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일관된 기준이 미비한 상황임.

다음으로 관리보수 지급 기준을 보면,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총 납입출자금에 보수율을 곱하여 관리보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납입출자금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분에 대한 보수율이 중소기업모태펀드는 0.8%,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0.6%로 나타나는 등 납입출자금의 구간 및 금액구간별 보수율이 상이함.

한편,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펀드·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2년 또는 6년을 기준으로 관리보수 지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면서,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순자산총액-미투자자산'에 보수율을 곱하여 관리보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문체부·과기부의 콘텐츠 전략펀드 및 환경부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투자 총액(매입약정총액)에 보수율을 곱하여 관리보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각 펀드별 보수율도 상이하여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관리보수의 상한구간을 납입출자금 1조원 이하로 정하고 1조원을 초과할 경우 1조원×0.7%의 금액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모태펀드는 관리보수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2조원 초과분에 대해 0.4%의 보수율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경우 2020년 대비 2024년에 운용 자펀드 규모가 69.4% 증가한 것에 대응하여 관리보수 지급액이 24.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모태펀드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운용 자펀드 규모가 52.5% 증가한 것에 대응하여 관리보수 지급액이 67.7% 증가하여 관리보수 지급액 증가 추이가 과다한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모태펀드의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액]

(단위: 억원)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B-A)/A]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 자펀드 규모(연말기준)	230,739	267,521	307,753	325,299	351,984	52.5%
	관리보수 지급액	248	306	350	379	416	67.7%
	성과보수 지급액	-	72	9	100	39	순증

(단위: 억원)

구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B-A)/A]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운용 자펀드 규모(연말기준)	13,448	15,381	18,108	20,250	22,776	69.4%
	관리보수 지급액	40.5	42.9	45.7	48.3	50.3	24.2%
	성과보수 지급액	25.5	-	-		-	-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펀드의 관리보수는 펀드 규모에 정비례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운용규모가 커질수록 관리보수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는데,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관리보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납입출자금 금액구간이 실제 운용규모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 설계 시 모펀드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으나,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모펀드 결성액 중 자펀드로 출자 가능한 재원이 감소한다는 점, 현행 모펀드 운용기관의 성과보수 지급 여부 및 성과보수·관리보수 지급기준이 정책펀드마다 상이하고 일관된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체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모태펀드 자펀드 운영사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 기준을 정책 일관성 확보, 투자 유인 및 성과 책임 측면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초기에도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성과 중심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책펀드 사업은 모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 외에 자펀드 운용기관에 대해서도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자펀드 운용기관에 대한 보수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자펀드 결성액 중 실제로 투자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므로, 자펀드 보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서 2024년 자펀드가 결성된 계정별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관리보수의 경우에도 조합 결성 후 3년 이후에 대해서는 투자잔액(분기말 잔액)에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관리보수 중 조합 결성 후 3년 동안에 대해 산출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 중진・청년・지방 등 12개 계정에서는 조합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곱하여 관리보수를 산출하는 반면, 스포츠・국토교통혁신・중진(복지)・교육 4개 계정의 경우에는 조합약정총액의 1%를 보장하면서 투자잔액(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보수를 산출하여 지급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경우, 2024년에는 조합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곱하여 관리보수를 산출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결성 후 3년 이내 투자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 스포츠・국토교통혁신・중진(복지)・교육 4개 계정과 동일하게 조합약정총액의 1%를 보장하면서 투자잔액(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바 있음.

[2024년 자펀드가 결성된 모태펀드 계정별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 기준]

구분	자펀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보수〉** **① “중진, 청년, 지방, 혁신모험, 소재부품장비, 문화, 영화, 관광, 과기정통, 특허, 환경, 해양” 계정의 경우,**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② “스포츠, 국토교통혁신, 중진(복지), 교육” 계정의 경우,**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1%)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의 경우, 2.1% 이하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관리보수율 최대 0.5%p 하향 및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농림수산 식품 모태펀드	**〈관리보수〉**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 **조합약정총액 × 적용요율** 〈참고〉 2023년의 경우에는 결성 후 3년 이내 투자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 : (조합약정총액 × 연 1%)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적용요율)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적용요율

구분	자펀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미만: 연 3.0%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연 2.5%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 2.3% 이하 - 조합 약정총액이 600억원 초과: 연 2.1% 이하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관리보수는 통상 펀드 결성 초기에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조합약정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벤처투자 촉진 및 신속한 투자 유도를 위해 펀드 결성 초기에도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관리보수를 지급하도록 개정 기준을 한시 적용한 바 있고, 일부 부처는 지속 적용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경기불황 및 금리 상승 등 운용사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기존 관리보수 체계로 환원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유사한 조건에서 운용되는 모태펀드 자펀드 간에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될 경우, 운용기관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민간 출자금 모집 시 특정 계정에 대한 선호 또는 회피 등 왜곡된 유인을 초래할 수도 있음.

또한 조합약정총액의 1%를 보장하면서 투자잔액 기준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를 집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로, 성과 기반 운용을 유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책 일관성 확보, 투자 유인 및 성과 책임 측면에서 모태펀드 자펀드 운영사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 기준을 펀드 결성 초기에도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중소기업모태펀드에서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연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사가 관리보수를 자율적으로 낮추는 대신 성과보수를 상향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운용사의 성과 중심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최근 3년간 결성된 자조합 295개 중 16개(5.4%)만이 관리보수율 하향 및 성과보수율 상향 연동 보수체계를 선택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책금융 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가. 융자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농지사업(융자)	1,201,500	1,201,500	농지은행 사업 확대로 인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 문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융자)	233,700	233,700	
	농지연금(융자)	262,561	262,561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광물자원 개발특별융자 (해외광물 자원개발)	1,654	-	융자수요 과다추계로 인한 집행 부진, 융자수요가 없어 불용하여야 할 예산을 다른 내역사업에 추가 집행
	해외광물자원 개발특별융자 (국내외 유전개발)	38,163	39,817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100,000	100,000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통상적 대출지원, 동일 기업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의 중복 지원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223,600	223,600	예산안에 미편성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융자취급수수료 수취 부적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융자)	3,710,000	3,559,149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 부진,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 문제
	긴급경영안정 자금(융자)	235,000	235,000	대규모 피해지원 시 대출금리의 임의적 산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융자)	45,492	25,055	원격재생형 훈련 융자실적 미관리로 인한 융자수요 추계 부적정, 연도 중 융자한도의 연례적 변경
	생활안정자금 (융자)	118,462	118,23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정 직종에 대한 융자지원 편중

나. 이차보전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이차보전)	163,730 (5,850)	116,267 (3,916)	대출금리 책정의 적정성 점검 필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63,730	116,267	중장기 재정소요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융자·이차보전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광산업 융자지원	541,733	538,086	
	관광산업 융자지원	541,733	538,086	융자지원 대비 이차보전 운영지원 집행실적 부진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	592,490	403,661	연례적인 예산 범위를 초과한 이차보전지원금 집행 부적정
				중장기 재정소요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융자·이차보전 사업계획 수립 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 (이차보전)	13,000	6,575	높은 보전금리 설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필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이차보전금)	294,575 (2,575)	292,000 (-)	연례적인 이차보전금 예산 전액 불용
중소벤처 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2,047,800 (12,000)	2,039,970 (4,170)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수요 과다예측으로 인한 불용 문제
환경부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	24,044 (7,680)	24,043 (6,131)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편중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다. 보증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완성보증계정 출연)	25,000	25,000	완성보증계정의 대위변제 증가 대비 구상권 회수 부진
고용 노동부	신용보증 대위변제	30,195	30,195	신용보증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 부진 타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기금별 재원 분담 방안 마련 필요
산업 통상 자원부	원전수출보증	25,000	25,000	사업부진으로 인한 적정 출연금 편성 문제 특정 목적의 출연금의 공공기관 자본금 출자 후 출연금의 환수 문제
중소 벤처 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스케일업금융)	100,000	100,000	스케일업 금융 부실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지역신용보증 재단재보증	125,354	125,354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부실 우려
	기술보증대위 변제	1,330,195	1,329,686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 부진
금융 위원회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신용보증기금)	397,104	133,511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직접발행 규모 확대 필요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	67,540	65,980	보증연계투자 성과 및 실적 부진
	대위변제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870,000	857,857	주택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의 연례적 과소추계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증가 PF 특례보증상품을 통한 PF 부실 연착륙 유도
	사업수수료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10,975	9,65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수수료의 과다추계

라. 투자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	-	소규모 펀드조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어 펀드 추진을 중단하고 20억원 전액 불용
산업통상 자원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산업부)	33,844	33,844	국제감축사업이 초기 단계로 투자 대상 사업이 없고 펀드 규모가 작아 운용사 공모 지원이 저조함에 따라, 펀드 추진을 중단하고 30억원 전액 불용
	산업단지 환경조성 (산단환경개선펀드)	397,197 (186,770)	397,197 (186,770)	투자처 재선정으로 인한 청산시점 지연 최소화 필요
문화체육 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340,000 (270,000)	340,000 (270,000)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연내 투자소진율 부진
	K-콘텐츠 펀드 출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340,000 (45,000)	340,000 (45,000)	콘텐츠 전략펀드 사업의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필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35,000	35,000	
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 출자	19,000	19,000	자펀드 결성 후 투자활성화 노력 필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연안어선 현대화 펀드)	32,688 (20,000)	29,724 (20,000)	회수된 지원액 국고 반납 필요
	원양어선 안전관리	7,500	7,500	
특허청	모태조합 출자	11,400	11,400	자펀드 청산 지연 문제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자펀드 결성 지연 문제 및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투자 집행현황 점검 관련 규정 마련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50,000	블라인드 펀드 투자 및 프로젝트 펀드 결성 독려 필요

8. 빈집정비 사업

가. 개 요

(1) 개념 및 현황

빈집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의미하나, 빈집 관련 특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거주 또는 사용 여부 확인 이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되며,[1]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이 파악되고 있음.

통계적으로는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이사·미분양 등의 일시적인 미거주 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현황이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빈집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될 경우,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화재·범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의 침체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 및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빈집 규모는 조사주체 및 시점에 따라 상이한데, 2024년 9월 출범한 정부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정확한 빈집현황 데이터를 위해 전국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약 13만 4천호에 달하고, 특히 전남(2만호), 전북(1.8만호), 경남(1.6만호) 등 농어촌 지방에 빈집이 집중되어 있음.

[빈집 조사 주체 및 조사시점에 따른 현황 비교]

조사명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행정조사
빈집수	159만 9,086호	13만 4,009호
조사 주체	통계청	정부합동 빈집정비지원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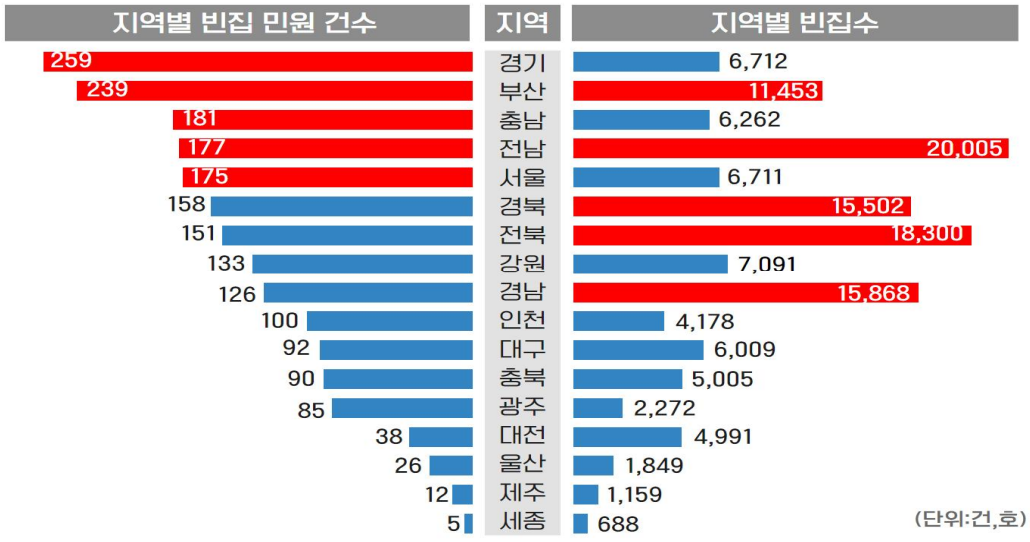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조사명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행정조사
조사 시점	2024년	2024년 10월~12월
특징	연도별 추이 파악 가능	지역별 최신 현황 파악 가능
참고	일시적 미거주 포함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빈집

주) 빈집실태조사는 지자체장이 5년 주기로 실시해 지자체별로 조사 시기가 상이함. 해당 수치는 빈집실태 조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2023년 6월 이후 조사된 120여개 시·군·구 결과만 반영된 결과임
자료: 빈집 관련 민원 분석(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4.) 및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누리집

또한 전국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2]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빈집 문제가 농어촌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2024년 지역별 빈집수 및 빈집 민원 건수 현황]



빈집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소유권 문제로 인한 방치 및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도 있으나, 파산·세금체납 및 수리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요인과 재개발·재건축, 주요 기반시설의 이전 등 지역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빈집」 관련 민원 분석(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4.)

[빈집 발생 원인]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적 요인
- 소유권 문제로 인한 방치 - 임차인과의 갈등	- 경제적 어려움(파산, 세금체납, 수리비 부담) - 부동산 거래 중단 해당	- 재개발·재건축 기대 - 주요 기반시설의 이전 - 사업지역 쇠퇴

자료: 빈집 관련 민원 분석(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4.) 및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누리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 관리·정비사업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목적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 향상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
적용 지역	**도시 전역(농어촌 포함)**	**농어촌 및 준농어촌**[3]
최근 개정사항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2021년)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등 빈집정비 근거 마련(2020년)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2024년)
공통사항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정비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빈집정비사업 등 **빈집 정비관련 주요내용과 시행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공통적으로 명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2024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및 정비사업 규모를 검토해보면, 지역별로 빈집 수 및 사업규모와 정비율(%) 간의 편차는 있으나 전국 빈집은 13만 4,009호, 빈집정비사업규모는 8,986호로써 정비율(%)은 5.2%에 불과함.

[2024년 기준 시도별 빈집 및 정비사업 규모]

(단위: 호, %)

지자체	2024년 기준 빈집	2024년 기준 사업 규모	2024년 정비율
서울특별시	6,711	5	0.07
부산광역시	11,471	97	0.85
인천광역시	4,178	75	1.80

3) 준농어촌: 광역시 자치구의 구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단위: 호, %)

지자체	2024년 기준 빈집	2024년 기준 사업 규모	2024년 정비율
대구광역시	6,009	72	1.20
대전광역시	4,991	7	0.14
광주광역시	2,272	45	1.98
울산광역시	1,849	9	0.49
세종특별자치시	688	74	10.76
경기도	6,714	258	3.84
강원특별자치도	7,091	393	5.54
충청북도	5,005	233	4.66
충청남도	6,268	1,105	17.63
전북특별자치도	18,300	1,093	5.97
전라남도	20,006	2,003	10.01
경상북도	15,502	976	6.30
경상남도	15,796	484	3.06
제주특별자치도	1,158	33	2.85
합 계	**134,009**	**8,986**	**5.20**

주) 정비실적은 실제 지자체 사업지원 규모, 민간의 자발적 정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방치된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화재·범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의 침체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2025년 5월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빈집정비를 위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이 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이 담겼으며,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됨.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4대 전략]

4대 전략	세부 내용
①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법령상 국가 및 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② 빈집 정비 및 활용, 안전확보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산
③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시군구 내 도시 및 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
④ 민간의 자발적인 정비 및 활용 유도	빈집 철거 후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5.1.),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총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정안전부 내 빈집정비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2) 국가 및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사업 현황 및 성과

정부는 2025년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법령상 국가 및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음.

그간 빈집의 관리책임이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 하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임.

정비안을 살펴보면, 무허가를 포함한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정비 이행계획은 매년,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실태조사는 매년 수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수시적으로 해당 사안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도시 및 농어촌 간 빈집 기준 정비안]

구분	현행		정비안	
	도시 (국토교통부)	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도시	농어촌
빈집 정의	주택(무허가미포함)	주택, 건축물	주택(무허가포함)	
이행계획 수립	해당없음	매년	매년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5년) 및 필요시	정비계획(5년), 이행계획(1년) 수립 시	정비계획(5년), 이행계획(1년) 수립 시	
시스템 운영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5.1.),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또한 2025년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하여 빈집의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전국의 빈집 현황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플랫폼으로 빈집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빈집 주소지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역 내 빈집의 발생과 확산, 활용방안 및 안전도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정비계획 수립에도 해당 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임.

[빈집 발생·확산 예측을 위한 연계 데이터(안)]

구분	주요 연계 데이터(안)
빈집 발생 예측	연간 수도 단수상태 지속&연간 전기사용량 120Kwh 이하인 주택 + 거주자 정보 + 태양광 발전정보 등
빈집 확산 예측	빈집 + 거주자 정보 + 생활인구 + 지역내 출생·전출입자 수 등
빈집 활용 예측	빈집 + 생활·교통·산업인프라 정보 + 용도지역 정보 등
빈집 위험도 분석	빈집 + 재해위험정보 + 지반정보 + 기상정보 등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5.1.),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세부사업 내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내역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복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50억원, 2025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일반용역비(210-14목)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의 비목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변경하면서 7월에야 보조금이 최초로 교부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에 따라 당해 교부된 보조금 49억 6,900만원 중 13억 3,000만원(실집행률 26.6%)이 실집행되고, 35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음.[4)]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5,000	4,969	4,969	-	4,969	1,330	3,584	31	26.6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을 통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사업출연금(350-02목)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된 금액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인 빈집정비 사업의 경비로 지원되고 있음.

4) 참고로, 2025년 6월말 기준으로도 2024년 교부된 49억 6,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1억 1,200만원(실집행률 42.5%)이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2025년 교부된 보조금 91억원 중에는 6억 4,000만원만이 실집행(실집행률 7.0%)되고 있음.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0,000	-	-	1,00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이 최초로 지원된 2022년 이후 3년간(2022-2024) 지원현황을 보면, 합계 8개 지역사업 대상으로 55억 3,1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음.

[최근 3년간(2022-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 빈집 정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선정연도	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2022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1,900	• 빈집 밀집지역 공간활용 주거환경 개선 • 청년 및 외국인근로자 숙소 활용 • 체험형 주말농장 운영
2022	땅끝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573	•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 빈집 리모델링, 농지 매입
2022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700	• 빈집 리모델링 • 체험형 숙소 활용
2022년 합계		3,173	-
2023	땅끝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758	•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 빈집 리모델링 • 농지 매입
2023	빈집 등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700	• 예비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 목적 임대주택 지원 •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23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300	• 빈집 리모델링 • 체험형 숙소 활용
2023년 합계		1,758	-
2024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300	• 빈집수리 또는 철거·신축 후 이주 비용 지원
2024	빈집활용 전통고택 조성사업	300	•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
2024년 합계		600	-
최근 3년간(2022-2024) 합계		**5,531**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 내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사업 내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민관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2개소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세부사업 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3개소(2025~2027, 개소당 21억원)를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임.

2023년에는 해남군 마산면에 위치한 빈집 8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모두 입주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선정하여 빈집 3곳을 리모델링하여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조성 중임.[5)]

또한 해양수산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2024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청년 귀어주택이나 노인 돌봄주택으로 재정비를 진행 중임. 더하여 2025년에는 2개의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그 외에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공간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촌별로 빈집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주민 수요 및 지역 특색에 맞게 자율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도시 지역 내 빈집을 철거 및 정비하고 주차장과 공원 등 주거 기반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빈집 특화유형을 신설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빈집 밀집 구역이 범죄 및 안전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빈집 소유자와 주민, 지자체와 협업하여 빈집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관리를 진행할 예정임.

5) 뉴시스, ‘농촌 빈집이 마을미술관으로 새단장...농식품부, 빈집 재생 본격 추진’, 2024.12.23.

나. 검토의견

(1) 빈집 정비 주무부처 지정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및 책임성 확보 필요

현재 빈집 정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부처적으로 관련 사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사성 및 법령상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F 방식의 한시적 협의 구조를 넘어, 관련 법령 또는 정부 방침을 통해 명확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해당 부처가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처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각각 개별 세부사업 내에 빈집 정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역할 분담이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9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빈집·폐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빈집 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경관개선 사업도 전국의 빈집을 대상으로 하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 정비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중복성이 있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빈집 정비 사업의 비교]

구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행정안전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국토교통부)
내용	전국 빈집으로 야기되는 주거 경관, 치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및 지역 특화 연계사업 추진	인구감소 지역 내 존재하는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방문 유도 및 생활인구 유입 지원
범위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
기간	2024~2026년(3개년)	2024~2026년(3개년)
대상	빈집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
예시	· 빈집 철거(800호), 리모델링(20호) - 리모델링을 통한 연계 사업*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역특화 사업, 빈집 활용 청년 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	· 워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 + 숙소), 세컨드하우스, 양봉·양조 등 취미형 창업연계시설 등 · 농어촌체험·휴양활동 등 다양한 교류활동사업 발굴

구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행정안전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억원 (20개 시·군·구 × 2.5억원)	135억원 (9개 시·도 × 15억원)

자료: 개별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사업의 측면 외에도 법령상으로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빈집 정비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2025년 7월말 기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6)]

동 법률 제35조에 따르면,[7)]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과 어촌이 혼재된 시·군·구에서는 어느 부처의 지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빈건축물정비특별법안」을 준비하여 빈 건축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당해 법률안이 상술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상치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제출 이전에 부처 간의 협조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국토교통부), 농촌(농림축산식품부) 및 어촌(해양수산부)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빈집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빈집정비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임.

그러나 이러한 TF 방식의 운영은 특정 부처가 주무부처로 지정되는 것과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정책방향 및 사업을 조정하고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공식화되는 것에 비해 TF 차원에서의 운영은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하는 데 그 역할이 그치기 때문임.

---

6) 의안 제2209124호 2025.3.20. 소관 위원회 회부, 2025.4.23. 상정

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35조(농어촌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TF와 주무부처 지정의 구분]

구분	내용
TF 차원의 조정	-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 운영 -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이 핵심 - 법적 및 제도적 권한이 제한적임 - 예산편성이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 권한이 분산
공식적인 주무부처(컨트롤타워)의 조정	- 법령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 명확히 지정된 총괄부처가 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 조정 측면에서 권한을 보유 -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에 책임을 보유

즉 행정안전부가 TF를 통하여 사실상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임시적이고 조정적인 대응에 불과하며, 법령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 명확히 지정된 총괄기구로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성이 부여된 주무부처는 없음.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TF 방식의 한시적 협의 구조를 넘어, 관련 법령 또는 정부 방침을 통해 명확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해당 부처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사업 전반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비 미매칭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주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매칭 및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5~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 사업도 유사한 사유로 사업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 생활환경 정비 사업 중 일부를 빈집 정비에 지원 중이며 관련 사업은 이하 표에 제시되어 있고, 이 중 ‘농촌생활 인구유입지원’ 세부사업을 제외한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은 2024년에도 사업이 수행되었음.

[빈집정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자율) (4180-370)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빈집정비 등을 포함,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91,500	108,000	104,121	104,501
〃 (세종) (4180-301)	-		-	-	879	499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자율) (4160-302)	-	유휴시설(빈집, 폐창고 등)을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1,800	1,300	2,770	1,555
〃 (세종) (4160-302)	-		-	-	90	360
〃 (제주) (4160-300)	-		-	-	45	180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4160-431)	농촌공간정비	농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 및 정비 부지를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빈집정비 포함)	32,000	73,500	68,000	104,450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지자체별 빈집 상세 조사 지원(빈집주소, 입지, 유형, 상태 등)	-	-	2,500	-
농촌생활 인구유입지원 (4160-448)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민간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보 고도화를 통한 매매, 재생 등 빈집 활용 유도	-	-	-	1,350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단·장기 체류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등 지원	-	-	-	189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자율) (4180-370)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빈집정비 등을 포함,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91,500	108,000	104,121	104,501
〃 (세종) (4180-301)	-		-	-	879	499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자율) (4160-302)	-	유휴시설(빈집, 폐창고 등)을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1,800	1,300	2,770	1,555
〃 (세종) (4160-302)	-		-	-	90	360
〃 (제주) (4160-300)	-		-	-	45	180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4160-431)	농촌공간정비	농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 및 정비 부지를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빈집정비 포함)	32,000	73,500	68,000	104,450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지자체별 빈집 상세 조사 지원(빈집주소, 입지, 유형, 상태 등)	-	-	2,500	-
농촌생활 인구유입지원 (4160-448)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민간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보 고도화를 통한 매매, 재생 등 빈집 활용 유도	-	-	-	1,350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단·장기 체류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등 지원	-	-	-	1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우선,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1,041억 2,100만원 중 부처 수준에서 843억원이 집행되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이월액 416억 2,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59억 2,400만원 중 929억 7,0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59.6%)하고 321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자부담비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정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주민 동의 미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2024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세부사업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부산광역시	-	-	-	66	66	49	-	-	-	17	-
대구광역시	2,014	2,014	2,014	380	2,394	2,394	2,014	2,014	-	-	100.0
울산광역시	561	561	561	-	561	561	561	561	-	-	100.0
경기도	2,480	2,123	2,123	281	2,404	1,986	2,123	1,774	418	-	71.5
강원도	5,455	4,507	4,507	1,372	5,879	4,053	4,507	3,241	1,826	-	59.4
충청북도	11,641	8,500	8,500	5,381	13,881	11,177	8,500	7,057	2,538	166	60.6
충청남도	8,365	8,124	8,124	3,444	11,568	10,467	8,124	7,344	906	195	87.8
전라북도	11,890	9,846	9,846	1,638	11,484	9,638	9,846	8,481	1,841	5	71.3
전라남도	26,878	18,802	18,802	18,727	37,529	22,775	18,802	8,600	14,520	234	32.0
경상북도	16,676	14,823	14,823	4,456	19,279	12,684	14,823	9,488	6,543	52	56.9
경상남도	18,161	15,000	15,000	5,879	20,879	17,186	15,000	13,465	3,521	172	74.1
계	104,121	84,300	84,300	41,624	125,924	92,970	84,300	62,025	32,113	841	59.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추진 중인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세종)' 사업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24년도 예산현액 8억 7,900만원 중 4억 1,800만원이 집행(실집행률 47.6%)되어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4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세종) 세부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세종특별자치시	879	879	879	397	1276	809	879	418	463	4	4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음으로,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세부사업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후 활용하여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에게 창업 및 사회서비스공간을 제공하기 위

한 것으로, 2024년에는 여주시 등 계속지구 14개소와 남원시 등 신규지구 6개소를 대상으로 부처에서는 27억 7,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5억 4,100만원만 집행(실집행률 55.6%)되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방향 재검토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 음식점 가능 여부 협의에 시간 소요 및 관리 운영주체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8)]

[2024년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세부사업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여주시	180	180	180	6	186	179	180	174	0	6	96.7
강릉시	180	180	180	45	225	225	180	180	0	0	100.0
양양군	180	180	180	32	212	212	180	180	0	0	100.0
영월군	180	180	180	36	216	213	180	177	0	3	98.3
진천군	180	180	180	35	215	215	180	180	0	0	100.0
진천군	180	180	180	40	220	5	180	0	216	0	0.0
영동군	45	45	45	0	45	17	45	17	28	0	37.8
순창군	160	160	160	24	184	49	160	25	135	0	15.6
고창군	45	45	45	0	45	5	45	5	40	0	11.1
남원시	45	45	45	0	45	0	45	0	45	0	0.0
신안군	0	0	0	105	105	105	0	0	0	0	0.0
함평군	180	180	180	45	225	13	180	0	212	0	0.0
영광군	180	180	180	0	180	65	180	65	115	0	36.1
장흥군	180	180	180	33	213	207	180	174	6	0	96.7
장흥군	45	45	45	0	45	0	45	0	45	0	0.0
해남군	45	45	45	0	45	10	45	10	35	0	22.2
성주군	180	180	180	33	213	193	180	160	0	20	88.9
칠곡군	180	180	180	45	225	172	180	127	53	0	70.6
예천군	180	180	180	35	215	79	180	59	136	0	32.8
청도군	45	45	45	0	45	7	45	7	38	0	15.6
거창군	0	0	0	114	114	114	0	0	0	0	0.0
거창군	180	180	180	25	205	24	180	0	181	0	0.0
합계	2,770	2,770	2,770	653	3,423	2,109	2,770	1,540	1,285	29	5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8) 관리 운영주체 대상자 선정 지연은 지속적인 유찰에 따라 모집공고가 5차례나 이루어졌음.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추진 중인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세종)’ 세부사업도 대상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9,000만원 중 4,5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4년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세종) 세부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C/A)
							예산 현액	집행액(C)			
세종특별자치시	90	90	90	-	90	45	90	45	45	-	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음으로,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세부사업 중 ‘농촌공간정비’ 내역사업은 농촌 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를 철거하고 이전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부처에서는 68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357억 6,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37억 6,200만원 중 716억 5,6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71.3%)하고, 320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일정 등으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었고, 그 외에도 소유주 등 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2024년 농촌공간정비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C/A)
						예산 현액	집행액(C)			
68,000	68,000	68,000	35,762	103,762	71,656	68,000	48,469	32,066	40	7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 ‘농촌 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사업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 농촌정비 관련 사업의 일부를 활용하여 농촌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수행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방비 매칭 및 행정절차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농촌 소멸에 대응하여 빈집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할 예정인데,[9] 이 사업 또한 빈집재생이 필요한 지자체 단지 3개소를 선정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술한 3개 사업과 같이 지방비 매칭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9) 2025년 동 세부사업 예산액은 19억 8,900만원이고, 이 중 빈집 정비와 관련된 내역사업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 13억 5,000만원과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 내역사업 1억 8,900만원임.

(3) 연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약화된 행정안전부의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 사례

(가) 공공활용을 통한 타 사업과의 연계가능성 약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당초 정비된 빈집을 공공활용하여 타 사업과 연계하고자 계획하였다가 철거사업만 지원하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공공활용의 범위가 부지활용으로 제한되고, 타 사업과의 연계도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지방공동화 대응 차원에서 공공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은 지역재생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소재한 빈집을 정비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50억원 중 49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A+B+C)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1]
	본예산	추경 (A)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275	19,275	-	±5,000	19,275	19,212	-	63	8,915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5,000	5,000	-	±5,000	5,000	4,969	-	31	세부사업 이관[2]

주 1) 2025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2025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100억원이 편성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철거 부지 또는 정비된 빈집을 공공활용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10]

10) 이하에 제시된 사업개요 중 ‘사업예시’를 보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취약계층 임대주택, 대학생 기숙사, 청년 커뮤니티,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공활용 방안이 예시되고 있음.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2024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자료]

〈사업개요〉
- ㅇ (기간) 2024~2026년(3개년)
- ㅇ (예산) 50억원(총 150억원)
- ㅇ (방법)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지역 100개를 선정 후 빈집정비
  - (대상) 건물·토지 소유관계가 입증 가능하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빈집
  - (요건) 빈집 활용(매도)동의, 지자체 매입 의향, 특화사업 추진 계획 등
- ㅇ (우선순위) ①인구감소지역(89개), ②관심지역(18개), ③빈집활용 가능지역
- ㅇ (지원) 지역당 수리비 5천만원 이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ㅇ (사업예시)
  - (도시) 공용주차장, 취약계층 임대주택, 대학생 기숙사, 청년 커뮤니티,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등
  - (농촌) 귀농인 창업공간, 주말농장, 캠핑장, 농산물 판매장, 농촌 살아보기 체험장, 마을쉼터, 마을도서관 등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이하 계획상 연계사업(안)을 보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활용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빈집을 공유 숙소·오피스 등으로 활용하여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2024년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 계획상 연계사업(안)]

연계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인구 활성화사업	인구감소지역과 대도시·인접지역 간 협력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 빈집 재활용을 통한 숙박시설 조성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 및 숙박 할인 등)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청년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시 빈집 활용 ※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소·오피스 등 조성
지방소멸기금사업	빈집 정비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빈집 활용 기금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빈집 관련 사업과 연계 가능한 답례품 발굴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이하 2024년 예산 전용(24.5.31.) 전-후 사업내용 변경내역을 보면 당초 계획에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던 보수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거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음.

[2024년 예산 전용 전-후 사업내용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단순철거: 500만원(농어촌) / 1,000만원(도시) 지원 단순보수: 1,000만원 지원 철거・보수 후 공공활용: 3,000만원 지원	→	단순철거(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조건) : 국비 500만원+지방비 200만원(농어촌) / 국비 1,000만원+지방비 400만원(도시) 지원

주) 해당 금액은 지자체 지원 시 단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내역은 철거대상마다 상이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수사업을 거쳐 리모델링된 건물을 공공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2024년 연말(24.12.31.) 기준 공공활용 결과를 보면, 공공활용 방안이 확정된 43호는 주차장(20호), 텃밭(16호) 및 주민쉼터(7호)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공공활용 현황]

(단위: 호)

준공호수	준공 후 공공활용			
	주차장	텃밭	주민쉼터	협의 중
136	20	16	7	93

주) 2024년 연말(24.12.31.)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이상과 같은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지원단가에 맞는 사업수요부터 우선 발굴하여 소진하도록 지원조건을 '공공활용을 전제로 하는 단순철거'로 일원화시킨 것이고, 반드시 빈집을 재활용하지 않더라도 철거만으로 경관개선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타 사업과의 연계에 관해서는 지자체 의사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보수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사업계획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동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된 사업내용에 의해서는 보수사업을 거쳐 정비된 빈집을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안 등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당초의 사업의도가 달성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11]

또한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을 보면 건물이 없더라도 부지의 공공활용만으로 실현가능한 캠핑장・주말농장 및 농산물 판매장 등의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현재 공공활용 현황을 보면 주차장・텃밭 및 주민쉼터 등으로만 운용되고 있으므로, 공공활용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참고로, 최근 3년간(2022-2024)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해 지원된 빈집정비 관련 8개 사업들은 리모델링된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빈집 철거 후 부지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된 바 없음.

(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의 계획 대비 감소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목적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나,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사업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 지원비중이 계획 대비 낮아졌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의도하는 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계획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철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고, 연초 사업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79개 시·군·구 1,551호를 대상으로 153억 8,3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런데 연초 실시된 사업 수요조사는 이하 변경 전 지원조건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변경 후 사업조건은 변경 전과 달리 보수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공공활용 시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활용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혜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수요에 변동이 있을 수 있었음.

[2024년 예산 전용 전-후 사업내용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단순철거: 500만원(농어촌) / 1,000만원(도시) 지원 단순보수: 1,000만원 지원 철거·보수 후 공공활용: 3,000만원 지원	→	단순철거(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조건) : 국비 500만원+지방비 200만원(농어촌) / 국비 1,000만원+지방비 400만원(도시) 지원

주) 해당 금액은 지자체 지원 시 단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내역은 철거대상마다 상이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수혜자 입장에서 불리한 사업조건 변경에도 사업수요를 다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예정했던 수준에 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사업수요가 감소하여, 해당 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이하 현황을 보면, 2024년 연초 수요조사 기준 지원대상 빈집 871호 중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호수가 717호로 82.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2024년 예산에 의한 집행실적을 보면, 지원대상 841호 중 약 68.8%에 해당하는 579호만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호수여서 지원대상 중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음.[12)]

12) 또한, 2025년 6월말까지 확정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은 60.0% 수준으로 2024년에 비해서도 하락(2024년 68.8% → 2025년 6월말 기준 60.0%)하였음.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 실시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변경 후 사업계획상 지원대상			실제 지원대상		
	합계	인구감소·관심지역	기타 지역	합계	인구감소·관심지역	기타 지역
지원호수	871	717	154	841	579	262
비중	100.0	82.3	17.7	100.0	68.8	31.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빈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13]하고 있음에도 빈집정비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평균단가에 비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사업수요 확보가 어려웠다고 답변하였음.[14]

그러나 사업수요 확보는 2025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예산을 확대편성 하기 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데도 사업내용 변경 이후에 사업수요를 재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보조사업 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예산규모는 계획대로 유지되면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빈집의 지원비율은 계획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타 부처와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우선지원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 시 이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1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2025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 계정으로 지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에 대한 예산 배분 권한이 없으며, 다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을 요구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상적인 철거사업 단가가 도시 기준 2,000~3,000만원, 농어촌 기준 1,000~2,000만원 수준임에 반해 동 사업의 지원단가는 그보다 낮은 수준(국비·지방비 합계 기준 농어촌 700만원 / 도시 1,400만원)임.

(4) 사업수요 부족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 빈집정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한 빈집 등의 정비사업 중 일부는 철거 또는 보수를 단순 지원하는 것이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내용상 유사하면서도 상호 연계가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지원 시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장려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

이하 현황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최초로 지원된 이래 최근 3년간(2022-2024) 빈집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8개 사업에 55억 3,100만원이 지원되었음. 다만, 지원규모는 매년 감소추세로, 2022년 3개 사업에 31억 7,300만원이, 2023년 3개 사업에 17억 5,800만원이, 2024년 2개 사업에 6억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빈집정비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선정연도	지역명	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2022	경남 함안군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1,900	• 빈집 밀집지역 공간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 • 청년 및 외국인근로자 숙소 활용 • 체험형 주말농장 운영
	전남 해남군	해남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573	•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 빈집 리모델링, 농지 매입
	경북 영주시	농촌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700	• 빈집 리모델링, 체험형 숙소 활용
2022년 합계(A)			**3,173**	
2023	전남 해남군	해남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758	•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 빈집 리모델링, 농지 매입
	경북 영주시	농촌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300	• 빈집 리모델링, 체험형 숙소 활용
	전남 함평군	빈집 등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700	• 예비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 목적 임대주택 지원 •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23년 합계(B)			**1,758**	

(단위: 백만원)

선정 연도	지역명	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2024	전북 부안군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300	• 빈집수리 또는 철거·신축 후 이주 비용 지원
	충남 부여군	빈집활용 전통고택 조성사업	300	•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
2024년 합계(C)			600	
최근 3년간(2022-2024) 합계(A+B+C)			5,531	

주) 투자계획서상 연계사업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이하 실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 연말 기준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및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의 선정 이후 누적 실집행률이 60% 미만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빈집정비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선정 연도	지자체 명	사업명	기금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2	경남 함안군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1,900	1,877	98.8
2022	전남 해남군	해남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573	573	100.0
2022	경북 영주시	농촌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700	214	30.6
2023	전남 해남군	해남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758	387	51.1
2023	경북 영주시	농촌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	300	169	56.3
2023	전남 함평군	빈집 등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700	232	33.1
2024	전북 부안군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300	284	94.7
2024	충남 부여군	빈집활용 전통고택 조성사업	300	-	-
합계			5,531	3,736	67.5

(단위: 백만원, %)

선정 연도	지자체 명	사업명	기금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주) 2024년 연말(12.31.)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빈집정비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기보다 내용상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사실상 경합관계에 있으며,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교부된 사업비가 집행되더라도 사업효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투자계획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의해 빈집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빈집정비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반복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고, 일부 사업은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여 상호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정보화 사업

가. 개 요

(1) 개념 및 유형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 ·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의미함.[1)]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화사업을 ①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②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③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2)]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정보화사업 적용대상 분류]

구 분	내 용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내용 재구성

또한 동 세부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재정유형별로 구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외에 일반재정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 성격의 사업도 모두 정보화사업에 포함하여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정부는 1978년부터 지능정보화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3~2025)’에 근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 중에 있음.

역대 지능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1978년 2월에 처음 수립되고 당시에는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목표였음.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을 완성하고 2000년대까지 선진국 정보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였고,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은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를 위한 기반 마련, 분야별 고도화, 연계・통합, 융합・확산 등의 단계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4년 정보화 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였으며, 1996년 범정부 차원 최초로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2018년에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정부는 5개년 간의 지능정보사회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초 10기가 인터넷 상용화(2018),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2019)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망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을 실현하였음.

이후 정부는 2022년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11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제7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3~2025)을 의결하였음. 이 계획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2023년 9월 12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기존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환경 변화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과제를 조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음.

[역대 지능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현황]

단계	구분	수립 연도	계획명	기간	비전 또는 목표
행정전산화	1차	1978.2.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78 ~1982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차	1982.12.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83 ~1986	

단계		구분	수립 연도	계획명	기간	비전 또는 목표
국가기간전산망		1차	1988.12.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87 ~1991	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 완성 2000년대까지 선진국 정보사회 실현
		2차	1992.2.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92 ~1996	
국가 정보화 추진	기반 마련	1차	1996.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 ~2000	2010년까지 세계 최고 정보화 실현
		2차	1999.3.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Cyber Korea 21	1999 ~2002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
	분야별 고도화	3차	2002.4.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e-Korea Vison 2006	2002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3차 (수정)	2003.12.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2003 ~2007	Broadband IT Korea 건설
		3차 (연동)	2006.5.	u-Korea 기본계획	2008 ~2010	세계 최고의 u-인프라 위 세계 최초 u-사회 실현
	연계·통합	4차	200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 ~2012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
		4차 (수정)	2012.3.			
	융합·확산	5차	2013.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 ~2017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지능정보화 발전	초연결 지능화	6차	201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 ~2022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전면화	7차	2022.11.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023 ~2025	국민과 함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7차 (수정)	2023.9.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023 ~2025	국민과 함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4 지능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4.9.

(2) 각 부처 정보화사업 예결산 현황

2024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안은 총 57개의 부처, 931개 세부사업에서 예산현액 7조 986억 3,900만원 중 6조 9,086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1,044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28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예산현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현액 2조 3,966억 2,200만원 중 2조 3,910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어 가장 많은 정보화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9,386억 5,500만원 중 9,181억 4,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7.8%)하고, 국방부가 7,833억 6,900만원 중 7,585억 4,600만원을 집행(집행률 96.8%)하여 그 뒤를 잇고 있음.

[2024년도 각 부처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	2,396,622	2,391,025	-	3,987	99.8
행정안전부	68	938,655	918,141	15,245	5,268	97.8
국방부	8	783,369	758,546	15,316	9,507	96.8
환경부	88	301,834	284,420	12,562	4,849	94.2
보건복지부	51	226,266	212,676	9,266	4,252	94.0
대법원	11	187,649	168,682	15,560	3,406	89.9
고용노동부	27	170,598	169,138	1,217	242	99.1
농림축산식품부	27	148,549	142,666	128	5,517	96.0
법무부	6	147,801	145,417	-	2,384	98.4
국토교통부	30	140,878	135,136	2,374	3,225	95.9
경찰청	8	119,791	116,264	558	2,970	97.1
산업통상자원부	10	114,058	113,284	109	665	99.3
국세청	7	115,733	108,175	0	7,558	93.5
교육부	54	97,443	95,670	1,176	596	98.2
문화체육관광부	54	87,676	86,405	248	1,023	98.6
기상청	18	87,295	85,852	393	1,049	98.3
국회	6	84,981	64,061	17,563	3,357	75.4
관세청	1	80,334	77,943	241	2,150	97.0
해양수산부	39	73,683	69,283	1,473	2,060	94.0
기획재정부	11	54,078	52,962	160	956	97.9
특허청	7	52,769	52,158	-	610	98.8
중소벤처기업부	10	52,056	51,761	-	295	99.4
조달청	3	45,706	42,566	263	2,877	93.1
산림청	25	44,871	42,724	1,579	568	95.2
통계청	7	44,807	43,939	65	868	98.1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외교부	6	40,348	39,457	-	891	98.3
금융위원회	15	37,302	35,799	983	520	9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34,374	33,160	-	1,214	96.5
인사혁신처	15	32,961	32,432	-	529	98.4
식품의약품안전처	17	32,596	32,025	-	571	98.2
국민권익위원회	3	29,692	26,259	3,236	197	88.4
질병관리청	45	29,372	28,030	369	1,203	95.4
국가유산청	4	25,379	25,173	-	206	99.2
방위사업청	1	24,245	23,804	113	327	98.2
농촌진흥청	7	24,014	23,951	-	63	99.7
해양경찰청	3	22,318	21,622	364	332	98.3
방송통신위원회	7	16,902	16,778	-	124	99.3
공정거래위원회	7	16,640	16,236	157	247	97.6
감사원	1	15,897	12,508	2,424	965	78.7
여성가족부	1	15,623	14,881	437	305	95.3
소방청	3	15,117	12,385	-	2,732	81.4
재외동포청	3	14,662	14,037	-	625	9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12,068	11,902	-	166	98.6
통일부	11	10,960	10,540	-	419	96.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	10,386	9,986	200	200	96.1
우주항공청	2	10,325	9,416	853	56	91.2
법제처	1	8,741	8,435	-	306	96.5
병무청	1	7,648	7,611	-	37	99.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7,285	7,140	-	145	98.0
헌법재판소	2	6,836	6,702	-	134	9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6,333	6,300	-	33	99.5
국가보훈부	13	6,055	5,907	88	60	97.6
대통령경호처	1	3,989	3,763	-	226	94.5
국가인권위원회	2	1,737	1,686	-	51	97.1
새만금개발청	1	1,342	1,331	-	11	99.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271	1,201	-	70	94.5
국가교육위원회	1	767	619	107	41	8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90	287	-	3	99.0
합계	931	7,098,639	6,908,635	104,463	82,896	97.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파악·집계한 2021~2025년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3] 2021년 8조 6,757억 7,500만원에서 2022년 9조 6,804억 6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3년 8조 4,607억 7,300만원, 2024년 8조 4,162억 4,400만원, 2025년 8조 1,567억 5,500만원으로 202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3조 214억 900만원에서 2025년 2조 3,822억 6,6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5년간 2조원을 초과하는 정보화사업 규모로 개별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약 1조원 내외 규모의 행정안전부가 그 뒤를 잇고 있음.

[2021~2025년 정보화사업 예산총액 및 상위 5개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합계	**8,675,775**	**9,680,406**	**8,460,773**	**8,416,244**	**8,156,7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21,409	3,621,372	3,118,678	2,645,521	2,382,266
행정안전부	1,109,433	1,229,852	917,448	934,850	978,758
국방부	642,386	732,899	734,729	761,009	806,786
중소벤처기업부	748,253	583,192	326,666	421,972	438,323
보건복지부	408,674	395,028	354,346	379,176	406,5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파악하고 집계한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로, 개별 부처에서 제출한 정보화사업 예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가 당초 정보화사업으로 분류한 사업들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확정안 작성(2024.1.) 이후에 변경 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정보화사업의 범위를 전 기관에 명확하게 공지하여 관리하는 한편, 통계에서 추가·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AI 사업에 대한 개요 및 현황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업이란 통상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개발하여 산업의 경쟁력 향상, 행정 효율화,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을 의미함.[4)]

AI 사업에 쓰이는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역량이란, 단순 자동화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을 넘어, 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파악하고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여(학습, Learning), ②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해 판단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고(추론 및 예측, Inference & Prediction), ③ 인간 언어의 문맥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함으로써(자연어 이해의 생성, Natural Language Procession), ④ 사람의 개입 없이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조정하며 환경이 변할 때 새로운 규칙을 스스로 적용하는 능력(자율성과 적응성, Autonomy and Adaptability)을 의미함.[5)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

법률 조항		내용
제13조제1항	제1호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 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제2호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 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제3호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 ·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제4호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제5호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 ·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하고,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 제조 ·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

5)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참조하여 재작성

6) 참고로, 지각, 인지, 추론 등 인간의 능력을 기술로서 대체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어떠한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하며 스스로의 지각과 인식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기도 함.

법률 조항		내용
제13조제2항	제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제2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제3호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제4호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제5호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제6호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제7호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 동 법률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임
자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어 2024년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AI 사업들이 동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24년 집행실적을 조사한 아래 표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27개 부처에서 169개의 세부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며, 2조 559억 1,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조 160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191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6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7,832억 1,600만원 중 7,830억 4,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여 가장 많은 AI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가 예산현액 5,003억 4,300만원 중 5,001억 5,4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현액 1,622억 3,200만원 중 1,622억 3,200만원을 집행(집행률 100.0%)하여 그 뒤를 잇고 있음.

[각 부처 AI 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	783,216	783,041	-	150	99.9
고용노동부	5	500,343	500,154	-	189	99.9
산업통상자원부	21	162,232	162,232	-	-	100.0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환경부	1	157,771	145,694	1,452	10,625	92.3
국토교통부	15	116,789	115,251	233	1,305	98.7
방위사업청	7	91,583	79,160	5,188	7,236	86.4
문화체육관광부	7	85,005	84,844	-	161	99.8
보건복지부	5	27,451	27,450	-	1	99.9
해양수산부	5	26,554	26,554	-	-	100.0
국회	2	25,208	13,104	12,000	104	52.0
교육부	2	22,012	22,012	-	-	100.0
중소벤처기업부	4	19,200	19,197	-	3	99.9
행정안전부	3	5,384	5,384	-	-	100.0
질병관리청	1	5,072	4,564	48	460	91.0
농촌진흥청	3	5,004	4,979	-	25	99.5
우주항공청	1	3,869	3,869	-	-	100.0
산림청	2	3,537	3,507	-	30	99.2
외교부	1	3,113	2,830	22	261	90.9
경찰청	1	2,813	2,813	-	-	100.0
통일부	1	1,877	1,872	-	5	99.7
해양경찰청	1	1,632	1,348	195	89	82.6
법제처	1	1,482	1,482	-	-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95	1,281	-	14	98.9
대통령경호처	2	1,000	1,000	-	-	100.0
통계청	3	915	898	-	17	98.1
방송통신위원회	2	850	850	-	-	100.0
대법원	2	712	712	-	-	100.0
합계	169	2,055,919	2,016,082	19,138	20,675	98.1

주) 위 자료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AI 사업을 정리한 것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러한 AI 사업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기술 기반의 전산화 및 디지털화 사업 전반을 의미하는 정보화사업 중 AI 사업은 그 하위분야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정보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AI 사업이 사실상 많은 것이 현실임.

다만, 정보화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AI 기술이 정보화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화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실제로 2021년에는 정보화사업 예산 8조 6,757억원 중 8,785억원(10.1%)이 AI 사업이었으나 2024년에는 8조 4,162억원 중 1조 1,446억원(13.6%)으로 AI 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였음.

2024년 AI 사업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으로 2조 559억원인데, 정보화사업 중 AI 사업 예산이 1조 1,446억원으로 전체 AI 사업 예산의 절반 수준이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특히, 2025년에는 8조 1,567억원의 정보화사업 예산 중 AI 사업이 1조 4,561억원(17.9%)으로 그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보화사업 중 AI 사업 예산의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정보화 사업 예산	AI 사업 예산	비중
2021년	86,757	8,785	10.1
2022년	96,804	6,448	6.6
2023년	84,607	9,525	11.3
2024년	84,162	11,446	13.6
2025년	81,567	14,561	17.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1) 전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철저한 점검·분석 필요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의견 작성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다 철저히 점검·분석할 필요가 있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법 제7조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 및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토록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제출의 법정기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서는 매년 6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종합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함.[7][8]

---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정보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정보화 예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제출기한 규정을 2024년의 사례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2024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 및 제출 관련 업무절차]

제출하는 기관	제출받는 기관	제출 내용	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5년 실행계획	-
⇓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	'24.6.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점검·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점검·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의견	'24.6.30.
		기획재정부는 정보화 예산안 편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 참작	-
⇓			
정부	국회	2025년도 정보화 예산안	'24.9.2.
⇓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에서 확정된 정보화 예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한 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5.1.31.

자료:「지능정보화 기본법」 및「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점검·분석 의견 제시(안)」을 바탕으로 재구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 · 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 · 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 · 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9)「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결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비검토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차년도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 연계·통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2024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있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등 4개 분야를 검토하였고, 185개 사업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2024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비검토 결과]

(단위: 개)

검토분야	사업 수	주요 검토내용
유사·중복	42	타 사업, 기존 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연계·통합	85	공동활용,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계·통합
공통기반	52	범정부 공통기반(행정정보공동이용, 국민비서, 범정부빅데이터플랫폼 등) 활용 검토 요청
공공앱	6	앱구축 필요성 여부 검토
합계	185	-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비검토 결과보고서」

그러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예비검토 결과를 받은 기관은 권고사항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고 있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10]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사전협의 신청)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보화사업을 출연, 위임 또는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할 때 권고사항들이 점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임금직무시스템 및 워크넷과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사·중복의견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별도의 시스템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실제로도 중복성 여부가 없었는지는 사후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탄소중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연계·통합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 탄소중립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목적 및 범위 등 큰 차이가 있어 연계 통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비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 외에도 법무부의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비서 상담’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이 예비검토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나, 서비스 이용 대상이 검찰직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해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음.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의견]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의견	부처의견
고용 노동부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한국형 O*net 구축 및 설계)	① 유사·중복: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시스템 및 워크넷과 중복성 검토필요 - 임금 및 직무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복기능은 제외할 필요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은 현재 각각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임금정보와 직무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축 시 각각 별도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통합되고, 중복하여 제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국토 교통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건물부문 탄소금융지원 기능 개발)	② 연계·통합 : 유관기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등)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축 운영중이니 연계 검토 필요	본 시스템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건물부문 탄소금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으로, 유관기관 탄소중립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목적 및 범위 등 큰 차이가 있어 연계 통합이 불필요함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 자체검토결과서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의견	부처의견
법무부	검찰업무정보화 (검찰업무지원을 위한 AI 챗봇시스템 구축)	③ 공통기반 플랫폼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상담' 공동활용 검토 필요	검찰업무지원 AI 챗봇시스템은 검찰업무시스템을 일부를 대상으로 구축하는 업무 지원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 대상은 검찰직원만 해당됨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상술한 행정안전부의 예비검토 의견을 개별 부처에서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결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년도 정보화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의견서 작성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시, 전년도 정보화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크게 ① 2024년도 국가 지능정보화 규모, ② 국가 정책 기여도, ③ 지능화 확산 및 보안 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24년도 국가 지능정보화 규모에는 2024년 예산안에 담긴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신규사업, 차세대사업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② 국가 정책 기여도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정보화 예산의 규모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분석되어 있으며, ③ 지능화 확산 및 보안 강화에는 디지털 기반 지능화 확산 및 정보보호/보안강화 부문에서 전년 대비 2024년 예산안에 담긴 사업예산 규모의 변화를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한 종합의견에서도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만 상세히 분석하고 있을 뿐, 전년도 정보화사업을 통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권고만을 포함하고 있음.

[2024년도 지능정보화사업 조정 권고]

구분	SW영향평가 (민간침해 최소화)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활용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조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활용 권고
관련근거	SW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전자정부법	DPG 실현계획
사업수	25개	507개	182개(201건)	337개
예산	682억 (△13.9억)	2조 1,792억	6,810억	8,802억
협업검토	NIPA / SW산업협회	클라우드 -플랫폼기술단	디지털정부본부	디지털정부본부

주) 예산 금액은 조정 및 권고 대상사업의 총 예산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점검·분석 결과에는 전년도 추진 실적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시 지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AI 사업에 대한 검토

첫째, 정부는 AI 기술을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에 단순히 적용하는 형태의 AI 부문 투자를 지양하고, 머신러닝·자연어 처리·딥러닝·시계열 예측 및 영상·음성 인식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하여, AI 산업 전반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혁신의 핵심으로 삼고 산업구조, 행정체계,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AI 중심의 구조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AI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AI 사업에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시키는 사업이 있는 반면,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도 있음.

후자의 사업 중에서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RPA) 시키거나 특정 조건에 기반하여 분류를 도와주는 기술 및 단순 질의응답 챗봇 등 실제로는 기존의 사업에 AI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 가까운 사업들이 있는데, 이들 사업은 기존의 정보화사업 또는 디지털화 사업의 연장선에서 AI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가 있음.

산림청의 **'산림과학연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연구과제 및 논문, 특허 등의 연구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요약하고 연관된 과제를 분석하는데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역할인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의 **'AI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은 모니터링한 매체를 생성형 AI를 이용해 요약, 번역, 분류, 키워드 및 통계를 추출하는데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1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선진화'** 사업은 수입식품 부적합 실적이 많고 수입량이 많은 주요 식품유형을 선정하여 수입식품 통관검사 대상으로 추천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12] 이 또한 반복 작업을 자동

11)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의 핵심역량 기능을 두루 갖춘 플랫폼으로써,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패턴학습, 시계열 분석, 비정형 데이터 해석의 단계적 구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2)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단순랜덤추출'로 선정했던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 선별을 AI 모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수입식품 검사 데이터로부터 수입식품 부적합 패턴을 학습하여 학습한 모델은 연간 목표값(전체 수입식품 대비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고려하여 스스로 위해도가 높은 구간에 속한 수입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입장임.

화하거나 조건 기반 분류 시스템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적용한 것에 불과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치안현장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은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인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수사기술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을 뿐, 데이터를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은 아님.[13)]

[업무자동화 또는 전산화 기능에 가까운 AI 사업 목록 및 내용]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산림청	산림과학원정보화 (산림과학연구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1) 사업설명 - 총사업비(1,778백만), 사업기간(2023~2025) - 사업방식(직접수행), 전담기관(국립산림과학원) 2) 사업내용 - 연구과제 및 논문, 특허 등의 연구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기반의 통합 검색을 제공하고 연구보고서의 AI요약, 연관과제 분석 등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홍보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 사업설명 - 개요: AI를 활용해 전 세계 미디어 매체 모니터링·분석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 총사업비: 40억 4,600만원 - 사업기간: 3년(2024~2026) - 전담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2) 사업내용 - 모니터링한 매체를 생성형 AI를 이용해 요약, 번역, 분류, 키워드 및 통계 추출하는 등 분석 업무에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선진화 (정보화)	1) 사업설명 - 개요: AI활용 수입식품 위험 예측 선별 모델 개발 - 사업기간: 2024.4. ~ 2024.10. - 사업방식: 직접수행 2) 사업내용 - 수입식품 부적합 실적이 많고 수입량이 많은 주요 식품유형을 선정하여 수입식품 통관검사 대상으로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치안현장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2.0)(R&D)	1) 사업설명 - 개요: 기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의성 높은 현재·미래 치안 현장의 문제 해결 및 경찰의 과학적 역량 강화를 통해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실증형

13)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경찰의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자율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패턴 학습’, ‘비정형 데이터 해석’ 기능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임.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R&SD - 총사업비 103억 8,400만원 - 사업기간: 2021년~205년 - 전담기관: 과학치안진흥센터 2) 사업내용 - 겹친 지문분리, 위변조수사/제보영상검출, 아동학대영상분석·요약, 교통영상분석, 사이버안보침해대응, 족적자동검색, 아동 비대면 진술조서 지원시스템 등의 과제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및 실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즉 이러한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AI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패턴 학습', '비정형 데이터 해석', '자율 의사결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라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고, 나아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과 이를 통한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 방향성과도 거리가 있음.

특히 이러한 사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보다는 AI에 투자된 예산규모의 확대 등 단기적인 실적 중심의 사업 편성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술 고도화 및 AI 산업 전반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설정하고,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딥러닝, 시계열 예측, 영상·음성 인식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공공 및 현장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14]

14) 이와 관련하여,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은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생산성 향상과 정부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AI 라는 최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 행정 업무 프로세스와 정합성 확보, 직원 AI 리터러시 제고와 변화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출처: 전자신문, '디지털정부, 인공지능으로 앞서가자', 2025.4.30.)

둘째, 2024년에 수행된 AI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구축된 결과물의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①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은 수요부처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및 가공하여 AI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현장에 실증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계획현액 24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2년에 2개 과제, 2023년 5개 과제, 2024년 10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과제 개발기간이 3년임에 따라 2022년에 시작한 ‘AI 기반 산림해충 방제지원 시스템’과 ‘AI 융합 유해화학물질 판독 시스템’ 2개 과제는 2024년에 완료되었음.

2025년 7월 기준, 산림청과 소방청은 해당 과제를 통한 서비스를 실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거나 활용 예정인 상황임.

[2024년 완료된 2개 과제의 활용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과제내용	수요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활용현황
AI 기반 산림해충 방제지원 시스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확산 정도를 분석하고 판독할 수 있는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원	산림청	2022~2024	5,400	산림청 활용 예정
AI 융합 유해화학물질 판독 시스템	소방 데이터(고화질 CCTV, 유해화학물 데이터 등)에 AI 기술을 활용, 유해 화학물질 판독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원	소방청	2022~2024	4,200	소방청 협의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가 기관의 수요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고, 도입 형태에 따라 시스템・장비・보안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로 서비스를 도입할지 여부를 개별 부처에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임.

이 사업은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AI 서비스가 실제로 공공부문에 적용되어 확산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인공지능 솔루션이 현장에 실증되고 적용되는 전주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② AI 바우처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계획현액 425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국내 수요기업에게 AI 바우처를 지원하면 수요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을 판매하는 공급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I 솔루션을 구입한 기업 중 33.6%는 AI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6.8%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16.7%는 활용방법이 까다롭거나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한 AI 솔루션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활용	비활용	효과 없음	활용 방법 어려움	호환성	업종 전환	추가 비용 요구	기타
전체비율 (비활용 중 비율)	66.4	33.6	(26.8)	(8.9)	(8.2)	(7.8)	(5.9)	(42.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보고서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선정 시 수요기업의 AI 솔루션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수요기업이 과제 종료 후 AI 솔루션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③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2024년도 계획액 558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 및 공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 구축기관을 선정하고, 별도로 품질검증기관을 선정하여 각 데이터 구축기관이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품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를 AI-허브에 업로드하여 공공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이 사업의 과제공고는 3월, 5월, 8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각 과제의 협약기간을 과제 선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부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기간이 2개월로 짧게 부여되었음.

[2024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과제 수행기간 현황]

수행기간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과제수(개)	28	4	10	3	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경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품질검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른 과제에 비하여 충분히 부여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제 선정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④ 데이터인프라 구축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은 2024년 69억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제조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구매・거래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에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를 접목하는 내용의 기존 R&D 과제를 통해 제조·생산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었으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경우 수집대상 과제에 대해 데이터셋을 가공・등록한 바 없고,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의 경우 사업 컨소시엄이 이를 경기 지역특화 플랫폼에 먼저 구축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KAMP 플랫폼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음.

[연도별 데이터셋 수집대상 과제 현황]

(2025.4.3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집대상 과제건수	등록건수 (~25.4.)	수집대상 과제건수	등록건수 (~25.4.)	수집대상 과제건수	등록건수 (~25.4.)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정부일반형	-	-	27개	-	40개	-
	자율형공장	-	-	-	-	-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	-	15개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AI 전환(AX)은 인공지능을 제조·생산현장에 접목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적인 토대인 제조 데이터셋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과제로부터 제조 AI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셋 수집・가공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결산체계개편 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신규 시스템 개발 부적정

정부는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못하고, 향후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개정 국가회계 기준을 반영하여 기금회계 재무제표를 개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중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음.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44개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한 국가결산체계개편협의체(2024.7.2.)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시스템 개발 착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받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계획안 편성을 승인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금운용계획의 연도 중 변경을 통해 사업수행 재원을 마련하게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주신보IT운영(정보화)’ 및 ‘주연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2024년 연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위해 7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음.[15)]

[2024년 주신보 및 주연보 IT운영 사업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계정명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주택신용보증계정	2024. 9.25.	기재부 협의	주신보IT운영 (2632-301)	일반연구비 (260-01)	464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1-9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46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024. 9.25.	기재부 협의	주연보IT운영 (2632-301)	일반연구비 (260-01)	32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1-9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323

자료: 금융위원회

15) 금융위원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주신보IT운영(2632-301),금융위원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IT운영(2632-301)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타경비’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에서 2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기타경비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증액하였음.[16]

[2024년 기타경비 사업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11.7	기금운용 계획변경	기타경비 (7281-200)	일반연구비 (260-01)	23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6-971)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470-03)	△2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우회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향후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6)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기타경비(7281-200)

(4) 정보화사업 대상 주요 사업별 검토

2024년도 각 부처 정보화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이하 4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므로, 향후 각 부처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개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낙찰차액의 집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정보화 사업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전제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의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거나,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 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 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사용 범위에 대한 규정]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의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 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정보화사업 예산의 낙찰차액 중 일부를 활용하여 외주용역, 조사분석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데, 2024년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25억 6,700만원 중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일부인 5,586만 2,000원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음.

대표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및 실적보고’ 사업의 경우 2,396만 7,000원을 외주용역사업 및 조사분석에 집행하였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서는 2,070만원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하였음.

②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특허청)

특허청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 낙찰차액을 기획재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인건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낙찰차액의 예외적 사용범위로 보기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특허청은 이 사업에서 인건비로 2억 1,400만원을 이용하였는데, 이들 금액은 2024년 진행된 계약 건 중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통합감리 및 산업재산권 공보발간 및 표준기술문서 DB 구축 계약 후 낙찰차액에 해당함.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이용 (2024.12.18.)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431-500)	210-01	54	인건비 (7001-100)	110-01	인건비 부족분 재원 마련
		210-15	91			
		260-01	69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추가 인정 등으로 인건비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의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상대적으로 낙찰차

액의 규모가 큰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부득이하게 인건비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나, 인건비 부족분으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은 지침에 규정된 예외적 사용범위로 보기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법무부)

법무부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 항목 중 감리비의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침이 규정한 낙찰차액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4년 10월 감리용역 계약 후에 2024년 발주금액 2억 5,578만원과 계약액 1억 9,578만원의 차이인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개발비로 사용하였음.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감리용역	256	196	60	데이터베이스 개발비 60

자료: 법무부

그러나 감리비 낙찰차액 6,000만원은 당초 2025년에 실시할 예정인 데이터 분석 작업 중 일부 작업분을 2024년 11~12월로 앞당겨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출액으로,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정보화 사업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동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음.[17]

또한 내역변경이란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내역변경을 통하여 기존 예산 계획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음.[18]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 사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차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예산 편성을 위하여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증)하여 신규 사업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사업(ISMP)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및 소요 재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 심의·통제를 받지 않은 문제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규 사업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사업(2024. 5.~9.)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을 수행하고 동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목표, 범위, 전략 도출 및 사업비 산정 등 준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준비 없이 2024년 4월에 해당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용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 것임.

---

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98

[2024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사업을 위한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전용 (2024.4.1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국내여비 (220-01)	110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1031-300)	일반연구비 (260-0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ISMP 사업 추진 예산 필요로 전용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처럼 계획에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대법원)

대법원은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시스템 오픈 지연의 사유로 내역 변경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하는 관리용역비를 공식적인 총사업비 변경 조정 절차 없이 집행한 것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4년 관리용역비는 당초 시스템 오픈(2024. 9.)을 고려하여 시스템 오픈 후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인 4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스템 오픈일정이 2025년 1월 31일로 미뤄지면서 미집행액인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2024년 초에 계약한 통합발주사업[19]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내역 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내역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내역변경 (2024.10.2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1331-303)	210-15	445	사법업무전산화 (정보화) (1331-302)	210-15	관리용역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4.10.2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1331-303)	210-15	4,347	전자소송(정보화) (1331-302)	210-15	관리용역비 내역변경

자료: 대법원

19) 통합발주로 수행하는 사업은 ① 2024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등기) 사업, ② 2024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③ 2024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④ 2024년 사법 UHD 사업임

그러나 공식적인 총사업비 조정 절차 없이 시스템 오픈 전에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시스템 오픈 후 시스템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이 중복 계상되어 총사업비 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짐.

즉, 사법업무전산화 사업과 전자소송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시켜 집행한 것은 타당하지 못함.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보건복지부)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ISP 구축 예산이 2024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 및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전용 증액을 통해 ISP 수립을 실시한 후 예비비 배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26년 법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전용 증액과 예비비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사업 예산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체계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전용 증액을 통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비용 3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음.

[ISP 수립 재원 마련을 위한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11.1.)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639-307)	민간경상보조 (320-01)	100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631-336)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일반 연구비 (260-01)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ISP 수립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631-336)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60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2640-304)	민간경상보조 (320-01)	164			
	합계		324			

자료: 보건복지부

더하여 보건복지부는 ISP 수립을 위해 상술한 전용(중) 집행 외에도 예비비 44억 7,000만원을 배정받아(2025.5.29.)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의 필요

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ISP 수립 비용을 전용을 통해 충당한 상황에 더하여 예비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할 행태임.

(다) 사업추진 지연 및 집행이 부진한 정보화 사업

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자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정보 수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2024년 말 개시 예정이었던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 완료 후 2024년 말 대국민 서비스 개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료수집 절차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어 2025년 10월로 공개 시점이 연기되었음.

그로 인하여 이후 절차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절차가 순연되어 소프트웨어 발주 및 구매가 지연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되는 일반연구비 5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음.[20)]

[2024년도 보호구역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연구비	1,689	-	1,689	1,177	501	24
자산취득비	371	-	371	358	-	13
합 계	2,060	-	2,060	1,535	501	37

자료: 경찰청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근거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법적근거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정보수집·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나 현재 수집된 정보에 대한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찰청은 보호구역 통합시스템의 주관기관으로서 통합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기준 마련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 2025년 6월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어 이월된 5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됨

②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시스템 개발비 집행률이 46.9%으로 저조하고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시행일(2024. 10. 20.)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을 두고 있지 않아 시스템 개발관련 구축 일정에 2차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2024년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시스템 개발비 집행률은 46.9%로 저조하고, 하드웨어(HW) 및 상용소프트웨어(SW)의 구입 집행률도 65.8%로 낮은 편임.

일정 지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개발일정 지연으로 2023년 시스템 구축 일정이 1차 조정되었고(구축 완료일 2026년 7월), 2024년에도 법무부 KICS 연계기관과의 연계 등 추가 개발기간 확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일정을 2개월을 연장하는 2차 조정이 이루어졌음.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일정 변경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개발	기존	2023. 7. 31. ~ 2024. 5. 1. (9개월, 275일)	2024. 5. 2. ~ 2025. 5. 1. (12개월, 365일)	2025. 5. 2. ~ 2026. 3. 31. (11개월, 334일)
	변경	2023. 7. 31. ~ 2024. 6. 30. (11개월, 335일)	2024. 7. 1. ~ 2025. 8. 31. (14개월, 427일)	2025. 9. 1. ~ 2026. 7. 31. (11개월, 427일)
			2024. 7. 1. ~ 2025. 10.31. (16개월, 488일)	**2025. 11. 1. ~ 2026. 9. 30. (11개월, 427일)**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존	2023. 12. 5. ~ 2024. 5. 31.	2024. 6. 1. ~ 2025. 5. 31. (12개월, 365일)	2025. 6. 1. ~ 2026. 4. 30. (11개월, 427일)
	변경	2023. 12. 5. ~ 2024. 7. 31.	2024. 8. 1. ~ 2025. 9. 30. (14개월, 395일)	2025. 10. 1. ~ 2026. 8. 31. (11개월, 427일)
			2024. 8. 1. ~ 2025 11. 30 (.16개월, 457일)	**2025. 12. 1. ~ 2026. 10. 31. (11개월, 427일)**

자료: 대법원

따라서 대법원은 동 시스템 구축에 있어 프로젝트 관리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감리체계를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 품질 및 일정관리를 충실히 하고, 관련 법률상 시행일 준수를 위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사업(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화상채팅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전 검토 및 사업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변경에 따라 계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었고, 이후 조달청 계약 의뢰 과정에서 계약 방식 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전액 불용되어 당초 계획한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음.

[2024년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당초 계획	추진 경과
ㅇ 입찰 공고 : 8월 중 ㅇ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8월 ~ 9월 초 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9월 초 ~ 11월 초 ㅇ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안정화 : 11월 중순 ㅇ 검수 및 사업 종료 : 11월 말	ㅇ (인권위) 사업계획안 위원장 결재 : 9. 5. ㅇ (인권위) 조달청 계약 의뢰 : 9. 11. ㅇ (조달청) 구매업무 협의 요청 : 9. 12. ㅇ (인권위) 구매의뢰 반려 요청 : 10. 8. ㅇ (조달청) 조달요청서 반려 및 재요청 : 10. 1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사업 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이 무산되고 편성된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 검토 및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시범사업 및 ISP 수립 등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등[21]에 따르면, 실증공모를 거쳐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실증공모가 완료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ISP·ISMP를 수립·검토하도록 규정[22]되고 있음.

또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ISP를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수립 완료 이전에 추진이 가능하나, 이는 ISP 중간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①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ISP 미수립 등의 사유로 국회가 감액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규 정보화 사업 구축 추진시 ISP 수립 및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신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ISP 수립 없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보화 사업비 2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국회 심의단계에서 ISP 미수립 등의 사유로 신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경비 중 개발비에서 62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신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실집행률은 28.1%에 불과한 상황임.

[ISP 수립 전·후 사업규모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ISP 수립 전(A)	ISP 수립 후(B)	차이(B-A)
전산개발	6,600	4,091	△2,509
전산장비	7,100	5,823	△1,277
계	**13,700**	**9,914**	**△3,786**

자료: 보건복지부

21)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2023.5.).

22)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2023.5.), 12쪽
시범·실증사업 후, 본 사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및 검토 신청

이와 같은 집행결과는 ISP와 같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 절차적 흠결로 인해 사업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ISP 수립결과에 따른 적정 사업계획·사업비를 도출한 이후에 신규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② 주신보 IT 운영 사업(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주신보 IT 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등 국회 심사를 우회하여 신규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주신보 IT 운영 사업 중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및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 개편' 내역사업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 등 급격한 사업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 주신보 IT운영 사업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계정명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주택신용보증계정	2024. 6.14.	기재부 협의	주신보IT운영 (2632-301)	일반연구비 (260-01)	992	사업수수료 (2631-304)	일반수용비 (210-01)	△992

자료: 금융위원회

하지만 동 사업 추진 시 PF 시장과 관련 있는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에 더하여 타 계정인 고유계정의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까지 합쳐 사업을 추진한 것은 회계적 책임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다소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③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사업(행정안전부)

2024년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사업에서는 정보화사업과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와 ISP를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진방식으로는 ISP 수립 시 실증공모의 결과물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실증공모의 결과가 ISP에 활용될 수 있도록 ISP 수립 이전에 실증공모를 추진 및 완료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효율화를 지원하고, 실영상 기반 학습 데이터플랫폼 및 재난분야 AI 알고리듬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외에 실증공모를 위한 2건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일정상 실증공모 사업보다 ISP가 먼저 종료되어 실증공모 사업의 최종 결과물이 ISP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음.[23)]

[시범개발적용 사업 및 실증공모 사업 개요]

구분	시범개발적용 사업	실증공모 사업
사업명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범개발 및 시범적용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사업비	8억 2,000만원	20억원
사업기간	**24.2.~24.12.**	**24.2.~24.12.**
목적	지능형 표준 프로토타입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6가지 유형) 시범 적용(2개 지자체)	지자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문제해결
내용	R&D 결과물을 적용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기술 실증	지자체 수요조사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영상분석 기술 및 지자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실증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의 경우 2023년부터 추진된 연구개발사업(R&D)인 '지능형 CCTV 및 관제시스템 표준 프로토타입 개발'의 연구결과를 지자체에 시범적용하는 사업으로서, ISP 사업은 AI 학습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설계가 주된 내용이므로 실증사업과 사업내용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2024년 실시된 2건의 실증공모 사업은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ISP를 거쳐 추진될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학습데이터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ISP 수립 이전에 실시 및 완료되는 것이 보다 적정하였을 것으로 보임.

23) 2건의 시범사업은 2024년 연말까지 추진되고 있어, 일정상 사업결과가 ISP 최종결과물 제출('24.8.9.)에 반영될 수 없었음.

총괄 보고서(정보화 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36,840	36,840	낙찰차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5,968	35,589	
법무부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64,817	64,81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수립	3,958	3,933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한 증액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7,840	11,75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7,144	6,811	
경찰청	교통행정전산화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60	1,537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4,974	8,177	
국가인권 위원회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423	163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등)	18,050	18,050	시범사업 및 ISP 수립 등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추진된 정보화 사업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주신보 IT 운영	6,304	5,701	
행정안전부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3,251	3,251	

10. 국고보조 사업

가. 개 요

(1) 개념 및 현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 또는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부담금·교부금 및 급부금을 말함.

국고보조금은 교부대상에 따라 자치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을 구분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될 수 있음.

교부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임.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경상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행하는 경상적 경비(기관운영비나 인건비, 여비 등)에 대한 보조이고, 자본보조금은 자본의 축적과 관련되는 토지매입·시설건축 및 자산취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의미함.[2]

예산과목 상 민간보조금에는 민간 경상보조(320-01목)·민간 자본보조(320-07목)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가 있음.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p257~258, 국회예산정책처, 2024.5.

최근 5년간 국고 보조사업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102조 2,775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109조 1,76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고 보조사업		1,150,433	1,223,734	1,466,286	1,022,775	1,091,766
	자치단체	852,243	863,564	837,194	829,424	893,295
	민간	298,190	360,170	629,092	193,351	198,471

주) 연도별 본예산 및 계획액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 자치단체보조사업

(가) 총괄

2024회계연도 자치단체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89조 3,295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89조 7,297억원 중 86조 1,959억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3,25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3조 2,086억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자치단체 보조사업	829,424	806,616	893,295	897,297	861,959	3,253	32,086	96.1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결산 기준 자치단체보조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5.5조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는 13.5%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고,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은 81.9%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2023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4년 소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0.1)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1.1%)보다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자치단체보조사업(A)	86.7	85.7	83.0	80.7	86.2	△0.1
정부 총지출(B)	609.7	601.0	682.4	610.7	638.0	1.1
전체 보조사업(C)	116.5	128.0	145.8	99.1	105.3	△2.0
총지출 대비(A/B)	14.2	14.3	12.2	13.2	13.5	△1.2
전체 보조사업 대비(A/C)	74.4	67.0	56.9	81.4	81.9	1.9

자료: 기획재정부

(나) 과목별·성질별 현황

예산과목별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예산현액 71.0조원 중 69.5조원이 집행(집행률 97.9%)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예산현액 18.7조원 중 16.7조원이 집행(집행률 89.2%)되었음. 집행률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3.0%p 감소하였음.

성질별로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3]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의무지출은 최근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음.[4] 2024년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현액 54.4조원 중 53.1조원이 집행(집행률 97.5%)되었고, 재량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35.3조원 중 33.1조원이 집행(집행률 93.9%)되었음.

과목별·성질별 집행률을 보면 경상보조 및 의무지출 보조는 증가하고 자본보조 및 재량지출 보조는 감소하였으며, 자본보조의 집행률 감소(△3.0%p)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3)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4의2호에 따르면,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

4)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의무지출	36.9	40.6	43.5	48.5	54.4
재량지출	50.3	46.4	41.8	35	35.3

주) 연도별 예산현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과목·성질별 결산]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년			2024년			집행률 증감 (F-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자치단체보조사업			83.5	80.7	96.6	89.7	86.2	96.1	△0.5
	과목별	경상보조(330-01)	66.0	64.5	97.7	71.0	69.5	97.9	0.2
		자본보조(330-03)	17.6	16.2	92.2	18.7	16.7	89.2	△3.0
	성질별	의무지출 보조	48.5	47.2	97.3	54.4	53.1	97.5	0.2
		재량지출 보조	35.0	33.4	95.5	35.3	33.1	93.9	△1.6

자료: 기획재정부

(다) 분야별 현황

16대 분야별로 살펴보면,[5]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은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에 편성되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71.2%)이며, 이어서 농림수산(8.6%), 환경(7.4%) 순임.

전년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로는 5조 448억원이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 6,450억원이 증가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등 8개 분야가 있음. 집행액이 감소한 분야로는 2,753억원이 감소한 환경 분야, 1,277억원이 감소한 보건 분야 등 7개 분야가 있음.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96.1%)보다 높았던 분야는 국방(100.0%), 통신(100.0%) 등이 있고, 평균보다 낮았던 분야로는 통일・외교(63.6%), 환경(85.1%) 등이 있음.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억원, %)

분 야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D/A
일반・지방행정	12,253	11,363	11,409	11,377	1.3	99.7	△876	△7.2
공공질서및안전	10,738	16,712	17,200	17,188	2.0	99.9	6,450	60.1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분류체계 기준

(단위: 억원, %)

분 야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D/A
통일・외교	192	293	293	186	0.0	63.6	△6	△3.2
국방	1	24	24	24	0.0	100.0	23	2,300.0
교육	3,939	3,680	3,680	3,388	0.4	92.1	△551	△14.0
문화및관광	17,077	18,599	18,609	17,986	2.1	96.6	909	5.3
환경	66,759	74,957	75,207	64,006	7.4	85.1	△2,753	△4.1
사회복지	563,122	629,121	628,970	613,571	71.2	97.6	50,448	9.0
보건	17,087	15,646	15,990	15,810	1.8	98.9	△1,277	△7.5
농림수산	73,537	77,970	80,418	73,816	8.6	91.8	279	0.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524	8,230	8,230	8,063	0.9	98.0	△461	△5.4
교통및물류	18,677	20,374	20,795	20,180	2.3	97.0	1,503	8.0
통신	632	1,039	1,039	1,039	0.1	100.0	407	64.3
국토및지역개발	13,954	15,198	15,344	15,237	1.8	99.3	1,282	9.2
과학기술	125	91	91	89	0.0	98.2	△35	△28.3
합 계	**806,616**	**893,295**	**897,297**	**861,959**	**100.0**	**96.1**	**55,343**	**6.8**

주)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없어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라) 회계별·기금별 현황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29개 기금 등 총 40개의 회계・기금에 편성되었고, 비중별로는 일반회계(70.7%), 특별회계(19.6%), 기금(9.6%) 순이었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는 집행액이 5조 6,503억원이 증가(10.2%)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집행액은 감소하였음. 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3,949억원 감소하여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4,152억원이 증가하였음. 기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1,336억원 감소하여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양호(98.2%)한 편이며, 특별회계(91.1%)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64.4%)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기금 전체의 집행률은 91.4%로, 남북협력기금(0%) 및 주택도시기금(65.1%)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일반회계	553,269	619,904	620,810	609,772	100.0	98.2	56,503	10.2
특별회계 (10개)	170,170	182,517	185,587	169,127	100.0	91.1	△1,043	△0.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0	97	97	72	0.0	74.1	32	80.6
교통시설특별회계	10,152	11,313	11,755	11,174	6.6	95.1	1,022	1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3,964	23,412	24,336	22,524	13.3	92.6	△1,440	△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4	220	220	184	0.1	83.5	△310	△62.8
양곡관리특별회계	531	448	559	559	0.3	100.0	28	5.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488	22,701	22,581	14,539	8.6	64.4	△3,949	△2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3,165	100,149	101,493	97,317	57.5	95.9	4,152	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6	4	4	4	0.0	100.0	△22	△84.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3	82	82	74	0.0	90.8	△69	△48.0
환경개선특별회계	23,168	24,090	24,460	22,680	13.4	92.7	△488	△2.1
기금 (29개)	83,176	90,875	90,900	83,059	100.0	91.4	△117	△0.1
고용보험기금	1	1	1	1	0.0	100.0	-	2.3
관광진흥개발기금	351	311	311	304	0.4	97.8	△46	△13.2
국가유산보호기금	506	493	493	493	0.6	100.0	△13	△2.6
국민건강증진기금	9,841	10,517	10,517	10,476	12.6	99.6	635	6.5
국민체육진흥기금	4,467	4,395	4,395	4,224	5.1	96.1	△243	△5.4
군인복지기금	1	1	1	1	0.0	100.0	-	-
금강수계관리기금	1,058	959	959	958	1.2	99.9	△100	△9.5
기후대응기금	3,089	2,249	2,249	2,249	2.7	100.0	△840	△27.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850	1,792	1,792	1,787	2.2	99.7	△63	△3.4
남북협력기금	-	105	105	-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30	464	464	463	0.6	99.6	△67	△12.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5,184	28,782	28,782	25,870	31.1	89.9	686	2.7
농지관리기금	173	152	152	152	0.2	100.0	△21	△12.4
문화예술진흥기금	2,072	2,358	2,358	2,357	2.8	100.0	285	13.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66	372	372	372	0.4	100.0	6	1.6
복권기금	3,800	3,751	3,751	3,751	4.5	100.0	△49	△1.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7	20	20	20	0.0	100.0	△17	△45.9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수산발전기금	213	233	233	222	0.3	95.3	9	4.0
양성평등기금	6,162	7,454	7,454	7,240	8.7	97.1	1,079	17.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59	435	435	426	0.5	97.8	△34	△7.3
영화발전기금	13	9	9	9	0.0	100.0	△4	△30.8
응급의료기금	1,754	1,842	1,842	1,769	2.1	96.0	15	0.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329	1,850	1,850	1,843	2.2	99.6	514	38.6
전력산업기반기금	2,763	2,514	2,514	2,445	2.9	97.3	△318	△11.5
주택도시기금	9,037	11,831	11,831	7,701	9.3	65.1	△1,336	△14.8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3	3	3	0.0	100.0	3	-
청소년육성기금	1,327	1,354	1,354	1,346	1.6	99.4	19	1.4
축산발전기금	2,377	2,371	2,396	2,324	2.8	97.0	△53	△2.2
한강수계관리기금	4,397	4,257	4,257	4,254	5.1	99.9	△142	△3.2
합 계	**806,616**	**893,295**	**897,297**	**861,959**	**100.0**	**96.1**	**55,343**	**6.9**

자료: 기획재정부

(마) 부처별·사업별 현황

2024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총 31개로, 보건복지부(60.8%)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환경부(7.6%), 국토교통부(7.6%) 순임.

이 중 외교부·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통일부(52.1%)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81.6%)는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현액이 1,0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집행률이 평균(96.1%)에 미달한 부처는 환경부(85.4%) 및 농림축산식품부(89.4%) 등 5개 부처임.

전년 대비 집행액 증감을 보면, 교육부(4조 7,998억원)·행정안전부(4,465억원)·보건복지부(1,998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질병관리청(△2,615억원)·고용노동부(△1,082억원) 등 13개 부처에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부처별 결산]

(단위: 억원, %)

부 처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보건복지부	521,629	536,632	534,443	523,627	60.8	98	1,998	0.4
환경부	65,690	76,361	76,757	65,587	7.6	85.4	△102	△0.2
국토교통부	63,970	70,151	70,573	65,694	7.6	93.1	1,723	2.7
농림축산식품부	51,098	55,695	57,596	51,492	6	89.4	394	0.8
교육부	5,484	51,617	53,935	53,482	6.2	99.2	47,998	875.2
행정안전부	20,579	24,553	25,087	25,044	2.9	99.8	4,465	21.7
여성가족부	12,341	14,491	14,484	14,257	1.7	98.4	1,916	15.5
문화체육관광부	10,827	12,065	12,075	11,454	1.3	94.9	627	5.8
산림청	10,260	10,945	11,071	10,879	1.3	98.3	619	6
해양수산부	11,053	10,393	10,788	10,440	1.2	96.8	△613	△5.5
산업통상자원부	6,805	7,196	7,196	7,031	0.8	97.7	226	3.3
국가유산청	6,250	6,534	6,534	6,532	0.8	100	282	4.5
기획재정부	6,889	6,000	6,000	5,999	0.7	100	△890	△12.9
고용노동부	3,480	2,505	2,505	2,398	0.3	95.7	△1,082	△31.1
농촌진흥청	2,309	2,223	2,247	2,239	0.3	99.6	△70	△3.0
중소벤처기업부	2,006	1,473	1,473	1,461	0.2	99.2	△545	△2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8	1,196	1,196	1,195	0.1	99.9	366	44.2
식품의약품안전처	714	745	745	745	0.1	100	30	4.3
법무부	366	372	372	372	0.0	100	6	1.6
소방청	375	237	237	237	0.0	100	△137	△36.7
통일부	120	222	222	116	0.0	52.1	△5	△3.8
질병관리청	3,005	171	457	390	0.0	85.4	△2,615	△87
대법원	142	142	142	142	0.0	100	-	-
국가보훈부	84	106	106	94	0.0	89.3	11	12.8
외교부	72	70	70	70	0.0	100	△2	△2.1
경찰청	66	67	67	67	0.0	100	1	1.4
방위사업청	-	23	23	23	0.0	100	23	순증
새만금개발청	130	22	22	20	0.0	90.9	△110	△84.6

(단위: 억원, %)

부 처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4	5	5	4	0.0	81.6	△10	△7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	4	4	4	0.0	100	△22	△84.7
국방부	1	1	1	1	0.0	100	-	-
합 계	**806,613**	**892,217**	**896,433**	**861,096**	**100**	**96.1**	**54,483**	**6.8**

주 1) 부처 순서는 2024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주 2) 비목(330-01·330-03) 기준으로 작성
주 3)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2024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중앙관서 집행률(교부율)은 예산현액 89조 6,4333억원 중 86조 1,096억원이 자치단체에 교부되어 96.1%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더한 교부현액 91조 4,129억원 중 83조 5,742억원이 집행되어 91.4%에 그쳤음.

부처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4년 부처 전체의 실집행률(91.4%)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한 부처는 총 19개임. 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실집행률이 24.1%로 가장 낮고, 이어서 질병관리청(40.6%), 중소벤처기업부(51.3%) 순임.

[2024년 부처별 자치단체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보건복지부	128	536,632	4,192	534,443	523,627	98	524,913	514,140	97.9
환경부	104	76,361	734	76,757	65,587	85.4	82,228	59,901	72.8
국토교통부	178	70,151	394	70,573	65,694	93.1	76,992	64,068	83.2
농림축산식품부	91	55,695	612	57,596	51,492	89.4	56,679	50,368	88.9
교육부	14	51,617	3,687	53,935	53,482	99.2	55,310	53,543	96.8
행정안전부	44	24,553	558	25,087	25,044	99.8	25,098	18,769	74.8
여성가족부	20	14,491	725	14,484	14,257	98.4	14,496	12,734	87.8
문화체육관광부	76	12,065	153	12,075	11,454	94.9	11,454	10,410	90.9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산림청	35	10,945	313	11,071	10,879	98.3	11,592	9,935	85.7
해양수산부	65	10,393	160	10,788	10,440	96.8	18,796	10,322	54.9
산업통상자원부	33	7,196	218	7,196	7,031	97.7	7,031	6,511	92.6
국가유산청	21	6,534	311	6,534	6,532	100	6,990	6,543	93.6
기획재정부	20	6,000	300	6,000	5,999	100	10,697	9,661	90.3
고용노동부	21	2,505	119	2,505	2,398	95.7	2,398	2,081	86.8
농촌진흥청	18	2,223	123	2,247	2,239	99.6	2,775	2,042	73.6
중소벤처기업부	12	1,473	123	1,473	1,461	99.2	2,440	1,253	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196	109	1,196	1,195	99.9	1,195	1,183	99
식품의약품안전처	11	745	68	745	745	100	777	754	97
법무부	1	372	372	372	372	100	372	358	96.2
소방청	4	237	59	237	237	100	237	190	80.2
통일부	4	222	56	222	116	52.1	160	132	82.5
질병관리청	6	171	28	457	390	85.4	1,051	427	40.6
대법원	1	142	142	142	142	100	142	138	97.5
국가보훈부	3	106	35	106	94	89.3	117	100	85.5
외교부	3	70	23	70	70	100	70	69	98.6
경찰청	2	67	33	67	67	100	67	67	99.9
방위사업청	1	23	23	23	23	100	23	19	79.8
새만금개발청	2	22	11	22	20	90.9	20	20	100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	5	5	5	4	81.6	4	2	55.1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2	4	2	4	4	100	4	1	24.1
국방부	1	1	1	1	1	100	1	1	100
합 계	**933**	**892,217**	**956**	**896,433**	**861,096**	**96.1**	**914,129**	**835,742**	**91.4**

주 1) 부처 순서는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주 2) 비목(330-01·330-03) 기준으로 작성
주 3)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사업별로 보면 자치단체보조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사업·의료급여 사업·생계급여 사업 및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등 순임.

[2024년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현액 상위 10개 세부사업]

(단위: 억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기초연금지급	199,767	195,867	98.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	89,355	84,355	94.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생계급여	75,132	73,589	97.9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8,885	28,885	1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공인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	28,678	25,766	89.8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	26,999	26,987	100.0
교육부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 지원	28,501	28,501	1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22,808	22,805	100.0
환경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21,440	13,458	62.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급	21,102	21,102	100.0

주) 연도별 예산현액 및 계획현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

(2) 민간보조사업

(가) 총괄

2024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19조 8,471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조 3,475억원 중 19조 836억원이 집행(집행률 93.8%)되고, 2,68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9,951억원이 불용되었음.

[표 2] [2024년 민간보조사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민간 보조사업	193,351	184,268	198,471	203,475	190,836	2,687	9,951	93.8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보조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6,568억원 감소하였음.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는 3.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전체 보조사업 대비 비중은 18.1%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민간보조사업 결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8.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1.1%)보다 낮은 수준임.

[표 3] [최근 5년간 민간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민간보조사업(A)	29.8	42.3	62.9	18.4	19.1	△8.6
정부 총지출(B)	609.7	601.0	682.4	610.7	638.0	1.1
전체 보조사업(C)	116.5	128.0	145.8	99.1	105.3	△2.0
총지출 대비(A/B)	4.9	7.0	9.2	3.0	3.0	△11.6
전체 보조사업 대비(A/C)	25.6	33.0	43.1	18.6	18.1	△6.7

자료: 기획재정부

(나) 과목별·성질별 현황

예산과목별로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서 예산현액 16.7조원 중 15.8조원이 집행(집행률 95.0%)되었고, 민간 자본보조에서 예산현액 3.7조원 중 3.3조원이 집행(집행률 88.4%)되었음. 집행률은 민간 경상보조에서 전년 대비 2.8%p 증가하였고, 민간 자본보조에서 3.5%p 감소하였음.

성질별로 보면 의무지출 보조에서 예산현액 0.7조원 중 0.7조원이 집행(집행률 98.8%)되었고, 재량지출 보조에서 19.6조원 중 18.3조원이 집행(집행률 93.6%)되었음.[6)]

과목별・성질별 집행률은 자본보조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경상보조의 집행률 증가(2.8%p)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2024년 민간보조사업 과목·성질별 결산]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년			2024년			집행률 증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F-C)
민간보조사업			20.0	18.4	92.2	20.3	19.1	93.8	1.6
	과목별	경상보조(320-01)	16.3	15.0	92.2	16.7	15.8	95.0	2.8
		자본보조(320-07)	3.7	3.4	91.9	3.7	3.3	88.4	△3.5
	성질별	의무지출 보조	0.8	0.7	96.9	0.7	0.7	98.8	1.9
		재량지출 보조	19.2	17.7	92.0	19.6	18.3	93.6	1.6

자료: 기획재정부

(다) 분야별 현황

16대 분야별로 살펴보면,[7)] 2024년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에 편성되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6.8%)

6)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민간보조사업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의무지출	0.8	3.2	8.2	0.8	0.7
재량지출	30.7	40.7	56.5	19.2	19.6

주) 연도별 예산현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분류체계 기준

이며, 이어서 농림수산(20.4%), 문화및관광(17.2%) 순임.

전년 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로는 6,250억원이 증가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4,153억원이 증가한 통일·외교 분야 등이 있음. 집행액이 감소한 분야로는 2,892억원이 감소한 문화및관광 분야, 1,281억원이 감소한 보건 분야 등이 있음.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93.8%)보다 높았던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100%), 국토및지역개발(100%) 등이 있고, 평균보다 낮았던 분야로는 통일·외교(58.5%), 환경(84.9%) 등이 있음.

[표 4] [2024년 민간보조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억원, %)

분 야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D/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집행률 (C/B)		
일반·지방행정	1,300	1,757	1,668	1,645	0.9	98.6	345	26.5
공공질서및안전	1,878	1,904	1,904	1,904	1.0	100.0	26	1.4
통일·외교	3,174	12,533	12,529	7,327	3.8	58.5	4,153	130.8
국방	459	448	448	447	0.2	99.8	△12	△2.5
교육	4,399	4,848	4,848	4,827	2.5	99.6	427	9.7
문화및관광	35,666	32,969	32,972	32,774	17.2	99.4	△2,892	△8.1
환경	9,361	10,791	11,084	9,415	4.9	84.9	54	0.6
사회복지	15,661	17,101	17,102	17,005	8.9	99.4	1,344	8.6
보건	7,745	5,628	6,494	6,464	3.4	99.5	△1,281	△16.5
농림수산	38,570	38,943	42,219	39,016	20.4	92.4	445	1.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4,817	52,841	53,026	51,067	26.8	96.3	6,250	13.9
교통및물류	16,780	15,345	15,818	15,589	8.2	98.6	△1,191	△7.1
통신	1,352	908	908	903	0.5	99.5	△449	△33.2
국토및지역개발	2,360	1,855	1,855	1,855	1.0	100.0	△505	△21.4
과학기술	746	600	600	600	0.3	100.0	△146	△19.6
합 계	**184,268**	**198,471**	**203,475**	**190,836**	**100.0**	**93.8**	**6,569**	**3.6**

주)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민간보조사업이 없어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라) 회계별·기금별 현황

2024년 민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36개 기금 등 총 47개의 회계·기금에 편성되었고, 비중별로는 특별회계(33.6%), 일반회계(33.4%), 기금(33.0%) 순이었음.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액이 각각 2.397억원(3.7%), 4,873억원 증가(8.1%)한 반면, 기금의 집행액은 702억원 감소(△1.2%) 감소하였음. 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3,152억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기금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2,787억원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양호(99.7%)한 편이며, 특별회계(91.9%)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86.3%)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기금 전체의 집행률은 89.8%로, 남북협력기금(1.7%) 및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73.5%)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민간보조사업 회계·기금별 결산]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일반회계	64,649	66,278	67,228	67,046	100	99.7	2,397	3.7
특별회계 (10개)	59,843	66,612	70,448	64,716	100	91.9	4,873	8.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481	3,112	3,112	3,088	4.8	99.2	607	24.5
교통시설특별회계	10,494	9,426	9,899	9,726	15.0	98.2	△768	△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742	28,794	32,025	29,023	44.8	90.6	281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71	179	179	179	0.3	100.0	8	4.7
양곡관리특별회계	169	97	165	165	0.3	100.0	△4	△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703	18,244	18,364	15,855	24.5	86.3	3,152	2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	9	9	0.0	100.0	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016	4,579	4,525	4,523	7.0	100.0	1,507	49.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30	776	776	776	1.2	100.0	△54	△6.5
환경개선특별회계	1,237	1,394	1,394	1,374	2.1	98.5	137	11.1
기금 (36개)	59,776	65,581	65,798	59,074	100	89.8	△702	△1.2
고용보험기금	2,627	2,406	2,406	2,397	4.1	99.6	△230	△8.8
과학기술진흥기금	260	224	224	224	0.4	100.0	△36	△14.0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관광진흥개발기금	5,187	4,903	4,903	4,902	8.3	100.0	△285	△5.5
국가유산보호기금	219	223	223	223	0.4	100.0	3	1.5
국민건강증진기금	1,184	1,110	1,110	1,110	1.9	100.0	-75	△6.3
국민체육진흥기금	10,541	9,414	9,414	9,279	15.7	98.6	△1,261	△12.0
군인복지기금	156	145	145	145	0.2	100.0	△12	△7.6
기후대응기금	5,931	5,507	5,720	5,444	9.2	95.2	△487	△8.2
남북협력기금	90	5,286	5,286	89	0.2	1.7	△1	△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59	1,444	1,444	1,293	2.2	89.6	△166	△11.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6	42	42	35	0.1	84.3	9	36.8
농지관리기금	1,240	1,432	1,432	1,432	2.4	100.0	192	15.5
문화예술진흥기금	1,133	1,044	1,044	1,038	1.8	99.5	△94	△8.3
방송통신발전기금	3,473	2,721	2,721	2,715	4.6	99.8	△758	△21.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80	195	195	195	0.3	100.0	15	8.3
보훈기금	59	67	67	67	0.1	99.8	8	13.8
복권기금	2,424	2,726	2,726	2,726	4.6	100.0	302	12.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5	43	43	43	0.1	100.0	9	25.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	52	52	52	0.1	100.0	43	464.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8	156	156	156	0.3	100.0	28	22.3
석면피해구제기금	4	4	4	4	0.0	100.0	△0	△3.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972	12,171	12,171	12,171	20.6	100.0	3,200	35.7
수산발전기금	35	36	36	36	0.1	100.0	0	0.6
양성평등기금	100	71	71	71	0.1	100.0	△28	△28.2
언론진흥기금	63	49	49	49	0.1	99.8	△14	△22.6
영화발전기금	323	232	232	216	0.4	93.2	△107	△33.1
응급의료기금	268	233	233	232	0.4	99.7	△36	△13.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67	168	168	166	0.3	99.0	△1	△0.7
전력산업기반기금	9,396	6,707	6,707	6,608	11.2	98.5	△2,787	△29.7
정보통신진흥기금	66	74	74	74	0.1	100.0	7	10.8
주택도시기금	1,183	1,236	1,236	1,236	2.1	100.0	53	4.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66	3,006	3,006	2,209	3.7	73.5	1,943	730.2
지역신문발전기금	46	52	52	51	0.1	97.0	5	10.5
청소년육성기금	160	55	55	55	0.1	100.0	△105	△65.8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축산발전기금	2,350	2,345	2,349	2,329	3.9	99.1	△21	△0.9
한강수계관리기금	6	2	2	2	0.0	100.0	△4	△70.1
합 계	**184,268**	**198,471**	**203,475**	**190,836**	**100**	**93.8**	**6,569**	**3.6**

자료: 기획재정부

(마) 부처별·사업별 현황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총 42개로,[8] 농림축산식품부(17.6%)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15.5%), 산업통상자원부(13.3%) 순임.

이 중 대법원·경찰청 등 3개 부처는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통일부(3.6%)와 환경부(84.5%)는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이 1,00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집행률이 평균(93.8%)에 미달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91.5%)·환경부(84.5%) 및 통일부(3.6%) 3개 부처임.

전년 대비 집행액 증감을 보면, 외교부(4,168억원)·중소벤처기업부(3,726억원) 등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2,707억원)·국토교통부(△1,303억원) 등 26개 부처에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표 5] [2024년 민간보조사업 부처별 결산]

(단위: 억원, %)

부 처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농림축산식품부	32,892	33,379	36,681	33,565	17.6	91.5	673	2.0
문화체육관광부	32,287	29,769	29,772	29,580	15.5	99.4	△2,707	△8.4
산업통상자원부	22,957	26,387	26,532	25,371	13.3	95.6	2,415	10.5
중소벤처기업부	19,353	23,876	23,876	23,079	12.1	96.7	3,726	19.3
국토교통부	15,236	13,637	14,060	13,933	7.3	99.1	△1,303	△8.6
보건복지부	12,362	10,697	11,507	11,470	6.0	99.7	△892	△7.2
환경부	7,270	8,875	8,995	7,601	4.0	84.5	331	4.5

8) 예산 편성액 없이 예산현액만 있는 우주항공청 제외

(단위: 억원, %)

부 처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기획재정부	8,405	8,279	8,494	8,217	4.3	96.7	△188	△2.2
외교부	2,881	7,050	7,050	7,050	3.7	100.0	4,169	144.7
해양수산부	6,523	6,395	6,445	6,242	3.3	96.8	△281	△4.3
고용노동부	4,841	5,974	5,917	5,902	3.1	99.7	1,061	21.9
통일부	208	5,396	5,396	195	0.1	3.6	△12	△6.0
교육부	4,399	5,078	5,078	5,055	2.6	99.5	656	1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29	3,490	3,488	3,481	1.8	93.8	△947	△21.4
산림청	1,784	1,869	1,843	1,833	1.0	99.5	49	2.8
법무부	1,417	1,422	1,422	1,422	0.7	100.0	5	0.4
국가보훈부	1,287	1,176	1,232	1,186	0.6	96.3	△100	△7.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4	1,110	1,019	1,019	0.5	100.0	535	110.5
국가유산청	917	1,096	1,096	1,096	0.6	100.0	178	19.5
특허청	830	776	776	776	0.4	100.0	△54	△6.5
행정안전부	830	731	731	727	0.4	99.5	△103	△12.4
여성가족부	882	525	525	525	0.3	100.0	△356	△40.4
국방부	432	423	423	422	0.2	99.8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	447	372	372	365	0.2	98.3	△82	△18.4
금융위원회	172	136	136	130	0.1	95.4	△42	△24.4
질병관리청	227	132	132	132	0.1	67.7	△95	△41.8
방송통신위원회	131	122	122	117	0.1	96.2	△14	△10.3
국회	94	104	104	93	0.0	88.8	△1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3	79	79	79	0.0	99.9	△4	△4.8
대법원	35	43	43	43	0.0	100.0	9	25.2
농촌진흥청	48	37	37	37	0.0	100.0	△12	△24.7
방위사업청	27	28	28	27	0.0	97.1	0	0.0
경찰청	19	19	19	19	0.0	100.0	-	-
해양경찰청	21	17	17	17	0.0	99.7	△5	△21.8
국세청	37	15	15	14	0.0	96.0	△23	△62.0
조달청	-	9	9	9	0.0	100.0	9	순증
재외동포청	2	8	4	3	0.0	67.7	1	47.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3	3	3	0.0	100.0	△1	△21.2
공정거래위원회	7	2	2	2	0.0	100.0	△6	△74.8
국가인권위원회	2	2	2	2	0.0	97.6	△0	△9.8

(단위: 억원, %)

부 처	2023년 결산 (A)	2024년					전년대비 (D=C-A)	
		예산	예산현액 (B)	결산 (C)	비중	C/B		D/A
국민권익위원회	2	1	1	1	0.0	100.0	△0	△24.7
소방청	1	1	1	1	0.0	100.0	△0	△10.0
우주항공청	-	-	2	2	0.0	99.8	2	순증
합 계	**184,264**	**198,540**	**203,486**	**190,843**	**100.0**	**93.8**	**6,579**	**3.6**

주 1) 부처 순서는 2024년 민간 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주 2) 비목(320-01・320-07) 기준으로 작성
주 3)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의 중앙관서 집행률(교부율)은 예산현액 20조 3,486억원 중 19조 845억원이 민간에 교부되어 93.8%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의 실집행률은 교부현액 19조 3,323억원 중 17조 6,311억원이 집행되어 91.2%에 그쳤음.

부처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4년 부처 전체의 실집행률(91.2%)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한 부처는 총 4개임. 이 중 환경부의 실집행률이 66.9%로 가장 낮고, 이어서 해양수산부(77.1%), 산업통상자원부(81.2%) 순으로 나타남.

[표 6] [2024년 부처별 민간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민간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농림축산식품부	119	33,379	280	36,681	33,565	91.5	34,211	33,290	97.3
문화체육관광부	142	29,769	210	29,772	29,580	99.4	29,580	27,259	92.2
산업통상자원부	80	26,387	330	26,532	25,371	95.6	25,371	20,611	81.2
중소벤처기업부	44	23,876	543	23,876	23,079	96.7	24,046	22,897	95.2
국토교통부	25	13,637	545	14,060	13,933	99.1	14,219	13,999	98.5
보건복지부	114	10,697	94	11,507	11,470	99.7	9,205	8,416	91.4
환경부	24	8,875	370	8,995	7,601	84.5	9,347	6,255	66.9
기획재정부	34	8,279	244	8,494	8,217	96.7	8,485	7,754	91.4
외교부	5	7,050	1,410	7,050	7,050	100	7,050	7,024	99.6
해양수산부	60	6,395	107	6,445	6,242	96.8	7,093	5,466	77.1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민간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고용노동부	22	5,974	272	5,917	5,902	99.7	5,770	5,345	92.6
통일부	13	5,396	415	5,396	195	3.6	195	189	96.9
교육부	31	5,078	164	5,078	5,057	99.6	5,062	4,441	8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	3,490	63	3,488	3,481	99.8	3,481	3,401	97.7
산림청	19	1,869	98	1,843	1,833	99.5	1,842	1,777	96.5
법무부	12	1,422	119	1,422	1,422	100	1,422	1,404	98.7
국가보훈부	22	1,176	53	1,232	1,186	96.3	1,227	1,186	9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1,110	555	1,019	1,019	100	1,019	1,019	100
국가유산청	25	1,096	44	1,096	1,096	100	1,142	1,088	95.3
특허청	8	776	97	776	776	100	776	772	99.5
행정안전부	20	731	37	731	727	99.5	726	710	97.6
여성가족부	10	525	53	525	525	100	525	519	98.9
국방부	3	423	141	423	422	99.8	422	417	98.8
식품의약품안전처	8	372	46	372	365	98.3	365	356	97.5
금융위원회	3	136	45	136	130	95.4	130	127	97.9
질병관리청	9	132	15	132	132	99.9	143	128	89.6
방송통신위원회	6	122	20	122	117	96.2	117	116	99.1
국회	4	104	26	104	93	88.8	93	86	9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79	26	79	79	99.9	79	79	99.9
대법원	2	43	22	43	43	100	43	43	100
농촌진흥청	2	37	18	37	37	100	37	37	99.2
방위사업청	2	28	14	28	27	97.1	27	27	99.9
경찰청	1	19	19	19	19	100	19	19	100
해양경찰청	2	17	8	17	17	99.7	17	17	99.7
국세청	1	15	15	15	14	96	14	14	100
조달청	1	9	9	9	9	100	9	9	100.0
재외동포청	3	8	3	4	3	67.7	3	3	99.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3	1	3	3	100	3	3	100.0

(단위: 개, 억원, %)

구 분		중앙관서					민간		
소관	세부 사업수 (A)	예산액 (B)	사업당 예산 (B/A)	예산 현액 (C)	교부액 (D)	교부율 (D/C)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공정거래위원회	1	2	2	2	2	100	2	2	100
국가인권위원회	1	2	2	2	2	97.6	2	2	97.5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1	100	1	1	99.8
소방청	1	1	1	1	1	100	1	1	100
우주항공청	1	-	-	2	2	100.0	2	2	96.9
합 계	**943**	**198,540**	**211**	**203,486**	**190,845**	**93.8**	**193,323**	**176,311**	**91.2**

주 1) 부처 순서는 2024년 민간 보조사업 예산 규모 순임
2) 비목(320-01・320-07) 기준으로 작성
3)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사업별로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농업재해보험 및 외교부의 인도적지원(ODA) 사업 등 순임.

[2024년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상위 10개 세부사업]

(단위: 억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리시설개보수	8,735	6941	79.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업재해보험	7,416	7119	96.0
외교부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	7,034	7,034	10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6,856	5,859	85.5
환경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5,482	4109	75.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시장경영혁신지원	4,167	4167	100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PSO보상	3,612	3612	10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13	3209	99.9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민자도로건설지원	3,154	3134	99.4

(단위: 억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비용	2,970	2173	73.2

주) 연도별 예산현액 및 계획현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

나. 검토의견

(1) 개요

보조금의 편성·교부 및 보조사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외에 같은 법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실적을 충실히 보고·정산할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도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24년 보조사업 추진 부처의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편성 단계에서 중복사업 여부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교부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 주요 고려사항이 미흡하게 검토되어 연례적 이·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읍.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단계에서도 내용변경 및 비목변경 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관리·감독 단계에 있어서도 실적 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지연, 부적절한 이월 및 재이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2) 편성 단계

(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히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민간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대상인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됨.[9)]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부적정(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기존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와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2024년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후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포항지진 피해자 심리지원과 더불어 지진·사고 등 사회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종합적 심리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신규로 예산액 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경남 부곡 소재)가 이미 운영 중에 있어 권역 간 중복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24년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전액은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사업으로 이·전용(감)되었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과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가 권고되었음. 그럼에도 사업이 추진되어 기존

---

9)「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07p.)
ㅇ 국고보조사업 운용·집행상의 탄력성 제고 등을 위해 유사· 영세 보조사업은 최대한 통폐합
-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일몰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요구
16. 민간보조 사업 (102p.)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ㅇ 중점 검토 사항
- 유사중복지원 여부
□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임.

② 기존 사업과의 지원대상 및 내용 중복 부적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사업의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은 국립예술단체가 보유한 공연을 권역별 지역대표 공연장과 매칭하여 전막공연 형태로 유통할 수 있도록 공연 제작·유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의 경우 국립오페라단 등 8개 단체에 대해 총 51억 8,600만원이 지원되었음.

지원 대상이 된 8개 국립예술 단체들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경상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 비 내 지역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음. 두 사업 모두 국립예술 단체의 지역 공연에 대한 지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됨. 실제로 동일 작품이 양 사업의 실적으로 중복 보고되는 사례도 확인되었음.[10)]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및 '지역공연' 사업 비교]

구분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	지역공연 사업
세부사업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1632-327)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1631-300)
지원대상	국립예술단체	국립예술단체
지원대상	지역 전막공연	지역 공연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협력 문예회관 자부담 10%)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24 지원금액	51억 8,600만원	86억 7,6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복되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조금이 서로 다른 사업에서 지원될 경우 예산혼용 및 중복집행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 예산 편성 시,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사업여건 및 실제 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0)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 동일 날짜의 동일한 공연이 각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립발레단 및 국립합창단의 경우에는 두 사업에서 같은 작품을 공연하고 있음.

일부 보조사업에서 사업의 제반여건이나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전절차 이행 등 제반여건 및 실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액을 적정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①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부적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여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2024년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구축 내역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예산액 10억원이 불용 처리됨.

이는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지방비 미매칭 등 사업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데 기인함. 특히 2024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으나, 그 시점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9~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예산의 전액 불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여건이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음.

② 보조사업 수요의 면밀한 추산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안정관리 등 추진' 사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배달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업소 수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산정하지 않고 추진되었다가 실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 업소 수 등 지원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안정관리 등 추진 사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서 2024년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2024년 배달지원 예산은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9억 2,800만원이 교부되고, 교부된 19억 2,8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이 실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49.8%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지원대상 업소 수가 배달 여부와 무관하게 예산안 편성 당시 전체 외식업소 수 기준으로 5,125개소로 산정되었으나,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시 반영된

업소 수는 2,210개소에 불과하고, 실지원대상이 된 업소의 수는 1,427개에 그치고 있어 실지원대상이 당초 계획 대비 28.5%에 불과하였음. 또한 보조금 교부시 금액 산출 기준인 1,600건에 비하여 실집행내역 기준 평균 배달 건수 역시 1,121건에 불과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협의와 군 단위 배달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하여 교부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배달수수료 지원에 따른 유인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외식업소를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배달건수 역시 지자체의 신청수요만을 바탕으로 과다산정이 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보조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조달청의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업 중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조달청이 40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일반용역계약을 통하여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보조사업 수행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달청이 40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그러나 실제로 조달청은 기본계획 수립·관리기관 감독 및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급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의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의 경우 1억 1,466만원을 지급하였음.

한국조달연구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보조사업 수행방식이 간접보조사업이 아님에도 간접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업구조 상에서는 한국조달연구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보조사업 관련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도 있음.

따라서 동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한국조달연구원 위탁 없이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또는 한국조달연구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 동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교부 단계

(가) 교부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지방비 부담능력・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1] 이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것으로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 결정 시 이러한 주요 고려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지침상의 주요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이 교부되어, 과다한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고려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검토 미흡(소방청)

소방청의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실무협의체 회의 및 국고보조금 집행점검회의에서 정상추진 및 집행 가능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소방청은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전문적인 화재진압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실화재 훈련

1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을 구축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사업으로, 2024년 사업이 계획된 4개 지역에 예산현액 54억 6,000만원 전액 교부되었으나 20억 9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36.8%)되었고, 34억 5,100만원이 이월됨.

소방청은 2024년 3월에 1차로 약 9억 5,500만원을 시·도 소방본부에 교부하였음. 서울의 경우 2024년 4월에 잔여분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충청남도·경상남도·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8월 중순에 있었던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 결과 2024년 내 국비 전액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9월에 잔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그러나 서울의 경우 실무협의체 2차 회의까지는 정상 추진 중으로 판단되었으나, 전액 교부 직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 및 시공 일정이 조정되어 전액 이월되었고, 충청남도·경상남도·전북특별자치도는 국고보조금집행 점검 회의에서 집행 가능으로 판단하여 전액 교부하였으나 계약절차지연·행정절차 소요·업체 간 분쟁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2024년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충청남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1,092	1,365	1,092	273	-	80.0
서울특별시	1,365	1,365	1,365	1,365	-	1,365	-	1,365	-	1,365	-	0.0
경상남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	1,365	-	1,365	-	0.0
전북특별자치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917	1,365	917	448	-	67.2
합계	5,460	5,460	5,460	5,460	-	5,460	2,009	5,460	2,009	3,451	-	36.8

자료: 소방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소방청은 향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검토 미흡(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집행 실적 등 점검 결과를 보조금 교부 결정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체육관 등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당해연도 교부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예산현액 847억 8,700만원 중 787억원이 교부(교부율 92.8%)되었으나 보조사업자 실집행률은 39.4%에 불과하였고, 2024년 신규 선정된 27개 센터 중 14개소는 실집행액이 전무하며 전체 실집행률은 19.9%에 그쳤음.

실집행이 부진한 주요 사유는 중앙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이월금 보유 현황 검토 미흡(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기존 실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이월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4년 예산액이 전액교부되어 재차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이월금 보유 현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질병관리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감염병동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2024년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24년도 교부 예산액 63억 8,8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과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고,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1~2023년 실집행률이 0.2%~4.4%로 극히 저조하였고, 2024년에도 전년도 이월액 177억 1,800만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4년도 예산

액 전액을 교부한 결과, 실제 집행액은 52억 2,400만원(집행률 21.6%)에 불과하며 교부현액 중 188억 8,200만원이 다시 이월되는 등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향후 질병관리청은 사업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이월금 보유 현황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금 분할교부 규정 준수 필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12)]

이는 보조금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 교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나, 일부 보조사업에서는 보조금을 1회에 일괄 교부하는 등 지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편의적 집행을 지양하고 분할교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① 보조금 일괄 교부 부적정(보건복지부)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 민간보조사업(95p.) 12. 자치단체보조사업(115p.)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2024년 상반기 1회에 전액을 교부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분할교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한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7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4,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4%에 그침.

자치단체의 교부 신청 후 해당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및 인·허가 등 사전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2024년 4월 21일 보조금 전액을 1회에 교부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분할교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② 보조금 일괄 교부 부적정(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2024년 예산액 전액을 4월 1일에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일괄 교부하여 재차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침 상의 분할교부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폐자원에너지 회수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임. 동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2024년의 경우 2023년도 미집행액 중 49억 6,800만원이 이월된 상태에서 2024년 예산액 77억 1,500만원 전액을 4월 1일에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일괄 교부하여, 2024년 교부현액 126억 8,300만원 중 70억 5,000만원만이 실집행(실집행률 55.6%)되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교부시 보조사업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 분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현황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침에 따른 분할교부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사업수행 단계

(가) 보조사업 내용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 준수 필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13] 사업 종료 후에야 계획 변경이 승인되는 등 절차가 사후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승인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로진출지원' 사업 중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은 민간 유통사와 협업하여 어워즈를 개최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동 사업은 당초 뷰티·푸드·가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개·추천 방식을 병행하여 2024년 6~7월 내 행사 개최 후 연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뷰티·푸드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만을 통하여 2024년 12월에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 10월 10일 변경된 사업 내용으로 'K-전략품목 어워즈' 모집공고가 게시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K-전략품목 어워즈'가 개최된 후 12월 19일에 세부추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3일에 이를 승인하였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2024년 10월 변경된 내용으로 모집공고가 게시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이 완료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

따라서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미흡한 사업관리 행태가 드러난 것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사업 비목변경 시 지침상 절차 준수 필요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사업의 비목 변경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세목 조정을 요청할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14] 세목조정 종료 후 기재부와 협의를 실시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정하므로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의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기반확보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임. 당초 인건비·기본경비를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금(4억원)과 AI 시설 등 자산취득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금(18억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보조금 중 일부인 8억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2024.2.22.)후 뒤늦게(3.21.) 협의를 실시하였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을 요청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조사업자가 아닌 중앙부처차원의 계획 변경으로 절차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체 세목 조정 시행 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설명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는 보조금 예산의 비목 변경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민간보조금 비목 조정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관리·감독 단계

1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2p.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ex. 경상보조↔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 이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9p.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간접)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ex. 경상보조↔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 이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법령상 실적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필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1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 제출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1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그런데 2024년에 보조사업을 추진한 46개 부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정산 대상 보조사업 수 총 13,107개[17] 중 2,199개 사업이 법령에 따른 기한 내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기한 내 제출률 83.2%), 이 중 20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삭감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음.

[2024년 부처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 %)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제출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환경부	2,665	1,873	70.3	9	738	542	73.4	1
농림축산식품부	1,480	1,477	99.8	-	641	623	97.2	-
보건복지부	1,223	1,156	94.5	-	505	464	91.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1,143	906	79.3	-
산업통상자원부	101	34	33.7	-	682	259	37.7	-
문화체육관광부	166	109	65.7	-	565	450	79.6	3
해양수산부	552	490	88.8	5	124	117	94.4	-
기획재정부	107	102	95.3	-	306	290	94.8	-
행정안전부	243	219	90.1	1	168	164	97.6	-
국토교통부	268	252	94.0	-	48	48	100	
질병관리청	47	47	100	-	75	75	100	-
산림청	83	81	97.6	-	38	38	100	-
중소벤처기업부	12	10	83.3	-	98	96	98.0	-
국가유산청	53	40	75.5	-	52	51	98.1	-
국가보훈부	18	18	100	-	85	84	98.8	-
방송통신위원회	-	-	-	-	96	96	1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28	100	-	64	64	100	-
교육부	12	12	100	-	72	72	100	-
통일부	5	5	100	-	72	71	98.6	-
여성가족부	51	50	98.0	-	14	14	100	-
금융위원회	-	-	-	-	61	61	100	-

17) 내역사업 단위 기준으로 자치단체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수를 더한 수임.(다만, 한 내역사업에 자치단체보조 예산과 민간보조 예산이 모두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

(단위: 개, %)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제출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정산대상 보조사업수 (내역사업 단위)(A)	기한내 제출 (B)	기한내 정산률 (B/A)	제재조치 사업수
고용노동부	26	24	92.3	-	32	27	84.4	-
국방부	1	1	100	-	46	46	100	-
농촌진흥청	44	44	100	-	2	2	100	-
법무부	3	3	100	-	27	27	100	-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2	85.7	-	12	12	100	-
재외동포청	-	-	-	-	19	12	63.2	-
공정거래위원회	16	16	100	-	1	1	100	-
특허청	-	-	-	-	16	16	100	-
국회	-	-	-	-	15	9	60	-
국가인권위원회	-	-	-	-	13	13	100	-
외교부	4	4	100	-	5	5	100	-
국세청	-	-	-	-	9	9	10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8	6	75	-	-	-	-	-
대법원	1	1	100	-	4	3	75	-
방위사업청	1	1	100	-	4	4	100	-
소방청	4	4	100	-	1	1	100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	-	5	5	100	-
국민권익위원회	-	-	-	-	4	4	100	-
경찰청	1	1	100	-	1	1	100	-
해양경찰청	-	-	-	-	2	2	1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1	50	-	-	-	-	-
새만금개발청	1	1	100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1	1	100	-
우주항공청	-	-	-	-	1	1	100	-
합 계	7,240	6,122	84.6	15	5,867	4,786	81.6	5

주) 부처 순서는 2024년 정산대상 보조사업 수 합계 순임
자료: 각 부처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조사업

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 중앙관서의 장은 차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교부 취소·보조금 반환 등 조치를 취하며,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을 집행 잔액을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 보고서 등이 법령상 기한 내에 제출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의 지연 방지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완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개월(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및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결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18]

---

1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보조금법」제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구조로 인하여 정산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집행잔액과 이자 등이 반납되 반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령상 기한 내에 정산과 집행잔액 등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① 보조사업의 정산 지연 부적정(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과정의 지연 및 사용기간·사업기간의 혼선 등으로 인해 수출바우처 보조사업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기업 선정기간을 앞당기고 바우처 사용기한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보조금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수출 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정산이 지연되어 2022년·2023년 사업의 경우 각각 이듬해 9월 중순과 8월 하순에 정산이 완료되었고, 2024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 7월말 기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정산 지연에 있어서 참여기업 선정절차 지연과 사업기간과 사용기한 간 혼선을 주요 사유로 정산이 지연되었음. 참여기업 선정공고 후 선정일까지 75일~87일이 소요되고,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기간을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인지하여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하고 있어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기간을 앞당기고, 바우처 사용기한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사업 종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기한 내 신속히 정산이 이루어져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집행잔액 등 기한 내 미반납 부적정(환경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중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1,316억 7,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반납 지연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정산과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집행잔액 미반납액을 살펴보면, 202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기준 미반납된 집행 잔액이 총 1,316억 7,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에 반납을 요청한 집행잔액 3억 1,900만원이 2024년 말까지 미반납되고 있음.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의 미반납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 불용액(A)	국고반납액(B)	미반납액	반납율(B/A)
2018	8,079	7,760	319	96.1
2019	64,620	64,463	157	99.8
2020	52,705	52,294	411	99.2
2021	69,695	55,344	14,351	79.4
2022	72,614	53,242	19,372	73.3
2023	215,967	142,388	73,579	65.9
합계	483,680	375,491	108,18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절차로 인하여 반납이 지연되고 있고, 정산자료 제출 등의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장기 미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독려 수준을 넘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지연 사유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함께 회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이월·재이월의 철저한 관리 필요

이월・재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엄격하게 허용되어야 함.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지침상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치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19]

1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재이월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되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월·재이월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령상의 이월·재이월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① 이월·재이월 승인절차 미준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국고보조금의 재이월과 관련하여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에서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은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재이월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음.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사업은 마리나비즈센터·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2023년에 교부되었으나 미집행되어 이월된 보조금 중 26억 700만원이 2025년으로 재이월되었음.

국고보조금의 재이월 절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중앙관서의 장(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0] 이를 이행하지 않고, e-나라도움 시스템상 담당 실무자의 전산 처리만으로 재이월이 이루어져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지원 사업은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노후화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을 개·보수하는 민간 자본보조사업(국비 50%)으로, 보조사업자인 수협은 2023년도 교부된 국고보조금 14억 9,300만원 중 6억 6,700만원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재이월 승인을 받았음.

그러나 실제로 이보다 많은 8억 7,100만원을 2025년으로 재이월하였고 2025년 1월 2일에 사후적으로 재이월 변경 승인이 이루어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부합하지 않음.

② 이월·재이월 사유 부적정(산업통상자원부·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0)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수전해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과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두 내역사업 모두 2차 보조사업자 수준에서 2023년 이월금 중 일부 금액이 2025년으로 재이월되었음.[21)]

수전해 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재공고 등으로 사업시작 시점 자체가 지연되었고,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평탄화 및 옹벽 시공 등으로 사업공고 자체가 지연되었음.

두 내역사업의 지연 사유 모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제2호의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해석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재이월을 승인한 것으로 보임. 이월제도는 단년도 회계주의 예외로서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법령상 재이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은 최근 3년간 재이월 또는 재재이월이 반복되어, 2023년에는 2022년 이월액 42억 1,600만원 중 20억 2,000만원이 재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이 중 4억 2,500만원이 재재이월되었음.[22)]

재이월 및 재재이월 등 재이월 이상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규정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재이월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재해복구 경비 및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가로수 이식, BRT 정류장 위치 변경, 신호기 형식 변경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실집행 부진으로 재이월 또는 재재이월 처리를 하였는데, 단순 협의 지연 사유는 지침에서 정한 재이월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

21)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105억 5,100만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경우 33억 7,500만원이 2025년으로 재이월됨.

22)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은 BRT 전용차로가 설치된 행정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와 BRT 전용차로가 미설치 되어 있는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구간에 BRT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를 신설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사업임.

기 어려움. 또한 재재이월은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사업시행자가「국가재정법」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재이월 규정을 준수하고, 재재이월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총괄 보고서(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가. 편성 단계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보건 복지부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엉)	8,478 (-)*	8,478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부적정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51,350 (49,000)	49,765 (47,415)	기존 사업과의 지원대상 및 내용 중복 부적정
산업통상 자원부	주요 기반시설 지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구축)	8,425	7,425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부적정
행정 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물가안정관리 등 추진)	5,607 (4,858)	4,420 (3,783)	보조사업 수요의 면밀한 추산 필요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3,585 (2,769)	3,440 (2,635)	보조사업 수행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주)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2억 100만원이 전액 이・전용(감) 되었음

나. 교부 단계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소방청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5,459	5,459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검토 미흡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85,137	79,046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검토 미흡
질병 관리청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6,388	6,388	이월금 보유 현황 검토 미흡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28,732 (1,750)	26,369 (1,750)	보조금 일괄 교부 부적정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친환경에너지타운)	160,023 (7,715)	155,563 (7,715)	보조금 일괄 교부 부적정

다. 사업수행 단계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중소벤처 기업부	마케팅지원사업 (판로진출지원)	26,677 (16,570)	26,568 (16,461)	보조사업 내용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 준수 필요
질병 관리청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2,200 (2,200)	2,200 (2,200)	보조사업 비목변경 시 지침상 절차 준수 필요

라. 관리·감독 단계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60	111,838	보조사업의 정산 지연 부적정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315	1,521,067	집행잔액 등 기한 내 미반납 부적정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41,184 (34,106)	39,562 (33,101)	이월·재이월 승인절차 미준수
	수협지도경제 활성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 사업)	2,809 (515)	2,809 (515)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생산기지구축	8,120	8,120	이월·재이월사유 부적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300	300	이월·재이월 사유 부적정

11. 출연금 사업

가. 현 황

(1) 개념 및 유형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1)]

이는 출연금의 용도 및 지원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재정법령상 출연금의 정의는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학문적 또는 실무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의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해 재정상의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액’ 을 말함.[2)]

출연금을 보조금과 비교해 보면, 출연금과 보조금은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개별법적 근거가 엄격하게 요구되고, 집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3)]

또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제외한 일반출연금은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4)] 근거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분 방식이 상이한 상황임. 반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로 반납함.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

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 박기영, 「한국재정」, 2018, p.795

3) 박기영, 「한국재정」, 2018, p.796

4)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출연금은「국가재정법」제12조의 지원 목적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으로 구분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출연금을 일반출연금(350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구분하고, 일반출연금(350목)은 다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사업출연금(350-02)·금융성기금출연금(350-03) 및 민간기금출연금(350-04)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은 연구개발인건비(360-01),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연구개발건축비(360-03),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360-04)·연구개발활동비(360-05) 및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로 세분하고 있음.

[일반출연금(350목)·연구개발출연금(360목) 관련 세목 구분]

구분	일반출연금(350목)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세목	기관운영출연금(350-01)	연구개발인건비(360-01)
	사업출연금(350-02)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금융성기금출연금(350-03)	연구개발건축비(360-03)
	민간기금출연금(35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360-04)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자료: 기획재정부,「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출연금(350목) 중 기관운영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정부 출연금으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정부 출연금으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경상비 및 사업비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출연금(360목)과 성격이 유사함. 이에 반해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 및 민간기금 출연금(350-04목)은 기금의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출연금과는 성격이 상이함.

[일반출연금(350목) 상세내역]

목명 (목번호)	세목명 (세목번호)	상세내역
일반출연금 (350목)	**기관운영출연금 (350-01)**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사업출연금 (350-02)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금융성기금출연금 (350-0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으로의 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 (350-0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금으로의 출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 현황

최근 5년간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현황을 보면, 두 출연금의 합계는 202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18조 5,217억원에서 2024년 28조 6,506억원으로 5년간 10조 1,289억원(54.7%)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3.6%에서 2024년 4.4%로 0.8%p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및 사업출연금(350-02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관운영출연금(A)	22,737	22,383	22,987	23,242	25,277
사업출연금(B)	162,480	193,181	222,159	220,317	261,229
합계(C=A+B)	185,217	215,564	245,146	243,559	286,506
정부총지출(D)	5,122,504	5,579,872	6,076,633	6,387,277	6,566,182
총지출 대비 비중 (C/D)	3.6	3.9	4.0	3.8	4.4

주) 연도별 본예산 및 계획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2020년 2조 2,737억원에서 2021년 2조 2,38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2조 2,987억원, 2023년 2조 3,242억원, 2024년 2조 5,277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사업출연금은 2020년 16조 2,480억원, 2021년 19조 3,181억원, 2022년 22조 2,15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22조 31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4년 26조 1,229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2024년도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의 결산 현황을 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의 예산현액은 2조 5,320억원으로 이 중 2조 5,309억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고, 사업출연금은 예산현액 26조 2,129억원 중 25조 4,757억원이 집행(집행률 97.2%)되었음.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28조 7,449억원으로 이 중 28조 65억원이 집행(집행률 97.4%)되었음.

[2024년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 및 사업출연금(350-02)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3년			2024년			집행률 증감 (F-C)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예산현액 (D)	집행액 (E)	집행률 (F=E/D)	
기관운영출연금	23,367	23,352	99.9	25,320	25,309	100.0	0.01
사업출연금	220,170	212,059	96.3	262,129	254,757	97.2	0.9
합계	243,537	235,411	96.6	287,449	280,065	97.4	0.8

주) 연도별 예산현액 및 수정계획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 대비 0.01%p 증가하고, 사업출연금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하여 두 출연금 합계의 집행률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음.

부처별 집행액을 보면,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의 집행액 합계 기준으로, 교육부(10조 3,261억원), 국토교통부(5조 2,712억원)·고용노동부(3조 2,606억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1조 7,730억원)·산업통상자원부(1조 2,708억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 및 사업출연금(350-02) 부처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기관 운영 출연금	사업 출연금	합계	기관 운영 출연금	사업 출연금	합계	기관 운영 출연금	사업 출연금	합계
교육부	6,002	98,527	104,529	6,002	97,259	103,261	100.0	98.7	98.8
국토교통부	1,185	56,290	57,475	1,185	51,527	52,712	100.0	91.5	91.7
고용노동부	6,716	26,226	32,942	6,716	25,890	32,606	100.0	98.7	99.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831	15,911	17,742	1,831	15,899	17,730	100.0	99.9	99.9
산업통상 자원부	1,286	11,634	12,919	1,286	11,422	12,708	100.0	98.2	98.4
행정안전부	87	12,044	12,131	87	12,043	12,130	99.5	100.0	100.0
외교부	28	12,347	12,375	26	11,606	11,632	92.6	94.0	94.0
중소벤처 기업부	64	8,159	8,223	64	8,152	8,217	100.0	99.9	99.9
금융위원회	624	6,794	7,419	624	6,794	7,419	100.0	100.0	100.0
환경부	3,327	3,398	6,725	3,327	3,398	6,725	100.0	100.0	100.0
기획재정부	405	5,186	5,591	405	5,156	5,561	100.0	99.4	99.5
보건복지부	1,591	1,532	3,122	1,591	1,532	3,122	100.0	100.0	100.0
경찰청	-	1,452	1,452	-	1,452	1,452	-	100.0	100.0
공정거래 위원회	479	166	646	479	166	646	100.0	100.0	100.0
여성가족부	343	299	642	343	299	642	100.0	100.0	100.0
해양수산부	333	297	631	333	297	631	100.0	100.0	100.0
농림축산 식품부	382	150	532	379	150	528	99.1	100.0	99.3
농촌진흥청	-	387	387	-	387	387	-	100.0	100.0
통일부	114	254	367	109	254	363	95.8	100.0	98.7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268	268	-	268	268	-	100.0	100.0

재외동포청	49	200	248	49	200	248	100.0	100.0	100.0
원자력안전 위원회	-	247	247	-	247	247	-	100.0	100.0
문화체육 관광부	124	58	182	124	58	182	100.0	100.0	100.0
기상청	91	61	152	91	61	152	100.0	100.0	100.0
식품의약품 안전처	86	-	86	86	-	86	100.0	-	100.0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65	17	81	65	16	81	100.0	97.7	99.5
특허청	23	34	57	23	34	57	100.0	100.0	100.0
새만금개발청	31	15	46	31	15	46	100.0	100.0	100.0
관세청	27	15	42	27	15	42	100.0	100.0	100.0
국회	26	16	43	26	16	42	99.2	98.6	98.9
방송통신 위원회	-	38	38	-	38	38	-	100.0	100.0
우주항공청	-	38	38	-	37	37	-	96.9	96.9
국방부	-	33	33	-	33	33	-	100.0	10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22	22	-	22	22	-	100.0	100.0
산림청	-	9	9	-	9	9	-	100.0	100.0
소방청	-	2	2	-	2	2	-	100.0	100.0
해양경찰청	-	2	2	-	2	2	-	100.0	100.0
총합계	25,320	262,129	287,449	25,309	254,757	280,065	100.0	97.2	97.4

주) 연도별 예산현액 및 수정계획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별로 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예산현액 기준 교육부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사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사업 등 순임.

[기관운영출연금 예산현액 상위 10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예산현액 (수정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370,517	317,517	10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11,083	211,083	10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인건비	151,107	151,107	100.0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립공원공단 출연	124,794	124,794	100.0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한국환경공단 출연	93,195	93,195	100.0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82,947	82,947	1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74,381	74,381	10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72,058	72,058	100.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65,691	65,691	100.0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장려 기금	저축장려금	62,429	62,429	100.0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가철도공단 관리	57,792	57,792	100.0

주) 연도별 예산현액 및 수정계획액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출연금은 예산현액 기준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국토교통부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 순임.

[사업출연금 예산현액 상위 10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회계·기금명	사업명	예산현액 (수정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4,718,433	4,598,433	97.5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431,257	1,423,633	99.5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1,203,700	1,203,700	100.0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대학혁신지원	1,003,995	1,002,295	99.8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 기금	1,000,000	1,000,000	100.0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전문대학 혁신 지원	617,900	617,400	99.9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국립대학육성 사업	571,900	571,900	100.0
교육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4,684	524,684	100.0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일반철도시설 유지	510,991	510,991	10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클린사업장조성 지원	471,792	471,652	100.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7,707	311,657	84.8

주) 연도별 예산현액 및 수정계획액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1) 출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개선 필요

첫째, 출연금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사업출연금의 경우 집행잔액 정산 및 이자수입 처리 등에 있어서 기관별·사업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운영·관리상 통일성 및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출연금 편성·관리 및 집행잔액 정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출연금을 보다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관리 등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음.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을 하며, 보조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예산 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되어[5]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반면 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에 한해서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고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법령이 없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반납하고 이자수입을 처리하고 있으며,[6] 일반출연금의 경우에는 통일적인 처리규정이 없음.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비(非)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건비·경상경비 등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기관 세입에 계상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인건비는 인건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관련]

ㅇ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하여만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석상 기관운영출연금을 제외한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등은 이와는 달리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없고 정산 및 반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보조금 및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에도 집행잔액의 반납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출연금을 이와는 달리 운영할 법령상 특별한 근거도 없음.

---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그런데 기관별·사업별로 특히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정산 및 이자수입 처리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사업의 출연금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사업의 출연금은 근거 법률 시행령 또는 사업 협약서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하고 있음.

[사업출연금 집행잔액 정산 및 이자수입 반납 사업(예시)]

부처명	피출연기관명 (사업명)	집행잔액 정산·반납 여부	이자수입 반납 여부	근거 규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③ 법 제8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	○	「한국재정정보원 출연사업 협약서」 제5조(사업비의 관리) ④ "을(한국재정정보원장)"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사업기간 내 종료후 발생한 이자수입**은 "갑(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반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발생 시 이월 손실 보전 후 나머지는 공단의 다음 연도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지 않음.

교육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근거 법률의 시행령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피출연기관 세입에 이입하거나 피출연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및 여성가족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내부규정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반납하지 않고 피출연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지 않음.

[사업출연금 집행잔액 미정산 및 이자수입 미반납 사업(예시)]

부처명	피출연기관명 (사업명)	집행잔액 정산·반납 여부	이자수입 반납 여부	근거 규정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출연)	×	×	「한국환경공단법」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7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처명	피출연기관명 (사업명)	집행잔액 정산·반납 여부	이자수입 반납 여부	근거 규정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계규정」 제29조(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지원)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회계규정」 제70조(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지원)	×	×	「한국양성인권진흥원 회계규정」 제70조(잉여금의 처리) ① 진흥원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전년도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한다.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법령상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각 부처 및 피출연기관에서는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결산상 잉여금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이를 다음연도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해석상 출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산상 잉여금은 출연금 정산 후 남아있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 관련 정의조항도 마련하여 결산상 잉여금에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관련 사항이 부처별·사업별로 상이하여 통일성·체계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출연사업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우 연례적으로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처분하고 기관에서 장기간 유보하여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초래되고 출연금 집행잔액 등의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7)]

[2020년~202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등 집행잔액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	자체수입 초과분		-	-	-	-	-
	출연금 집행잔액분 (인건비 잔액 등 제외)	**기관운영 출연금 (350-01)**	**-**	**10**	**114**	**14**	**-**
		사업출연금 (350-02)	**-**	**357**	**398**	**490**	**316**
	이자수익		2	3	3	4	3
	기타		-	-	-	10	4
	합계		2	370	515	518	323
미처분			**2**	**370**	**515**	**518**	**323**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사업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관련 사항의 규정 형식이 근거 법률 또는 시행령, 피출연기관 회계규정 또는 출연사업 협약서 등으로 사업별로 상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을 보다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출연금 편성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특히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정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출연금을 보다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사업출연금에 대해 정산보고서 작성 및 외부검증 없이 중앙기관의 장이 집행잔액을 추계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집행잔액의 추계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는 사업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상당수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정산 및 반납 없이 이월 또는 적립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출연금 사후 관리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사업출연금 사후관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7)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25년 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하여 집행잔액 반납계획 제출을 통보하였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5년 9월말까지 반납계획을 제출할 예정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사업출연금 요구 시 반드시 전전년도까지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요구하도록 의무화하였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실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는 사업출연금 요구 시 반드시 전전년도까지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반영하도록 규정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사업출연금 관련 개정사항 발췌]

> 11. 출연사업
> □ 지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
> ㅇ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이하 **사업출연금) 예산 요구 시, 반드시 전전년도까지의 집행잔액 감안·반영**
> * '25년 예산에 감안·반영되지 않은 '24년도 집행 잔액은 반드시 '26년도 예산 요구에 반영 원칙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의 장은 사업출연금 예산 요구 시 사업출연금 집행잔액 및 운영비 내역을 작성 및 첨부하고,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집행잔액을 적정히 추계하여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사업출연금 관련 개정사항 발췌]

>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350-02목)·연구개발출연금(360목)
> 2. 세부지침
> ㅇ 일반법령출연금의 경우,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 달성에 충실히 사용
> - 중앙기관의 장은 **출연사업 요구시**, <별첨2>의 일반출연금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양식과 <별첨3>의 **사업출연금 집행잔액 및 운영비 내역을 작성 및 첨부하여 요구**
> - 중앙기관의 장은 **사업출연금 요구시, 반드시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집행잔액을 적정하게 추계하여 예산 요구서에 반영**
> * '2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4년도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26년 예산 요구시 반영
> ** 전기이월금 규모,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도 집행잔액을 적정하게 추정한 후 예산 요구서에 반영
> - 사업출연금 내 운영비는 비정규직 인건비, 경상비 등 내역을 세부 구분하여 요구
> - 중앙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을 추계하여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
> - 출연금 관련 사업의 예산안은 **사업출연금 집행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은 제외하고 편성**
> -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또는 여타 사업출연금 예산안에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반영하여 편성**

그러나 사업출연금 예산 요구 및 편성 시 기 교부된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보조금의 경우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8)]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9)]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와 같이 보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한 정산보고서 등을 외부 감사인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그런데 사업출연금의 경우 정산보고서 작성 및 외부 검증 등의 절차 없이 중앙기관의 장이 집행잔액을 추계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시 반영하도록만 되어 있어 집행잔액의 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추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지침에서 출연사업 종료 또는 폐지 후 집행잔액 처리 및 소관 부처 변경 시 집행잔액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출연금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을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출연사업이 종료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또는 여타 사업출연금 예산안에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출연사업 종료 또는 폐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잔액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상 미비점이 있음.

그리고 출연사업의 소관 부처가 변경될 경우에도 기존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으로는 출연금, 특히 사업출연금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출연금 편성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특히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정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출연금을 보다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2) 개별 사업 검토

(가) 법적 근거 미흡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출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위탁 근거가 미흡하거나, 출연금 지급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사업의 위탁 근거 미흡: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수행 업무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의 위탁 관련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고 있고,[10] 2024년에는 21억 1,600만원을 교부하였음.[1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교부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매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각 실태조사의 근거 법률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2항[12]은 실태조사의 시행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 시설 ·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1) 일반회계-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정보화)(1945-501)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장애인 ·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 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 방법 · 절차,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7항 및 제54조제2항[13]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자료요청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이나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등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요청 등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거나 부처가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② 출연금 지급 근거 미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출연사업(교육부)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거나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하여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을,[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15] 평생학습진흥

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장애인 ·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실태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4) 일반회계-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1033-300), 2024년 기관운영출연금 1억 3,300만원, 사업출연금 6,400만원 교부

지원 사업,[1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17]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사업,[18]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19]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2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21]을 위하여 사업출연금을 각각 교부하였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등에 따라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 지원 관련 법적 근거]

피출연기관	회계명	사업명	구분	법적 근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회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출연금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회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출연금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회계	평생학습진흥 지원	사업출연금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15) 일반회계-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 2024년 사업출연금 51억 1,300만원 교부

16) 일반회계-평생학습진흥 지원(4131-300), 2024년 사업출연금 8억 1,800만원 교부

17) 일반회계-평생교육바우처 지원(4131-304), 2024년 사업출연금 209억 4,700만원 교부

18) 일반회계-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4131-500), 2024년 사업출연금 23억 9,300만원 교부

19) 일반회계-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4134-302), 2024년 사업출연금 67억 3,200만원 교부

20) 일반회계-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4143-300), 2024년 사업출연금 3억 5,500만원 교부

21) 교육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 2024년 사업출연금 194억 100만원 교부

피출연기관	회계명	사업명	구분	법적 근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회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출연금	「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탁·위임)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회계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사업출연금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회계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출연금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반회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출연금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22) 동 사업은 출연 관련 법적 근거 미흡으로 2025년 예산에 미반영되었음.

피출연기관	회계명	사업명	구분	법적 근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평생교육 특별회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 출연금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자료: 교육부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19조제7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기관운영출연금의 지급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사업출연금 지급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같은 법 제16조의 경우에도 국가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도 교육부장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서 출연 관련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출연'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출연금의 지급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참고로 교육부의 한국장학재단 관련 사업출연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23]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에 대한 사업출연금의 경우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제5호에 교육부장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24]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4)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나)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구분 미흡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관운영출연금은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로, 사업출연금은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해서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되,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기관 세입에 계상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방법도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성격에 맞도록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① 기관운영출연금 일부를 사업출연금으로 전환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일부 출연사업은 내용상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적정하므로, 비목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에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사후정산을 거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에 해당하며, 사업출연금(350-02목)은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용되는 비목을 각각 뜻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사업출연금(350-02목) 구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사업출연금(350-02목)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4.1.)

그런데 2024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외에도 정책연구개발비 5억 5,000만원 및 지방투자사업 임의타당성 재조사 2억원 등이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으로 편성되었고, 2025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소멸대응연구과제를 위한 3억원 역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고 있음.

[2024년·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사업 예산 산출내역]

2024년	2025년
○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30억 5,400만원 - 인건비: 74억 7,500만원×31.3%=23억400만원 **- 정책연구개발비** **: 32과제×26백×66% = 5억 5,000만원** **- 지방투자사업 임의타당성 재조사** **: 1억×4회×50% = 2억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34억 2,300만원 - 인건비 : 10,310백(24년)×23%=23억 7,300만원 **- 정책연구개발:** **32과제×27백×63.7% = 5억 5,000만원** **- 지방투자타당성조사** **: 1억원×4회×50%=2억원** **- 소멸대응연구과제 : 1억원×3회=3억원**

주) 운영비 및 시설비가 아닌 편성 근거 및 집행내역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개발·지방투자타당성조사 및 소멸대응연구과제 등 사업단위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도 실제로는 경상경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고, 이 사업들은 수익성·목적성 사업이 아니라 연구기관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산출내역상 과제의 수나 과업수행 횟수 등을 근거로 금액이 산정되고 있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출연금(350-02목)은 본래 출연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원되는 것이므로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집행지침상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정산 및 반납 없이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하여 기관 세입에 계상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사업출연금(350-02목)은 집행지침상 출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정산 후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실익이 존재함.

[기관운영 및 사업출연금(350-01목·350-02목) 사후정산방식 비교]

구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사업출연금(350-02목)
정산 등 사후관리	- 정산 및 반납 없이 차기 연도 세입으로 계상	- 관계 법령 및 주무부처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처분에 있어 출연금의 투명성·효율성 고려

자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재정리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출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실제 지출용도에 부합하도록 사업출연금(350-02목)에 부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비목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출내역도 투명하게 적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서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출연금 일부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 필요: 국토안전관리원 출연(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업출연금을 통해 기관의 경상경비를 우회하여 사용하거나 추가 수입을 활용하는 등 당초 편성된 경상경비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예산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을 전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0.5%를 삭감하도록 하는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강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업출연금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전환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25] 사업출연금을 통해 경상경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출연금 499억 300만원에는 '국토안전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 예산 49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에는 청사 임차료, 청사 관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행사비, 피복비, 여비, 유류비, 임차료,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 12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비가 편성되어 있어 사업출연금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2024년 국토안전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원)

세목	본예산(A)	변경예산(B)	결산(C)	차이(C-A)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75,749,600	486,238,089	484,976,864	△90,772,736
관리용역비(210-15)	1,500,834,000	1,527,566,695	1,527,566,665	26,732,665
국내여비(220-01)	39,067,200	23,176,662	23,176,207	△15,890,993
무형자산(440-00)	270,000,000	1,360,000,000	1,360,000,000	1,090,000,000
보수(110-01)	21,550,000	7,102,240	7,102,240	△14,447,760

25)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58.

복리후생비(210-12)	3,060,000	743,660	743,660	△2,316,34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5,640,000	221,375,357	218,666,070	43,026,070
안전보건관리비(210-18)	24,926,800	31,132,885	31,104,865	6,178,065
유류비(210-08)	17,600,000	3,088,513	3,067,549	△14,532,451
일반수용비(210-01)	153,505,200	203,419,434	202,591,005	49,085,805
일반연구비(260-01)	605,000,000	608,517,000	603,306,970	△1,693,030
일반용역비(210-14)	11,000,000	94,800,000	94,800,000	83,800,000
임차료(210-07)	1,426,803,200	1,387,374,355	1,387,374,355	△39,428,845
자산취득비(430-01)	23,900,000	61,378,590	61,337,110	37,437,110
특근매식비(210-05)	6,464,000	3,529,260	3,475,360	△2,988,640
피복비(210-03)	3,900,000	8,050,000	7,950,000	4,050,000
행사비(210-19)	90,000,000	91,293,510	90,179,210	179,210
총합계	4,949,000,000	6,118,786,250	6,107,418,130	1,158,418,130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더욱이 이 내역사업은 2022년 32억원에서 2024년 49억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경상경비의 과도한 지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3년 동안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서 발생한 추가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직원 사택 마련 등을 목적으로 약 57억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경상경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토안전시설 지원 및 운영사업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계
예산액(a)	3,210	4,646	4,949	12,805
집행액(b)	5,183	7,234	6,107	18,524
초과집행액(b-a)	1,973	2,588	1,158	5,719
초과 집행 비율(b/a×100)	161.5%	155.7%	123.0%	144.7%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4년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아 2025년도 경상경비 감액대상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출연금으로 우회하여 경상경비가 추가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의 비목을 사업출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출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미흡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26] 출연금의 경우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은 없음.

그러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사업의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금이 연내 실집행되어야 사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출연금 교부 시에도 보조금의 경우와 같이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일부 출연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출연금을 교부하였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부 발췌]

3. 예산 신속집행
 3-1. 예산 신속집행 기조 유지
  나. 신속집행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속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개도국정보접근성센터구축운영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내역사업을 통하여 2024년 나이지리아·알바니아·부탄 및 파라과이에 신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음.

---

2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4년 초 파라과이의 현지 정세 불안과 현지 기관의 내부 사정[27]으로 인하여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파라과이측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였음.

[2024년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일정]

구분	사업계획서상 추진 일정 (4개 국 공통)	현재 추진일정 (파라과이)
2024	o 1월 ~ 3월 : 정보접근센터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o 4월 ~ 6월 : 현지실사, 공사/기자재 업체 선정 및 운영진 초청연수 o 7월 ~ 9월 : 신규 구축 추진 o 10월 ~ 12월 : 신규 구축 추진(계속), 개소식	o 1월 ~ 3월 : 현지 사정(정세불안, 기관 사정) 등으로 일정변경 논의 o 4월 ~ 9월 : 사업 추진 관련 수행기관 간 실무 협의 o 10월 ~ 12월 :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한 협약 변경(기간 연장, ~2025년)
2025	-	o 1월 ~ 3월 :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현지 기관 협의 o 4월 ~ 6월 : 현지실사, 공사/기자재 업체 선정 및 운영진 초청연수 o 7월 ~ 9월 : 신규 구축 추진 o 10월 ~ 12월 : 신규 구축 추진(계속), 개소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5년에 다시 협의를 통하여 현지실사 및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에 출연금 전액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교부하였음.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행률은 96.7%로 집계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집행률은 76%이고,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만 고려하면 실집행률이 3.7% 수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예산의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하였음.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라과이는 2023년 대선 및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폭력시위 등으로 정세 불안이 2024년 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라 현지 기관(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산하 센터) 내부의 대폭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함.

[2024년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예산 (A)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최종 집행액 (B)	이월액	최종 집행률 (B/A)
628	512	116	512	23	489	3.7%

주) 2024년에 편성된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에 대하여만 작성한 것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실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된 것처럼 집계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28)]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이미 1년가량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의 신속집행 기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실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차 피출연기관의 수준에서 건축 단계별 실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자금을 교부함으로써 과도한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 898억 4,7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2024년 말 기준 인천시 등 76개 2차 피출연기관의 최종집행률은 27.1%이고, 969억 6,7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신속집행 기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매칭부담금 확보를 위한 국비 교부 요청에 따라 예산을 신속히 교부하였으나,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 및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외 집행이 지연되어 최종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

2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집행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동 지침에서는 신속집행을 규정함과 동시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출연사업의 실집행 제고를 위해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8)]

3. 예산 신속집행 3-1. 예산 신속집행 기조 유지 나. 신속집행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속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신속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2024년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피출연기관의 수준에서 건축 단계별 실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자금을 교부함으로써 과도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③ 해상풍력 지원센터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해상풍력 지원센터 내역사업에서 2024년 사업계획서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였으나 건축설계연구용역기간 연장, 설계, 시공 및 감리사 선정절차 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액이 미집행된 채 이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해상풍력 지원센터 내역사업은 용역을 통한 건축설계가 2024년 8월에 완료되는 등 구축일정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계획서 상의 착공예정일(2024년 10월)을 고려하여 2024년 6월에 예산액 60억원을 전액 교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2024년 2월에 64억 500만원, 2024년 6월에 43억 6,000만원을 대한전기협회에 교부하였음.

[해상풍력 지원센터 내역사업 사업비 교부일]

(단위: 백만원)

구분	시기	금액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4.6.	6,000
한국에너지공단→대한전기협회	2024.2.	6,405
	2024.6.	4,36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2024년 2월 및 2024년 6월은 건축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며,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감리단이 선정되었으므로 장비구축을 위한 구축비가 2024년 연내 실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기협회에 교부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 일정]

시점	일정
2021.1.	건축 기본계획용역
2021.9.	공공건축 사전검토 용역
2022.5.	입주심사
2022.7.	건축설계용역
2022.8.	입주 및 매매계약
2024.6.	**2024년도 예산액 60억원 교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4.8.	건축설계용역 완료
2024.12.	감리단 선정
2025.4.	착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29]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29)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8

④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해양수산부)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의 박물관 및 과학관 지원 출연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큰 규모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출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금액만 편성 및 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내역사업 및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내역사업은 실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출연금 중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고, 특히 인건비의 이월 규모가 연례적으로 과다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해양수산부는 연례적 이월 문제를 시정할 것'(시정)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해양수산부는 연례적 이월 개선을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월별 예산 실집행점검을 통해 분기별 출연금 교부 시 적정 금액만 배정하고(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인건비 14억 3,100만원 미배정), 특히 국립해양과학관의 기 누적된 인건비 집행잔액(약 12억원)은 2024년도 회계 결산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4월 국고에 반납하였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같은 세부사업에서 2024년 개관에 따라 신규로 반영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의 출연금 실집행내역을 보면 7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출연금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A)	예산 현액						교부 현액	집행액 (C)			
7,413	6,603	6,603	6,603	-	6,603	5,903	6,603	5,904	**698**	-	89.4

자료: 해양수산부

출연금 상세 집행내역을 보면, 이월액 7억원 중 인건비가 6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예산액 31억 1,200만원 중 19.7%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출연금 상세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출연금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액)
기관운영출연금	인건비	**3,112**	2,498	-	**614**
	기관운영비	1,990	1,694	234	62
사업출연금	유물 수집 및 관리	587	580	4	3
	전시기획 및 운영	370	362	4	4
	교육 기획 및 운영	213	201	10	2
	학술조사연구	176	153	13	10
	대외교류 및 협력	155	142	11	2

자료: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은 2024년 6월 7일 기관운영출연금 28억 3,000만원 교부 후 11월 11일에 기관운영출연금 잔액 22억 7,2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2024년 10월까지의 인건비 집행액이 15억 4,200만원에 불과하여 11월에 연내 편성된 인건비 전액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모두 연내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인건비	232	314	331	327	338	455	501	2,498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출연금 교부는 예산 실집행점검을 통해 분기별 출연금 교부 시 적정 금액만 배정하였다는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고, 타 박물관 또는 과학관의 사례와 유사하게 인건비의 이월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출연사업 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부적정한 출연금 집행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30] 「2024년

30)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개별사업 출연금을 예산 편성 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1] 일부 출연사업의 경우 출연금이 당초 예산 편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집행상 부적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연금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관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지원을 위하여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립은 2024년 8월 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87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개최 필요성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논의될 수 없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필요성과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4년 예비비로 신규 편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어야 함.[32]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0월 28일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은 그 전인 2024년 9월 26일에 개최하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수행 중이던 4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음.

---

3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14. 일반 출연금(350목)·연구개발 출연금(360목)
> 14-2. 기타 출연금(350-01목, 350-02목, 360목)
> 나. 세부지침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본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 **개별사업 출연금을 예산 편성 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28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2024년 11월 18일에 예비비 8억 7,400만원을 배정받았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활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명	활용예산	합계
일반회계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질서 확산	50	261.5
방송통신발전기금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50.5	
정보통신진흥기금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50	
정보통신진흥기금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1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은 예산의 집행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추진했어야 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동 행사와 관련이 적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33)]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특정 행사 개최를 위해 합쳐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연 사업(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탁과제로 받은 2024년도 출연금 중 실집행률이 100%인 내역사업은 튜닝교육 및 컨설팅, 자동차안전도평가,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 운영, 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 건설기계제작결함 시정, 자율차 경진대회 사업 등으로 나타났음.

3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 · 제35조 · 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3 · 제39조 · 제45조 · 제49조 · 제50조 ·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내역변경을 통해 100% 예산을 집행한 사례]

(단위: 백만원)

항 목	예 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①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				
1. 튜닝 교육 및 컨설팅	720	720	0	100.0
1) 튜닝 컨설팅 지원	230	200	30	87.0
2) 튜닝 관련 교육 지원	85	123	△38	144.7
3) 사업운영비	405	397	8	98.0
② 자동차안전도강화				
1. 자동차안전도 평가	3,835	3,835	0	100.0
1) 시험차 구매	1,408	1,585	△177	112.6
2) 부품 및 평가시험	1,503	1,508	△5	100.3
3) 평가장비 고도화	500	413	87	82.6
4) 안전도평가 홍보	274	224	50	81.8
5) 제도발전 연구	150	105	45	70.0
2. 자동차교환 환불제도 운영	900	900	0	100.0
1) 중재부 운영	700	788	△88	112.6
2)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175	65	110	37.1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25	47	△22	188.0
3. 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	553	553	0	100.0
1) UN국제기준 제·개정 실무회의체 대응 활동	120	135	△15	112.5
2) 국내기준 반영, 제도 및 국제기준 제안연구 활동	220	184	36	83.6
3) WP.29 국제회의, FTA 등 대응 국제협력	113	137	△24	121.2
4) 신기술 특례 제도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	100	98	2	98.0
③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1.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1,351	1,351	0	100.0
1) 제작동일성 조사	544	544	0	100.0
2) 안전기준 성능시험	507	507	0	100.0
3) 안전기준 성능시험 장비 구매	300	300	0	100.0
④ 자율자동차 상용화				
1.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500	500	0	100.0
1)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지원	130	130	0	100.0
2) 자율주행 기술 실습 및 평가 환경 구성	85	103	△18	121.2
3) 경진대회 경기 및 행사운영	100	92	8	92.0
4)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및 고도화	35	35	0	100.0
5) 자율전기차 제작지원	150	140	10	93.3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런데 위 사업들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을 하는 등 내역사업별 조정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전액 소진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사업”(7억 2,000만원)의 경우 튜닝 우수업체 해외연수 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실습 중심의 교육 필요성에 따라 신규 교재

제작 지원비에 활용하였음.

또한 “자동차교환 환불제도 운영사업”(9억원)의 경우 중재부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재부 운영 및 사무국 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예산을 축소 집행하거나 전산시스템 관리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운영사업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위원회 운영	68,125	64,629	위원회 회의 수당, 회의 운영비 등
중재부 운영	608,878	614,779	중재위원 수당, 민원 상담 인건비, 심리판정, 공간 임대료
사무국 운영	45,157	47,271	출장 여비, 사무용품 임대료 등
전산시스템 관리	177,840	173,321	정보화시스템 용역
합계	900,000	900,000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사업”의 경우 여비·유인물비·회의비·홍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재료비를 초과 집행하여 13억 5,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제작결함조사	여비	40,000,000	33,039,230	국내·외 조사여비
	유인물비	10,000,000	8,535,000	인쇄물(복합기)
	회의비	30,000,000	25,444,980	제작사 간담회, 안전기준 협의체
	홍보비	40,000,000	38,413,500	건설기계전 참석, 홍보물 제작
	재료비	931,000,000	945,567,290	제작동일성조사 수행경비, 안전기준 시험품 구매비,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
	총계	1,051,000,000	1,051,000,000	
기계장치구축	창유리 시험장비	300,000,000	300,000,000	계약준비비 등, 장비계약(281,710,000), 장비시험실구축(16,291,550)
합계		1,351,000,000	1,351,000,000	100%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은 개별사업 출연금을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34] 사업출연금의 경우 별도의 처리지침이 없는 경우 기관운영출연금과 달리 집행잔액을 정산 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집행잔액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지출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마) 적정 규모의 출연예산 편성 필요

일부 출연사업은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출연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①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실소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지출부에 근거하여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실집행률이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4년 3개 내역사업에 배정된 기획평가관리비는 총 54억 4,200만원 중 37억 8,700만원만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9.6%에 불과함.

[202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출부에 따른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흐름	예산액(A)	집행액 또는 교부액(B)	집행률 또는 교부율(B/A)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단공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외 8개 컨소시엄	20,907	20,906	99.9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단공 →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외 9개 컨소시엄	79,826	79,825	99.9
산단 특화 탄소저감	산단공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3,326	3,326	100.0
기획평가관리비	산단공 직접집행	5,442	3,787	69.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로 내역사업별 실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의 약 4.97%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34)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4.

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서도 보이듯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은 2022년부터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귀속되는 기획평가관리비도 그 필요성 여부와 무관히 함께 커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됨.

[2022~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A)	기획평가관리비 (B)	비율(B/A)
2022년	43,000	2,134	4.96
2023년	54,400	2,702	4.97
2024년	109,500	5,442	4.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실소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바) 사업추진 지연 및 실집행부진

출연사업이 당초 설정한 목적 및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내 사업추진 및 실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출연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①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상담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집행 부진 및 불필요한 추가지출소요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담 원천데이터를 질의-응답 형태의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각 정부기관이 학습데이터 자동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소관 분야의 민원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음.[35]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4억 8,400만원의 사업출연금(350-02목)을 교부하였으나, 인건비 집행액(7,4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4억 1,000만원)가 전액 미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5.3%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이는 민원도우미 서비스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최종 협의(2차 협의)가 2024년 9월 11일에야 완료되었고, 실제 용역사업은 차년도(2025년)에야 시작되어 만 1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된 데 따른 것임.

[2024-2025년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추진경과]

연.월	단계별 사업경과
2023.6.15.	행안부-권익위 국민신문고 데이터 활용 협의 **(국민신문고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결정)**
2024.2.	행안부-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1차 협의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초 협의)**
2024.4.~2024.8.	사업 추진내용 구체화
2024.9.11.	행안부-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2차 협의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종 협의)**
2024.11.20.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제공 협의 완료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2024.12.	학습데이터 자동 생성 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조달 발주
2025.1.~2025.4.	**사업 추진 및 잔여금액 실집행 완료** **(110콜센터 상담원천데이터(TXT) 제공 - 25.2.1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면서도 개인식별정보 제거 등 상담원천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인력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임.[36]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예산 확정 이전에는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예산 확정 이후에야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1차 협의)를 추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상담데이터 가공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

35) 행정안전부('24.11.), 「민원도우미 서비스 학습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사업계획」

36) 데이터 제공을 위한 최초 협의는 2024년 2월부터지만 실제로 개인식별정보 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데이터가 제공된 시점은 차년도(2025년) 2월 13일임.

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은 예산안 편성 시점부터 면밀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전년도 협의과정('23.6.15.)에서 이미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추진방향을 전환하였으면서도 실제 활용에 요구되는 소요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 과정에서 실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요인들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3월부터 마이데이터 관련「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지연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명시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및 행정부의 재량을 존중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은 2025년 2월에서야 개정되었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음.[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맞추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

37)「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234호, 2023.3.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2.25.) 부칙
제1조(시행일) ②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스를 발굴·지원 및 실증하기 위해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25억 원)을 추진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업예산 전액을 출연하였음.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목적) 2025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및 실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
◦ (지원규모) 총 25억원(총 5개 서비스×1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
◦ (지원대상) 제3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른 의료(병의원)·통신(무선통신) 분야의 전송대상 정보 활용 및 자율 분야(34개 분야)의 표준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 (선정기준) 의료(의료기관) 분야, 통신(무선통신) 분야, 자율 분야 각 1개씩 선정하고, 나머지 2개는 분야와 무관하게 고득점순으로 선정

공고 및 접수 (2024.8월말~10월초)	⇒	사업자 평가·선정 (10월 초~11월중)	⇒	사업 추진 (11월중~2025.6월)	⇒	사업 완료 (2025.6월)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등 · 총 사업비 심의 ·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서비스 개발 등 · 중간·최종 평가		· 서비스 순차 출시 및 홍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8월 31일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의 공모를 개시하였고, 10월 31일 사업자를 선정하여[38] 11월에서야 계약이 체결되었음. 2024년 연말까지 선금(70%)은 집행되었으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간(5~6개월)을 고려하여 나머지 잔금(30%)은 결국 이월되었고, 2025년 2월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3월 28일에서야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서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대상정보가 대략적으로 정해져야 공모에 지원하는 기업·기관들이 그 정보들을 활용하여

38)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선정 결과]

분야	주관기관	서비스 내용
의료	A의료원	일반인의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위험도 예측, 만성질환자의 신장질환 이환 예측, 대상자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서비스
	B사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국내 의료기록 연동 및 영문 번역 서비스
	C사	진료이력, 처방이력, 투약이력 등 기존 진료 정보조회 및 약물 관련 복약 지식 제공을 통한 안전한 약물 처방·복약 지원
통신	D연합회	통신서비스 사용량 및 사용자 이용패턴 기반의 맞춤형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제공
자율	E사	기존 여행기록(여행지, 숙박등) 통합조회, 여행지 추천, 여행경비 최적 설계, 여행크루 추천 등 맞춤형 여행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구상하고 공모할 수 있는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이해관계 추가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선도서비스 공모사업 공고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함.

[2025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목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기반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서비스 개발 및 전문기관 지정 지원
◦ (지원규모) 총 19억원(4개 이상 사업 지원, 1개당 최대 5억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
◦ (지원대상)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정보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
◦ (사업기간) 2025년 7월 10일~ 12월 30일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적사항

가. 법적 근거 미흡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정보화)	2,116	2,11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정보격차 실태조사 위탁 근거 미흡
교육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197	197	(국가평생교육원) 사업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 미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113	5,113	
	평생학습진흥 지원	818	818	
	평생교육바우처 지원(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20,947	20,947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93	2,393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732	6,732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95	99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9,401	19,401	

나.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 구분 미흡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3,054	3,05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운영출연금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역은 사업출연금으로 전환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84,336	84,336	(국토안전관리원) 사업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의 비목 전환 검토 필요

다. 출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미흡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도국정보이용 환경개선사업 (개도국정보접근 센터구축운영)	3,496	3,38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출연금을 교부하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반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276,617	276,617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출연금 교부로 과도한 예산이월 발생
	해상풍력산업지원 (해상풍력 지원센터)	8,483	8,483	(한국에너지공단)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출연금 교부로 출연금 전액 이월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116,384	111,054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건비 과다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출연금 편성·교부 필요

라. 부적정한 출연금 집행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질서 확산	0	261.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지원 위해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 예산 사용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	1,120	994.4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출연금 전액 집행 부적정
	자동차안전도강화	16,446	16,444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 사업	1,351	1,351	
	자율자동차 상용화	42,900	42,887.2	

마. 적정 규모의 출연예산 편성 필요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산업통상 자원부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223,600	223,600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소요에 부합하는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편성 필요

바. 사업추진 지연 및 실집행부진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4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행정안전부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_	484	48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전준비 부족으로 집행부진 발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5,970	5,970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추진 지연으로 예산 실집행 부진